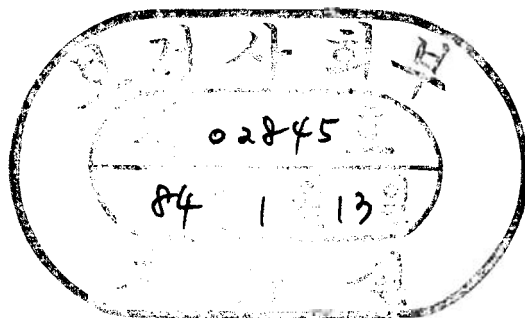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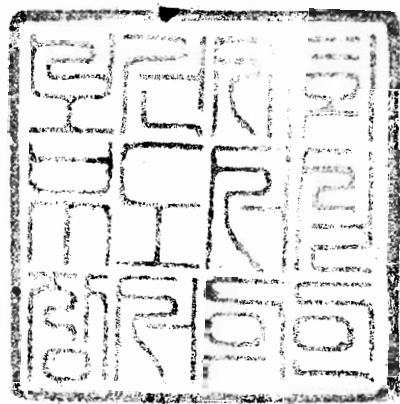
사회복지기초자료 조사보고서

1970. 7



00079

~~00079~~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
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
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응
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
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
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가 29
338
보 125
1970

공무원의 신조

1. 우리 공무원은 민족 중흥에
앞장선 영광스러운 길잡이
임을 자부한다.
1. 우리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
임을 얻는다.
1. 우리 공무원은 청렴 결백
하여 거래의 공복으로 국가
에 봉사한다.

사회복지 기초자료 보고서

(사회개발 - 조사 - 68-2)

이 보고서는 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968 ~ 1969 년도 사회조사계획 (사회개발 - 조사 - 68 - 2) 에 의하여 실시한 사회조사 보고서중의 하나로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사회복지 기초자료에 관한 조사 보고서이다.

1970. 6. .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사회복지 기초자료 조사

보건사회부 장관 귀하

1968. 9. 1 부터 1969. 3. 28 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지역 1,733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변화에 의한 가구구조의 변화와 건전가구의 보전을 위한 문제점의 파악 및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한바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 하나이다.

1970. 6. .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	망	갑
분과위원	이	효	재
◇	강	만	춘
◇	이	현	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

신	남	균
안	창	수

총 목 차

제 1 부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5
제 2 부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29
제 3 부	가구조성과 거주생활	49
제 4 부	가정생활의 사회경제적 특성	127
제 5 부	아동 및 청소년 복지문제	207
제 6 부	노인복지문제	297
제 7 부	기혼 직업여성 복지문제	361
제 8 부	심신장애자 복지문제	429

부 록

1.	사회복지 기초자료조사 통계표	633
2.	사회복지 기초조사표	821

목 차

서 론	1
제 1 부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5
제 1 장 사회복지사업의 일반적 이해	7
1. 사회복지의 정의	7
2. 사회복지의 분야	9
제 2 장 한국사회복지사업의 개황	13
1. 아동복지사업	13
2. 노인복지사업	17
3. 부녀복지사업	18
4. 심신장애자 복지사업	20
5.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21
6. 생활보호	22
7. 사회복지행정기구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	23
제 3 장 한국사회복지사업의 성격	25
제 2 부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29
제 4 장 조사방법	31
1. 조사목적	31
2. 조사대상지역선정과 표본추출 방법	33
3. 조사표의 구성내용	38
제 5 장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41
1.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41
2.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43
3. 응답자의 종교	45

4. 응답자의 직업	46
5. 응답자의 교육정도	47
제 3 부 가구구성과 거주생활	49
제 6 장 가구의 기본적 속성	51
제 7 장 가구원수, 가구형태 및 가족 형태	61
제 8 장 별거자에 관한 자료	65
제 9 장 취업자에 관한 자료	72
제 10 장 미취업자에 관한 자료	80
제 11 장 가구상황과 관련된 기타자료	90
제 12 장 거주생활	100
1. 주택소유여부와 사용가능 방수	100
2. 거주생활전반에 대한 불만족도	102
3. 상수도시설에 대한 만족도	104
4. 하수도시설에 대한 만족도	104
5. 전기시설에 대한 만족도	105
6. 변소시설에 대한 만족도	106
7. 오물처리에 대한 만족도	108
8. 목욕탕에 대한 만족도	109
9. 우물에 대한 만족도	110
10.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만족도	111
11. 축대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112
12. 화재예방에 대한 만족도	114
13. 수해예방에 대한 만족도	115
14. 주위환경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116

제 13 장	가구구성과 거주생활에 관한 문제점제시	120
제 4 부	가정생활의 사회경제적 특성	127
제 14 장	취업상황	129
1.	가구주의 취업상황	129
2.	취업자수, 가구주의의 취업자 및 여성취업자	134
3.	가구주의 실업 또는 무직	140
4.	미취업자	143
제 15 장	가구수입과 가계	149
1.	가구수입과 수입의 원천	149
2.	가구주의 속성에 따른 가구수입의 차이	159
3.	가구수입과 가계	163
제 16 장	가정경제의 제 문제점	171
1.	일반가정의 경제적 곤란점	171
2.	재해, 대사의 경제적 곤경	177
3.	재해, 대사의 대비책	181
4.	소비자 보호문제	185
제 17 장	생활수준과 경제적 복지문제	191
1.	생활수준	191
2.	생활형편의 향상여부	195
3.	국민가정보호와 그 밖의 가정복지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202
제 5 부	아동 및 청소년 복지문제	207
제 18 장	아동 및 청소년보호의 중요성	209

제 19 장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책중 시급한 것	214
제 20 장 요망되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225
제 21 장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립책임	235
제 22 장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237
제 23 장 결식아동과 학교 급식제도	243
1. 결식아의 수	243
2. 결식아의 가정배경	244
3. 학교급식 혜택 정도	250
4. 학교급식제도의 평가	253
5. 급식제도불실에 대한 이유	256
제 24 장 교아양육에 대한 태도	267
1. 교아의 현황	267
2. 교아양육에 대한 태도	272
제 25 장 심신장애아동의 보호실태	281
1. 심신장애자수	281
2. 보호의 형태	284
제 26 장 문제점과 건의	287
1. 문제점	287
2. 건의	293
제 6 부 노인복지문제	297
제 27 장 서 언	299
1. 노인복지조사의 목적	299
2. 조사의 구조	299
3. 조사의 특성	300

4.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상황	303
가. 노인인구의 압력	303
나. 경로봉조의 추이	306
다.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문제 상황	306
제 28 장 노령자분포, 동거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노인복지 에 대한 관심도와 시책의 우선순위	307
1. 노령자의 분포	307
2. 동거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	308
3.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309
4. 노인복지시책의 우선순위	314
제 29 장 노인여가선용 및 여가활동	317
1. 노후의 희망활동	317
2. 노후의 여가이용	319
3. 노인여가 소비실태	322
4. 노후소일에 대한 종합평가	325
5. 응답자의 희망퇴직 연령	327
6. 응답자의 노후생계 해결책	328
7. 응답자의 노후동거 희망	329
8. 응답자의 양로원에 대한 태도	330
제 30 장 응답자의 노령부모 생존, 동거 및 건강상태	332
1. 노령부모 생존여부	332
2. 직계존속의 동거자	334
3. 직계존속의 건강상태	336
제 31 장 노령직계존속의 취업실태	340
1. 노령직계존속의 취업실태	340

2. 남자직계존속의 취업시 직업	342
3. 노령직계존속의 취업사유	343
제 32 장 노령직계존속의 미취업실태	345
1. 미취업 노령직계존속의 퇴직연령	345
2. 미취업 노령직계존속의 퇴직전 직업	346
3. 미취업 노령직계존속의 퇴직사유	347
제 33 장 노령자 동거에 대한 가정적 문제상황	349
1. 노령직계존속의 동거로 인한 가정적 문제	349
2. 동거노령직계존속의 불만	353
제 34 장 총괄과 결론	355
제 7 부 기혼직업여성 복지문제	361
제 35 장 직업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363
제 36 장 취업동기 및 만족여부	377
제 37 장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387
제 38 장 취업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396
제 39 장 취미생활	403
제 40 장 출퇴근시간 및 가사협조자	406
제 41 장 직업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413
제 42 장 기혼취업자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제시	423
제 8 부 심신장애자 복지문제	429
제 43 장 장애복지의 범위와 대상자 및 장애평가	431
1. 장애의 정의와 평가의 곤란성	431
2. 신체장애자	434

3. 정신장애자	485
4. 결어	496
제 44 장 사회복지기초자료 조사	498
제 45 장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장애자	513
제 46 장 생활보호대상자조사에서 본 장애자	529
제 47 장 1961 년의 장애아동조사	531
1. 조사방법	531
2. 조사결과개요	532
가. 장애아동수	532
나. 장애아동의 중장애 상황	532
다. 아동장애종별	533
라. 아동장애 성별분포	537
마. 아동장애 지역별 분포	537
바. 지역별 아동지체장애율	537
사. 지역별 아동시각장애율	537
아. 지역별 아동청각 언어기능장애율	541
자. 지역별 아동정신장애율	542
차. 지역별 아동기형장애율	542
카. 지역별 아동혼혈아 및 기형장애율	543
타. 연령별 아동장애율	543
파. 연령별 아동지체장애율	544
하. 연령별 아동시각장애율	544
거. 연령별 아동청각, 언어기능장애율	544
너. 연령별 아동정신장애율	544
더. 연령별 아동기형과 혼혈아율	557

러. 아동장애 발생 원인	557
머. 장애아동의 생계정도 교육정도 보호자의 요망 사항	557
제 48 장 1966 년의 장애인 조사	563
1. 장애인 실인원	563
2. 장애자의 중장애상황	567
3. 장애종별과 구성비 및 지역별분포	567
4. 장애인 연령별 장애율	583
5. 장애발생원인과 시기	5
6. 장애치료와 치료기관	5
7. 보장구	5
8. 장애인 교육정도 가동상황 생계정도	5
제 49 장 외국의 장애인 실태	606
1. 일본의 1960 년의 장애인 조사	606
2. 일본의 1965 년의 장애인 조사	6
3. 일본의 1966 년의 정신박약자 조사	6
제 50 장 장애인 제 조사의 비교	622
1. 장애율 및 도시간 분포와 장애자의 수	621
2. 연령별 장애인 수와 성별분포	624
3. 장애자의 지역별분포	627
4. 장애동향	627
제 51 장 총괄과 전의	629
<부 록>	
1.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 통계표	633
2.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표	821

서론

개발도상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이 당면하고있는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루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더러 그 대부분이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더구나 복지국가형성을 위한 국가발전문제들은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결은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발전의 문제를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문제로 볼때 이 두가지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립과 국민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이 급선무라는 것은 두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때문에 국가정책이 오직 경제개발에만 치중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사회개발은 경제개발의 기초가 될뿐만 아니라 국민성원의 복지나 사회적안정이 없이는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개발과 복지정책은 여간 긴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점에서 격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진다. 경제적 빈부의 차, 도시로의 과잉인구집중과 그 수용능력의 부족에서 비롯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격차와 같은 문제들이 공업화가 촉진되어 감에 따라서 더 현저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소리가 식자로 부

터 고조되고 있다. 이제 70 년대로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가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 때만큼 사회개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던것 같이 느껴진다.

이 조사연구는 사회개발의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사회복지 영역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주요한 조사목적은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으로 도외시 되어왔던 일반 가정의 생활상태와 사회복지 현황을 조사하여 그의 문제점과 요구량을 파악하고 사회복지부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아래 이루어진 이 조사연구의 모든 절차와 연구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로 신빙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로 여러 지역 사회에서의 문제를 비점점토 하고 종래의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온 요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전성원의 복지문제에 관련된 광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노력한 보람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 조사연구는 사회복지부문의 기초자료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보다 더 세분된 영역별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설제로부터 원고를 끝내 주실 때까지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사회복지분과의 강만춘교수, 이효재교수, 이현모교수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의 신남균선생, 안창수선생, 그리고 조사착수의 시초부터 끝까지 자료수집과 정리에 힘써준 석현호군과 공정자양, 그밖의 여

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여기에 각각의 전담분야를 밝히고자 한다.

강만춘, 제 1 부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제 5 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문제

이효재, 제 3 부 가구구성 및 거주생활

제 7 부 기혼직업여성 복지문제

이현모, 제 6 부 노인복지문제

신남균, (제 8 부) 심신장애자 복지문제

이만갑, 제 2 부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제 3 부 가정생활의 사회경제적 특성

끝으로 이 조사연구에 행정적인 뒷받침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김수명국장님과 최천송연구실장님에게 특별히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70. 6.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이 만 갑

제 1 부

한 국 에 있 어 서 의 사 회 복 지

제 1 장 사회복지사업의 일반적 이해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 (Social Welfare) 가 무엇이나 하는데 대하여 캐리포르니아대학의 Walter A. Friedland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봉사 (Social Services) 와 사회시설 (Social Institutions) 의 조직화된 체제이다. 이와 같은 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인 관계에 목표를 두며 그러한 관계는 개인들을 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능력을 개발케 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된 상태에서 그들의 행복 (Well-Being) 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 1)

일본국후생성 (日本國厚生省)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내린 사회복지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국가부조 (國家扶助)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체장애자, 아동, 기타원호육성을 필요로 하는자가 자립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경제보호, 기타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하였다. (주 2)

영국사회사업가연맹 (The British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과 영국 전국사회사업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가 공동대표자회의를 1947년 9월에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렸다. 즉 『사회복지

(주 1)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by W. A. Friedlander,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P.4

(주 2)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사무국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 1950. P.31

고 하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용된다. 어떠한 때는 협의로 어떠한 때는 광의로 사용된다.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견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즉 사회복지라는 것은 본래 노인, 신체장애자, 범죄자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복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UN의 임시사회위원회(Temporary Social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에서 결론을 본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복지가 목표로 하는 표준은 사회전성원(社會全成員)의 복지로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퍼스내리티」(Personality)를 발전시킬수시키는 동시에 아동으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가능한대로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활의 기본적필수물자(基本的必需物資)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인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과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사이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를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주3)

이상 소개한 세가지 정의를 놓고 검토해 보면, 두가지 상의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협의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광의로 규정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사회복지사업을 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일례로서

(주3) BFSW and NOSS, Report on Salaries and Condition of Work of Social Workers in Training for Social Work, An International Survey by UN, 1950. P.115

1970.1.1에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업대상을 요보호대상자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실정에 따라 다소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선진국과 같이 경제적인 실력이 있는 나라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확대해석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민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국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의 제한이 있어서 그 대상을 협의로 국한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본다.

2. 사회복지의 분야

1950년 UN의 사회국(Dept.of Social Affairs)에서는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분야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주 4)

가. 보건에 관련된 사회복지 (Health-Connected Social Welfare Activities)

- (1) 모자상담
- (2) 의료사회사업
- (3) 정신치료사회사업
- (4) 작업료법
- (5) 방문보건사업
- (6) 보육소
- (7) 재활훈련

(주 4) UN, Method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950.P.282

나. 교육에 관련된 사회복지

- (1) 학교출석장려 제도 (Promotion of School Attendance)
- (2) 청소년에 대한 여가집단활동
- (3) 성인교육
- (4) 휴가촌 (Vacation Colony)
- (5) 유치원
- (6)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시설 (Special Provision for Handicapped Children)

다. 영양에 관련된 사회복지

- (1) 모자영양상담 및 유아 영양식배급
- (2) 학교급식
- (3) 영양교육
- (4) 대중식당
- (5) 공장급식
- (6) 밀크급식
- (7) 빈곤자에 대한 식품배급

라. 고용에 관련된 사회복지

- (1) 직업지도 (Vocational Guidance)
- (2) 노동이민
- (3) 인사관리
- (4) 노동자조직사업의 일부로서의 사회복지활동

마.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사회복지

- (1) 자활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적생활요구에 대한 결정을 행한다. (Determination of Individual Needs)
- (2) 금전급부 이외의 서비스 (Non-Cash Services), 가족생활의

유지 및 대리가정 (代理家庭)의 알선을 위해서 행하는 가정방문, 상담 (Counselling) 및 의뢰서 - 비스 (Referral Service), 아동, 노인 및 기타 양가 (Foster Family)와 보호시설의 알선 및 입소 (Placement)와 수용보호

바. 주택건설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회복지

- (1) 입주자를 새로운 주택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써 - 비스, 예를 들면 사회관의 운영

사. 사법제도에 관련된 사회복지 (Adjudication-Connected social Welfare Activities)

- (1) 재판소사회사업 (Court Social Work)- 사회적으로 유용 (有用)한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재판관에게 제공한다.
- (2) 사회적으로 결함을 가진 아동에 대한 후견서 - 비스
- (3) 친족에 의한 부양의무 여행의 원조
- (4)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변호제도 (Legal Aid)
- (5) 경찰의 방법교육 및 방법레크리에이션
- (6) 보호관찰 (Profation)
- (7) 가석방제도 (Parole)

UN에서 발행한 국가사회봉사제도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ocial Service Program)이란 책자를 보면 앞에서 분류한 사회복지분야와 비슷한 것을 역시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 5)

(가) 가족과 아동을 위한 써 - 비스

(주 5)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ocial Service Programes, UN Sales No. 68 N.1.

- (나) 경제적 빈곤자를 위한 씨-비스
- (다)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장애자를 위한 씨-비스
- (라) 지역사회를 위한 씨-비스 (Community Service)
- (마) 집단을 위한 씨-비스
- (바) 사회사업과 관련된 각종 씨-비스
 - 1) 의료사회사업
 -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치료사회사업
 - 3) 가족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 4) 신체장애자의 재활
 - 5) 학교사회사업 (School Social Work)
 - 6) 군대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Social Work in the Armed Forces)
 - 7) 산업사회사업 (Industrial Social Work)
 - 8) 재판소 사회사업
 - 9) 범법자에 대한 치료
 - 10) 주택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 11)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 12) 직업지도 및 직업알선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 13)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사업

이상과 같이 UN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봉사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런고로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 2 장 한국사회복지사업의 개황

UN의 분류를 따르다면 사회복지사업이 다방면으로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직도 협의의 사회복지사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인 면보다도 비교적 치료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상당히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것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아동복지사업 (18 세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962.12.30에 공포된 아동복지법의 뒷받침을 얻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만도 14개 종목에 달한다. 즉,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 직업보도시설, 기타아동복지를 위한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이 필요에 따라 골고루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주로 육아 시설(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이라는 책자를 보면 다음표와 같이 아동복지시설과 수용아동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면 79%의 시설이 육아 시설로 되어 있고 이 표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탁아소와 아동상담소가 또한 다음표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 표 1 > 아동복지시설과 수용아동추세

시설종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9월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영아시설	77	10,602	80	10,847	77	9,678	74	8,935
육아시설	465	52,523	461	52,031	448	48,810	438	45,991
부랑아시설	10	4,484	11	4,253	10	4,218	10	4,035
직업보도	14	1,213	16	1,625	16	1,528	18	1,356
불구아동	20	2,037	21	2,180	22	2,285	25	2,442
합 계	586	70,859	589	70,944	573	66,424	565	62,759

자료: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 보사부, 1969.P.1

< 표 2 > 연도별탁아시설설치상황

연 도 별	시 설 수	아 동 수
1960	24 개소	1,130 명
1966	116 ♢	10,110 ♢
1967	182 ♢	14,623 ♢
1968	296 ♢	25,443 ♢
1969.9월	385 ♢	33,484 ♢

자료: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 보사부,
1969. P.14

<표 3>

아동상담기관 및 요원현황

상담소 시도별	아 동 상 담 소			아 동 사 업 요 원			
	국·공립	사 립	계	아동복지 지도원	아동상담소 원	부랑아 전문직원	계
서울	3	2	5	19	1	1	21
부산	1	1	2	17	1	1	19
경기	1	-	1	24	1	1	26
강원	1	-	1	25	1	1	27
충북	1	-	1	14	-	1	15
충남	1	1	2	18	1	1	20
전북	1	-	1	23	1	1	25
전남	1	-	1	25	-	-	25
경북	1	-	1	44	1	1	46
경남	1	-	1	36	1	1	38
제주	1	-	1	4	1	1	6
합 계	13	4	17	249	9	10	268

자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 보사부, 1969. P.16

앞의 몇개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육아시설이나 영아시설같은 것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표를 통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심신장애아동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 아동상담소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교호시설, 휴양시설, 조산시설같은 것이 앞으로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정부나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대부분의 아동복지 시설이 예방보다 치료적인 성격을 띤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1969년 9월 말 현재 465개 시설(약 80%)이 외국원조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도움을 직접받고 있는 인원수만도 59,631명에 달한다. (주 6) 그리고 이러한 아동복지시설들의 운영재원을 보면 1968년 현재 그 52.5%를 회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는 불과 22.2%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체부담은 16.8%에 지나지 않는다. (주 7) 이와 같은 실정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증명한다.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별분포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영아와 육아시설을 1969년 현재 508개소 있던것을 1976년까지 377개소로 줄이고 교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기아일시보호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직업보도시설등이 1969년 현재 25개소 있던 것을 1976년까지 76개소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체부자유아 시설, 맹아시설, 농아시설, 정신박약아시설등이 1969년 현재 25개소 있는데 1976년까지 68개소로 증가시킬 예정으로 있다. (주 8)

이상 고찰한 주로 요보호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이외에 건전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체육장, 아동관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YMCA, YWCA, 소년, 소녀단, 사회관, 아동관등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제한이 많고 가능하면 지역사회단위로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활동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 특

(주 6) 우리나라아동복지사업, 보사부, 1969, P.5

(주 7) Ibid, P.2

(주 8) Ibid, PP.24-25

히 어린이 Club 활동같은 것은 지역사회단위로 크게 권장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 노인복지사업

국민의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자연증가현상과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노인가구의 증가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주로 가정을 단위로 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도 점차 외부의 지원과 서비스가 없이는 문제처리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6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60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60만명이었는데 1976년에 가서는 224만명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다. 그런고로 노인복지의 대상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주 9)

1969년말 현재 전국에 양로시설이 44개소 있고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가 공립시설에 292명, 사립시설에 2,123명이 된다. (주 10)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극빈노인가구에 대하여 거택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수가 1969년말 현재 200,988명이 된다. (주 11) 그리고 양로원에 수용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수준은 1일 1인에 대하여 양곡 3홉, 생계비 10원정도에 불과하다. 그런고로 양로원생활의 저수준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아동복지시설은 외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양로원의 경우는 거의 외원의 혜택을 얻고 있지 못하므로 그 경영난이 극심한 실정이다. 그리고 거택

(주 9) 사회복지장기계획시안, 보사부, 1969.PP. 84-85

(주 10) Ibid, P.85

(주 11) Ibid, PP.85-86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도 1일 1인에 대하여 양곡 250g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보호의 수준은 식생활도 영위하기에 훨씬 미달하는 상태에 있다.

이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보잘것이 없고 각처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같은 것이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선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영세노인가구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양로보험 실시, 노인건강진단 제도 실시, 노인가정 봉사사업, 노인구락부, 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노인주택, 노인휴양시설, 노인직업알선 등 여러가지 필요한 활동들이 점차로 확대되어, 사회변동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면에서의 노인생활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노인복지시책이 크게 요망된다.

3. 부녀복지사업

우리나라에서 부녀복지의 주된대상은 윤락여성과 미망인들이라고 본다. 윤락여성에 있어서는 1969년 현재 전국적으로 20,029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다.(주 12) 물론 이 숫자는 소위 특정지역에 있는 윤락여성에 한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표면에 노출된 특정지역의 윤락여성수에 약 10배에 달하는 윤락여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걸(Call Girl)의 형식으로 윤락행위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카바레, 빠, 요정에 종사하는 씨-비스걸들도 이면에서는 윤락행위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이들까지 합한다면 윤락여성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이 간다.

(주 12) Ibid, P.116

윤락여성보호를 위하여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1967년 말 현재 전국에 31개소의 직업보도시설을 두고 윤락여성에게 직업을 가르키며 동시에 그들의 생활전환을 지도하고 있다. (주 13) 그리고 각 시, 군에 200명의 부녀상담원을 배치하고 윤락여성에게 방과 선도에 종사하고 있다. (주 14)

윤락여성보호에 있어서는 윤락행위방지법의 시행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예방조치로서 가출여성의 방지와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보도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동시에 선도에 있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적성, 소질, 희망, 교육배경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효율적이고 재활을 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윤락행위는 상대적인 행위인고로 국민계몽을 널리해서 사회적인 풍조의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고로 단속, 예방, 치료의 균형된 대책이 크게 요망된다.

미망인보호에 있어서는 1967년말현재 전국적으로 미망인 인구가 600,707명에 달한다. (주 15) 이 중에서 보사부 부녀과의 증언을 들어보면 약 10만명의 미망인이 외부의 원조없이는 생활을 해 나가기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자가구를 위해서 1967년말현재 전국에 33개소의 모자원이 있고 여기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이 3,269명에 달하고 있다. (주 16) 이와 같이 모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미망인들은 직업보도를 받고 있으며 또한 취업에 대한 도움도 받고 있으나 여

(주 13) 보호여성선도에 관한자료, 보사부, 1968, P.28

(주 14) Ibid, P.32

(주 15) 보건사회통계년보, 보사부, 1967, PP.418-419

(주 16) Ibid, PP.410-411

러 가지 생활형편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모자복지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해서 생활보호, 직업보호, 취업등 제반분야에 있어서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고 본다.

4. 심신장애자복지

심신장애자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신체장애자,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본다. 보사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966.5.1 현재 심신장애자 총수가 111,705명으로 나와 있다. 이 중에는 797명의 사회장애자(혼혈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주 17) 앞으로 심신장애자수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생활의 복잡등 여러 가지 요인의 증가로 인해서 그 수효가 더욱 증감되어 갈 것이 예측된다. 심신장애자 복지를 위한 특별법이 새로히 제정되어 상담, 의료써-비스, 보장구 지급, 가정봉사원써-비스, 재활시설의 수용보호, 거택지도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써-비스가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현대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써-비스가 널리 베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심신장애자중 전혀 치료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25.3%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보장구의 착용사항을 보면 신체장애자 총수의 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보호사항에 있어서는 직업보호를 받고 싶으면서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20,081명에 달한다. 그리고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자는 전체의 5.8%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 17) loc.Cit, 사회복지장기계획시안 PP.127-128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심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의 내용과 그 규모가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주 18)

이와 같이 심신이 정상상태에 있지 못한 국민일지라도 이들을 위한 써-비스가 소비적이라는 관념을 불식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는 그 보호의 의무가 있다는 복지국가 이념의 철저한 인식과 동시에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요망된다고 본다.

5.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소위 말하는 빈곤선의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의식주 생활자체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일단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하여는 흔히 저리자활자금대부(低利自活資金貸付), 생활상담, 공익전당포, 소비조합, 수산사업(授産事業), 직업알선 등 써-비스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말 보사부통계를 보면 생활상담소가 서울특별시에 1개소, 공익전당포가 전국에 9개소 있을 뿐, 저리융자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주 19) 그러나 공익통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캐나다유니타리안봉사회가 경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4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목적써-비스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생활소비조합도 대한 어머니회라든지 양지회가 중심이 되어 몇군데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산장의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경영하고 있는 곳이 여

(주 18) Ibid PP. 129 - 130

(주 19) 보사통계연보, 1967. P 315

기저기 있는 것으로 아나 아직 공식통계에서는 취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필요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상대의 자조근로사업은 1964년부터 시작한 이래 1968년에 이르기까지 연 245,600 가구에 대하여 일면구호를 했고 다른면에서는 건설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주 20) 앞으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법제화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다.

6. 생활보호

생활보호는 1961.12.30에 공포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질병, 노령등 이유로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공적부조(公的扶助)가 곧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기에 말하는 생활보호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로 나누어 지고 있다. (주 21)

이와 같은 생활보호의 대상자수는 1968년말 현재 463,339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283,000명 밖에 보호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주 22) 그리고 보호의 수준에 있어서도 하루에 소맥분 250g(2.5홉)을 지급하는 정도의 대단히 저수준의 보호에 그치고 있다.

보호의 종류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주택보호, 교육보호

(주 20) 사회복지장기계획서안, PP.53-54

(주 21) 사회복지실무필류, 제 2편 P.2

(주 22) Ibid, 사회복지장기계획 P.41 & P.22

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야 할 줄 안다. 이미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서민주택을 통해서 주택보호의 일면을 실현하고 있는 고로 앞으로 생활보호법의 범주에서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헌법에도 『모든 국은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고로 하루속히 빈곤선을 책정해서 적어도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생활보호활동이 이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7. 사회복지행정기구 및 사회복지전문 인력

우리나라의 현행사회복지행정조직은 중앙행정부서로서는 보사부(노동청포함), 원호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도에 내려가서는 보사국산하에 사회과와 부녀과를 두고 있고 시, 군에 내려가서는 시의 경우는 사회과, 군의 경우는 내무과에 사회계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읍, 면, 동 단위에 가서는 읍에 사회계를 두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고 동이나 면에 가서는 사회담당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사무집행체제로서는 그런대로 무난하다고 하겠으나 사회복지활동은 반드시 써-비스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사무적인 활동만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고로 사무집행과 병행해서 기술적인 써-비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선에 있어서 요보호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읍, 면, 동 그리고 시, 군 단위에 있어서는 소위 Extension Service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미 농촌지도소, 보건소 같은 것이 있듯이 사회복지지도소(가칭)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도내지는 보호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고로 행정기능과 기술써-비스(Technical Service)가 병행

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요망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회복지전문직 제도가 채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배경이 없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태반이다. 현대사회복지가 전문직화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전문화하도록 되어야 할 줄 안다.

제 3 장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의 성격

앞에서 고찰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하여 그 성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이 치료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미 앞에서 관찰하였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거의 80%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시설이고 예방시설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주체가 거의 90%이상 민간주체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립시설이 압도적이며 국공립시설은 전체의 10%에도 미달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역사적으로 되지 못할 사정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설립에 있어서 국가의 「이니시아티브」가 크게 요망된다.

셋째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이 아직도 시설을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경향이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씨-비스가 집중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가정복지사업 같은 것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보강하고 향상시킬 때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그런고로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업은 가정을 중심으로 각종 씨-비스를 주도록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넷째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자원의 거의 50%가 외원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하루속히 국내자원으로서 사회복지소요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는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너무 낮다. 경제

개발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그 성장율에 비교할 만큼 생활보호의 수준도 향상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현행 생활보호의 수준은 제일차빈곤선을 해결하기에도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관청의 임용제도에 있어서 보더라도 아직 사회복지행정공무원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조속히 그러한 제도의 채택이 요망된다. 아동복지지도원의 경우는 전문화가 형식적으로 채택은 되어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법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아직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행정조직면에 있어서도 사무집행부문과 기술지도부문의 양립이 요망된다. 현재는 주로 사무집행을 통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처리되는 실정에 있다.

일곱째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사회협의회(Community Welfare Council) 같은 것이라든지 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 같은 것은 국민의 참여와 또한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고로 앞으로 국민각층에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Will)를 크게 가지고 있는것 같지 않다. 헌법 제 30 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형식적인 의지의 표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과정에서 거의 도외시 되고 있는 감이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배

정에 있어서 연년히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정 없이는 경제개발자체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를 재원배정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발휘해야 될 줄 안다. 사회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기구의 세신도 인력의 배치도 자금의 할당도 기타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집행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제 2 부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제 4 장 조사방법

1. 조사목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은 특별한 보호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의 국민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서부터 국가가 국민전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보다 확대된 복지 서비스에도 지향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수준은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실정에 따라 다소의 차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자의 단계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는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후자의 단계 즉 국가가 국민전체 성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것인가 하는 점을 고찰하는 문제는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개관하여 보건데,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사회경제적 취약자나 무엇인가 결손된 국민성원층에 대한 소극적인 사후조치의 수준에 머물러있는것 같다. 다시 말해서 예방적인 서비스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거의 치료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중요한 서비스 내용은 이재민, 극빈자 및 요구호대상자 등에 대한 구호사업과 극히 제한된 범위의 고아원, 모자원, 영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의 특수시설에 대한 운영비보조, 양곡지급 및 지도와 감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이며 그 재정적인 부담은 거의 외원기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뒷받침도 아직 빈약한 상태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양

상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저소득가구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밖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형성이란 단순한 경제제1주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개발도 사회개발과의 관련하에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검토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요청은 점차적으로 달성되어가는 경제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소극적인 치료적 단계에서 예방적 단계로 진전하는데 대비하려는 것이고, 제한된 범위의 대상에서 전체국민에게 균형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의 시녀와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건전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는 오랫동안 도외시되어 오다가 이제 그러한 연구의 한 가닥으로서 처음으로 경험적 방법에 의한 조사가 시행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으로 경제개발에 치중하여 도외시되었던 일반가정의 생활상태와 사회복지현황을 조사하여 그의 문제점과 요구량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부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자면, 첫째 가

구를 단위로한 복지혜택의 결핍을 찾아내어 가정복지향상의 지표를 탐색하며, 둘째 사회복지문제를 지역사회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등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하므로써 각 지역사회에 알맞는 시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삼으며, 셋째 전체국민을 사회복지 면에서 문제시되는 인구층으로 나누어 아동 및 청소년소녀, 부녀자, 노령자, 심신장애자 그리고 모자가정과 노인가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성성원별로 분석하므로써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요구량을 파악하여 특수시설과 제도화의 기초자료를 삼고자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취하여진 조사방법과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조사대상지역선정과 표본 추출방법

본 조사는 한국 전체가구를 모집단으로한 1750가구를 표본의 크기로 정하였다. 이렇게 정한 표본추출의 첫 단계는 한국 전체가구를 통계적인 절차에 따라 정한것이 아니라 전술한 조사목적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구분을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농촌, 읍의 다섯개 지역으로 구분짓고 그 지역적인 특수성을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표본의 비중을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질적 인구층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에 보다 큰 비중을 주었으며 동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보다 적은 비중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선정된 조사대상지역은 조사목적과 경비, 시간, 노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하였지만 각 지역구분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택하였다. 표본추출의 첫 단계로서 지역구분을 결정한 이유는 본 조사에서 보고자 하는 세가지 측면 즉 문제시 되는 가구원, 가구전체 및 지역사회의

측면들 중에서 처음 두가지는 조사내용으로 잘 밝혀질 수 있으나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관련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였다. 다시 말해서 문제시 되는 가구원과 가구전체의 측면은 조사표 내용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자세히 밝혀질 것이나, 지역간의 비교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한 조사상의 중점을 두지않고서는 결과분석에 어떤 약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다. 그리고 실제로 선정된 지역들은 전국을 공간적인면에서 포괄하면서 각 지역구분을 대표할 만한 다양성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전제하에 선택된 곳이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지역은 대도시로는 서울이, 중소도시로는 대전, 전주, 안동의 3개 지역이 읍으로는 남원읍, 밀양읍, 평택읍의 3개지역에, 농촌으로는 청원군, 의성군, 담양군의 3개 지역에 그리고 어촌으로는 명주군 한개지역만이였다. 이러한 도시, 읍, 촌락이 택하여지는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의 안배와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졌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전체지역을 대표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절차에 따라 선택된 지역구분과 조사대상지역별 표본의 크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분된 지역내에서는 총가구수에 대한 표본수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잡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중소도시지역으로 선택된 대전시, 전주시, 안동시에 있어서 각기 총가구수에 대한 표본가구수의 비율은 0.4%의 크기로 한것이다. 다만 농촌에서는 어느 지방의 농촌에서나 다분히 동질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엄격히 같은 비율대로 표본가구수를 할당하지 않고 3개지역의 농촌에서 똑같은 100가구를 뽑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지역사이 예컨대 서울

과 중소도시간에서는 총가구수에 대한 표본가구의 비율이 다르다. 이러한 각 지역간의 표본비율의 크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또한 이 조사에서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사용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두가지 점에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초에 정하였던 총표본수인 1,750 가구 가운데서 17 가구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실제로 1,733 가구에 대해서만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면접불능가구들의 지역별 수는 서울이 14 가구, 평택이 3 가구였다. 그리고 선정된 각 조사대상 지역별 표본추출은 그들 지역의 지역구분별로 부터 최하 행정부서인 동에 이르기까지 비율적으로 총화하였고 이것도 무작위 추출방법의 원칙에 따라 추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역별 표집방법은 그 행정지역 분류에 따라 제도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다소의 다른 점이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지역별 표본의 크기

지역구분	조사대상 지역	총가구수	최소표본수	표본수 총가구수	실제조사 가 구 수	지역구분 별 계
대 도시	서울특별시	724,043	600	0.83 %	586	586
중소도시	대전시	54,803	240	0.44 %	240	
	전주시	37,559	160	0.43 %	160	
	안동시	11,866	50	0.42 %	50	450
읍	남원읍	7,792	110	1.4 %	110	
	밀양읍	7,101	110	1.55 %	110	
	평택읍	5,406	80	1.48 %	77	297
농 촌	청원군	35,562	100	0.28 %	100	
	의성군	29,717	100	0.34 %	100	
	담양군	18,476	100	0.54 %	100	300
어 촌	명주군	12,446	100	0.80 %	100	100

※ 총가구수는 1966년 “인구 센서스속보”에 의거한 자료임.

다음에서는 표본추출 절차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각 지역별 표본추출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다.

<서울 특별시>

인구 80만명 이상의 한국 4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시, 인천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서 행하여진 표집 방법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의 전 행정동 302개 중에서 50개 동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하였다.

나. 추출된 50개동에서 각 동의 가구총수의 비율로 600가구를
배정하였다.

다. 다시 1개동에 1개통을 그리고 추출된 통에서 표본의 수
만큼의 반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라. 추출된 반들에서 피조사가구를 역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중소도시>

인구 80만 이하의 28개 도시중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대전시, 전주시, 안동시를 각각 중의상, 중의중, 중의하의 규모로 보
고 선정하였으며, 이 3개 도시의 총가구수에 따른 비율로 각각의
도시의 표본의 크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각 도시
의 총 동수의 3분의 1의 숫자를 표본동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
며 그 이하의 표집절차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같이해서 이루어졌
다.

<읍>

전국의 91개 읍중에서 역시 지역적인 안배, 인구수 및 도시화
의 정도를 검토한 끝에 남원읍, 밀양읍, 평택읍을 조사대상지역으
로 뽑았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표본추출절차는 중소도시에서와 같
은 요령으로 하였다.

<농 촌>

농촌지역의 조사대상지역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양군,
의성군, 청원군을 뽑았다. 그러나 표본추출절차에 있어서는 도시와
읍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요령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지역에
서 1개 면을 표본지역으로 다시 선정하고 선정된 면 중에서도
2~3개리 만을 실제 조사대상지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대상지로 택하여진 2~3개리의 총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가구 등간격으로 표본추출을 하였다. 이렇게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 한 이유는 실제 조사대상지를 군이나 면으로 한다면 표본이 너무 광범한 지역에 분산되므로 조사상에 많은 곤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였다. 즉 조사의 조건이 되는 경비, 시간, 노력 등의 제한을 받아 광범한 지역을 조사대상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정의 농촌지역은 사회경제적 성격에 있어서나 개인의 태도 및 가치관에 있어서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 촌>

어촌지역으로서 강원도 명주군을 택한 이유는 읍이나 도시와는 떨어져있어도 시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역으로 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였으며, 또한 다른 지역보다 명주군의 어촌은 비교적 어업종사자들이 많고 집락을 이루고 있어 조사상에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편의상 애초에 어촌은 이조사에서 제외해버리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촌에 사는 가구도 적지 않으며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어촌은 펍 교통이 불편한곳에 있어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끌고루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동해안의 어촌만 보기로 한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물론 만족할 수 없지만 어촌가구의 복지문제를 전혀 다루지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한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농촌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어촌의 구체적인 표본추출절차는 농촌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이루어졌다.

3. 조사표의 구성내용

이 조사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가구전체상황과 문제시되는 가

구성원들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전체 상황에서는 가구원들의 속성과 주거 및 경제생활문제가 다루어졌고 문제시 되는 가구원들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소녀 문제, 부녀자 문제, 노령자 문제 및 심신장애자문제를 모두 취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하여야 될것은 이러한 조사내용들 중에서 부녀자 문제에 속하면서 특히 중요한 기혼직업여성 문제는 직접 면접하지 않고서는 자세히 밝혀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사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가구주를 응답자로 하는 것과 조사대상가구중에 기혼직업여성이 있을 경우 그들을 직접 면접조사하기 위한 것의 두가지 조사표로 분리되어 시행되었다. 먼저 가구주를 응답자로한 주 조사표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반적인 가구상황에 관한 항목 ; 가구의 구성, 동거여부, 성별, 연령, 종교, 결혼관계, 교육정도, 건강상태, 취업상황, 피고용인 관계 등 가구원 각각의 기본적 속성에 관한 내용

나. 주거생활에 관한 항목 ; 주택소유형태, 사용 방수, 주택의 안전도 및 편리도, 주위환경에 대한 내용

다.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태도

라. 아동 및 청소년소녀 복지에 관한 항목 ; 복지시책, 복지시설, 교육문제, 결식아문제, 요보호아동문제, 고아문제 등

마. 부녀자 복지에 관한 항목 ; 복지시책, 직업여성에 대한 태도, 윤락여성문제, 부부관계 등

바. 노인복지에 관한 항목 ; 복지시책, 퇴직희망연령, 노인여가이용에 대한 문제, 자녀와의 동거문제, 노인직업문제, 양로원, 노인오락, 노인동거시 가정내 문제 등

사. 심신장애자복지에 관한 항목 ; 복지시책, 장애의 종류, 원인 및

치료문제, 교육문제, 취업상태, 가정내 문제 등

아. 경제생활에 관한 항목; 수입원, 수입액, 생활비 지출세목, 저축, 빚,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법, 생활형편, 재해 또는 대사의 경제적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생활수준 등

자. 기타, 문화적 생활수준, 오락 등 계속하여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부 조사표의 구성내용을 보면,

카. 취업에 관한 항목; 취업동기, 직업,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출퇴근시간, 수입과 가계, 취업에 만족도 등

타. 가사의 보육에 관한 항목; 출근후의 가사보육문제, 이에 따른 만족과 불만족 정도 및 만족과 불만족의 사유

파.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와 취업의 이점 및 불리점

하. 직장내에서의 문제; 편의제공여부, 위생, 오락, 대우등

거.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국가시책

너. 기타문제

이상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두 조사의 실질적인 항목수는 무려 200여개를 넘고 있다. 그리고 각 조사표의 질문방법은 거의가 구조화된 것이며, 극히 일부만이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제 5 장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이 조사에서 실제로 면접된 응답자의 기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응답자의 기본적 속성으로 다루어진 것들은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종교, 직업, 교육 등이다.

1.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응답자는 가구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가구주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부인으로 대신 응답하게 했으며 이것도 불가능하면 그 이외의 가구를 대표할 만한 가구원으로 응답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타난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는 처음에 예상하였던 그대로 다른 어떤조사에서나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가구주의 대부분은 남자이며 여자일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어떠한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를 포함해서 지역별로 나타난 가구주의 응답율은 서울 49.1%, 중소도시 76.9%, 읍 84.2%, 농촌 93.0% 그리고 어촌 95.0%로 기록되었다. 가구주 이외의 응답자는 대부분이 가구주의 부인이며, 이들의 응답율은 대도시인 서울에서 가장 높은 37.9%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중소도시로서 17.3%이며 읍이 18.3%, 어촌 5.0%, 농촌 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렇듯 도시지역 특히 서울에서 가구주의 부인이 대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의 직업적 성격에서라고 판단된다. 즉 대부분의 가구주의 직업은 직장이 가정과 분리되어 있는 전문적, 기술적, 관리적 직업이거나 판매 또는 사무종사자이거나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차적인 이유로서 도시인의 생활방식을 들수도 있겠다. 즉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그들의 여가를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도 당연히 피조사자와 직접 면접할 기회를 갖는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같은 도시지역이면서도 중소도시에서는 서울에서 처럼 가구주 대신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로서 대도시인 서울과 중소도시 사이에는 직업구조상의 차이, 직업적 성격상의 차이 및 직업인들의 생활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즉 중소도시에서는 서울에서 보다 자기집 또는 자기집 근처에서 자영업의 형태를 취한 소규모 제조업이나, 판매업 등의 서비스직업 종사자가 더 많다는 점, 특히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도시외곽지대에는 많은 자영농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소도시는 지역적 범위가 대도시 보다 좁기 때문에 생활권역도 좁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소도시에서의 가구주의 직장은 서울에서 처럼 가정과 심하게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가구주를 직접 면접할 기회가 서울에서 보다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주의 직업이 기능공, 단순노동자 또는 생산공정종사자인 경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가구주들의 전체의 42.2%가 부인이 대신한 응답율로 나타났는데 비해서 중소도시를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불과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응답율이 중소도시 보다 높고 농촌 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음이란 도시와 농촌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중간 지역이므로 이 두 지역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2> 참조)

<표 2>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

지역별 가구주와의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가구주 - 남자	268 (45.7%)	327 (72.7%)	248 (83.5%)	265 (88.3%)	89 (89.0%)
" - 여자	20 (3.4)	19 (4.2)	2 (0.7)	14 (4.7)	6 (6.0)
가구주의부인	222 (37.9)	78 (17.3)	35 (11.8)	13 (4.3)	5 (5.0)
" 부	3 (0.5)	4 (0.9)			
" 모	7 (1.2)	3 (0.7)			
" 아들	28 (4.8)	11 (2.4)	10 (3.4)	4 (1.3)	
" 딸	23 (3.9)	3 (0.7)	2 (0.7)	1 (0.3)	
그외기타관계	15 (2.6)	5 (1.1)		3 (10.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2.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응답자의 연령층은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층과 비슷하며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는 30대가 33.8%, 40대가 28.7%, 50대가 12.5%이며 중소도시는 30대가 30.4%, 40대가 31.3%, 50대가 20.0%이고 읍에 있어서는 30대가 30.6%, 40대가 28.6%, 50대가 22.9%으로서 읍에 이르기 까지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보다 더 높아져서 30대가 24.0%, 40대가 26.0%, 50대가 25.7% 그리고 60대 이상이 17.7%나 되고 있으며 어촌은 30대가 16.0%, 40대가 35.0%, 50대가 25.0% 그리고 60대 이상이 9%로서 역시 도시지역 보다는

훨씬 높은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에서 도시화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핵가족화를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지역으로부터 분가하여 나온 젊은 부부중심의 가구가 도시지역으로 이입하여온 데서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 3> 가구의 연령과 응답자의 연령비교 참조)

<표 3> 가구의 연령과 응답자의 연령 (%)

연령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가구주	응답자	가구주	응답자	가구주	응답자	가구주	응답자	가구주	응답자
19세	또는그미만		(1.7)	0.6	(0.4)			0.3	(1.0)		
20 ~ 24	세	0.7	(6.8)	0.6	(2.2)		(1.0)	1.0	(1.3)	1.0	(1.0)
25 ~ 29	세	04.4	(11.4)	5.3	(8.4)	2.7	(7.1)	3.3	(4.3)	4.0	(4.0)
30 ~ 34	세	14.7	(16.9)	10.9	(12.9)	12.5	(13.8)	10.0	(11.3)	9.0	(9.0)
35 ~ 39	세	18.6	(16.9)	16.9	(17.5)	17.2	(16.8)	13.3	(12.7)	7.0	(9.0)
40 ~ 44	세	18.3	(15.9)	16.4	(15.1)	14.8	(13.1)	11.0	(12.0)	12.0	(12.0)
45 ~ 49	세	16.0	(12.8)	18.4	(16.2)	16.2	(15.5)	13.7	(14.0)	23.0	(22.0)
50 ~ 54	세	12.3	(8.2)	11.3	(10.4)	14.8	(13.5)	13.0	(11.0)	21.0	(22.0)
55 ~ 59	세	7.9	(4.3)	8.9	(9.6)	11.1	(9.4)	15.3	(14.7)	14.0	(13.0)
60 ~ 64	세	4.8	(2.9)	5.5	(3.6)	7.1	(6.1)	7.7	(7.7)	6.0	(5.0)
64세	또는그이상	2.4	(2.2)	4.8	(3.6)	3.7	(3.7)	11.3	(10.0)	3.0	(3.0)
계		100.1	(100.0)	100.1	(100.0)	100.1	(100.0)	99.9	(100.0)	100.0	(100.0)

※()내가 응답자의 %임

응답자의 성별은 <표 2>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큰 도시일수록 가구주의 면접이 불가능하였던 가구가 많고 그 부인이 대신으로 면접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 여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여자가 23% 정도로 나타난 한편 읍, 농촌 및 어촌의 경우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여자가 응답해준 비율은 각 지역별로 대체로 10% 내외이다.

물론 여기서도 여자가 가구주로 되어있는 가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실제로 여자 가구주가 응답하여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3.4%, 중소도시가 4.2%, 읍이 0.7%, 농촌이 4.7%, 그리고 어촌이 6.0%로 나타났다.

3. 응답자의 종교

응답자의 종교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체의 30% 정도이며, 농어촌지역에서는 20%미만에 불과 하였다. 여러가지 종교중에서 믿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불교이며 그것은 특히 읍에서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큰 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4> 참조)

<표 4> 응답자의 종교 (%)

종교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무종교	393 (67.1)	321 (71.2)	214 (71.1)	255 (85.0)	82 (82.0)
기독교	69 (11.8)	44 (9.8)	17 (5.7)	12 (4.0)	1 (1.0)
불교	83 (14.2)	60 (13.3)	51 (17.2)	21 (7.0)	12 (12.0)
천주교	29 (4.9)	19 (4.2)	8 (2.7)		4 (4.0)
천도교	1 (0.2)	1 (0.2)			
기타종교	8 (1.4)	5 (1.1)	7 (2.4)	8 (2.7)	
무응답	3 (0.5)			4 (1.3)	1 (1.0)
계	586 (100.1)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4.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을 먼저 취업여부의 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각 지역별로 실업 또는 무직자의 수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나타난바와 같이 응답자가 실업 또는 무직인 지역별 비율은 서울이 52.2%, 중소도시가 27.3%, 읍이 19.5%, 농촌이 16.7%, 그리고 어촌이 19.0%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의 응답자 중에서 소수의 실업자를 제외하고는 주로 무직으로 분류된 가구주의 부인이 대신 응답한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또한 도시지역이 농촌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직업을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농업과 어업의 1차산업과 그외의 2. 3차 산업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농부가 전체 응답자중 2.2%에 불과하였지만 중소도시에서는 10.4%나 되고 있다. 반면에 행정구획상 농촌과 같은 군부에 속하는 읍에 있어서는 비농과 농업의 비율이 각각 31.0%와 49.5%로서 나타났으나 농촌에서는 비농이 2.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가구주의 직업을 다룬 장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읍은 직업의 구성적인 면에서 볼때, 농촌적인 성격을 어느정도 갖는다고 할지라도 도시적인 성격을 보다 더 많이 띠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이 조사의 결과에서도 읍에 사는 주민들의 태도, 가치관 및 생활양식등은 농촌보다는 중소도시에 가깝게 보였다. 어촌은 응답자중 51%가 어부였으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어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적 특성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판매종사자의 수가 대도시인 서울에서 보다 중소도시와 읍에서 무려 10% 정도나 더 많은 25%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참조)

<표 5> 응답자의 직업 (%)

지 역 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실업 또는 무직	306 (52.2)	123(27.3)	58 (19.5)	41 (16.7)	19 (19.0)
전문적, 기술적 직업	40 (6.8)	42 (9.3)	9 (3.0)	5 (1.7)	
관리적 직업	21 (3.6)	9 (2.0)	5 (1.7)	2 (0.7)	1 (1.0)
사무종사자	39 (6.7)	33 (7.3)	14 (4.7)	2 (0.7)	5 (5.0)
판매 "	80 (13.7)	112(24.9)	69 (23.2)	6 (2.0)	9 (9.0)
농부등 유사 직업	13 (2.2)	47(10.4)	92 (31.0)	212 (70.7)	4 (4.0)
어부 "			1 (0.3)	23 (7.7)	51 (51.0)
광부 "	4 (0.7)			1 (0.3)	
교통, 통신 종사자	5 (1.0)	6 (1.3)	5 (1.7)	1 (0.3)	1 (1.0)
기능공, 단순노동자	52 (8.9)	50(11.1)	27 (9.1)	6 (2.0)	8 (8.0)
서비스업 종사자	17 (2.9)	28 (6.2)	17 (5.7)	1 (0.3)	1 (1.0)
기타 또는 분류불능	9 (1.4)				1 (1.0)
계	586(100.1)	450(99.8)	297 (99.9)	300(100.1)	100 (100.0)

5. 응답자의 교육정도

응답자의 교육정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응답자의 50% 정도가 가구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가구주의 부인 응답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수준은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9.3%가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32.7%가, 읍은 22.3%가, 농촌은 9.6%가 그리고 어촌은 8.0%가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학력자의 비율을 볼것같으면 서울이 가장 낮은 8.4%이고 중소도시는 22.6%, 읍이 19.2%, 농촌이 가장 높은 49.0%이며, 어촌도 상당히 높은 44.0%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응답자의 교육정도 (각각 중퇴 포함; %)

교육정도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문맹	22 (3.6)	32 (7.1)	26 (8.8)	61 (20.3)	15 (15.0)
한수	8 (1.4)	24 (5.3)	8 (2.7)	26 (8.7)	6 (6.0)
국해	20 (3.4)	46 (10.2)	23 (7.7)	60 (20.0)	23 (23.0)
초등	133 (22.7)	130 (28.9)	107 (36.0)	102 (34.0)	36 (36.0)
중학	113 (19.3)	69 (15.3)	64 (21.5)	19 (6.3)	11 (11.0)
고등	147 (25.1)	85 (18.9)	45 (15.2)	22 (7.3)	7 (7.0)
대학또는그이상	142 (24.2)	62 (13.8)	21 (7.1)	7 (2.3)	1 (1.0)
무응답	1 (0.2)	2 (0.4)	3 (1.0)	3 (1.0)	1 (1.0)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제 3 부

가 구 구 성 파 거 주 생 활

제 6 장 가 구 주 의 기 본 적 속 성

가구주에 대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가구주의 연령, 결혼관계, 직업, 취업상황, 교육정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가구원수, 가구의 형태 및 가족형태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1733 가구주 가운데는 45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가구원이 289명으로서 16.8%이고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이 16%, 283명으로써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30대가 494명, 40대가 559명으로서 40대가 많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60대층의 연령을 가진 가구주가 20대의 연령층에 있는 가구주 보다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분해서 보면 19세 또는 그 미만의 연령을 가진 가구주가 중, 소도시에서 3명, 농촌에서 1명이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서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가구주는 84명으로서 29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가구주 보다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연령분포를 보면 서울 및 소도시와 읍소재지에서는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는데 반해서 농촌과 어촌에서는 도시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서 45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가구주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시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농촌 및 어촌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함을 볼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 (%)

<표 1>

연령 지역별	서울	중 소 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9세 또는 그 미만		3 (0.6)		1 (0.3)		4
20 ~ 24세	4 (0.7)	3 (0.6)		3 (1.0)	1 (1.0)	11
25 ~ 29세	26 (4.4)	24 (5.3)	8 (2.7)	10 (3.3)	4 (4.0)	72
30 ~ 34세	86 (14.7)	49 (10.9)	37 (12.5)	30 (10.0)	9 (9.0)	211
35 ~ 39세	109 (18.6)	76 (16.9)	51 (17.2)	40 (13.3)	7 (7.0)	283 (16.0)
40 ~ 44세	107 (18.3)	74 (16.4)	44 (14.8)	33 (11.0)	12 (12.0)	270
45 ~ 49세	94 (16.0)	83 (18.4)	48 (16.2)	41 (13.7)	23 (23.0)	289 (16.6)
50 ~ 54세	72 (12.3)	51 (11.3)	44 (14.8)	39 (13.0)	21 (21.0)	227
55 ~ 59세	46 (7.9)	40 (8.9)	33 (11.1)	46 (15.3)	14 (14.0)	179
60 ~ 64세	28 (4.8)	25 (5.5)	21 (7.1)	23 (7.7)	6 (6.0)	103
65세 또는 그 이상	14 (2.4)	22 (4.8)	11 (3.7)	34 (11.3)	3 (3.0)	84
계	586 (100.1)	450 (100.1)	297 (100.1)	300 (99.9)	100 (100.0)	1,733

가구주의 결혼관계를 보면 부부같이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9할 이상인 1,570명이다. 그외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97명이며 그 다음에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가 31명으로서 그다음을 차지하고 배우자의 취업관계로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21명으로써 세째로 많다. 이외의 가족 관계로서는 이혼했다는 경우와 배우자와의 불화로써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몇명 있다.

<표 2>

가구주의 결혼관계(%)

지역별 결혼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미혼	14 (2.4)	9 (2.0)		6 (2.0)	2 (2.0)	31
사별	33 (5.6)	29 (6.4)	6 (2.0)	21 (7.0)	8 (8.0)	97
이혼	2 (0.3)	3 (0.7)			1 (1.0)	6
기혼동거	522 (89.1)	403 (89.5)	289 (97.3)	268 (89.3)	88 (88.0)	1,570(90.6)
불화별거	2 (0.3)			1 (0.3)		3
취업별거	9 (1.5)	5 (1.1)	2 (0.7)	4 (1.3)	1 (1.0)	21
기타관계	3 (0.5)	1 (0.2)				4
무응답	1 (0.2)					1
계	586 (99.9)	450 (99.9)	297(100.0)	300(99.9)	100(100.0)	1,733

이상에서 볼때 지역별의 관계없이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구주의 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에는 지역별 관계없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으나 그 숫자는 적은 비율에 불과하다。 부부동거가 원칙이며 사별,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혼한 경우는 무시할 정도의 소수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이혼부부의 통계적경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 동거 부부중에서 이혼하여 재혼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므로 과거에 이혼한 일이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은 이상 그 경향을 알 수 없다。

다음엔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가구주의 취업에 대한 분포상황을 보면 반수가 조금 모자라는 836명이 주로 농업,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며 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포함된 사업가 및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516명은 「상용」으로서 월급, 일급을 받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이며 비교적 고정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째는 실업 상태나 무직상태에 있는 경우인 234명이다。 그외는 가내종사자가 121명이다。 이들은 집안끼리하는 수공업이나 상업에 가족원으로서 함께 일하며 돕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의 취업상태에 있어서 자영업주에 속하는 비율이 거의 5할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잘 반영한다고 볼수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볼 때 서울에서는 29.2%이며 중소도시가 45.8%, 읍이 64.0% 그리고 농촌이 81.0%로서 일반적 기대에 부합되는 현상이다。 읍과 농촌지역에서는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이며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공업 및 상업에 자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서울에 있어서 자영업의 비율이 낮

은 한편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용인들의 비율이 45.6%이며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다. 이들의 많은 수가 저소득 근로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읍과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이 비율로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납득할만한 경향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무직자와 실업자들로서 전체비율이 13.5%이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앞서 가구주들의 연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87명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무직자의 대부분이 은퇴기에 있는 노령층의 가구주들임을 짐작하게 된다. 어촌의 취업상태는 타지역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가구주의 수가 100에 불과하므로 적은 표본집단이기에는 하나 자영업주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가내종사자의 비율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리고 피고용자가 29.0%를 차지하는 것은 어민의 대부분이 자영업보다 피고용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농업과 달리 어업으로서 자영을 하기에는 자본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은 고용관계 아래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업또는 무직자의 비율도 타지역보다 약간 높은편이므로 어촌의 취업상태가 어느지역보다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

<표 3>

가구주의 취업상황 (%)

지역별 취업상황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실업또는무직	89 (15.2)	69 (14.3)	27 (9.1)	33 (11.0)	16 (16.0)	234(13.5)
자영업주	171 (29.2)	206 (45.8)	190 (64.0)	243 (81.0)	26 (26.0)	836(48.2)
상용	267 (45.6)	143 (31.8)	62 (20.9)	15 (5.0)	29 (29.0)	516(29.8)
가내종사	42 (7.2)	27 (6.0)	18 (6.1)	9 (3.0)	25 (25.0)	121 (7.0)
기타	3 (0.5)	2 (0.4)				5
무응답	14 (2.4)	3 (0.7)				17
					4 (4.0)	4
계	586 (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1,733

다음엔 가구주의 직업으로서 농업이거나 그외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2%인 381명으로 제일 많고 둘째로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335명이나 된다. (19%이다)

그다음은 기능공 및 단순노동자로서 201명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농부등 유사직업, 판매종사자 기능공 및 단순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들의 비율은 각각 1할 미만을 차지한다. 사무 종사자, 전문기술자 직업 종사자들이 그중에서는 제일 많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직업종사자, 어부, 관리직업, 교통체신 종사자들의 순위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광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직업분포 상황을 보면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판매 종사자가 많고 읍 소재지와 농촌에서는 농부등 유사 직업 종사자가

많다. 또한 어촌에서는 어부가 가장 많으며 당연히 기대할만한 것이다. 농촌에서는 역시 약 7할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체 가구주 가운데서 농부등 유사 직업종사자가 가장 많은것은 농촌에서의 가구주의 직업으로 집중되어 있는것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줄 안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직업 종사자 가운데는 서울 및 중소도시에서 그 비율이 높고 읍소재지나 농촌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으며 어촌에서는 한명도 없다. 관리적 직업종사자라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고 농촌에서 가장 낮으며 본 조사 대상이 되었던 가구주 가운데는 어촌에서는 관리직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다.

도시인들의 직업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판매업이 첫째이며 다음으로 기술공 및 단순노동자이다. 서울에서는 기술공 및 단순노동자층이 16.9% 중소도시에서는 12.9%로서 저소득근로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공업이 더욱 확장하고 현대화하게 된다면 단순노동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기술자 및 기능공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는 단순노동자들의 수가 도시 근로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물론 또한 저소득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이 최저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협에 늘 직면하고 있는 계층이다. 가정복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이들의 경제생활보장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가 구 주 의 직 업 (%)

지 역 별 직 업	가 구 주 의 직 업 (%)					
	서	을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실 업 또 는 무 직	89 (15.2)	69 (15.3)	27 (9.1)	33 (11.0)	16 (16.0)	234
전 문 적 기 술 직 업	56 (9.6)	55 (12.2)	11 (3.7)	6 (2.0)		128
판 리 직 업	47 (8.0)	11 (2.4)	5 (1.7)	2 (0.7)		65
사 무 종 사 자	87 (14.8)	47 (10.4)	18 (6.1)	3 (1.0)	6 (6.0)	161
판 매 종 사 자	133 (22.7)	115 (25.5)	73 (24.6)	6 (2.0)	8 (8.0)	335 (19.0)
농 부 등 유 사 직 업	14 (2.4)	50 (11.1)	98 (33.0)	215 (71.7)	4 (4.0)	381 (22.0)
어 부 "		1 (0.2)	1 (0.3)	26 (8.7)	54 (54.0)	82
광 부 "	7 (1.2)	2 (0.4)		1 (0.3)		10
교 통 체 신 종 사 자	20 (3.4)	8 (1.8)	8 (2.7)	1 (0.3)	1 (1.0)	38
기 능 공 단 순 노 동 자	99 (16.9)	58 (12.9)	30 (10.1)	6 (2.0)	8 (8.0)	201
써 비 스 직 업 종 사 자	26 (4.4)	34 (8.7)	26 (8.8)	1 (0.3)	1 (1.0)	88
기 타 또 는 분 류 불 능	8 (1.4)				2 (2.0)	1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100.0)	100 (100.0)	1,733

가구주들의 교육 정도를 보면,
초등교육을 마쳤거나 중퇴한 사람들이 461명인 26.2%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대학 교육을 마쳤거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둘째로 많아서 309명이나 된다. 그 다음으로는 고교 중퇴자 및 졸업자가 290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가 275명이며 국문 해독자, 문맹자, 한문을 수학한 사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요약해 보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가구주 가운데는 초등교육을 중퇴했거나 마친 사람이 가장 많고 둘째로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국문 해독자의 순위로 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가구주 가운데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마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의 중소도시나 읍이나 농촌 및 어촌에서는 초등학교를 마쳤거나 중퇴했거나 해서 초등교육의 교육적 배경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시 가구주의 3할이상이 대학이나 그이상의 교육 정도를 지녔다고 나타난 현상은 이번 표본이 고등교육을 받은 층으로 기울어진 느낌이다. 물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어느 지역에 비해 서울에 많이 집중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기대밖으로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도 19.3% 즉 2할이 거의 되는 비율이 대학출신이다. 이것 역시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향의 느낌이나 이 두지역이 이렇게 일관된 현상을 나타내므로 도시에서 사는 가족들의 가구주의 교육은 사실상 이 정도로 높은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체로 보아 국민학교출신 다음에 가는 높은 비율로서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이처럼 높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구주라면 이것은 소수를 제외하고 남성들이며 그

리고 교육의 과정을 이미 마친 연령층이므로 그 비율이 높지않나
생각된다。

<표 5> 가구주의 교육정도(%)

지역별 교육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문	맹	11 (1.9)	27 (6.0)	24 (8.1)	59 (19.7)	14 (14.0)	135
한	수	14 (2.4)	24 (5.3)	9 (3.3)	30 (10.0)	6 (6.0)	83
국	해	14 (2.4)	49 (10.9)	23 (7.7)	61 (20.3)	22 (22.0)	169
초	등	106 (18.1)	111 (24.7)	106 (35.7)	100 (33.3)	38 (38.0)	461 (26.6)
중	학	117 (20.0)	66 (14.7)	60 (20.2)	21 (7.0)	11 (11.0)	275
고	등	140 (23.0)	83 (18.4)	43 (14.5)	17 (5.7)	7 (7.0)	290
대학교또는그이상		183 (31.2)	87 (19.3)	29 (9.8)	9 (3.0)	1 (1.0)	309
무	응답	1 (0.2)	3 (0.7)	3 (0.6)	3 (1.0)	1 (1.0)	11
계		586 (100.1)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각각 중퇴포함.

제 7 장 가구원수 가구형태및 가족형태

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가구의 식구수를 보면 6 사람으로서 구성된 가족이 18.8 %인 329 가구로서 가장 많다.

둘째로는 294 명인 16.8 %가 7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이며 셋째로는 5 사람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이렇게 보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가구 가운데는 대개 5인 내지 7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이 많다. 5 사람 내지 7 사람으로서 구성된 가족이 전체의 거의 반수를 차지한다. 1인가족은 10 가구 있으며 10 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은 143 가구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5인 내지 6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많고 8인이나 그 이상이 될수록 현저히 줄어든다. 기타 지역은 6인가구가 가장 많은 편이나 7인이나 8인 가구의 빈도도 만만치 않게 많은 편이다. 한국가족의 식구수는 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편이나 그 중에서도 적은 도시와 농촌지역은 더 대식구 경향이다.

가구형태를 일반가구, 모자간으로만 구성된 모자가구, 노인들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본 조사 대상이 되었던 가구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가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97 %나 된다. 모자가구 형태를 가진 가구는 서울에서 13 가구 중소도시에서 3 가구 있었으며 노인 가구는 도시, 중소도시 및 읍소재지에서 각각 1가구씩 농촌에서 24 가구 있었다.

<표 6>

가구원수 (%)

지역별 가구원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인	3 (0.5)	5 (1.1)		2 (0.7)		10
2 "	16 (2.7)	18 (4.0)	4 (1.3)	9 (5.0)	3 (3.0)	50
3 "	46 (7.9)	33 (7.3)	10 (3.4)	21 (7.0)	11 (11.0)	121
4 "	85 (14.5)	47 (10.4)	28 (9.4)	33 (11.0)	15 (15.0)	208
5 "	109 (18.6)	67 (14.9)	29 (9.8)	33 (11.0)	18 (18.0)	256
6 "	107 (18.3)	85 (18.9)	66 (22.2)	58 (19.3)	11 (11.0)	327(18.8)
7 "	87 (14.8)	64 (14.2)	71 (23.9)	49 (16.3)	23 (23.0)	294
8 "	57 (9.7)	53 (11.8)	41 (13.8)	34 (11.3)	8 (8.0)	193
9 "	36 (6.1)	42 (9.3)	20 (6.7)	25 (8.3)	8 (8.0)	131
10 "	26 (4.4)	19 (4.2)	15 (5.1)	21 (7.0)	3 (3.0)	84
11 인또는그이상	14 (2.4)	17 (3.8)	13 (4.4)	15 (5.0)		59
계	586 (99.9)	450 (99.9)	297(100.0)	300 (99.9)	100(100.0)	1,733

<표 7>

가 구 형 태 (%)

지역별 가구형태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일 반 가 구	568 (96.9)	438 (97.2)	296 (99.7)	295 (98.3)	100(100.0)	1,697(97.0)
모 자 가 구	13 (2.2)	3 (0.7)				16
노 인 가 구	1 (0.2)	1 (0.2)	1 (0.3)	2 (0.7)		5
기 타 가 구	4 (0.7)	8 (1.8)		3 (1.0)		15
계	586(100.0)	450 (99.9)	297(100.0)	300(100.0)	100(100.0)	1,733

다음엔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진 가구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본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는 핵가족 형태로서 살고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66%이다. 다음은 조부모를 모신 계통 가족형태로서 살고있는 가구가 403 가구로서 다음의 순위를 차지한다. 그외는 결합가족의 형태를 취한 가족속에서 살고있는 경우로서 결합 가족 가운데도 직계가족 이외에 친척 또는 형제들이 같이 거주하는 결합가족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핵가족의 비율이 어촌에서 78.0%로서 현저하게 높다. 농촌에서는 핵가족이 62.0%로서 가장 낮은 편이며 이 두 지역은 비도시로서의 공통점은 있으나 그들의 경제 구조면에서 오는 차이가 가족형태에 반영되고 있는듯 하다. 즉 농민들은 거의 전부가 자작농인데 반하여 어촌에서는 앞서 취업상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다수가 피고용상태에 있는 어민이다. 어업을 자영하는 수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민들의 경제생활정도는 농민들에 비하여 더 가난하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특히 자작농) 한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반면 피고용상태에 있는 어민들은 지역적 이동성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서 어민들은 노부모까지 모시는 3대가족 즉 계통가족을 유지하기란 곤란하며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단출한 가족을 어느 지역에서 보다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대로서 구성된 계통가족은 역시 농촌에서 34.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어촌에서는 13%로서 중소도시의 비율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이다. 어민들의 가족생활이란 농민들 보다 더욱더 생활의 위협을 받는 형편이므로 노부모들을 모실수 없는 것이 아닐까

<표 8>

가 족 형 태

지역별 가족형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핵가족	387 (66.0)	299 (66.4)	193 (65.0)	186 (62.0)	78 (78.0)	1,143 (66.0)
제통가족 (각계단일)	107 (18.3)	98 (11.8)	82 (27.6)	103 (34.3)	13 (13.0)	403
결합가족 1 (부모, 기혼, 형제나 친척)	23 (3.9)	19 (4.2)	11 (3.7)	10 (3.3)	3 (3.0)	66
결합가족 2 (기혼, 형제, 동거)	3 (0.5)	2 (0.4)			1 (1.0)	6
결합가족 3 (친척 또는 형제)	61 (10.4)	27 (6.0)	11 (3.7)	1 (0.3)	5 (5.0)	105
기타가족	5 (0.9)	5 (1.0)				10
계	584 (100.0)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1,733

제 8 장 별거자에 관한 자료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별거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거자수, 별거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직업, 별거자의 연령, 결혼관계, 직업, 교육정도 및 취업상황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별거자를 가진 가구를 살펴보면 가족 성원 가운데 단 한 명의 별거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족이 약 8할정도로서 1,352명이나 된다. 가족 성원 가운데 별거자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 몇명의 별거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가족 성원 가운데 단 한명만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240가구로서 가장 많고 2인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10%가구로써 그다음으로 많다.

이와 같이 1인 혹은 2인의 별거자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외에 3인, 4인, 5인, 6인의 별거자를 가진 가구의 순위이다. 또한 6인 이상의 별거자를 가진 가구도 5가구나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 별거자들이 가구주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가를 보기로 한다.

대개 가구주와 아들의 위치에 놓여있는 별거자들이 362명인 61%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딸, 형님이거나 동생인 경우,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및 부인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는 손자, 가구주의 어머니, 가구주의 아버지, 가구주의 여자, 자부, 손녀등의 방계 가족들이다.

다시 말하면 별거 가족으로서는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딸, 형이거나, 동생의 순위이다.

<표 9>

별 거 자 수 (%)

지 역 별 별 거 자 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없 음	511 (87.2)	342 (76.0)	218 (73.4)	205 (68.3)	76 (76.0)	1,352 (78)
1 인	53 (9.0)	60 (13.3)	50 (16.8)	61 (20.3)	16 (16.0)	240
2 인	15 (2.6)	31 (6.9)	20 (6.7)	27 (9.0)	8 (8.0)	101
3 인	4 (0.7)	7 (1.6)	3 (1.0)	5 (1.7)		19
4 인	1 (0.2)	6 (1.3)	5 (1.7)	2 (0.7)		14
5 인		2 (0.4)				2
6 인	2 (0.3)	2 (0.4)	1 (0.3)			5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별 거 자 실 수	111	189	125	138	32	595

<표 10>

별 거 자 의 가 구 주 와 의 관 계 (%)

지 역 별 가 구 주 와 의 관 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가 구 주 - 남 자	13 (11.7)	24 (12.7)	1 (0.8)	4 (2.9)	1 (3.1)	43
아 들	60 (54.1)	115 (60.8)	82 (65.6)	80 (58.0)	25 (78.1)	362 (61.0)
부	2 (1.8)	4 (2.1)				6
형 제 또 는 제	15 (13.5)	7 (3.7)	12 (9.6)	8 (5.8)	1 (3.1)	43
손 자	1 (0.9)	3 (1.6)		5 (3.6)		9
기 타 - 남 자	1 (0.9)		1 (0.8)	2 (1.4)		4
가 구 주 - 여 자	5 (4.5)					5
부 인	6 (5.4)	1 (0.5)		4 (2.9)		11
딸	6 (5.4)	29 (15.3)	26 (20.8)	28 (20.3)	5 (15.6)	94
모	1 (0.9)	4 (2.1)	2 (1.6)	1 (0.7)		8
자 부	1 (0.9)	1 (0.5)	1 (0.8)	2 (1.4)		5
자 또 는 매				2 (1.4)		2
손 녀		1 (0.5)		2 (1.4)		3
기 타 관 계 - 여 자						
계	111 (100.0)	189 (99.8)	125 (100.0)	138 (99.9)	32 (99.9)	595

가구주의 결을 떠나서 별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20 세 이상 24 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자들이 34.6 %로 가장 많다. 둘째로는 15 세에서 19 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하는 별거자의 수가 22.4 %로서 그다음을 차지하고 25 세 이상 29 세 사이의 연령층의 별거자의 비율이 세째로 많아서 18.6 %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5 세이상 29 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전체 별거자 가운데 거의 8 할이 집중되어 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군인 관계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외는 14 세 또는 그 미만의 연령을 가진 별거자로서 10.1 %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표 11>

별 거 자 의 연 령 (%)

연 령 \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14 세 또는 그 미만	6 (5.4)	4 (2.1)	8 (6.4)	37 (26.8)	5 (15.6)	60 (10.1)
15 ~ 19 세	5 (4.5)	34 (18.0)	22 (17.6)	55 (39.9)	17 (53.1)	133 (22.4)
20 ~ 24 세	48 (43.2)	79 (41.8)	48 (38.4)	27 (19.6)	6 (18.6)	208 (34.6)
25 ~ 29 세	22 (19.8)	38 (20.1)	41 (32.8)	7 (5.1)	3 (9.4)	111 (18.6)
30 ~ 34 세	7 (6.3)	15 (7.9)	2 (1.6)	5 (3.6)		29 (4.9)
35 ~ 39 세	3 (2.7)	3 (1.6)	1 (0.8)	3 (2.2)		10 (1.7)
40 ~ 44 세	3 (2.7)	2 (1.1)	1 (0.8)	1 (0.7)	1 (3.1)	8 (1.3)
45 ~ 47 세	4 (3.6)	4 (2.1)		3 (2.2)		11 (1.9)
50 ~ 54 세	4 (3.6)		1 (0.8)			5 (0.8)
55 ~ 59 세	1 (0.9)	4 (2.1)				5 (0.8)
60 ~ 64 세	6 (5.4)	4 (2.1)				10 (1.7)
65 세 또는 그 이상	2 (1.8)	2 (1.1)	1 (0.8)			5 (0.8)
계	111 (99.9)	189 (100.1)	125 (100.0)	138 (99.9)	32 (99.8)	595

지역별로 보면 뚜렷한 차아점은 보이지 않으나 서울 중소도시및 읍소재지에서는 2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속해 있는 별거자의 수가 가장 많으나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별거자의 수가 뚜렷하게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다른 점이다.

별거자의 결혼 관계를 보면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별거자 595명 가운데 501명인 84.2%가 미혼이며, 그외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취업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아도 지역별 관계없이 미혼인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별거자의 결혼관계 (%)

지역별 결혼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미혼	84 (75.7)	158 (83.6)	113 (90.4)	120 (87.7)	26 (81.3)	501(84.2)
사별	5 (4.5)	3 (1.6)	3 (2.4)	2 (1.4)		13 (2.2)
이혼		1 (0.5)				1 (0.2)
기혼동거	10 (9.0)	6 (3.2)	3 (2.4)	1 (0.7)		20 (3.4)
불화별거		3 (1.6)				3 (0.5)
취업별거	7 (6.3)	17 (9.0)	5 (4.0)	12 (8.7)	1 (3.1)	42 (7.1)
기타관계	5 (4.5)	1 (0.5)	1 (0.8)	3 (2.2)	5 (15.6)	15 (2.5)
계	111(100.0)	189(100.0)	125(100.0)	138(100.0)	32(100.0)	595

별거자의 직업 가운데는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5%로 단연 많고 그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능공및 단순 노동자가 11.8%로서 1할이 조금 넘으며 그외는 거의 비슷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업이나 무직상태에 있는 별거자의 수도 25.5%로써 152명이나 된다.

<표 13> 별 거 자 의 직 업 (%)

지역 별 직 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실 업 또 는 무직	25 (22.5)	64 (33.9)	38 (30.0)	18 (13.0)	7 (21.9)	152 (25.5)
전문적기술적 직업	2 (1.8)	17 (9.0)	5 (4.0)	4 (0.7)	2 (6.3)	30 (5.0)
관 리 적 직 업	2 (1.8)			1 (2.9)		3 (0.5)
사 무 종 사 자	1 (0.9)	21 (11.1)	13 (10.4)	10 (7.2)		45 (7.6)
판. 매 "	2 (1.8)	3 (1.6)	9 (7.2)	12 (8.7)		26 (4.4)
농 부 등	3 (2.7)	3 (1.6)		1 (0.7)		7 (1.2)
어 부 등					4 (12.5)	4 (0.7)
광 부 등		1 (0.5)				1 (0.2)
교통, 체신, 종사자		3 (1.6)	5 (4.0)			8 (1.3)
기능공 단순노동자	8 (7.2)	13 (6.9)	13 (10.4)	36 (26.1)		70 (11.8)
서비스 직 업	57 (51.4)	61 (32.3)	40 (32.0)	36 (26.1)	14 (43.8)	208 (35.0)
기타또는분류불능	11 (9.9)	3 (1.6)	2 (1.6)	20 (14.5)	5 (15.6)	41 (6.9)
계	111 (100.0)	189 (100.1)	125 (100.0)	138 (99.9)	32 (100.1)	595

취업상황을 보면 무직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25.5%도 높은편이지만 고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61.0%로서 가장 높다. 나머지의 취업상황은 아주 미비한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일용에 취업한 경우가 4.4%, 자영업주가 3.7%, 가내 종사자가 0.2%일 뿐이다.

<표14> 별 거 자 취 업 시 취 업 상 황 (%)

취업 상 황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무직또는실업		25 (22.5)	64(33.9)	38(30.4)	18 (13.0)	7 (21.9)	152 (25.5)
자 영 업 주		7 (6.3)	3(1.6)	7 (5.6)	3 (2.2)	2 (6.3)	22 (3.7)
상 용		57 (51.4)	115(60.8)	79(63.2)	92 (66.7)	18 (56.3)	361 (61.0)
일 용		11 (9.9)	4(2.1)	1 (0.8)	10 (7.2)		26 (4.4)
가 내 종 사		1 (0.9)					1 (0.2)
기 타		10 (9.0)	3(1.6)		15 (10.7)	5 (15.6)	33 (5.5)
계		111 (100.0)	189(100.0)	125(100.0)	138 (99.8)	32 (100.1)	595

교육정도 별로 보면 대학 또는 그이상의 교육층에 별거자가 있는 경우는 27.5% , 고등학교를 중태했거나 졸업한 층의 별거자는 26.7%로서 별거자 가운데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도시에서는 역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에서 별거자가 많으며 기타지역에 갈수록 별거자의 교육정도는 낮다.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는 부모들에게서 자립하기위해 별거할 것이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표15> 별 거 자 의 교육정 도 (%)

지역별 교육정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문	5 (4.5)	2 (1.1)	4 (3.2)	1 (0.7)		12 (2.0)
한		1 (0.5)				1 (0.2)
국	1 (0.9)	5 (2.6)		5 (3.6)		11 (1.8)
초	18 (16.2)	22 (11.6)	22 (17.6)	65 (47.1)	6 (18.8)	133 (22.4)
중	14 (12.6)	30 (15.9)	24 (19.2)	21 (15.2)	10 (31.3)	99 (16.6)
고	24 (21.6)	52 (27.5)	46 (36.8)	28 (20.3)	9 (28.1)	159 (26.7)
대학또는그이 상	41 (36.9)	77 (40.7)	29 (23.2)	10 (7.2)	7 (21.9)	164 (27.5)
기 타	8 (7.2)			8 (5.8)		16 (2.7)
계	111 (99.9)	189 (99.9)	125(100.0)	138 (99.9)	32 (100.1)	595

※각 각 중퇴 포함.

제 9 장 취업자에 관한 자료

한 가구에 몇명의 취업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한 가구에 1 인만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64 %로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한 가구에 2 인의 취업자가 있는 경우가 22.7 %로서 둘째로 많고, 가장 많은 취업자 수는 한 가구당 6 인의 취업자가 있는 가구로서 2 가구나 된다. 지역별 차이 없이 한 가구당 1 인의 취업자가 있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는 서울의 경우엔 7 할이상이 한 가구당 1 인의 취업자를 갖고있어 어느지역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타지역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농촌지역일수록 한사람만이 취업해있는 가구가 적은것이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많은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업구조에 도시와 농촌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기인하는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가족이면 집안농사에 종사해야 하며 또는 농사만으로 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가족중의 한두사람은 계절적으로 행상을 하거나 또는 관공서에 취직하여 다원적인 수입을 마련하는것이다. 도시에 있어서 1 인의 취업자를 가진가구가 대부분이라는것은 직장이 제한되고 취직의 기회가 귀한 우리의 경제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도시화한 사회일수록 도시가족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비추어 생각할때 우리의 형편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혼인후 직장생활을 스스로 중단하는경우가 있기도하지만 많은 직장에서 혼인과 더불어 자퇴를 요구하는 원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역시 직업의 기회가 제한돼 있기 때문인 것이다.

<표 16>

취업자수 (%)

지역 별 취업 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32 (5.5)	16 (3.6)	8 (2.7)	5 (1.7)	4 (4.0)	65 (3.8)
1인	415 (70.8)	283 (62.9)	176 (59.3)	170 (56.7)	64 (64.0)	1,108(64.0)
2인	101 (17.2)	106 (23.5)	77 (25.9)	84 (28.0)	25 (25.0)	393(22.7)
3인	27 (4.6)	36 (8.0)	27 (9.1)	27 (9.0)	6 (6.0)	123 (7.1)
4인	9 (1.5)	6 (1.3)	8 (2.7)	12 (4.0)	1 (1.0)	36 (2.1)
5인	2 (0.3)	2 (0.4)	1 (0.3)	2 (0.7)		7 (0.4)
6인	1 (0.2)	1 (0.2)				2 (0.1)
계	586 (100.1)	450 (99.9)	297 (100.0)	300 (100.1)	100 (100.0)	1,733

취업자를 남녀별로 고찰하면 82%의 가구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없다. 직업여성이 있는 가구의 실태를 보면 기혼여성으로서 한 가구에 한명이 취업한 경우가 10%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혼 여성 한명이 있는 가정으로 97가구 (5.6%)가 된다. 기혼이나 미혼자로서 한명이상씩 있는 가구는 극히 더물다. 그리고 취업여성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지역간에 별차이가 없다. 물론 여성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면 도시와 농촌사이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라고 해서 더 많은 비율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표 17 >

취업자중 직업여성수(%)

지역별 직업여성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494 (84.3)	353 (78.4)	251 (84.5)	243 (81.0)	84 (84.0)	1,425 (82.0)
기혼여성 1인	53 (9.0)	50 (11.1)	28 (9.4)	32 (10.7)	11 (11.0)	174 (1.0)
기혼여성 2인	1 (0.2)				1 (1.0)	2 (0.1)
미혼여성 1인	29 (4.9)	31 (6.9)	16 (5.4)	17 (5.7)	4 (4.0)	97 (5.6)
미혼여성 2인	5 (0.8)	8 (1.8)	1 (0.3)	5 (1.7)		19 (1.0)
기혼1인 미혼1인	4 (0.7)	7 (1.6)	1 (0.3)	3 (1.0)		15 (0.9)
“ 1 “ “ 2 “		1 (0.2)				1 (0.1)
계	586 (99.9)	450 (100.0)	297 (99.9)	300 (100.1)	100 (100.0)	1,733

가구주 이외의 식구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수는 942 명이다. 이들이 모두 각 가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과반수가 넘는 55%가 가구주의 아들들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는 가구주의 딸인 경우가 14.3%로서 둘째로 많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보다는 아주 적은 숫자이다. 셋째로는 가구주의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14%로서 딸의 경우

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아들, 딸 또는 부인 이외의 취업자들은 가구주의 방
제가족이거나 친척들로서 1 할 미만에 해당된다.

< 표 18 > 가구주의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

지역 가구 주와 관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아	112 (45.0)	137 (51.5)	105 (61.4)	136 (65.5)	30 (60.0)	519 (55.0)			
부	2 (0.8)	3 (1.1)	1 (0.6)			6 (0.6)			
형또는제	23 (9.2)	14 (5.3)	11 (6.4)	3 (1.5)	3 (6.0)	54 (5.7)			
손				12 (5.8)		12 (1.3)			
기타관계	7 (2.8)	6 (2.3)	30 (17.5)	1 (0.5)	2 (4.0)	46 (4.8)			
남									
부	49 (19.7)	37 (13.9)	22 (12.9)	15 (7.3)	9 (18.0)	132 (14)			
인									
딸	45 (18.1)	54 (20.3)	1 (0.6)	29 (14.1)	6 (12.0)	135(14.3)			
모	3 (1.2)	2 (0.8)		3 (1.5)		8 (0.8)			
자	1 (0.4)	3 (1.1)	1 (0.6)	2 (1.0)		7 (0.7)			
부									
자 또는	5 (2.0)	5 (1.9)		3 (1.5)		13 (1.4)			
매									
손		1 (0.4)		3 (1.5)		4 (0.4)			
녀									
기타관계	2 (0.8)	4 (1.5)				6 (0.6)			
여									
계	249 (100.0)	266(100.1)	171 (100.0)	206 (100.2)	50(100.0)	942			

다음엔 가구주 이외에 취업하고 있는자들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연령층이 2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20세에서 24세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26.6%로써 다음의 순위이다. 이들을 합치면 55.6%나되며 이와같이 20대 연령층으로서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것은 30대 이상이 되면 혼인하여 부모의 가구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가구주부부의 위치에서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정상이므로 20대가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로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결과라고 하겠다.

<표 19>

가구주의 취업자의 연령 (%)

연령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14세 또는 그 미만	1 (0.4)	2 (0.8)	5 (2.9)	2 (1.0)		10 (1.1)
15~19세	19 (7.6)	35 (13.2)	22 (12.9)	43 (20.9)		119 (12.6)
20~24세	64 (25.7)	66 (24.8)	45 (26.3)	59 (28.6)	17 (34.0)	251 (26.0)
25~29세	75 (30.1)	79 (29.7)	47 (27.5)	38 (18.4)	18 (36.0)	257 (29.0)
30~34세	42 (16.9)	37 (13.9)	21 (12.3)	23 (11.2)	8 (16.0)	131 (13.7)
35~39세	21 (8.4)	13 (4.9)	17 (9.9)	12 (5.8)	2 (4.0)	65 (6.9)
40~44세	6 (2.4)	11 (4.1)	7 (4.1)	16 (7.8)	2 (4.0)	42 (4.5)
45~49세	9 (3.6)	14 (5.3)	2 (1.2)	5 (2.4)	2 (4.0)	32 (3.4)
50~54세	6 (2.4)	3 (1.1)	4 (2.3)	6 (2.9)		19 (2.0)
55~59세	1 (0.4)	3 (1.1)			1 (2.0)	5 (0.5)
60~64세	3 (1.2)	2 (0.8)	1 (0.6)	2 (1.0)		8 (0.8)
65세 또는 그 이상	2 (0.8)	1 (0.4)				3 (0.3)
계	249 (99.9)	266 (100.1)	171 (100.0)	206 (100.0)	50 (100.0)	942

이로서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들은 대다수가 미혼자일것을 기대한다. 이 자료에서도 이것을 잘 증명하여 즉 64 %가 미혼자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해서 동거하고 있는 취업자의 순으로서 30.3 %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취업자들의 결혼관계는 사별한 경우 이혼한 경우, 불화별거 및 취업별거등으로써 아주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표 20>

가구주외 취업자의 결혼관계 (%)

결혼 관계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미 혼		156 (62.7)	171 (64.3)	113 (66.1)	138 (67.0)	29 (58.0)	607(64.0)
사 별		4 (1.6)	7 (2.6)	1 (0.6)	4 (1.9)		16 (1.7)
이 혼				1 (0.6)	1 (0.5)		2 (0.2)
기혼동거		83 (33.3)	77 (28.9)	54 (31.6)	55 (26.7)	16 (32.0)	285(30.3)
불화별거		1 (0.4)	2 (0.8)	1 (0.6)			4 (0.4)
취업별거		1 (0.4)	9 (3.4)	1 (0.6)	8 (3.9)		19 (2.0)
기 타		4 (1.6)				5 (10.0)	9 (1.0)
계		249 (100.0)	266(100.0)	171(100.1)	206(100.0)	50 (100.0)	942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는 기능공, 단순노동자등이 19.5 %인 184 명으로서 가장 많고 판매종사자가 18 %, 사무종사자 및 농부등이 17.1 %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는 서비스 직업, 전문적·기술적직업, 어부 및 광부의 순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점이 많아서 서울의 경우엔 사무종사자, 중소도시에는 판매 종사자 및 사무종사자가 많은 편이고 읍에서는 판매종사자가 가장 많고 농촌에서는 농부, 어촌에서는 어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직업의 지역적성질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 >

가구주의 취업자의 직업 (%)

지 역 별 직 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전문 기술직	23 (9.2)	35 (13.2)	10 (5.8)	7 (3.4)		75 (7.9)
관리 적 직 업	3 (1.2)					3 (0.3)
사무 종사자	66 (26.5)	58 (21.8)	15 (8.8)	18 (8.7)	4 (8.0)	161 (17.1)
판매 "	45 (18.1)	59 (22.2)	38 (22.2)	20 (9.7)	9 (18.0)	171 (18.0)
능 부 등	12 (4.8)	16 (6.0)	32 (18.7)	98 (47.6)	3 (6.0)	161 (17.1)
어 부 등	1 (0.4)				25 (50.0)	26 (2.8)
광 부 등						
교통채신종사자	2 (0.8)	7 (2.6)	14 (8.2)	1 (0.5)		24 (2.6)
가농공단순노동자등	65 (26.1)	53 (19.9)	33 (19.3)	32 (15.5)	1 (2.0)	184 (19.5)
서비스 직 업	13 (5.2)	33 (12.4)	26 (15.2)	14 (6.8)	1 (2.0)	87 (9.3)
기타또는분류불능	19 (7.6)	5 (1.9)	3 (1.8)	16 (7.8)	5 (10.0)	48 (5.1)
계	249 (99.9)	266 (100.0)	171 (100.0)	206 (100.0)	50 (100.0)	940

다음 그들의 취업상황을 보면 상용되어 있는 경우가 단연 많아서 53%나 된다. 둘째로는 자영업주의 경우로서 약 20% 정도 된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어느 지역이나 임시 고용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계속되어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표 22 >

가구주의 취업자의 취업상황 (%)

지 역 별 취업 상황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자 주	48 (19.3)	53 (19.9)	46 (26.9)	35 (17.0)	9 (18.0)	191
상 용	160 (64.3)	164 (61.7)	88 (51.5)	78 (37.9)	13 (26.0)	503 (53.0)
임 용	10 (4.0)	23 (8.6)	11 (6.4)	12 (5.8)	5 (10.0)	61
가내종사	10 (4.0)	22 (8.3)	24 (14.0)	65 (31.6)	2 (4.0)	123
기 타	21 (8.4)	4 (1.5)	2 (1.2)	16 (7.8)	11 (22.0)	54
계	249 (100.0)	266 (100.0)	171 (100.0)	206 (100.1)	50 (100.0)	942

마지막으로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들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교육을 마쳤거나 중퇴한 자가 29.6%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26%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엔 취업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순위에 따라서 보면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중학중퇴 및 졸업자, 국문해득자, 문맹자의 순위이다.

지역별로 가구주의 취업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서울에서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고교 중퇴자 및 졸업자가 가장 높고 읍소재지나 농촌 및 어촌에서는 초등교육을 받은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3>

가구주의 취업자의 교육정도(%)

지역 교육 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문맹	6 (2.4)	11 (4.1)	2 (1.2)	2 (1.0)	2 (4.0)	23
한수	1 (0.4)	2 (0.8)		1 (0.5)		4
국해	5 (2.0)	8 (3.0)	1 (0.6)	9 (4.4)		23
초등	36 (14.5)	58 (21.8)	53 (31.0)	106 (51.5)	25 (50.0)	278 (29.6)
중학	38 (15.3)	41 (15.4)	45 (26.3)	42 (20.4)	12 (24.0)	178
고등	78 (31.3)	83 (31.2)	44 (25.7)	33 (16.0)	9 (18.0)	247 (26.0)
대학또는 그이상의 기타	85 (34.1)	62 (23.3)	26 (15.2)	7 (3.4)	1 (2.0)	181
		1 (0.4)		6 (2.9)		7
계	249 (100.0)	266(100.0)	171(100.0)	206(100.1)	50(100.0)	941

※ 각각 중퇴포함.

제 10 장 미취업자에 관한 자료

미취업자란 노동 연령층에 속하면서 취업고자 하지만 취직이 되지 않고 있는 소위 영구한 또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성을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결혼상태, 연령 및 교육정도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미취업자 가운데 남자 실업자들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실업자가 없다고 대답한 88%를 제외한 12%가 된다. 이들 가구 중에서 한사람의 실업자가 있다는 가구는 177이며 나머지 35 가구에서는 두명의 실업자 또는 3~5명이 있다는 4가구가 이에 포함된다. 남자 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지역적으로 고찰하면 크게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나 그러나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어촌이 한사람이나 그 이상의 남자 실업자를 가졌다고 하는 가구의 비율에 있어서 24%나 되는 가장 높은 실정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읍지역으로서 15.4%이며, 그 다음은 서울 대도시의 12.6%이다.

농촌은 경제 구조상 모든 노동력이 다 흡수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비율의 차이가 2.3%이므로 무시할만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어촌과 읍에 실업자를 가진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도시인 듯 하다.

<표 24> 미취업자중 남자 실업자가 있는 가구수 (%)

지역별 실업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512 (87.4)	404 (89.7)	251 (84.5)	278 (92.7)	76 (76.0)	(88.0) 1,521
1인	63 (10.8)	36 (8.0)	42 (14.4)	18 (6.0)	18 (18.0)	177
2인	9 (1.5)	9 (2.0)	3 (1.3)	4 (1.3)	6 (6.0)	31
3인	2 (0.3)	1 (0.2)				3
4인						
5인			1 (0.3)			1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이에 비해서 여자 실업자들의 경우는 95%나 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실업자들이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남자와 비교하여 실업한 여자 식구를 가진 가구의 비율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여자들의 취업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표 25> 미취업자중 여자 실업자가 있는 가구수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556 (94.9)	420 (93.3)	291 (98.0)	286 (95.3)	97 (97.0)	(95.0) 1,650
1인	23 (3.9)	18 (4.0)	6 (2.0)	9 (3.0)	3 (3.0)	59
2인	5 (0.9)	9 (2.0)		5 (1.7)		19
3인	1 (0.2)	2 (0.4)				3
4인		1 (0.2)				1
5인	1 (0.2)					1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지금까지는 남녀 미취업자중 노동력이 있고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취직을 못하고 실직하고 있는 식구를 지닌 가구의 수와 비율을 지역별로 고찰하였다. 다음은 농가를 제외한 모든 비농가구의 미취업자들이 가구주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결혼, 교육, 연령 및 미취업의 사유등에 관한 상황을 제시하려고 한다.

미취업자 중에서는 가구주의 딸이 241명인 가장 높은 수이며, 아들은 그 다음으로 많은 143명이다. 딸들은 노동연령에 속하지만 가사를 돕거나 혼인준비를 위하여 살림살이의 훈련을 받기 위해 취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들 취업자의 수보다 훨씬 높지 않은가 생각된다. 여취업자 중에서는 가구주의 아들, 딸 외에 가구주 자신들로서 미취업인 경우가 130명이나 된다. 여자 가구주로서 미취업자는 한명뿐이며 여자가구주의 수가 워낙 소수인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할만 하다.

< 표 26 > 미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농가제외, %)

가구주 와 관계	지역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가구주-남자	59(25.1)	36(19.5)	20(19.8)	7(36.8)	8(10.0)	130
아 들	48(20.4)	33(17.8)	32(31.7)	3(15.8)	27(33.8)	143
부	2(0.9)	6(3.2)	1(1.0)			9
형 또 는 제	13(5.5)	6(3.2)	5(5.0)		1(1.3)	25
손 자	3(1.3)	3(1.6)	1(1.0)		1(1.3)	8
기타관계-남자	3(1.3)	1(0.5)				4
가구주-여자	0	1(0.5)				1
부 인	0	1(0.5)				1
딸	74(31.5)	79(42.7)	40(39.6)	9(47.4)	39(48.8)	241 (38.9)
모						
자 부						
자 또 는 매	19(8.1)	5(2.7)	2(2.0)		4(5.0)	30
손 녀	1(0.4)	5(2.7)				6
기타관계-여자	13(5.5)	9(4.9)				22
계	235(100.0)	185(99.8)	101(100.1)	19(100.0)	80(100.2)	620

가구주들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번 조사의 표본가구의 총수인 1,733 가구중 8%가까이 되는 130 이므로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에 있지만 타식구들 중에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아들, 딸 또는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 자료에서는 분석되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가구주가 가족부양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들의 경제생활이 언제나 불안한 위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들 미취업의 이유가 직업을 회

망하면서 취직을 못하는 실업자인지 아니면 질환 또는 불구의 이유로서 취업 할 수 없는 상태인지 하여간 이들 가족의 생활보장과 안정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농가를 제외한 미취업자의 결혼관계를 보면 75 %인 절대 다수가 미혼이다. 앞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취업자의 대다수는 가구주의 딸과 아들이므로 혼인하기 전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 자신들 중에서 미취업자의 수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에서도 혼인한 사람들로써 부부 동거하고 있는 자들중 143 명의 경우가 미취업자이다.

< 표 27 > 미취업자의 결혼 관계 (※농가제외, %)

지역별 결혼관계	세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미 혼	170(72.3)	133(71.9)	77(76.2)	11(57.9)	72(90.0)	463 (75.0)
사 별	3(1.3)	3(1.6)			1(1.3)	7
이 혼	1(0.4)					1
기 혼 동 거	58(24.7)	47(25.4)	24(23.8)	7(36.8)	7(8.8)	143
불 화 별 거		2(1.1)		1(5.3)		3
취 업 별 거	1(0.4)					1
기 타 관 계	2(0.9)					2
계	235(100.0)	185(100.0)	101(100.0)	19(100.0)	80(100.1)	620

미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 세에서 24 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있는 미취업자가 가장 많아서 34.5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5 세에서 19 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173 명으로서 둘째로 많다. 이와같이 15 세 이상 24 세 미만의

연령층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미취업자가 있다. 세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25세 이상 29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으로 81명이나 된다. 이렇게 20대와 10대에 속하는 젊은층에 미취업자가 7할 이상이 되는 것은 또한 노동력 구조면에서 심각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록 미혼한 딸들 중에서 미취업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젊은층의 여자들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현상이 가볍게 보아 넘길수도 있겠으나 국가의 노동력 개발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15세와 30세 사이에 속하는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시한다. 이 연령층은 노동력의 구조상 가장 생산적인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력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령 분포에는 지역적 차이가 약간 엇보인다. 15세~19세 사이의 미취업자들은 대도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기 보다 중소도시, 읍 및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욱 높다. 어촌에서는 어촌 전체 미취업자의 52.5%에 해당하는 수가 이 연령층에 속한다. 도시에서는 10대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기 때문에 농어촌보다 미취업자로서의 수가 저하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20~24세 사이에서는 비율이 지역적 차이를 별로 나타내지 않는다. 농촌이 현저히 낮지만 그것은 농가를 제외한 소수 비농가의 경우만이 포함되었으므로 통계적 신빙성이 별로 없어 간과할 만한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미취업자가 20대 후반기인 25~29세 사이에 어느 지역에서 보다 가장 높은 19.1%나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보다 대도시에 있어서 이 연령층의 실

직자가 많다는 것은 규명되어야 할 사실인 것이다. 젊은층에게 가장 취직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는 서울에서 실직 상태에 있는 20대의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또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층 이외에 55~59세 사이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를 또한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의 부양 및 자녀교육의 책임이 있는 장년층이므로 이들의 실직상태는 가족에게 또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표 28> 미취업자의 연령 (※농가제외, %)

연령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15세미만		2(1.1)	1(1.0)			3
15~19세	46(19.6)	47(25.4)	32(31.7)	6(31.6)	42(52.5)	173
20~24"	82(34.9)	68(36.8)	33(32.7)	4(21.5)	27(33.0)	214 (34.5)
25~29"	45(19.1)	20(10.8)	12(11.9)	1(5.3)	3(3.0)	81
30~34"	10(4.3)	8(4.3)	3(3.0)	1(5.3)	1(1.3)	23
35~39"	11(4.7)	2(1.1)	2(2.0)	2(10.5)	1(1.3)	18
40~44"		2(1.1)	3(3.0)		2(2.5)	7
45~49"	8(3.4)	7(3.8)	3(3.0)	1(5.3)	1(1.3)	20
50~54"	6(2.6)	4(2.2)	5(5.0)		1(1.3)	16
55~59"	14(6.0)	13(7.0)	2(2.0)	3(15.0)	2(2.5)	34
60~64"	13(5.5)	11(5.9)	4(4.0)	1(5.3)		29
65세이상		1(0.5)	1(1.0)			2
계	235(100.0)	185(100.0)	101(100.0)	19(100.0)	80(100.0)	620

미취업자들의 교육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4%의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미취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중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자들이며 24.5%와 2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졸업자나 중퇴자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미취업자들이 몰려 있다. 또한 유의해야 할 현상은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에 있는 미취업자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60명 즉, 10%에 가까운 것이다. 이들중 절대다수인 43명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는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층이 집중해 있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며, 그러므로 대학출신의 실직자도 또한 많은 것이다. 이들 대학출신에 고등학교 출신인 31.5%를 합치면 서울 지역의 실직자중 근 50%가 고등학교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실직의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요구하는 직업과 직장이 그들의 교육정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여간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 그리고 10~20대의 젊은이들이 실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 표 29 > 미취업자의 교육정도 (농가제외 각각중퇴포함, %)

지역별 교육정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문맹	4(1.7)	10(5.4)	5(5.0)	2(10.5)	1(1.3)	22
한수	3(1.3)	1(0.5)	1(1.0)		1(1.3)	6
국해	1(0.4)	7(3.8)	2(2.0)	1(5.3)	1(1.3)	12
초등	43(18.3)	56(30.3)	35(34.7)	10(52.6)	66(82.5)	210 (34.0)
중학	60(25.5)	53(28.6)	31(30.7)	1(5.3)	7(8.8)	152
고등	74(31.5)	47(25.4)	22(21.8)	5(26.3)	2(2.5)	150
대학또는그이상	43(18.3)	11(5.9)	5(5.0)		1(1.3)	60
기타	7(3.0)				1(1.3)	8
계	235(100.0)	185(99.9)	101(100.2)	19(100.0)	80(100.3)	620

미취업자들의 사유는 역시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실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질환과 정년퇴직자의 경우가 50 여명을 차지하지만 299 명이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자의 경우는 예상과 같이 가사를 돌보기 위한 이유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취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으로 흡수될 수 있는 노동층인 것이다.

< 표 30 >

미취업자의 미취업사유 (※농가제외, %)

지역별 미취업사유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미혼여자가사	77(32.8)	62(33.5)	40(39.6)	9(47.4)	42(52.5)	230
미혼여자 질환심신장애	2(0.9)					2
남자불구	4(1.7)	8(4.3)	4(4.0)		2(2.5)	18
남자정신질환					1(1.3)	1
남자질환	9(3.8)	7(3.8)	8(7.9)	2(10.5)	4(5.0)	30
남자정년퇴직 노령취약	10(4.3)	8(4.3)	1(1.0)			19
실업	124(52.8)	98(53.0)	41(40.6)	7(36.8)	29(36.3)	299 (48.0)
기타	9(3.8)	2(1.1)	7(6.9)	1(5.3)	2(2.5)	21
계	235(100.1)	185(100.0)	101(100.0)	19(100.0)	80(100.2)	620

제 11 장 가구상황과 관련된 기타자료

위에서 여러가지 가구 상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서는 위에서 본 것 이외에 학령전 아동수, 취학자녀수, 노령자수, 비정상자수 및 피 고용인수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55%나 된다. 여기에는 학령전 아동이 한명이나 그 이상 4명까지 있다는 가구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다. 학령전 아동이 없다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45%를 차지 하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52.9%나 되는 높은 비율이 이에 속한다.

읍이나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다. 이것은 근래 실시되고 있는 가족계획이 도시가족에서 더욱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찍 단산하는 현실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학령전 아동이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한명만이 있다는 가구수의 비율에는 지역적인 차이를 별로 볼 수 없지만 2명이나 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서울의 경우가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읍과 농어촌으로 갈수록 높은 경향이다. 서울가족중에서는 4명의 학령전 아동을 가진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아서도 가족계획의 실시에서 오는 차이가 뚜렷함을 알수 있다.

<표 31>

학령미달 아동수 (%)

지역별 아동수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없	310	(52.9)	202	(44.9)	118	(39.7)	115	(38.3)	43	(43.0)	788	(45)
1	154	(26.3)	122	(27.1)	93	(31.3)	81	(27.0)	23	(23.0)	473	
2	96	(16.4)	92	(20.4)	68	(22.9)	69	(23.0)	27	(27.0)	352	
3	26	(4.4)	31	(6.9)	16	(5.4)	33	(11.0)	4	(4.0)	110	
4			3	(0.7)	2	(0.7)	2	(0.7)	3	(3.0)	10	
계	586	(100.0)	450	(100.1)	297	(100.1)	300	(100.0)	100	(100.0)	1,733	

다음엔 취학하고 있는 자녀수는 몇명이나 되는가를 보면 전혀 한 사람의 취학자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구가 23.5%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취학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명의 취학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를 보면 2인의 취학자녀를 가진 경우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은 1인의 취학자녀를 가진 경우가 20.4%이고, 3인의 취학자녀를 가진 경우가 18.4%로서 서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취학자녀를 1인(人) 내지 2인(人)을 가진 가구에 비율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4인(人) 이상의 취학자녀를 가진 가구는 극히 적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많은 취학자녀를 가진 경우는 서울에서 8명의 취학자녀를 가진 경우로서 본 조사에서는 단 한가구 있었다.

서울 사람들은 가족계획의 실시로서 일찍 단산하는 경향이 있어 학령전 어린 아동을 가진 가구가 어느 지역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고등학교나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는 자녀들의 수는 또한 어느지역보다 높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가 도시에 있어서 농어촌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자녀수 자체에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중에서도 가족계획이 보급되고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자녀를 둔 가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가족계획 실시의 효과는 지난 수년간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이나 기타 도시에 사는 가족들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일반적으로 여럿 두고 있다. 서울에서 3명 이상의 취학자녀를 가진 비율이 37%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읍에서 36.7%, 중소도시에서는 34.7%이다, 농촌에서도

27.6%를 나타낸다. 어촌은 어느 지역보다 가장 현저히 낮은 15%정도이다. 이처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높다. 그들의 교육년한이 의무교육인 국민학교정도를 훨씬 넘어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이 가족의 생계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 표 32 >

취학자녀수 (%)

지역별 자녀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없 음	126 (21.5)	114 (25.3)	55 (18.5)	81 (27.0)	32 (32.0)	408 (23.5)
1 인	124 (21.2)	94 (20.9)	55 (18.5)	60 (20.0)	21 (21.0)	354
2 "	120 (20.5)	86 (19.1)	78 (26.3)	76 (25.3)	32 (32.0)	392 (22.5)
3 "	109 (18.6)	78 (17.3)	62 (20.9)	58 (19.3)	13 (13.0)	320
4 "	63 (10.8)	48 (10.7)	30 (10.1)	22 (7.3)	1 (1.0)	164
5 "	32 (5.5)	26 (5.8)	9 (3.0)	3 (1.0)	1 (1.0)	71
6 "	10 (1.7)	3 (0.7)	7 (2.4)			20
7 "	1 (0.2)	1 (0.2)	1 (0.3)			3
8 "	1 (0.2)					1
계	586 (100.2)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1733

다음에 노령자들을 모시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몇할인가보면 2 할이나 된다. 노령자의 연령 기준은 남자가 65세, 여자는 60세이다.

한 가구에 몇 사람의 노령자를 모시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1인(人)의 노령자만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16.4%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2인(人)의 노령자를 모신 가구는 극히 차이 있는 3.6% 까지 저하 되고 있다. 노령자들 두명 모시고 있는 가구들의 수는 극히 소수이므로 지역적인 경향을 알수 없지만 한명만 모시고 있다는 가구들은 소도시와 농촌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다.

도시 가족은 노령자를 함께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어느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는듯도 하다.

농촌에 갈수록 경제적 수입과 생활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령자를 모신다는것은 파중한 부담이 될수 있다.

한국의 전통은 노 부모를 아들이 모시고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정년 퇴직자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없는 실정에서는 수입이 넉넉하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는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것이다.

<표 33> 노령자수 (%)

지역별 노령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484 (82.6)	356 (79.1)	231 (77.8)	221 (73.7)	91 (91.0)	1,383 (80.0)
1인	78 (13.3)	77 (17.1)	59 (19.9)	64 (21.3)	7 (7.0)	285 (16.4)
2인	24 (4.1)	17 (3.8)	6 (2.0)	15 (5.0)	1 (1.0)	63 (3.6)
3인			1 (0.3)			1 (0.1)
4인					1 (1.0)	1 (0.1)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자녀를 여럿 둔 경우 그 부담이 만 아들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분담하여 거출한 것으로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인정있는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지만 노후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것이다. 때로는 여러 자녀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자녀들이 넉넉치 못해 노부모에게 대하여 무관심 하거나 실제로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형편은 노후생활의 위협이 되는것이다.

다음엔 노령자와 가구주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면 노령자들이 가구주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10.7%로서 가장 많고 다음엔 가구주 자신이 노령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4%이다. 그 외는 모두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 노령자동거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

지역별 노령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484 (32.6)	356 (79.1)	231 (77.8)	221 (73.7)	91 (91.0)	1,383 (80.0)
가 구 주	4 (0.7)	13 (2.9)	8 (2.7)	14 (4.7)	2 (2.0)	41 (2.4)
가 구 주 부 인	7 (1.2)	4 (0.9)	4 (1.3)	9 (3.0)		24 (1.3)
가구주와 부인	6 (1.0)	8 (1.8)	3 (1.0)	15 (5.0)		32 (1.8)
조부 또는 부	9 (1.5)	5 (1.1)	8 (2.7)	3 (1.0)	1 (1.0)	26 (1.5)
조모 " 모	55 (9.4)	54 (12.0)	39 (13.1)	33 (11.0)	5 (5.0)	186 (10.7)
조부모 " 부모	15 (2.6)	7 (1.6)	3 (1.0)	4 (1.3)		29 (1.7)
조부모와 부모	1 (0.2)	2 (0.4)				3 (0.2)
직 계 외 노인	3 (0.5)	1 (0.2)	1 (0.3)	1 (0.3)		6 (0.3)
기 타	2 (0.3)				1 (1.0)	3 (0.2)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다음엔 신체적 불구자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비 정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 조사 대상이 되었던 전체 가구 가운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 정상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9할 정도의 가구에서 비 정상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반면에 비 정상자들을 한 사람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정도 11%나 되고 있다. 이 비율은 매 10가구당 한가구 정도에 불구자나 정신장애자등의 소위 비 정상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자가 대부분의 경우는 한집에 한사람정도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표본집단을 전국가구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삼는다면 8%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한명의 비정상자를 그리고 1%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2명의 비정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숫자를 타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높은 경향인지 아니면 낮은 경향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높은 비율의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정상자들은 가족들에게 평생토록 의지하며 완전히 비생산적으로 살아가야 할것이며 한국의 현 실정으로서는 국가의 보조나 사회적 대책이 전혀 없기때문에 개별적인 가족에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표 35>

비정상자수(%)

지역별 비정상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527 (89.9)	408 (90.7)	269 (90.6)	275 (91.7)	85 (85.0)	1,554 (89.0)
1인	54 (9.2)	34 (7.5)	25 (8.4)	21 (7.0)	13 (13.0)	157 (8.2)
2인	4 (0.7)	8 (1.8)	3 (1.0)	3 (1.0)	1 (1.0)	19 (1.1)
3인	1 (0.2)			1 (0.3)	1 (1.0)	3 (0.2)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다음엔 피고용인의 현황을 보면 86%인 1,494 가구가 1인의 고용인도 갖지 않고 있다. 고용인들의 수를 보면 1인을 고용하고 있는 가구가 180 가구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인, 3인 등의 순위이며 7인의 피고용인을 가진 가구가 단 한가구이며 8인, 9인의 고용인을 가진 가구는 없고 다만 10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가구가 3가구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피고용인을 가지지 않은 가구가 농촌지역 및 어촌지역에서 높고 서울이나 중소도시 및 읍에서 많은 숫자의 피고용인을 두는 경향이 보인다.

<표 36>

피고용인수 (%)

지역별 피고용인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없음	460 (78.5)	392 (87.1)	257 (86.5)	287 (95.7)	98 (98.0)	1,494 (86.0)
1인	105 (17.9)	35 (7.8)	28 (9.4)	12 (4.0)		180
2인	12 (2.0)	12 (2.7)	1 (0.3)		1 (1.0)	26
3인	4 (0.7)	3 (0.7)	5 (0.7)			12
4인	2 (0.3)	1 (0.2)	2 (0.7)	1 (0.3)	1 (1.0)	7
5인		1 (0.2)	2 (0.3)			3
6인	2 (0.3)	2 (0.4)	1 (0.3)			5
7인		1 (0.2)				1
8인						
9인						
10인 또는 그 이상	1 (0.2)	1 (0.2)	1 (0.3)			3
계	586 (99.9)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1

피고용인의 종류를 보면 피고용인 가운데는 식모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의 취업고용인 머슴, 식모와 취업고용인을 함께 고용하고 있는 경우의 순위이며 마지막으로 식모와 머슴을 두고 있는 순위이다.

피고용인 가운데는 식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이 식모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단연 높고 농촌에서는 식모를 두고 있는 가구가 하나도 없다.

<표 37>

피고용인의 종류(%)

종 류 \ 지 역 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없 음	460 (78.5)	392 (87.0)	257 (86.5)	287 (95.7)	98 (98.0)	1,494 (86.0)
식 모	107 (18.3)	25 (5.6)	9 (3.0)		1 (1.0)	142
머 슴	2 (0.3)	4 (0.9)	11 (3.7)	12 (4.0)		29
취업고용인	14 (2.4)	20 (4.4)	14 (4.7)		1 (1.0)	49
식모, 머슴		2 (0.4)	1 (0.3)			3
식모, 취업 고 용 인	3 (0.5)	7 (1.6)	5 (1.7)	1 (0.3)		16
계	586(100.0)	450 (99.9)	297 (99.9)	300(100.0)	100(100.0)	1,733

제 12 장 거 주 생 활

1. 주택소유 여부와 사용가능방수

본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이 총 응답자 1,733명중 1,379명으로 전체의 80%를 나타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이 97.7%,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판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다.

다음이 어촌의 경우로서 88.0%, 읍소재지의 경우에 82.8%, 서울의 경우엔 73.7%, 중소도시의 경우엔 71.1%이다.

이와같이 농촌지역이 판지역보다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서울 및 중소도시가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낮은 점은 상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8> 주택소유 여부 (%)

지역별 소유형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자기집	432 (73.7)	320 (71.1)	246 (82.8)	293 (97.7)	88 (88.0)	1,379 (80.0)
전세집	68 (11.6)	52 (11.6)	27 (9.1)	4 (1.3)	1 (1.0)	152
방	42 (7.2)	42 (9.3)	8 (2.7)			92
월세집	17 (2.9)	9 (2.0)	11 (3.7)		2 (2.0)	39
방	19 (3.2)	18 (4.0)	3 (1.0)	2 (0.7)	8 (8.0)	50
사택등	1 (0.2)	5 (1.1)	1 (0.3)			7
기타	7 (1.2)	4 (0.9)	1 (0.3)	1 (0.3)	1 (1.0)	14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한편 전세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8%, 전세방은 5.3%, 월세방인 2.9%의 순위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은 월세집으로서 2.3%이며 사택에 산다는 사람은 불과 0.4%로서 7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표본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한 것이어서 동적부에 의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였으므로 동적부에 기입될 정도로 주소가 안정된 인구층에 기울어진 느낌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자가를 소유치 않은 가구의 비율이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1가구당 몇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전 응답자 1,733명중 30%인 522명이 사용하는 방이 세개라고 응답하고 있고, 29.7%인 516명이 2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네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수는 16.4%, 한개로 응답한 가구수는 12.3%의 순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세개로 응답한 가구수가 29.7%로서 1위, 중소도시 역시 세개가 28.7%로서 1위, 읍과 농촌도 세개로 응답한 가구수가 비슷한 비율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에 비하면, 어촌은 네개라는 응답이 34%로서 세개라고 응답한 가구수(27%)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색이라 하겠다.

<표 39>

사 용 가 능 방 수 (%)

지역별 방 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개	110 (18.8)	64 (14.2)	27 (9.1)	13 (4.3)	10 (10.0)	224
2 "	136 (23.2)	119 (26.4)	102 (34.3)	136 (45.3)	23 (23.0)	516 (29.7)
3 "	174 (29.7)	129 (28.7)	98 (33.0)	94 (31.3)	27 (27.0)	522 (30.0)
4 "	103 (17.6)	74 (16.4)	35 (11.4)	38 (12.7)	34 (34.0)	284
5 "	43 (7.3)	44 (9.8)	25 (8.4)	12 (4.0)	3 (3.0)	127
6 "	14 (2.4)	11 (2.4)	3 (1.0)	5 (1.7)	3 (3.0)	36
7 "	6 (1.0)	9 (2.0)	7 (2.4)	2 (0.7)		24
계	586(100.0)	450 (99.9)	297(100.0)	300(100.0)	100(100.0)	1,733

2. 거주 생활전반에 대한 불만족도

일반적인 거주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①상수도 시설 ②하수도 시설 ③전기시설 ④변소 상태 ⑤오물처리 ⑥목욕탕 (공동탕 제외) ⑦우물 (펌프, 공동 우물포함) ⑧건물의 견고성 ⑨축매의 안정성 ⑩화재예방 및 ⑪수해 예방등의 11가지항목을 제시하고 이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점이 몇가지나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점으로써 1가지를 든사람은 1점, 두가지를 든사람은 2점...으로 점수를 주어 그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46%의 응답자가 불만족 점수 영점으로서 한개의 항목에도 불만족

스럽게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

둘째로는 불만족점수 1점을 든 사람들로써 21.6%이며 2점을 든 사람이 세째로 많아서 13.7%이며 가장 많이 불만족스러운 점수를 든 사람은 불만족 점수 8점을 든 사람으로서 0.4%이다.

지역별로 볼때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서 별도의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번 질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시설등이 도시 이외의 농어촌지대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농민들의 불만족점수가 어느지역보다 낮은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므로 서울과 중소도시 경우에만이 실정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사실상 시설이 어느지역보다 충분히 갖추어진 서울이지만 여러가지 시설에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서울의 불만족점수는 6점까지도 유의한수가 분포되어지고 있다.

<표 40> 거주 생활 (%)

지역별 불만 족점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0 점	228 (38.9)	221 (49.1)	131(44.1)	202 (67.3)	22 (22.0)	804 (46.0)
1 "	115 (19.6)	92 (20.4)	69(23.2)	65 (21.7)	34 (34.0)	375(21.6)
2 "	97 (16.6)	61 (13.6)	42(14.1)	25 (8.3)	12 (12.0)	237(13.7)
3 "	56 (9.6)	40 (8.9)	29 (9.8)	5 (1.7)	19 (19.0)	149 (8.7)
4 "	31 (5.3)	21 (4.7)	15 (5.1)	1 (0.3)	5 (5.0)	73 (4.2)
5 "	23 (3.9)	9 (2.0)	7 (2.4)	2 (0.7)	3 (3.0)	44 (2.5)
6 "	26 (4.4)	2 (0.4)	3 (1.0)		2 (2.0)	33 (1.9)
7 "	5 (0.9)	2 (0.4)	1 (0.3)		2 (2.0)	10 (0.6)
8 "	4 (0.7)	2 (0.4)			1 (1.0)	7 (0.4)
무 응 답	1 (0.2)					1 (0.1)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100.0)	100 (100.0)	1,733

3.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편”이라는 응답자 수가 전체의 23.5%로서 1위이며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자도 10%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불만족한편”이라는 응답자는 5.9%,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2.5%로서 대체로 만족해 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본조사 대상중 농어촌은 전연 제외 되었으며 서울과 중소도시 그리고 읍 중에서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의 응답자수가 51%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 해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매우만족”과 “만족한편”이 합계 314명이고 “매우불만족”과 “불만족한편”이 합계 86명으로서 약 3.7 : 1의 비율인데에 비하여 읍은 “매우만족”과 “만족한편”이 합계 210명이고 “매우불만족”과 “불만족한편”이 합계 41명으로서 약 5 : 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도시로 갈수록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하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여기서는 “만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8.4%로서 1위이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3.6%, “매우 만족”이 9.6%, “불만족한편”이 10.3%, “매우 불만족”이 4.7%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할것은 전 응답자중 33%에 해당하는 572명이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점이다. (비해당)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매우만족”과 “만족한편”의 합계가 343명이고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한편”의 합계가 98명으로서 3.5 : 1의 비율인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그 비율이 약 2.6 : 1이고 읍은 약 1.2 : 1, 농촌은 45 : 1이며 어촌은 1 : 0으로서 나타나 있다.

단 농어촌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수효가 적어서 농촌에서는 한명만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었고 어촌에서는 한명도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서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표 41> 하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65 (11.1)	71 (15.8)	86 (29.0)	253 (84.3)	97 (97.0)	572(33.0)
매우만족	109 (18.6)	37 (8.2)	19 (6.4)			165 (9.6)
만족한편	234 (39.9)	180 (40.0)	62 (20.9)	16 (5.3)	1 (1.0)	493(28.4)
그저그렇다	78 (13.3)	64 (14.2)	63 (21.2)	29 (9.7)	1 (1.0)	235(13.6)
불만족한편	64 (10.9)	66 (14.7)	49 (16.5)	1 (0.3)		180(10.3)
매우불만족	34 (5.8)	29 (0.4)	18 (6.1)			81 (4.7)
모르겠다	1 (0.2)	1 (0.2)		1 (0.3)		3 (0.2)
무응답	1 (0.2)	2 (0.4)			1 (1.0)	4 (0.2)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100.1)	100(100.0)	1,733

5. 전기 시설에 대한 만족도

전기 시설에 대해서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한 숫자는 전체의 20.6%이고 “만족한 편”으로 응답한 숫자는 전체의 42%로서, “불만족한편”의 2.7%나 “매우 불만족”의 0.9% 보다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다.

전기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해당”의 숫자는 전체의 25.9%이며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비해당”이 3.8%, 중소도시가 7.1%, 읍이 13.5%, 농촌이 90.3%, 어촌이

83.0%로서 도시에 비하면 농촌의 전기 시설은 거의 한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전기 시설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2 (3.8)	32 (7.1)	40 (13.5)	271 (90.3)	83 (83.0)	448(25.9)
매우만족	182 (31.1)	110 (24.4)	64 (21.5)	1 (0.3)		357(20.6)
만족한편	280 (47.8)	245 (54.4)	162 (54.5)	23 (7.7)	12 (12.0)	722(42.0)
그저그렇다	70 (11.9)	42 (9.3)	22 (7.4)	1 (0.3)	4 (4.0)	139 (8.0)
불만족한편	27 (4.6)	14 (3.1)	5 (1.7)	1 (0.3)		47 (2.7)
매우불만족	4 (0.7)	6 (1.3)	4 (1.3)	1 (0.3)		15 (0.9)
무응답	1 (0.2)	1 (0.2)		1 (0.3)	1 (1.0)	4 (0.2)
계	586(100.1)	450 (99.8)	297 (99.9)	300 (99.5)	100 (100.0)	1,732

6. 변소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변소시설이 “만족한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39%에 이르는데 비하여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가 31.6%로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변소 시설에 거의 무관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서 만족한편으로 기울고 있는데 반하여 어촌은 “만족한편”이 14.0%,

“그저 그렇다”가 46.0%, “불만족한 편”이 34.0%로서 대다수가 변소 시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변소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13 (2.2)	6 (1.3)	3 (1.0)	3 (1.0)		25 (1.4)
매우만족	72 (12.3)	49 (10.9)	12 (4.0)	20 (6.7)		153 (8.8)
만족하편	209 (35.7)	205 (45.6)	125 (42.1)	132 (44.0)	14 (14.0)	685 (39.0)
그저그렇다	139 (23.7)	128 (28.4)	113 (38.0)	122 (40.7)	46 (46.0)	548 (31.6)
불만족한편	99 (16.9)	47 (10.4)	36 (12.1)	16 (5.3)	34 (34.0)	232 (13.4)
매우불만족	51 (8.7)	15 (3.3)	8 (2.7)	3 (1.0)	5 (5.0)	82 (4.7)
무응답	3 (0.5)			4 (1.3)	1 (1.0)	8 (0.5)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7. 오물 처리에 대한 만족도

오물처리에 대하여 “만족한 편” 이라고 응답한 숫자는 전체의 40%로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숫자가 전체의 28.3%로서 둘째로 많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숫자가 오물처리에 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가 서울이 19.3%, 중소도시가 20.9%, 읍이 33.7%, 농촌이 40.0%, 어촌이 64.0%로서 시골로 갈수록 오물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함을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 표 44 > 오물처리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19 (3.2)	17 (3.8)	14 (4.7)	14 (4.7)		64 (3.7)
매우만족	55 (9.4)	54 (12.0)	12 (4.0)	25 (8.3)	1 (1.0)	147 (8.5)
만족한편	213 (36.3)	227 (50.4)	130 (43.8)	125 (41.7)	9 (9.0)	704 (40)
그저그렇다	113 (19.3)	94 (20.9)	100 (33.7)	120 (40.0)	64 (64.0)	491 (28.3)
불만족한편	116 (19.0)	48 (10.7)	35 (11.8)	12 (4.0)	23 (23.0)	234 (13.5)
매우불만족	66 (11.3)	9 (2.0)	6 (2.0)		2 (2.0)	83 (4.8)
모르겠다				2 (0.7)		2 (0.1)
무응답	4 (0.7)	1 (0.2)		2 (0.7)	1 (1.0)	8 (0.5)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8. 목욕탕에 대한 만족도

목욕탕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에서 주의할 것은 비해당자 즉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숫자가 전체의 8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족한 편」의 응답자가 전체의 5.9%로서 제일 많고 불만족한 편도 3.3%가 되어 둘째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과 어촌에서는 목욕탕시설을 가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한사람도 없어서 본 항목에서는 워낙 비해당에 해당되며 기타 지역을 보면 서울의 경우엔 목욕탕을 갖지 않고 있는 집이 61.6%로서 중소도시의 경우 88.7%, 읍소재지의 경우 96.6%에 비교하면 목욕탕시설을 가진 집이 많은 편이다.

< 표 45 >

목욕탕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61 (61.6)	399 (88.7)	287 (96.6)	300	100	1,447 (83)
매우만족	25 (4.2)	7 (1.6)	1 (0.3)			33 (1.9)
만족한편	70 (11.9)	27 (6.0)	5 (1.7)			102 (5.9)
그저그렇다	28 (4.6)	9 (2.0)	1 (0.3)			38 (2.2)
불만족한편	47 (8.0)	7 (1.6)	3 (1.0)			57 (3.3)
매우불만족	35 (6.0)	1 (0.2)				36 (2.1)
모르겠다	2 (0.3)					2 (0.1)
무응답	18 (3.1)					18 (1.0)
계	586 (99.9)	450 (100.1)	297 (99.9)	300	100	1,733

9. 우물에 대한 만족도

여기에서도 비해당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다. 역시 #만족한 편#이 전체의 26.8%로서 제일 많고 #그저 그렇다#가 10.2%, #불만족한 편#이 10.0%의 순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와 읍, 그리고 농촌의 비교적 만족해하는 경향에 비하여 서울은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특히 어촌은 #불만족한 편#이 53%로서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지역별로 보았을때 서울의 경우엔 우물(펌프, 공동우물)을 갖고 있지 않는 집이 67.2%인데 반해서 중소도시, 읍소재지, 농촌 및 어촌으로 갈수록 우물을 가진 집의 비율이 높다.

특히 농촌의 경우엔 10.1%, 어촌의 경우엔 2.0%를 제외하면 모두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 우물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특히 어촌의 경우엔 우물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까 한다.

또한 수도에 대한 만족도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농촌과 어촌에서는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가 비해당이었으며 또한 본표에 의하면 우물이나 펌프, 공동우물을 쓰지 않는 가옥이 농촌이 10.1%, 어촌이 2.0%안바,

이들 비해당자들은 음료수나 물을 어디에 의거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비해당자에 대한 해석이 의문시 되고 있다.

< 표 46 >

우물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94 (67.2)	159 (34.3)	74 (24.9)	31 (10.1)	2 (2.0)	660 (39)
매우만족	16 (2.7)	63 (14.0)	39 (13.1)	81 (20.3)	1 (1.0)	180 (10.4)
만족한편	70 (11.9)	142 (31.6)	124 (41.8)	119 (39.7)	9 (9.0)	464 (26.8)
그저그렇다	42 (7.2)	42 (9.3)	29 (9.8)	32 (10.7)	30 (30.0)	175 (10.2)
불만족한편	30 (5.1)	33 (7.3)	24 (8.1)	33 (11.0)	53 (53.0)	173 (10.0)
매우불만족	15 (2.6)	9 (2.0)	7 (2.4)	21 (7.0)	4 (4.0)	56 (3.2)
모르겠다	2 (0.3)					2 (0.1)
무응답	17 (2.9)	2 (0.4)		3 (1.0)	1 (1.0)	23 (1.3)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10.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안전도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안전도를 "만족한편" 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36.6%로서 제일 많고 32.3%의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의 숫자가 둘째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가 건물의 견고성이나 안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불만족하다는 의견에 비해 "만족한편"의 숫자가 약간씩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에 반하여 어촌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이 건물의 견고성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또한 그저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어촌에서 73.0 %로서 가장 높다.

< 표 47 >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안전도 (%)

안 전 도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48 (8.2)	7 (1.6)	1 (0.3)	27 (9.0)		83 (4.8)
매우만족	73 (12.9)	58 (12.9)	11 (3.7)	36 (12.0)	1 (1.0)	179 (10.3)
만족한편	187 (31.9)	165 (36.7)	149 (50.2)	127 (42.3)	7 (7.0)	635 (36.6)
그저그렇다	179 (30.9)	145 (32.2)	85 (28.6)	78 (26.0)	73 (73.0)	560 (32.3)
불만족한편	61 (10.4)	60 (13.3)	46 (15.9)	26 (8.7)	17 (17.0)	210 (12.1)
매우불만족	26 (4.4)	12 (2.7)	5 (1.7)	5 (1.7)		48 (2.8)
모르겠다	5 (0.9)	3 (0.7)				8 (0.5)
무응답	7 (1.2)			1 (0.3)	2 (2.0)	10 (0.6)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11. 주택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우선 이 항목의 비해당자는 64 %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은 시골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특별히 읍소재지만이 서울보다도 낮은 58.6 %의 비해당자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만족한편」이 전 응답자의 16.2 %로서 가장 많고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숫자는 전체의 8.4 %로서 둘째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그저그렇다」는 응답자의 수가 「만족한편」이라는 응답자의 수보다 반쯤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어촌만은 「그저그렇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0%로서 「만족한편」의 3.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 표 48 > 축매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안전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67 (62.6)	271 (60.2)	174 (68.6)	220 (73.3)	83 (63.0)	1,115 (64)
매우만족	53 (9.0)	24 (5.3)	11 (3.7)	11 (3.7)	1 (1.0)	100 (5.8)
만족한편	85 (14.6)	87 (19.3)	66 (22.2)	39 (13.0)	3 (3.0)	280 (16.2)
그저그렇다	50 (8.5)	34 (7.6)	27 (9.1)	24 (8.0)	10 (10.0)	145 (8.4)
불만족한편	12 (2.0)	25 (5.6)	17 (5.7)	4 (1.3)	2 (2.0)	60 (3.5)
매우불만족	8 (1.4)	6 (1.3)	2 (0.7)			16 (0.9)
모르겠다	1 (0.2)	2 (0.4)				3 (0.2)
무응답	10 (1.7)	1 (0.2)		2 (0.7)	1 (1.0)	14 (0.9)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12. 화재 예방에 대한 만족도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숫자가 전체의 33.6%로서 가장 많고 「불만족한편」이 11.5%로서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그저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서울이 25.4%, 중소도시가 34.9%, 읍이 32.7%, 농촌이 37.7%, 어촌이 66%로서 시골로 갈수록 무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9> 화재예방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바해당	138 (23.5)	45 (10.0)		109 (36.3)	4 (4.0)	296 (17.1)
매우만족	41 (7.0)	46 (10.2)	19 (6.4)	20 (6.7)	1 (1.0)	127 (7.3)
만족한편	148 (25.3)	131 (29.1)	126 (42.4)	47 (15.7)	6 (6.0)	458 (26.4)
그저그렇다	149 (25.4)	157 (34.9)	97 (32.7)	113 (37.7)	66 (66.0)	582 (33.6)
불만족한편	67 (11.4)	53 (11.8)	47 (15.8)	10 (3.3)	22 (22.0)	199 (11.5)
매우불만족	28 (4.8)	11 (2.4)	8 (2.7)			47 (2.7)
모르겠다	6 (1.0)	4 (0.9)				10 (0.6)
무응답	9 (1.5)	3 (0.7)		1 (0.3)	1 (1.0)	14 (0.9)
계	586 (99.9)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13. 수해 예방에 대한 만족도

수해 예방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질문에서는 「만족한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2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4.7%로서 둘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중소도시, 그리고 읍에서는 「만족한편」의 숫자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숫자보다 약간씩 높은데 비해 농촌은 「그저그렇다」(29.6%)가 「만족한편」(16.7%)보다 약간 높고 특히 어촌에서는 「그저그렇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0%이고 「만족한편」이 7.0%로서 극히 높은 무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음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지역별로 보았을때 수해 예방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입장에 있는 비해당자들은 농촌의 경우에 가장 높아서 42.3%이며 어촌의 경우엔 2.0%만이 비해당자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 생각이겠으나 읍소재지의 경우엔 4.4%만이 비해당자이고 농촌이 42.3%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다.

< 표 50 >

수해 예방에 대한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19 (37.4)	98 (21.8)	13 (4.4)	127 (42.3)	2 (2.0)	459 (26)
매우만족	57 (9.7)	55 (12.2)	48 (16.2)	23 (7.7)		183 (10.6)
만족한편	147 (25.1)	144 (32.0)	154 (51.9)	50 (16.7)	7 (7.0)	502 (29)
그저그렇다	86 (14.7)	117 (26.0)	59 (19.9)	89 (29.6)	77 (77.0)	428 (24.7)
불만족한편	33 (5.6)	23 (5.1)	15 (5.1)	9 (3.0)	13 (13.0)	93 (5.4)
매우불만족	31 (5.3)	5 (1.1)	8 (2.7)			44 (2.5)
모르겠다	4 (0.7)	4 (0.9)				8 (0.5)
무응답	9 (1.5)	4 (0.9)		2 (0.7)	1 (1.0)	16 (0.9)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1733

14. 주위환경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

모든 지역에 있어서 거주자들이 그들의 주위환경중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표에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모든 지역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교통을 위시하여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덟가지의 종류를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순위를 보면 「교통불편」이 가장 으뜸으로서 20%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은 「차도의 먼지와 소음」으로 12.6%의 응답자가 이것을 지적했으며 세째로는 시장의 원거리와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네째는 동리환경의 불편함 그리고 동리에 빈민가가 많은것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을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과 부합된 것들이어서 쉬히 납득할만 하며 가장 타당한 표시인 것이다.

이 순위에는 지역적인 차가 어느정도 엇보인다. 그러나 교통불편은 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점이다. 그리고 서울과 타도시지역에서 둘째로 지적된 점은 차도의 먼지와 소음이다.

그리고 보면 도시에서는 결국 교통에 관련된 문제가 첫째, 둘째로서 등장한 셈이다. 도시의 교통불편은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과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출퇴근시간의 교통지옥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불편인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타지역과의 접촉을 위한 교통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 농촌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또한 교통이 빈번한것만큼 그것에 따르는 도로포장과 교통질서가 안정되지 않아 많은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므로 도시민의 신경을 더욱 자극하여 생활환경을 불쾌하게 만든다. 읍소재지 주민들은 차도의 먼지와 소음을 교통불편보다 더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읍정도의 지역에서는 도로포장이 더욱 미비한 상태이므로 당연한 표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사실은 농촌거주민들에게 둘째로 불만의 대상이 되는 시장거리와 환경상태이다.

농촌에서의 시장은 아직도 몇일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서는 전통적제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이 서는 장소는 모든

부락에서 차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로서 패걸리는 원거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이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 응답자들은 시장을 세번째의 불만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서울사람들의 대부분은 매일 시장을 보아야 하는 입
장이므로 큰 시장으로 매일 출입하기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적은 반찬거리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는 이웃가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사람
들에게 시장에 대하여 특별히 느끼게 하는 점은 그 불결한 상태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상가건물을 여기저기
전립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는 상가보
다 더욱싼 편이어서 많이 이용하게 되며 그리고 많은 시장이 불결한
상태로 계속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세째, 네째의 순위로서 지적한 점은 동리환경의
불결함과 빈민가가 많다는 사실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빈민가에
특별히 예민하지 않은듯 하나 읍과 농어촌에서는 한결같이 이점을
지적하였다. 도시에서는 빈민가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역
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난한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그들의 실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듯
하다. 도시민들은 빈민가에 대한 불만보다 동리환경의 불결을 더
욱 직접적으로 느끼는듯 하다. 이렇게 이 자료에 제시된 시민들
의 불만은 사실상 절박한 현실문제에 관련된 것으로써 하루바삐
개선되고 시정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표 51> 주위환경 중에서 가장 불만족한 것 (%)

불만족한 것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없	읍	113 (9.3)	100 (22.2)	62 (20.9)	47 (15.7)	11 (1.0)	333 (19)
교 통 불 편		130 (22.2)	70 (15.5)	45 (15.2)	86 (28.7)	19 (19.0)	350 (20)
시장, 원거리, 불결		79 (13.5)	49 (10.9)	24 (8.1)	39 (13.0)	8 (8.0)	199 (11.5)
차도의 먼지소음		87 (14.8)	72 (16.0)	46 (15.5)	13 (4.3)	1 (1.0)	219 (12.6)
차 도 위 험		17 (2.9)	18 (4.0)	11 (3.7)	28 (9.3)	12 (12.0)	86 (5.0)
동 리 불 결		70 (11.9)	50 (11.1)	39 (13.1)	7 (2.3)	1 (1.0)	167 (9.6)
동리에빈민가가 많음		10 (1.7)	17 (3.8)	29 (9.8)	27 (9.0)	5 (5.0)	88 (5.1)
동리 내 공장 피해		17 (2.9)	16 (3.6)	10 (3.4)		1 (1.0)	44 (2.5)
동리 내 유흥업소		16 (2.7)	15 (3.3)	8 (2.7)	10 (3.3)		49 (2.8)
기 타		28 (4.8)	30 (6.7)	14 (4.7)	31 (10.3)	41 (41.0)	144 (8.3)
모 르 겠 다		11 (1.9)	10 (2.2)	6 (2.0)	10 (3.3)	1 (1.0)	38 (2.2)
무 응 답		8 (1.4)	3 (0.7)	3 (1.0)	2 (0.7)		16 (0.9)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1,733

제 13 장 가구상황과 거주생활에 관한 문제점 제시

금번 전국의 도시, 읍, 농촌 및 어촌을 상대로 한 표본가구조사 자료에 의한 가구주와 가구의 기본상황은 이미 제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실태 중에서 특히 가정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유의해야 할 문제되는 현상을 지적하려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에 포함된 1,733 가구의 가구주들중 13.5%가 무직자 또는 실업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에서는 그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나 어촌과 도시에서는 현저히 높다. 특히 어촌에서 실직된 가구주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한 가구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들이 무직이나 실직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가족전체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록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주의 경우 일지라도 그들의 직업을 고찰하면 저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직업의 전체적 비율분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인구의 과반수가 농업분야에 속하고 있는 국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낙후된 농촌의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들의 비율 다음으로 높은 것은 단순노동자와 기술공으로 규정된 직업계층이다. 이들 역시 도시의 저소득 근로층을 형성하며 이들의 수입으로는 가족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농촌의 영세농민층과 도시의 저소득근로층은 우리 사회계층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경제생활이 가구주의 직업으로서 보장되기에는 요원한 단계에 있다. 모든 근로층을 위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보장이 가정복지의 가장 원초적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 가구의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소위 핵가족형태가 모든 지역에서 단연코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통적인 대가족형태가 핵가족 단위로 변하는 것은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 있어서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도 핵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들의 비율이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현저하지 않다. 겨우 3~4%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어촌에서의 핵가족형태가 어느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78%에 해당하는 가구들이며 이것은 서울시의 핵가족 비율인 66%보다 12%나 높다. 핵가족이란 반드시 도시화에서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님을 이로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어촌은 도시화에서 요원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의 형태를 지닌 가구가 가장 높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민은 대다수가 피고용상태에 있음을 이번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어촌 가구의 26%만이 자영어업자들이다. 나머지 어민들 즉 4분의 3은 모두 피고용상태에 있는 극빈자들이다. 이들의 생활은 직업의 성질상, 그리고 한국어업경제의

구조상 가장 불안하며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극빈층이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으로 그리고 취업의 불안정으로 부부와 자녀 이외 노부모나 친척을 모시고 부양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어촌에서 핵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시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경제적 조건에서 강요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피고용상태에 있는 어촌의 극빈층은 농촌에서와 같이 농토에 정착하여 한곳에서 대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구해 타지에서 물러드는 사람들로 생각된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그들의 지역적 이동상황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계층이 아닌 다음에는 어촌에 대대로 정착해서 살아오는 가족은 더 드물것이다. 피고용상태에 있는 어민으로서 영세적 규모의 어업을 경영하는 단계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비교적 어업에 토대를 잡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어업에 토대를 잡고 한지역에 정착해서 살수있는 형편에 이르지 않고서 생업을 찾아 지역적으로 이동하며 최저의 생활이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핵가족 이외 부모친척과 동거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극빈층 어민들의 생활보장은 도시의 저소득 근로층과 농촌의 영세농가들 보다 더욱 절박하며 시급한 문제인 듯하다.

가족형태에서 나타난 바로서 일반적으로 각 가족이 양육하며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만 자료에서 알려진 바로서 전국적으로 한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4~5명 정도로 알

려졌으며 이 숫자는 현 경제상태로서 각 가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자녀수를 줄이기 위해 가족계획이 최근에 와서 그 효과를 발생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각 가구당 취학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를 알아본 결과 3명 이상의 취학아동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3분의 1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본다면 농촌지대에서 보다 도시에서 취학아동의 수가 현저하게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역시 농촌가족에서는 자녀들을 대체로 국민학교나 중학교 정도로 밖에 진학을 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대학까지 진학시키는 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여간 한 가정에서 자녀를 셋 이상씩 교육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과중한 부담인 것이다. 물론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로써 형식상 무료교육이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제도를 또한 앞으로는 중학교교육까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이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직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치 못하여 학부형들이 교육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은 더욱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의무교육제도의 의의를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번 조사대상의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들을 연령층별로서 취업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젊은 층에 미취업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15세 이상 65세 사이의 남녀중에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로써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연령별로 고찰하면 15~30세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의 7할이 미

취업상태이다. 20~24세 사이에서는 34.5%가 무직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무직자들중 5할이 고등학교와 대학출신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실직으로 인한 미취업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연령층이 그들의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국가적인 손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가족생활의 측면에서도 수입의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들이 더우기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들이 미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직업보도와 기술훈련이 대폭적으로 강력하게 실시되어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직업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주거생활 환경에 관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이번 자료들이 극히 제한된 그리고 애매한 대체적 경향만이 제시한다. 예로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오물처리, 목욕탕등에 관한 응답자들의 만족 또는 불만의 표시가 도시 주거자에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위에 지적한 모든 시설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갖추어 있지 않는 지역이 더 많은 현실이므로 시민들의 생활을 위한 최저한의 위생 또는 문화시설이 설치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다. 그리고 도시민들의 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표시가 생활정도와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사실상 저소득층에서 만족해하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도시에 있어서나 농어촌에 있어서나 위생 및 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가 아니면 아직도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생활의 복지를 위하여 최저한의 수준이나마 전국 각지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주거환경에 관하여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표시된 문제점은 첫째로 교통의 불편함이다. 도시는 도시대로 교통지옥을 경험하며 농촌은 농촌나름으로 완비되지 못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포장되지 않은 차도의 먼지와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교통난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또 한 가지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은 시장이 원 거리에 있는 것이다. 대도시에 있어서도 시장들이 도심지에 집중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시장이 더욱 더 먼 거리에 있어 뺄스편을 이용하거나 장시간 도보로서 가지 않을 수 없는 불편이 있다.

제 4 부

가정 생활 의 사회 경제적 특성

제 14 장 취업상황

가구는 그 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의식주 생활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경제적 단위가 된다.

따라서 어떤 가정의 안정성 또는 복지상태를 결정지우는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기반은 이러한 가정생활을 가능케하여 주는 취업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고찰할 내용은 어떤 가정에서 누가 어떤 산업부분의 어떤 직업에 종사하며,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일련의 취업상황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구주의 취업상황,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의 취업상황, 직업여성 및 실업자 등의 구체적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산업, 직업, 교육, 연령, 수입 및 생활수준 등을 관련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1. 가구주의 취업상황

먼저 가구주의 직업을 경제기획원에서 하고있는 직업별대분류법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가구주가 무직 또는 실업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가구의 15.2%, 중소도시가 15.3%, 읍이 9.1%, 농촌이 11.0% 그리고 어촌이 가장 많은 16.0%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가구주의 미취업율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수는 불과 각지역 공히 20~30%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가구가 한 사람의 취업자도 없는 취업상황 면에서의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무취업자 가구들이 전혀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장의 수입에 관한 항목에서 자세히 밝혀질터이지만 가구수입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가구주가 실업 또는 무직인 상태에 있는 경우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노령자이거나 주부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실업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후자의 추측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는 성인 남자로서 취업해 있어야 할 30대 내지 40대 연령층에 있는 가구주들 가운데서도 많은 미취업자가 있다는 사실에서 이다.

물론 금리수입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자기의 직업을 밝히기 꺼려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들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가구주미취업가구를 가구수입면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해질 수 있다. 卽 그들중 20~30%는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들의 취업수입이 있으며, 무취업자가구에 있어서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구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부동산수입, 동산수입, 불완전취업수입 또는 생계보조비 등에 의하여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하고 있는 가구주들의 지역별 직업구성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전문적, 기술적 내지 관리적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는 서울과 중소도시가 서로 비슷한 10%정도였으며 농어촌과 읍은 2~3%로 나타났다. 이 직업은 도시적 직업이므로 도시가 농어촌 보다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직업은 직업평가면에서 중상층 이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에 있고 수입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계층평가에 있어서도 중상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② 사무종사자의 경우는 서울이 14.8%, 중소도시가 10.4%, 읍이 6.1%, 농촌이 1.0% 그리고 어촌이 6.0%로 나타났다. 이 직업의 구성도 역시 도시와 농촌의 연속성에 따르는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③ 판매 종사자에 있어서는 서울이 22.7%, 중소도시가 25.5%, 읍이 24.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과 어촌은 각각 2.0%와 8.0%로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뒷받침해 준다. 첫째, 중소도시나 읍이 서울 보다 높다는 것은 전자의 상업도시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같은 군부에 속하는 읍이 농촌이나 어촌 보다도 훨씬 높고 도시지역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읍지역에는 농촌적 성격 보다도 도시적 성격이 더 짙게 나타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보아야겠다.

④ 가구주의 직업을 산업별로 볼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 중소도시와 읍에는 각각 11.1%와 33.0%나 되는 농가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중심가를 벗어난 외곽지대에는 거의 농촌과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둘째 비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읍지역은 67.0%가 비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읍은 산업적 측면에서 농촌적이기 보다는 도시적이라고 판단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17.3%나 되는 비농가가 있으며 어촌지역에 있어서도 어부는 54.0%로 나타나 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끝으로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단순노동자들의 직업
구성비를 보면 서울이 16.9%로서 가장 높았고, 중소도
시가 12.9%, 읍이 10.1%, 농촌이 2.0% 그리고 어촌이 8.0%로
나타났다. 이 직업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직업구성상의 차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읍이 도시적 직업구조를 갖고 있다
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7>참조)

<표 7> 가구주의 직업 (%)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실업 또는 무직	89	(15.2)	69	(15.3)	27	(9.1)	33	(11.0)	16	(16.0)
전문적, 기술적직업	56	(9.6)	55	(12.2)	11	(3.7)	6	(2.0)		
관리적직업	47	(8.0)	11	(2.4)	5	(1.7)	2	(0.7)		
사무종사자	87	(14.8)	47	(10.4)	18	(6.1)	3	(1.0)	6	(6.0)
판매종사자	133	(22.7)	115	(25.5)	73	(24.6)	6	(2.0)	8	(8.0)
농부등 유사직업	14	(2.4)	60	(11.1)	98	(33.0)	215	(71.7)	4	(4.0)
어부 "			1	(0.2)	1	(0.3)	26	(8.7)	54	(54.0)
광부 "	7	(1.2)	2	(0.4)			1	(0.3)		
교통통신 종사자	20	(3.4)	8	(1.8)	8	(2.7)	1	(0.3)	1	(1.0)
기능공단순노동자	99	(16.9)	58	(12.9)	30	(10.1)	6	(2.0)	8	(8.0)
서비스직업종사자	26	(4.4)	34	(8.7)	26	(8.8)	1	(0.3)	1	(1.0)
기타또는분류불능	8	(1.4)							2	(2.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가구주의 직업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직업에 관련하여 가구수입, 생활수준 등의 문제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에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육과의 상관관계만을 보기로 하겠다. 교육은 직업경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수입,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가 무직 또는 실업인 경우의 학력은 서울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숫자상으로 보면 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28%, 중고등 중퇴 또는 졸업이 45% 그리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이 11%나 되었다. 반면에 중소도시에서는 52%가 무학력자로서 문맹이거나 한문해득 또는 국문해득의 수준이었다. 읍과 농어촌의 경우도 중소도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취업하고 있는 가구주들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은 교육의 전체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 내지 관리적 직업종사자의 교육수준은 50% 이상이 대학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졌으며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중고등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단순노동자일지라도 초등 내지 중학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 보다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직업별로 교육수준의 차이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단순노동자의 경우만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무학자이거나 초등정도의 학력 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최저수준이었다.

한편 농업종사자들의 지역별 교육수준을 보면 중소도시와 읍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초등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50%가 무학력자였고 36%가 초등, 16%가 중고등의 학력을 가졌다. 어촌의 경우도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전체 어업종사자중 48%가 무학력자였고 초등이 41%, 중고등이 11%로 나타났다.

2. 취업자수,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및 여성취업자

가구의 취업상황에서 다음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총수,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취업상황 및 직업여성에 대한 검토이다.

먼저 가구당 평균취업인수를 지역별로 산출하여 보니 서울이 1.3인, 중소도시가 1.4인, 읍과 농촌이 가장 많은 1.6인, 그리고 어촌이 1.4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가장 적고 읍과 농촌이 가장 많은 이유는 <표 8>에 나타난 바와같이 평균가족원수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읍과 농촌이 훨씬 더 많고 가구주의 취업율에 있어서도 후자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도시지역의 자녀들은 취업자 보다 취학자가 농촌이나 읍지역 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표 8>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8> 지역별 가구당 평균 취업자수, 가구주 평균취업율, 평균 가구원수 및 평균가족수(인수)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평균 취업자수	1.3	1.4	1.6	1.6	1.4
가구주평균취업율	0.85	0.85	0.91	0.89	0.84
평균 가구원수	6.0	6.2	6.7	6.5	5.8
평균 가족원수 (피고용자제외)	5.7	5.7	6.4	6.4	5.8

<표 8>로부터 우리는 가구당 평균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수를 산출해 낼수 있을 것이다. 즉 가구당 평균취업자수에서 가구당 평균 가구주취업자수를 감하여 줌으로써 나타난 가구주 이외 취업자수는 가구당 평균 0.5 ~ 0.7 인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5 인, 중소도시가 0.6 인, 읍과 농촌이 0.7 인 그리고 어촌이 0.5 인으로서 읍과 농촌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어촌이 가장 적었다.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아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 중소도시가 52%, 읍과 농촌이 가장 높은 61% 그리고 어촌이 60%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가구주의 부인과 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은 부인취업이 19.7%, 딸의 취업이 18.1%이며, 중소도시는 13.9%와 20.3%, 읍은 17.5%와 12.9%, 농촌은 7.3%와 14.1% 그리고 어촌은 18%와 12%로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여성취업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취업상황만을 다시 고찰하여 보면, 물론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를 전체로 했을 경우 서울이 42.4%로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39.8%, 읍이 31.6%, 농촌이 가장 낮은 26.7% 그리고 어촌이 30.0%로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여성취업자가 더 많은 이유는 도시지역에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은 여성취업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 장 참조)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연령구조는 비교적 청장년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체로 20대가 가장 높은 50% 내지 60%의 비율이고 30대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직업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전체가구의 취업전망과 직업적 이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직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높은 교육수준과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필요로 하거나 재산상의 배경이 있어야될 전문직, 기술직 또는 관리직 직업종사자들의 경우는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가 훨씬 낮은 비율이었다. 특히 관리직 직업에 있어서는 전체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가운데서는 65 인이나 되고 있는 반면에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가운데서는 단지 3인에 불과하였다. 둘째 판매직종사자에 있어서는 가구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가구주 이외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과 중소도시는 8% 정도가, 읍은 5%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째로 사무직종사자의 경우는 후자가 전자 보다 읍과 농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10% 정도나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주가 80.5%인데 비해서 가구주 이외 취업자는 그들중 47.6%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구주가 64.3%인데 비해서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는 그들중 50.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단순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지역 공히 가구주 보다는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비율의 차이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컸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즉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여성은 가구주의 직업구성에 비해서 전문적, 기술적 또는 관리적 직업이나 사무직종사자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사무직종사자나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또는 단순노동자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농촌지역의 농부와 어촌지역의 어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주 보다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화 내지 공업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사무직종사자나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또는 단순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연히 가구주 이외 취업자들은 여기에 흡수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향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들이 비농의 직업, 특히 기술적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자나 서비스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9>참조)

<표 9>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직업 (%)

지·업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전문적 기술직	11.3	9.2	14.4	13.2	4.1	5.8	2.2	3.4	—	—	—	—
관 리 직	9.5	1.2	2.9	—	1.9	—	0.7	—	—	—	—	—
사 무 종 사	17.5	26.5	12.3	21.8	6.7	8.8	1.1	8.7	7.1	8.0	—	—
판 매 종 사	26.8	18.1	30.2	22.2	27.0	22.2	2.2	9.7	9.5	18.0	—	—
농 부 등	2.8	4.8	13.1	6.0	36.3	18.7	80.5	47.6	4.8	6.0	—	—
어 부 등	1.4	0.4	0.3	—	0.4	—	9.7	—	64.3	50.0	—	—
광 부 등	—	—	0.5	—	—	—	0.4	—	—	—	—	—
교 통 , 체 신	4.0	0.8	2.1	2.6	2.7	8.2	0.4	0.5	1.2	—	—	—
기 능 공 등	19.9	26.1	15.2	19.9	11.1	19.3	2.2	15.5	9.5	2.0	—	—
써 비 스	5.2	5.2	8.9	12.4	9.2	15.2	0.4	6.8	1.2	2.0	—	—
기타 분류불능	1.6	7.6	—	1.9	—	1.8	—	7.8	2.4	10.0	—	—
계	100.0	99.9	99.9	100.0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	—

다른 한편의 문제로서 가구주의 취업상황과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취업상황을 각각의 전체에 대한 비율로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의 경우 가구주의 구성비율 대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구성비율은 서울이 34% 대 19%이고 중소도시가 54% 대 20%, 읍이 70% 대 27%이며 농촌이 91% 대 17%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상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이 32% 대 64%, 중소도시가 37% 대 62%, 읍이 23% 대 52% 그리고

농촌이 0.6% 대 37.9% 등으로서 나타났다. 이와같이 자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주에서 보다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에게서 훨씬 더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그 비율의 차이는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현격하게 크고 상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그 비율의 차이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가구주 이외 취업자들이 자영보다 상용에 더 많은 취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농촌지역에서는 가구주의 직업의 대부분이 자영농이므로 그 이외의 취업자의 직업은 상용이거나 가내종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들의 교육수준과 결혼관계이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그 해당지역의 가구주의 교육수준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의 정도는 대도시인 서울에서부터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문맹자의 취업은 각 지역이 모두 2% 내지 4%에 불과한데 비해서 취업중인 가구주의 문맹율은 서울이 2%, 중소도시가 6%, 읍이 8% 그리고 농촌이 가장 높은 20%이며 어촌은 14%나 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가구주 보다 낮은 연령층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았었다는 데에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은 끝으로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의 결혼관계를 보면 대체로

이는 지역에서나 비슷하게 기혼자가 27% 내지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촌이 가장 높았고 농촌이 가장 낮았다. 그 이유는 어촌에 있어서는 주부들의 행상이 많고 농촌에서는 대부분의 주부가 가사종사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가구주의 실업 또는 무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다룬 가구주의 취업상황에서도 간단히 언급한바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관련시켜 보다 더 자세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구주가 실업 또는 무직인 가구수는 서울이 15.2%, 중소도시가 15.3%, 읍이 9.0%, 농촌이 11.0% 그리고 어촌이 가장 높은 16.0%를 기록하였는데 이들의 연령적 특성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실업 또는 무직인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전체가구주의 평균연령 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법적으로 노령자라고 취급되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의 통계숫자로 비교하여 보면 전체가구주 가운데서 이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서울이 2.4%, 중소도시가 4.8%, 읍이 3.7% 그리고 농촌이 11.3%인데 비해서 실업 또는 무직인 가구주 가운데서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주는 서울이 12.3%, 중소도시가 26.3%, 읍이 17.9%, 농촌이 51.5% 등으로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농촌에서는 노령자의 수가 가장 많으면서 역시 이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일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노령자의 수가 농촌 보다는 훨씬 적으면서 노령자라고 하여 실업이거나 무직인 상태에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훨씬 더 낮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노령자에 속하지 않는 가구주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대부분은 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에 있으면서 실업 또는 무직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합하여 볼 경우에는 서울이 60%, 중소도시가 63%, 읍이 39%, 농촌이 82%, 그리고 어촌이 50% 정도나 되어 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실업 또는 무직자중 반수 또는 그 이상이 이미 노령자이거나 노령화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재취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층에 있는 가구주가 실업 또는 무직인 상태에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제 2세대에 의한 취업으로 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사업의 실패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가구주가 실업 또는 무직인 경우를 교육수준 면에서 볼 때에는 또 다른 특징을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곧 이들의 평균교육수준이 전체가구주의 평균교육수준 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전체가구주의 평균연령 보다 실업 또는 무직인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훨씬 더 높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은 낮아진다는 점도 있겠으나, 이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문맹 내지 무학력자의 실업율은 매우 높은 반면에 대학출신들의 실업율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

이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이 되면 육체노동으로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구주의 실업 또는 무직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첫째로는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가구주의 10% 또는 그 이상이나 되는 가구주가 실업 또는 무직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가구주가 일반가정경제생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면에서 볼때 한국에는 많은 가구가 그들의 경제생활이 비정상적이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장에서도 언급한바 있었지만 이들 가구의 모두가 가구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까지를 포함하여 볼때에 순전한 무취업자가구는 서울시 전체의 5.5%, 중소도시가 3.6%, 읍이 2.7% 농촌은 1.7% 그리고 어촌이 4.0%로 나타났으며 더욱 수입면에서 볼때에는 취업에 의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가구, 즉 동산수입이나 부동산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도 제법 많으리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전적으로 수입이 없는 가구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세 이상의 노령퇴직한 가구주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50대로서 아직 취업할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조기노인화현상은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의 인력개발문제에 관련되며 또한 하나하나의 가정경제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의 문제와 상관성이 높은 것이지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장을 보다 빨리 잃게되거나 그만두게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낮은 교육수준에서 취업한 직업이란 대체로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노인화하여감에 따라 체력이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를 들수가 있겠다.

4. 미취업자

취업상황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를 미취업자 전반에 대한 검토이며, 이 문제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에 있어서 결손가정문제에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개발 특히 인력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조사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이 방면의 조사자료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 분석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취업자에 대한 정의와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의 미취업자는 다음과 같은 정의하에 분류된 사람들이다. 즉 취업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서 취업하지 않고 있는 모든 가구원을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구원이 대부분 가내종사자이거나 농업노동 즉 품팔이라도 하고 있으므로 모두 제외시켰으며 여자의 경우는 기혼자일 때에는 대부분 가사를 맡고 있는 주부이므로 역시 미취업자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학생, 군인, 노령자 및 심신장애자 등도 모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연령상에 있어서 만 14세 미만인자와 남자 65세 이상인자도 해당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한정에 의거하여 집계된 미취업자의 가구당 평균인수는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0.5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관한 속성가운데서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 부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전체미취업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미취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구원은 가구주의 딸이었다. 각지역의 대체로 40% ~ 50% 정도가 딸의 미취업으로 나타났고 서울만이 가장 낮은 31.5%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미취업으로서 미취업자 전체가운데서 2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아들의 미취업은 그 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딸의 미취업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들 가정에는 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높진 낮진간에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울에서 딸의 미취업률이 다른 지역 보다 낮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미혼한 딸의 취학자수가 더 많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취업여성의 수가 다른지역 보다 더 많다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미취업자의 성비는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거의 전부가 남자로 이루어져 있는 가구주들 가운데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들 미취업자의 미취업사유는 무엇인가? 본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취업사유는 실업과 미혼여자의 무직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전체 미취업자들 가운데서 서울이 52.8%, 중소도시가 53.0%, 읍이 40.6%, 농촌이 36.8% 그리고 어촌이 52.5%로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즉 미혼여자로서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서울에서는 32.8%, 중소도시 33.5%, 읍 39.6%, 농촌 47.4% 그리고 어촌에서는 52.5%로 나타나 전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반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실업이란 도시적인 현상이며 여자의 경우는 도시가 농촌 보다 취업의 기회면에서 더 조건이 좋고 또한 도시지역은 여성취업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가지의 미취업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들은 예상외로 극히 적었으며 각 지역 공히 10%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취업사유는 질환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체로 전체미취업자 중에서 4% 정도가 농촌은 10% 정도가 여기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미취업의 수는 적은 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의 국민보건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을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노동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이 질환으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바단 국가적인 전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크게 위협을 주는 중요한 압력 요소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 표 9 > 참조)

< 표 10 > 미취업자의 미취업사유 (※ 농가제외 : %)

지역별 미취업사유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미혼여자 가사	77 (32.8)	62 (33.5)	40 (39.6)	9 (47.4)	42 (52.5)
" 질환, 심신장애	2 (0.9)				
남자 불구	4 (1.7)	8 (4.3)	4 (4.0)		2 (2.5)
" 정신 질환					1 (1.3)
" 질환	9 (3.8)	7 (3.8)	8 (7.9)	2 (10.5)	4 (5.0)
" 정년퇴직, 노령 쇠약	10 (4.3)	8 (4.3)	1 (1.0)		
" 실업	124 (52.8)	98 (53.0)	41 (40.6)	7 (36.8)	29 (36.3)
기타	9 (3.8)	2 (1.1)	6 (5.9)	1 (5.3)	2 (2.5)
계	235 (100.1)	185 (100.0)	101 (100.0)	19 (100.0)	80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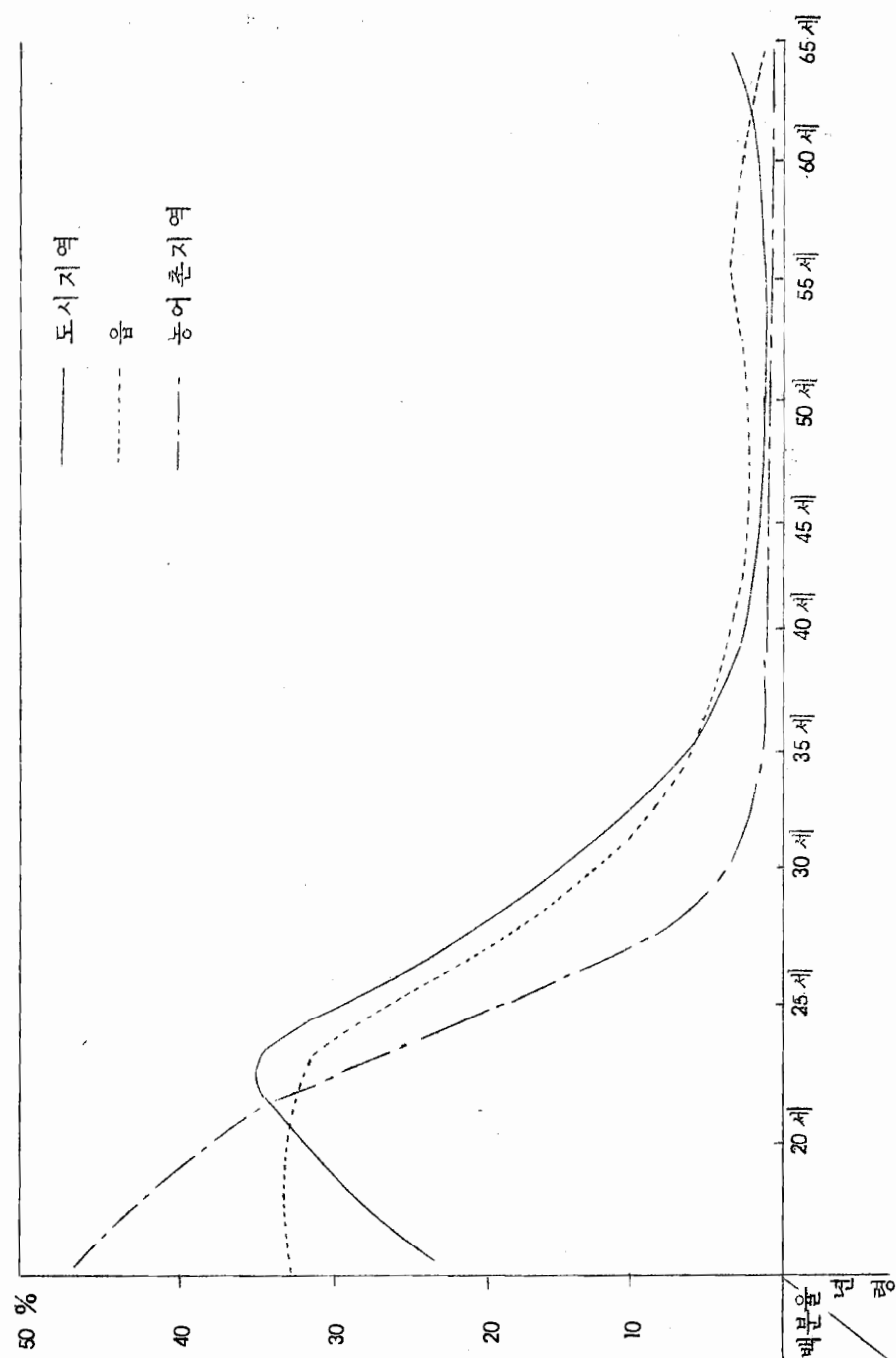
그러나 역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취업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도시지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2인 정도나, 여자의 경우는 1.3인 정도나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그 대부분이 취학할 연령에서 진학은 계속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20세 전후의 연령층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생산적인 일에 조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 점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아울러 고용증대 내지는 인력개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들의 연령구조를 도시, 읍 그리고 농어촌의 3개 지역구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특징은 다음의 <표 11>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20세 전후의 연령에 가장 많은 미취업자가 있으며 둘째 이 연령층에서의 미취업율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셋째 30세~50세의 장년층에서의 미취업은 거의 없으나 50세~55세의 노령화 초기에 있는 연령층에서 다소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표 11> 참조).

미취업자에 관한 마지막 문제로서 그들의 교육수준에 관련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뚜렷한 현상은 연령구조에서 암시된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있어서 중학이상의 교육을 받고도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소녀가 많다고 하는 점이다.

지역별로 대부분의 미취업자의 학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는 대학이 18%, 중도시가 57%, 초등이 18%였으며 중소도시는 중고등이 54%, 초등 30%로 나타났고 읍에 있어서도 중소도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11 미취업자의 연령구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미취업자들이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인력개발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제 15 장 가구수입과 가계

가구수입은 가계와 생활수준에 직접적으로 상관되며 실제로 있어서 가정생활에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경제의 객관적 지표가 된다. 여기서 사용한 수입이라는 말은 소득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으나 단지 근로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수입뿐만 아니라 편의상 구호에 의한 수입까지도 포괄하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가구수입문제를 먼저 수입액수면에서 지역간의 차이, 한 지역내에서의 차이문제와 취업자수와의 상관관계 및 수입있는 가구원과 수입의 원천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누가 얼마나 어떠한 수입에 의하여 벌어들이는가 하는 문제를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에 관련시켜 검토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구수입이 생활비로 어떻게 쓰여지며 과부족관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가구수입과 수입의 원천

전체조사대상가구의 조수입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전체조사대상가구의 지역별 가구당 평균조수입액은 대도시로부터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둘째로 각지역들 내에서의 가구들간의 조수입액의 차이는 농어촌지역에서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첫째의 문제에 관하여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각지역별 월평균조수입액을 볼 것 같으면 서울이 가장 많은 34,027 원, 중소도시가 26,157 원, 읍이 20,815 원, 농촌이 12,205 원 그리고 어촌이 가장 적은 11,320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를 도시, 읍, 농어촌의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다면 대략 3:2:1의 비율이라고 산정할수가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현격한 소득격차는 농어민의 소

득중대정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을 긴급히 요망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 두번째 문제로 지적된 각지역내에서의 소득격차문제도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제기되고있다.

각 지역내에서의 소득격차는 농촌지역에서 보다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인 서울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최저소득층으로 간주되는 5천원미만의 수입밖에 없는 가구가 전체에 3.3%나 되는 반면에 한국전체의 수준에서 볼 때 최고소득층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5만원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18.9%에 달하고 있으며 74.6%의 가구들이 5천원에서 5만원사이의 소득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5천원 미만의 소득층에 5.0%의 가구가 5만원 이상의 소득층에 10.6%가 그리고 5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는 83.9%의 가구가 역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읍의 경우에 있어서도 5천원 미만에 5.7%, 5만원 이상에 6.8%, 그리고 5천원과 5만원사이에 86.9%의 가구가 다소 저소득층으로 기울어진 경향은 있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가구의 76.0%가 3천원에서 2만원 사이의 소득층에 속하여 있었으며 2만원 이상의 소득층에 있는 가구는 불과 16.2%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촌의 경우도 전체가구의 84.0%가 3천원에서 2만원 사이의 소득층에 있었으며 그 이상의 소득층은 농촌 보다도 훨씬 적은 11.0%에 불과 하였다. (< 표 11 > 참조)

<표 11>

가구조수입액 (%)

지역별 수입액	사, 읍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9 (1 .5)	7 (1 .6)	3 (1 .0)	3 (1 .0)	2 (2 .0)
3000 원 미 만	2 (0 .3)	3 (0 .7)	1 (0 .3)	17 (5 .7)	3 (3 .0)
3000 ~ 5000 "	9 (1 .5)	12 (2 .7)	13 (4 .4)	36 (12.0)	9 (9 .0)
5000 ~ 10000 "	43 (7 .3)	68 (15.1)	53 (17.8)	98 (32.7)	31 (31.0)
10000 ~ 15000 "	56 (9 .6)	85 (18.9)	66 (21.9)	64 (21.3)	34 (34.0)
15000 ~ 20000 "	75 (12.8)	44 (9 .8)	55 (18.5)	30 (10.0)	10 (10.0)
20000 ~ 25000 "	89 (15.2)	71 (15.8)	33 (11.1)	21 (7 .0)	8 (8 .0)
25000 ~ 30000 "	41 (7 .0)	28 (6 .2)	21 (7 .1)	4 (1 .3)	
30000 ~ 50000 "	133 (22.7)	80 (17.8)	32 (10.8)	19 (6 .3)	2 (2 .0)
50000 ~ 70000 "	57 (9 .7)	29 (6 .4)	13 (4 .4)	1 (0 .3)	
70000 원 이 상	54 (9 .2)	19 (4 .2)	7 (2 .4)	4 (1 .3)	1 (1 .0)
모 르 겠 다 무 응 답	18 (3 .1)	4 (0 .9)	1 (0 .3)	3 (1 .0)	
계	586 (99.9)	450 (100.1)	297 (100.0)	300 (99.9)	100 (100.0)

다음으로서는 가구당 월평균수입과 취업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다음의 두가지를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첫째는 가구를 취업자수로 구분하여 1인취업자가구와 2인 이상의 취업자가구로 나누고 둘째는 1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1만원~5만원의 수입이 있는 가구를 중소득가구로 그리고 5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를 고소득가구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전체적인 경향은

1인취업자가구에서보다 2인이상취업자가구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에 특히 도시와 농촌간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도시지역의 경우 2인이상취업자가구는 저소득층에서 보다 고소득층에서 1인취업자가구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층에서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각지역별 가구당 월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하여 비교해 볼때에는 역시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도 2인이상 취업자가구가 1인취업자가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등한시하여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각지역을 동일수준에서 비교하여 보았을 경우에 고소득층에서만 도시지역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가 비록 2인이상 취업하고 있는 가구일지라도 뚜렷하게 많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다. (<표 12> 참조)

<표 12> 취업자수별 가구당 월평균수입액 (%)

지 역	인 수	10000 원	10000 원	20000 원	30000 원	50000 원	70000 원
		미 만	~ 20000 원	~ 30000 원	~ 50000 원	~ 70000 원	이 상
서울	1 인	9.8	24.8	24.5	※ 22.7	9.2	7.0
	2 인 이 상	6.4	15.7	15.0	25.7	12.9	17.9
	평균	10.6	22.4	22.2	22.7	9.7	9.2
중 소 도 시	1 인	23.0	33.9	※ 21.9	14.8	5.7	4.2
	2 인 이 상	18.0	17.9	21.1	25.1	7.9	4.6
	평균	20.1	28.7	22.0	17.8	6.4	4.2
읍	1 인	21.3	※ 47.1	17.6	5.1	5.1	2.3
	2 인 이 상	23.0	30.9	20.3	19.5	3.5	2.7
	평균	23.5	40.4	18.2	10.8	4.4	2.4
농 촌	1 인	57.6	※ 31.2	7.2	1.8	0.6	0.6
	2 인 이 상	39.2	32.8	10.4	12.8	0.8	0.8
	평균	50.4	31.3	8.3	6.3	0.3	1.3
어 촌	1 인	47.1	※ 43.8	4.7	1.7		1.7
	2 인 이 상	28.1	50.4	15.6	3.1		
	평균	43.0	44.0	8.0	2.0		1.0

※ 표는 지역별 월평균 수입액이 해당되는 칸임

그러면 이러한 가구수입은 가구성원 가운데서 누가 어느정도로 벌어들임으로써 이루어 지는가? 먼저 가구당 수입이 있는 가구성원별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다음의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수입이 있는 가구주는 전체가구의 88 ~ 93%가 가구주의 부인의 경우는 농촌이 가장 낮은 4.0%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8~11%가 가구주의 자녀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한)의 경우는 중소도시에서는 26.7%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17~19%가 그리고 그 이외의 가구원으로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5%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7~10%가 되고 있다. 가구원에 의한 수입이 전혀 없는 가구는 각지역이 대체로 전체가구중 1~2%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앞의 절에서도 기술한바 있는 무취업자 가구비율 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터이지만 가구수입은 반드시 취업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 할 점은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들도 가구수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면이다. (<표 13> 참조)

<표 13> 지역별 수입있는 가구원의 비율 (%)

가구원 지역별	가 구 수	가구주의 부인	가구주의 자녀	그 외 가구원	수입없는 가 구 수
서울	88.7	11.1	18.4	9.6	1.5
중소도시	87.6	8.4	26.7	7.8	1.6
읍	92.9	10.1	17.3	7.4	1.0
농 촌	92.3	4.0	19.0	5.3	1.0
어 촌	88.0	8.0	17.0	3.0	2.0

※ 이 백분율은 각지역의 총가구수에 대한 비율임

그리고 가구의 성원별 수입액은 각지역 모두가 가구주의 수입액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가장 많다.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수입액은 어느지역에 있어서나 대체로 2만원 미만에 불과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2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은 가구수입의 가구성원별 수입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가구수의 수입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수입이 가구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서 보다 가구수에 있어서나 수입액수에 있어서나 훨씬 더 많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구주의 수입이 없는 가구가 전체가구중 66가구였는데 그중에서 11가구는 가구주의 부인에 의한 수입이 있었고, 66가구중 40가구가 자녀에 의한 그리고 8가구가 그 밖의 가구원에 의한 수입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가구주의 수입이 없는 가구는 그 대부분이 가구주의 자녀, 부인 또는 그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수입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수입액에 관한 두드러진 현상은 가구주의 수입액이 적은 가구에서 보다는 많은 가구에서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수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구주의 수입이 많을수록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수입도 많았고 반대로 적을수록 그들의 수입도 적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도시 지역이 농촌지역에서보다 더 뚜렷하였다.

가구수입에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수입의 원천에 관련된 몇 가지 점에서의 검토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여기에 관한 통계숫자는 모든 경제관계의 조사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바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며 무응답가구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가구당 월평균수입은 34,027 원인데 취업에 의한 수입은 가구당 평균 31,936 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2,091 원이 그 밖의 부업, 동산, 부동산 및 기타의 수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5%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것은 부동산수입으로 전체가구의 10.6%가 부동산수입이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수입의 원천별로 보아서 가장 많은 액수의 수입을 볼러주는 것은 동산수입인데 전체가구 가운데서 동산수입이 있는 가구는 15 가구 밖에 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가구는 월평균 가구당 22,720 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동산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26,157 원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월평균수입액 중에서 취업에 의한 수입은 가구당 평균 22,981 원이고 나머지 3,176 원이 가구당 월평균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으로 나타났다. 취업외의 수입원천은 서울에서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동산수입에 의한 가구수입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중에서 취업외의 수입원천가운데서 가구당 가장 많은 수입액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역시 동산수입으로서 20 가구가 가구당 월평균 31,350이라는 많은 수입을 얻고있었다.

그러나 읍의 경우는 위의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읍에 있어서의 월평균가구당 수입액은 20,815 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취업에 의한 가구당 월평균수입액은 19,441 원으로 취업외의 수입액은 가구당월평균 1,374 원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취업수입외의 수입액은 서울이나 중소도시의 그것에 반정도 또는 그 미만에 불과하며, 취업외의 수입의 원천에 있어서도 서울과 중소도

시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의한 수입이 있는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나 읍에서는 부업에 의한 수입이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15.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산수입에 의한 가구당 평균동산수입액수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만큼 많은 가구들이 동산수입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지역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동산수입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중에서 단지 4가구에 불과한 반면에 부업에 의한 수입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1.7%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동산수입이 있는 가구는 단지 1가구뿐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의 가구당 월평균 수입액은 12,205 원이며 그중 취업수입이 10,598 원이므로 1,607 원이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농촌이 읍보다 더 많은 취업수입 외의 수입을 부업에 의해서 올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부동산수입에 의한 가구수입이 있는 가구가 가장 많은 전체의 19%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산수입이 있는 가구도 역시 11%나 되나 부업수입이 있는 가구는 단지 4가구뿐으로 농촌과 읍의 현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오히려 도시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수입액은 11,320 원 이었는데 그 중에서 취업수입은 9,389 원으로 나타나 취업외의 수입이 1,931 원이나 되어 읍과 농촌지역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구수입과 수입의 원천에 관한 지역별 검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전반적인 경향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은 도시지역에서가 농촌지역에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절대치로서 더 많다는 것이지 지역별로 각 지역의 가구당 월평균수입액과 비교하

여 본다면 오히려 더 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서울과 농촌의 두지역을 비교해서 볼때 서울에서의 가구당 월평균 수입액은 농촌에서의 그것보다 거의 3배가 더 많은데 비해서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액은 서울이 가구당 월평균 2,091 원이고 농촌의 그것은 1,607 원으로 나타났으므로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농촌보다 서울의 그것이 더 많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취업수입 이외의 수입가운데서 도시지역은 부동산 및 동산수입이 부업수입보다 가구수에 있어서나 수입총액에 있어서나 더 많은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읍과 농촌 특히 농촌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수입보다 부업에 의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촌의 경우는 농촌보다도 오히려 도시와 같은 현상을 보여수었다.

(< 표 14 > 참조)

< 표 14 > 수입종류별 평균수입액 (단위 : 원)

지역별 수입종류	서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취업수입	31936 (518)	22981 (432)	19441 (285)	10598 (292)	9389 (95)
부업 "	12966 (29)	5377 (39)	4930 (47)	3814 (65)	8625 (4)
부동산 "	12111 (62)	11400 (55)	4947 (30)	5550 (4)	4547 (19)
동산 "	22720 (15)	31350 (20)	7500 (4)	20000 (1)	7455 (11)
그 외 "	19027 (37)	12700 (40)	3975 (32)	6303 (39)	1812 (8)
평균총수입	34027 (540)	26157 (442)	20815 (292)	12205 (296)	11320 (98)

※ () 내의 숫자는 해당가구수임

2. 가구주의 속성에 따른 가구수입차이

앞의 절에서 기술한 내용은 주로 가구원가운데서 누가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으며 가구수입의 원천은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가구수입과 가구주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및 취업상황 등과의 상관관계이다. 그런데 분석의 편의상 가구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은 가구주이기 때문에 결국 가구주의 수입과 그의 여러가지 속성을 상관시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먼저 연령별 가구주의 수입을 볼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의 수입액도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은퇴를 하게되어 수입이 없어지게 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반수정도가, 농촌지역에서는 1/3 정도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연령에 따르는 수입액의 차이는 예상외로 적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다소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의 <표 15>는 서울과 농촌의 두지역만의 연령별 수입에 대하여 제표한 것이다.

다음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입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같이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의 수입액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에서나 뚜렷한 경향이치 농어촌지역에서는 사정이 다르게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에 가구주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또한 농업과 어업이란 그렇게 높은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지않는 지역이므로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주의 수입상의 차이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구성상 비농업부문의 직업이 농업부문의 직업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읍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그의 수입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표 16>은 편의상 서울과 읍 두지역만의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입액을 제시한 것이다.

<표 16>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수입 (%)

서울

수입액 연령	수입없음	1만원 미만	1만원~ 2만원미만	2만원~ 3만원미만	3만원~ 5만원미만	5만원~ 7만원미만	7만원 이상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계
20대또는 그 이하	6.7	16.7	33.3	16.7	20.0	3.3	—	3.3	100.0
30 대	4.1	7.7	29.2	27.7	18.5	5.6	4.1	3.1	100.0
40 대	6.5	7.0	18.9	23.8	22.4	9.0	9.5	3.0	100.1
50 대	16.9	7.6	14.4	15.3	24.6	11.1	5.1	5.1	100.1
60 대 또는그이상	54.8	7.1	9.5	9.5	7.1	7.1	2.4	2.4	99.9

농촌

수입액 연령	수입없음	1만원 미만	1만원~ 2만원미만	2만원~ 3만원미만	3만원~ 5만원미만	5만원~ 7만원미만	7만원 이상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계
20 대또는 그 이하	—	78.6	14.3	7.1	—	—	—	—	100.0
30 대	2.9	58.6	28.6	5.7	1.4	1.4	1.4	—	100.0
40 대	1.4	50.0	33.8	12.2	2.7	—	1.4	5.4	99.9
50 대	8.2	32.9	30.6	4.7	3.5	—	2.4	4.7	99.9
60 대또는 그 이상	22.8	33.3	28.1	5.3	3.5	—	—	7.0	100.0

<표 17>

서울과 농촌의 가구주 연령별 수입액 비교

연령	수입액 지역	수입없음	수입액						DK. NR.	계
			1만원 미만	1만원 ~ 2만원 미만	2만원 ~ 3만원 미만	3만원 ~ 5만원 미만	5만원 ~ 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20대 이하	서울	6.7	16.7	33.3	16.7	20.0	3.3	-	3.3	100.0
	농촌	-	78.6	14.3	7.1	-	-	-	-	100.0
30대	서울	4.1	7.7	29.2	27.7	18.5	5.6	4.1	3.1	100.0
	농촌	2.9	58.6	28.6	5.7	1.4	1.4	1.4	-	100.0
40대	서울	6.5	7.0	18.9	23.8	22.4	9.0	9.5	3.0	100.1
	농촌	1.4	50.0	33.8	12.2	2.7	-	1.4	5.4	99.9
50대	서울	16.9	7.6	14.4	15.3	24.6	11.1	5.1	5.1	100.1
	농촌	8.2	32.9	30.6	4.7	3.5	-	2.4	4.7	100.0
60대 이상	서울	54.8	7.1	9.5	9.5	7.1	7.1	2.4	2.4	99.9
	농촌	22.8	33.3	28.1	5.3	3.5	-	-	7.0	100.0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수입의 차이에 관하여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수입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의 대체적인 비는 1:2였다. 이러한 소득의 격차는 이미 지적한바 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의 격차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가 농부인 경우 그의 수입은 가구의 농업수입 전체로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의 다른 직업에 비하여 그 수입액은 거의 최하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의 대가는 비농업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그의 생산성도 비농업부문에 비하여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여러가지 직업중에서 저소득 직업이라고 볼수 있는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단순노동자의 소득도 농업종사자의 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비농업부문의 직업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직업은 관리직 직업이었고 다음으로는 기술적 전문직 직업, 사무종사자 그리고 판매종사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수입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최저소득직업은 기능공, 단순노동자 및 생산공정종사자였는데 서울에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수입은 중소도시의 가장 많은 직업인 사무종사자와 판매종사자의 수입과 비슷하였고 읍에서의 이러한 직업종사자의 수입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의 수입을 상관시켜 보았더니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직업이 고소득직업일수록 그들의 가구에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을 경우 후자의 수입도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직업 특히 농업인 경우에는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의 수입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가 실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자녀로서 수입이 있는 가구수는 각 지역이 비슷한 50% 정도이고 가구주의 부인과 그 밖의 가구원으로서 수입이 있는 가구는 각각 15%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수입액은 가구주가 취업하여 수입이 있는 가구의 경우보다는 다소 많았다.

이상에서 기술한 가구주의 수입과 가구주의 연령, 교육 및 직업과의 관계는 단순히 각각의 속성을 하나 하나 분리하여 관련시켜 본 것이므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수입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속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직업도 고소득직업과 저소득직업이 결정될 수 있는가 하면 연령에 따라 직업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세가지 속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수입과의 상관성도 더 정확히 검토하려면 이들 속성의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서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볼 때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층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속에서 지역간의 수입의 차이 문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속성과 수입의 차이와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보다는 도시지역에 더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가구수입과 가계

지금까지는 가구수입에 관한 문제를 수입의 면에서만 검토하여 왔다. 이제부터는 초점을 달리하여 그러한 가구수입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떠한 가구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과부족이 생기며 또한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나가는데 대한 일련의 가계문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분석도 역시 응답자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곧 가계의 실태를 정확히 밝혔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나 대체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먼저 지역별로 가구당 월평균수입액과 생활비지출액을 비교해 놓은 <표 17>을 제시하였는데 이 표를 보는데 몇 가지 주의하여야 될

점을 미리 지적해 두고 싶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구의 수입액과 생활비지출액에 관하여 물었을 때 피조사자들은 실제보다 더 적은 액수로 대답해 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가계가 더 부정확하여질 뿐만아니라 특히 농가의 경우는 생활비계산에 있어서는 다소 근거있는 답변을 하여줄 수 있으나 농사수입전체에서는 큼직한 미국생산에서 얻는 수입만을 생각하고 자질구레한 수입은 빠트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 17>에 나타난 바와같이 읍과 농어촌지역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농어업가구들에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수입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 한편으로는 본 조사가 시행된 전월의 생활비지출만으로 제정하였으므로 농어촌에 있어서는 소득보다 지출이 다소 더 많은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어주기 바란다.

<표 17> '지역별 가구당 월평균수입액과 생활비지출액

(단위 : 원)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월평균 수입액	34,027	26,157	20,815	12,205	11,320
월평균 지출액	32,474	25,406	21,756	13,266	13,920
차액	+1,553	+ 751	- 941	-1,061	- 2,600

여하튼 <표 17>에서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소득수준도 높고 소비수준도 높은 동시에 가계의 수지가 흑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읍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은 낮아지고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져서 상당히 큰 생활비부족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활비의 과부족문제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미루어 두고 우선 생활비가 쓰여지는 세목부터 검토해보겠다.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생활비가운데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역시 식료품비이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식료품비가 총생활비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50% 정도나 식료품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의복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에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엔젤계수가 높은 농촌가구들은 자녀교육비나 문화적 생활에 드는 비용을 도시지역의 가구들 처럼 많이 부담할 수가 없다. 생활비 가운데서 두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교육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총지출의 18.4%, 중소도시는 14.6%, 읍은 13.0%, 농촌은 11.7% 그리고 어촌은 11.1%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세번째로 생활비지출항목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복비로서 각 지역이 대체로 10%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

생활비지출과 관련해서 고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가계의 수지관계에 따른 저축과 적자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의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앞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시지역의 가구들은 수입가운데서 생활비로 지출하고 저축의 여유가 있는 반면에 읍과 농어촌지역의 가구들은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축 또는 적자를 내고 있는 가구수의 비율은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축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는 서울이 전체가구의 26.3%, 중소도시가 46.9%, 읍이 24.8%, 농촌이 18.0% 그리고 어촌이 19.0%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가구가 농촌지역의 가구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이 전체가구의 15.0%, 중소도시가 20.2%, 읍이 21.2%, 농촌이 36.0% 그리고 어촌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60.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도시인 서울로부터 농어촌으로 갈수록 생활비의 부족현상은 두드러지게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저축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월평균 5천 원이상의 고액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았으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축하고 있는 가구수도 적을 뿐만아니라 저축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저축가구는 5천원 미만의 소액저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만이 다소 고액수준에서의 부족현상을 나타냈으나 중소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2/3 이상의 가구가 5천원 미만의 소액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점에서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가정생활의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볼 수가 있다. (<표 18> 참조)

<표 18> 지역별 저축과 생활비 부족 가구수 (실수)

액수 구분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저축	부족	저축	부족	저축	부족	저축	부족	저축	부족	저축	부족
1000 원미만	—	6	19	5	5	3	10	12	4	6		
1000 ~ 2000 원미만	11	14	19	21	17	13	20	18	4	16		
2000 ~ 5000 "	38	15	66	39	23	29	16	43	8	25		
5000 ~ 10,000 "	50	15	59	15	17	14	5	19	2	9		
10,000 원 이상	55	29	41	11	12	4	2	11	1	4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	9	7	—	1	—	1	5	—	—		
계	154	88	211	91	74	63	54	108	19	60		
전체 가구수의 백분율	26.3	15.0	46.9	20.2	24.8	21.2	17.7	36.0	19.0	60.0		

새재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하는 가구는 그 저축액수도 훨씬 많은 반면에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일 경우에서도 그 부족액수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가구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수준과 저축 또는 부족과의 상관관계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비의 부족을 보여주는 가구는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극소수에 불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직업과 관련시켜서 저축과 생활비부족관계를 보면,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같이 대체로 고소득직업일수록 보다 많은 가구들이 보다 많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으며, 가

구주가 무직일 경우에는 역시 생활비부족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부족액수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19>는 각 지역별로 본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저축가구와 생활비부족가구에 관한 현황이다. 이 표로부터 직업별 특성에 관한 다음의 몇가지 경향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제1차 산업가운데서 농업부문의 종사자들에 국한시켜서 볼 때 중소도시와 읍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들 가운데서는 농촌의 농부의 경우와는 달리 적자가구보다는 저축가구가 더 많았다. 어업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저축가구는 전체가구의 20.1%인데 비해서 적자가구는 57.4%로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적인 직업일수록 저축가구가 적자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단지 도시적 직업가운데서 저소득직업인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단순노동자들의 가구에 있어서만은 서울의 경우 적자가구보다 저축가구는 약간 많았을 뿐이며 중소도시에서 읍지역으로 갈수록 적자가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가장 높은 저축수준을 나타내는 직업은 사무종사자로서 그들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가구주의 48.1%가 저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적자가구는 단지 4.6%에 불과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적, 기술적 직업 (저축가구 42.9%, 적자가구 5.4%), 관리적 직업 (저축가구 34.0%, 적자가구 14.9%) 그리고 서비스직업종사자(저축가구 30.8%, 적자가구 없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자들과 서비스직업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저축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전체의 61.8%나 저축가구이고 서비스직업종사자의 가구에는 적자가구가 없었고 전자의 직업에서는 9.0%가 적자가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판매종사자. (저축가구 57.4%, 적자가구 14.8), 사무종사자 (저축가구 46.8%, 적자가구 3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읍의 경우도 가장 높은 저축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직업은 전문적 기술적 직업이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11가구중 7가구가 저축가구이고 적자가구는 2가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업 종사자로서 그들중 42.3%가 저축가구였고 적자가구는 단 한가구도 없었다. 그 밖에는 사무종사자, 농부, 판매종사자 등의 순서였다. (<표 19>참조)

끝으로 직업에 따르는 저축과 부족의 양적인 면을 볼 때에는 고소득직업인 관리직 또는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자의 저축액이 가장 컸으며 제1차 산업종사자인 농부나 어부의 경우는 저축가구의 저축액이나 적자가구의 부족액이나 모두가 가장 적은 대부분 월 5천원 미만의 금액에 불과하였다.

<표 19>

직업별 저축가구수 및 생활비부족 가구수

지역별 가 계 직업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전체가구수	저	부	전체가구수	저	부	전체가구수	저	부	전체가구수	저	부	전체가구수	저	부
실업 또는 무직	89	5(5.6)	34(27.0)	69	20(29.0)	20(29.0)	27	-	10(58.8)	33	4(12.1)	18(54.5)	16	-	14(87.5)
전문적·기술직	56	24(42.9)	3(5.4)	55	34(61.8)	5(9.0)	11	7(63.6)	2	6	3	1	-	-	-
관리직	47	16(34.0)	7(14.9)	11	5	-	5	1	2	2	1	-	-	-	-
사무종사자	87	41(48.1)	4(4.6)	47	22(46.8)	11(33.4)	18	5(27.8)	1	3	1	-	6	3	2
판매종사자	133	35(26.3)	19(14.3)	115	66(57.4)	17(14.8)	73	18(24.7)	14(19.2)	6	1	4	8	2	3
농부	14	1	3	50	21(40.2)	14(28.0)	98	27(27.6)	23(23.5)	215	42(19.5)	79(36.7)	4	-	3
어부	-	-	-	1	1	-	1	-	1	26	1	2	54	11(20.1)	31(57.4)
광부	7	2	-	2	2	-	-	-	-	1	-	1	-	-	-
교통·통신종사	20	5	3	8	3	3	8	1	1	1	-	-	1	1	-
기능공·단순노동자	99	16(16.2)	15(15.1)	58	16(27.6)	20(34.5)	30	4(13.3)	9(30.0)	6	1	2	8	2	4
서비스직	26	8(30.8)	-	34	21(61.8)	1	26	11(42.3)	-	1	-	1	1	-	1
기타	8	1	-	-	-	-	-	1	-	-	-	-	2	-	2
계	586	154(26.3)	88(15.0)	450	211(46.9)	91(20.2)	297	74(24.8)	63(21.2)	300	54(18.0)	108(36.0)	-	9(1.9)	60(6.0)

※ 괄호 내는 %임.

제 16장 가정경제의 제 문제점

지금까지는 가정생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취업상황과 가구수입 및 가계에 관하여 각각 장을 달리해서 기술하여 왔다. 즉 가구원중에서 누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벌어들인 가구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며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면에서 과부족현상은 어떠한가에 관한 문제를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해 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가정경제의 기초에서 제기되는 문제 특히 가정복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것의 중요한 항목들로서는 일반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활비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 나가는가? 그리고 재해나 대사로 인한 경제적 곤경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한 그러한 곤경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앞으로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하나의 큰 전제로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곧 경제적 빈곤에서 초래하는 일반가정의 의식주생활의 궁핍성이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의식주생활 그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일반가정의 경제적 곤란점

먼저 일반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본 조사

에 나타난 결과는 앞서도 강조한바 있는 의식주에 대한 생활비 문제가 가장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었다. 의식주 생활비에 대한 위협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가장 곤란한 경제적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낮은 25.1%, 중소도시가 33.2%, 읍이 29.3%, 농촌이 33.0% 그리고 어촌이 가장 높은 40.0%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가구들이 경제적 곤경을 받고 있는 것은 교육비였다. 교육비로 인하여 경제적 곤경을 받았다고 대답한 가구는 읍이 가장 높은 18.2%를 기록하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두가 13%정도로 나타났다. (<표 20>참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도시와 농촌에서의 교육에 대한 열망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농촌사람들이 도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에 필요로하는 생활비 다음으로 교육비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더욱 가정경제생활에서 둘째번으로 곤란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교육비라고 응답한 사람이 도시지역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나왔다.

다음에는 이러한 경제적 곤란점이 생활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생활수준에 있어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주들의 대부분은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상층에 속하는 가구의 약 반수는 경제적 곤란이 없다고 하였으며, 곤란이 있다고 하는 가구의 반수정도는 교육비에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상층에 속한다는 가구들도 많은 수가 곤란이 없다고 하였으며 곤란이 있다고 대답한 가구들은 주로 교육비와 영농비에서였다.

<표 20>

경제생활곤란점 첫째(%)

지역별 곤란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음	126 (12.5)	129 (28.7)	84 (28.3)	28 (9.3)	5 (5.0)
의식주	복	4 (0.7)	4 (0.9)	3 (1.0)	5 (1.7)	2 (2.0)
생활	활	25 (4.3)	30 (6.7)	14 (4.7)	34 (11.3)	20 (20.0)
주거	거	37 (6.3)	21 (4.7)	13 (4.4)	3 (1.0)	9 (9.0)
의식,주 중두가지이상		81 (13.8)	94 (20.9)	57 (19.2)	57 (19.0)	27 (27.0)
교육비	비	78 (13.3)	57 (12.7)	54 (18.2)	39 (13.0)	13 (13.0)
영농비	비	1 (0.2)	6 (1.3)	13 (4.4)	44 (14.7)	2 (2.0)
사업비	비	6 (1.0)	25 (5.6)	18 (6.1)	2 (0.7)	
의료비	비	4 (0.7)	7 (1.6)	8 (2.7)	5 (1.7)	1 (1.0)
기타	타	104 (17.7)	43 (9.6)	18 (6.1)	21 (7.0)	
모르겠다	다	8 (1.4)	9 (2.0)	1 (0.3)	10 (3.3)	
무응답	답	112 (19.1)	25 (5.6)	14 (4.7)	52 (17.3)	21 (21.0)
계		586(100.0)	450(100.3)	297(100.1)	300(100.0)	100 (100.0)

이와 같이 도시지역에 있어서나 농촌지역에 있어서나 상층에 속하는 가구들의 경우는 경제적 곤란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에서가 아닌 교육비, 영농비 등에서 생기는 곤란이다. 그러나 중간층에 속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2/3 이상의 가구가 경제적 곤란점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층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구가 의식주 특히 주거비에 대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곤란, 교육비와 영농비에서

의 곤란등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하층의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시되는 경제적 곤란점은 식생활유지에 대한 위협 그 자체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테 일반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의식주문제에서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문제에서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역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에서보다 주거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 식생활문제가 더 곤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전체가구의 13%가 넘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중소도시와 읍지역에서는 사업비가, 농촌지역에서는 영농비가 세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다. 한편 생활수준면에서 볼 때에는 상층일수록 경제적 곤란이 적었으며 경제적 곤란이 있다는 가구들의 대부분은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교육비문제를 지적하였고 중간층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주거비에,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교육비와 영농비에 각각 가장 큰 경제적 곤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계층은 역시 가장 많은 인구층을 포함하고 있는 하층가구에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계층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직접적으로 식생활유지문제에 영향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인 가구주의 직업별로 경제적인 곤란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먼저 도시지역의 경우 급료생활자의 가구에 있어서는 교육비와 주거비에, 판매종사자의 가구에서는 사업비에 그리고 단순노동자, 생산공정종사자 및 노동자의 가구에서는 식생활비에서 보다 큰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에 있어서는 식생활비에 절대적인 곤란을 받고 있으며 그 이외에 영농비, 사업비 및 교육비 등이 비슷하게 문제시되고 있다.

이제 이 절을 마지막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들은 어떻게 그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여 나가는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앞의 장 제 1절에서 기술한바 있는 가계상의 수입과 지출관계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가구들이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하는데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대부분의 가구가 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 나가는 방법은 주로 빚을 지는 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에는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가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 다음으로 생활비부족을 보충해 나가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친척의 도움과 재산매각이 같은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의 <표 21>은 생활비부족시 해결방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거나 부족하더라도 문제시될 만큼 많지않을 경우는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표 21>

생활비 부족시 그 해결 방법(%)

지역별 해결 방법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도움	2 (1.8)	1 (0.9)	—	2 (1.8)	—
부모의 도움	2 (1.8)	2 (1.8)	2 (3.0)	—	—
가족원의 친족도움	10 (9.1)	1 (0.9)	1 (1.5)	1 (0.9)	3 (4.8)
친척의 친족도움	5 (4.6)	7 (6.4)	—	—	4 (6.5)
재산 매각	6 (5.5)	4 (3.6)	6 (9.1)	4 (3.5)	4 (6.5)
빚	48 (44.0)	74 (67.3)	53 (80.3)	92 (81.4)	46 (74.2)
기타 방법	1 (0.9)	12 (10.9)	3 (4.5)	10 (8.8)	1 (1.6)
무응답	35 (32.1)	9 (8.2)	1 (1.5)	4 (3.5)	4 (6.5)
계	109 (99.8)	110 (100.0)	66 (99.9)	113 (99.3)	62 (100.1)

2. 재해, 대사의 경제적 곤경

재해나 대사는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이나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제 역시 앞에서 다른 경제적 빈곤과 곤경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반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이에 관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수해, 한해, 화재 등의 재해와 결혼, 상 등의 대사 및 실직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겪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곤경을 받았고 또한 경제적 곤경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수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겠다.

수해는 화재나 한해보다는 다소 드문 재해이긴 하였으나 수해를 입은 가구들을 다른 재해를 받은 가구들 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곤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볼 때에 수해를 입은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읍으로서 전체 가구의 14.5%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서울(6.9%), 농촌(6.3%), 그리고 중소도시와 읍(각각 2.0%)의 순서로 나타난다.

농촌지역보다도 읍과 서울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다는 가구가 더 많이 나타난 사실은 수해가 농촌지역에서만 빈번히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주며,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수해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망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수해를 입었다는 가구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말하며 경제적인 곤경을 해결한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저축, 친척 또는 친지의 도움, 정부 또는 공

공기관의 구호 등의 방법이었으며 이와 같은 해결에 의존한 가구들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어 읍의 경우는 파저의 저축으로 해결하였다는 가구가 서울의 경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구호에 의존하였다는 가구가 다소 더 많이 나타난다.

한해는 주로 농업에 대한 피해이므로 농촌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가구가 한해로 인한 경제적 곤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한해 가구가 다소 있었기는 하지만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한해를 입고 이농한 가구가 아닌가 추측된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가구는 전술한 바와같이 농촌지역만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농촌지역의 전체가구의 41.0%를 기록하였고 읍이 15.1%였으며 도시지역은 약 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한해로 인한 경제적 곤경정도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심하였다고 하는 가구가 전체 한해가구중에서 5할을 훨씬 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가구는 54.5%로서 역시 전체한해가구의 반수를 넘고 있었다. 그리고 한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국가전역에 걸쳐거나 어떤 광범한 지역에 걸치는 국가적 규모의 큰 피해가 되므로 구호대상자의 폭도 넓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호대책 역시 미약한 것으로 간주되게 마련이다.

농촌의 경우 한해로 인한 피해가구중 13% 정도는 자기의 저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9%정도가 친척 또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하였으며 단 4%정도의 가구만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구호로 그들의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였다고 나타난다.

화재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도시지역에 국한된 재해인 것 같으나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전체가구의 3~4% 정도의 피해가구가 있었다. 그리고 화재를 당하였던 가구들을 대체로 저축 또는 친척과 친지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곤경을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나 상을 겪은 가구들의 경우 그들의 경제적 곤경은 어떠한가 그대에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상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각 지역에 대체로 비슷한 20~28%의 상을 겪은 가구가 있었으며 상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경이 다소 심했었다고 대답한 가구와 심했었다는 가구의 수는 거의 반반이었다. 그러나 상을 겪은 가구들 중에서 경제적 곤란이 있었다고 하는 가구들이 그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한 방법에 있어서는 각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상이 있었다는 가구의 대부분은 저축되었던 준비금이다.

친척과 친지의 부조금으로 해결하였으며 대체로 전자의 방법으로 해결한 가구와 후자의 방법으로 치뤘다고 하는 가구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지 서울지역에서는 과거의 저축보다 오히려 부조금에 의하여 치뤘다고 하는 가구가 농촌지역보다 더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친족유대에 있어거나 공동체적 의식에 있어거나 더 상호부조적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보다는 친척이나 친지의 부조에 더 의존할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반대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도시지역에서는 상을 겪은 가구에 대하여 농촌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부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혼의 경우는 상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곤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은 상의 경우와는 달리 돌발적이 아니며 더 계획된 대사이므로 다른 종류의 도움보다 자기의 저축으로 치르었다는 가구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서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인 실직시의 경제적인 곤경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가구들은 일상경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곤경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역별로 볼 때 실업은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을 겪은 가구들은 친척이나 친지로 부터 다소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생계보조를 받은 가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실업을 겪은 가구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경제적 곤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검토해 온 수해, 한해, 화재등의 재해와 결혼 상 및 실직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곤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재해의 경우는 비교적 돌발적이고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가구도 많았지만 정부의 구호대책에 의한 혜택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리 준비한 저축이나 친척과 친지의 부조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보험과 같은 근대적인 보상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였다는 가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터이지만 이러한 사실에 비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재해나 대사에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고 있거나

보험 혹은 계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는 상당히 많았다. 이제 여기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검토를 하여 보겠다.

3 재해·대사의 대비책

재해와 대사에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험이나 계 또는 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혹은 저축의 형태를 취한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저축에 관해서 설명하여 보겠다. 재해나 대사에 대한 준비로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도시와 농촌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읍을 포함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전체 가구의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은 18% 어촌은 단 3%에 불과 하였다. 이를 가구주의 직업과 상관시켜 보았더니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 기술직 내지 관리직 직업인 가구들 가운데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반수가 훨씬 넘는 재해, 대사에 대한 준비로 저축하고 있는 가구가 있었다. 그리고 판매종사자의 가구에 있어서는 서울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전체가구의 44% 정도가 읍에서는 23.3%가 저축가구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소도시와 읍지역의 농가가운데서는 각각 35%·24%의 저축가구가 있었으며 농촌의 농가가운데서는 불과 15.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어촌의 경우에는 전체어업가구인 54가구 가운데서 단지 1가구만이 저축을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에 대처 할만한 준비가 거의 없는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별로 본 재해나 대사에 준비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구주가 높은

소득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에서 일수록 저축가구의 비율도 높고 반면에 낮은 소득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에서 일수록 그 비율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상관시켜 볼 때에도 역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준비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수가 많아지고 낮을수록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주가 대학수준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그들 가구중 반수를 훨씬 넘는 가구들이 준비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수준일 때에는 거의 반반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읍과 농어촌지역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준비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재해나 대사에 준비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와 결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생활수준이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이것을 여실히 입증 해 주고 있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가구들에서 일수록 준비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았으며 낮은 가구들에서 일수록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별로 본 생활수준과 저축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이 더 높은 도시지역의 가구들에서가 상대적 의미에서 더 낮은 농어촌의 가구들에서 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즉 지역별로 생활수준에 따른 전체 가구수에 대한 저축가구의 비율은 다음의 <표 22>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표 22> 지역별 생활수준에 따른 전체 가구수에 대한 재해·대사의 준비 저축가구(※팔호내가 백분율)

지역별 생활수준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상의상	11(84.6)	16(94.1)	2(33.3)	6(50.0)	-(0.0)
상의하	15(65.2)	23(74.2)	5(55.6)	11(45.8)	2(66.7)
중의상	95(53.4)	69(61.6)	46(50.0)	19(25.7)	1(4.5)
중의하	70(36.8)	52(36.6)	31(36.9)	7(8.9)	-(0.0)
하의상	13(13.5)	19(21.8)	11(18.3)	5(7.7)	-(0.0)
하의하	3(0.9)	5(8.5)	5(10.7)	2(4.4)	-(0.0)
계	210(35.8)	184(40.9)	100(33.7)	50(16.7)	3(3.0)

다음에는 주로 재해의 경우에 관련되는 보험가입 여부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전체 조사여부 대상가구 가운데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저축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전체가구의 15%가 재해나 대사에 관련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10%미만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 조차도 상해 보험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이외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가 더 많게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들의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수준도 거의 상층에 속하고 있었다.

재해나 대사에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제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는
서울에서는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20 % 중심도시와 읍에서는 30 % .
농촌에서는 15 % 그리고 어촌에서는 37 %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에서가 유난히 다른 지역에서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전술한 저축과 보험가입 여부에서도
암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의 준비가 없는 대신에 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촌에는 보험기관이나 은행이 가까운 거리에 없다는 점도
들 수 있겠고 또한 어촌의 주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보험이나 저축보다 더 편리
한 이웃간의 제 활동이 더 활발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의 종류별로 볼 때에 대사를 치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호제
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서보다 농촌지역의 가구들이 더 많이 가입
하고 있었으며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혼제 보다는 상제에 가입하
고 있는 가구들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재해나 대사의 준비로서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가구는 읍과 중
소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각각 14 %, 9 %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4 % 미만의 가구만이 이 방법을 이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주로 공제조합이었으며 공제조합
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들은 대체로 중류층에 속한 특히 급료 생
활가구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외
2
이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에 재해나 대사에 준비로서 경제적인
 여력을 축적하고 있는 가구들은 비교적 많았으며 그들이 주로 이
 용하는 방법은 저축과 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재해보다는 오히려 대사에 준비하는 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것도 어떤 특정의 목적으로만 쓰여질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반면에 보험제도는 주로 재해에 관련되는 준비방법이라
 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실제로
 나타난 조사결과에서도 이 재도를 이용하는 가구들은 특수층에 있는
 일부의 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급료생활자에게 편리한 것이므로
 중소도시와 읍의 중간층에 있는 가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소비자 보호문제

가정경제의 문제점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방향
 이기는 하지만 가정경제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여기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여러가지 항목들을 나
 열하여 주고 품질불량, 품질사기, 질에 비해 고가, 에누리홍정, 광고과
 대선전, 도량형사기, 시장불결, 상인태도 불량등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과 두번째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의 두가지를 지적하게 하였다. 그 결과 먼저 가장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는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각지역이 공통적으로 품질사기와 에너지홍정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 두가지의 각각이 전체 응답자의 20 ~ 30 % 를 차지하였으며 이 두가지를 지적한 가구의 전체는 각 지역이 대체로 50 % 정도나 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품질에 관한 것으로 품질이 불량하다고 하는 점과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점의 두 가지로서 각 지역이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각각 전체가구의 15 % 정도가 되고 있었다. 그 밖의 소비자보호 문제는 즉 광고과대선전, 저울사기, 시장불결, 상인태도불량 등의 문제는 훨씬 덜 지적되어 대체로 5 %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도량형을 사기한다는 문제가 다소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표 2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23>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첫째 (%)

지역별 개선될점	서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품 질 불 량	96(16.4)	83(18.4)	56(18.9)	49(16.3)	13(13.0)
“ 사 기	152(25.9)	87(19.3)	65(21.9)	101(33.7)	30(30.0)
질에 비해 고가	87(14.8)	56(12.4)	49(16.5)	38(12.7)	15(15.0)
에누리 흥정	123(21.0)	117(26.0)	62(20.9)	51(17.0)	13(13.0)
광고가 대선전	37(6.3)	30(6.7)	24(8.1)	9(3.0)	4(4.0)
저 울 사 기	27(4.6)	25(5.6)	13(4.4)	20(6.7)	6(6.0)
시 장 불 결	8(1.4)	9(2.0)	5(1.7)	1(0.3)	
상인태도불량	26(4.4)	18(4.0)	7(2.4)	14(4.7)	4(4.0)
기 타	5(0.9)	6(1.3)	4(1.3)	3(1.0)	1(1.0)
모 르 겠 다	20(3.4)	18(4.0)	11(3.7)	11(3.7)	13(13.0)
무 응 답	5(0.9)	1(0.2)	1(0.3)	3(1.0)	1(1.0)
계	586(100.0)	450(99.9)	297(100.1)	300(100.1)	100(100.0)

두번째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도 역시 품질사기와 에누리흥정 문제로서 어느지역에서나 대체로 각각 전체 응답자의 17%~18%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단지 어촌에서만은 각각 10%~13%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을 뿐이다. 그러나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것은 품질에 비해

물건값이 비싸다는 점과 광고에 과대선전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들 두가지는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자를 지적한 응답자들은 서울에서는 10 %가 중소도시와 읍지역에서는 모두 14 % 정도가 되는 반면에 농촌과 어촌지역에서는 이보다 높은 각각 19 %와 18 %나 되었다.

한편 후자를 지적한 응답자의 수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보다 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14 % 정도가 중소도시와 읍에서는 15 % 정도가 되는 반면에서 농촌과 어촌에서는 각각 5 %, 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광고에 과대선전이라는 문제가 농어촌 지역에서 보다는 매스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도량형사기, 품질불량, 그리고 상인태도불량의 순서였다. (<표 24>참조)

<표 24>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둘째 (%)

지역별 개선될 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품질 불량	40(6.8)	31(6.9)	30(10.1)	19(6.3)	11(11.0)
“ 사 기	110(18.8)	81(18.0)	57(19.2)	52(17.3)	10(10.0)
질에 비해 고가	58(9.9)	63(14.0)	42(14.1)	57(19.0)	18(18.0)
에너지 흥정	99(16.9)	82(18.2)	50(16.8)	70(23.3)	13(13.0)
광고과대선전	79(13.5)	68(15.1)	45(15.2)	15(5.0)	6(6.0)
도량형사기	88(15.0)	28(6.2)	23(7.7)	33(11.0)	6(6.0)
시장 불결	9(1.5)	10(2.2)	20(6.7)	2(0.7)	3(3.0)
상인태도불량	52(8.9)	43(9.6)	7(2.4)	11(33.7)	12(12.0)
기 타	7(1.2)	6(1.3)	2(0.7)	4(1.3)	1(1.0)
모 르 겠 다	30(5.1)	31(6.9)	17(5.7)	12(4.0)	14(14.0)
무 응 답	14(2.4)	7(1.6)	4(1.3)	25(8.3)	6(6.0)
계	586(100.0)	450(100.0)	297(99.9)	300(99.9)	100(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 즉 품질문제라든가 에너지 흥정문제라든가 또는 도량형을 사기한다는 등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상품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문제들로서 적절한 가격의 정량의 물건을 정가로 판매하여야 된다는 문제에 귀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밖의 시장·상인의 태도 등의 문제는 부차적인 중요성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숫자상 그렇게 의미있는 차이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단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품질사기라든가 상인의 태도가 불손하다 든가 또는 시장이 불결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있어서 보다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응답자의 속성은 그들의 직업에서 이다。일반적으로 응답자 자신이 판매종사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품질불량이라든가 품질을 사기한다는 점에 보다 더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판매 직종사자 가운데서 전문직 기술직 내지 관리직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에누리홍정을 더 많이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리고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농촌의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문제보다 품질사기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품질에 비하여 물가가 비싸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 17장 생활수준과 복지문제

일반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주관적인 계층평가로 나타난 생활수준, 생활형편의 향상여부 및 여러가지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첫째 문제로 다루어질 생활수준에 관한 검토는 대체로 어떠한 가정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는가에 관한 기술로서 이루어질 것이며, 둘째 문제인 생활형편의 향상여부에서는 어떠한 가정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가정이 더 못해지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며, 마지막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 극빈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은 여러가지 사회복지정책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가구에서 보다 더 경제적인 복지정책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될 것이다.

1. 생활수준

여기서 말하는 생활수준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라 전술한바와 같이 주관적인 자기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사회경제적인 계층을 의미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정의 생활수준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조사자들에게 그들이 살고있는 고장에서 자기의 가구가 상·중·하의 계층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였었다. 그결과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의한 생활수준은 다음의 <표 25>

와 같이 나타난다.

<표 25>

생활 수준 (%)

지 역 별 생활수준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상 층	33(6.1)	48(10.7)	15(5.0)	36(11.9)	6(6.0)
중 간 층	368(62.8)	254(56.4)	176(59.3)	153(50.1)	54(54.0)
하 층	173(29.5)	146(32.4)	106(35.7)	110(36.7)	40(40.0)
모르겠다 무응답	9(1.6)	2(0.4)		1(0.3)	
계	586(99.9)	450(99.9)	297(100.1)	300(100.1)	100(100.0)

<표 25>에 나타난 바를 개관하여 보건데 대체로 응답자들은 자기의 가구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여하튼 각지역의 전반적인 주관적 계층평가는 하층이 30% 내지 40% 정도이고 중간층은 50% 내지 60% 정도이며 상층은 훨씬 낮은 5% 내지 10%로 나타났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간의 차이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상층의 가구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다 다소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별로 큰 의미가 있는 차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중간층의 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보다 읍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편이었고 하층의 가구는 대도시인 서울에서부터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 2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구의 총수입면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가구들간의 계층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비해서 주관적인 평가면에서는 오히려 농어촌에서 하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확실하게 단언하기에는 곤란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지역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지역별로 생활수준이 비슷한 가구들이 모여 살고있기때문에 하층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그 동리에서는 상층 또는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계층적 평가에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리가 뚜렷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의 계층 위치를 말해달라고 하여도 무의식중에 그들 보다 더 잘 살고있다고 여겨지는 도시사람들을 옆두에 두고 자기들은 아주 못산다고 느끼는 기분이 강하기 때문일런지 모르겠다. 어떻든 농촌으로 갈수록 자기고장에 같이 살고있는 가구들의 수입면에서 본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평가에 있어서 자기를 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경향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가구의 주관적 계층평가를 가구주의 직업과 상관시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가구주의 직업이 없는 가구 즉 실업 또는 무직인 가구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구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대체로 그들 가구중 50% 또는 그 이상의 가구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가구들 가운데서는 서울에서가 52.8%, 중소도시에서가 49.3%, 읍에서는 77.8%, 농촌에서는 48.3%, 그리고 어촌에서는 56.3%의 가구들

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직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단순노동자, 기능공 및 생산공정종사자의 경우도 역시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가구가운데서 서울은 46.5%, 중소도시는 65.5% 그리고 읍은 50% 가 하층이라고 답하였다.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직업은 역시 고소득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직, 기술직 및 관리직 직업종사자의 가구에서 었다. 그리고 사무종사자 보다는 판매종사자들의 가구들이 더 높은 생활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에도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주관적인 생활수준의 평가도 높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보다 도시지역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무학력인 가구들가운데서는 상층에 속한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대학수준인 가구들가운데서는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불과 10.9 %에 지나지 않았고 44.3 %가 중의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가구주가 대학출신인 가구들 가운데서는 19.5 %가 상층에, 39.1 %가 중의 상층에, 29.9 %가 중의 하층에 그리고 12.0 %만이 하층에 위치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가구주가 대학출신인 경우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고등학력의 수준인 경우에는 대학수준의 경우에서 처럼 지역별 생활수준의 비율과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생활수준과 가구원수와의 상관관계는 가구주의 직업이나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처럼 일률적인 경향은 없으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구원수가 평균가구원수보다 많은 가구들에서 생활수준이 다소 높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비율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잘못 생각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 가구의 생활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그릇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큰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구주는 나이가 많을 것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단지 어촌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서 일수록 상층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고 하층에 속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어촌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저소득지역이라는데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어촌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다 고소득가구가 적은 반면에 저소득가구가 많으므로 식구수가 많은 가구에서 일수록 경제적 곤경을 더 많이 겪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실업자 혹은 취업자의 수와의 관계를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실업가구 또는 실업자수가 많은 가구에서 일수록 생활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고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바와같이 실업가구 또는 실업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실제로도 취업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수입액도 많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생활형편의 향상여부

그러면 일반가정의 경제적인 생활형편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일까? 향상되고 있다면 어떠한 가정에서 더 향상되고 있으

며, 혹은 더 못해진다면 어떠한 가구들이 더 못해지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었다. 즉 귀하의 태운 작년과 비하여 생활형편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라고 질문하였었다. 이러한 방식의 질문
 도 역시 전술한 주관적 자기계층평가의 경우와 비슷한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내용도 객관
 적인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열망의 수준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열망의 수준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소득의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들의 생활형편
 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열망의
 수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사에서 뚜렷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 몇 가지 경향을 찾아 낼 수가 있었다. 첫째로 생활형편의
 향상여부는 지역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그들의 생활형편이 더 향상되었다는 사람과
 더 못해졌다는 사람의 비율은 대체로 25% 내지 30%였고 마찬
 가지라고 말해준 사람은 40%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농촌지역에서
 는 더 나빠졌다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47.7%였고 더
 좋아졌다는 사람의 비율은 훨씬 더 낮은 15.0%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의 비율은 다소 낮은 37.3%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촌에서는 농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소 낮은 35.0%를 기록하였고 더 좋아졌다고하는 사람의 비율
 은 다소 높은 21.0%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이라고 포괄한 대도시인 서울과 중소도시와 읍의 경우도 각각 다소의 차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더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에서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보다는 읍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표 27> 참조)

이러한 결과를 볼때에 한국인은 그들의 경제적 생활향상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러한 태도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정한다면, 더 큰 도시지역에서 일수록 거기에 주거하는 가구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생활형편이 농어촌지역의 가구들에서보다 향상된 가구가 더 많다고 확실히 말할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가구들 가운데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진 가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까닭은 한국의 경제정책이 제1차산업부문에 대하여서 보다는 제2차산업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결과에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도시인들에게는 상당한 소득증대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또한 그들의 생각으로도 그들의 생활형편은 실제로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 이와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발전의 같은 테두리안에 있으면서도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서 그러한 정책에 따른 가정경제의 향상에 대한 혜택을 거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보다 생활형편이 더 좋아졌는가 혹은 나빠졌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가구주의 직업별로 보았을때에도 역시 고소득직업인 전문적 기술적 내지 관리적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가 다른 직업종사자들의 가구에서 보다는 그들의 생활형편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의 가구에 있어서는

<표 27>

작년과 생활형편비교

지역별 비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많이 좋아짐	20 (3.4)	15 (3.3)	6 (2.0)	3 (1.0)	
다소 "	127 (21.7)	111 (24.7)	76 (25.6)	42 (14.0)	21 (21.0)
마찬가지임	287 (40.9)	193 (42.9)	118 (39.7)	112 (37.3)	44 (44.0)
다소 나빠짐	105 (17.9)	91 (20.2)	77 (25.9)	87 (29.0)	30 (30.0)
많이 "	40 (6.8)	38 (8.4)	20 (6.7)	56 (18.7)	5 (5.0)
모르겠다	4 (0.7)	2 (0.4)			
무응답	3 (0.5)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도시의 단순노동자, 기능공 또는 생산공정종사자들의 가구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업화치중정책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면은 역시 이러한 농업부문종사자의 가구와 도시의 단순노동자, 기능공 또는 생산공정종사자의 가구와의 비교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최저소득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직업종사자의 가구들과 농촌지역의 농가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좋아짐	마찬가지임	못해짐	계
서울	18.2 %	47.5 %	34.4 %	100.1 %
농촌	12.1 %	42.3 %	45.6 %	100.0 %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서울에서 가구주가 실직자이거나 무직자인 가구들 중에서

생활형편이 더 못해졌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 보다 훨씬 더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에서는 가구주가 실직자이거나 무직자일지라도 생활안정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관련시켜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들 가정의 생활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농촌지역에서 보다는 도시지역에서가 더 뚜렷하였다. 가구주가 대학수준 또는 그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구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생활형편은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다고 대답하였다.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을 한 가구주의 가정에서는 도시지역에서만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농어촌지역에서는 더 못해졌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가구주가 중학수준이하의 학력 밖에 갖고 있지 못한 가구들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그들의 생활형편은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도시지역에서 일수록 생활형편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그들의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았으나 도시지역의 경우처럼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생활형편의 향상여부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그들의 주관적 계층평가와의 관계였다. 상층의 경우는 모든지역에서 더 좋아졌다는 가구가 훨씬 많았으며 그것도 농어촌지역에서 큰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더 좋아졌다는 가구가 더 나빠졌다는 가구보다 많았으나 농촌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층의 경우는 상층의 경우와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느지역에 있어서나 하층의 가구들 가운데에서는 좋아졌다는 가구보다 나빠졌다는 가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고 그 비율은 도시지역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더 나빠졌다는 가구는 좋아졌다는 가구보다 2.7 배나 더 많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5.6 배나 되는 격심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응답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것은 물론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수준이 높은 가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생활수준이 낮은 가구는 더 나빠져간다는 결론이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농어촌지역에서 큰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곧 「부익부 · 빈익빈」의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조금 더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향을 뒷바침하여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는 있다고 여겨진다. (<표 28> 참조)

<표 28> 생활수준 과 생활향상 정도

28-a 상층 (%)

지 역 별 생활수준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더 좋아짐	21 (58.3)	18 (37.5)	7 (46.7)	11(30.6)	4
마찬가지	8 (22.2)	20 (41.7)	4 (26.7)	16(44.4)	1
더 나빠짐	7 (19.4)	9 (18.7)	4(26.7)	9(25.0)	1

모르겠다 또는무응답		1 (2.1)			
계	36 (99.9)	48(100.0)	15(100.1)	26(100.0)	6

28- b 중간층 (%)

지역별 생활형편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더 좋아짐	103(28.0)	90(35.4)	56(32.0)	22(14.4)	12(22.2)
마찬가지임	188(51.1)	100(39.4)	67(38.3)	65(42.5)	27(50.0)
더 나빠짐	72(19.6)	64(25.2)	52(29.7)	66(43.1)	15(27.8)
모르겠다 또는무응답	5(1.3)				
계	368(100.0)	254(100.0)	175(100.0)	153(100.0)	54(100.0)

28- c 하층 (%)

지역별 생활형편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더 좋아짐	23(13.3)	18(12.3)	19(17.9)	12(10.9)	5(12.5)
마찬가지임	86(49.7)	71(48.6)	46(43.4)	31(28.2)	16(40.0)
더 나빠짐	63(36.4)	56(38.4)	41(38.7)	67(60.9)	19(47.5)
모르겠다 또는무응답	1(0.6)	1(0.7)			
계	173(100.0)	146(100.7)	106(100.0)	110(100.0)	40(100.0)

3. 극빈가정 보호와 그 밖의 가정

복지에 관한 경제적 문제

서론부문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같이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경제적인 기반여하에 따라 거의 결정적으로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빈약하여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해 나갈수 없는 가정 즉 극빈가정에 대한 복지문제는 여러가지 사회복지문제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본 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본 조사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책들을 즉 극빈가정보호, 아동보호, 부녀자보호, 심신장애자보호, 노인가구보호, 및 모자가구보호, 등을 피조사자에게 제시하여 주고 그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던 바, 나타난 결과는 극빈자보호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전체응답자 가운데서 31.1%가, 중소도시에서는 30.3%가 그리고 어촌에서는 가장 높은 53.0%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복지시책이 지적된 비율과의 비교는 다음의 <표 29>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극빈가정에 대한 보호시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주관적 계층평가에 있어서도 하층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경향도 도시지역에서 보다는 생활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 표 29 > 사회 복지 시책 중 가장 시급한 것 (%)

지역별 사회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국민가정보호	182(31.1)	150(33.3)	119(40.4)	91(30.3)	53(83.0)
아동 #	102(17.4)	73(16.2)	45(15.2)	44(14.7)	4(4.0)
부녀자 #	40(6.8)	30(6.7)	7(2.4)	19(6.3)	4(4.0)
노령자 #	45(7.7)	50(11.1)	21(7.1)	41(13.7)	11(11.0)
심신장애자 #	105(17.9)	62(13.8)	58(19.5)	40(13.3)	11(11.0)
모자가구 #	39(6.7)	32(7.1)	13(4.4)	26(8.7)	2(2.0)
노인가구 #	25(4.3)	21(4.7)	14(4.7)	17(5.7)	6(6.0)
기타	8(1.4)	5(1.1)	8(2.7)	3(1.0)	7(7.0)
모르겠다	34(5.8)	24(5.3)	10(3.4)	13(4.3)	1(1.0)
무응	6(1.0)	3(0.7)	2(0.7)	6(2.0)	1(1.0)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이와같은 경제적인 복지시책문제는 국민자가정보호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녀교육문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서도 여러가지 자녀교육문제의 곤란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비부족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체 응답자의 30% 내지 50%가 교육비부족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녀교육에 아무런 어려운 점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을 제외한(도시지역에서는 20%정도가 농촌지역에서는 8%정도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나머

지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서 자녀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각 지역 모두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쁘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또는 교우가 불량하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들은 교육비부족문제에 비하면 거의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비 때문에 자녀교육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상층의 가구에서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생활수준이 낮을 수록 특히 하층의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만 농촌지역에 있어서만은 도시지역이나 읍에서 보다는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비부족문제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농촌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밖의 사회복지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복지시책으로 밝혀졌다.

부녀자복지시책 중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0%정도가 경제적문제와 관련되어있는 직업교육, 직업소개 및 직업여성대우개선 등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의 경우에서도 연금제도의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0%정도나 달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기술하여 온 문제와는 다소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가정복지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기술코자한다. 그것은 곧 주거생활에 관한 문제로서, 먼저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주거생활의 안정성 및 편리성에 대하여 생활수준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생활수준에 따른 가옥의 소유형태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지역일 수록 하층 가구 가운데는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한

가구가 많았으며 농촌의 가구는 대부분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어촌에 있어서는 하층가구를 가운데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가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다음의 <표 26>은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한 즉 세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들의 지역별 생활수준에 따른 백분율이다.

<표 26> 생활수준별 세가의 백분율

지 역 별 생활수준	서울 (90)	중·도시 (90)	읍 (%)	농 촌 (%)	어 촌 (%)
상	2.8	8.3			
중	20.4	17.2	10.2	2.6	9.3
하	47.8	39.0	32.1	2.8	40.0

끝으로 생활수준과 거주생활의 만족도 및 문화·오락생활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거주생활의 여러가지 측면 즉 상수도, 하수도, 전기, 변소, 오물처리, 건물, 화재 및 수해예방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생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만족스럽거나 불안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거주생활면은 도시적인 측면이지 농어촌지역에서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예 그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만족이나 불만족 또는 안정이라든가 불안정이라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영화 등의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오락에 있어서는 지역간에

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층의 가구에서는 오락을 즐길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고 라디오청취, 영화또는 연극관람 마실 등을 즐긴다고 하는 가구가 많았으며 상층인 가구에서는 낚시, 사냥, 독서, 운동 등을 좋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제 5 부

아 동 및 청 소 년 복 지 문 제

제 18 장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사회문제 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것을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시의 경우는 586 명의 응답자중에서 182명 (31.1%)이 극빈가정보호가 시급하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105명 (17.9%)이 심신장애자보호를 말했으며 세째번이 102명 (17.4%)으로서 아동보호를 지적하였다. 이것을 보면 극빈자보호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심신장애자보호와 아동보호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번으로 시급한 사회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데 대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자보호가 107명 (18.3%)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아동보호와 모자가구보호가 78명 (13.3%)으로서 각기 동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볼때 서울시민들의 생각에는 아동보호가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450 명의 응답자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극빈자보호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150명 (33.3%)이 된다. 그 다음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동보호로서 73명 (16.2%)이 된다. 둘째로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이것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자보호가 450명 중에서 99명 (22%)으로서 제일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아동보호로서 62명 (13.8%)의 응답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읍소재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297명의 응답자중에서 극빈자보호 (119명 - 40.4%) 심신장애자보호 (58명 - 19.5%), 아동보

호(45명 - 15.2%)의 순위로 그 시급성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시급한 것에 대하여는 노령자보호(53명 - 17.8%), 심신장애자보호(45명 - 15.2%), 아동보호(39명 - 13.1%)의 순위로 그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책중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300명의 응답자중 극빈가정보호(91명 - 30.3%), 아동보호(44명 - 14.7%), 노령자보호(41명 - 13.7%), 심신장애자보호(40명 - 13.3%)의 순위로 그 응답이 나왔다. 둘째번으로 시급한 것으로는 노령자보호(49명 - 16.3%), 심신장애자보호(48명 - 16%), 극빈가정보호(42명 - 14%), 노인가구보호(40명 - 13.3%)의 순위로 그 응답이 나오고 있다.

어촌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으로 100명의 응답자중에서 극빈가정보호(53명 - 53%), 노령자보호(11명 - 11%), 심신장애자보호(11명 - 11%)의 순위로 응답이 나왔다. 둘째로 시급한 것으로는 심신장애보호가 24명(24%)으로서 그 비율이 제일 높고 모자가구가 13명(13%)으로서 둘째번의 비율을 보이며 극빈자보호와 부녀자보호가 각기 12명(12%)으로 세째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소재와 농촌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 중에서 아동보호가 대체로 세째번으로 나왔다.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책중에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단지 어촌에 있어서만은 예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둘째번으로 시급한 사회복지시책에 있어서는 읍소재지와 농촌, 어촌의 경우는 노령자보호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아동보호가 시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농촌에 있어서 아동보호문제가 등한 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300명중에서 32명(10.7%)의 응답자가 아동보호문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의 경우만은 예외로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책중에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촌에 있어서도 아동보호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보니 아동보호문제가 뒤로 처진 것으로 이해가 된다.

<표 1> 사회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것(%)

지 역 별 사회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극빈가정보호	182 (31.1)	150 (33.3)	119 (40.4)	91 (30.3)	53 (53.0)
아 동 "	102 (17.4)	73 (16.2)	45 (15.2)	44 (14.7)	4 (4.0)
부 녀 자 "	40 (6.8)	30 (6.7)	7 (2.4)	19 (6.3)	4 (4.0)
노 령 자 "	45 (7.7)	50 (11.1)	21 (7.1)	41 (13.7)	11 (11.0)
심신장애자 "	105 (17.9)	62 (13.8)	58 (19.5)	40 (13.3)	11 (11.0)
모 자 가 구 "	39 (6.7)	32 (7.1)	13 (4.4)	26 (8.7)	2 (2.0)
노 인 가 구 "	25 (4.3)	21 (4.7)	14 (4.7)	17 (5.7)	6 (6.0)
기 타	8 (1.4)	5 (1.1)	8 (2.7)	3 (1.0)	7 (7.0)
모 르 겠 다	34 (5.8)	24 (5.3)	10 (3.4)	13 (4.3)	1 (1.0)
무 응 답	6 (1.0)	3 (0.7)	2 (0.7)	6 (2.0)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표2> 사회복지시설 제공 둘째 시급한 것(%)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능	촌	어	촌
사회복지시설								
구 벤가 정 보 호	58	(9.9)	53	(11.8)	38	(12.8)	42	(14.0)
아 동 "	78	(13.3)	62	(13.8)	39	(13.1)	32	(10.7)
부 녀 자 "	49	(8.4)	38	(8.4)	14	(4.7)	19	(6.3)
노 령 자 "	70	(11.9)	57	(12.7)	53	(17.8)	49	(16.3)
심신장애자	107	(18.3)	99	(22.0)	45	(15.2)	48	(16.0)
모 자 가 구 "	78	(13.3)	36	(8.0)	37	(12.5)	32	(10.7)
노 인 가 구 "	52	(8.9)	38	(8.4)	32	(10.8)	40	(13.3)
기 타	16	(2.7)	10	(2.2)	4	(1.3)	5	(1.7)
모 르 겠 다	50	(8.5)	48	(10.7)	30	(10.1)	24	(8.0)
무 응 답	23	(4.8)	9	(2.0)	5	(1.7)	9	(3.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표 3> 별거자의 가구주와의 판제

지 역 별 가구주와의 판제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능	촌	어	촌
가 구 주 - 남 자	13	(11.7)	24	(12.7)	1	(0.8)	4	(2.9)	1	(3.1)	
아	60	(54.1)	115	(60.8)	82	(65.6)	80	(58.0)	25	(78.1)	
부	2	(1.8)	4	(2.1)							
형 또 는 제	15	(13.5)	7	(3.7)	12	(9.6)	8	(5.8)	1	(3.1)	
손	1	(0.9)	3	(1.6)			5	(3.6)			
기 타 - 남 자	1	(0.9)			1	(0.8)	2	(1.4)			
가 구 주 - 여 자	5	(4.5)									
부	6	(5.4)	1	(0.5)			4	(2.9)	5	(15.6)	
딸	6	(5.4)	29	(15.3)	26	(20.8)	28	(20.3)			
모	1	(0.9)	4	(2.1)	2	(1.6)	1	(0.7)			
자	1	(0.9)	1	(0.5)	1	(0.8)	2	(1.4)			
부											
자 또 는 매			1	(0.5)			2	(1.4)			
손							2	(1.4)			
기 타 판제 - 여 자											
계	111	(100.0)	189	(99.8)	125	(100.0)	138	(99.9)	32	(99.9)	

제 19 장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 시급한 것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불량청소년 문제가 586 명의 응답자중에서 211명(36%)으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어촌을 제외하고는 중소도시와 읍소재지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도 역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일반 가정에서 제일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불량청소년 문제인것 같다.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다 같이 30% 이상되는 응답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에서 불량청소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하여 일반 가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서 비행소년 문제가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원인이 크다고 본다. 최근의 전국적인 통계가 없어서 입증하기 곤란하나 1961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경찰이 취급한 소년(10세-19세)들의 범죄추세를 보면 <표5>와 같이 매년 범죄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단지 1965년에만 1964년보다 소년인구에 대비해 보면 1.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5>를 보면 5년동안에 약 3배에 가까운 범죄건수의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1965년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년범죄는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표5>의 경우도 공식으로 경찰에 검거된 숫자이고 경찰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비행소년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 불량청소년들을 검거하고 강제로 노역에 취역시킨 일과 그 후에 해산이 되어 귀가하는 도중에 일으킨 불상사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불량문제가 항상 국

민들의 이복을 자극하고 있다。(주 1)

<표 4> 아동 및 청소년소녀복지시 책중 가장 시급한것(%)

지 역 별 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기아보호	32 (5.5)	33 (7.3)	32 (10.8)	27 (9.0)	4 (4.0)
심신장애아	103 (17.6)	60 (13.3)	36 (12.1)	71 (23.7)	28 (28.0)
불량청소년, 소녀	211 (36.0)	159 (35.3)	94 (31.6)	71 (23.7)	19 (19.0)
무단출아, 불량아	33 (5.6)	23 (5.1)	20 (6.7)	22 (7.3)	1 (1.0)
윤락여성	44 (7.5)	37 (8.2)	23 (7.7)	8 (2.7)	
보호자무능력아	27 (4.6)	26 (5.8)	19 (6.4)	8 (2.7)	7 (2.0)
무단결석아	42 (7.2)	32 (7.1)	24 (8.1)	29 (9.7)	13 (13.0)
결석아	20 (3.4)	26 (5.8)	26 (8.8)	35 (11.7)	20 (20.0)
고아	31 (5.3)	31 (6.9)	19 (6.4)	20 (6.7)	2 (2.0)
기타	3 (0.5)	4 (0.9)	2 (0.7)	1 (0.3)	4 (4.0)
모르겠다	32 (5.5)	17 (3.8)	2 (0.7)	7 (2.3)	1 (1.0)
무응답	8 (1.4)	2 (0.4)		1 (0.3)	1 (1.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주 1) 동아일보, 1959.

< 표 5 >

소년 범죄 추 세

년 도	검거인원 소년인구	검 거 인 원	검 거 인 원 지 수	1,000 명당 검거인원비율	비 고
1961	5,263,818	41,800	100	7.9	
1962	5,363,828	72,897	174	13.6	
1963	5,674,189	98,794	236	17.4	
1964	6,003,066	126,346	302	21.0	
1965	6,322,505	124,284	297	19.7	

자료 : 비행소년 통계, 법무부교정국, 1966. P. 5

한편 검찰에서 처분한 소년범죄현황을 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4년에는 총사건인원수 38,666명에 비하여 1965년에 있어서는 그 14.4%가 증가한 44,223명이 된다. 이것은 소년인구 1,000명당 약 13명에 해당하는 수이다. 특기할 것은 특별법범에 있어서는 1965년의 범죄자수가 1964년에 비해서 41%이라는 경이할만큼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일반국민이 청소년들의 불량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행 추세는 1966년과 1967년에는 <표 7>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계속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추측컨대 <표 7>에 제시된 검거인원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강력히 단속하면 검거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단속이 철저하게 미치지 못하면 검거인원수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다. <표 7>에서 보

면 특별법범에 있어서는 매년 현저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형법범에 있어서는 1967년에 와서 1966년보다 다소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검거인원은 감소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표 6>

소년 범죄 최종별 대비

단위 : 인원

구분 범죄종	1964		1965		64년에대한 65년의증가 율 (%)
	소년 범죄자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소년 범죄자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계	33,666명	1,153명	44,223명	1,297명	14.4
형법범	33,619	1,002	37,106	1,088	10.4
재산범	5,887	772	28,646	840	10.7
강력범	6,275	187	6,645	195	5.9
기타형법범	1,457	43	1,815	53	24.6
특별법범	5,047	151	7,117	209	41.0

자료 : 범죄백서, 매검찰청, 1966. P.263

<표 7>

소년 범죄취급건수

연도별 검거인원	총수	형법범	특별법범
	검거인원	검거인원	검거인원
1965	※ 12,284	41,951	84,333
1966	94,488	32,149	62,339
1967	70,75	33,510	36,665

자료 : 한국통제년감, 경기관, 1968, P. 380

※ 표 5의 숫자와 다소 차이가 난다.

역하자면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비행의 내용이 집단화하여 가고 있고 또한 흉악화하여 가고 있으며 또한 소녀화하여 가고 있는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고로 청소년들의 불량화 문제를 운위하게 될때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는 문제를 더 깊이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Personality, 사회적구조, 사회적제도, 사회변동등 여러가지 배경적요인을 분석검토해서 비행소년의 발생과정과 그 생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중에서 둘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것은 어촌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심신장애아동보호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촌의 경우는 심신장애아동보호문제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둘째로 높은 비율이 불량청소년보호문제가 지적되었다. 심신장애아동이라고 하면 정신박약아, 정신병질환아동, 신체불구아동, 신체장애아동(맹, 농아아)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문에 속하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을 위시해서 특별한 심신재활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직능재활을 위한 직업보도같은 것이 요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실정을 보면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특수학교의 경우를 보면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국에 1967년말 현재 162개교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맹학교가 59개교, 농아학교가 80개교, 맹아학교가 21개교, 기타 2개교로 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수에 비해서 학급수

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례를 들면 1966년 5월 1일현재 농아아의 경우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교육학령기에 있는 아동이 보사부통계에 의하면 5,192명에 달한다.(주 2) 그러나 1967년 4월 1일현재로 농아학교 초등부에 재적중인 학생수가 1,441명에 불과하다.(주 3) 그리고 맹아학교에 재적생이 316명이 된다. 그 중에서 일부가 농아아라고 하더라도 학령기에 있는 아동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훨씬 미달하는 특수학교의 시설능력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박약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1966년 5월 1일현재 초등교육학령기에 있는 아동이 1,138명이 된다.(주 4) 그러나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1966년현재 하나도 없고, 국립자심학원에서 약 300명에 대하여 수용 및 원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에 있는 한국사회사업 대학부속시설로서 정박아특수초등교육시설이 있다. 이 시설에서도 불과 100명내외의 정박아에 대하여 통학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고로 일반가정에서 심신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를 보낼수 있는 특수학교가 근거리엔 없을때 그리고 특별훈련을 받고 싶어도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도저히 써-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가정에서는 심신장애아동에 대하여 큰 걱정이 아니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에서 심신장애아동보호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가정이 반드시 그러한

(주 2) 장애인조사보고서 보사부, 1966, PP.74-75

(주 3) 한국통계년감, 경기원, 1968, P.349

(주 4) 전계장애자조사 보고서 PP.74-75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966년도 현재 총인구대비 장애자수가 불과 0.4% 밖에 되지않는 것을 보아서도 본조사에서 응답한 가정은 대부분이 그러한 가정인 아니라고 추측이 된다. (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아동문제를 많이들고 나온것은 그러한 자녀를 가진 가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하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은 농촌과 어촌의 경우 그비율이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것을 <표 4>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표 9>를 보면 1967년말 현재 전국에 불구아수용시설이 22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21개시설이 시부에 소재하고 있다. 단지 1개소만이 군부에 있다. 그것도 경북달성군에 있는 것인데 대구시와 근거리에 있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 한다면 농촌에 있는 시설로서 전형적인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시설의 분포가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고로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가정에서는 심신장애아동 보호를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중 둘째로 시급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은 데 대하여 그 응답을 보면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윤락여성보호문제가 122명 (20.8%)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불량청소년문제로서 92명 (15.7%)이 나왔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역시 윤락여성문제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같이 불량청소년문제가 지적되었다.

(주 5) 전제, 장애자조사보고서, P. 8

<표 8>

특 수 학 교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계	남
1964	107	30	10	1,646	388	126	204	140
1965	133	36	15	1,892	439	206	234	160
1966	140	35	14	2,261	449	169	247	173
1967	162	41	16	2,493	447	181	280	190
맹 아 교	59	18	9	720	168	108	106	73
농아학교	80	14	6	1,441	198	61	135	92
맹아학교	21	9	1	316	81	12	37	25
기 타	2	-	-	16	-	-	2	-

자료 : 한국통계년감, 경기원, 1968. P.349

시도별 불구자시설수 (정박, 맹농아, 신체불구등 시설)
(1967년말현재)

<표 9>

지 역 시 도	시 부	군 부	계	비 고
서울특별시	3		3	국립각심학원포함
부산시	4		4	
경기도	2		2	
충북도	1		1	
충남도	3		3	
전북도	1		1	
전남도	4		4	
경북도	2	1	3	
경남도	1		1	
계	21	1	22	

자료 : 보사통계연보, 1967, PP. 346-375

<표 10>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 중 둘째 시급한 것 (※)

복지시설	지역별	서	을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기 아 보 호		29 (4.9)	26 (5.8)	17 (5.7)	16 (5.3)				
심 신장애 아 "		48 (8.2)	49 (10.9)	28 (9.4)	28 (9.3)			14 (14.0)	
불 량청소년, 소녀 "		92 (5.7)	74 (16.4)	41 (13.8)	49 (16.3)			19 (19.0)	
무 단가출아, 부랑아 "		38 (6.6)	31 (6.9)	25 (8.4)	30 (10.0)			12 (12.0)	
윤 락 여 성 "		122 (20.8)	79 (17.5)	42 (14.1)	23 (7.7)			6 (6.0)	
보호자무능력아동 "		32 (5.5)	28 (5.2)	30 (10.1)	30 (10.0)			10 (10.0)	
무 단결식아 "		89 (15.2)	48 (10.7)	38 (12.8)	33 (11.0)			15 (15.0)	
결 식 아 "		41 (7.0)	38 (8.4)	26 (8.8)	39 (13.0)			9 (9.0)	
고 아 "		40 (6.8)	40 (8.9)	34 (11.4)	25 (8.3)			2 (2.0)	
기 타		4 (0.7)	6 (1.3)	3 (1.0)	2 (0.7)			1 (1.0)	
모 르 겠 다		38 (6.5)	25 (5.6)	10 (3.4)	18 (6.7)			4 (4.0)	
무 응 답		13 (2.2)	6 (1.3)	3 (1.0)	7 (2.3)			8 (8.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99.9)			100 (100.0)	

음소재지의 경우도 윤락여성, 불량청소년 문제의 순위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음소재지에 있어서는 윤락
여성 문제가 공통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1968년 6월 현재 소녀 층에 속하는 윤락여
성 중 16~17세 집단이 31명, 18~19세 집단이 325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주 6) 공식통계에는 그러한 정도로 나타나
있으나 틀리는 바에 의하면 15~16세층의 소녀들이 윤락가에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그 계통의 믿음만한 소-
스를 통하여 들은바 있다。출국의 취체가 두려워 일부로 연령을
적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락여성문제를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이 서울특별시, 중소
도시, 음소재지의 순위로 많이 나왔는데 전시한 「보호여성선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윤락여성의 출신지가 경기, 경남지, 충남, 전남
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농어촌출신이라는 것이
다。이렇게 본다면 윤락여성을 배출시킨 농어촌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윤락여성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에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이것은 농어촌출신여
성들이 자기들이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농어촌에 있는 가
족들에게 솔직히 알릴 리도 만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느끼
지 못할 것이다。이와 반대로 도시에서는 그와 같은 윤락여성들
이 이웃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조석으로 그들의 비참한 모
습을 목격하게 되며 나아가서 도시사회의 큰 문제로서 항상 매스
컴이 그 실태를 전달하여 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윤락여성의
문제가 가깝게 느껴지는고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본다。윤락여성을 배출한 근원은 주로 농어촌에 있으나
윤락여성이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도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주 6) 보호여성 선도에 관한 자료, 보사부, 1968. 6. P. 14

인식은 도시의 경우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농촌에 있어서는 결식아 문제가 농촌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아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다。 농촌의 빈곤가정출신의 자녀들이 결식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며 농촌에 있어서는 100명의 응답자중에서 9명이 심신장애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가 전문적써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표 10 참조)

이상과 같은 실태를 요약해 본다면 <표 4>와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량청소년 문제, 심신장애아동 문제, 율락소녀 문제 등이 비교적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 밖에 기아 문제, 결식아동 문제가 또한 지역에 따라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러한 해결되어야 할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깊이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제 20 장 요망되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당신이 살고있는 동리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시설부터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더니 이에 대하여 <표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586명의 응답자중에서 214명(36.5%)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대답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450명의 응답자중에서 158명(35.1%)이, 그리고 읍소재지의 경우는 297명의 응답자중에서 73명(24.6%)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과 어촌에서는 각각 보건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읍소재지에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것은 오늘날 도시의 주택지가 점점 과밀화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공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가의 앙등으로 막대한 공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공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던것이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하여 택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를 들면 서울특별시 중구명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택지로 계획변경한 것이 그러한 실례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실정은 어린이들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시지대의 주택사정은 거의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정원조차도 없는 형편인데 이웃에 있는 공원마저 없어지는 경우 그들의 놀이터를 어디가서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 표 11 > 아동 및 청소년·소년 복지시설 중 가장 잘 되어있어야 할 것 (%)

지 역 별 복지시설	서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아 동 상 담 소	41 (7.0)	30 (6.7)	20 (6.7)	15 (5.0)	1 (1.0)
보 건 시 설	114 (19.5)	92 (20.4)	60 (20.2)	112 (37.3)	40 (40.0)
직 업훈련, 상담소	70 (11.9)	66 (14.7)	46 (15.5)	41 (13.7)	21 (21.0)
탁 아 소	22 (3.8)	8 (1.7)	14 (4.7)	27 (9.0)	2 (2.0)
공원, 어린이 놀이터	214 (36.5)	158 (35.1)	73 (24.6)	32 (10.7)	10 (10.0)
체 육 관	15 (2.6)	5 (1.1)	8 (2.7)	4 (1.3)	3 (3.0)
도 서 관	52 (8.9)	53 (11.8)	44 (14.8)	39 (13.0)	7 (7.0)
문 화 원	9 (1.4)	8 (1.8)	10 (3.4)	9 (3.0)	
기 타	4 (0.7)	5 (1.1)	6 (2.0)	7 (2.3)	16 (16.0)
모 르 겠 다	33 (5.6)	16 (3.6)	15 (5.1)	13 (4.3)	
무 응 답	12 (2.0)	9 (2.0)	1 (0.3)	1 (0.3)	
계	586 (99.9)	450 (100.0)	297 (100.0)	300 (99.9)	100 (100.0)

1959년 제14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 져야하며 그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똑 같은 목적으로 지도된 것이라야 하며 사회와 공공기관은 어린이들이 이 권리를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주 7)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헌장에도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주 8) 이와 같이 UN의

(주 7) 아동복지(증보개정판) 구자현, 1968. P.435

(주 8) 전세, 아동복지. P.197

어린이 권리선언이나 우리나라 어린이현장에 다 같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책임은 어느 한 개인에게 있는것은 아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지사회와 그리고 정부당국에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에서 적어도 동리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과 놀이터가 있어서 자기들의 자녀가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일 강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이 날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특히 도시에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으며 놀이터라고는 도저히 구경조차 할 수 없고 더우기 공원이라고는 버스로 30분이나 타고 가야 있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인도 또는 차도에서 놀다가 여러가지 사고로 인해서 인명에게 까지 손상을 받는 실례가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Chama 시에서 1,000명의 비행소년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90%의 비행소년이 운동장에서 800메터이상되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주 9) 800메터라고 하는것은 소년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은 놀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역시 같은 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운동장과 공원이 많은 지구에는 비행소년의 발생은 소수이고 반대로 운동장과 공원이 적은 곳에서는 비행소년이 많았다』고 한다. (주 10) 미국의 경우

(주 9) 청소년 문제속본, 매일학생출판사, 서모시랑, 1966. P. 194

(주 10) 전제, 청소년 문제속본, P. 194

는 공공운동시설이나 공원에는 대개의 경우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경우에는 비교적 건전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놀이터나 공원이라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출판한 청소년백서를 보면 196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현황이 <표 1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표 12> (1965년 현황)

시 도 별	설 치 수	비 고
서울 특별시	46	
부산 시	148	
경 기	282	
강 원	146	
충 북	78	
충 남	136	
경 북	279	
경 남	153	
전 북	353	
전 남	392	
제주도	31	
합 계	2,053	

자료 : 청소년백서,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1965, P.100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표1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9.8.31 현재 어린이공원이 79개소 어린이놀이터가 11개소가 있다.

1965년의 전시한 <표12>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46개소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합친 것으로 이해된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합치면 90개소가 되는데 이는 약 10여개동에 1개소의 비율밖에 안된다. 그리고 <표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한 어린이를 위한 휴양시설도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된 느낌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성북구는 4개소밖에 안되고 영등포구와 중구는 15개소나 된다. 이와같은 지역적인 편중은 비단 서울특별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여도 필자의 관찰로는 보통 그네가 1~2개가 있고 미끄럼대가 한두대, 철봉과 같은 운동틀이 1~2개 있는 정도이다. 물론 어린이놀이터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어린이풀장이 서울특별시내에 5개소 있는데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에 한해서 있는 정도이고 여타의 구에는 없다. 이것도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는데 중구에는 3개소나 된다.

그리고 공원의 현황을 본다면 <표14>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137개소가 된다. 이 중에서 도로공원과 묘지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면 대공원과 근린공원이 47개소에 달한다. 이는 매구에 약 6개소 평균이 되는 셈인데 실제로 있어서는 이것도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부지역에서는 공원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유료공원의 경우도 특히 어린이에게도 아무때나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을 주고 있다.

<표 13>

서울특별시어린이휴양시설현황
(1969. 8. 31 현재)

구 별	풀 장		어린이 공원		놀 이 터		비 고
	개 소	면적 m^2	개 소	면적(m^2)	개 소	면적(m^2)	
종 로 구	1	300	9	30,302			
중 구	3	900	12	33,588	3	8,998	
성 동			8	41,021			
동 대 문			5	16,377	3	9,096	
서 대 문			12	68,380			
성 북			4	14,385			
마 포			6	24,659	1	918	
용 산			10	35,665	2	7,537	
염 등 포	1	300	13	68,638	2	4,559	
합 계	5	1,500	79	333,015	11	31,108	

자료 : 서울특별시, 녹지과

<표 14>

서울특별시 공원현황
(1969. 8. 31 현재)

공 원 종 별	개 소	면 적 (m^2)
대 공 원	28	46,697,333
근 린 공 원	19	2,400,583
도 로 공 원	8	1,260,964
아 동 공 원	79	333,015
묘 자 공 원	3	1,308,859
합 계	137	51,995,754 m^2

자료 : 서울특별시 녹지과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서울특별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최근에 비행소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어린이들이 건전한 환경속에서 여가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데도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 가보더라도 인위적으로 잘 꾸며진 어린이놀이터를 본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학교운동(Community School Movement)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개방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존하는 사회자원조차도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석국민학교의 한택진교사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국교 5학년생 총 3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더니 83%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폭음탄놀이』 등 124종의 불건전한 놀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좁은 골목길, 조그마한 빈터등에서 놀고 있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의 부족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 11) 그 다음에 보건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응답이 농촌과 어촌에서는 표<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일 높은 비율로 나왔고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읍소재지에서는 둘째번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골로 갈수록 보건시설의 필요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67년말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시설총수가 9,88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473 (35%)개소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화현상을 쉽게 이해할

(주 11) 동아일보, 8면, 1969. 9. 9 석간

수 있다. (주 12) 그리고 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의료시설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풀등) 그리고 영양상태향상을 위한 급식시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건시설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건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 있다고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의 필요성이 또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의 경우 비율이 높게 나왔다. 지방출신의 청소년일수록 상급학교의 진학율이 낮기 때문에 자연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15>에서 보면 서울 68%, 부산 65%의 고등학교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의 경우는 20%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지방일수록 진학율이 낮은고로 자연 상급학교에 진학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1969년 5월말현재 보사부통계에 의하면 보사부감독하에 있는 직업보도시설수는 불과 18개소에 1,438명을 직업보도시키고 있는데 불과하다. (주 13) 노동청의 계획도 1967~1971년까지 기능공을 50,000명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다. (주 14) 그러나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직업보도나 훈련시설의 분포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고로 직업훈련기회를 얻

(주 12) 전 계서, 한국통계년감, 경기원, 1968, P. 365

(주 13) 보사연보, 1967, P. 314

(주 14) 행정백서, 1968, 대한민국정부, P. 482

기 어려운 곳도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상태 하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자녀들의 직업훈련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
(1967년 말 현재)

시	도	중 학교 (A)	고 등 학 생 (B)	(%) $\frac{(B)}{(A)} \times 100$
서울	특별시	179,174	123,887	68 %
부산	시	68,876	44,945	65 "
경기	도	85,188	30,060	35 "
강원	도	44,963	15,751	34 "
충북		41,489	10,875	24 "
충남		79,675	22,275	27 "
전북		66,993	23,504	35 "
전남		94,697	28,680	29 "
경북		133,349	44,008	33 "
경남		104,921	22,662	21 "
제주		12,613	6,277	49 "
합	계	911,938	441,946	48 "

자료 : 한국통계연감, 경기원, 1968, PP. 338-341

둘째번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할 시설이 어떠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보건시설, 도서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순위로 응답이 나왔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보건시설, 도서관의 순위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보건시설,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도서관의 순위이고 농촌

에 가서는 도서관, 보건시설의 순위이고 어촌에 있어서는 보건시설, 직업훈련소등의 순위로 지적되었다。(주 15)

요약해 본다면 도시의 경우는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보건시설, 직업훈련소 그리고 도서관같은 것이 중요한 시설로서 지적되었고 농어촌에 있어서는 보건시설과 직업훈련소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주 15) 사회복지기초자료 조사, 보사부 사회보장심의회 위원회,
1968. P. 87

제 21 장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립책임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립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더니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6>과 같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약 70%의 응답자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80%이외의 응답자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지방의 경우가 약간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동리자체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그 비율이 대단히 낮다. 읍소재지의 응답자중에서 8.8%의 해당자가 동리자체가 설립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기타지역은 이것보다 비율이 낮다. 이와 같이 모든지역의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태도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헌법에도 제 30 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복리를 갖는다』라고 하였고 아동복지법 제 1 조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 3 조에는 아동복리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였는데 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지적한 직업보도시설, 휴양시설(공원, 어린이놀이터같은 시설을 의미함), 보건시설(신체허약아보호시설, 조산시설)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주 16)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게도 그 허가를 하여주게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국민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에 그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주 16) 사회복지실무필휴, 한국사회복지연합회, 오신문화사, 1965.
제 3 편. P. 1

국가예산으로서 설립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어떠냐 하면 1967년도현재 직업보도시설의 예를 보더라도 국립이 1개소, 공립이 3개소, 법인이 18개소가 있는 실정이다. (주 17) 이것을 보면 아직도 국가의 노력이 크게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의 태도를 볼때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주체의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고 지금까지 민간시설에 대하여 주식과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소위 복지국가 (Welfare State)의 기본개념을 따른다고 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
<표 16> 첫째에 대한 설립주관자 (%)

지역별 설립주관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정부	408 (69.6)	372 (82.6)	235 (79.1)	237(79.0)	83 (83.0)
민간단체	42 (7.2)	20 (4.4)	13 (4.4)	13 (4.3)	4 (4.0)
동리자체	44 (7.5)	16 (3.6)	26 (8.8)	7 (2.3)	4 (4.0)
모르겠다	36 (6.1)	21 (4.7)	14 (4.7)	18 (6.0)	
무응답	56 (9.6)	21 (4.7)	9 (3.0)	25 (8.3)	9 (9.0)
계	586 (100.0)	450(100.0)	297 (100.0)	300(99.9)	100 (100.0)

(주 17) 전제서, 보사통계연보, 1967. PP.346-375

제 22 장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표 17>를 보면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의 교육비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과 어촌에 있어서 교육비부족을 말한 응답자가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왔다. 교육비부족을 말한 응답자의 경우를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와 생활이 곤란하여 교육비부족이 어려운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표 19>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의 경우 취학자녀를 4인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이 107이나 된다. 그리고 3인이상 취학자녀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216가구가 된다. 대개 이 집단에 속하는 가정들이 교육비부족을 말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역시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3인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학교의 경우도 직접간접으로 학비가 많이 들거니와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내는 수업료, 학용품대, 교통비, 참고서대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하물며 대학생이라도 있게 되면 훨씬 많은 학비가 든다고 본다. 그러한 견지에서 자녀를 3인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교육비부족을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이 곤란하여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의 경우 <하와 상>과 <하와 하>의 생활수준에 있는 응답자가 173명(29.5%)이 된다. 물론 하류생활수준에 있는 응답자중에서 취학자녀가 없거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할 사람도 있겠으나 추측컨대 전기한 생활수준에 있다고 응답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교육비부족을 지적하지 않으나 생각 한다。

여하간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교육비문제가 취학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현실인것 같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보다 오히려 교육비부족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학자녀수에 있어서 3인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34.7%나 되고 생활수준에 있어서 하류에 속하는 가정이 32.8%가 되므로 교육비부족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명(32.2%)이 되므로 이것과 대조해 보면 그 요인은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읍소재지의 응답자에 있어서도 그 경향이 비슷하며 농촌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하류에 있는 응답자가 40%인데 교육비부족을 말한 응답자가 48.3%나 되므로 중류 이상의 생활수준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교육비부족을 말한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간다。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이 자녀교육비가 경제생활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통학거리가 멀다는 것이 7.5% 나왔다。 이것은 사립국민학교에 다니는 경우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러한 면의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공부를 잘못한다』고 응답한 가정이 5.8%, 『불량친구와 사교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6% 나왔다。

다. 전자의 경우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그러한 인상을 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에서 과도하게 기대한것과 차이가 나서 그러한 응답을 한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흔히 있을수 있는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불량친구와 사교하는 문제는 도시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가정에서 특히 유의해야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농촌과 어촌에 있어서는 교육비문제 다음으로 학교의 통학거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골에 가보면 학교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락이 많은고로 그러한 곳에 사는 가정은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표 17> 자녀 교육에 가장 어려운것 (%)

지 역 별 애로사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133 (22.7)	104 (23.1)	54 (18.2)	78 (26.0)	32 (32.0)
별 로 없 음	130 (22.2)	86 (19.1)	49 (16.5)	24 (8.0)	8 (8.0)
교 육 비 부 족	162 (27.6)	145 (32.2)	113 (38.0)	145 (48.3)	37 (37.0)
학 교 가 좋 지 않 음	18 (3.1)	15 (3.3)	7 (2.4)	6 (2.0)	
통 학 거 리 가 멀 음	44 (7.5)	17 (3.8)	22 (7.4)	23 (7.7)	19 (19.0)
공 부 를 잘 못 함	21 (3.6)	26 (5.8)	21 (7.1)	11 (3.7)	1 (1.0)
매 스 콕 의 악 영 향	31 (5.3)	13 (2.9)	7 (2.4)	1 (0.3)	
불 량 친 구 와 사 교	20 (3.4)	25 (5.6)	8 (2.7)	3 (1.0)	1 (1.0)
동 리 가 좋 지 않 음	9 (1.5)	8 (1.8)	6 (2.0)	2 (0.7)	1 (1.0)
기 타	6 (1.0)	6 (1.3)	8 (2.7)	3 (1.0)	1 (1.0)
모 르 겠 다	4 (0.7)	4 (0.9)	1 (0.3)	2 (0.7)	
무 응 답	8 (1.4)	1 (0.2)	1 (0.3)	2 (0.7)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표 18>

생활수준(%)

지역별 생활수준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상 의 상	13 (2.2)	17 (3.8)	6 (2.0)	12 (4.0)	3 (3.0)
" 하	23 (3.9)	31 (6.9)	9 (3.0)	24 (7.9)	3 (3.0)
중 의 상	178 (30.4)	112 (24.9)	92 (31.0)	74 (24.4)	22 (22.0)
" 하	190 (32.4)	142 (13.1)	84 (28.3)	79 (25.7)	32 (32.0)
하 의 상	96 (16.4)	87 (19.3)	60 (20.2)	65 (21.8)	19 (19.0)
" 하	77 (13.1)	59 (13.1)	46 (15.5)	45 (14.9)	21 (21.0)
모 르 겠 다	9 (1.5)	2 (0.4)			
무 응 답				1 (0.3)	
계	586 (99.9)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표 19>

취학자녀수(%)

지역별 자녀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 음	126 (21.5)	114 (25.3)	55 (18.5)	81 (27.0)	32 (32.0)
1 인	124 (21.2)	94 (20.9)	55 (18.5)	60 (20.0)	21 (21.0)
2 "	120 (20.5)	86 (49.1)	78 (26.3)	76 (25.3)	32 (32.0)
3 "	109 (18.6)	78 (17.3)	62 (20.9)	58 (19.3)	13 (13.0)
4 "	63 (10.8)	48 (10.7)	30 (10.1)	22 (7.3)	1 (1.0)
5 "	32 (5.5)	26 (5.8)	9 (3.0)	3 (1.0)	1 (1.0)
6 "	10 (1.7)	3 (0.7)	7 (2.4)		
7 "	1 (0.2)	1 (0.2)	1 (0.3)		
8 "	1 (0.2)				
계	586 (100.2)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자녀교육에 있어서 둘째번으로 큰 문제가 되는것이 어떠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표20>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는 통학거리 문제, 불량친구와 사교 문제, 교육비부족 문제의 순위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공부를 못하는 문제, 교육비부족 문제, 불량친구와 사교 문제의 차례로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읍소재지의 응답자에 있어서는 불량친구와 사교, 교육비부족, 통학거리 등의 순위로 그 비율이 나왔고 농촌에 있어서는 통학거리 공부를 못하는 문제, 교육비부족 등의 순위로 그 비율이 지적되었고 어촌에 있어서는 통학거리와 교육비부족의 순위로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찰하여 보건대 자녀 교육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그 첫째되는 문제로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교육비부족이 압도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과 그리고 취학자녀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는 직접 교육비 자체도 중고등학교이상의 경우는 비싸고 또한 간접교육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어서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는 불량친구와 사교하는 문제, 공부를 못하는 문제같은 것이 지적되었고 농어촌에 있어서는 통학거리 문제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에 있어서는 비행소년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서 자녀들이 불량친구와 노는것을 부모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농어촌에 있어서는 오늘날 실정이 10리 정도 걸어다니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통학거리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자녀 교육에 둘째로 어려운 것 (%)

지역별 애로사항	서	율	중 소 도 시	율	농	촌	어	촌
비 해 당	133	(22.7)	104	(23.1)	54	(18.2)	78	(28.0)
별 로 없 음	168	(28.7)	124	(27.6)	91	(30.6)	60	(20.0)
교육 비 부 족	35	(6.0)	29	(6.4)	18	(6.1)	18	(6.0)
학 교가 좋지 않음	25	(4.3)	9	(2.0)	8	(2.7)	11	(3.7)
통학거리가 멀음	46	(7.9)	22	(4.9)	16	(5.4)	44	(14.7)
공 부를 잘 못 함	35	(6.0)	42	(9.3)	15	(5.1)	38	(12.7)
매 스쿨의 악 영 향	27	(4.6)	19	(4.2)	15	(5.1)	2	(0.7)
불량친 구 와 사 교	42	(7.2)	28	(6.2)	28	(9.4)	11	(3.6)
동리 가 좋지 않 음	21	(3.6)	19	(4.2)	14	(4.7)	1	(0.3)
기 타	6	(1.0)	15	(3.3)	7	(2.4)	12	(4.0)
모 르 겠 다	11	(1.9)	23	(5.1)	16	(5.4)	17	(5.7)
무 응 답	37	(6.3)	16	(3.6)	15	(5.1)	8	(2.7)
계	586	(100.2)	450	(99.9)	297	(100.2)	300	(100.1)
							100	(100.0)

제 23 장 결식아동과 학교급식제도

1. 결식아의 수

<표 21>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중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거의 매일 또는 전혀 점심밥을 준비해 주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1가구(1.9%)가 된다. 말을 바꾼다면 100명중에서 약 2명의 아동이 도시락을 가지고 못가는 실정이다.

월 1~2회정도 도시락을 못가지고 간다면 큰 문제로 삼을 정도는 아니겠으나 거의 매일 도시락 없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영양상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본다. 이와같은 결식아동은 중소도시의 경우 3.4%(거의 매일-2.7%, 전혀 못함-0.7%)로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높고 읍소재지의 경우가 3%(거의 매일-2.7%, 전혀 못함-0.3%), 농촌에 있어서도 2.3%(거의 매일-2%, 전혀 못함-0.3%), 그리고 어촌에 있어서 6%(거의 매일)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어촌에 있어서도 단연 결식아동수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 읍소재지 그리고 농촌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경우 결식아동수가 중소도시나 읍소재지보다 그 비율에 있어서 낮은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 2-3회 결식하는 아동수에 있어서는 농촌 5%, 읍소재지 1%, 중소도시 3.3%의 비율로서 농촌의 경우가 단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고로 주 2-3회 결식하는 아동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촌이 결식아동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농촌이 아닌가 생각된다.

1967년말현재 전국국민학교아동수가 5,382,500명인고로 그

3 %가 결식아동이라고 추정하여 본다면 161,475명의 결식아동이 있는 셈이다. (주 18) 실제로 있어서 한달에 수회 그리고 한주 일에 수회 결식하는 아동까지 합해서 결식아동의 총연인원수를 따진다면 전기한 결식아동추정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될것이다.

<표 21> 결식아 유무 및 결식정도 (%)

결식정도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가구	235 (40.1)	163 (36.2)	76 (25.6)	99 (33.0)	43 (43.0)
결식아없음	308 (52.6)	236 (52.4)	197 (66.3)	141 (47.0)	23 (23.0)
월 1회정도	8 (1.4)	4 (0.9)	3 (1.0)	12 (4.0)	9 (9.0)
월 2-3회	9 (1.5)	10 (2.2)	5 (1.7)	12 (4.0)	9 (9.0)
주 1회	8 (1.4)	6 (1.3)	4 (1.3)	13 (4.3)	5 (5.0)
주 2-3회	5 (0.9)	15 (3.3)	3 (1.0)	15 (5.0)	5 (5.0)
거의 매일	5 (0.9)	12 (2.7)	8 (2.7)	6 (2.0)	6 (6.0)
전혀 못해줌	6 (1.0)	3 (0.7)	1 (0.3)	1 (0.3)	
모르겠다	1 (0.2)	1 (0.2)			
무응답	1 (0.2)			1 (0.3)	
계	586 (100.2)	450 (99.9)	297 (99.9)	300 (99.9)	100 (100.0)

2. 결식아와 가정배경

생활수준별로 결식아동을 보면 <표 22>에 나타나 있는것 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우 거의 매일 결식하는 아동과 전혀 못 해준다는 결식아동을 합하면 1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주 18): 한국통계연감, 경기원, PP. 334 - 335

<하의하>의 생활수준에 속하고 2명이 <하의상>의 생활수준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의상>과 <중의하>가 각각 1명씩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결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 2~3회 정도 결식하고 있는 아동이 4명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이 <하의하> 1명이 <중의하>의 생활계층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다.

중소도시의 생활수준의 경우를 보더라도 <표 23>에 나타난바와 같이 매일 결식하는 아동이 15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하>에 속하는 아동이 10명 <중>에 속하는 아동이 4명 그리고 이상 하계도 <상>에 속하는 아동 1명이 있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배경의 자녀가 결식은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읍소재지의 경우도 결식아동이 9명 있는데 모두가 <하>의 생활수준출신의 아동들이다.

<표 22> 서울특별시 생활수준별 결식정도(1968년도)

결식정도 \ 생활수준	계	상의상	상의하	중의상	중의하	하의상	하의하	모르겠다	무응답
1) 해당없음	235	5	7	73	79	41	26	4	
2) 없음	308	8	16	100	105	47	28	4	
3) 월 1회정도	8			2	1	1	4		
4) 월 2-3회정도	9			1	2	-	6		
5) 주 1회정도	8			1	-	5	2		
6) 주 2-3회정도	5				1	-	4		
7) 거의 매일	5			1	1	-	3		
8) 전혀못준비해줌	6					2	4		
9) 모르겠다	1							1	
10) 무응답	1				1				
계	586	13	23	178	190	96	77	9	-

<표 23> 중소도시 생활수준별 결식정도 (1968년도)

결식정도 \ 생활수준	계	상의상	상의하	중의상	중의하	하의상	하의하	모르겠다	무응답
1) 해당없음	163	7	8	37	57	30	22	2	
2) 없음	236	9	22	75	76	42	12		
3) 월 1회정도	4				3	1	-		
4) 월 2-3회정도	10					4	6		
5) 주 1회정도	6					3	3		
6) 주 2-3회정도	15	-	1	-	2	5	7		
7) 거의 매일	12	1	-	-	3	1	7		
8) 전혀못준비해줌	3	-	-	-	1	-	2		
9) 모르겠다	1	-	-	-	-	1	-		
10) 무응답									
계	450	17	31	112	142	87	59	2	

그리고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애로점과 결식아동의 실태를 상관시켜 보았더니 <표 24>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일 결식한다는 아동 9명이 모두 『교육비부족』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애로점이라고 응답한 계층에 속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매일 결식한다는 아동이 11명이 있는데 이 응답자들도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애로점이 『교육비부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결식아동과 교육비부족 즉, 경제적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읍소재지와 농촌, 어촌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 자녀교육의 애로점과 결식정도 (서울특별시 1968년)

애 로	결 식 정 도	제	비해당	없 음	월 1 회	월 2 ~ 3 회	주 1 회	주 2 ~ 3 회	거 의 일 배	전 못 해 줄	혀 모 르 겠 음	무 응 답
1) 비해당		133	128	4	-	1						
2) 없음		130	33	93	-	1	1	1			1	
3) 교육비부족		162	39	90	8	6	7	3	3	6		
4) 학교불량		18	5	12				-	1			
5) 통학거리		44	10	33				-	1			
6) 공부못함		21	4	15				1				1
7) 매스악영향		31	5	26								
8) 친구불량		20	5	14		1						
9) 동리불량		9	1	8								
10) 기타		6		6								
11) 모르겠다		4	1	3								
12) 무응답		8	4	4								
계		586	235	308	8	9	8	5	5	6	1	1

가구주의 취업상황과 결식정도를 상관시켜 보면 <표 25>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의 경우 매일 결식하는 아동이 11명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실업 또는 무직에 속하고 2명은 자영업주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상용이 2명, 일용이 4명 되고 기타가 1명된다. 이렇게 보면 일용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진 결식아동이 비례적으로 많은것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매일 결식아동 15명중에서 5명이 실업자이고 다른 5명이 일용취업가구에 속한다. 이와같은 실정으로서 취업형태에 있어서도 결식아동들의 가정배경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매일』 결식한다는 집단과 『전혀 못해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호자의 취업배경이 1명은 실업 또는 무직으로 나와 있고 4명은 <농업, 벌목부>이고 나머지 2명은 <어부, 수렵부>로 나와있다. 이것을 보면 농촌에 있어서도 결식아동 보호자들의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5 > 가구주의 취업상황과 결식정도 (서울특별시 응답자)

취업상황	결식정도	계	비해당	없음	월 1 회	월 2 ~ 3 회	주 1 회	주 2 ~ 3 회	거의 매일	전혀 못해줌	잘 모르다	무응답
1) 실업 또는 무직		81	43	31	3	-	1	1	2			
2) 자영업주		171	63	97	3	1	4	1	2			
3) 상용		267	110	145	1	3	2	2	-	2	1	1
4) 일용		42	12	19	1	4	1	1	1	3		
5) 가내종사		3	2	1	-	-	-	-	-	-		
6) 기타		19	5	12	-	1	-	-	-	1		
7) 잘 모르겠다		3	-	3								
8) 무응답												
계		586	235	308	8	9	8	5	5	6	1	1

3. 학교급식혜택 정도

학교급식이 실시된것은 미공법 480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도입되는 미잉여농산물을 가지고 구호양곡의 일환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보사부의 발표를 보면 급식아동의 적격요건은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동으로서 도시락을 지참할 형편에 있지 못한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영세민가정출신외에도 도시락을 준비해주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가정출신 자녀들에 대하여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기준은 1968년현재, 1인1회에 소맥분 120g, 분유 30g, 식유 4g 합계 154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하여 연간 아동1인에 대하여 12.32kg의 급식을 위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연간기준량은 1인1일 154g의 계산으로 해서 80일간의 급식량이 된다. 결식아동중에는 매일 결식상태에 있는 아동과 1주일에 2~3회 결식상태에 있는 아동이 있으므로 평균으로 한다면 1인당 연간 80일정도의 급식으로서 결식아동을 거의 카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것 같다.

급식아동수를 보면 1966년에 250만명 1967년에 250만명, 1968년에 200만명의 인원수가 정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있다.

이와같은 인원책정에 따라 1966년도에 그 급식량이 50,105,328kg에 달하였고 1967년도와 1968년도에 있어서도 각기 인원수에 해당하는 급식량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19)

이와같은 학교급식은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빵으로 만들어 매일

(주 19) 보사부 사회과 자료

주식으로 아동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시설을 가지고 빵이나 죽을 만들어 급식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산간벽지나 섬에 있는 학교에서는 자체시설에서 빵이나 죽을 만들어 급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료를 집으로 보내서 죽을 쑤어 먹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실시하고 있는 『급식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표 26>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비해당자 51.8%를 제외하고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1.9%, 중소도시의 경우 6.2%, 읍소재지 1%, 농촌 12.3%, 어촌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5>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일결식아동이 1.9%인데 매번 받고 있다는 집단이 1.9%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거의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매일결식아동이 3.4%인데 매번 받는다는 집단이 6.2%가 된다. 이 경우에는 매일 결식아동 이외에 대하여도 급식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농촌에 있어서도 매일 결식원 이외의 아동에 대하여도 급식상태가 좋게 나와 있다. 농촌의 경우는 매일 결식아동이 6%인데 매번 받는다는 아동의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어촌에 있어서는 매일결식아동도 매번 급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학교 급식혜택 정도 (%)

지 역 별 혜택 정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304 (61.8)	179 (39.8)	90 (30.3)	102 (34.0)	55 (55.0)		
받	은	적	없	음	72 (24.2)	25 (8.3)	6 (6.0)		
매	번	받	음	음	3 (1.0)	37 (12.3)	2 (2.0)		
간	혹	못	받	음	85 (28.6)	106 (35.3)	26 (26.0)		
거	의	"	47 (8.0)	42 (9.3)	46 (15.5)	27 (9.0)	14 (14.0)		
모	르	겠	다	7 (1.9)	1 (0.3)	1 (0.3)			
무	응	답	9 (1.5)			2 (0.7)			
계		586 (99.9)	450 (100.0)	297 (99.9)	300 (99.9)	100 (100.0)			

4. 학교 급식제도 평가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급식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더니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응답자의 경우<표 27>과 같이 214명의 비해당자를 제외하고 372명 중에서 44명(11.9%)이 그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15.6%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19.4%, 농촌에 있어서는 16%, 어촌에 있어서 9.4%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읍소재지와 농촌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비율의 비판이 나왔다.

한편 현재의 급식제도를 잘 하는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해당자의 55.9%, 중소도시가 61.1%, 읍소재지가 64.7%, 농촌이 57.6%, 어촌이 59.4%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전체지역을 통털어 평균 50~60% 내외의 긍정적인 응답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식제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집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읍소재지, 농촌 등 각지역에 있어서 45~49세 연령층에 있는 응답자들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왜 이 연령층에 있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7>

학교 급식제도 평가 (%)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214 (36.9)	67 (14.9)	39 (13.1)	57 (19.0)	36 (36.0)
매우 잘 함	61 (10.4)	66 (14.7)	34 (11.4)	61 (20.3)	8 (8.0)
잘 하는 편	147 (25.1)	168 (37.3)	133 (44.8)	79 (26.3)	30 (30.0)
그저 그렇다	54 (9.2)	54 (12.0)	34 (11.4)	38 (12.7)	17 (17.0)
잘 못 하는 편	41 (7.0)	54 (12.0)	46 (15.9)	32 (10.7)	6 (6.0)
매우 잘못 함	3 (0.5)	6 (1.3)	4 (1.3)	8 (2.7)	
모르겠다	43 (7.3)	31 (6.9)	6 (2.0)	17 (5.7)	2 (2.0)
무응답	23 (4.0)	4 (0.9)	1 (0.3)	8 (2.7)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99.8)	300 (100.1)	100 (100.0)

학교급식의 혜택빈도와 급식제도 평가를 상관시켜 보았더니 <표 28>에 나타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매번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 11명중에서 8명이 「매우 잘 한다」 또는 「잘하는 편」 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받은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16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비해당이고 86명 (50%)이 「매우 잘 한다」 또는 「잘하는 편」

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급식의 혜택을 못받고 있어도 급식제도는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리고 「거의 못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47명 중에서도 27명(57.4%)이 「매우 잘 한다」 또는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역시 이것은 급식의 혜택은 거의 못받고 있으나 급식제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급식을 「받은적이 없다」는 집단이 9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비해당이고 나머지 89명중에서 58명(매우 잘 한다 26명, 잘하는 편 36명)이 잘한다 또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65%의 응답자가 받은적이 없으면서 그 응답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급식을 못받았다는 것과 급식제도 그 자체와를 구별해서 응답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표 28> 급식제도 평가와 혜택의 정도
(서울특별시의 응답자)

혜택 정도 \ 평 가	계	비해당	매우 잘 함	잘하 는 편	그 그 령 다	잘 못 하 는 편	매우 잘 못함	모르 겠 다	무응답
비 해 당	77	71	-	2	2	-		1	1
받은적이없음	161	10	31	55	25	23	1	13	3
매 번 받 음	11	-	3	5	2			1	-
간혹 못받음	37	-	4	24	5	2	1	1	-
거의 못받음	47	-	5	22	10	7	-	3	-
모 르 겠 다	227	133	14	36	8	8	1	17	10
무 응 답	26	-	4	3	2	1	-	7	9
계	586	214	61	147	54	41	3	43	23

5. 급식제도 불실에 대한 이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더니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응답자 686명중에서 44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 44명중에서 급식이 불실하다는 이유를 보면 질이 불량하다는 응답자가 20명(45.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60명중에서 25명(41.7%)이 「필요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못한다」고 응답한 것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읍소재지의 경우는 역시 「질불량」과 「필요아동에게 적절한 급식 못함」이라는 이유가 급식불실에 대한 주요한 불평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촌에 있어서는 역시 「필요아동에게 적절한 급식 못함」이 두드러진 이유로 나와 있다. 이상 급식평가에 있어서 못한다는 이유를 집약해 보면 「질불량」이라는 것과 「필요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못함」이라는 두가지 큰 이유가 부각되었다. 첫째로 질불량이라는 이유는 원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는 경우에 빵의 질이 좋지 않다는데서 그러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나 짐작이 간다. 빵의 재료함량이라든지 빵의 제빵상의 기술 같은 것이 그러한 응답자들에게 좋게 비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간혹 신문지상에서도 제빵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필요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못함」이라고 응답한 것은 꼭 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아동이 간혹 제외되고 그보다 사정이 낫은 아동이 급식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꼭 급식을 받아야 할 아동이 급식량의 절대량 부족으로 급식대상에서

제외 되었을때 역시 그와같은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여하간 급식을 위한 재료의 절대량 확보의 곤란성과 또한 급식대상자들과 급식대상 제외아동들 중에서 그 상황이 시시로 변동되므로 인해서 그들 중에는 꼭 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꼭 급식을 했으면 하는 아동들이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실정이 수시로 조정이 안되고 당초에 조사한 대로 급식이 지속되다 보면 급식현황에 대하여 그와같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표 29> 잘못 한다고 평가시 그 이유 (%)

지 역 별 이 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542	390	247	260	94
절 불 량	20 (45.5)	11 (18.3)	15 (30.0)	3 (7.5)	
양 부 족	1 (0.3)	7 (11.7)	8 (16.0)	3 (7.5)	1
배양족으로는끼니가안됨	4 (9.1)	9 (15.0)	5 (10.0)	6 (15.0)	1
필요아동에게적절한급식못함	17 (38.6)	25 (41.7)	14 (28.0)	26 (65.0)	4
부정있는것같은	2 (4.5)	8 (13.3)	7 (14.0)	2 (5.0)	
모 르 겠 다			1 (2.0)		
계	44 (100.0)	60 (100.0)	50 (100.0)	40 (100.0)	6

<표 30>에서 보는바와 같이 「급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와 「가꾸주 직업」을 상관시켜 보았다. 서울특별시의 568명의 응답자에 있어서 비해당이 438 명이고 미상과 무응답에 해당하는 95 명을 제외하면 53 명이 급식불실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질불량」과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 못한다」는 이유가 각각 22 명으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질불량을 말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실업 또는 무직>이 6 명 <사무 종사자>가 5 명 <판매 종사자>가 5 명이 된다. 그리고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 못함」이라고 응답한 22 명중에도 <판매 종사자> 7 명, <실업 또는 무직> 5 명 그리고 <사무 종사자> 4 명의 순위로 나왔다. 이것을 보면 급식불실 이유와 어떠한 직업과의 밀접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타지역에 있어서도 직업과 급식불실 이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출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응답자의 교육정도와 급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와를 상관시켜 보았다.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질불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 명 있는데 그 중에서 20 명 (90 %)이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을 못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 명으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 명 (81 %)이 역시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볼 때 불실이유를 말한 사람이 53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6 명 (86.8 %)이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유자이다. 이것을 보면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표 30> 금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와 가구주의 직업 (서울특별시)

지 업	이 유	제	비 해당	질 불량	양 부족	행·불행 조·불조	필요한 노동에 정당 상급 직	부 정 있 음	미 상	무 응 답
실업 또는 무직		89	63	6			5		8	7
전문적 기술적 직업		56	40	3	1	2			6	4
관리적 직업		47	37	2		1			3	4
사무종사자		87	68	5			4	1	4	5
판매종사자		133	98	5		1	7		8	14
농부·벌목부 등		14	12	-			2			
어부·수렵부 등		-	-	-						
광부·채석부 등		7	7	-						
교통·제신종사자		20	15	-			1		2	2
가공·생산·단순노동자		99	68	1		1	3	1	9	16
서비스 직업		26	22	-	1				1	2
기타 또는 분류불능		8	8	-						
계		586	438	22	2	5	22	2	41	54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는 실정이 다소 다르게 나왔다.<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식불실 이유를 말한 사람이 64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등학교 학력소유자는 30명(46%)이 나왔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오히려 64명중에서 35명(54%)이 국민학교 교육과 그 이하의 학력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집단에 속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소도시의 경우는 반드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비판조라는 증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읍소재의 경우도 43명이 비판조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19(44%)명이 중등학교이상 학력소유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수준이 높다고 하여 급식에 대하여 비판조라는 가설은 입증은 안된다고 본다.

학교급식제도 평가에 있어서 「잘못 하는 편」과 「매우 잘 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잘 못한다는 이유와를 상관시켜 보았다. <표 33>을 보면 「잘못 하는 편」과 「매우 잘 못함」이라는 양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총수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90명(45%)이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 못함」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질불량」이라는 응답을 45명(22.5%)으로서 그 다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빵, 죽으로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20명(10%)으로서 세 번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을 못함」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질불량」이라는 문제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큰 이유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표 33>에서 보면 어느지역에 있어서나 해당이 되는것 같다.

그런고로 앞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좀더 깊이 조사 연구한다면 전술한 이유가 가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표 31 > 급식불식 이유와 응답자의 교육정도 (서울특별시)

교육정도	이유	계	비해당	질불량	양부족	배.죽으로 는불만	필요이동에 계정상 없음	부정있음	잘모르겠다	무응답
문	맹	22	16						2	4
한	수 학	8	8						-	2
국	문 해 득	20	15	1			2		8	18
국	민교 (중퇴포함)	133	103	1		1	2		9	12
중	학교 (")	113	80	3		2	7		7	9
고	등교 (")	147	112	8	1	2	8		15	8
대	학 또는 그 이상	142	104	9	1		3	2		1
무	타	-	-							
응	답	1	1							
계		586	438	22	2	5	22	2	41	64

<표 32>

금석불실 이유와 응답자의 교육정도 (중소도시)

교육정도	이유	계	비해당	질불량	양부족	불응·중요 불응·중요 불응·중요	필요이유에 대응하지 않음	부정적 응답	잘못된 응답	무응답
문	명	32	26	1	1		1	2	1	
한	문 수 학	24	16			1	2	1	3	1
국	문 해 록	46	35	1			7	1	2	-
국민교 (중퇴포함)		130	100	2	3	5	5	1	6	8
중학교 (")		69	48	2	1	2	7	-	6	3
고등학교 (")		85	65	1	1	1	4	2	10	1
대학 또는 그 이상		62	45	5	1		2	1	3	5
기	타	-	-				-	-	-	-
무	응 답	2	1							1
계		460	336	12	7	9	28	6	31	19

표 33 > 학교 급식제도 평가와 잘 못한다는 이유

금 식 평 가	잘 못 하는 이유		제	비 해 당	질 불 량	양 부 족	빵 · 죽 · 국 · 탕 · 음 · 료 는 불 만 족	필요이동에 계정상 금식 합	부 정 있 음	잘 모 른 다	무 응 답
	잘	못									
잘 못 하 는 편	서 울 특 별 시	41			16	1	1	18	2	1	2
	중 소 도 시	54			10	6	7	24	5	2	
	읍 소 재 지	46			14	7	5	14	6		
	농 촌	32			1	2	4	20	2	1	2
	어 촌	6					1	5			
매 우 잘 못 함	서 울 특 별 시	3			2						1
	중 소 도 시	6						4	2		
	읍 소 재 지	4			1	1			1		1
	농 촌	8			1	—	2	5			
	어 촌	—									
총 수		200			45	17	20	90	18	4	6

급식혜택도와 급식불실에 대한 이유를 상관시켜 보았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32명중에서 비해당자 378명을 제외한 154명중에서 57명(37%)이 「필요아동에게 정상급식을 못함」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이 무응답자이고 세째번이 「잘 모른다」고 나왔다. 네째번이 「질불량」이라고 응답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간혹 못받았다던지 또는 거의 못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집단의 응답을 집약해 보면 필요아동에게 정상적으로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급식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집단의 응답인고로 자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응답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하여간 <표 34>의 제시된 응답자에 있어서도 급식불실 이유로서 급식이 필요아동에게 정상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수가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전국적으로 평균 결식아동수가 2~4%가 된다. 그러나 어촌의 경우는 6%의 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식아동의 가정배경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상, 중, 하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때 하에 속하는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배경을 보면 실업자 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주의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급식자원에 있어서는 주로 미국잉여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1일 급식수준이 154g 안배 칼로리와 영양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볼 때 아직도 저수준에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외국에

서 도입되는 잉여농산물을 주된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급식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제한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급식제도에 대하여는 각지역을 통하여 볼 때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잘 못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급식제도에 있어서 불실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질이 불량하다는 것과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표 34> 금식해택도와 금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

금식 평 가	잘 못 하는 이유		계	비해당	질불량	양부족	빵은 출만	필요아동에 개정상금식 못함	부정있음	잘 모른다	무응답
	서 울 특 별 시	중 소 도 시	읍 소 재 지	농 촌	어 촌	서 울 특 별 시	중 소 도 시	읍 소 재 지	농 촌	어 촌	서 울 특 별 시
간	37	102	85	106	26	28	75	68	70	21	5
혹											4
못											
받											
음											9
											4
제	47	42	46	27	14	32	28	29	15	12	4
거											
의											1
못											
받											
음											1
제	532	378	22	12	6	57	23	28			

제 24 장 고아양연에 대한 태도

1. 고아의 현황

1967년말 현재 보사부통계년보를 보면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에 아동복지 시설이 579개소 있고 거기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수가 71,816명이 된다. 이러한 아동들은 형식상 이유로서는 양육을 책임질 연고자가 없는고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연고자를 가지고 있다는 당국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수용당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위장되고 있는 이상 무연고자로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한국전쟁이 종식이 된후 15년이상이 경과된 지금에 그렇게 많은 고아가 있을리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수용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성분을 분류해 보면 <표 3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고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기아와 미아의 일부, 고아, 전제아동이고 그외의 수용아동의 성분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고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성분의 분류가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많은 비율의 아동은 결손가정이나 또는 파파가정 출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오히려 그 부모슬하에서 양육되는 것이 부적합할런지는 몰라도 결코 고아라고 할수 없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된다.

하여간 이와같은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집단 수용된 상태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과 결함이 있는 것이다. 소위 시설병 (Hospitalism)이라는 증세를 시설출신 아동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도 그러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런고로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을 친가정과 비슷한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인격성장과 인격형성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그와같은 이유에서 어떻게 하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일반가정으로 입양을 시켜서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 당국의 당면한 시책으로 되어 있다.

전기한 시설수용 아동을 시설보호 (Institutional Care)에서 가정보호 (Home Care)로 바꾸는 방법으로서 입양 (Adoption), 위탁양육 (Foster Care), 고용위탁보호 (Foster Care by Employed), 귀가조치등이 있다.

입양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구분하는데 국내입양은 어린이를 원하는 우리나라 가정에 법적으로 입양을 시켜 영구적으로 그 가정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다. 신민법이 공포됨으로써 이성간의 입양이 가능해져서 이것을 원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국외입양은 다른나라 가정으로 영구히 법적입양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혼혈아를 많이 국외입양 시켰는데 최근에는 한국혈통의 어린이도 미국과 스위스등지로 상당히 많은 수가 입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양육은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일정기간 자기 자녀와 같이 키워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리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용위탁보호는 비교적 년장아의 경우 직장을 얻어 고용을 시키되 그 신원을 그 직장의 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것을 말

한다. 이 경우에도 법적인 입양은 아니고 고용을 통한 보호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귀가조치는 부모나 연고자가 있을때 그 보호자에게 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표 35 >

아동복지시설 및 수용아동 현황

(1967 년말 현재)

시 설 별	시 설 수	수용인원수	남	여	비 고
영 아 원	79	10,847	3,288	7,559	
육 아 원	444	52,428	29,231	23,197	
신체장애아시설	22	2,351	1,382	969	
유 럽 아 시 설	11	4,253	3,544	709	
직업보도시설	18	1,937	1,193	744	
합 계	579	71,816	38,638	33,178	

자료 : 보사통계년보 1967. PP. 314 & 390

<표 36>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성분

(1967년말 현재)

성 분 별	인 원	총 수		
		총 수	남	여
기	아	14,638	5,285	9,353
미	아	1,742	1,065	677
고	아	38,630	21,680	16,950
불	구 아	1,959	1,098	861
려	약 아	775	586	189
전	제 아	143	67	76
정	신 박 약 아	488	311	177
불	량 아	1,170	857	313
빈	곤 가 정 아	2,624	1,514	1,110
수	형 자 의 자 녀	145	85	60
학	대 아	313	193	120
미	감 아	2,287	1,288	999
부	또는 모의 사망	2,729	1,640	1,089
부	모 의 이 혼	589	346	243
유	량 아	2,821	2,104	717
가	정 내 의 질 병	129	83	46
기	타	634	436	198
합	계	71,816	38,638	33,178

자료: 보사 통계연보, 1967. Pp. 390~393

전기한 방법에 의하여 1967년도에만도 시설에서 가정보호로 전환된 인원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92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하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사회복지관계 요로에서도 어떻게하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가정으로 보내느냐 하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입양이나 위탁양육에 있어서 국민의 협조없이 는 도저히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 표 37 > 시설수용 아동의 가정보호로에 전환실적 (1967년도)

구 분	인 원	비 고
국 내 입 양	1,011	
국 외 입 양	848	주로 미국, 스위스
위 탁 양 육 (유료)	1,860	
" (무료)	632	
고 용 위 탁	564	
귀 가 조 치	4,577	
합 계	9,492	

자료 : 보사통계년보, 1967. Pp. 344~345

2. 고아양연에 대한 태도

「고아를 양자나 양녀로 삼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더니 <표 38>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586명의 응답자중에서 「당장 원한다」는 대답은 불과 9명(1.5%)밖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20명(3.4%) 나왔다. 그리고 「전혀 생각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501명(85.5%)이 된다. 이것을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적입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양연, 다시말하면 위탁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유무의 상관없이 고아들이 불쌍하니 데려다 제자식처럼 길러줄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골자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응답자별로 고아양연의 태도를 보았더니 남녀간에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구주의 직업별로 응답자를 보았더니 당장 양연하겠다는 태도가 어떠한 특정한 직업 집단에 몰려 있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양연 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에 있어서도 「실업 또는 무직」 집단이 78명의 응답자중 4명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다. 이것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느껴지나 무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인 것과 관련시켜서 양연이 곤란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78명중 4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 밖에는 두드러지게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없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직업의 형태와 양연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중소도시와 농촌에 있어서는 「농부, 별목부」의 경우가 타직업에

비해서 양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 양연을 하겠다」는 집단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와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직업에 집중된 경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정도별로 보아도 양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어느 특정한 집단에 집중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육정도가 양연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생활정도별 양연희망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 중 하 각계층에서 양연을 원하고 있으니만큼 생활정도가 양연태도를 좌우하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연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냉담한 것을 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표 38 > 고아 양연에 대한 태도 (%)

양 연 태 도 \ 지 역 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당 장 원 함	9(1.5)	10(2.2)	6(2.0)	8(2.7)	1(1.0)
앞으로 하겠음	20(3.4)	21(4.7)	10(3.4)	5(1.7)	2(2.0)
더생각해보겠음	39(6.7)	38(8.4)	20(6.7)	26(8.7)	7(7.0)
전혀생각없음	501(85.9)	361(80.2)	257(86.9)	251(83.7)	87(87.0)
모 르 겠 다	11(1.9)	18(4.0)	4(1.3)	10(3.3)	3(3.0)
무 응 답	6(1.0)	2(0.4)			
계	586(100.0)	450(99.9)	297(99.9)	300(100.1)	100(100.0)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린이 양육에 필요한 실비를 준다면 기르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것은 유료위탁양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보면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냥 물어보았을때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자수가 증가 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냥 고아를 양육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을때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85.5%였는데 양육비용을 대준터이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때는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로 줄었다. 그 격차는 7.3%가 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80.2%에서 68%로,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86.5%에서 75.1%로 농촌의 경우는 83.7%에서 74.3%로 어촌에 있어서는 87%에서 78%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고아를 양육할 생각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 양육비가 들기 때문에 얼른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으나 양육비를 준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안되기 때문에 수고가 되더라도 동정하는 의미에서 배려다 양육할 수 있다는 가정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표 40>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 없다」고 응답한 사람중에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는 당장에 양육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명 있었고 앞으로 양육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1명이 있었으며 그리고 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25명이나 되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 양육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표 41>과 같이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 없다」고 응답한 사람중에서 양육비를 준다면 「당장 양육을 원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명, 「앞으로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명이나 각각 증가 하였다.

<표 42>에서 보면 읍소재지의 응답자중 「전혀 생각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중에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 5명이 「당장 원한다」고 하였고 11명이 「앞으로 하겠다」, 18명이 「더생각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표 43>과 같이 농촌 응답자의 경우도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 28명이 긍정적인 대답으로 들고 있다.

이와같이 전체적인 경향이 그냥 양연하겠느냐는 경우보다 양육비를 줄테이니 하겠느냐는 경우에 있어서 반응이 훨씬 좋은 것을 볼수 있다.

<표 39> 고아 유료거택보호에 대한 태도 (%)

지 역 별 거택보호태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당 장 원 함	13 (2.2)	27 (6.0)	18 (6.1)	13 (4.3)	3 (3.0)
앞 으 로 하 겠 음	34 (5.8)	30 (6.7)	18 (6.1)	15 (5.0)	8 (8.0)
더 생각해 보 겠 음	45 (7.7)	63 (14.0)	33 (11.1)	34 (11.3)	8 (8.0)
전 혀 생 각 없 음	458 (78.2)	306 (68.0)	223 (75.1)	223 (74.3)	78 (78.0)
모 르 겠 다	23 (3.9)	18 (4.0)	5 (1.7)	12 (4.0)	3 (3.0)
무 응 답	13 (2.2)	6 (1.3)		3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99.9)	100 (100.0)

<표 41>

중소도시 응답자의 양연태도

양 육 비 없 이 양 연 한 다 는 경 우	주 우 를 경 우	제	당 장 원 한 다	당 장 원 한 다	앞 으 로 하 겠 다	더 생 각 해 보 겠 다	전 혀 생 각 없 다	모 르 겠 다	무 응 답
당	장	원	한	다	10	9	1		
앞	으	로	하	겠	다	21	8	3	1
더	생	각	해	보	겠	다	38	4	1
전	혀	생	각	없	다	361	6	13	3
모	르	겠	다		18	3	2	13	
무	응	답			2				2
계					450	27	63	18	6

42

음소제지양자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없이 양육한다는 경우	제	당장 원한다	앞으로 하겠다	더 생각해 보겠다	전혀 생각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당장 원한다	6	6	-	-	-	-	-
앞으로 하겠다	10	5	4	-	1	-	-
더 생각해 보겠다	20	2	3	15	-	-	-
전혀 생각 없다	257	5	11	18	222	1	-
모르겠다	4	-	-	-	-	4	-
무응답	-	-	-	-	-	-	-
계	297	18	18	33	223	5	-

<표 43>

농촌 응답자의 양연태도

양육비 없이 양육한다는 경우	양육비를 주지는 않는다	제	당장 원한다	앞으로 하겠다	더 생각해 보겠다	전혀 생각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당장 원한다	8	6	-	1	1	1	-	-
앞으로 하겠다	5	2	1	7	-	1	-	1
더 생각해 보겠다	26	-	5	14	18	221	4	1
전혀 생각 없다	251	5	1	1	1	-	8	-
모르겠다	10	-	1	-	-	-	-	-
무응답	-	-	-	-	-	-	-	-
계	300	13	15	34	223	12	3	

양육비를 줄터이니 양연하겠느냐는 경우에 이것을 생활정도별로 보았더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어느계층에 두드러지게 집중된 현상은 없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중의 하」에 속하는 집단 11명이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읍소재지의 경우는 「중의 상」, 「중의 하」 그리고 「하의 하」 계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농촌에 있어서도 읍소재지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보면 중류생활정도의 계층이 다소 양연에 대하여 반응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유료양연을 원하는 집단을 교육수준별로 보았더니 중소도시, 읍소재지, 농촌에 있어서는 초등교육정도의 응답자들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10%를 미달하는 정도이다. 그밖에는 어느 특정한 집단에 있어서의 집중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양연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었고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는 다소 그 희망자가 증가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양연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았고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중류정도의 응답자가 다소 양연희망을 더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제 25 장 심신장애아동의보호실태

1. 심신장애자 수

신체허약아, 불구아, 정신장애아(또는 저능아)의 유무와 또 있다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냐는 데 대하여 물었더니 <표 44>와 같이 나왔다.

여기에서 심신장애아동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4.6%, 중소도시 4.4%, 읍소재지 1.7%, 농촌 6%, 어촌 9%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볼때 읍소재지만이 1.7%로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자기집의 병신이나 천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태도가 작용하여 정확한 응답을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서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신체장애자복지법과 정신박약자복지법을 만들고 법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책을 쓰고 있다. 그런고로 읍소재지에서 심신장애아동이 적게 나온것은 정확한 응답회피거나 그렇지 않으면 표본추출이 불합리하거나 어떠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촌에서는 9%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표 11>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촌에서 가장 크게 요망하고 있는 것이 보건시설이라고 응답자의 40%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정도인만큼 이는 어촌에 있어서 그만큼 보건시설이 부족하다는 말도 되며 나아가서 보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신장애자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

다 그런고로 어촌에 있어서 심신장애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본다.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4%에서 6%사이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UN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의 비율이 7%내외가 된다고 하였다. 보사부 장애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1966. 5. 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인원수는 110,304명이 된다. 이는 1966. 10. 1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수 29,208,000명에 대비하면 0.38%에 불과하다.

(주 20) 이 집계에 나타난 장애인수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조사에 나타난 심신장애자 비율이 대체로 4~6%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다. 보사부 장애인 조사보고서에는 언어장애자와 사회장애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고로 본조사의 비율은 더욱 높은것을 의미한다. 본조사에 있어서는 표본에 의한 것이고 보사부 장애인조사의 경우는 각 시도→보건소→동→통→장애인(보호자)의 계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양자간의 조사상의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와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더 구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 20) 장애인조사보고서. 보사부. 1966. P. 8

한국통계년감. 경기원. 1968. P. 16

<표 44> 요 보호아동의 보호방법 (%)

지 역 별 요 보호아동 보호 방법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능 춘			어 촌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요 보호아동 없음	580	568	583	448	435	448	296	294	297	293	290	296	94	97
보호시설에 보냄		1			1						1	1		
전문시설에 다님		1			2									
가내보호자들봄	4	5	1	1	6	1		2		1	5		4	3
친척에게 의탁														
친지에게 "														
혼자내버려둔상태		4			4		1						2	
정규학교에 다님		5	1		1			1		3	1			
기 타	1	1		1										
모 르 겠 다	1	1	1	1	1	1		1		3	3			
무 응 제	586	586	586	451	450	450	297	298	297	300	300	297	100	100

2. 보호의 형태

전체응답자 1,733 명중에서 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는 심신장애자가 <표 44>를 보면 4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 명은 불구자이고 1 명이 정신장애자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불구아 1 명이 있는데 삼육아동재활원이나 삼성농아원 둘중의 한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전문시설에 다니고 있는 불구자가 1 명이 있는데 이 아동의 경우는 전문시설이라는 면에서 삼육아동재활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1 명의 불구아가 보호시설에, 2 명의 불구아가 전문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농촌의 경우에는 1 명의 불구아와 1 명의 정신박약아가 보호시설에 보내지고 있다. 농촌지역에 정신장애자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시에 있는 시설에 보내고 있지 않나 짐작이 된다.

가내보호자가 돌보고 있다는 아동수가 <표 44>와 같이 79 명의 심신장애자중에서 33 명 (42 %) 이 된다. 가정에서 어느정도 보호하는지는 몰라도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과 그리고 재활을 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이 된다. 단순히 의식주나 애정을 베푸는 데는 가내보호가 이상적이라고 보나 심신장애자에 있어서는 특수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내보호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심신장애자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 아닌이상 정신상의 또는 신체상의 재활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이며 그런고로 심신상의 재활이 요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심신상의 재활에 따라 직업면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을 가능한대로 자기능력에 맞도록 받으므로써 장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은 재활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회사업가, 심리학전문가, 의사(정신과의사 포함), 간호원, 작업요법사, 물리요법사, 직업보도사등등의 지도를 거쳐 비로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에서 이들을 단순히 보호한다는 것은 심신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는 난점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혼자 내버려둔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에서 각각 4명씩의 불구자가 이 범주에 속하였다. 혼자 내버려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양육하고는 있으나 이렇다할 특수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심신장애자의 경우도 재활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정규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2명 있었다. 이 중에서 8명은 불구자이고 3명은 신체허약아이며 1명은 정신장애자이다. 지체부자유아나 신체허약아의 경우 중증이 아닌 아동은 일반정규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하겠으나 맹농아아의 경우는 정규학교일지라도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것으로 본다. 단순히 정규학교에 다니는것 만으로 심신장애자들의 보호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의 시설과 전문교사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

요약해 본다면 79명의 심신장애자중에서 3명만이 전문시설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불과 3.5%의 심신장애아동이 앞으로의 재활을 위한 과학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것 같다. 그리고 정신장애자의 경우는 한사람도 전문시설에 다니고 있지 않다. 이점에 있어서는 시설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갈만한 처지가 못되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19 세이하 남녀아동이 1960년도의 인구조사를 본다면 13,306천명이 된 (주 21) 본조사에 나타난 심신장애자의 매체의 비율인 4 %를 적용시킨다면 그 인원수는 무려 532,240 명이 된다. 심신장애아들의 중경도에 따라서 그 보호대책에도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심신장애아를 위한 전문시설, 전문인력의 확충이 깊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주 21) 한국통계년감. 1968. P. 19.

제 26 장 문제점과 건의

1. 문제점

첫째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 시책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것을 각 조사지역별로 중요한것 세가지씩만 여기에 열거해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①불량청소년문제 ②심신장애아문제 ③윤락여성문제가 지적되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①불량청소년문제 ②심신장애아문제 ③기아문제가 지적되었다. 읍소재지에 있어서는 ①불량청소년문제 ②심신장애아문제 ③기아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농촌에 있어서는 ①심신장애아와 불량청소년문제 ②결식아문제 ③무단결식아문제등이 지적되었다. 어촌에 있어서는 ①심신장애아문제 ②결식아문제 ③불량청소년문제등이 지적되었다.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하게 지적된 문제는 불량청소년문제와 심신장애아문제이며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는 윤락여성문제와 기아문제가 지적되었고 농어촌에 있어서는 결식아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같이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불량청소년문제라든지, 심신장애아문제라든지, 윤락여성, 결식아동, 기아문제등으로 집약된다고 보는고로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지적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지역별로 표본지역에 있어서의 응답자들의 의견인고로 과연 그러한 지적사항이 실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서 더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당국이나 이 방면의

전문가가 보았을때 아동 및 청소년문제로서 시급한 것으로 다른 것들이 지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경험이나 이웃의 실정을 감안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볼때 지적된 문제점이 실제와 그렇게 거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러한 의문점은 자연 해소되리라고 보지만 일단 본조사에 나타난 아동 및 청소년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중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요망되는 시설이 도시에 있어서는 ①공원 어린이놀이터 ②보건시설 ③직업훈련소 상담소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농어촌에 있어서는 ①보건시설 ②직업훈련소 상담소 ③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같은것이 지적된것 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같은 것은 환경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동시에 어린이들의 보건향상과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놀이터에 있어서는 1965년말현재 전국적으로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53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질적으로 차이가 많고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을 Leading 할 수 있는 전문 worker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이 과연 있는지 의문시 된다. 최근에 서울시내에 아파-트촌이 많이 생겼으나 계획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것은 극히 드물다. 어린이놀이터를 보충하는 뜻에서 국민학교 개방을 촉진하고 있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보건시설에 있어서는 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다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농어촌에 있어서는 제일 큰 비율로 요망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무의촌이 있고 설사 의료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시설이 빈약하고 사는 곳과의 거리가 먼 탓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요망이 간절한 것으로 본다. 하물며 농어촌에 있어서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국민학교의 운동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거의 바랄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시에 있어서는 의료시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도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같은 것이 훨씬 더 있어야 될 줄 안다. 서울특별시가 만들어 놓은 수영장시설은 1969년 8월 말 현재 서울시내에 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표 13 참조)

이와같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혹 보건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농어촌에 있어서 보건시설을 크게 요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보장까지도 더불어 요망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극빈자 가정보호문제가 제일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역시 보건시설의 필요성은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직업훈련소, 상담소에 대한 요망이 도시와 농촌에서 다같이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향상은 직업훈련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현대적인 산업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취업기회를 얻기가 곤란하다. 그러한 까닭에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베푸는 것은 큰 요망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는 직접 간접의 효과도 있다. 일례를 든다면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가출여성이 년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윤락여성으로 전락하는 소녀들도 상당수를 점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소녀들이 가출하기전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무단가출이나 윤락가로 전락하는 일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행이나 불량청소년의 경우도 적절한 시기에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행화나 불량화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969년 5월말현재 전술한 바와 같이 보사부 감독하에 있는 직업보도시설이 불과 18개소에 1,438명을 수용 훈련시키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런고로 앞으로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이 대단히 요망된다.

아동 및 청소년상담시설의 요망이 또한 크게 제기되었는데 현재 형식적으로는 각시도에 1개소씩의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시군단위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고 아동문제를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의 경우도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자격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지도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임시직 공무원의 신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학력수준도 고등학교정도 출신의 지도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와같은 조건하에서는 아동복지업무의 전문화가

곤란한 실정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향상책이 요망되며 날로 폭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비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셋째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립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응답자는 약 70%가, 기타지역의 응답자는 약 80%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한 복지시설의 설립책임을 정부에게 돌린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하나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실태를 보면 1967년말 현재 85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국립이고 11개소가 시립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립주체가 국공립인 것이 불과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98.4%는 설립주체가 법인(사립)으로 되어 있다. (주 22) 이것을 볼때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설립을 필요로 하는 각종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하겠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성격이 진정으로 복지지향적(福祉志向的)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되리라고 본다. 경제성장의 양과 폭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그 성과를 사회복지확충에 활용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넷째로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육비 부족」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 이것은 각지역을 통하여 공통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수가 3~4인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군에서 더 많이 (주 22) 보사연보, 1967, Pp. 346~375

지적되었다. 한말로 말하면 자녀수가 많거나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교육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것 같다.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해 볼때 농어촌의 응답자중에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교육비부족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빈곤가정이나 자녀수가 많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문제를 정부가 특별히 고려해야 되리라고 본다.

다섯째로 결식아동과 급식에 있어서는 급식에 있어서의 질적향상이 실현되어야 하겠다고 본다. 현재의 154g의 재료도 영양가를 기준한다면 부족하거나와 가공에 있어서도 죽을 쑤어 준다는 것은 아동들의 기호와도 관계가 있는고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빵에 있어서도 같은 모양과 같은 내용의 것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식욕을 생각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본다. 그리고 농어촌에 있어서 제빵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재료를 그대로 주어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식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예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급식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가정조사를 하여 되도록이면 생활상태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배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변동되는 것이므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을 조정해 나갔으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급식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급식의 공평성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여섯째로 교아양연에 있어서 도시나 농어촌이나를 막론하고 일반주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냉담한 것으로 나왔다. 양연을 법적입양

과 위탁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적입양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자녀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입양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휴매니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위탁보호에 있어서는 불우한 아동을 일시 자기자식처럼 길러 주는 것이므로 응답자들의 인간애와 직결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불과 1.5%만 양연을 당장 원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가정보호로 돌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고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몰라도 양연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단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경우에는 양연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다소 늘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보장만 있으면 양연을 해 보겠다는 가정이 어느정도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일곱째로 심신장애아동의 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표 4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9명의 심신장애아동중에서 보호시설에 보내고 있거나 전문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불과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본다면 심신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그러한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신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과 조치가 필요함으로 보호시설의 확충과 그 최대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 건의

가. 불량청소년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 단속, 치료하기 위하여 소년경찰서를 창설하고 임상과 지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청소년문제를 과학적으로 처리토록 한다.

나. 청소년들의 비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업을 확장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클럽활동과 같은 집단활동 (Groups activities) 을 지역사회
단위로 조성한다. 그리고 불건전한 환경에서 피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및 전전오락시설을 확장토록
한다. 특히 놀이터, 공원 같은 시설이 강화 확충되어야 한
다.

다.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아동상담소를 증설하고 질적으로 강화한다.

라. 현행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정규화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
키며 동시에 양적인 증원도 꾀하여 아동복지지도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마.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고용기회와 연결시켜 준다.

바.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를 실시토록 한다. 특히 요보호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한다.

사.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신규설립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98%가 민간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비율
은 점차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높아져야
하겠다.

아.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육비 부족」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바 앞으로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있어서 부

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조까지도 요보호가정의 아동에게는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부족이 현저한바 앞으로 이 계통의 시설이 증설되도록 현존 육아시설을 대폭 전환조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차. 결식아동의 급식에 있어서는 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급식대상인원을 확대하며 급식에 있어서의 수급대상의 공평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급식방법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평준화를 기하도록 한다.

타. 고아양육에 있어서 국민계몽을 강화하고 위탁보호의 경우는 유료위탁보호와 고용위탁보호를 강화토록 한다.

제 6 부

노 인 복 지 문 제

제 27 장 서 언

1. 노인복지조사의 목적

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적변화에 의하여 점차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가고, 사회전전의 추세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연금제도도 정비하여야 할 사정하에 우리는 놓여 있다.

특히 조국근대화의 물결은 도시화, 공업화의 불가피한 사회적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에 따라서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하여야 할 필연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대적요청에 따라서 가정내에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사회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노인의 사회적변화에 대한 적응의 방향과 방법 및 시책을 추정하여 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이 처하여 있는 복지적문제상황과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및 노인복지시책간의 우선순위등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2. 조사의 구조

이 조사는 우선 기본표에서 표본가구중에 노인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이상) 의 유무와 그 노인의 여러가지 사정, 동거여부, 별거사유, 성별, 연령, 결혼관계, 건강상태, 취업상황, 종교, 교육정도를 조사하게 하여 신원을 파악하게 하였다.

다음에 응답자 (가구주나 가구주의 처를 원칙으로 하였다) 에 대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상태를 조사하고, 제일반복지시책중의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다음에 응답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책중에서 어떤 시책을 가장 시급하다고 의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은퇴나 퇴직희망년령을

조사하여 노인복지의 대상자로서의 연령계층을 조사하였다.

다음에 응답자에 대하여 노후의 태도와 견해를 조사하였는데, 여가이용, 소일거리로서의 가동시간, 생계문제, 주거문제, 동거자문제, 한가한 시간의 소비태도와 방법, 양로원문제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이상은 주로 응답자의 노인복지에 대한 태도나 견해조사이었다.

이에 이어서 직접 현존하는 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노령직계존속의 생존여부에 대하여 설문하고, 동거불양자를 조사하고, 건강상황을 물은 다음, 건강하다면 취업여부, 취업종류, 취업사유등을 알아 보았다.

다음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퇴직년령, 퇴직전직업, 퇴직사유를 설문하였다.

다음에 노령직계존속의 오락, 동거노령직계존속에 인한 가정문제, 노인의 불만등을 조사하였다.

요컨대 조사구조는 노인의 생활실태, 신원상황과 응답자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의 삼측면을 조사하였다.

3. 조사의 특성

이 조사에서의 응답자는 원칙적으로 가구주나 가구주의 처로 하였기 때문에 노령자차신이 응답자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응답자의 연령구조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노령자는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정하였기 때문에 60세이상과 노령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 1에 의하면 노령층이 확실히 아닌 수가 서울 94.9%, 중소도시 92.8%, 읍 91.2%, 농촌 82.3%, 어촌이 92.0%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사결과는 비노령층의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라고 인정된다. 이점 특히 유의하여야 하겠다.

<표 1>

응답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9 세 이하	1.7	0.5	-	1.0	-
20 ~ 29	18.2	10.6	8.1	5.6	5.0
30 ~ 39	33.8	30.4	30.6	24.0	18.0
40 ~ 49	28.7	31.3	28.6	26.0	34.0
50 ~ 59	11.5	20.0	22.9	25.7	35.0
60 세 이상	5.1	7.2	9.8	17.7	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계층별 분포에 있어서 전지역에 있어서
19 세이하의 그다지 많지 않으며,

서울은, 20 ~ 50 세간이 주도적이고,

중소도시는, 30 ~ 60 세간이 대다수이며,

읍은, 30 ~ 60 세간이 대부분이며,

농촌은, 30 ~ 60 세간에 균등하게 많고,

어촌은, 30 ~ 60 세간이 대부분인데, 각 지역에 있어서의

연령계층 분포를 보면

서울은, 30 대 (33.8%) 40 대 (28.7%) 20대 (18.9%)의 분포

중소도시는, 40 대 (31.3%) 30 대 (30.4%) 50대 (20.0%)의 분포

읍은, 30 대 (30.6%) 40 대 (28.6%) 50대 (22.9%)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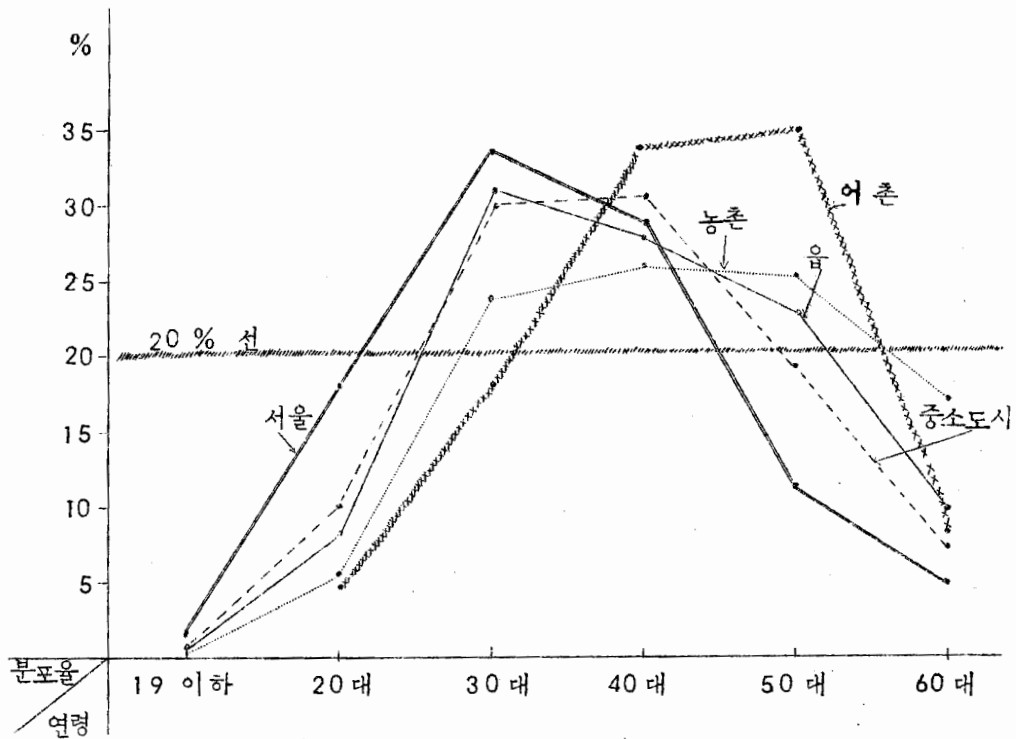
농촌은, 50 대 (25.7%) 40 대 (26.0%) 30대 (24.0%)의 분포

어촌은, 50 대 (35.0%) 40 대 (34.0%) 30대 (18.0%)의 분포

로서 서울은	30 ~ 40 대가	61.7 %
중소도시는	30 ~ 40 대가	59.2 %
읍은	40 ~ 50 대가	59.2 %
농촌은	30 ~ 50 대가	75.7 %
어촌은	40 ~ 50 대가	69.0 %

로서 응답자의 주력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중소도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약 10 세가량 젊어, 타지역이 도시보다 보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촌이 30 대, 40 대, 50 대가 균등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따라서 응답자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조사의 결과는 서울은 30, 40 대의 견해가 지배적이고, 중소도시는 또한 서울과 같은 성향이 있으며, 읍은 30 ~ 50 대의 주도적인 성향을 농촌과 같이 가지고 있되, 읍이 농촌보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으며, 어촌은 40 ~ 50 대의 견해로서 가장 전통적 사고방식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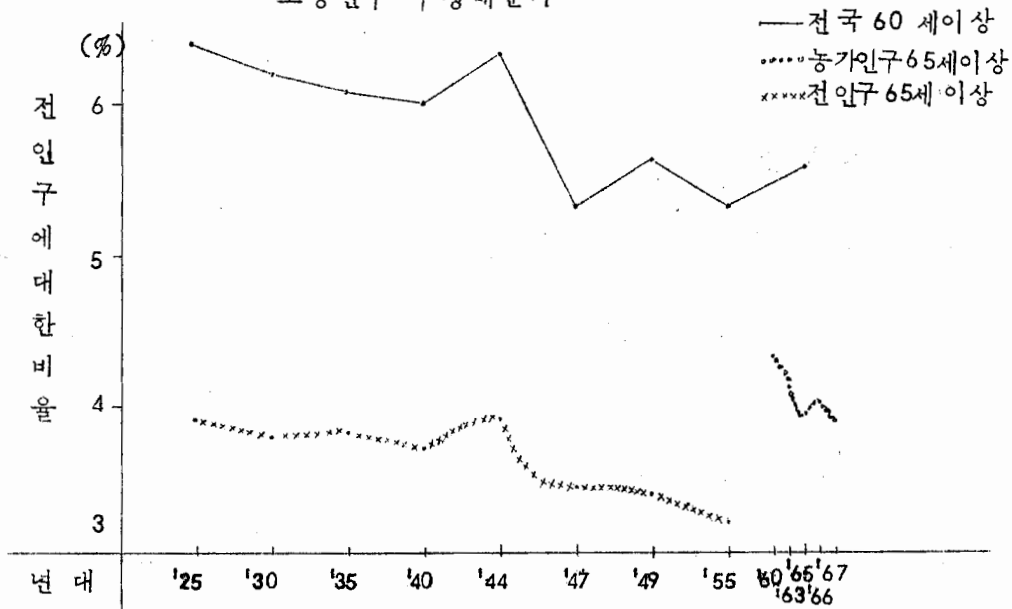
4.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상황

가. 노령인구의 압력

한국통계연감과 농업연감에 의하면 노령인구의 전인구나 또는 농업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제1도와 같다. 제1도와 같은 장기관찰에 의하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추측과는 상반되어 노령인구의 비중이 점감되는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전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구성비 즉 인구의 노령화 경향은 1925 년대의 6.4%에서 65 년대의 5.5%로 다소간의 기복을 가지고 감퇴되어 가고 있다. 흔히 오늘날 노령인구의 압력이 증대

제 1 도

전인구에 대한
노령인구 구성배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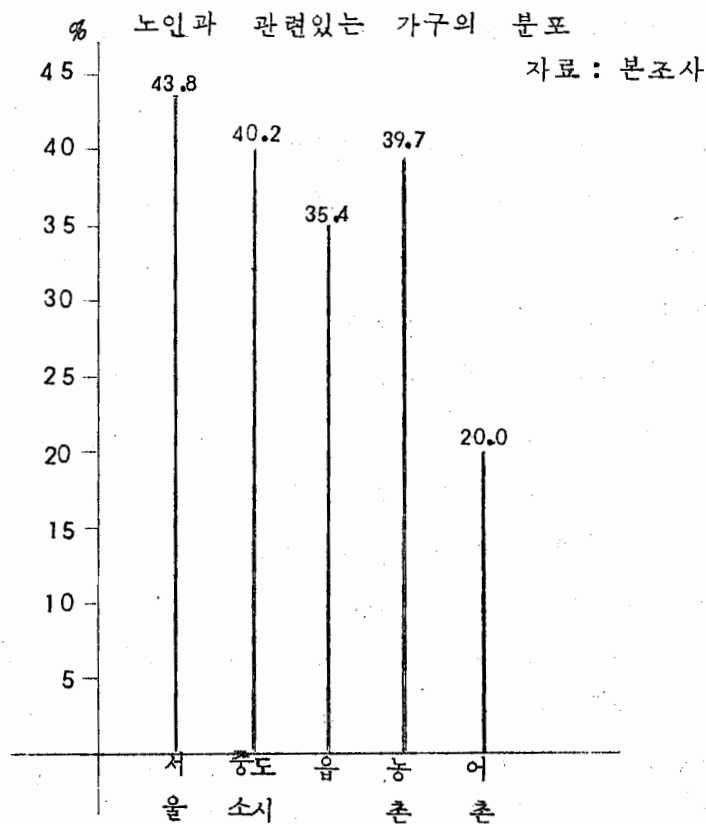
주① 60 세이상은 전인구대비

②농가 65 세이상은 농가인구대비

하여 간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현상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아 10년이내를 문제삼으면 5.3%에서 5.5%로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구성 변화에 있어서의 팔목할 사실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과장이라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농가인구에서의 노령인구의 구성비는 자료가 없어 장기관찰은 하지 못하나 '63년이래의 최근 수년간의 변동은 4.3%에서 3.9%로 감소하여 노령인구의 압력이 경감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전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구성변화와 농촌인구에서의 노령인구의 구성변화가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전인구로서는 0.2%의 증가세이고, 농촌은 0.4%의 감소세이며 1967년 현재로 농가전인구가 전인구의 54.6%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농가인구에 농촌의 감소성향에 의한 압력이 가중되었다고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조사에서 표본가구중 노인과 관련이 있는 가구의 비중을 도시한 도 2에서 입증되고 있다. 시부인 서울과 중소도시는 각각 43.8%, 40.2% 인데 비하여 군부인 농촌은 39.7%, 읍은 35.4%, 어촌은 20.0%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대도시인 서울은 농촌보다 인구비중에 있어서 4.1%나 노인과 관련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결론이 된다.



나. 경로봉조의 추이

전남대학교의 최재률교수의 어촌사례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처자보다 부모를 존중하게 모셔야 한다」에 찬성자가 95.7% 반대가 1.2%로 나타나고, 「결혼한 장남이 부모와 별거한 구미식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안다」에 반대 59.0%, 찬성 33.3%로 나타나 있어 가족구조에 있어서 농어촌에서는 노령층이 고립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일보사에서 '68년 8월에 실시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후 시부모와 함께 살겠는가」에 대하여 <분가한다>가 서울이 46%, 농촌이 21%로 나타나 있고, 「제사를 지내는가」에 서울 51%, 농촌 83%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도시는 농촌에 비하여 사회의 근대화에서 볼 수 있는 핵가족지향성이 점차 신장되고 있는 것 같다.

다.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문제상황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사회구조의 근대화는 대가족적 공동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독립화하게 하는데, 이 성향은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노령인구의 고립화는 불가피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급격한 사회적변화와 청장년층의 근대산업에의 동원은 노령노동층취업에 상대적인 압력이 될 것이며 현대사조와 사회적 주도권의 청장년층쪽의 이동은 사회참여에서 노령인구의 소외감을 가지게 하고 좌절의식과 낙오감을 금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가득수단의 구조의 점차적변화는 노령인구의 생계보장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할 것이고, 설령 청장년의 경로부양이 온존된다 하더라도 청장년의 소득에 의한 부양능력이 미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금후의 노인복지에서의 문제상황이 되지 않을수 없다.

제 28 장 노령자의 분포, 동거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시책의 우선순위

1. 노령자의 분포

노령자와 관련이 있는 가구와 동거노령자가 있는 가구와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노령자와 관련이 있는 가구와 실제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농촌이 가장 높아 66%, 읍이 63%이며 중소도시가 52%, 대도시인 서울은 39%이며, 어촌은 45%이다. 따라서 도시가구에 핵가족경향이 농후하고 농촌일수록 대가족적인 가구가 많다는 결과가 되며 중소도시 이하 농촌은 노령자와 관련이 있는 가구는 반이상이 동거하고 있다.

<표 2> 노령자관련가구와 동거노령자가구

(단위: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노령자관련가구(A)	43.8	40.2	35.4	39.7	20.0
동거노령자가구(B)	17.4	20.9	22.2	26.3	9.0
B/A	39	52	63	66	45

주: 계산척을 사용하였으므로 B/A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음.

2. 동거노인과 가구주와의 관계

<표 3> 동거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82.6	79.1	77.8	73.7	91.0
가구주 또는 가구주 부인, 또는 가구 주와 부인	2.9	5.6	5.0	12.7	2.0
직계존속	13.7	15.1	20.9	13.3	6.0
직계외노인	0.8	0.2	0.3	0.3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동거하고 있는 노령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전지역을 통하여 부모 또는 조부모인 직계존속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농촌만은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직계외노인의 경우가 도시에서는 전동거노인에 대한 비중이 약 5%, 어촌에 있어서는 11%가 되는 것이 타지역에 비하여 특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미상이다. 특히 어촌의 경우는 조사대상가구가 100가구 이었다는 데서 그 일반성에 대하여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혹 인척노인이나 연고노인과 같이 동거할 경우가 타지역에 비하여 그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있을수 있는 지도 모르겠다.

3.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한바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 과 같았다.

<설문> 귀하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사회의 문제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 부터 차례로 둘만 택하여 주십시오.

첫 째 둘 째

_____	_____	(0) 매우 가난한 가정보호
_____	_____	(1) 어린아이 보호
_____	_____	(2) 부인과 여성보호
_____	_____	(3) 환갑이 지난 노령자보호
		(남자 65 세, 여자 60 세이상)
_____	_____	(4) 불구자 또는 정신병자들의 심신 장애자 보호
_____	_____	(5) 자녀가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모자가정보호
_____	_____	(6) 자녀가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가정보호
_____	_____	(7) 기타 (어떤문제:)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

<표 4>

사회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첫째로 택한것)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노령자보호	7.7	11.1	7.1	13.7	11.0
노인가구보호	4.3	4.7	4.7	5.7	6.0
소계	13.0	15.8	12.8	19.4	17.0
모르겠다	5.8	5.3	3.4	4.3	1.0
무응답	6.0	0.7	0.7	2.0	1.0
기타항목	81.2	78.2	84.1	74.3	8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극빈가정보호)	31.0	33.3	40.4	30.3	53.0

첫째 선택에서 볼때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시책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농촌이 가장 높아서 19.4%, 어촌이 다음으로 17.0%, 서울과 읍지역은 많이 뒤져서 13.0%, 12.8%, 중소도시는 농어촌과 대도시의 중간으로 15.8%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어촌이 타지역에 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제복지시책중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낮아서 12.8%~19.4% 간이며 극빈가정보호에 비하면 그반 정도도 되지 못한다. 8종의 항목중 노인복지관계 그 항목을 합한 것을 (따라서 7개 항목으로 정리하면) 순위로 따지면

서울	4 위	농 촌	2 위
중소도시	3 위	어 촌	2 위
읍	4 위		

로 나타나 있어 노인복지문제는 농어촌에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아마 농어촌의 전통사회적경향에 의한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서언의 <1-1 노령인구의 압력>에서의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고, <1-2 경로풍조의 추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인복지문제를 노인보호와 노인가구보호로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는, 노인보호가 노인가구보호보다 전지역에서 현저히 더 중시되고 있다. 개략적으로 말하여 노인보호가 노인가구보호 보다 약 2 배의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보호는 사실상 노인생계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인보호와 노인가구보호는 다분히 중복된 내용과 개념을 가질수 있는 것이므로 합쳐서 생각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서 둘째 선택한 경우는 표 5 와 같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20%~30%선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농촌, 읍, 중소도시, 어촌, 서울의 순위이다. 읍과 농촌이 29%의 수준이고, 서울, 중소도시, 읍이 21%의 수준이다. 제 4 표와 비교할때 역시 농촌이 가장 높고, 기타지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제 4 표와 제 5 표를 비교하면,

<표 5>

사회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둘째로 택한것)

(단위 :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노 령 자 보 호	11.9	12.7	17.8	16.3	12.0
노 인 가 구 보 호	8.9	8.4	10.8	13.3	9.0
소 계	20.8	21.1	28.6	29.6	21.0
모 르 겠 다	8.5	10.7	10.1	8.0	4.0
무 응 답	4.8	2.0	1.7	3.0	10.0
기 타 항 목	66.9	66.2	59.6	59.4	6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극빈 가정보호)	9.9	11.8	12.8	14.0	12.0

노인복지관심도순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제 4 표	4	3	5	1	2
제 5 표	5	3	2	1	4

과 같은 결과가 된다. 제 4 표와 제 5 표의 차이점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제 4 표의 경우와는 달리 제 5 표에서는 극빈 가정의 보호보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2 배이상' 높다는 것을 보여 주어 제 4 표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생활안정만 된다면 다음은 노인복지가 관심사가 된다는 전통적

인 사고방식을 옹변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인데, 사회적변화라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생활안정보다도 경로문제가 앞서야 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이 단계는 이미 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제 4 표와 제 5 표를 종합하면 제 6 표와 같다.

<제 6 표> 사회복지시책중 노인복지관심도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노인복지	제 4 표	13.0	15.8	12.8	19.4	17.0
	제 5 표	20.8	21.1	28.6	29.6	21.0
	종합평가	16.9	18.5	20.7	24.5	19.0
극빈가정호	제 4 표	31.0	33.3	40.4	30.3	53.0
	제 5 표	9.9	11.8	12.8	14.0	12.0
	종합평가	20.5	22.6	26.6	22.2	32.5

제사회복지시책중에서 첫째, 둘째로 중요시되는 것을 선택한 것을 종합하여 첫째나 둘째로 중요시 한다는 관심도의 평가는 읍과 농촌 즉 농업지역이 29% 선이고, 기타지역은 21%선으로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순위로 보면 농촌, 읍, 어촌, 중소도시, 서울의 순차가 되어 일반적인 상식적판단과 일치되는 성향을 보이며, 도시화나 공업화와 전통적사회와의 사고면에서의 격리도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특히 극빈가구의 보호와 대조할때 농촌이 노인복지에 대하여 2.3%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타지역에 대하여 분명히 특색을 이루고 있고, 농촌에는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끈질기게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노인복지문제는 국민가정보호에 다음 가는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4. 노인복지시책의 우선순위

노인복지시책중, 연금제도, 양로원정비, 휴양시설설치, 의료시설확장, 노인가구보호, 노인직업소개, 기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될 문제는 표 7 과 같다.

<제 7 표>

노인복지시책 우선순위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종합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순위
연금제도	21.0	3	16.4	4	18.9	3	14.0	3	24.0	2	4
양로원	21.7	2	25.1	2	25.9	1	13.3	4	9.0	4	2
휴양시설	30.9	1	26.9	1	23.6	2	27.7	2	17.0	3	1
의료시설	13.1	4	19.3	3	18.5	4	29.7	1	35.0	1	2
노인가구보호	3.1	6	7.6	5	4.0	6	10.7	5	8.0	5	5
노인직업소개	2.4	7	2.7	6	3.0	7	1.7	7	5.0	6	7
기타	0.5	9	0.2	8	1.0	8	0.3	9	1.0	7	8
모르겠다	5.3	5	1.8	7	4.4	5	2.3	6	1.0	7	6
무응답	2.0	8	-	9	0.7	9	0.3	8	-	9	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은 휴양시설로서 서울, 중소도시, 농촌에서 제 1 순위이고, 읍은 양로원, 어촌은 연금제도로 나타나 있다. 서울의 경우는 관심순위가 휴양시설, 양로원, 연금제도의 순위이며 양로원, 연금제도가 21 %대 인데 비하여 휴양시설이 31 %대로서 약 10 %의 격차가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휴양시설 26.9 %, 양로원 25.1 %, 의료시설 19.3 %로 나타나 휴양시설이나 양로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읍지역의 경우는 양로원 25.9 %, 휴양시설 23.6 %, 연금제도 18.9 %로서 순차에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양로원과 휴양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은 의료시설 29.7 %, 휴양시설 27.7 %, 연금제도 14.0 %로서 의료시설에 대한 요망이 도시지구보다 아주 높다. 이것은 노인병 전문시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촌에의 의료시설의 불비를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요망은 어촌에서도 같으며, 의료시설 35.0 %, 연금제도 24.0 % 휴양시설 17.0 %이다. 특히 어촌은 타지역보다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 이것은 생계의 곤란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상의 제결과를 종합하면 휴양시설, 양로시설, 의료시설, 연금제도의 순위가 되나 그 비중을 따지면 표 8 과 같다.

노인복지시책중, 휴양시설, 양로원, 의료시설, 연금제도의 4 개시책이 전시책중에서 85 %선대가 되고 서울, 중소도시, 읍지구는 휴양시설이 가장 필요하고, 양로원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농어촌은 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하고 휴양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8>

주요노인복지시설관심도와 순위

(단위 : %)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관심도	순위
휴양시설	30.9	1	26.9	1	23.6	2	27.7	2	17.0	3
양로원	21.7	2	25.1	2	25.9	1	13.3	4	9.0	4
누 계	52.6		52.0		49.5		41.0		26.0	
의료시설	13.1	4	19.3	3	18.5	4	29.7	1	35.0	1
누 계	65.7		71.3		68.0		70.7		61.0	
연금제도	21.0	3	16.4	4	18.9	3	14.0	3	24.0	2
총 계	86.7		87.7		86.9		84.7		85.0	

제 29 장 노후여가선용 및 여가활동

노후의 여가선용에 대한 태도와 그 희망을 알기 위하여 3가지 설문을 하였다.

1. 노후의 희망활동

노후의 희망활동을 알기 위하여 <만일 귀하의 연령이 노령기에 달하였다면 직업적인 활동을 그만두신 뒤에는 여가의 이용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또한 일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유응답으로 설문하였던바 그 결과는 표 9 와 같았다.

<표 9>

노후 희망 활동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휴식	12.6	13.8	11.1	15.7	8.0
가사	13.5	12.4	30.0	16.0	46.0
소사업	3.8	10.7	8.1	5.0	3.0
자선사업	4.9	5.6	1.7	0.3	2.0
소축산	4.3	8.0	12.1	17.3	1.0
소원예	3.8	3.8	1.7	2.0	1.0
농사	3.4	2.7	9.8	13.3	10.0
여행	2.4	1.6	2.0	2.3	
오락	1.0	0.9	1.0	1.7	
기타	15.4	10.2	7.4	6.0	8.0
D.K	16.4	19.6	8.0	10.4	1.0
N.R	18.6	10.9	7.1	10.0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설문은 free hand이었기 때문에 D.K.N.R의 비율이 높아, 서울이 35.0%, 중소도시 30.5%, 읍 15.1%, 농촌 20.4%, 어촌 21.0%가 되어 있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서울의 <가사 13.5%>, 중소도시의 <휴양 13.8%> 읍의 <소축산 12.1%>, 농촌의 <소축산 17.3%> 어촌의 <가사 46.0%>에 비하면, 서울, 중소도시, 읍농촌은 노후의 희망활동에 대하여 확실한 예견이 서있지 않은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D.K.N.R이 21%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촌만이 노후에 가사를 본다고 46.0%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체념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심층부의 의식을 말해주어 근간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도 있다.

노후의 희망활동은

서울은	가사	13.5 %	휴식	12.6 %
중소도시	휴식	13.8 %	가사	12.4 %
	소사업	10.7 %		
읍은	가사	30.0 %	소축산	12.1 %
	휴식	11.1 %		
농촌은	소축산	17.3 %	가사	16.0 %
	휴식	15.7 %	농사	13.3 %
어촌은	가사	46.0 %	농사	10.0 %
	휴식	8.0 %		

로 되어 있어, 도시지구는 가사나 휴식을 예기하고, 농어촌은 가사나 소축산에 희망을 걸고 있다.

노후희망 활동에서 기타활동이 서울 15.4%, 중소도시 10.2%, 읍 7.4%, 농촌 6.0%, 어촌 8.0%로서 도시화 경향이 강할수록

노후활동의 희망사항이 다양하고 농촌에 가까울수록 희망사항이 정형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노후의 여가이용

노후여가이용의 태도조사를 위하여 <만일 귀하의 연령이 노령기에 달한다면 여가(한가한 시간)의 이용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 라고 설문한데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노 후 여 가 이 용

(단위: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휴 식	6.0	9.1	15.5	9.7	4.0
가 사	11.3	8.9	12.5	12.0	18.0
독 서	12.8	11.8	17.8	11.0	4.0
기 류	5.5	7.8	12.1	9.0	16.0
마 실	2.9	4.4	8.1	5.7	2.0
자녀집여행	8.2	11.6	4.4	6.7	1.0
연 예 등	4.1	4.9	4.7	3.3	2.0
원 예 등	5.8	4.9	4.7	3.7	1.0
자 선 사 업	1.2	1.3	0.3	0.3	-
기 타	13.8	13.3	7.1	11.7	4.0
D . K	10.2	10.9	6.4	10.7	4.0
N . R	18.3	11.1	6.4	16.3	4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설문에서 휴식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휴식을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D.K, N.R, 휴식의 합계는

서울	34.5 %	중소도시	31.1 %
읍	28.3 %	농촌	36.7 %
어촌	52.0 %		

가 되는 계산으로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소일방법에 예측이 서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서울은 독서 (12.8 %) , 가사 (11.3 %) , 자녀집순례 (8.2 %) 이고 중소도시는 독서 (11.8 %) , 자녀집순례 (11.6 %) 휴식 (9.1 %) , 읍은 독서 (17.8 %) , 휴식 (15.5 %) , 가사 (12.5 %) , 기류 (12.1 %) , 농촌은 가사 (12.0 %) , 독서 (11.0 %) , 휴식 (9.7 %) , 기류 (9.0 %) , 어촌은 가사 (18.0 %) 기류 (16.0 %) , 독서 , 휴식 각각 (4.0 %) 로서 전반적으로 독서와 휴식을 원하고 있으며 , 도시에서는 자녀집순례를 희망하는데 반하여 농촌은 기류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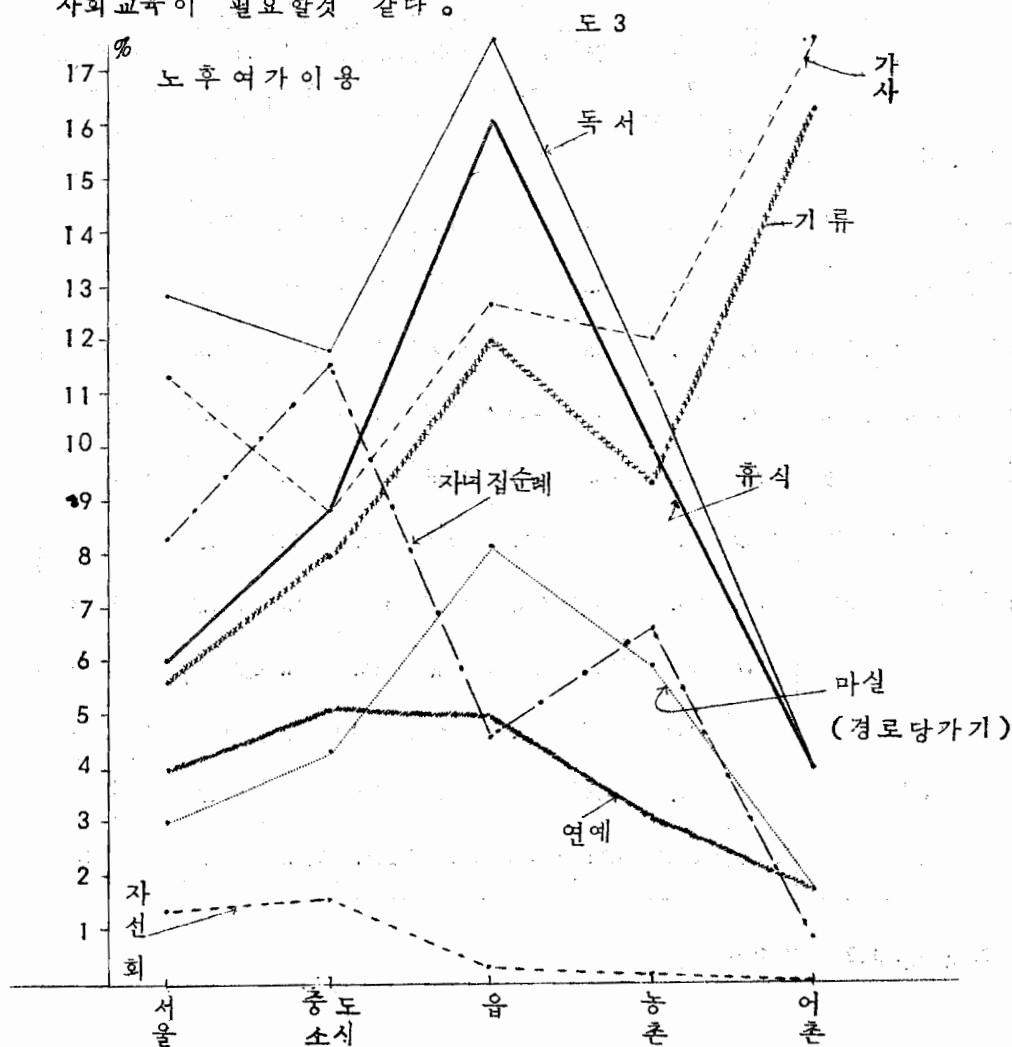
희망오락등의 가장 낮은 관심의 비중은

서울 ,	자선사업 ,	마실 ,	기류 ,
중소도시 ,	자선사업 ,	마실 ,	원예 , 연예 ,
읍 ,	자선사업 ,	자녀집순례 ,	연예 , 원예 ,
농촌 ,	자선사업 ,	연예 ,	원예 ,
어촌 ,	자선사업 ,	자녀집순례 ,	원예 , 등으로

나타내여 자선사업 , 연예 , 원예 , 마실 등은 인기가 없다. 그런데 도시지구에서 자녀집순례가 희망비중이 높은데 반하여 농촌지구는 자녀집순례가 낮은 희망도를 표시하는 것은 대조적이다.

그런데 이 설문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연예 (라디오 , TV , 영화 , 연극) 와 마실 (우인 방문 , 경로당가기) 등에 대한 반응인데 , TV와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반응도에 신빙성이 확실치 아니하고, 마실의 경우, 전국에 얼마만한 경로당과 경로당설비가 되어 있는지 일반에 정당한 평가가 받아지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외국의 경우 TV는 노인들의 소일에 중요한 한몫을 맡고 있고, 노인 Club 운동도 중요한 노인활동의 하나이다. 그리고 노인의 가사에 대한 참여는 자녀교육 및 자녀돌보기를 합쳐서 아주 높은 관심도를 가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교육이 필요할것 같다.



3. 노인 여가소비실태

노인의 현재 소일실태를 알기 위하여 <생존하여 계시다면, 그분(조부모 또는 부모)이 한가한 시간에 가장 즐기시는 오락은 무엇입니까?>라고 설문한데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노인 여가소비실태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조부 부	조모 모	조부 부	조모 모	조부 부	조모 모	조부 부	조모 모	조부 부	조모 모
낙시·사냥·등산	5.6	-	7.8	0.6	-	-	4.0	-		
동물기르기	5.6	3.9	3.9	2.4	5.3	3.2	8.0	2.0		
정원가꾸기	5.6	6.0	5.2	4.8	-	2.2	-	1.0		
바둑·장기·화투	17.7	3.0	19.4	2.4	15.8	1.1	10.0	1.0		
라디오·TV	8.9	15.9	1.3	4.8	23.7	12.9	6.0	3.0		
경로당	3.2	1.3	10.4	4.2	10.5	3.2	4.0		1	
마실가기	13.0	15.5	11.7	21.1	18.4	22.6	10.0	24.2	1	4
자손집다니기	9.0	25.4	9.1	25.9	18.4	34.4	12.0	22.2	1	3
기타	17.7	16.8	23.4	22.3	2.6	18.3	24.0	27.3		2
D.K	5.6	7.4	3.9	7.8	-	1.1	4.0	11.1	1	4
N.R	8.1	4.8	3.9	3.7	5.3	1.0	14.0	8.2	1	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14

주 : ※란은 실수이다.

남자노인의 경우

서울, 기류 (17.7%) 마실가기 (13.0%)

자손집다니기 (9.0%)

중소도시, 기류 (19.4%) 마실가기 (11.7%)

경로당 (10.4%) 자손집다니기 (9.1%)

읍, 라디오 (23.7%) 마실가기 (18.4%)

자손집다니기 (18.4%) 기류 (15.8%)

경로당 (10.5%)

농촌, 자손집다니기 (12.0%) 마실가기 (10.0%)

기류 (10.0%) 동물기르기 (8.0%)

(어촌은 실수가 적어서 신빙도가 적으나, 경로당, 마실가기, 자손집가기등임)

등으로 나타나 노인은 일반적으로 기류나, 나드리 (경로당, 마실가기, 자손집가기) 등으로 소일하고 있으나, 읍의 경우는 라디오청취가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여자노인의 경우

서울, 자손집다니기 (25.4%) 라디오 (15.9%)

마실가기 (15.5%)

중소도시, 자손집다니기 (25.9%) 마실가기 (21.1%)

읍, 자손집다니기 (34.4%) 마실가기 (22.6%)

라디오 (12.9%)

농촌, 마실가기 (24.2%) 자손집다니기 (22.2%)

(어촌, 마실가기, 자손집다니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자노인은 일반적으로 자손집다니기와 마실가기를 낙으로 삼고 있다. 읍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와 같이 타지역에 비하여 라디오청취가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특색이다. 남자간비교에서는 남자에서는 기류가 자손집가기보다 앞서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자손집가기가 단연 앞서고 있다.

노인의 여가소비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은 남자노인의 경우 서울, 경로당, 낙시등, 동물기르기, 원예, 중소도시, 라디오등, 동물기르기, 원예, 낙시등, 읍, 낙시등, 원예, 동물기르기, 농촌, 원예, 경로당, 낙시, 라디오, 등으로 나타나고,

여자노인의 경우

서울, 낙시등, 경로당, 기류, 동물기르기, 중소도시, 낙시, 기류, 동물기르기, 경로당, 읍, 낙시, 기류, 원예, 동물기르기, 농촌, 낙시, 경로당, 원예, 기류, 동물기르기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자노인은 경로당, 낙시, 동물기르기, 원예, 라디오등과는 인연이 멀고, 여자노인은 낙시, 기류, 동물기르기, 경로당, 원예하고는 인연이 멀다. 이와 같은 사실은 2-5-1 <노후 희망활동>과 2-5-2 <노후 여가이용희망>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해석상 고려할 것은 마실가기, 기류 같은 것을 휴식으로 이해하고, 가사등을 자손집다니기를 포함한다고 보며는 그 경향은 일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식외로 경로당이

남여노인 보다 그다지 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아마 경로당의 시설이 유명무실하거나 실제 그 시설수가 과소 한때 기인할 런지도 모르겠다.

노인여가소비실태에서 일반적으로 기타 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나 지역을 불문하고 노인의 여가소비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노인의 여가활동에는 상당히 폭넓은 시설과 준비와 시책이 필요하다.

4. 노후소일에 관한 종합평가

2-5-1, 2-5-2, 2-5-3을 종합하면 표 12와 같다.

각각 다른 설문을 결합하여 종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의 일반적 성향의 변동을 측정,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의 희망활동 (표 9) 이나 노후여가이용 (표 10), 노인여가소비 실태 (표 11) 를 보면 우선 D.K, N.R의 비중이 아주 크다. 특히 노후희망활동과 여가이용과 같은 의견조사에서는 최고 48.0% 까지 나타나 있어서 일반적으로 노후의 생활계획에 대하여 정견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노후활동에 있어서 도시가 농촌보다 <기타 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 농촌보다 노인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데 특히 여가소비실태에서는 도비할것 없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최고 27.3% 까지 점하고 있다.

<표 12> 노후여가선용과 희망활동조사중 무응답,

모르겠다, 기타항목비교

(단위: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D.K N.R	노후희망활동	35.0	30.5	15.1	20.4	21.0
	여가이용	28.5	22.0	12.8	27.0	48.0
	여가소	남	13.7	7.8	5.3	18.0
	비실태	여	12.2	11.5	2.1	19.3
기 타 항 목	노후희망활동	15.4	10.2	7.4	6.0	8.0
	여가이용	13.8	13.3	7.1	11.7	4.0
	여가소	남	17.7	23.4	2.6	24.0
	비실태	여	16.8	22.3	18.3	27.3

노후희망 활동은 가사 (가제를 돕는 일, 자손기르기, 집안일 보기)와 휴식이 주도적인데, 여가이용에 대한 태도는 가사, 독서, 자손집다지기, 기류, 등 즉 가사와 휴식이 주도적인데, 자손집다지기과 기류에 관심이 깊고 연애나 가사중 가제돕기소사업은 적다. 노인의 소일 실태는 여자는 자손집다지기등 나드리가 으뜸이고, 남자는 기류등에 많이 관여하나 일반적으로 자손집다지기등 나드리가 주도적이다.

일반적으로 노후활동에서 가장 관심이 적은 것은 자선사업이고, 여가소일 실태에서는 낚시, 원예, 연애, 경로당가기 등이며, 여자에서는 기류도 인기가 없다.

5. 응답자의 희망 퇴직연령

응답자의 희망 퇴직연령은 표 13 과 같다.

전반적으로 보아 어촌을 제외하고는 50 명대에서 가장 많이 퇴직을 희망하고 있다. 어촌은 54.0 %가 60 ~ 64 세간의 퇴직을 희망하고 있다.

< 표 13 >

퇴직 희망 연령

단 위 :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50 세 미만	7.7	14.2	9.1	12.0	4.0
50 ~ 59	31.4	31.8	36.1	38.0	14.0
60 ~ 64	29.0	21.3	29.0	25.0	54.0
65 ~ 69	10.4	12.2	9.1	12.3	12.0
70 ~ 74	3.2	3.3	5.1	1.7	3.0
75 ~ 79	0.7	1.3	1.7	1.0	1.0
80 세 이상	3.8	4.4	3.7	5.3	7.0
P . K . N . R	13.6	11.5	6.2	4.7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로는 서울은 50~59세가 31.4%로 가장 퇴직희망이 많고 60~64세도 29.0%가 되며 80세 이상을 희망하는 자도 3.8%있는데 반하여 50세 미만 희망자도 7.7%나 있다. 이런 경향은 전지역을 통한 경향으로서 일반적으로 55~65세간의 퇴직을 50%는 희망하고 있다.

6. 응답자의 노후생계 해결책

응답자의 노후생계 해결책은 표 14와 같다.

노후생계 해결책에 있어서 도비간에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읍 이상의 도시지구에서는 자기해결을 원칙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농어촌이 각각 자기해결이 27.3%, 20.0%인데 비하여 중·소도시 57.7%, 읍 53.2%, 서울이 45.9%로 되고 있다. 따라서 자손의지는 그 반대로서 도시지구가 적고 농어촌이 많다.

< 표 14 >

노후생계 해결책

단위: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자기해결	45.9	57.7	53.2	27.3	20.0
자손의지	26.8	27.5	38.7	56.0	46.0
양로원	-	0.2	1.3	0.3	-
기타	1.5	1.6	1.0	2.7	2.0
D, K, N, R, 미정	25.8	13.0	5.8	13.7	3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양로원희망은 중소도시 0.2%, 읍 1.3%, 농촌 0.3%로서 아직 희망자가 그다지 없다.

노후생계 해결책희망에서 문제되는 것은 D, K, N, R과 미정이 서울(25.8%), 어촌(32.0%), 농촌(13.7%), 중소도시(13.0%), 읍(5.8%)로 되어 있는 일이다. 이것은 노후생계보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읍지구를 제외하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적어도 4인에 1인은 노후생계유지에 정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7. 응답자의 노후동거희망

노후동거희망에 대하여서는 표 15와 같다.

전지역적으로 자손과 동거하겠다는 희망이 주도적이며 농촌이 도시보다 월등히 강하다. 자손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동거하겠다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농촌보다 도시지구(읍포함)가 강하다. 양로원희망은 거의 없고 독거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

<표 15>

노후동거희망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독거	2.4	2.2	0.7	1.0	1.0
무의탁	0.2	0.2	—	—	—
자손	42.2	46.5	58.2	73.1	68.0
부부	33.3	39.3	32.3	14.0	12.0
양로원	0.2	—	0.3	—	—
기타	0.2	0.4	0.7	1.3	—
D, K, N, R, 미정	21.5	11.4	7.7	10.7	19.0
계	100.0	100.0			

설문에는 D.K.N.R 미정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요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손과 노후동거를 희망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부부동거를 원하고 있다.

<표 16> 응답자의 양로원에 대한 태도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찬성	4.8 (5.1)	8.9 (12.3)	6.1 (3.8)	10.0 (1.7)	5.0 (8.8)
중립	6.3 (10.1)	8.7 (8.9)	5.4 (4.6)	11.0 (2.2)	4.0 (8.8)
반대	86.4 (82.8)	79.8 (76.3)	88.5 (91.7)	76.4 (85.1)	91.0 (82.4)
D.K.N.R	2.6 (2.0)	2.6 (2.4)	-	2.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안은 반대의 경우 양로원의 시설이 좋다면 어떠한 태도

3. 응답자의 양로원에 대한 태도

양로원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부양자손이 있는 노인들 양로원에서 사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설문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일반적으로 전지역으로 보아서 양로원입주는 절대반대가 단연 우세하여 60%대이고 반대가 75%~90%대이다.

찬성은 중소도시가 8.9%, 농촌 10.0%로 지역의 특징이 없이

가 최소한 55.6% 이상이 된다. 가장 생존율이 적은 것이 어촌으로 31.0%이며 다음아 읍, 중소도시, 농촌, 서울의 순위다. 따라서 바꿔말하면 서울이 직계존속이 생존하고 제신 사람이 가장 많고 농촌, 중소도시, 읍, 어촌의 순서가 된다.

부친이나 조부만 생존하고 제신 경우는 농촌이 가장 많아 8.6% 어촌이 가장적어 3.0%이나 농촌을 제외하고는 도시, 읍, 어촌간에 큰 차이가 없어 3~4% 정도의 비중이다.

편모나 조모만 생존하고 제시는 경우는 농촌(24.7%), 중소도시, 서울, 읍, 어촌(13.0%)의 순위로서 농촌, 중소도시, 읍은 22%대로서 대차가 없고 어촌이 아주적다. 그러나 대체로 편부보다 편모의 경우가 3~5배나 많다.

양친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편부의 경우의 2배이며 편모의 경우의 반에 미달하고 서울(16.0%)이 가장 많고 중소도시(11.1%) 읍(9.4%), 농촌(6.7%), 어촌(1.0%)의 순위인데 어촌에는 부모가 생존하고 제신 경우가 거의없다.

조부모와 부모가 다같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 2~0%이내이며 서울, 중소도시, 농촌, 읍, 어촌의 순위이다.

편친이 생존하는 경우는 양친이 생존하는 경우에 비하여 전지역 평균 약 3배가 많다.

응답자 본인이 노인이었을 경우는 아주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타당성을 알수 없으나 어촌(2.0%), 읍, 서울, 농촌, 중소도시의 순이다.

부모의 생존상황을 보면 편모, 양친, 편부, 조부모와 양친의 순이 되고 편모, 양친, 편부로 정리하면 4.5 : 2.1 : 1의 비율이

되고 전지역의 사람들의 부모등 생존율은 36.2 %이다.

2. 직계존속의 동거자

직계존속 중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표 18 과 같다.

<표 18> 직계존속(조부모)의 동거자

단위 : 인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장남	12	13	9	17	1
장남외의 아들	5	3	1	2	-
장손과 손자	1	1	1	5	1
기타	4	1	-	3	-

조부모와의 동거자는 조부모와 동거의 경우, 조부와 동거의 경우, 조모와의 동거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표 17 <생존노령부모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조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은 장남의 경우가 가장 많고 아들이 봉양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자가 봉양하는 경우는 농촌을 제외하고는 아주 드물다. 조부모의 생존의 경우가 이조사에서는 그실수가 적으므로 그 신빙도는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장남이 조부모를 모시는 주도적인 경향이 있는것은 의심할수 없다.

부모의 봉양에 대하여서는 전지역 모두 장남이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의 농촌(73.5%)부터 읍, 중소도시, 서울의 순위이나 모두

비중이 분포되고 서울, 읍, 어촌이 5%대의 찬성이다.

이 설문에는 다른 설문과 달리 D.K.N.R이 아주 적어 모두 적극적인 반대성향을 보여 아직 우리사회는 보수적인 전통적 사고방식이 엄존하고 있다.

위의 설문에 대하여 반대의 경우 <만일에 시설이 좋으면 어떠냐?>고 다시 물었더니 표 16의 () 내 수치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시설이 좋은 경우는 서울과 중소도시, 어촌에서는 찬성이 최고 3.8%만큼 증가 하였으나 읍과 농촌은 -8.3%, 읍은 -2.3%나 찬성이 감소되고, 농촌은 D.K.N.R이 8.4%나 급증하였다. 반대는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약간 느그러졌다. (3~5%정도) 그러나 읍과 농촌은 더욱 반대가 강하여 저서 3.2%~8.7%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양로원은 시설이 좋더라도 아직은 우리사회에 생소한 존재이다.

제 30 장 응답자의 노령부모의 생존, 동거, 건강상태

노령존속의 생존여부와 그 노령자와의 동거자 및 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각각 설문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은 일반노령자에 대하여서도 확장하여 적용할수 있다.

1. 노령부모생존여부

조사가구와 노령자의 관련관계는 1-1, 동거노령자에 대하여는 2-1에서 취급하였으나 여기서는 응답자와의 관련에서 생존노령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노령부모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거여부나 응답자의 가구원에 내포되든 안되든 그것은 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일반적으로 전지역을 통하여 직계존속이 생존하고 있지않는 경우

<표 17> 생존 노령부모 상황 단위: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조부 또는 부	3.6	4.0	4.0	8.6	3.0	23.2
조모 또는 모	22.5	23.8	21.2	24.7	13.0	105.2
소 계	26.1	27.8	25.2	33.3	16.0	128.4
조부모 또는 부모	16.0	11.1	9.4	6.7	1.0	44.2
조부모와 부모	1.9	1.3	-	1.0	-	4.2
소 계	17.9	12.4	9.4	7.7	1.0	48.4
기 타	0.4	-	1.0	0.3	2.0	3.7
D. K. N. R	-	0.2	0.3	-	-	0.5
없 음	55.6	59.6	64.1	58.7	81.0	3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56 %이상이다。 따라서 부모는 장남이 봉양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견고히 뿌리박고있다。 이 성향의 반증으로 딸이나 손자가 봉양하는 경우는 3 %미만이다。 (어촌은 실수가 부 4인, 모 15인으로 타당성을 가지기에는 숫자가 너무적어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남 외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서울의 27.4 %부터 농촌의 14.5 %까지로 분배되어있고 서울, 읍, 중소도시, 농촌의 순위인데 중소도시이상은 20 %대인데 농촌만이 10 %대로서 더욱이 부모봉양에 대하여서는 전통적관념이 농촌에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부 모 의 동 거 자

단위 :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장 남	50.8	61.7	56.3	51.5	62.4	56.9	58.3	73.3	65.8	74.4	72.5	73.5	50.0	66.6	58.3
장남 외아들	29.5	25.2	27.4	22.7	21.7	22.2	33.3	19.7	26.5	15.3	13.8	14.5	25.0	26.7	25.8
딸	-	1.3	0.7	1.5	2.5	2.0	-	1.2	0.6	2.6	2.5	2.6	25.0	-	12.5
손 자	-	0.4	0.2	-	-	-	-	-	-	-	1.3	0.6	-	6.7	3.4
기 타	19.2	11.0	15.2	24.3	13.4	18.9	8.4	5.8	7.1	5.1	7.4	6.3	-	-	-
D.K.N.R	-	0.4	0.2	-	-	-	-	-	-	2.6	2.5	2.5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계는 $\frac{\text{부} + \text{모}}{2}$ 로 계산함。 ※는 실수총계가 4 인으로 타당성이 적음。

부모의 동거자중 기타는 친척, 일정치 않음, 기타를 포함하는데 이 소범위의 기타는 표 19의 추세와 같은데 아마 부모의 독거 자손과의 별거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는 이렇다할 흐름으로는 볼수없으나 중소도시, 서울등지에서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태동으로서 주목될만도 하며 특히 중소도시에 비중이 큰 이유는 미상이다.

<표 19> 부모의 동거자중 기타 항목 해당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기타 항목	15.6	7.8	11.7	21.2	11.5	16.4	5.6	3.5	4.6	5.1	7.5	6.3	-	-	-

3. 직계존속의 건강상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그다지 많지않아 개별적 성향을 지적하기는 곤란하나 전지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간 많다. 조부모층이 되면 원래 고령일 것이므로 그럴런지도 모른다. 기동부자유층이 조부모층의 6.8%가 되는데 이 경우의 비중으로서는 일반 심신장애자의 경우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이며 아주 큰 비중이다. (심신장애자 복지편 참조)

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하여서는 표 21과 같다.

이 표에서 우선 주목을 요는것은 부모의 생존율이다. 서울은 모:부=230:122=1.97, 중소도시 2.38, 읍 2.39, 농촌 2.05, 어촌 3.75 배가 된다. 어촌을 제하면 모가 생존하는 비중이 부의 2배가 된다.

<표 20>

조 부모의 건강 상태

단위 : %

	서			울			중			소			도			시			읍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일할수있음	2		6	6	27.7	4	4	4	8	34.8		2	2	4	28.6						
경노동 할수있음	3		6	6	27.7	2	2	4	6	26.1		2	2	4	28.6						
일 할수없음	1		4	4	17.2	2	2	3	5	21.7		—	2	2	14.3						
겨우결을정도	1		3	3	13.7	—	—	2	2	8.7		—	3	3	21.4						
걸지 못함	1		3	3	13.7	1	1	1	2	8.7		—									
N. R																					
제	8		14	22	100.0	9	9	14	23	100.0		4	10	14	100.0						

	농			촌			어			촌			통			제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조	부	조	모	제	백분비
일할수있음	2		1		3	11.1	1		1		1	50	10		12		22	25.0
경노동 할수있음	5		7		12	44.5	1		1		1	50	13		16		29	33.0
일할수없음	1		6		7	25.9							4		14		18	20.4
겨우결을정도	—		3		3	11.1							1		10		11	12.5
걸지 못함	1				1	3.2							3		3		6	6.8
N.R			1		1	3.2									2		2	2.3
제	9		18		27	100.0	2		2		2	100.0	31		57		88	100.0

※ 제 산적을 사용하므로 다소의 오차가 있음

조부모의 경우와 달리 부모의 경우는 도시지구 즉 서울 73.3 % 중소도시 59.5 %, 읍 55.6 %가 가동능력이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서는 도시지구와 반대로 농촌 45.5 %, 어촌 36.9 %가 가동능력이 있고 나머지는 가동할수 없어서 도시와 농촌이 상반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민의 조노현상을 말하여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모층의 건강상태를 볼때 가동능력이 있는 계층이 62.3 %가 되고 폐질상태가 2.4 %로 되어있다.

표 17 과 표 18 을 종합하여 노령자의 가동능력실태를 보면 조부모와 부모간에 같은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나며 가동능력은 약 반이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의료적견지의 건강으로 볼 때는 조부모의 경우는 20 ~ 30 %가 요호를 필요로 하고 부모의 경우는 12 %가량이 요호가 필요한데 서울 7.1 %, 중소도시 11.4 %, 읍 16.5 %, 농촌 20.2 %, 어촌 31.6 %가 요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농어촌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요망이 높은것도 이해할수 있다.

<표 21>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인 주: 재산적 판례로 약간의 오차있음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부	모	제	백분비	부	모	제	백분비	부	모	제	백분비
일할수있음	33	63	96		13	31	44		10	28	38	
경노동 할수있음	54	108	162	73.3	24	65	89	59.5	11	19	30	55.6
일할수없음	23	46	69		19	40	59		10	24	34	
저우절을정도	9	11	20	26.7	2	14	16		5	11	16	
견지못함	3	2	5		5	4	9	40.5		4	4	44.4
D.K.N.R	-				3	3	6					
제	122	230	352		66	157	223		36	86	122	

	농			촌			어			통			제		
	부	모	제	백분비	부	모	제	백분비	부	모	제	백분비	부	모	제
일할수있음	9	8	17	45.5		1	1	36.9	65	131	196	23.4			
경노동 할수있음	10	27	37		1	5	6		100	224	324	38.9			
일할수없음	10	26	36		2	3	5		64	139	203	24.3			
저우절을정도	9	15	24	54.5	1	4	5	63.1	26	55	81	9.7			
견지못함		-				2	2		8	12	20	2.4			
D.K.N.R	1	4	5				19		4	7	11	1.3			
제	39	80	119		4	15			267	568	835				

제 31 장 노령 직계존속의 취업실태

1. 노령직계존속의 취업실태

직계존속의 취업실태에 대하여서는 <표 22>와 같다.

어촌은 직계존속이 표본중에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아 타당성은 고사하고 성향만을 살피기로 한다.

남자존속으로서 1일 6시간이상 취업하고있는 비중은 중소도시 (25.0%), 읍, 농촌 (22.2%), 서울 (16.3%)의 순위이며 전국적으로 남자노령자의 20%가 취업하고 있다.

여자존속으로서 1일 6시간 이상 취업하고있는 비중은 읍 (11.1%), 서울 (9.5%), 농촌 (8.9%), 중소도시 (6.9%)로서 전국적으로 여성노령자의 10%가 취업하고 있다.

노령자의 취업에서 남자노령자의 취업은 중소도시 (25.0%)가 으뜸인데 여자노령자의 취업은 중소도시 (6.9%)가 가장낮아 아주 대조적이다.

남자존속의 비상시취업은 중소도시 (17.7%), 농촌 (11.4%), 읍 (11.1%), 서울 (10.2%)로서 상시취업의 경우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자존속의 비상시취업은 농촌 (11.4%), 읍, 서울, 중소도시 (4.3%)의 순으로서 상시취업의 경우와 성향을 같이하고 있다.

별로 하는일이 없거나 전혀하는일이 없는 노령자는 남자의 경우 서울 (46.9%), 중소도시 (36.5%), 농촌 (34.7%), 읍 (33.3%)가 되어있어 대도시일수록 노인의 취업기회가 적다. 여자의 경우는 중소도시 (56.0%), 서울 (53.2%), 읍 (51.9%), 농촌 (35.5%)로서 남자의 경우보다 더 무위함이 많다.

	저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일 6 시간 이상	16.3	9.5	25.0	6.9	22.2	11.1	22.2	8.9	22.2	8.9	-	-
일이 있을때만	10.2	6.3	17.3	4.3	11.1	9.3	13.0	11.4	13.0	11.4	33.3	14.3
점안일만	20.4	29.5	9.6	26.7	29.6	24.1	14.8	27.8	14.8	27.8	33.3	28.6
별로 하는일 없음	12.2	11.1	9.6	6.0	-	1.9	7.4	12.7	7.4	12.7	-	14.3
전혀 하는일 없음	34.7	42.1	26.9	50.0	33.3	50.0	33.3	22.8	33.3	22.8	33.4	42.8
DK.N.R	6.2	1.5	7.4	6.1	3.8	3.6	9.3	16.4	9.3	1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남자직계존속의 취업시 직업

남자직계존속으로 취업하고있는 인원수는 전표본중에서 131명이고 서울 44명, 중소도시 32명, 읍 14명, 농촌 38명, 어촌 3명이다. 각지역별로 취업직종을 보면 읍이나 농촌은 농업이 60%대이고 서울, 중소도시도 그 지역내의 직종분야에서 농업이 가장 우세하여 서울(36.4%), 중소도시(27.5%)를 점하고있다. 판매업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읍이 20%대이고 중소도시가 15%대로서 농업에 다음가는 비중이다. 원예나 축산은 별로 많지않고 그나마도

<표 23> 남 자 직 계 존 속 취 업 직 종

단위 :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농 업	36.4	27.5	57.2	65.8	33.3
자영판매업	20.5	15.6	21.4	2.6	33.3
원 예	2.3	6.3			
축 산	6.8		7.1	2.6	
사 무 제	2.3	15.6	-	2.6	
관리전문직	11.4				
기능단순노동		6.3			
기 타	11.2	3.1	7.1	2.6	33.4
D. K. N. R	9.1	15.6	7.1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시지구에 국한되고 있다. 사무계는 유독 중소도시에서 15.6%로서 판매업과 같은 비중이며 관리, 전문직은 서울에 국한되어 판매업 다음에 가는 11.4%이다.

3. 노령 직계존속의 취업사유

고령직계존속의 취업사유는 표 24 와 같다.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가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는 농촌이 가장 많아 31.7%, 다음이 중소도시(30.3%), 읍(26.7%), 서울(14.3%)로서 서울은 타지역에 비하여 훨씬 적다.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가동하는 경우는 읍이 가장 높아 26.7%, 중소도시(24.2%), 농촌(19.5%), 서울(14.3%)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노령 직계존속의 취업사유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생계형편상	14.3	30.3	26.7	31.7	33.3
생계지원	14.3	24.2	26.7	19.5	
소계	28.6	54.5	53.4	51.2	
여가이용	12.2	12.1	—	12.2	
생계지원과여가이용	40.8	15.2	40.0	9.8	
소계	53.0	27.3	40.0	22.0	33.3
기타	8.2	3.0		2.4	
D.K.N.R	10.2	15.2	6.6	24.4	3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가이용으로 취업하고있는 경우는 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12%대이나 생계지원과 여가이용을 겸한 경우는 서울이 가장높아 (40.8%), 읍 (40.0%), 중소도시 (15.2%), 농촌 (9.8%)이다.

따라서 생계와 관련해서 취업한 경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대를 넘고있어 노령자의 가계에 대한 역할이 아주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다지 궁핍한 사정이 아닌 여가이용을 겸한 소일꺼리로 취업한 경우는 서울의 53.0%가 가장높고 다음이 읍의 40.0%이며 중소도시와 농촌은 20%대로 현저한 차를 보이고 있다.

제 3 2 장 노령직계존속의 미취업실태

노령직계존속의 미취업실태를 알기 위하여 미취업자의 퇴직연령, 퇴직시 직업, 퇴직사유를 조사하였다.

1. 미취업 노령직계존속의 퇴직연령

미취업 노령직계존속의 퇴직연령은 표 25 와 같다.

어촌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50~60 세 간에 퇴직한 사람이 많다. 중소도시의 45.6 %

<표 25> 미취업노령직계존속의 퇴직연령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40 세 미만	2.9	-	-	1.9	
50 세 미만	3.8	8.0	3.3	3.8	
60 세 미만	40.0	45.6	36.6	16.9	40.0
65 세 미만	23.8	24.6	26.7	20.8	20.0
65 세 이상	10.5	8.8	20.0	18.9	
D.K ; N.R	19.0	12.2	3.4	37.7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를 위시하여 서울 (40.0%), 읍 (36.6%), 농촌 (16.9%), 어촌 (40.0%)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은 도시지구와 달리 60~65세 간에 퇴직율이 20.8%로 되어 가장 높다.

65 세 이상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읍이 20.0%, 농촌 18.9%, 서울 10.5%, 중소도시 8.8%로 되어 있다.

소위 퇴직연령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60~65 세간의 퇴직율은 읍 (26.7%), 중소도시 (24.6%), 서울 (23.8%), 농어촌 (20.0%)

로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노인의 1/5 이상은 60~65세간에서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은 D.K., N.R이 37.7%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실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건강한 한 일할수 있는 때까지 일을 하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지구는 농촌보다 퇴직년령이 낮다는 결론이 된다.

2. 미취업노령직계존속의 퇴직전 직업

휴식하고 있는 노령존속의 퇴직전 직업은 농업이 전국적으로 많으나 특히 읍지역은 70%나 되는데 농촌은 58.5%정도가 되어 있다. 농업 다음이 상업인데 서울이 가장 높아 21.9%이다.

원예는 중소도시에서 3.5%일뿐 타지역에는 없다.

지역별로 은퇴전직업을 보면

<표 26> 미취업노령직계존속의 퇴직전 직업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농업	41.9	49.1	70.0	58.5	20.0
상업	21.9	7.0	10.1	3.8	20.0
원예	-	3.5	-	-	-
사무계	4.8	10.5	3.3	3.8	-
관리, 전문직	11.4	7.0	3.3	-	20.0
기능, 단순노동	3.8	8.8	3.3	-	40.0
기타	1.9	7.0	10.0		-
D.K., N.R	15.3	7.2		3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 농업, 상업, 관리전문직, 사무계, 기능단순노동

중소도시 : 농업, 사무계, 기능단순노동, 상업, 관리전문직, 원예

읍 : 농업, 상업, 기타동업

농촌, 농업, 사무계, 상업으로 나타나 있다.

전지역을 통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노령자가 많은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보아 당연한 결과일런지 모른다.

3. 미취업노령직계존속의 퇴직사유

휴식하고 있는 노령존속의 퇴직사유는 건강상이유와 가족의 간청에 의한 경우가 주도적인데, 그 비중은 지역적으로는 상이하다.

서울 가족의청 (26.9%), 건강불량 (24.8%), 휴식 (15.2%)

중소도시 건강불량 (36.8%), 가족의청 (17.5%), 휴식 (15.8%)

읍 " (40.0%), 휴식 (16.7%), 가족의청 (13.3%)

농촌 " (28.3%), 가족의청 (26.4%), 휴식 (11.3%)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불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표 27> 미취업노령직계존속의 퇴직사유

단위 : %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건강불량	24.8	36.8	40.0	28.3	60.0
휴식	15.2	15.8	16.7	11.3	-
가족의간청	26.7	17.5	13.3	26.4	40.0
실업	3.8	3.5	3.3	-	-
정년퇴직	6.7	1.8	13.3	1.9	-
기타	8.6	19.3	13.4	3.8	-
D.K., N.K	14.3	8.9		2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이나 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중이 적으나 특히 실업의 경우가 적다. 농촌에 D.K., N.R이 28.3 %나 되는데, 그이유는 미상이다.

제 33 장 노령자 동거에 대한 가정적문제상황

노령자와의 동거로서 생기는 가정적문제상황을 응답자본인의 측과 응답자가 본 노령자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1. 노령직계존속의 동거로 인한 가정적 문제

이에 대하여는 표 28 과 같다. 이에 대한 설문은 <연세가 많으신 그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가정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3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이었는데, 이 설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승조경노의 풍습으로 인하여 가장 실태 파악이 장애를 받는 것의 하나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의 선택에서는 <없음> 또는 <D.K., N.R>이

<표 28> 노령직계존속의 동거에 대한 가정문제

단위 : %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없 음	41.5	55.4	71.4	84.7	69.2	69.7	44.4	45.2	36.9	42.1
더 화목함	2.7	0.4	2.7	1.1	0.9	0.9	3.2	0.8	-	-
불 화	6.5	1.5	2.7	0.5	1.9	-	0.8	2.4	-	-
세대간생활차이	6.2	1.9	3.8	0.5	4.7	-	0.8	0.8	-	-
경제적 곤난	3.1	1.2	3.8	1.6	3.7	-	3.2	-	5.2	-
노령자 시중	3.8	1.9	3.8	2.7	3.7	0.9	2.4	0.8	-	-
노령자 건강	1.2	1.2	4.4	1.1	2.8	-	1.6	0.8	5.2	5.2
기 타	3.1	2.7	1.1	0.5	4.7	-	-	-	5.3	-
D.K., N.R	31.9	33.8	6.3	7.3	8.4	8.5	43.6	49.2	47.5	5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첫째선택	둘째선택
서울	73.6 %	89.2 %
중소도시	77.7 %	92.0 %
읍	77.6 %	88.2 %
농촌	88.0 %	94.4 %
어촌(참고)	84.4 %	94.8 %

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에서는 이런정도의 설문이 받아드려지기 어려운 의식수준이다. 그러나 노령자의 동거로 인한 문제의 성향은 알수 있다.

첫째의 가정적문제점은 전지역적으로는 경제적곤난, 노령자의 시중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불화, 세대차, 시중, 경제난, 더욱화목, 노인건강

중소도시: 노인건강, 세대차, 시중, 경제난, 더욱화목, 불화

읍 : 세대차, 시중, 경제난, 노인건강, 불화, 화목

농촌: 화목, 경제난, 시중, 노인건강, 세대차, 불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만이 유독 노인과 동거하므로서 가족이 더욱 화목하다고 하고 있다.

둘째의 가정적문제점은 가구원간의 불화와 노인의 시중으로 전지역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선택 보다 훨씬 모든 비율이 낮다. 그러나 노인으로 인하여 보다 화목하다는 것이 전지역적으로 셋째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가족구조상의 역할이 우리사회에서 크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 선택을 종합하면 서울은 세대차와 불화 즉 갈등과 시중이 문제이고, 중소도시는 노인의 건강과 시중 및 경제난 즉

<표 29>

동 거 노 령 직 계 존 속 의 불 만

(단위 : %)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종합평가
	I	II	I+II/2	I	II	I+II/2	I	II	I+II/2	I	II	I+II/2	I	II	I+II/2	I+II/4
없 음	33.8	55.0	44.4	42.3	76.4	59.35	53.3	85.4	69.35	32.3	43.5	38.4	21.0	52.6	36.8	49.66
의 불 만	0.4	0.8	0.6	-	0.5	0.25	-	-	-	1.6	1.6	1.6	-	-	-	0.49
식 불 만	2.7	1.2	1.95	2.2	1.1	1.65	3.7	-	1.85	4.0	-	2.0	10.6	-	5.3	2.55
주 불 만	1.5	1.5	1.5	2.2	-	1.1	-	-	-	-	-	-	-	-	-	0.52
용 돈 불 만	6.9	1.5	4.2	7.7	0.5	4.1	2.8	-	1.4	3.2	0.8	2.0	5.3	-	2.65	2.87
시 중 불 만	1.9	0.8	1.35	4.4	1.1	2.75	5.6	0.9	3.25	2.4	-	1.2	-	-	-	1.71
과 중 한 일	0.4	-	0.2	2.2	1.1	1.65	-	0.9	0.45	0.8	0.8	0.8	5.3	-	2.65	1.15
자 녀 불 만	3.5	1.2	2.35	6.0	0.5	3.25	6.5	0.9	3.7	3.2	-	1.6	5.3	5.3	5.3	3.24
빈 곤 불 만	5.4	1.5	3.45	7.1	1.6	4.35	12.1	-	6.25	4.8	-	2.4	-	-	-	3.29
기 타	12.7	3.5	8.1	13.2	3.3	7.75	6.5	0.9	3.7	9.7	5.6	7.65	15.7	-	7.85	7.01
D . K . N . R	30.8	33.0	31.9	12.7	11.9	11.95	9.4	11.0	10.2	38.0	47.7	42.85	36.8	42.1	39.45	23.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종합평가에서는 어촌은 제외함.

생활기능의 퇴영화가 문제이며, 읍은 세대차와 경제난, 시중등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고, 농촌은 화목하다와 경제난, 불화하다는 모순된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농촌의 경노관의 변동상향을 반영하여 주고 있다.

특히 화목, 불화관계만을 추출하여 종합하면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화목	3.1	3.8	1.8	3.0	-
불화	8.0	3.2	1.9	3.2	-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인의 동거로 하여 불화의 씨가 더 많은것이 솔직한 해석으로 보인다.

2. 동거노령직계존속의 불만

노령자층의 불만을 알기 위하여 <또한 그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불만족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free hand로 설문하여서 표 2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설문 역시 2-9-1의 설문과 같이 매우 미묘한 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손들이 노인이 불평해 하시는 것으로 관찰한 노인이 아닌 제 3자의 견해라는 점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에게 불편이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자손들이 실토할 실정에 있지도 않으며, 소위 공개하기 곤란한 사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 노인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의 비중이나 소재를 파악하기에는 타당성이 적고, 그 성향만을 추정하게 할수 있을 것이며 2-9-1의 결과와 대조할 가치가 인정될 뿐이다.

노인에게 불편이나 불만이 없을리 없지만 D.K., N.R과 <없음>을 합한것을 첫째선택과 둘째선택을 종합하면,

서울 76.3 %

중소도시 71.1 %

읍 79.6 %

농촌 81.3 %

어촌 76.3 %로 평가된다.

이 사실은 두가지 면에서 해석된다. 첫째는 설문의 난점이고, 둘째는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특별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D.K.;N.R에 있어 서울은 첫째선택이 30.8 %, 둘째선택이 33.0 %인 것은 합리적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첫째선택이 12.7 %, 둘째선택이 11.0 %로 둘째 선택의 경우가 적은 것은 비합리적이며, 읍도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문의 독특한 난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첫째선택에서 용돈, 빈곤, 자녀식사 등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고, 의복, 일의 과중, 주생활에 대한 불만이 저비중이고, 기타사항의 불편이 타불만에 대하여 아주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의 불편·불만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 둘째선택에서는 용돈, 빈곤, 의, 식, 주, 자녀에 대한 불만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종합하면 용돈, 빈곤, 자녀에 대한 불만이 주도적이다.

중소도시는 첫째선택에서 용돈, 빈곤, 자녀로 나타나고, 둘째선택에서 빈곤, 식생활, 시중, 과중한 일로 나타났으며, 종합하면 빈곤, 용돈, 자녀로 나타나 서울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읍은 첫째선택에서 빈곤, 자녀, 시중으로 나타나고, 둘째선택은 특색을 찾기 어렵고, 종합하면 빈곤, 식생활, 용돈으로 나타난다.

농촌은 첫째선택에서 빈곤, 의생활, 자녀, 용돈으로 나타나고, 둘째

선택에서는 의, 주, 시중으로 나타나며, 종합하면 빈곤, 자녀, 용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지역을 통하여 보면 빈곤, 자녀, 용돈 등이 노인의 가장 큰 불만이고, 의, 주, 시중, 파중한 일 등은 그다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3. 총괄과 결론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에서 얻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상황과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노령인구의 압력) 전인구에서의 노령인구에서의 구성비는 1925~1967년의 장기관찰에서는 점차 경감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의 단기관찰에서는 인구노령화경향이 검증되고 있다.

인구노령화경향을 농가, 비농가별로 볼때는 1963년 이후의 단기관찰에서는 농가는 -0.4%의 감소세, 비농가는 0.2%의 증가세에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노인과 관련이 있는 가구의 분포는 시부는 전가구의 42%대, 농촌은 37%대, 어촌은 20%대로 나타났다.

(2) (노령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노령자가구주는 농촌이 가장 많아 전가구의 12.7%, 서울이 가장 적어 2.9%이다. 따라서 서울에는 장청년가구주가 많고 농촌에는 장청년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적다.

(3)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노인복지의 관심도는 극빈가정보호 다음으로 높으나,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서 더욱 강하다. 서울은 극빈가정보호시책요망이 20.5%이고, 노인복지 16.9%인데 반하여 농촌은 노인복지 24.5%, 극빈가정보호 22.2%이다.

(4) (노인복지시책간의 우선순위) 여러노인복지시책간에서의 우선

순위는 도시지역은 휴양시설, 농어촌지역은 의료시설이다. 서울의 휴양시설요망은 30.9%, 어촌의 의료시설요망은 35.0%이다.

단 읍지역에서는 양노원요망이 25.9%로서 휴양시설 23.6%보다 높다.

(5) (노후의 희망활동) 노후의 희망활동에 대하여서는 정견이 서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은 도시지구는 가사, 휴식이고, 농촌지역은 소축산, 가사이다. 이 이외의 활동은 도시지역은 다양하고, 농촌지구는 정형화의 경향이 있다.

(6) (노후여가이용) 노후의 여가이용에 대하여 확정적인 예견이 서 있지 않는 경우가 30%대이며, 일반적으로 독서, 휴식, 자손집다나기 등을 희망하고 있다.

자선사업이나 경노당다니기나 연예에는 관심이 아주 적다.

(7) (노인의 여가소비실태) 노인의 여가소비실태는 기류가 가장 높고 다음이 자손집다나기, 마실가기등의 나드리이며, 읍지역만이 라디오 청취가 뚜렷하다.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는 기류 보다 자손집다나기가 아주 강력한 우세(25%~35%)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노당, 연예, 원예, 소축산, 수렵등은 인기가 없고 특히 여자에게는 기류, 수렵, 경노당등이 인기가 아주 없다.

(8) (퇴직 희망년령) 퇴직희망년령은 55~65세간이 가장 많고, 50세미만, 80세이상의 요망도 상당히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촌의 근로의 파종성을 짐작하게 한다.

(9) (희망노후생계해결책) 노후의 생계해결희망은 도시지역(읍포함)에서는 50%대가 자력해결을 희망하고, 농어촌은 50%대가 자손에 의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양노원은 인기가 없어 1%미만이다. 노후생계해결에 대하여는 미상이 비교적 높은 율을 가지고

있다.

(10) (노후동거희망) 노후의 동거희망에는 자손과의 동거희망이 압도적이며, 도시 (44%대) 보다 농촌 (70%대) 이 더욱 강하고, 도시지구에서는 부부동거희망도 33%~39%대가 된다. 양노원희망은 거의 없다.

(11) (양노원에 대한 태도) 청장년의 노령자가 양노원에 입주하는데 대한 태도는 80%~90%가 반대이며,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대는 여전하나 도시는 약간 반대가 느구러지나 농촌은 반대가 더욱 강하다. 이 태도에는 미상이나 미정의 율이 아주 적어 그 판단은 극히 단호하다.

(12) (노령부모의 생존실태) 노령부모의 생존하고 있는 가구는 45%이하이며, 특히 어촌은 19%대 이하이다. 직계존속이 생존하고 있는 가구는 서울이 가장 많아 45%, 어촌이 19%이다.

부나 조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보다 모나 조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20%나 더 많다. 모친의 생존은 서울 3.6%, 농촌 8.6%이다.

부모의 양친이 생존하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10%~16%대이고 농촌이 7%이고, 조부모가 생존하는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1.5%대 이하이고 농촌 1%이며 기타지역은 거의 없다.

(13) (노인의 동거실태) 노인중에서 조부모와의 동거자는 장남이며, 손자와의 동거자는 아주 적다.

부모와의 동거자는 장남이 60%대이며, 농촌이 도시 보다는 그 비율이 높고, 장남의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도시가 23%이고, 농촌은 14%대이다.

(14) (노인의 건강실태) 노인의 건강실태는 가동할수 없는 정

도가 조부모는 50%이상이고, 부모는 도시에서는 30%미만, 농촌에서는 50%정도이다. 폐질상태는 2.4%정도이다. 요호가 필요한 노인은 조부모의 경우 20%~30% 부모의 경우 도시 7~11%, 농어촌 20%~32% 정도이다.

(15) (노인의 취업실태) 노인이 1일 6시간이상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남자노인의 20%이고, 여자노인은 10%내외이다.

노인이 휴식하고 있는 경우는 남자노인의 경우, 서울 46.9%, 농촌 33.3%이며, 여자노인은 농촌 35.5%, 기타지역은 50%이상이다.

(16) (노인취업직업) 노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은 농업이 주도적이고, 서울 36.4%, 농촌 57.2%이며, 다음이 자유판매업으로 서울 20.5%, 농촌 2.6%이다. 청장년의 희망과는 상반되어 원예, 축산은 적다.

(17) (노인의 취업사유) 노인의 취업사유는 서울은 여가이용과 가계지원이 53%로 으뜸이고, 기타지역은 가계형편상이 50%이상이다.

(18) (휴식하고 있는 노인의 퇴직년령) 휴식하고 있는 노인의 퇴직년령은 50~60세가 가장 많으나, 농촌은 60~65세가 더욱 많다. 60세미만의 퇴직에 다음 가는 것은 61~65세간으로 도시지구는 50~65세간이 60%이상이다.

그러나 농촌은 50세부터 65세이상까지 균등히 퇴직년령이 분포되어 있다.

(19) (노인의 퇴직전 직업) 노인의 퇴직전 직업은 농업이 주도적이며 40%~70%대이고, 다음이 상업으로 서울이 22%, 기타지역은 10%미만이다.

(20) (노인의 퇴직사유) 노인의 퇴직사유는 가족의 권고와 건강불량이 그 주이유이다. 서울은 가족의 권고가 26.9%로 으뜸이고, 기타지역은 건강불량이 28%~40%로 되어 있다. 정년퇴직은 서울(6.7%)과 읍(13.3%)이나 기타지역은 2%미만으로 그 비중이 적다.

(21) (노인의 동거로 인한 가족문제) 노인의 동거로 인한 가족문제는 경제적 곤란, 세대차, 노인의 건강, 노인의 시중, 가족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는 노인으로 인하여 더욱 화목하다고 3.2%는 답변도 하고 있다.

(22) (노인의 불만) 노인의 불만은 용돈, 빈곤, 자녀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다. 빈곤불만이 3.3%, 자녀불만 3.2%, 용돈 2.9%이고, 일반적으로 노인의 불편은 없다고 한 것이 50%나 된다.

제7부 기혼직업여성 복지문제

제 35 장 직업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1,733 가구의 전국적 표본집단중에서 나타난 기혼자 직업여성의 수는 145 명이다. 이것은 한 가구당 한 사람의 기혼자 직업여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전체 가구의 8.4 % 남짓한 것이다. 이들의 분포를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과 중소도시에서 각각 50 명이며 읍과 농촌사이에도 비슷한 숫자로서 19 명과 17 명이다. 어촌에서는 9 명의 직업을 가진자가 있다. 이것을 각지역별 표본가구수에 대한 비율로서 산출하면 서울은 8.5 %, 중소도시는 11 %, 읍은 6.3 %, 농촌은 5.7 %, 그리고 어촌은 9 %이다. 이로서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직업여성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읍과 농촌은 낮은 편이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1 세와 35 세 사이의 층이 21.3 %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26 ~ 30 세 사이의 연령층으로서 26 명이다. 이렇게 보면 26 세와 35 세 사이에 속하는 수가 57 명이 되므로 전체의 3 분의 1 이 조금 넘으며 25 세 이하의 직업여성 9 명을 합치면 거의 과반수의 직업여성이 35 세 미만임을 알수 있다. 41 ~ 45 세 사이에 속하는 여성의 수도 24 명이나 되어 세번째로 많은 연령층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처음부터 직업여성을 모집단을 삼아 거기에서 조사대상의 표본을 정한 것이 아닌만큼 여기에 나타난 직업여성의 연령분포로서 전체 직업여성에 관한 연령을 개괄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표본집단에 포함된 가구들 중에서 나타난 직업여성들이므로 이러한 제한성을 감안하여 이해되어져야 할것이다.

하여간 여기에 나타난 직업여성의 연령층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직업여성의 연령구조와 상이한 분포경향을 보여준다. 직업여성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세 전후에 속한 미혼연령층이다. 이번 자료는 미혼여성을 제외한 기혼자 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에 국한된 것이므로 첫째 적은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경향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혼인초기의 7~10년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가 33~35세경에서부터 재취직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35~40세층에는 다시 그 수가 대폭 증가하며 50세에 이르면서부터 취업에 경향이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볼때 이번 직업여성의 연령분포는 오히려 반대경향이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26~35세사이의 연령층에 3분의 1이 집중되었고 36~40세사이층에서는 오히려 격감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 자료는 그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의의있는 경향을 개괄할 수 없으므로 이 자료에 한정된 특수성으로서 이해해야 하겠지만 자녀를 한창 낳아 기르는 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따르는 많은 문제는 국가시책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연 령

연령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20~25	2	5	1		1	9
26~30	10	8	4	3	1	26
31~35	17	8	3	2	1	31
36~40	5	3	6	2	1	17
41~45	7	9	3	3	2	24
46~50	6	6	2	2	2	18
51~55	2	4		3		9
56~60		6		2	1	9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직업여성들의 교육정도는 초등과 무학층에 집중되었다. 서울만을 고찰한다면 오히려 대학출신의 수가 가장 으뜸을 차지하며 고등학교출신이 그 다음으로 많고 기타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과 무학층이 절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여성에도 두 종류의 층이 있음을 알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월급생활을 하는 직업성과 교육이 없거나 극히 낮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수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 및 상인들의 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은 그다음표의 직업분포에서 더욱 잘 증명된다.

<표 2> 교육정도

지 역 교육정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무 학	3	20	2	8	6	39
초 등	10	14	8	8	2	42
중 학	8	3	2	1	1	15
고 등	11	11	4			26
대 학이 상	18	1	3			22
모르겠다		1				1
계	50	50	19	17	9	145

직업을 보면 판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33 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행상을 하는 여성이 17 명으로서 다음의 순위가 되며 셋째로는 농부와 음식점 또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각각 16 명으로 동수이다. 그 다음이 단순노동자의 순서가 된다.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13 명인데 이보다 1 인 적은 12 사람이 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그외에 사무직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9명, 미용사가 5명,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가 5명의 순위이며 그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는 역시 지역과 관계 있는 것으로 농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도시에서는 판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다.

<표 3> 응답자의 직업

직업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기타또는분류불능		9	6				15
농부		1	6		9		16
단순노동		4	5	2	2		13
숙련노동		1	2	1			4
판매종사.(행상제외)		13	8	6	3	3	33
행상		4	5	1	1	6	17
음식점또는유흥업		2	9	3	2		16
교사		7	2	3			12
사무		5	2	2			9
미용		1	4				5
전문직, 기술직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그러나 직업을 크게 분류하여 육체노동에 속하는 직업과 음식점을 포함한 상업에 속하는 직업 그리고 도시의 전문사무직 및 기타 월급제의 직업에 속하는 것을 합친다면 상업이 가장 으뜸으로서 66명을 차지하며 그다음이 전문직 및 사무직에 관련된 월급

쟁이 직업으로서 47명이며 노동 및 농업종사자는 34명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직업은 아직도 대체적으로 고등교육이나 전문기술의 훈련을 요하지 않는 일반노동과 판매직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도시의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여성들 사이에서는 소위 현대적인 전문직 및 사무직의 직업여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여성들의 종교를 보면 모든지역에서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절대다수이며 전체적으로는 95명이 무종교자들이다. 소수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믿는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로써 각각 21명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는 역시 도시인들 사이에서 많이 믿는 종교이며 불교는 도시를 비롯하여 농어촌에서도 소수이나마 믿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여러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종교적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듯 하다.

<표 4> 종 교

종교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유교	1					1
불교	7	9	2	2	1	21
기독교	12	6	3			21
천주교	4	1				5
무교	26	32	14	15	8	95
기타		2				2
계	50	50	19	17	9	145

기혼여성으로써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소위 복 많고 팔자 좋은 사람들의 신세가 아니다. 이들은 남편과 사별하였거나 남편들이 무직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남편들의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형편에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형편이 가구주의 직업에서 어느정도 반영되어지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이 교사·공무원 및 사무원의 소위 월급쟁이들이 전체의 첫째를 차지할뿐 아니라 서울에서는 절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의 박봉수입자들인 것이다. 그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구주의 직업은 상업이며 이역시 도시민들에게서 다수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수의 25명이나 되는 가구주는 무직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노동자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많은것을 보아 기혼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것은 남편의 부족한 수입을 보태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표 5>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직업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농 · 어업		6	1	7	3	17
상업	13	8	4			25
교사, 공무원, 사무원	16	7	6		1	30
공업	2					2
자유업	4		2			6
노동	4	9	1	1	2	17
기타	4	8	3	4		19
무직	6	10	1	5	3	25
무응답	1	2	1			4
계	50	50	19	17	9	145

그러면 이러한 직업여성들의 월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또는 이들의 수입이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월수입 6,000원 미만이라고 밝힌 사람이 72 명으로서 전체 응답한 직업 여성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세분해서 보면 월 4,000원에서 6,000원의 수입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25명, 월 2,000원에서 4,000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25 명으로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월 2,000원에서 월 15,000원의 수입을 가진 직업여성이 가장 많았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월 4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4명이나 된다. 또한 1,000원 미만의 월수입을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9명이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서 읍, 농촌, 어촌으로 갈수록 월수입이 현저히 낮아져 가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다.

어촌에서는 최고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4,000원에서 6,00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서 또 1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농촌에서는 최고 월수입을 가진 사람이 4명으로 6,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수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읍에서는 최고 월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15,000원에서 20,000원을 들고 있으며 가장 여러사람이 벌어지는 수입이 4~6,000원 사이로써 8명이 이에 속한다. 중소도시에서는 30,000원에서 40,000원을 버는 사람이 2명 있으나, 대다수는 2~10,000원 사이의 수입층에 속한다. 서울에서는 4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4명이나 된다. 그리고 15~20,000의 수입을 벌이는 사람이 12명이나 되며 서울 응답자의 6할이 넘는 수가 1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므로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의 수입은 저소득층을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6> 월 수 입

수입액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000 원미만	1	5		1	2	9
1,000 ~ 2,000	2	4	2	1	4	13
2,000 ~ 4,000	4	10	4	5	2	25
4,000 ~ 6,000	7	8	3	6	1	25
6,000 ~ 10,000	5	12	1	4		22
10,000 ~ 15,000	9	5	8			22
15,000 ~ 20,000	12	2	1			15
20,000 ~ 30,000	5	2				7
30,000 ~ 40,000	1	2				3
40,000 원이상	4					4
계	50	50	19	17	9	145

이러한 직업여성들의 적은 월수입이 가계에 어느 정도로 보탬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합쳐서 124 명으로서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의 수입이 가구를 위한 전체 생활비로 충당된다는 경우가 51 명이나 된다. 즉 3분의 1 이 된다. 그러한 저소득으로 전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을 고려할때 그들의 생계가 얼마나 가난하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여자의 수입이 가구주의 수입을 보충하는 경우라면 저소득일지라

도 가계에 어느정도 도움은 될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정도 도움」된다고 밝힌 사람이 73명으로서 다수를 차지한다.

여자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음의 생활정도의 분포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류와 상류의 생활정도에 속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의 상과 하류의 하층에 속하는 54명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중과 상에 속하는것을 보아 그들의 수입이 대부분 남편이나 자녀들의 수입을 보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수입의 가계비 도움

도움정도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전 가구의 생활비		12	21	7	9	2	51
어느정도 도움		32	27	12	7	5	73
별로도움되지않음		3	1			1	5
전혀도움되지않음		2			1	1	4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지역별로 볼때 중이상 상류에 속하는 수는 서울의 경우가 가장 높다. 중소도시에서는 하층의 생활정도를 영위하는 근로여성들이 반수나 되며 어느지역보다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읍과 농어촌에서는 모두가 중류이상에 속한다는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때 여자들의 수입이 보탬이 됨으로서 가구주 한사람의 수입에

의지하는 일반가족들의 생활정도보다 높일수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서울과 타지역사이에 절대적인 생활정도를 상중하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거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역별로 제시된것은 어디까지나 각지역의 수준에 상대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표 8> 생 활 정 도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상	상						
상	하	9	3	1	1	1	15
중	상	18	12	8	3	2	43
중	하	7	12	4	6	3	32
하	상	10	13	2	4		29
하	하	5	10	4	3	3	25
무	응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직업여성들의 결혼관계와 자녀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이나마 알아보기로 한다.

기혼 직업여성 145명 가운데 정상적인 부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3 명으로서 대부분이며 그다음에는 남편의 사망으로서 혼자된 경우가 둘째로 많아서 26명이나 되며 그 다음이 별거상태에 있는 사람이 8명이고 이혼한 경우가 4명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에 관계없이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자들이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결혼생

활하는 여성들에게 보편화하고 있다. 반드시 사별,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사는 여자들이 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닌듯 하다. 남편과 이혼한 경우는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만 볼수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사별한 여성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다. 농촌에서도 남편이 죽어 과부된 여자들이 7명이나 되어 많은 편이다. 이들이 농촌에서 그들의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결 혼 관 계

결혼관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기혼 동거	41	28	17	9	8	103
별 거	2	2	2	1	1	8
이 혼	1	3				4
사 별	5	14		7		26
기 타	1	3				4
계	50	50	19	17	9	145

기혼여성으로서 직장생활하는 경우에 자녀들의 양육이 가장 문제거리가 된다. 특히 3세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직업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몇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들의 연령이 대체로 어느정도인가를 고찰해볼만한 것이다.

145명의 어머니들이 지역적 및 연령의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가졌다는 자녀들의 수는 466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평균을 산출해보면 3.2명정도이다. 이숫자는 한국전체의 평균자녀수에 과히 어

긋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는 비교적 벅찬 수이기도 하다.

이들이 지닌 자녀들을 연령별로 보면 3세미만에 속하는 자녀들이 적다. 105명의 어머니들은 이 연령층의 자녀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있다는 경우에도 한명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시 이처럼 어린나이의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들로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노동하기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경제적 형편상 어쩔수 없이 별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집안의 여자들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연령층인 4~8세에 속하는 어린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현저하게 더 많으며 어린아이들의 수도 115명이나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7세이전인 학령전 아동일 것으로 짐작되며 이들을 돌보아줄 성인이 어머니 대신 필요할 것이다. 이 연령층의 자녀들을 위해 탁아소 또는 유치원등의 시설이 절실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녀를 둔 직업여성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주목되어져야 한다. 그 이외 9세이상인 되는 자녀들의 수가 계속 많은 형편이다. 9~13세층의 자녀수는 전부 합쳐서 111명이며 14~20세 사이에 있는 자녀수 역시 117명이다. 20세이상층에는 감소되어 78명이 된다. 이 연령층의 자녀들은 어린자녀들이 제기하는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나이 많아짐에 따라 경제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들의 이러한 부담으로서 어머니들은 남편의 수입에만 기대할 수 없어 별도의 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표 10> 자녀들의 연령별로 본 자녀수 (모든지역을 합친것)

자녀의 자녀수나이	3 세미만	4 ~ 8 세	9 ~ 13 세	14~20세	20 세 이상
1	35	46	28	26	17
2	5	18	31	32	16
3		11	7	9	3
4					5
없 음	105	80	79	78	104
계	145	145	145	145	145

<표 11> 3 세미만 자녀수

지역 자녀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13	11	4	3	4	35
2 명	1	2	2			5
없 음	36	37	13	14	5	105
계	50	50	19	17	9	145

<표 12> 1 ~ 8 세 자녀수

지역 자녀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15	15	9	4	3	46
2 명	6	2	3	3	4	18
3 명		1				1
없 음	29	32	7	10	2	80
계	50	50	19	17	9	145

<표 13> 9 ~ 13 세 자녀수

자녀수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8	14	2	3	1	28
2 명	8	10	6	5	2	31
3 명	2	3	1	1		7
없 음	32	23	10	8	6	79
계	50	50	19	17	9	145

<표 14> 14 ~ 20 세 자녀수

자녀수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8	12	2	3	1	26
2 명	8	11	6	5	2	32
3 명	2	5	1	1		9
없 음	32	22	10	8	6	78
계	50	50	19	17	9	145

<표 15> 20 세 이상 자녀수

자녀수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4	7	2	2	2	17
2 명	8	5	1	1	1	16
3 명	1	1		1		3
4 명	1	2		2		5
없 음	36	35	16	11	6	104
계	50	50	19	17	9	145

제 36 장 취업동기 및 만족여부

직업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취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자기직업에 대해 만족한다면 어떠한 면에 만족을 느끼며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기존 직업 여성들의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이며 몇 년간이나 취업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해 보기로 한다.

첫째 취업동기로써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경제적 곤란이다.

경제적 곤란이 취업하게 된 이유였다고 밝힌 사람이 80명으로서 파반수 이상을 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란하지는않으나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취업동기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27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다. 그 다음은 자기가 배운 전공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10명이며 그 외에도 자기의 소질발전, 여가이용 및 사회참여등을 취업동기로써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 보아도 지역에 관계없이 취업동기로써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나 농촌이나 어촌으로 갈수록 전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하는 경향이 보인다. 취업하게 된 둘째번 동기로써도 가장 많이 드는것은 역시 경제적인 이유이다.

<표 16>

취업동기 (I)

취업동기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소 질 발 견	3	4				7
여 가 이 용	3	1	1		1	6
사 회 참 여	2		1			3
전 공 분 야 살 림	8		2			10
경 제 적 곤 란	20	32	8	13	7	80
경제적여유원 함	7	10	7	2	1	27
기 타	4	3		1		8
무 응 답	3			1		4
계	50	50	19	17	9	145

<표 17>

취업동기 (II)

취업동기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소 질 발 견	2	2				4
여 가 이 용	2	4			2	8
사 회 참 여	4	4	2			10
전 공 분 야 살 림	5	1	3			9
경 제 적 곤 란	5	5	2	2		14
경제적인여유원 함	14	4	3		2	23
기 타	7	11	1	2	3	24
무 응 답	11	19	8	13	2	53
계	50	50	19	17	9	145

기혼 직업 여성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만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퇴직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수있다.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장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65명으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능히 알수있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고 희망한 사람도 29명이나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여성들이 취업하게 되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반드시 경제적 문제만으로 국한 시킬수는 없을 것 같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는 관계없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서울과 농촌 경우에는 경제적인 곤경에서 벗어나면 그만 두고 싶다는 사람수보다 다소 많다. 농촌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도시의 직업여성의 경우와 같다고 속단할수 없다.

첫째 적은숫자이므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할 것이며 둘째로는 농촌 여성들의 교육정도가 낮은 것을 고려할때 도시의 직업과는 거리가 먼 종류의 직업일것이므로 직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도시여성의 경우와 같이 해석 할 수 없을것이다. 하여간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생활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 마지못해 하는것이지만 일부도시여성들사이에는 직업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자기발전 및 사회참여의 기회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경제적 곤경해결시 퇴직 희망여부

지 역 희망여부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당 장 그 만 둔 다	14	28	2	7	7	65
2 ~ 3 년 머	7	6	4	1	2	20
쪽 계 속	18	9	3	9		29
모 르 겠 다	5	5	1			11
무 응 답		1	1			2
비 해 답	6	1	1			8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직장을 가진 직업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취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나 중소도시가 농촌이나 어촌에 비해서 다소 높으며 전반적으로 보면 만족하는 경향보다는 불만족인 경우가 비율이 더 높다.

자기가 취업하고 있는것에 첫째 만족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사람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가내 취업이 가능해서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취미에 맞다는 순위이며 특기할것은 남을 도울수 있는 직업이므로 만족한다는 대답을 한 사람도 4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표 19>

취업만족도

만족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매단히만족	6	1	1			8
어느정도만족	11	9	6	3		29
보통	15	11	6	7	1	40
어느정도불만족	8	12	5	3	3	31
매단히 불만족	9	17	1	2	5	34
모르겠다	1			2		3
계	50	50	19	17	9	145

<표 20>

취업만족시 만족사유 (I)

만족사유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1	37	11	12	9	100
취미에맞음	2	3	2	1		8
남을도울수있는직업	2	2				4
전공분야를살림	8	1	4			13
가내취업가능	3	5		3		11
보수가좋음	1		1			2
기타	1	2	1	1		5
무응답	2					2
계	50	50	19	17	9	145

둘째 만족한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취미에 맞아서 만족하는 것과
가내 취업이 가능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8명으로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공분야를 살릴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것과, 직장분위기가
좋아서 만족한다는 사람의 숫자가 6명씩으로 그 다음이다.

< 표 21 >

취업만족시 만족 사유 (Ⅱ)

지 역 만족 사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0	37	11	12	9	99
취 미 에 맞 음	4	3	1			8
남을도울수있는직업	1		1			2
전공 분야 살림	4	2				6
가내 취업 가능	3	2	2	1		8
보수가 좋으므로	2		1	1		4
직장 분위기가 좋음	1	3	1	1		6
기 타		2		1		3
무 응 답	5	1	2	1		9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 취업 불만족의 사유를 살펴보면 과중한일 때문에 불만족
을 느낀다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수가 적은 것과 분
위기가 나쁜것을 불만족의 이유로 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별차이가
없다.

< 표 22 >

취업 불만족사유 (I)

지 역 불만족사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3	21	13	11	1	79
과 중 한 일	5	4	1	4	1	15
보수종근나작장분위기나쁨		1	1	1	1	4
보수분위기나쁨	3	8	2			13
타인이 좋지않게평가	3	4	2			9
소질 성격에 안맞음	1	2				3
인격적대우를안해줌		2				2
불안정적직업	3			1	1	5
기 타	1	6			5	12
무 응 답	1	2				3
계	50	50	19	17	9	145

< 표 23 >

취업불만족사유 (II)

지 역 불만족사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2	21	13	12	1	79
과 중 한 일	4	5	2			11
보수직장분위기나쁨	3	5				8
타인이 좋지않게평가		4	1	2		7
소질 성격에 안맞음	3	4	1			8
인격적대우안해줌	1					1
불안정적직업	2	4			2	8
기 타	3	4		1	3	11
무 응 답	2	3	2	2	3	12
계	50	50	19	17	9	145

이러한 취업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지역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차이없이 취업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수가 단면 우세하고 보면 전 장에서 본바와 같이 경제적 이유만 해결되면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표시와 상통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지역별 차이 없이 공통적인 것은 집에서 할수 있는 직업을 희망한다는 것이 많고 보수 많은 직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공통적이다.

<표 24>

전직 희망직업

직업 희망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일정출퇴근직업	3	1				4
보수적어도시간적여유있는직업	6	2	1			9
집에서할수있는직업	8	11	8	3	1	31
자영업	6	6	4	5	1	22
보수많은직업	6	11	5	4	3	29
기타	4	5			1	10
취업의사전혀없음	15	14	1	3	3	36
모르겠다	2			2		4
계	50	50	19	17	9	145

이들의 취업연수를 보면 취업한지가 2~4년이 되었다는 사람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년 이상 직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29명으로서 그 다음이며 세째가 6~10년동안 취업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4년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다는 경우가 76명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취업연수

지 역 취업연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년 미만	7	6	4	1	3	21
1 ~ 2 년	8	3		1		12
2 ~ 4 년	10	10	3	6	1	30
4 ~ 6 년	8	6	4	3	1	22
6 ~ 10 년	9	8	4	2	2	25
10년 이상	6	13	4	4	2	29
무 응 답	2	4				6
계	50	50	19	17	9	145

이렇게 비교적 다년간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들은 어느정도의 연한동안 취업하기를 스스로 희망 하는지 다음 표에서 볼수 있다. 여기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66 명으로서 가장 많다. 그외 희망하는 취업 연한을 살펴보면 2,3년 동안 취업하는 것을 가장 이상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21 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에는 4,5년동안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15명이다. 그러나 10년이상 계속하겠다는 사람들도 11명이나 된다. 정년퇴직시까지 직장을 갖고 싶다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것은 10년 이상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사람이며 그리고 정년퇴직시까지 일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부는 서울사람들이다. 이들은 역시 직업에 대한 태도와 관념이 현대적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층의 직업여성 들일것으로 짐작된다.

<표 26>

희망 취업연수

지 역 취업연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년 미 만	2	1	2			5
2 , 3 년	6	8	5	1	1	21
4 , 5 년	7	4	2	1	1	15
5 ~ 10 년	1	3	2	1		7
10 년 이 상	6	2	1	2		11
정년퇴직까지	3					3
경제문제해결까지	31	29	5	12	7	66
모 르 겠 다	10	3	2			15
무 응 답	2					2
계	50	50	19	17	9	145

제 37 장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결혼을 한 여성이 직장을 갖는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성자신의 태도와 그들 남편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기혼여성들이 취업하는데 대해서 남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인이 직업을 가질 그당시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하여 물어본결과 찬성했다는 사람이 55명으로 반대했다는 35명보다 다소 높다. 또한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4명이나 된다.

지역별 차이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나 서울, 읍 및 농촌에서는 찬성하는 편이 많은데 비해서 중소도시에서는 반대라는 편이 약간 많다. 그러면 조사당시의 남편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찬성한다는 사람이 61명으로서 전보다 많아졌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14명으로 현저하게 줄었다. 그반면 중립을 취하는 남편들의 수는 대폭증가하여 24명에서 39명이나 되었다. 이것을 보아 부정적 태도가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되긴했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찬성까지 이르지못한 사람들도 많다.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지만 형편상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사람들이인 것이다.

<표 27>

취업에 대한 남편의 처음태도

태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7	14		7	1	29
대단히 찬성	6	4	1	3	4	18
어느정도반성	16	5	10	3	3	37
중립	4	13	4	2	1	24
어느정도반대	13	10	2	2		27
대단히 반대	4	2	2			8
모르겠다		2				2
계	50	50	19	17	9	145

<표 28>

취업에 대한 남편의 현재태도

태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6	15		7	1	29
대단히 찬성	10	4	2	3	4	23
어느정도찬성	8	15	7	4	4	38
중립	17	12	8	2		39
어느정도반대	4	3	2	1		10
대단히 반대	4					4
모르겠다	1	1				2
계	50	50	19	17	9	145

부인의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가사에 불충실하다는 점이다. 42명의 응답자 가운데 17명이 가사에 불충실하다는 점을 취업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으며 그외에 타인이 나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취업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6명, 수입은 좋으나 하는일이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5명, 수입도 적고 일도 힘들다는 사람이 5명이며 남자와 접촉이 많다는 점을 든 사람도 한명 있다. 또한 여자들이 취업하는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힌 사람이 4명 있다.

<표 29> 남편의 부인 취업반대 이유

이 유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수입좋은일이 힘들	2	1	1	1		5
수입적고일도힘들	4		1			5
가 사 에 불 충 실	5	9	2	1		17
타 인 이 나 뻘 게 생 각 하 는 직 업	2	2	1	1		6
남 자 와 접 촉 많 음				1		1
여 자 취 업 원 래 반 대	2	2				4
기 타		3	1			4
비 해 당	35	33	13	13	9	103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들 자신들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타진하기 위하여 「흔히 “여성은 될수 있는 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는 말들을 합니다. 부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합니까? 」 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기혼여성은 될수 있는 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60 명으로서 반대하는 사람 54 명 보다 6 명이 더 많기는 하나 서로 큰차이는 없다.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찬반이 양립하는듯하다.

그의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27명이다.

<표 30> 여성은 될수 있는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지 역 찬 성 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대단히 찬성	8	7		5	1	21
어느정도찬성	14	13	8	2	2	39
중립	6	9	6	4	2	27
어느정도반대	12	12	5	3	2	34
절대반대	8	8		2	2	20
모르겠다	1	1		1		3
무응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엔 “미혼여성은 될 수 있는한 직업을 갖지 않는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미혼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76명으로서 기혼여성의 경우 보다 오히려 높다. 이것은 미혼여성들이 더 많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과도 반대되는 태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혼인하기전의 여성의 순진성과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전통적인 어머니들의 태도에서 나타난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31> “미혼여성은 될수있는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찬 성 도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매단히 찬성	11	9	6	3		29
어느정도찬성	15	15	10	4	3	47
중립	3	7	1	2	2	15
어느정도반대	10	6	2	6		24
절대반대	9	12		1	3	25
모르겠다	1	1	1			3
무응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엔 본조사의 전체 응답자들 1,733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직업을 갖는 것에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직업을 갖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보면 찬성한다는 사람이 46.6%로서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찬성한다는 사람이 46.6%인데 반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39.1%이다.

찬성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혼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사람은 15.4%이고 그외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다.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절대 반대한다는 사람이 20.5%로서 어느 정도 반대하는 사람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이와같이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태도를 세분해서 보면 어느정도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절대 반대한다는 사람들이며 세째로는 어느정도 반대한다는 경우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견이 기혼여성으로서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는 사람들이다.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찬성,반대의 태도를 지역별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엔 기혼여성으로서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많고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기혼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가 반대하는 경우보다 높다. 특히 어촌에서는 기혼여성으로서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54.0%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22.0%로서

기혼여성이라도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배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봐서 가장 높은 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귀하는 직업을 갖지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표 32>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태도

태도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매우 찬성	70 (11.9)	78 (17.3)	65 (21.9)	47 (15.7)	7 (7.0)	267 (15.4)
어느정도 "	166 (28.3)	143 (31.8)	93 (31.3)	92 (30.7)	47 (47.0)	541 (31.2)
찬성도반대도않음	84 (14.3)	38 (8.4)	31 (10.4)	46 (15.3)	23 (23.0)	222 (12.8)
어느정도반대	125 (21.3)	86 (19.1)	49 (16.5)	46 (15.3)	17 (17.0)	323 (18.6)
절대 "	135 (23.0)	99 (22.0)	56 (18.9)	61 (20.3)	5 (5.0)	356 (20.5)
모르겠다	5 (0.9)	5 (1.1)	3 (1.0)	7 (2.3)	1 (1.0)	21 (1.2)
무응답	1 (0.2)	1 (0.2)		1 (0.3)		3 (0.2)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100.0)	1,733 (99.9)

그러면 다음엔 미혼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미혼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다. 즉 미혼여성으로서 직업을 갖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80.9%로서 반대하는 사람 9.6%에 비하면 거의 9배나 되는 셈이다.

또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7.9%에 지나지 않는다.

미혼직업여성에 대한 태도를 세분해서 보면 어느정도로 찬성한다는 사람이 40.6% 극히 찬성한다는 사람이 40.3%로서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며 그 다음은 모두 1할미만의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어서 미혼직업여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3> 미혼직업여성에 대한 태도

태도 \ 직업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극히찬성	234 (39.9)	199 (44.2)	142 (47.8)	106 (35.3)	17 (17.0)	698 (40.3)
어느정도 찬성	233 (39.8)	174 (38.7)	118 (39.7)	117 (39.0)	61 (51.0)	703 (40.6)
찬성, 반대 없음	53 (9.0)	29 (6.4)	14 (4.7)	29 (9.7)	13 (13.0)	138 (7.9)
어느정도 반대	28 (4.8)	13 (2.9)	9 (3.0)	11 (3.7)	6 (6.0)	67 (3.9)
절대반대	28 (4.8)	30 (6.7)	10 (3.4)	28 (9.3)	2 (2.0)	98 (5.7)
모르겠다	9 (1.5)	5 (1.1)	4 (1.3)	7 (2.3)	1 (1.0)	26 (1.5)
무응답	1 (0.2)			2 (0.7)		3 (0.2)
계	586 (100.1)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733 (100.1)

이렇게 남성들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데 대하여 현재 직업생활을 하는 여자응답자들 보다 펴 호의적태도를 취한다. 더우기 남자응답자들은 미혼여성의 취직을 기혼여성의 경우 보다 더욱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여자자신들이 미혼자의 취업을 기혼자의 취업보다 반대한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취직생활함으로써 겪는 여러가지 고충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기혼여성이나 그들의 딸의 입장을 보호하는 생각에서 취한 보수적인 태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제 38 장 취업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취업을 하므로서 생기는 어떠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이겠는가를 취업한 여성들자신을 상대로 물어본 결과 우선 유리점한점들이 많다는 사람이 87명으로 거의 $\frac{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3명의 직업여성들 그와 반대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불리한 점이 더 많다는 점을 들고있다. 이와 비슷한 25명의 여성들이 취업에서 오는 이로운 점도 불리한 점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로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표 34> 취업의 유리점 대 불리점

유리점 대불리점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이 점 이 많 다		25	29	10	9	4	87
이점불리점모두없다		10	5	5	4	1	25
불 리 점 이 많 다		13	11	2	4	3	33
모 르 겠 다		1	1	2		1	5
무 응 답		1	4				5
계		50	50	19	17	9	145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리점으로서는 경제적인면을 들고있다. 즉 경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9명의 응답자가 자기의 소질을 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직장을 가짐으로써 부부상호간에 오히려 이해가 더 많이된다. 사회생활을 넓힐 수 있다 등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두명씩있다. 둘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취업의 이점으로서도 역시 경제적인 도움을 든 사람이 15명으로서 가장 많으나 이러한 경제적인 도움외에도 자신의 소질을 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람이 8명,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이다. 또한 부부 상호간에 이해를 가지는데도 직장을 가지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명등이다. 이와같이 취업의 유리한 점으로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든 사람이 많은 편이다.

<표 35>

취업의 이점 (I)

이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5	21	9	7	5	67
소 질 발 전	5	3	1			9
사 교 생 활	1					1
사회생활상식지식넓힘	1		1			2
부 부 이 해 도 움	1	1				2
경 제 적 도 움	16	24	8	9	4	61
무 응 답	1	1		1		3
계	50	50	19	17	9	145

<표 36>

취업의 이점 (II)

이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5	22	9	7	5	68
소 질 발 전	3	2	3			8
사 교 생 활		2				2
사회생활상식지식넓힘	4	3		1		8
부부이해도움	2	1	1			4
경제적도움	8	5	1	1		15
가 타		2	1			3
무 응 답	8	13	4	8	4	37
계	50	50	19	17	9	145

한편 부인들이 직업을 가정으로서 불리한 점으로는 어떠한 점을 들고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불리한 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기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소홀해지기 쉽다는점을 가장 많은 사람인 20명이 들고있다.

그외에 들고있는 이유는 직장을 가정으로써 가정불화와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자녀들의 교육에 충실할 수 없다. 여가가 없어서 취미생활을 가질 수 없다.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이유로서 가장 많은 취업의 불리점은 자녀들의 교육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으로 11명이나 된다. 다음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을 6명이나 들고있다. 그 외에도 여가

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 부인이 수입이 있으므로 남편의 경제생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적어진다. 등 그 외에도 가정불화와 의견충돌이 더 많다 등을 불리한점으로 들고있다.

<표 37>

취업의 불리점 (I)

불리점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7	37	17	14	6	111
가정생활소홀	10	5	1	2	2	20
취미생활불가능		2				2
자녀교육불충실		2	1			3
가정불화의견충돌	1	2				3
기타	1	1	1	1	1	4
무응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표 38>

취업의 불리점 (III)

불리점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6	27	17	13	6	99
가정생활소홀		4	2			6
취미생활불가능	2			1		3
자녀교육불충실	7	2		1	1	11
남편의경제관심감소		3				3
가정불화의전충돌	1	1				2
기타	1	1				2
무응답	3	2		2	2	9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취업으로 인해서 가정내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큰 문제로서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남편에게 시중을 잘 할수가 없어서 남편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든 사람이 24명이나 된다. 다음으로는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기때문에 서로 거리감이 많다는 점을 든 사람이 13명, 자녀들이 성격이 난폭해진다 12명, 자녀들의 학업을 돌봐 줄 수 없어서 학업성적에 지장이 있다는 사람이 12명으로 비슷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외는 서서 사람이 각각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아이를 돌보아 주면서 불만해한다. 부인의 바깥생활에 대해서 남편이 오해를 한다.

생활을 타인에게 맡김으로써 가계에 낭비가 있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들고있다.

<표 39>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 (I)

문 제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시 어 머 니 불만	3	1				4
남편자녀와의거리감	9	3	1			13
남 편 불 만	11	4	3	3	3	24
남편의외부생활오해		2		1		3
자녀성격 난폭해짐	4	6	1		1	12
자녀학업돌보지못함	4	3	3	2		12
살 림 낭 비	1	1	1			3
기 타	3	9		2	2	16
없 다	11	18	7	9	2	47
모 르 겠 다	1	2	3			6
무 응 답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둘째로 직업여성들의 가정내 문제점을 보면 자녀들의 학업을 돌봐주지 못한다는 점을 15명이 들고 있어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남편에게 시중을 잘 할수가 없어서 남편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사람이 12명이다. 그외에 자녀들의 성격이 난폭해진다.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서로 거리감이 많다등을 들고있다. 이외에도 시어머니가 살림이라 아이를 보살펴 주면서 불만을 자주 한다는 점과 생활을 타인이 돌봐

중으로 가계비의 낭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같이 취업여성이 가정내에서 가장 문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첫째 둘째의 것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인 자녀를 잘 돌봐 주지 못한다는 점과 남편의 시중을 잘 못해서 오해가 생긴다는 점등에 집중되고 있다.

<표 40>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 (Ⅲ)

문 제 점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시 어 머 니 불 만		1	1	2			4
남편자녀와의거리감		4	2		1		7
남 편 불 만		6	3	2		1	12
남편의외부생활오 해		1					1
자녀성격난폭해짐		2	2	2	1	1	8
자녀학업돌보지못 함		8	5	1		1	15
살 림 낭 비		2					2
기 타		4	5			1	10
없 다		8	17	9	7		41
모 르 겠 다		2	4	2	3		11
무 응 답		12	11	1	5	5	34
계		50	50	19	17	9	145

제 39 장 취미생활

취업여성들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기로 한다. 취업여성들이 취미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취미도 갖고있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제일 많다. 그외에 취미로써 가장 많이 들고있는것은 독서를 즐긴다는 사람들로써 25명이나 된다. 그다음은 영화와 음악은 취미생활로 꼽은사람이 24명이나되며 셋째로는 친구와의 환담을 유일한 취미로 든 사람이 22명이나 된다. 기타 취업여성들이 그들의 취미생활로 들고있는 것은 수예와 편물, 꽃꽂이, 등산, 운동 및 그림그리기 등의 순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서는 수예나 편물을 하거나 영화를 취미로 삼는 사람이 보다 높고 농촌에서는 친구와의 환담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가장 많다. 독서도 그다음 가는 도시인들의 취미생활이다.

<표 41> 취미생활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취 미							
독	서	9	7	5	3	1	25
등	산	2					2
꽃	꽃	3	1				4
영 화	• 음 악	10	10	3	1		24
운	동	1					1
그	림	1					1
환	담	6	8		7	1	22
수 예	• 편 물	11	4	3			18
기	타	1	6	1	1		9
없	다	6	14	7	5	7	39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살펴보면 첫째로 많이 보내는 방법은 그동안 밀렸던 일을 -예컨대 빨래나 청소등-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는 수가 44명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가족들과 같이 즐긴다는 사람들의 수가 42명이다. 그외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잠이나 휴식으로 피로를 풀거나 친구나 친지를 방문함으로써 휴일을 보내고 있다.

지역적으로 차이있는 현상은 도시인들일수록 공휴일을 가족들과 함께 즐긴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서울사람들의 경우 거의 절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인의 직장은 역시 농촌과 달리 집을 떠나서 있는것이며 매일 일정하게 출퇴근하면서 긴시간을 직장에서 소비해야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제한된다.

이러한 직업적 차이에서 여가소일의 방법에도 어느정도 차이를 가져오는 듯하다.

<표 42> 주말·공휴일의 소일(I)

소 일 처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친구·친지방문	2	1	3			6
가 족 과	24	12	5	1		42
혼자취미생활		1	1		1	3
밀 린 일 처 리	13	14	3	7	7	44
휴 식	3	5				8
기 타	5	14	6	5	1	31
모 르 겠 다		1		4		5
무 응 답	3	2	1			6
계	50	50	19	17	9	145

다음에는 두번째로 많이 휴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잠이나 휴식으로 피로를 푼다는 사람과 역시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외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즐긴다는 사람과 친구나 친지를 방문한다는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일에 취업여성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보통매 밀려두었던 일을 하거나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표 43> 주말·공휴일의 소일 (Ⅱ)

지 역 소 일 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친구·친지방문	3	2		1		6
가 족 과	5	5	3	2		15
혼자취미생활	2		1			3
밀 린 일 처 리	14	10	6		1	31
휴 식	13	10	1	4	4	32
기 타	6	8	3	3	1	21
모 르 겠 다		5	2	4	1	12
무 응 답	7	10	3	3	2	25
계	50	50	19	17	9	145

제 40 장 출,퇴근 시간 및 가사협조자

이들 응답자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대한 상황을 알아볼
과 동시에 주부들이 출근한 후의 집안 살림살이는 누구의 손에 의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살림살
이는 누가 하고있으며 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있는가를 본다.
또한 가사협조자에겐 어느정도의 보수를 주고있으며 그들 협조자들
은 주부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우선 취업여성의 출근시간을 보면 집안에 직장을 갖고있는 60명을
제외하고는 오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 51 명으로써 가장 많다.
그외에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25 명이나 되며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8명,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1명있다.
한편 퇴근시간은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으며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32명이나 있다.

<표 44> 출근시간

지 역 시 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새 벽	2	3	2		1	8
오 전	21	16	14			51
오 후	1					1
불 일 정	7	8		5	5	25
가 내	19	23	3	12	3	60
계	50	50	19	17	9	145

<표 45> 퇴근시간

시 간	지 역	지 역					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오	전			1			1
오	후	16	13	8		1	38
	밤	5	4	5			14
불	일	10	10	2	5	5	32
가	내	19	22	3	12	3	59
무	응		1				1
	답						
	계	60	50	19	17	9	145

그런데 이와같이 가장 보편성을 지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와는 달리 밤이 되어야 퇴근할수 있다는 사람이 14명으로 본조사의 응답자 가운데는 약 1할을 차지한다. 오전중에 퇴근한다는 사람도 1명 있었다. 그러면 취업 여성들이 직장에서 돌아온 후에 가사를 돌보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살림살이 전부를 전적으로 돌봐야한다는 사람이 77명으로 거의 반수가 조금 넘으며 틈이 나는 대로 가사를 돌보고 있다는 사람이 53명이다.

반면에 살림 살이를 돌보아 주고는 싶으나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10명이다. 이와같이 직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취업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소라도 살림살이를 돌보고 있다고 할수 있다.

<표 46> 퇴근후 가사돌보는 시간

지 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살림전부전적으로	17	27	13	11	9	77
틈나는대로	26	19	4	4		53
전혀돌보지못함	4	2	2	2		10
무응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출근을 한 후에 주부를 대신해서 가사를 누가 보살피주는가를 보기로 한다. <출근후 가사 책임자>의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여성 자신이 가사를 전부 맡아서 하고 따로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45 명으로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식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척 및 이웃에 위탁한다는 순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식모에게 살림살이를 맡겨두고 직장에 나가는 주부가 많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사를 전부 취업여성이 직접 맡아서하는 경우가 많다는점이 나타나고 있다.

6 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경우는 직장을 나가는 동안에 누가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6 세미만의 자녀를 가지지 않고 있는 70 여명의 비해당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70 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5에 해당되는 25 명이 자녀를 돌보아줄 보조자가 없어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녀들

을 직접 돌보아 가면서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0명은 애기 보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합치면 애기보는 사람없이 해나가는 경우가 35 명으로서 꼭 반수를 차지한다。

<표 47> 출근후 가사 책임자

가 사 책 임 자	지 역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0	6	4	10	1	31
시 어 머 니		6	4	2	2		14
친 정 어 머 니		4	5				9
친 척			2				2
식 모		11	1	3			15
이 웃 위 탁		1					1
기 타		7	11	2	1	2	23
본 인 이		8	20	7	4	6	45
아 무 도 없 다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그 다음에는 식모에게 자녀보육의 책임을 맡겨두는 경우로서 19명이며 이외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맡겨두고 취업을 하고 있으며 탁아소에 맡겨둔다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서는 식모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겨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타 지역은 직업여성 본인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점은 서울이외 타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이란 직장에 꼭 매여야하는 종류의 일이 아니고 행상

또는 가제를 보든가 아니면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상태로서 자녀들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도시 이외에서는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할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수 없는 듯 하다.

<표 48> 출근후 보육 책임자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6	23	6	13	2	70
시 어 머 니	3	2	1	1		7
친 정 어 머 니	2	1				3
식 모	11	5	3			19
탁 아 소	1					1
기 타	2	5	3			10
본 인 이	3	12	5	3	2	25
아 무 도 없 음	2	2	1		5	10
계	50	50	19	17	9	145

그러면 직업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돌보고 애기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월평균 어느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가를 보면 1000에서 2000원 사이의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경우가 16명으로 가장높다.

그 다음에는 2000원이상 3000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람이 8명, 3000원이상의 월급을 주는 사람은 4명이 있으며 1000미만의 월급을 준다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로서 가사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33명으로 가장많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의 경우에 가사 및 보육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많고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가사 및 보육책임자에게 전혀 월급을 주지않고있다. 대부분의 근로여성들의 수입이 10,000 미만인고로 많은 보수를 주고 식모를 둔다는 것은 모순된 형편이다. 어느정도 높은 수입을 가진 도시 직업여성들사이에서만 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식모를 두워가면서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다.

<표 49> 가사, 보육책임자 월평균 지급보수

금 액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3	28	10	14	7	82
1,000 원 미만	1					1
1,000 ~ 2,000	8	5	3			16
2,000 ~ 3,000	6	2	1			9
3,000 원 이상	4					4
무 보 수	8	15	5	3	2	33
계	50	50	19	17	9	145

가사 및 보육책임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주부를 대신해서 가사나 애기를 돌봐주는다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듯 하다. 이에 관련된 그들의 대답을 보면 대다수가 만족해하거나 보통으로 생각하며 극히 소수만이 불만을 표시한다. 이러한 소수의 불만한 사람들은 애기보는 일에 성의가 없고 살림살이에 낭비가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점을 시정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듯 하다. 가능하면 나은 사람으로 대체할수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그대로 참고 견디는수 밖에 별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여성의 수가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식모를 쉽게 구할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을 예상할때 가정생활에 여러가지

변화가 와야할 것 같다. 주택의 구조를 아파트로 바꾸는 한편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보육원 탁아소 및 유치원 등의 시설이 지역별로 속속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할머니를 한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가족생활에서 직업여성들이 어린애기와 살림살이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것이 가능한 집안에서는 식모에게 맡기는 경우 보다 훨씬 마음든든하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연로한 할머니들에게 이것을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고 또한 그들의 불만을 사기 쉬운것이다.

<표 50> 가사, 보육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2	28	10	14	7	81
매우만족	3	6				9
어느정도만족	12	6	6	3	1	28
보통	11	8	3			22
어느정도불만족	2	1			1	4
매우불만족		1				1
무응답						
계	50	50	19	17	9	145

그리고 젊은층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은 이러한 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여성들이 앞으로 계속 어머니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려울것이다. 이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회공공기관과 제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제 41 장 직업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기혼여성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는 달리 출산이나 육아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에 똑같은 시간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서 남자보다는 낮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조건하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편리나 대책을 메우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 직장에서의 편리점

우선 출산을 전후한 취업여성들이 직장에서 휴가나 편리를 다소 받고 있다는 사람은 27명의 소수이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있지 않음으로서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110명이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권외에 속하는 여러 가지 비정기적인 노동, 가내공업, 행상 및 판매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주로 저소득층의 부인들이다. 이들의 임신중 보건과 해산을 위한 의료혜택 및 산전산후의 휴식기간동안의 생활보장등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근로층의 임신부 복지문제 및 모자보건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 문제인 것이다.

<표 52>

출산 전후 휴가 및 편리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8	44	15	16	7	110
전 혀 없 다	2	1			2	5
어 느 정 도	15	3	3	1		22
만 족 스 럽 게	2	2	1			5
무 응 답	3					3
계	50	50	19	17	9	145

둘째로 육아보호 특히 젓먹이는 시간에 대해서 직장에서 편리를 봐주는 경우는 7명으로 극히 적다. 현재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미혼 여성만을 채용하며 혼인하는 경우 또는 임신하는 경우 직장을 물러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직업을 보장하는 민주헌법에 어긋난 것임으로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하루속히 육아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기혼자들도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취업도중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배려를 베푸는 경우는 3명으로 극히 소수이고 그외는 다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상해 발생시에도 전혀 배려가 없다는 수가 다소 많은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처참한 현실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상해보험 및 의무보험의 제도가 저소득근로층에게 까지 널리 적용되어져야 한다.

<표 53>

육아보호(젖먹이는시간)편리제공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3	44	15	16	7	115
전 혀 없 다	9	3	2	1	2	17
어 느 정 도	3	2	2			7
무 응 답	5	1				6
계	50	50	19	17	9	145

<표 54>

상해 발생시 직장협조정도

지 역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협조정도						
비 해 당	33	42	15	15	7	112
전 혀 없 다	5	3			2	10
어 느 정 도	11	5	3	1		20
만 족스 럽 게	1		1	1		3
무 응 답						
계	50	50	19	17	9	145

넷째로 집안에 대사나 흥사가 있을 경우엔 다소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대사나 흥사에 대한 직장의 보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전혀 편리를 봐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다소 있다.

<표 55>

가내·홍사·대사시 보조

보조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9	40	14	16	7	106
전혀없다	6	3			2	11
어느정도	9	6	5	1		21
만족스럽게	1	1				2
무응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다섯째로 위생시설이 여성 취업자들을 위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수 혜택을 받는 직장인 있기는 하나 역시 일반적이며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락시설을 갖춘 직장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제한된 현상이며 직업여성의 복지를 위해 널리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표 56>

직장내 위생시설

위생시설 지역	서울	중심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9	36	13	16	7	101
전혀없다	3	4		1	2	10
어느정도	6	7	4			17
만족스럽게	7	3	2			12
무응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표 57>

직장내 오락시설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9	38	15	16	7	105
전 혀 없 다	8	9	1		2	20
어 느 정 도	8	2	3	1		14
만 족스 럽 게		1				1
무 응 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일곱번째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만족하게 남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경우보다도 역시 남자와 동등한 취급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동등한 고려는 받고 있지 않으나 어느 정도는 남자와 비슷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다.

<표 58>

남자와 동등한 보수

동등한 보수 지 역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9	42	14	16	7	108
전 혀 없 다	6	3		1	2	12
어 느 정 도	9	4	1			14
만 족스 럽 게	3	1	4			8
무 응 답	3					3
계	50	50	19	17	9	145

여덟번째로 본 조사대상이 되었던 취업여성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가를 보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경우보다 많다. 그러면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년동안 일주일 미만을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만일 직장여성이 병이 났을 경우엔 유급결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병이 나도 유급결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37명의 응답자 가운데서 14명이며 유급결근이 허용되는 기간에도 그 기간이 일주일 미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리의 실정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 국가가 현대화하기 까지에는 요원한 감이 있다. 이것을 하나씩 시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9>

유 급 결 근

지 역 유급결근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2	40	13	16	7	108
1 주 미 만	4	1	3	1		9
1 주 ~ 10 일			1			1
15 ~ 30 일	1	1	1			3
30 일 이상		1				1
기 타	2					2
없 다	8	3	1		2	14
모 르 겠 다	2	3				5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 표 60 >

유급 휴가 유무

지 역 유급휴가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바 해 당	31	39	14	16	7	107
일 주 일 미 만	4	2		1		7
10 ~ 15 일	1	2				3
15 ~ 30 일	1					1
30 일 이상		1	2			3
기 타	1	1				2
없 다	8	4	3		2	17
모 르 겠 다	2					2
무 응 답	2	1				3
계	50	50	19	17	9	145

2. 국가에 대한 직업여성들의 희망사항

"결혼한 직업여성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시책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면 직업보도 및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다음에는 가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로는 무료 탁아소 설치를 희망하는 수가 17명이다. (시설물을 유료 탁아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 6명을 합치면 23명이 탁아소 설치를 원하고 있어서 기존 직업여성의 희망사항으로서 두

번째 순위가 된다.)

이 외에 남자와 동등한 대우—특히 보수문제—를 국가 시책으로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을 위한 휴게실 설치,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의 휴가제를 국가시책으로 수립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출산을 할 경우엔 출산 특별 수당제도도 아울러 실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그외도 여성을 위한 은퇴 연금제도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표 61>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요국가 시책 (I)

지 역	서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휴 게 실 설 비	3	2	2	2		9
특 별 휴 가 제 도	11	5	5	1		22
직업보도기술습득	11	14	2		1	28
생 리 휴 가 출 산 전 후 휴 가	7	1				8
출산특별수당제	4	2	2			8
무 료 탁 아 소	3	6	4	1	3	17
시설좋은유료탁아소	2	3		1		6
남 자 와 동 등 한 보 수 제 도	3	6	1	3	1	14
은 퇴 연 금 제 도	1		1			2
기 타	1	2		3	2	8
모 르 겠 다	2	6	2	6	2	18
무 응 답	2	3				5
계	50	50	19	17	9	145

<표 62>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요국가시책(Ⅱ)

지 역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휴 제 실 정 비	3	3				6
특 별 휴 가 제 도	2	2	2	1		7
직업보도 기술습득	4	7	2	3	1	17
생 리 휴 가 출 산 전 후 휴 가	5	2	1			8
출산특별수당제	6	1	2	1	1	11
무 료 탁 아 소	6	4	1			11
시설좋은유료탁아소	1		2			3
남 자 와 동 등 한 보 수 제 도	6	5	4			15
은 퇴 년 금 제 도	4	4				8
기 타	1	1		2	1	5
모 르 겠 다	5	16	4	6	2	33
무 응 답	7	5	1	4	4	21
계	50	50	19	17	9	145

3. 단체 가입 여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가의 여부를 보면 단 6명만이 가입하고 있다

직장 공제회에 가입했는가의 여부를 보면 13명만이 가입하고 있다. 직장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노동조합이나 직장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보다는 많으나 역시 극히 적은 수인 16명만이 직업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표 63>

노조가입 여부

지 역 가입여부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7	26	13	14	4	74
했 음	1	4		1		6
안 했 음	29	18	6	2	5	60
무 응 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표 64>

직장 공제회 가입 여부

지 역 가입여부	서 울	중심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1	26	14	15	5	81
했 음	5	5	1	1	1	18
안 했 음	21	18	4	1	3	47
무 응 답	3	1				4
계	50	50	19	17	9	145

<표 65>

직업단체 가입여부

지 역 가입여부	서 울	중심도시	읍	농촌	어 촌	계
비 해 당	17	24	13	14	4	72
했 음	7	6	2	1		16
안 했 음	23	18	4	2	5	52
무 응 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제 41 장 기혼취업자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시

직업여성에 관한 실태중에서 문제시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3분의 1 이상이 25 ~ 35 세 사이에 속하고 있다. 이 연령층은 바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단계이므로 어린이들이 아직도 어려서 여성들이 집과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한다는 것은 어머니들을 위해서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극히 적당하지 못한 시기이다. 이러한 부적당한 입장에서든 취업생활등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전부가 긴박한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일을 해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탁아소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소득근로층의 여성들을 위하여 무료탁아소 또는 실비만을 지불할 수 있는 탁아소시설이 지역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이번 전국적 표본에서 발견된 기혼취업자들의 교육정도는 서울시의 직업여성들의 다수가 대학출신인데 반하여 기타 지역에서는 무교육과 초등교육을 받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으로 이들이 취업하는 직업의 종류는 서울시의 경우 취업여성 5할 정도가 교사, 사무직 또는 기타 전문직등의 현대적 직업에 종사할 뿐 타지역에서는 대부분이 판매종사, 행상, 음식점 및 유흥업 종사 또는 단순노동자 등이다. 즉 현대 산업화에 따르는 직업구조의 변화가 대도시 이외까지는 파급되지 못하였으며 현대적인 직업여성은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그들의 수입도 월 10,000원 미만에 속하는 층이 전체의 6할 이상이나 된다.

3. 이러한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이상(51명)의 여자들은 그들의 수입이 가족부양을 위한 전체수입으로 충당된다고 대답하고 있다. 즉 여자의 적은 수입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가 남편없이 홀로 사는 형편에 있지 않다. 145명의 취업여성중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26,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가 12명으로 38명의 경우만이 남편없이 살아가는 형편이다. 이로서 남편과 동거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여자의 수입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취업여성들의 자녀수는 평균 3.2명으로서 남편없이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과중한 부양의 부담이 되고 있음은 변연하다.

그점으로 취업여성들의 절대다수(80명)는 절박한 경제적사정 때문에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취업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가족의 경제문제만 해결한다면 직업을 그만 두겠다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현대적인 직업의식과 직업에 대한 의의를 갖도록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것이다. 이 저소득근로층의 생활안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4. 이들의 취업에 대한 불만족은 기대할만한 것이다. 그들이 취업하는 직업의 종류와 수입정도를 고려할 때 만족할만한 여건이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도시의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여성중에서 소수만이 직업을 통하여 그들의 전문적지식을 활용하며 또는 직업이 취미에 맞는다는 이유로서 만족을 표시하고 있을

뿐 남어지 대부분의 경우는 직업에 불만하거나 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일이 과중하며 보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여자들의 힘에 겨운 노동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마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이들의 권익옹호는 현재로 전무상태에 있다. 비록 법률상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며 권익을 옹호하는 훌륭한 법조문이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지만 이들은 법의 보호권 외에 속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및 노동시간제의 엄격한 실시가 요구된다.

5. 기혼자들의 취업에 있어 또한 불만한 이유는 직장이 가정과 분리되어 있는 점이다. 자녀양육과 가사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로서 경제적 형편상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경우 주부의 역할과 직업을 겸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리한 일이며 과중한 부담이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취업여성들의 수가 어느정도 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절반이 되는 77명이 가사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중에서도 45명은 특히 그들의 취업중에 가사를 돕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정이 또한 심각하다.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은 거의 절반이 되는 70여명이다. 이들중 25명의 경우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직업여성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을 식모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이외에는 그들의 취업중 어린아이를 베리고 돌보

면서 하는 경우가 10명이나 되며 또는 어린아이들을 집에 그들끼리 내버려두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듯이 짐작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과 가족을 위해 사회적 또는 국가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정에서는 그들의 가정복지 또는 아동복지가 전혀 사회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뒤에 취업여성들의 희망사항에서도 다시 강조되겠지만 저소득 근로여성들의 6세미만의 어린자녀들을 위한 무료탁아소 또는 실비탁아소가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루속히 설치되어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설이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아의 전수도 점차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고아원에 수용되어야 할 어린이들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6. 이번 조사를 통하여 근로여성들이 노동복지법의 혜택을 실제로 입고 있는 경우는 너무도 미미하다. 예로서 16명 정도만이 병고로 인한 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산전산후의 유급휴가를 받았다는 경우는 27명이다. 이들의 경우는 어느정도 현대적 조직체를 갖춘 기업체나 기타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중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며 행상, 날품팔이, 가내공업 및 기타 상업이나 서비스영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는 노동법의 통계권외에 속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노동조합이나 기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시급하다. 이들은 참으로 보호를 요하는 계층들인 것이다.

기존 근로여성들의 복지문제는 임신부를 포함한 모자보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전산후의 유급휴가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수유의 편리를 위해 시간이나 시설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법에 기혼자들의 직업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더우기 현실적으로 남편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기혼여성으로서 자녀들의 부양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의 생활보장과 권익옹호를 마땅히 인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부설 탁아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복지를 위해 지적될수 있는 문제는 허다하다. 일반적인 기본 노동복지의 향상이 너무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임으로 여성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님은 사실이나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근로층은 더 혹심한 차별대우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상태는 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무시당한 상태임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7. 마지막으로 취업여성들의 입장에서 첫째로 요구한 사항을 지적하면 여성들을 위한 직업보도와 기술훈련이다. 현재 여성들을 위하여 이 부문의 기능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행정제도는 거의 전무상태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위 직업소개소라는 것이 시행정부의 관할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그 운영상태가 아직도 너무 무책임하고 비조직적이며 여성들을 위해서는 식모소개소에 불과한 기능을 하며, 이것마저도 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설 직업보도 기관으로서는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을 위시하여 몇곳에 있는 모양이나 이것마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탈피치 못하

고 있는듯 하다。 기술훈련면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자학원, 미용학원, 편물학원등등의 각종 시설이 허다하게 많아서 여자들에게 사무직, 서비스직, 그리고 가내 부업을 위한 기술의 보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설기관은 때때로 여자들에게 직업알선을 미끼로 수수료를 많은 희망자들에게서 사취하는 사기기관으로 변모하는 수가 허다하다。 이처럼 직업보도와 기술훈련이 아직도 전적으로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기관에 맡겨져 있는 상태임으로 국가는 이것을 통제하는 동시에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에 따른 체계적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8부 심신장애자 복지문제

제 43 장 장애복지의 범위와 대상자및 장애 평가

1. 장애의 정의와 평가의 곤란성

장애복지의 연구나 시책수립에서 제일 먼저 봉착하는 가장 어렵고도 기본적인 문제가 장애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의 범위와 그 평가다.

그런 점은 1958년 영국 런던에서 5월 12일~5월 22일에 걸쳐 개최되었던 국제사회보장협회에서의 제7보고서(가동 무능력의 측정에 대한 기준의 통합)에서 가동능력의 결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그런까닭으로 해서 무능력의 인과관계에 따른 기초적인 개념에 통일된 견해는 없다. 원래 이에는 두가지 다른 기본적인 개념 말하자면 육체적인 불구와 노동에 대한 불구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장애와 장해의 용어이다. 원래는 장애자로 모다 통용되었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일본에서 한자제한을 하게 되어 발음이 같은 장해를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장애와 장해가 공용되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장애와 장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의 사정이고 우리의 경우는 구별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희승교수편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장애는(꺼리껴서 거침, 막아서 거치적 거림)이라하고 장해는(꺼리껴서 해가 되게 함)이라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해는 외인성 또는 기질성사유로 신체기관이나 기능의 결손에 기인한 생리기능부전 생활기능부전이나 또는 가동능력부전으로 일정한 정도이상에 이르는 영속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말하고 장애는 장해를 포함

하여 심인성, 선천적사유에 의한 생리기능부전, 생활기능부전, 가동능력부전으로서 일정한 정도이상에 이르고 영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기로 한다.

장애자의 뜻을 위와 같이 정한다. 하드래도 실시에서는 장애자의 지정에는 정책적처지나 의학적견지, 심리학적견해, 사회학적고찰, 경제적처지나 행정적필요에 의하여 그 유형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사회의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서도 서로 다르고 그 사회 특유의 견지에서도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의 단적인 예는 일본의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제2조에 (이 법률에서 신체장애자라 함은 별표에 계기한 신체상 결함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 하고 있고 그 실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연금법제, 산재보상법제, 세제, 노동기준법제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평가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각양각색이다. 이 사정은 국제사회보장협회 제 14차 총회(1961.9.23 ~ 30 이스탄불)에서 채택된(폐질의 평가에 대한 기준의 조정 문제에 관한 결의서)에서 (그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폐질의 평가는 대단히 복잡한 여러가지 요건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은 여기서 원문대로 밝혀둔다.

가 . An anatomical phsiological element.

나 . An element concerning non-differentiated Occupational capacity.

다 . An element concerning specific professional capacity.

라 . An element concerning earning capacity which can be linked with economic working possibilities;

< The methods of evaluation of invalidity may differ according to national schemes an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applied within schemes of reparation of anato-mical-functional loss, or within schemes of compation for loss of earning > 에서도 참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장애자는 신체적 장애자 . 정신적 장애자 . 사회적 장애자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 여기서 이색적인 것은 사회적 장애자란 개념인데 사회적 장애란 용어는 1961년의 한국아동복지위원회의 한국장애아동조사에서의 << Social handicaps (children of mixed racial parentage) >에서 유래한다 .

그러나 사실문제로서 사회적 장애란 장애에 대한 분류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가령 혼혈아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대인적 또는 대사회적 장애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소수민족인 산외나 해변에 사는 소수 원주민 . 백정 . 비인 (1871년대에 38만 2886人이 있었다 함) 등은 어떻게 취급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 . 미국이나 호주의 aborigin이나 American Indian 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겠다 . 따라서 이 점의 해결을 위하여 여기서 Social handicaps

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수립의 필요에 의하여 임시변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은 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신체장애자

신체적장애자는 보통 시청각기능(평형기능포함) 언어장애, 지체장애, 기형 등의 신체의 이상이나 신체기관의 불전을 말한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폐질이나 장기장애도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헤루니아 결핵, 간질, 두부장애 등에까지 확대를 요망하는 추세에 있다.

그 예증으로서는 1964년의 일본신체장애자복지법을 들 수 있다.

동법은 제 4 조에서 (신체장애자) 『이 법률에서 <신체장애자라 함은, 별표에 기재한 신체상에 장애가 있는 18 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지사로 부터 신체장애자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신체장애자의 범위)

(1) 좌에 기재한 시각장애로서 영속하는 것.

(가) 양안의 시력 (만국식시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교정시력으로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이 각각 0.1 이하의 것.

(나) 1 안의 시력이 0.02 이하, 타안의 시력이 0.6 이하의 것.

(다) 양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의 것.

(라) 양안의 시야가 2분지 1 이상 결여된 것.

(3) 좌에 기재한 청각이나 평형기능의 장애로서 영속하는 것.

(가) 양이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의 것.

(나) 1 의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이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의 것.

- (다) 양이에 의한 보통활성의 최량언어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의 것 .
- (라) 평형기능의 현저한 장애
- (3) 좌에 계기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의 장애
- (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의 상실
- (나)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의 현저한 장애로서 영속적인 것 .
- (4) 좌에 계기한 지체부자유
- (가) 1 상지 , 1 하지나 체간의 기능의 현저한 장애로서 영속적인 것 .
- (나) 1 상지의 무지가 지골간관절 이상에서 결여된 것이나 시지를 포함하여 , 1 상지의 2 지이상이 각각 제일지골간관절이상에서 결여된 것 .
- (다) 1 하지가 <리스프란>관절이상에서 결여된 것 .
- (라) 양하지의 모든 지지를 결여한 것 .
- (마) 1 상지의 무지의 기능의 현저한 장애
- (바) 전 각호에 계기한 것의 그 정도가 전 각호에 계기한 장애정도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장애
- (5) 심장이나 호흡기의 기능의 장애로서 영속하고 또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 제 V 항은 1949 년의 당초제정법률에는 없는 규정이었는데 장기장애도 구체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1967 년대에 중요장기장애를 포함시킨 것 같다 . 그러나 1969 년 현재 장기장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

영국은 1944 년의 장애자법 (고용) 에서 장애자라 함은 상해 .

질환이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그의 연령이나 경험, 자격등으로 보아 합당한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고용의 견지에서 본 신체장애자의 정의이나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견해이다. Pelican Book, Social Welfare and the Citizen by P. Archer 의 J.G.Hill 에 의한 The Handicapped 라는 장에서 장애자에 대하여 Those Handicapped with either mental illness or mental deficiency 라고 한 것이나 A Specialized nature for its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Citizens 라고 한것을 보아서 the handicapped 는 심신장애자를 말하는 것이고 신체장애자는 the physically disabled 로서 표시하는 것 같다. 신체장애자는 the Crippled, Deafness, Blindness, Tuberculosis Epilepsy 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Encyclopidia of Social Work by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ew York, N.Y 에 의하면 Handicapped 의 Index 에서 the Crippled also See Disabled 라 하고

< The crippled > 난에는 The crippled are handicapped as much by the use of the word "crippled" to categorize them as they are by their Physical condition, for society's attitude toward a person with a conspicuous physical defect is frequently a more serious handicap than the disability.

It is encouraging, however, that the tendency to segregate the crippled is being replaced by the realization that the crippled individual is a person first and only secondly a, handicapped one.

To help overcome the stigma resulting from the attitude of society, some organizations have replaced the word "crippled" with the more general words "disabled" or "a handicapped".

Although these words are not as objectionable to the disabled themselves, they are not as precise in their meaning.

The term "orthopedically handicapped" is frequently used in a more technical sense to designate this particular group of the total handicapped population in a nation or communit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community attitudes there has been increased effort in recent years to develop public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created by crippling conditions. The attitude of the community, the family, employers, teachers, and others in contact with the disabled influence the extent to which the crippled can participate in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which they are a part. Progress is now being made to integrate the crippled in society as productive persons, rather than to segregate them because of disability) 라고 기재

되어 있다. (The Disabled) 난에는 See,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라고 하고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The terms "Chronic illness" and "Physical disability" encompass a wide variety of specific diseases and disabling conditions brought together by three circumstances: (1) the long-continued nature of the condition, (2) the resulting impairment of functional capacity to perform tasks considered normal for the individual affected, and (3) the requirement of either therapeutic or care services extending over prolonged periods of time - Various definitions of chronic illness are used for various purposes,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chronic illness, all impairments or deviations from normal that hav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permanency, residual disability, caused by non-reversible pathology, require specialized training of the patient for rehabilitation, and may be expected to require long periods of supervision, observation, or care

2. Clinical diagnostic definitions dealing with specific physical impairments use common medical classification. These

include orthopedic impairments resulting from damage to the skeletal system, cardiovascular, respiratory, neuromuscular impairments, vision and hearing defects, mental illness or deficiency, and others.

3. According to Fianz Goldman, any condition requiring hospitalization for longer than 30, 60, or 90 days.

4. The National Health Survey (U.S Public Health Service) regards chronic disease as illness or impairment that represents a departure from physical or mental well - being and that persists for more than three months or for a long indefinite time. It lists twenty - six conditions, including heart disease, tuberculosis, high blood pressure, stomach ulcers mental disorder, and so on, plus a catch - all category of "any other illness that last more than three months." It uses disability, which it considers a more general term than chronic illness, to describe any temporary or long - term

reduction of a person's activity as a result of illness

5. Social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disease define chronic illness in various ways. Thus handicaps, regardless of origin, that obstruct an individual's ability to work and that can be overcome by present method are of special interest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all losses due to the work - sustained injury are the focus of workmen's compensation programs; impairments that disrupt personal or family functioning (other than vocational) are the interest of public assistance agencies and family service agencies; the Old -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defines a disabled worker as one unable to engage in any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and whose impairment has lasted for at least six months a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long and indefinite time. The worker need not be completely helpless or confined to his home.

These definitions indicate the complex and fragmented character of the subject responsibility has been dispersed across an extraordinarily diverse range of agencies and professions contemporary approaches have attempted to bring these details together as part of a more comprehensive subject, disability in society, by considering chronic illness, the resulting impairment, and disability as elements in a syndrome. Impairment due to disease is any failure of the adaptive mechanisms of an organism to counteract the stimuli or stress to which it is subject, resulting in a disturbance of function or structure of any part organ, or system of the body. Disability, on the other hand, comprises the functional limitation encountered by the individual seeking to utilize his available capacities in normal activity. Disability may involve the psychological state of individuals with impairment or disease, the readiness of families to accept impaired members, the readiness of employers to provide work opportunities, and the readiness of society to provide a functional place for impaired individuals. With this approach,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in-

dividuals with impairment due to illness or injury but fully capable of functioning, from those with similar impairments but incapable of functioning in their social roles because of psychological, family, economic, or social blocks.

Scope of Disability.

Comprehensive estimates of chronic disease or disability are limited by the lack of uniform definitions, the absence of any comprehensive reporting system for the conditions comprising the subject, the variations in diagnostic and care facilities in various areas, and the tendency to report specific disease conditions such as orthopedic handicaps, visual impairment, congenital birth defects which obscure the fact that many individuals suffer from multiple impairments.

However the extent to which disability has invaded modern life is seen in specialized data.

The national health survey estimates that in 1962, 74 million person in the united states had one or more chronic conditions, and that one in four of these, or 19 million, were limited in their activities to some extent over four million so severely they could not carry on their major activity.

The survey estimates that there are 41 persons per 100 in the total population with one or more of 26 chronic conditions; and 11 persons per 100 with functional capacity acutely limited by these chronic conditions. Among the latter, 3.8 persons per 1,000 in the total population require constant care and 2.8 per 1,000 require part-time care.

Using diagnostic measures, the national health survey estimates that in 1962. 2,600,000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suffered from chronic cardiac disease 2,400,000 from arthritic and rheumatic diseases, 395,000 had a measureable hearing loss, 1,026,000 had measureable visual impairments, and 1,350,000 had disabling impairments, due to either mental or nervous conditions.

There are about 350,000 totally blind persons, using the standard definition of blindness. Approximately 540,000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have conditions which cause

major limitations, 17 percent with paralysis or impairment of the lower extremities. Approximately 3,350,000 persons, or 4 percent of all adults and 1.5 percent of all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suffer from orthopedic defects and handicaps.

However defined disability and chronic illness constitute a major hazard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hazard is especially affected by two major developments: the growth in the number of aged in the population and the rise in accidents and injuries in an industrialized urban society. The number of persons over 65 has increased at twice the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last decade and now constitutes 9 percent of the population as compared with 4 percent in 1900. Compared with the total population, the aged have two and one-half times as many days of restricted activity and over twice as many bed-days in hospitals. Leading ailments causing bed confinement for those over 65 are chronic in character ... heart disease, cerebral damage, arthritis, and hypertension. The rate at which persons require constant home care per 1,000 of the general population is sharply differentiated by age 1.8 per 1,000 for persons under 65 and 24.8 per 1,000 for persons over 65.

Accidents, injuries, and congenital defects are major

contributors to disability in the younger population.

Disabling work injuries have declined somewhat in relative significance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total volume is still very large. In 1960, 82,200 workers sustained permanent disabling injuries at work and an additional 1,854,000 sustained temporarily disabling injuries. These approximately two million work accidents cost an estimated \$ 4 billion annually, including forty million man-days work loss, wages, medical expense, and production loss, if all accidents are considered, over 45 million persons annually suffer injuries which require medical attention and unknown percentage of these lead to extended illness or disability.

Disability is not limited to the adult population. Many children are born each year with congenital birth defects injuries, as many as 7 percent of all live births, according to some sample studies. In 1962, the crippled children's program of the U.S. children's bureau provided treatment or care for 355,000 minor children compared to 214,000 cared in 1950, these annual totals understate the extent of childhood crippling since casereporting and service programs are unevenly distributed among the states.

신체장애자의 장애의 정의가 다양하듯이 그 평가도 못지않게 다양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 (I S S A) 제 14 차 총회에서 제 9 보고

(The problems of harmonising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invalidity)에서 그사정을(the XIII general meeting of the I.S.S.A in London having heard the report by Dr, Rene springer, expert of the I.S.S.A, on the "Unification of the basis for measuring incapacity for work", noted the considerable complexity and cinportance of this problem. In its conclusions it proposed that a working group be estahlished and investigations carried out" with a view to hringing into har-mong the difficult criteria used in the evaluation of invalidity")라고 기술하고 있다.Dr Rene' Springer 보고서는 제 1 절

Basic Concepts in the Assessment of the Consequences of Disabilities에서 As the I.L.O. committee of experts said in 1963, the concebt of physical invalidity alone can hardly be used as the basis for evaluating incapacity for work:

"The conception of physical invalidity itself is ambiguous taking the fitness of a normal man as representing 100, can it be assumed that each function or organ of the human body can be assigned a coefficient corresponding to its importance in the general make-up? Moreover, without entering

into the controversy as to whether any practical basis can be found for measuring the physical invalidity resulting from the loss of a function or organ, and assuming that invalidity can in fact be defined, it is more than doubtful whether the percentages of physical invalidity so doubtful whether the percentages of physical invalidity so obtained would provide a fair evaluation of the economic loss sustained by the disabled person. The same physical infirmities may obviously have very different economic consequences for different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age and occupation In analyzing percentages of physical invalidity, however, such individual factors as age and occupation are entirely disregarded, although these are of cardinal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loss resulting from invalidit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on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lso said, in the same connection; "The physical injury is obviously very different from the economic los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find another basis for compensation for employment accident."

This other conception is that of incapacity for work, which is based on the possibilities of restoration to economic . . .

activity and on the residual work capacity which remains to the disabled person. The consequences of the disability can thus be judged either from the standpoint of a single occupation or a group of occupations (occupational incapacity) or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work and earning income, which depends o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isability, the previous occupation, the age and all the other elements that can affect a person's restoration to productive activity (general incapacity for work). In evaluating incapacity for work account has to be taken of the possibilities of restoration to economic life, the difficulties that may stand in the way of this and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the disability. The evaluation amounts to expressing the economic loss as a percentage reduction in earning capacity, which is done by comparing the wage earned before the disability occurred with that after the event took place. This method would be very simple if the wage did in fact provide a true expression of the normal earning capacity of a worker and were not subject to all sorts of different influences, including that of the employment market, so that the calculation of the true wage applicable is extremely difficult and fact almost impossible.

In order to render the task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evaluation somewhat easier and to avoid need for them to investigate the residual employment possibilities for each individual disability case and thereafter to determine the wage which the person is capable of earning, the degree of incapacity for work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isability. The degree of incapacity for work is thus no longer measured exact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level of wages, but is presumed on the basis of the nature and extent of a disability. According to this method, loss or damage of a purely economic nature is estimated on the basis of a medical inquiry.

The inquiry is not the same in the cases of accident insurance, pensions insurance and war victims assistance, even though the concept of incapacity for work appears to be the same in all these cases.) 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제 14 차 총회에서 on the problems of harmonising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invalidity 에서는 그 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A. PRINCIPLES

1. The most valid basic ele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it is common to all men under all circumstances, is to be found in the evaluation of the loss of physical functions affecting the usual private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2. This evaluation should be determined on objective bases, acceptable to each country

3. It is desirable that such evalu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apacity to carry out:

(a) Work both of a general and specific character:

(b) personal activities, such as the capacity to carry out without outside help the usual activities or to react normally to outside influences;

(c) Social activities such as the capacity to maintain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and to participate actively or passively in social activities.

4.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also play a role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an infirmity on residual working capac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age, sex and the possibiliti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B. METHODS

1. The methods of evaluation of invalidity may differ

according to national schemes an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applied within schemes of reparation of anatomical-functional loss, or within schemes of compensation for loss of earnings.

2. In all cases the first necessity is to ascertain the extent of the physical incapacity. This is a purely medical problem which includes, in addition to an exact ascertainment of the existing lesions, an appraisal of the their influence upon the physiological functions and private life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로기준법제(1968년현재)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신 체 장 해 등 급 표

장애 등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양안이 실명한것 2、저작 및 언어의 기능이 폐하여 진것 3、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서 늘상 개호를 요하는것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늘상 개호를 요하는것 5、반신불수가 된것 6、양상지의 주관절이상에서 없어진것 7、양상지의 용이 전폐된것 8、양상지의 슬관절이상에서 없어진것 9、양하지의 용이 전폐된것
제 2 급	1、1안이 실명하고 타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것 2、양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것 3、양상지를 완관절이상에서 없어진것 4、양하지를 족관절이상에서 없어진것
제 3 급	1、1안이 실명하고 타안이 0.06 이하가 된것 2、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폐한것 3、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것

등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4.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종신노무에 복무할 수 없는것 5. 1. 10지를 상실한것 1. 양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것 2. 저작 및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3. 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에 인하여 양이가 전혀 못배된것 4. 1 상지의 주관절이상에서 상실된것 5. 1 하지의 슬관절이상에서 상실된것 6. 10지의 용이 제한것 7. 양쪽을 리스프한 관절이상에서 상실된것
제 5 급	1. 1 안이 상실하고, 타안의 시력이 0.1 이하의 것 2. 1 상지의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것 3. 1 하지의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것 4. 1 상지의 용이 전폐된것 5. 1 하지의 용이 전폐된것 6. 10지를 상실한것
제 6 급	1. 양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것 2. 저작이나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에 인하여 양이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면 대성을 해득할 수 없는것 4. 배주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남긴것 5. 1 상지의 3 대관절중의 2 대관절의 용이 제한것 6. 1 하지의 3 대관절중의 2 대관절의 용이 제한것

장애 등급	신 체 장 해
제 7 급	7、1 수의 5 지나 무 지 및 시지를 합하여 4 지를 상실한것 1、1 안이 실명하고 타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것 2、고막의 중등도의 결손、기타에 인하여 양이의 청력이 40cm 이상에서는 보통음성을 해독할수 없는것 3、정신에 장애를 남겨 경이한 노무외에는 복무할 수 없는것 4、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경이한 노무외에는 복무할 수 없는것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남겨 경이한 노무외에는 복무할 수 없는것 6、1 수의 무 지 및 시지를 상실한 것이나、시지를 합하여 3 지이상을 상실한것 7、1 수의 5 지 또는 무 지 및 시지를 합하여 4 지의 용이 폐하게 된것 8、1 쪽의 리스프란관절이상인 상실된것 9、1 상지에 가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10、1 하지에 가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11、10 지의 용을 폐한것 12、여자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긴 것 13、양측의 고환을 상실한것
제 8 급	1、1 안이 실명하거나 1 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것 2、배주에 운동장애를 남긴것

장 해 등 급	신 체 장 해
제 9 급	3、1 수의 무지를 합하여 2 지를 상실한 것 4、1 수의 무지 및 시지나 무지 또는 시지를 합하여 3 지이상의 용이 폐한 것 5、1 하지를 5cm 이상 단축한 것 6、1 상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의 용을 폐한 것 7、1 하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의 용을 폐한 것 8、1 상지에 가관절을 남긴 것 9、1 하지에 가관절을 남긴 것 10、1 족의 5 지를 상실한 것 11、비장 또는 1 개의 신장을 상실한 것 1、양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것 2、1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것 3、양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것 4、양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것 5、코를 결손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것 6、저작 및 언어기능에 장애를 남긴 것 7、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에 인하여 1 이가 전혀 농폐된 것 8、1 수의 무지를 상실한 것이나 시지를 합하여 2 지를 상실한 것 또한 무지와 시지 이외의 3 지를 상실한 것 9、1 수의 무지를 합하여 2 지의 용이 폐한 것 10、1 족의 제 1 지를 합하여 2 지이상을 상실한 것 11、1 족의 5 지의 용이 폐한 것

등급	장애
	신 체 장 해
제 10 급	12、생식기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13、정신에 장애를 남겨 복무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것 14、정신계통의 기능에 장애를 남겨 복무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것 1、1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것 2、저작 또는 언어기능에 장애를 남기는것 3、14치이상에 대하여 보철을 가한 것 4、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1이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으면 대성을 획득하지 못하는것 5、1수의 시지를 상실한 것이나 무지 및 시지이외의 2지를 상실한것 6、1수의 무지의 용을 폐하거나 시지를 합하여 2지의 용을 폐한 것 또는 무지 및 시지이외의 3지의 용을 폐한것 7、1하지를 3cm 이상 단축한 것 8、1족의 제1지 또는 타의 4지를 상실한것 9、1상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기는것 10、1하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것
제 11 급	1、양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운동장애를 남긴것 2、양안의 안점에 현저한 운동장애를 남긴것

장 해 등 급	신 체 장 해
	3、1 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것 4、고막의 중등도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1 이의 청력이 40cm 이상에서는 보통의 어성을 해독하지 못하는것 5、배주에 기형을 남기는것 6、1 수의 중지 또는 환지를 상실한것 7、1 수의 시지의 용이 폐한것 또는 무지 및 시지 이외의 2 지의 용이 폐한것 8、1 족의 제 1 지를 합하여 2 지이상의 용이 폐한것 9、흉복부장기에 장애를 남긴것
제 12 급	1、1 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운동장애를 남긴것 2、1 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애를 남긴것 3、7 치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것 4、1 이의 이각의 대부분을 결손한것 5、해골、흉골、늑골、전압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을 남긴것 6、1 상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의 기능에 장애를 남긴것 7、1 하지의 3 대관절중의 1 관절의 기능에 장애를 남긴것 8、장관골에 기형을 남긴것 9、1 수의 중지 또는 환지의 용을 폐한것 10、1 족의 제 2 지를 상실한것、제 2 지를 합하여 2 지

장해 등급	신 체 장 해
제 13 급	를 상실한 것 또는 제 3 지이하의 3 지를 상실한것 11、1 족의 제 1 지 또는 타의 4 지의 용을 폐한것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남긴것 13、남자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긴것 14、여자의 외모에 추상을 남긴것 1、1 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것 2、1 안이 반맹증、시야 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것 3、양안의 안점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고、또는 첩모독을 남긴것 4、1 수의 시지를 상실한것 5、1 수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것 6、1 수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것 7、1 수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게 된것 8、1 하지가 1cm 이상 단축된것 9、1 족의 제 3 지이하의 1 지 또는 2 지를 상실한것 10、1 족의 제 2 지의 용이 폐한것 제 2 지를 한하여 2 지의 용이 폐한것 또는 제 3 지이하 제 3 지의 용이 폐한것
제 14 급	1、1 안의 안점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첩모독을 남기는것 2、3 치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것 3、상지의 노출면에 수장면대의 추상을 남긴것 4、하지의 노출면에 수장면대의 추상을 남긴것 5、1 수의 소지의 용을 폐한것

등급	신 체 장 해
	6、1수의 무지 및 시지이외의 지끝의 일부를 상실한 것 7、1수의 무지 및 시지 이외의 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것 8、1족의 제3지이하의 1지 또는 2지의 용을 폐한 것 9、국부의 신경증상을 남기는것 10、남자의 외모에 추상을 남긴것

비고

- 1、시력의 측정은 만국식시력표에 의함
굴절이상인 자에 대하여서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 2、지를 상실하였다 함은 무지는 지관절 기타지는 제1관절이상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 3、지의 용을 폐한 것이라 함은 지의 ~~무~~절의 반분이상을 상실하거나 장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말지에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 4、지를 상실한 것이라 함은 그 전부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 5、지의 용을 폐하였다함은 제1지는 말절의 반이상, 기타지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것 또는 ~~척~~지관절 혹은 제1지관절(제1지에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를 남긴 것을 말한다。

일본에 있어서는 화재보상에 대하여서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위의 장애분류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후생연금보험법제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제에서의 폐질연금에서는 3개급으로 분류하고 시력의 경우를 예시하면 제 1급은 양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한 것 제 2급은 0.04 이하 제 3급은 0.1 이하로 되어 있어 제 1급 제 2급 제 3급은 각각 공무원공제 폐질연금의 제 2급 제 4급 제 6급 정도이며 내용도 포괄단순하고 생식기능이라든가 용모의 추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질일시금에 상당한 폐질은 등급은 없고 시력의 경과 양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감퇴된 것이라는 정도로 장애의 평가도 22 등항목에 고치고 있다. 국민연금법제의 경우는 장애를 2등급으로 나누고 시력을 예시하면 제 1급은 양안의 시력의 화가 0.04 이하인것 제 2급은 0.08 이하로 되어 있고 장애평가는 제 1급이 11 종목 제 2급이 17 종목이며 구조적 색채가 능후하며 질병의 장기 안정치로나 중증환자의 치급을 규정한 것은 유의할 점이다.

국민연금법제의 장애의 평가는 국민연금장애분류표와 같다.

국민연금장애분류

(1968 년 현재)

제 1 급 장애		제 2 급 장애	
1	양안의 시력의 화가 0.04 이하의 것	1	양안의 시력의 화가 0.05 이상 0.08 이하의 것
2	양안의 청력손실이 90 데시벨이상의 것	2	양안의 청력손실이 80 데시 벨 이상의 것
		3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것
		4	저작의 기능을 결손한 것
		5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 한 장애가 있는것
		6	양상지의 무지 및 시지 또 는 중지를 결손한 것
		7	양상지의 무지 및 시지 또는 중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가 있는것

제 1 급 장해		제 2 급 장해	
3	양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것	8	1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것
4	양상지의 전지가 없는것	9	1상지의 전지가 없는것
5	양상지의 전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것	10	1상지의 전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것
		11	양하지의 전지가 없는 것
6	양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것	12	1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것
7	양하지의 족관절이상이 없는것	13	1하지의 족관절이상이 없는 것
8	체간의 기능에 좌정하거나 일어설수 없는 정도	14	체간의 기능에 보행할 수 없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것

제 1 급 장 해		제 2 급 장 해	
	의 장애가 있는것	15	전각호에 제기한 것 외에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에 거치는 안정이 필요한 병상이 전각호와 같은 정도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것
9	전각호에 제기한 것 외에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장기에 거치는 안정이 필요한 병상이 전각호와 같은 정도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의 용을 변함이 불능할 정도의 것		
10	제 2 급의 16 호와 동문	16	정신의 장애로서 전각호와 동정도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11	제 2 급의 17 호와 동문	17	신체의 기능의 장애 또는 병상 혹은 정신의 장애가 중복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전각호와 동정도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비고) [의 교정시력 만국식 시력표]

일본의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법제에서는<신체상의 결함의 범위>로서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법 장애분류

(1968 년 현재)

항 목	장 해 자
1	다음에 계기한 시력장애로서 영속적인 자 가. 양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의 자 (만국식시시력표에 의함 굴절 이상은 교정시력에 의함) 나. 1안의 시력이 0.07 이하의 자 다. 양안의 시야가 각각 10 도 이내의 자 라. 양안에 의한 시야가 2분지 1 이상 결여된 자
2	다음에 계기한 청각 또는 평형기능의 장애로서 영속적인 자 가. 양이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이상의 자 나. 1이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의 자 다. 양이에 의한 보통활성의 최량 명료도가 50% 이하의 자 라. 평형기능의 현저한 장애 자
3	음성기능 언어기능 또는 저작기능의 현저한 장애로서 영속적인 자

4	다음에 계기한 지체부자유자가 1상지 1하지 또는 체간의 기능의 현저한 장애로서 영속적인 자 나. 1상지의 무지를 지관관절이상에서 결손한 자 시지를 합하여 1상지의 2지이상을 각각 제1지관관절이상에서 결손한 자 또는 1상지의 시지의 지중수골관절에서 결손한 자。 다. 1하지의 제1지를 지중족골관절에서 결손한 자 라. 1상지의 무지의 기능의 현저한 장애 또는 시지를 합하여 1상지의 3지이상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영속적인 자 마. 1하지의 전지의 기능을 상실한 자
5	전각호에 계기한 외에 취직에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결함자

이 일본의 고용촉진법제는 이미 말한바 있는 일본의 신체장애자 복지법제의 장애분류와도 흡사한 점이 많다.

일본의 우생보호법제에서는 <유전성신체질환 유전성기형>이라고 그 대성장애를 정하고 현저한 유전성신체질환에는 한진돈씨 무도병 유전성배수성운동실조증 유전성소뇌성운동실조증 신경성진행성근위축증 진행성 근성근영양장애증 근긴장병 선천성근긴장소실증 선천성

연골발골장해 백아 어린선 다발성연성신경섬유종 결절성경화증
선천성표피수포증 선천성불위린니증 선천성수장족질 각화증 유전성시
신 경위축증 망막색소변성전색맹 선천성안구진온 청색공막 유전성난청
혈반병을 열거하고 강도의 유전성기형에는 열수 열족 선천성골절
손증등과 기타 나환자가 지정되어 있다。

일본의 장해에 대한 평가태도를 보면 손해보상적성격을 면화
해보상장해평가방식과 생활내의 지급이나 보충을 위한 연금식장해
평가방식 가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장해자경생적장해평가방식과
우생적견지에서 보는 장해평가방식이 있는 것 같다。(물론 이
외에도 사족같지만 민사법 형사법이나 기타 법제에서의 경우는 또
한 그나름대로의 견지에서 법률행위능력이나 형사책임능력의 안점
에서 능약자(민사는 맹자 포함)를 장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는 문제시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러나 동서양제국의 제도나 국제기구의 움직임을 보면 생활장애
와 가독장애에 의한 평가방식에 접근하여가고 이 두방식을 동일
선상에서 종합하려는 노력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 사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점도있다。 특히 선원보험이나 항공보험으로 인하여
접근 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종합이 국제간의 협조관계로 난
치한 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시책의 직접 목적에 의하여 기준을
실정에 맞게 분립시키는 것도 정책의 타당성 유지를 위하여 장
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9월 26일 공포 실시한 법률제 256
호 전물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의 제 4조(상이군경의 정의)에
서 장애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한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쪽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또는 얼굴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양쪽 귀의 청력이 귀바귀에 접하지 않는한 대성을 획득치 못하게 된 자.
 5. 척추에 심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받은 자
 6. 한쪽 상지중 완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중 5 가지 이상을 잃은 자.
 7. 한쪽 상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양쪽 손가락중 5 지의 기능을 잃은 자
 8. 한쪽 하지중 발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쪽 발가락중 5 지 이상을 잃은 자
 9. 한쪽 하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11.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 동법에 의한 상이군경장애 평가는 동법시행령 별표에 게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상 이 군 경 등 급 기 준 표

등 급	신 체 상 이 별
1 급	1 . 양안 이 실명 된 자 2 . 저작 과 언어 의 기능 을 모두 잃은 자 3 . 정신 또는 신경 에 심한 장애 를 받아 상시 개호 를 요 하는 자 4 . 흉복 부장 기의 기능 에 심한 장애 를 받아 상시 개호 를 요 하는 자 5 . 반신 불수 가 된 자 6 . 양상 지의 기능 을 잃은 자 7 . 양하 지의 기능 을 잃은 자 8 . 생식 기 결손 으로 인 하여 기능 을 완전히 상실 한 자 9 . 2 지 이상 을 작업 대관 절 이상 에서 상실 한 자
2 급	1 . 저작 또는 언어 의 기능 을 잃은 자 2 . 양의 청력 을 잃은 자 3 . 양하 지의 기능 을 슬관 절 이하 에서 잃은 자 4 . 양상 지의 기능 을 주관 절 이하 에서 잃은 자 5 . 1 안 이 실명 되고 타안 의 시력 이 0.1 이하 로 된 자 6 . 골반 골척 추골 장애 자로서 상이 가 빈번 히 재발 하여 기동 능력 을 완전히 상실 한 자 7 . 1 하 지를 주관 절 이하 에서 상실 한 자 8 . 1 하 지를 슬관 절 이상 에서 상실 한 자

등 급	신 체 상 이 별
	9 . 10 지를 상실하였거나 그 기능을 잃은 자 10 . 1 상지의 기능을 잃은 자 11 . 1 상지의 기능을 잃은 자 12 . 이목구비부의 외각이 2 개 처이상 결손되었거나 심히 기형이 된 자
3 급	1 . 척추가 심히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의 장애를 받은자 2 . 1 상지를 주관절의 하부에서 상실한 자 3 . 1 하지를 슬관절이 하부에서 상실한자 4 . 10 지를 상실하였거나 그 기능을 잃은 자 5 .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자 6 . 양이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는 한 대성을 분간못하는자 7 . 1 수의 오지 또는 양수의 무지를 모두 상실한자 8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를 받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 9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받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 10 . 1 안이 실명된 자 11 . 안모에 심한 추형울 일으킨 자 12 . 1 상지의 3 대관절중 1 관절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등 급	신 체 상 이 별
	13. 1 하지의 3대 관절중 1관절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4. 1 하지가 3cm 이상 단축된 자 15. 10 지중 5 지이상을 상실하였거나 그 기능을 잃은 자 16. 1 상지의 가관절을 남긴 자 17. 1 하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18. 10 지중 5 지이상을 상실한 자 19. 양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 변상을 남긴 자
<비고> 본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이 또는 2개 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중복된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정도에 상당하는 급에 준한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신체장애 평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 표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등급표

제 1 급	1、두눈이 실명한 자 2、저작 및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반신불수가된 자 6、양 상자를 주관절 이상 상실한 자 7、양 상지의 용이 전폐된 자 8、양 하지를 슬관절 이상 상실한 자 9、양 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제 2 급	1、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두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된 자 3、양 상지를 완관절 이상 상실된 자 4、양 하지를 족관절 이상 상실된 자
제 3 급	1、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되는 자 2、두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정신의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된 자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된 자 5、10 손가락을 상실한 자

제 4 급

- 1、두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된 자
- 2、저작 및 언어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 3、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에 인하여 두 귀의 기능이 전폐된 자
- 4、한 상지를 주관절 이상 상실된 자
- 5、한하지를 슬관절 이상 상실된 자
- 6、10 손가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자
- 7、양 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된 자

제 5 급

- 1、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1 이하로된 자
- 2、한 상지를 외관절 이상 상실한 자
- 3、한 하지를 족관절 이상 상실한 자
- 4、한 하지의 용의 전폐된 자
- 5、한 상지의 용의 전폐된 자
- 6、10 발가락을 상실한 자

제 6 급

- 1、두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 2、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으면 대성을 해득하지 못하게된 자
- 4、척추가 현저히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의 장애를 입은 자
- 5、한상지의 3 대관절중의 2 관절을 쓰지 못하게된 자
- 6、한하지의 3 대관절중의 2 관절을 못쓰게된 자
- 7、한 손의 5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4 손가락을 잃은 자

제 7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 기타에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에서의 보통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된 자
3. 정신의 장애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된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된 자
5. 한손에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세손가락 이상을 잃은 자
6. 한손에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네손가락의 용이 폐하게된 자
7. 한쪽 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8. 열발가락의 쓸모가 없게된 자
9. 여자로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0. 양쪽고환을 잃은 자

제 8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또는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애를 입은 자
3.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된 자
4.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합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자
5. 한손에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나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세가락이상이 쓸모가 없게 된 자

6、한하지가 5 센티미터이상 짧게된 자

7、한상지의 세관절중 한관절이 못쓰게된 자

8、한하지의 세관절중 한관절이 못쓰게된 자

9、한상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10、한하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11、한발의 다섯 발가락을 잃은 자

12、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자

제 9 급

1、두눈의 시력이 0.6 이하로된 자

2、한눈의 시력이 0.6 이하로된 자

3、양눈에 반맹증 시약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4、두눈에 눈꺼풀에 현저히 결손을 남긴 자

5、코를 결손하고 그 기능에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6、저작 및 언어에 장애를 입은 자

7、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한쪽 귀의 기능을 전폐하게된 자

8、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자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두손가락을 잃은 자 또는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이외의 세손가락을 잃은 자

9、한손에 엄지손가락을 합하여 두손가락을 못쓰게된 자

10、한 발의 제 1 지를 합하여 두발가락 이상을 잃은 자

제 10 급	11、한 다리의 다섯 발가락을 못쓰게된 자
	12、생식기에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1、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된 자
	2、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를 입은 자
	3、14 치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조를 가한 자
	4、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한 쪽의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5、한 손에 집게손가락을 잃은 자 또는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자
	6、한 손에 엄지손가락이 못쓰게된 자 집게손가락을 합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 및 집게손가락 이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자
	7、한하지가 3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8、한발의 제 1 지 또는 다른 네 발가락을 잃은 자
	9、한상지의 세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10、한하지의 세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를 입은 자

이와 같은 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재적손해보상법제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 예는 교통부직원재해보상규정(1958년) 등에서 볼수 있고 선원법 등 그 예를 같이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서는 1960년에 창설 당시는 폐질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폐 질 의 기 준

- 1、한눈 또는 두눈이 실명된 자
- 2、반신불수가된 자
- 3、생식기능이 전폐된 자
- 4、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어 취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6、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입어 취업 능력이 상실된 자
- 7、고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귀의 기능이 전폐된 자
- 8、두발의 『리스후량』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9、열손가락을 상실한 자
- 10、두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 자
- 11、척추가 현저히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의 장애를 입은 자
- 12、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 이상을 상실하였거나 1관절 이상의 기능이 전폐된 자
- 13、한발의 3대관절중 1관절 이상을 상실하였거나 2관절 이상의 기능이 전폐된 자

14. 한 손의 5지 또는 양손중 모지와 시지를 합하여 4지를 상실한 자

15.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업무관장기관의 장이 전 각항과 동일한 정도의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 폐질 요하는 자 또는 종신노무에 종사할수 없게된 자

8.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어 상시 개호를 요하는 자 또는 종신노무에 종사할수 없게된 자라고 규정하고 폐질년금의 대상이 되는 폐질상태는 다음 표와 같이 하였다。

공무원연금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폐질의 정도	폐 질 상 태
제 1 급	1、양안의 시력이 0.02 로 감퇴된 자 2、양상지의 용이 전폐된 자 3、양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4、양상지의 늑관절이상을 상실한 자 5、양하지의 슬관절이상을 상실한 자 6、반신불수가 된 자 7、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상시 개호를 요하는 자 8、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어 상시 개호를 요하는 자 9、저작 및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고막의 손괴 기타에 의하여 청력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 급	1、양안의 시력이 0.04 이하로 감퇴된 자 2、1 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타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퇴된 자 3、생식기능이 전폐된 자 4、고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이의 청력이 보청기에 의하여 이각에 접하지 않으면 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자 5、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6、10 지의 용이 전폐된 자 7、1 상지의 늑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

폐질의 정도	폐 질 상 태
제 3 급	8、1 하지의 슬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 9、1 상지의 용이 전폐된 자 10、1 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11、양하지의 리스후랑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12、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된 자 13、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14、척주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입은 자 1、1 안이 실명하고 타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시각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양이의 청력이 40 cm 이상의 보통 어성을 이해치 못하게 된 자 4、척주가 현저한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의 장애를 입은 자 5、1 상지의 3대관절중 1관절이상의 용이 전폐된 자 6、1 하지의 3대관절중 1관절이상의 용이 전폐된 자 7、1수의 5지 또는 무지 및 시지를 합하여 4지의 용이 전폐된 자 8、1 하지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 9、10 지의 용이 전폐된 자

폐질의정도	폐 질 상 내
	10、정신장해를 입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 11、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입어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 12、1수의 무지나 시지를 합하여 3지 이상을 상실한 자 13、여자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4、양측의 고환을 상실한 자 15、장관상골에 가관절이 생겨 운동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기 타 기다 전각급 각항과 동등한 정도의 폐질상태로서 총무처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각급 각항에 준하여 폐질상태의 정도를 구분한다。

그런데 1962년 법률제 1230호로서 제도 시행된 군사원호보상법에는 상이군경 상이구분을 <간호대상자> 12 항목, <취업불능자> 24 항목, <취업가능자> 53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상이군경상이구분표

구 분	분 류 번 호	신 체 상 이 별
간	1	양안이 실명된 자
호	3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구 분	분 류 번 호	신 체 상 이 별
대 상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 호를 요하는 자
	6.	4 지의 상실 또는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 능이 전폐된 자
	7.	3 지의 상실 또는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8.	양상지가 늑관절이상 상실된 자
	9.	양하지가 슬관절이상 상실된 자
	10.	양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11.	양하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63.	10 지 및 편지가 족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
	66.	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 는 자
	68.	편상하지 공히 상단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능한 자
	2.	언성기관 및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취 업	5.	반신불수가 된 자 (좌우반신)
	13.	양상지가 완관절이상 상실된 자
	14.	양하지가 족관절이상 상실된 자
	15.	1 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06 이하 또는 양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자 (교정시력)
	17.	교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양안의 기능이 전폐된 자

구분	분류 번호	신 체 상 이 별
불 능	18.	언성기관 및 음식물 씹는 기관의 사용력이 상실된 자
	19.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 노무 에 종사불능한 자
	22.	1 상하지 상실 또는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3.	양하지의 족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4.	양상지의 완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7.	10 지의 상실 또는 그 사용이 전폐된 자
	31.	편하지를 슬관절이상 상실하고 환부의 심한 상흔 단 축 또는 늑관절의 경직으로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33.	뇌골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72.	1 상지의 수장부 이상이 상실되고 편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자	78.	1 상지가 완관절이상 상실되고 1 하지의 사용이 전폐 된 자
	79.	양하지중 1 족부 및 편하지가 슬관절이상 각각 상실 된 자
	81.	양족부 및 편상지가 완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
	82.	외안에 현저한 추상을 남기고 양외이 및 비가 변형 또는 상실된 자
	83.	소골, 미골 및 전척추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전만된 자
	8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부전이 있는 자

구 분	분 류 번 호	신 체 상 이 별
취 업 가 능 자	86.	편하지가 족관절이상 상실되고 편하지의 슬 및 늑관 절이 경직된 자
	89.	편하지가 사용이 전폐되고 동측좌골 또는 신경의 손 상으로 정상 좌위가 불가능한 자
	12.	생식기의 그 기능이 전폐된 자
	16.	편상지의 늑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 또는 신 경이 마비된 자
	21.	1 상하지의 3 대관절중 각 1 관절에서 상실된 자
	25.	1 상지가 늑관절이상 상실된 자
	26.	1 하지가 슬관절이상 상실된 자
	28.	1 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29.	1 하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30.	편하지 슬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 또는 신경 이 마비된 자
	32.	전척주가 경직된 자
	34.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지장을 받는 자
	35.	1 상지의 완관절이상 상실된 자、또는 그 사용이 전 폐된 자
	36.	1 하지의 족관절이상 상실된 자、또는 그 사용이 전 폐된 자
	37.	10 지가 상실된 자
	38.	교막의 전부가 파열 및 기타로 인하여 양이의 기능 이 0.1 m 이상에서 대화불가능한 자

구분	분류 번호	신 체 상 이 별
취 업 가	39.	1 상지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사용이 전폐된 자
	40.	1 하지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사용이 전폐된 자
	41.	양쪽부가 상실된 자
	4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경노무가 가능한 자
	43.	흉복부 장기의 결손으로 경노무가 가능한 자
	44.	신경에 장애를 주어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치 못하게된 자
	45.	1 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3 이하인 자 (교정시력)
	46.	양안중 1 안시력이 0.06 이하 및 타안시력이 0.1 인 자
	47.	1 수장부 또는 족부가 상실된 자
	48.	1 수 5 지 또는 무지 및 시지를 합하여 4 지가 상 실된 자
능 자	49.	1 수장부 또는 족부기능이 상실된 자
	50.	10 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51.	1 안이 실명된 자
	52.	1 상지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이 전폐된 자
	53.	1 하지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이 실된 자
	54.	1 하지 또는 상지가 5 cm 이상이 단축된 자
	55.	언어의 장애를 입은 자
	56.	양안의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57.	10 지중 5 지이상 상실 또는 경직된 자
	58.	양무지가 상실된 자

구 분	분 류 번 호	신 체 상 이 별
취 업	59.	1 상지 또는 하지에 가관절을 남긴 자
	60.	10 지중 5 지이상 상실된 자
가	61.	양안의 안점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자
	62.	외비의 결손으로 그 사용이 전폐된 자
능	64.	1 수 5 지가 기능이 상실된 자
	65.	1 족의 5 지가 기능이 상실된 자
자	67.	1 하지가 3 cm 이상이 단축된 자
	69.	양상지의 늑관절이 135 도이상 굴절이 불가능한 자
	70.	양하지의 슬관절이 135 도이하 굴절이 불가능한 자
	71.	조골 6 본이상이 제거된 자
	74.	1 수무지를 합하여 3 지가 상실된 자
	75.	1 수시지를 합하여 3 지가 상실된 자
	76.	음성이 소음하여 40 cm 이상에서 대화불가능한 자
	77.	요추가 경직된 자
	80.	비장 또는 1 족의 신장이 상실된 자
	85.	양안구가 작용에 곤란을 가져오는 자
	87.	양외이가 상실된 자
	88.	초골, 흉골 및 견골이 경직된 자
	90.	외안에 추상이 많은 자

3. 정신장애자

정신장애자는 일본의 정신위생법에 의하면 정신병자(중독성 정신병자를 포함함) 정신박약자 및 정신병질자로 규정되어 있고, 정신

장애의 판정은 정신위생 감정의의 진찰의 결과에 따르고 있다。
영국의 정신보건법 (Mental Health Act, 1959. Eliz. 2 Ch. 72) 제 4 조에서 (정신질환의 정의 및 분류)를 규정하여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법에서 mental disorder라 함은 정신병, 정신의 정체 또는 불완전한 성장, 정신착란증 및 기타 마음의 혼란 또는 무능력을 의미하고, 따라서 The Mental disordered라 함은 그러한 자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Severe Subnormality라 함은 두뇌의 저능을 포함하여 환자가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거나 중대사에 대하여 자기방위의 능력이 없거나 상당한 연령에 달하여도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질 또는 정도로 정신의 정지 또는 불완전한 성장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Subnormality라 함은 두뇌의 저능을 포함하여 환자의 의학적 치료나 기타 특별한 보호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거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성질 또는 정도의 정신의 정지 또는 불완전한 성장의 상태 (중비정상증에는 달하지 아니하는)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정신착란증 (Psychopathic disorder)라 함은 결과적으로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난폭하거나 심하게 무책임한 행위를 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신의 영구적 착란 또는 무능의 증세 (두뇌의 저능을 포함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불문함)를 의미한다。

본건의 규정은 난혼 또는 부도덕한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본건에 정한 어느 종류의 정신질환에 걸린 것으로 인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우생보호법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하여 유전적 정신병으로서 정신분열증, 조울병, 간질과 유전적 정신박약 현저한 유전성 정신병질로서 현저한 성욕이상, 현저한 범죄경향 등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각각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심신장애자라 하여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다.

J. G. Hall는 Social Welfare and the Citizen에서 정신장애자는 Patients suffering from mental disability or mental disorder라 하고, Mental Deficiency와 Mental illness로 나누고 있다.

Mental Deficiency는 법적규정으로는 『선천적이든 질병에 연유하든 간에 18세이전의 정신적 정체나 불완전 발달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4개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그 4개종류는 Idiots, Imbeciles, Feeble-minded Person, Moral defectives 등이다.

일본의 법무성이 간행한 범죄백서는 정신장애의 의의와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신장애는 정신기능의 장애이며, 신체기능 특히 뇌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장애를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근래의 일로서 학파에 따라 여러 학설이 대립되어, 그 분류에도 차이가 많으나 일반적 분류는

(가) 외인성정신병 및 기질성정신병

(나) 내인성정신병

(다) 정신신체증

(라) 간질

(마) 심인반응

(바) 정신박약

(사) 정신병질

등으로 나누고 있다.

외인성정신병과 기질성정신병에 있어서 외인성정신병은 뇌에 외부로부터 부터의 원인이 부가되는 경우로서 두부외상, 뇌염, 뇌동맥경화증, 뇌종양에 의한 손상이나 변화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특히 뇌의 기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기질성정신병이라 한다. 매독성정신장애가 그것이며 중독성정신병 즉 환각제중독이나, 연중독 등과 열병같은 질병에 의한 것은 증상성정신병이라고도 하고, 노망 같은 것은 노년기정신병 또는 퇴행기정신장애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병의 하나다.

내인성정신병은 생래적소질이나 유전 등에 인한 정신장애로서 협의의 정신병인데 정신병인데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이질이 있음) 등이 그것이다.

정신신체증은 심리적 자극에 의한 정서의 동요, 장애가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특히 소화기계통의 장애가 그 전형에이며 정신장애의 하나로 통상 해석된다.

간질은 뇌과학적으로 봐서 간질이상뇌파를 일으키는 증상인데 외인성, 이질성, 내인성정신장애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요는 간질의 결과로서의 인격변화, 지능저하 등이 문제가 된다.

영국의 경우는 Epilepsy(간질)은 신체장애자로 인정하고 있다.
모두 전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심인반응이나 신경증은 심인성정신장애로서 불안, 공포, 강박관념등
이 주증상이다.

정신박약은 지능수준의 저하상태를 말하며 보통 18세의 정상인 지
능을 표준으로 한다. 정신박약에는 선천성, 조기후천성, 기질성치보
등이 있으며 백치 치우, 노둔 등으로 백치는 언어이해, 의지교환의
불능상태이며, 치우는 지능연령 6~7세 미달상태이고 노둔은 지능
연령 10~12세 정도이다.

이에 대한 Encyclopaedia of Social Work 에는 다음과 같이
설술되어 있다.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is a national problem of major proportions for the health and social factors involved as well as for the cost to individual families and to taxpayers. It respects neither economic status nor geographical location, though there are striking variations in incidence by socio-economic groups and by geographic areas. From the growing body of research the following points stand out:

1. The more severe cases are generally associated with organic defects. In mild retardation, which constitutes the bulk of the cases, specific physical or neurological defects are usually not discernible with present diagnostic techniques.

2. Severely retarded children are spread evenly throughout the population, regardless of the socioeconomic class. The prevalence of children who are mildly retarded is heavily concentrated among parents with poor education and low incomes.

3. Mental retardation tends to be heavily associated with lack of or inadequate prenatal care, prematurity, and high infant death rates. Women who do not have prenatal care give birth to their children prematurely about three times as often as women who receive adequate prenatal care. Very small premature babies are nearly ten times more likely to be mentally retarded than fullterm infants in the normal weight range.

A study in Chicago made in 1952 showed that in the slums, infants mortality rates were three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best socioeconomic section of the city during the second through the twelfth month of life. In 1960 the infant mortality rate in the United States averaged 26 per 1,000 live births; but the state with the poorest record had a rate of 41.6, twice the rate of the state with the best record, i. e., 19.6.

Since mental retardation is a relative concept, depending on the prevailing educational and cultural standards, there is no completely satisfactory measure for it. Current usage favors measurement based on the intelligence quotient and the adaptive behavior of the individual. The four groupings of old classifications of imbecile, idiot, and moron, are profound, severe, moderate, and mild. These cover the wide range of individuals from those who give no evidence of adaptation to those whose degree of impairment is so minimal that they differ from the so-called normal but very little.

Based on these four categories, those who are considered profoundly retarded (I. Q. below 20) and those designated as severely retarded (I. Q. from about 20 to 35) require constant care and supervision for survival. This category includes the anencephalics (absence of the cerebral cortexes) and the more seriously impaired mongoloids. An estimated sixty to ninety thousand persons, mostly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foundly or severely retarded. More than two hundred

thousand adults and children, largely but not exclusively from the severe and profoundly retarded groups, are cared for at an annual cost of approximately \$300 million in residential institutions, most of which are under public auspices.

The moderately retarded (I. Q. from about 35-50) numbering from 300,000 to 350,000, are capable of developing skills adequate for self protection and semi-productive activity. The mildly retarded, (I. Q. from about 50-70), comprising the largest portion of the group estimated at five million, are frequently not distinguishable from normal individuals until school age when they are often identified by their inability to master ordinary school subjects. Without special attention they often become problem members of society, capable only of a marginal productive effort. If, however, they are given early assistance in the learning process, affection, supervision, guidance and wise training, many can become capable of complete and satisfactory assimilation into the community. Approximately \$ 250 million a year is spent by the states for special education, welfare, rehabilitation, and other benefits and services for the mildly retarded and other retarded persons who are not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me years major efforts were made by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Mental Deficiency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tarded Children to settle differences of opinion that existed in the field with regard to definitions of mental retardation.

and in the classification of those who fell within its scope. More recently,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both mental retardation and mental illness, it has been necessary to emphasize the differences as well the relation between them. It is not yet clear to many that the individual with an intellectual deficit may be perfectly healthy in so far as his physical and emotional life is concerned. It is true that some mentally retarded persons are also mentally ill, and that some young children exhibit behavior that makes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termine at that time whether the basis of their problem lies in emotional or organic disturbance (mental illness) or in neurological or intellectual deficit (retardation). The retarded have intellectual deficits that can never be fully compensated, whereas the mentally ill may be restored to reasonably good health under proper conditions and treatment.

As mental retardation is neither an entity nor a disease but, more accurately, a condition or complex of symptoms stemming from many causes, it is impossible to pinpoint research that will illuminate its etiology definitively. There are nearly 100 known or suspected causes of mental retardation, but in relatively few instances can a specific cause or causes be related accurately to a given case. The research attack, therefore, must be as broad in its scope as the condition itself and included both basic and clinical investigation in several disciplines.

PRESIDENT'S PANEL ON METAL RETARDATION

The president's panel on mental retardation was appointed in October 1961. A year later it submitted its report entitled a National program to combat mental retardation, which defined the condition as follows: "The mentally retarded are children and adults who, as a result of inadequately developed intelligence, are significantly impaired in their ability to learn and to adapt to the demands of society. An estimated 3 percent of the population or 5.5 million children and adults in United States are afflicted-some severely, most only mildly. Assuming this rate of prevalence, an estimated 126,000 babies born each year will be regarded as mentally retarded at some time in their lives." Only four disabling conditions mental illness, cardiac disease, arthritis, and cancer-have a higher prevalence; all of these can come in later life, while mental retardation comes early. During world war II approximately 4 percent of the persons examined (716,000) were rejected on grounding of "mental deficiency."

Much more is known about the biomedical background of mental retardation than the socioeconomic factors. The president's panel recommended that priority be given to developing research centers on mental retardation at strategically located universities and at institutions for the retarded noting that "Such centers are needed for work in the biomedical,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in interdisciplinary areas."

The panel suggested that support for the centers should derive fro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from state and private sources as well. I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pecial emphasis on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the panel proposed that an Institute of Learning be established under the feder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 functions of the institute would include the conduct support of fundamental studies of the intellectual processes and investigations in simple and complex learning; it would be a center for stimulation of research throughout the country and for the initiation of program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laboratory findings could be applied to facilitate class room learning.

4. 결 어

장애자의 범위와 대상은 시책의 주안점에 의하여 서로 상이한 것이 세계제국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장애자복지대책이 반드시 분산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데는 의심이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관계시책은 조정되고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반박할 충분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일반 복지정책의 경험에서 유추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자복지시책도 종합적인 견해에서 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복지에 대한 시책의 동향은 생활보호적면, 취업촉진면, 재해보상면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사원호장애복지제도에서는 생활기능과 가동기능을 동일수평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어 기능장애와 장애자복지의 체계화 일원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점은 ISSA 등에서 연구과제로서 복하 추진중임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제보고문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 예증으로 14차 ISSA 총회의 장애평가의 기준 조화문제에 대한 결론의 사칙과 방법을 전제한다.

225 ~ 226

A. Principles

1. The most valid basic ele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it is common to all men under all circumstances is to be found in the evaluation of the loss of physical functions affecting the usual private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2. This evaluation should be determined on objective

bases acceptable to each country.

3 . It is desirable that such evalu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apacity to carry out:

(a) work both of a general and specific character;

(b) Personal activities, such as the capacity to carry out without outside help the usual daily activities or to react normally to outside influences;

(c) Social activities such as the capacity to maintain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and to participate actively or passively in social activities.

4 .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also play a role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an infirmity on residual working capac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age, sex and the possibilitation.

B . Methods

1 . The methods of evaluation of invalidity may differ according to national schemes an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applied within schemes of reparation of anatomical functional loss or within schemes of compensation for loss of earnings.

2 . In all cases the first necessity is to ascertain the extent of the physical incapacity. This is a purely medical problem which includes, in addition to an exact ascertainment of the existint lesions, an appraisal of their influence upon the physiological functions and private life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

제 4 4 장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

이 조사대상가구 1733 가구중 장애자가 있는 가구는 71 가구
있으며 장애자가 2인이 있는 가구는 대전에 1가구, 전주에 1가
구 명주군에 1가구 있었다.

지역별 장애자가 있는 가구수는 표 1 - 1 과 같다. 그러나 이
분포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한 의미있는 수치라고는 믿지 않은
다.

그 이유는 면접요원이 이 방면에 지역별 장애가 있는 가구수

	조 사 대 상 가 구 (A)	장 애 자 가 있 는 가 구 (B)	$\frac{B}{A} \times 100$	비 고
서 울	586	21	3.6 %	
중 소 도 시	450	22	4.9	2인이 있는 가구 2
읍	297	8	2.7	
농 촌	300	12	4.0	
어 촌	100	8	8.0	
계	1,733	71	4.1	2인이 있는 가구 2

특별한 기술을 가졌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는 믿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장애자조사를 위하여서는 너무도 표본의
크기가 적었다고 생각된다.

이 표에서 판단되기는 중소도시에 장애자 가구가 많고 어촌이
단연히 되어나서 장애자가 많다는 것과 농촌도 대도시 보다는 장
애자가 많다는 정도외의 평가는 곤란할 것으로 믿어진다.

장애자의 지역별 분포와 가구주와의 관계 및 성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전체로 보아서 가구주의 자녀가 74 장애자중 43 명이고 다음에 가구주 자신이 15 명이며 가구주의 존속이 7 명 비속등이 배우자 2 명을 포함하여 9 명으로 동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주의 자녀가 장애자가 많다는 공산이다. 성별로는 농촌을 제외하고는 남자장애자의 수가 여자의 그것보다 우세하고 전국적으로 2:1의 비율로 보여진다. 그리고 장애자는 원칙적으로 가구주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장애자의 취업교육과 피면접응답자의 희망시책은 표 1-3 와 표 1-8 과 같다.

장애자의 취업은 중소도시의 극히 일부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업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장애자복지시책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정된다. 장애자의 교육정도는 국졸이 45% 중졸이상 이 24% 나머지 30여%가 문맹으로 인정되고 문맹율은 도면간에 별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지역별 장애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동거하지 않는자의 수

	가구주	자녀	부모	친부모	남매	배우자	기타	계	남	여	동거하지 않는 장애자
서울	2	17			1	1		21	14	7	
중소도시	6	11	3	1	1		2	24	15	9	1
읍	4	2	2					8	5	3	
농촌	1	8	1			1	1	12	5	7	(임원) 1
어촌	2	5			2			9	7	2	
계	15	43	6	1	4	2	3	74	46	28	

장 애 자 의 취 업 교 육 회 망 시 책

표 1-3

	장 애 자 직 업					장 애 자 교 육 정 도							회 망 장 애 자 시 책							
	기 능 제	사 무 제	판 매 제	농 업 단 농 업 어 제	무 제	배 졸	고 졸	중 졸	국 졸	국 한 문 해	MR	계	수 시 응 실	치 시 료 실	개 교 생 육	직 상 공 작	용 자	보 기 장 구 급 타	D.V.N.R	제
서 울				1	20	21	1	5	8	1	6	1	21	1	11	3	1	4	1	21
중 소 도 시	1		1	1	20	24	3	2	8	1	8	24		11	4	3	1	3		24
울					8	8		2	4		2	8	1			4		3		8
농 촌				1	11	12		1	5		4	1	12	2	7	1	1		1	12
어 촌				1	8	9			5		4	9		5		1	1	1		9
계	1		1	3	67	74	3	10	30	2	24	74	4	34	8	10	2	11	1	74

취업상황 (장애자)

① 갱생보도훈련

중소도시..... 1명 기타해당자없음

② 취업시대로

서울~ 1명 - 의논으로 노동에 지장

중소도시~ 2명 - 힘이 모자람

어촌~ 1명 - 활동에 제한을 받음

③ 미취업사유

대부분 연령미달 또는 육체적조건 불충분

응답자는 가구주나 가구의 배우자가 대법분인데 이 사람들의 희망시책은 치료시책희망이 51% 정도이고 취업지원이 46% 정도이며 보장구에 대한 관심은 적다.

보장구의 이편이나 그 지성 또는 장애자 자신의 불편을 몸소 덜 경험하고 국가나 사회에 그치급의 기대를 덜 걸고 있는 탓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역별 장애자와 장애수의 분포는 표 1 - 4와 같다. 장애율이 인구 10만대비로서 시부는 700 군부가 643로 나타나 있다. 장애는 마비가 70%를 점하고 꼽추가 10%정도이다. 장애순위로서는 1.마비 2.꼽추 3.절단 4.정신박약 5.청각이상 6.의논 7.정신병 기타 9.말더듬이다.

표본의 제한으로 특정의 판단은 내리기 곤란하나 정신장애가 꼽추 다음에 가는것은 유의할 일이다.

표 1 - 4

지역별 장애자수

단 위 인
또는 인구 10만대비

지 역	조사가 구원수	장애율	장애 총수	절단	마비	와눈	청각 이상	정신병	정신 박약	말더 듬이	뽀추	기타
서울	3,508	700	21		15	2	1		1		2	
중소도시	2,795		24	2	16		1	1	1	1	1	1
읍	1,989		8	1	6		1					
농촌	1,943	643	12	1	6	1		1	1		1	1
어촌	579		9		4	(1)	1		1		3	
계	10,809	675	74	4	47	(1) 3	4	2	4	1	7	2

주()는 2중장애 표시

장애의 원인과 치료상황은 표 1~5 와 같다. 장애원인에서 사고가 40% 병후가 40%이고 선천적인 것이 20% 미만이다. 따라서 사고적원인이 80%라는 것은 심심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치료상황은 무치료가 30%인데 치료를 하지 않은 사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치료가능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것 같다.

표 1 - 5

장애원인 및 치료

	장 애 원 인					치 료			
	선천적	병 후	사 고	기 타	계	병원	한의원	무	계
서울	6	7	7	1	21	13	2	6	21
중소도시	6	11	5	2	24	18		6	24
읍		4	4		8	6	1	1	8
농촌	2	3	7	1	12	6	1	5	12
어촌	1	3	5		9	5		4	9
계	15	28	28	3	74	38	4	22	74

그 이유는 서울의 경우 장애원인의 선천적인 것이 6명인데 무치료 역시 6명이므로 중소도시 또한 같은 사정이다.

군부는 선천적 3명에 무치료 10명인데 정신장애 3명 꿈추 4명 청각이상 2명 계 9명인 점으로 보면 특별 유고 무치료는 1명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자의 연령별 종교 결혼등의 사정은 표 1-6과 같다. 장애자는 5-14 세간에 43%가 집중하고 20-29 세간에 14% 60 세이상에 1.2%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5-14 세간에 장애자가 집중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종교는 기독교가 12% 불교가 7%이나 원칙적으로 속신자가 많다고 보아야 하겠다. 결혼상황은 20 세이상의 40 명에 관한 문제이겠는데 기혼 18명 사별 4명으로 장애자의 반은 결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장애자의 가구주의 상황은 표 1-7과 같다. 가구주의 직업은 각방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농업계가 28% 정도로 비중이 크며 교육정도는 문맹이 15%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생계정도는 하가 42% 정도이고 상이 8% 정도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교육정도나 직업과 장애와 직결되는 사유는 찾기 어렵고 생계의식은 하가 40% 정도로 보이나 그 실정은 알 길이 없다. 장애자로 인한 가정내문제점은 표 1-9와 같다. 일차적문제점은 가족간갈등이고(50%)이고 경제난이 32%이며 교육등은 등한시되고 있고 2차적으로는 기타가 56%나 되고 있다. 기타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령별 장애자 수 및 종교·결혼

단위:인

지역	연령	0-4	5-9	1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계	종교	결혼
서울		1	5	7	1	2		2	2		21	기독교 2 불교 1	기 3
중소도시			3	6		5	1	3		6	24	기독교 4 불교 3	사별 4 기
읍			1	1				2	2	2	8	기독교 2 불교 1	기 4
농촌			1	4	1		4		1	1	12	기독교 1	기 3
어촌			3			3	1	1	1		9		기 2
계		1	13	18	2	10	6	8	6	9	74		

장애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주의 취업, 교육 생활수준

단위: 인

	가 구 주 지 종						교 육 정 도						생 제 정 도									
	기 능 제	사 무 제	판 매 제	농 업 단 노	무	제	대 학	고 교	중 등	국 교	국 해	한 수	문 맹	N · R	제	상 의 상	상 의 하	중 의 상	중 의 하	하 의 상	하 의 하	제
서 울	7	7	4	-	2	21	2	2	5	10	1	-	1		21	1	1	3	6	4	6	21
중 소 도 시	2	6	7	3	2	24	2	2	4	10	2	2	1	1	24		2	5	11	2	4	24
읍	1			2	5	8			4	4					8			5	1	2	8	
농 촌	1				2	12				1		3	1	7	12			2	3	6	1	12
농 촌			1	6	2	9					6	1		2	9		2	2	1	3	1	9
계	11	13	12	20	14	74	4	4	14	30	7	3	11	1	74	1	5	12	26	16	14	74

그러나 특색은 시부는 가족간 갈등이 문제고 군부는 그 비중이 경제난과 비슷한 데 있다.

표 1 - 9

장애자로인한 가정내 문제

	1 차 적 문 제				2 차 적 문 제			
	가 정 경제난	가 정 간 갈등	교육상	기 타	가 정 경제난	가 족 간 갈등	교육상	기 타
서 울	5	12		4	3	5	1	12
중소도시	4	17	1	2	5	5		14
읍	4	1		3	4	1		3
농 촌	6	5		1	1	4	2	5
어 촌	4	1		4	1	2	1	5
계	23	36	1	14	14	17	4	39

일반가구의 장애자에 대한 시책에 관한 반응은 표 1 - 10 과 같다.

표 1 - 10

심신장애자 복지시책

지역별 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수용시설	85 (14.5)	61 (13.5)	50 (16.8)	69 (23.0)	6 (6.0)
치료시설	253 (43.1)	176 (39.8)	117 (39.4)	126 (42.0)	57 (57.0)
전문교육시설	105 (17.9)	80 (18.1)	40 (13.5)	29 (9.7)	5 (5.0)
직업상담소	20 (3.4)	32 (7.1)	22 (7.4)	18 (6.0)	9 (9.0)
공동작업장	15 (2.6)	20 (4.4)	18 (6.1)	2 (0.7)	6 (6.0)
최저생활보장	69 (11.8)	55 (12.2)	45 (15.2)	44 (14.7)	11 (11.0)
보장구급여	7 (1.2)	9 (2.0)	3 (1.0)	1 (0.3)	4 (4.0)
기타	4 (0.7)	1 (0.2)		1 (0.3)	
모르겠다	13 (2.2)	15 (3.3)	2 (0.7)	7 (2.3)	1 (1.0)
무응답	15 (2.6)	1 (0.2)		3 (1.0)	1 (1.0)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 (100.0)

서울은 치료시설에 대한 요망이 43%로 압도적이고 중소도시는 서울과 같은 경향을 39% 보여주고 있으며 읍소재지는 중소도시와 같은 양과 경향을 보이며 농촌 또한 42% 어촌 57%로 나타나고 기타는 수용교육시설등이 요망되고 있다.

보장구에 대하여는 최대 4%이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집인을 모르겠다.

끝으로 전장애자조사를 정리한 표를 참고로 첨부 하여둔다.

서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일련 번호	가구주와 의 관계	동거 여	년령	종교	결혼 관계	장애자 직업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교육정도	장애자 시책	종류	원인	치료	전문 교육	취업시애로 사항	미취업사유	가정내 I	II	가구총 수	장애자 수	생활정도
101	장녀	0	19	무	미	무	기능공	중등	고등	1	마비	우발사고	병원한약	무	무	불구가사	경제적 곤란으로치료부족	집안분위기 우울	250	무	하의 상
17	가구주남	0	59	"	기동	"	판매종사	초등	초등		중풍(마비)	병후	병원	"	"	불구	분위기 우울	치료비부족	200	"	하의 하
22	장남	0	7	"	미	"	서비스	"	무	1	귀머거리	우발사고	무	"	"	년령미달	식구가신정을써야하므로불편	N, R	100	"	하의 상
35	2남	0	12	"	"	"	판매종사	중등	중등	1	소아마비	"	한약	"	"	년령미달재학	특히 신경쓰	환경이넉넉지 못해 곤란	190	70	중의 상
49	가구주남	0	48	"	기동	단순노동	단순노동	문맹	문맹	5	편안	"	병원	"	한쪽눈이 멀어서노동에지장	"	경제적 곤란	N, R	70	무	하의 하
128	4녀	0	9	천주	미	무	교통체신	중등	초등	1	원팔마비	출생시잘못	무	"	무	년령미달재학	운동에 불 자신	"	250	"	중의 하
144	4남	0	9	무	"	"	공무원	"	"	3	소아마비	모름	병원	"	"	"	열등감많아질까걱정	"	200	"	중의 상
90	장녀	0	2	"	"	"	사무종사	고등	무	1	양쪽다리 소아마비	선천적	"	"	"	년령미달	경제적 부담	앞으로의아이문제 걱정	300	"	중의 하
203	장남	0	14	"	"	"	교통	초등	중등	1	소아마비	병후	병원수술	"	"	년령미달재학	무	무	130	"	"
256	3남	0	5	"	"	"	단순노동	"	무	1	파상품	영아시증세	병원	"	"	년령미달	가정분위기 침울	"	120	"	하의 하
282	2남	0	23	"	"	"	기능	"	중등	2	소아마비	선천적	병원전기 치료	"	"	불구	정신적고된	N, R	180	"	하의 상
296	장남	0	10	"	"	"	기능단순	"	초등	1	소아마비	병후	무	"	"	년령미달재학	경제적곤란치료부족	병실취급받는것	140	"	하의 하
298	제	0	40	기동	"	"	전문	대학	문맹	0	"	선천적	병원	"	"	전신불구	보호자가꼭필요한것	불구자의 용변 식사	1200	"	중의 상
302	3녀	0	22	불	"	"	제조업	초등	"	2	뽕추	우발사고	한약	"	"	불구가사	문제아양제해주는것이 문제	N, R	650	"	중의 하
307	2녀	0	14	무	"	"	공무원	"	중등	2	소아마비	선천적	병원	"	"	년령미달재학	N, R	"	300	"	하의 상
331	장남	0	13	"	"	"	무	고등	"	1	편안	우발사고	무	"	"	"	성장위생적고통받을까 걱정	"	50	"	하의 하
334	"	0	12	"	"	"	공무원	중등	초등	5	소아마비	병후	한의병원	"	"	재학	장래걱정	성장하여정신적고통 느낄까봐걱정	650	"	상의 상
348	처	0	53	"	기동	"	방아간	국해	국해	5	중풍	"	병원	"	"	불구가사	가사일이억망	"	178	"	중의 하
468	4녀	0	8	"	미	"	기능단순	중등	초등	1	불구	"	무	"	"	재학	걱정 근심 이집안에 잠재	교육상자격지심받을 까봐	400	"	상의 하
478	장남	0	"	"	"	"	구멍가게	"	"	5	저능아	선천적	"	"	"	"	N, R	N, R	100	"	하의 하
483	2남	0	"	"	"	"	공무원	대학	"	1	소아마비	병후	병원	"	"	"	열등감우려	경제적열등감우려	250	"	중의 하

중 소 도 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일련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연령	종교	결혼관계	장애자직업	가구주직업	가구주교육정도	장애자교육정도	장애자시책	종류	원인	치료	전문교육	취업시애로사항	미취업사유	가정내문제 I	II	가구총수입	장애자수입	생활정도
대전																					
007	모	0	75	무	사	무	담배집	초 등	문맹	1	반신불수	병 후	한약병원	무	무	불구노령	무	무	330	무	중 의 하
20	가구주남	0	45	"	기 동	"	가정교사	대 학	대 학	2	수족절단	전 쟁	양 호	"	"	불 구	시중들기어려움	직업을가질수 없다	100	"	하 의 하
56	모	0	65	"	사	"	서비스업(유종업)	중 등	문맹	1	반신불수	병 후	병원	"	"	노령불구	가정불화	치료비로경제적영향	250	"	중 의 하
62	3 남	0	13	천 주	미	철공소작공	담배대안드는것	한 수	초 등	1	소아마비	"	"	"	별로없다		자신 이비 관해서걱정	경제적 이유로 치료 못해서	290	20	중 의 상
63	생 질 여	0	30	기	불	무	BUS회사과장	N R	중 등	3	뽀 추	우발사고	양 약	"	무	기술이없어서	마음에 안 들을 수 없다		250	무	"
68	가구주남	0	45	무	기 동	"	무	대 학	대 학	5	양 다리절단	전 쟁	가정치료	"	"	불 구	무	무	165	65	"
91	2 남	0	21	기	미	"	전문적기술	중 등	고 등	3	소아마비	병 후	불 치	"	"	"	직업비명한게 없다	정신적 열등감	450	무	중 의 하
114	3 남	0	13	무	"	"	장 사	중 등	중 등	1	말 더듬이	선천적	최근에 중세 나다	"	"	재 학	사람을 두려워해 말을 잘 안 하려고함		300	"	중 의 상
152	장 남	0	5	"	"	"	행 상	초 등	미 취 학	1	토 산	N R	약	"	"	연 령 미달	가정의 불화	의욕상실	90	"	하 의 상
177	가구주남	0	40	불	기 동	노동일	노동일	"	초 등	5	원 팔목불구	전 쟁	육군병원	"	무	것 없음	직업생활에대못함		100	80	중 의 하
191	2 남	0	10	무	미	무	개인회사사무원	"	"	1	소아마비	병 후	전문교육 시설기관	전문교육 시설에서	"	재 학	열등의식을가질까걱정		300	무	"
191	3 남	0	6	"	"	"	"	"	미 취 학	1	다리병신	선천적	병원	무	"	연 령 미달	마음에 큰 병이 되어마치		300	"	"
197	매	0	24	N R	"	"	극장경영	고 등	대 학	2	소아마비	병 후	"	"	"	정신적관심 없음	결혼문제걱정		1,750	"	상 의 하
전주																					
1326	가구주남	0	60	무	기 동	"	무	고 등	고 등	3	중 풍	병 후	병원(효과 없다)	"	무	불 구	경제적 곤란		400	"	중 의 상
1338	장 여	0	22	기	미	"	행 상	문맹	문맹	2	다리불구	선천적	치료불능	"	"	"	가정불화	장애자의 열등의식	63	"	중 의 하
1349	가구주남	0	74	무	기 동	"	무	국 해	국 해	1	중 풍	병 후	의사치료	"	"	노령불구	"		40	40	하 의 하
1367	차 여	0	10	"	미	"	판매종사	중 등	초 등	1	소아마비	D.K 병원	(효과 없다)	"	"	재 학	장래적 정	형제와의 융합이 곤란	170	무	중 의 하
1369	장 남	0	5	"	"	"	막노동	초 등	미 취 학	1	"	선천적	병원	"	"	학령미달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		100	"	하 의 하
1434	모	0	63	불	사	"			문맹		절름발이	"	병원 약	"	"	노령불구	집안분위기				
	조 모	0	82	"	"	"	농 업	초 등		6	귀머거리	병 후	무 치료	"	"	"	우 울		50	"	중 의 하
1437	차 손 자	0	14	무	미	"	무	국 해	초 등	4	소아마비	우발사고	병원한의	"	"	나이가어림	불구자의 장애문제	치 료 비	80	"	하 의 상
1546	장 남	0	22	"	"	가축업	가축업	한 수	"	5	"	병 후	병원	"	합이없다	무	교육문제		200	100	중 의 하
1538	장 녀	0	11	"	"	무	상 업	초 등	"	2	저 능 아	선천적	"	"	"	저 능	가정불화	장애문제	700	무	상 의 하
1530	가구주남	0	28	"	기 동	구멍가게	구멍가게	초 등	"	1	정신병	병 후	"	"	의상이 많다		경제적인면		9	무	하 의 하

< 농 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가구주 와 관	동거 여부	연령	종교	결혼관계	장애자 직업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정도	장애자 교육정도	장애자 시책	종류	원인	치료	전문교육	취업 애로사항	미취업 사유	가정내문제Ⅰ	Ⅱ	가구 총수입	장애자 수입	생활정도
3226	장남	0	31	무	미	무	농업	문맹	문맹	2	(반신)불구	어릴때놀라서	안받는다	무		불구	시중들기귀찮다	앞날이걱정	80	무	하의상
248	"	0	33	무	미	농업	"	"	"	1	팔병신	"	무	"	N.R		노동력부족	부인과이혼	120	"	중의상
250	2녀	0	12	"	미	무	"	"	초등	1	척추가휜	병후	보건의소	"		재학	치료비	장애가각정(결혼)	50	"	중의하
272	2남	0	15	"	미	"	"	"	중등	1	손병신	불에디었음	치료못했음	"		"	병을고칠수없어	치료비부족	60	"	"
278	장남	×	39	"	기혼입원중	"	"	"	초등	1	정신병	군속으로갔다	대전수용소	"		정신질환	경제적곤란	자녀교육	40	"	하의상
291	모	0	73	N.R	사	"	농·목공 전속	"	N.R	1	전신화상	우발사고	무치료	"		노령	간헐적전부돌보 아주어야함		90	"	중의상
3031	2녀	0	8	무	미	"	농업	"	초등	1	소아마비	"	미치료	"	무	어린아기때문	경제적걱정	65	"	하의하	
3095	가구주남	0	55	"	기동	"	무	한수	한수	1	반신불수	부상에의함	병원, 한의원	"	"	N.R	치료비걱정		12	"	중의하
3382	장손녀	0	11	"	미	"	"	국해	초등	3	다리절단	교통사고	병원	"	"	재학중	치료비문제	통학이불편	60	"	하의상
3343	5녀	0	12	"	"	"	농업	문맹	"	N.R	편안	우발사고	"	"	"	"	"		170	"	"
3312	처	0	31		기동	"	"	국해	문맹	0	귀머저리	병후	식물성으로치료	"	"	가사	대화가곤란하다		40	"	"
3304	2녀	0	12	기	미	"	"	"	"	0	소아마비	"	병원	"	"	N.R	장래걱정		55	"	"
2158	모	0	66	천주	사	"	"	중등	"	5	중풍	우발사고	"	"	"	노령불구	치료비문제		120	"	중의하
2174	가구주남	0	40	기	기동	"	무	"	중등	5	우대퇴부, 좌단 하퇴부, 좌단	전쟁	육군병원	"	"	N.R	무	무	115	115	"
2199	"	0	63	무	"	"	"	"	"	3	반신, 불수	병후	병원, 가정	"	"	노령불구	신체적부자유가 가정에영향	경제적곤란	60	무	하의상
2202	"	0	58	불	"	"	"	초등	초등	0	불구	"	병원	"	"	N.R	무	무	70	"	중의하
2206	모	0	58	무	사	"	농업	중등	문맹	5	중풍	우발사고	한의원	"	"	"	치료비걱정		280	"	"
2107	4남	0	12	"	미	"	전문직 기술	초등	초등	3	소아마비	병후	병원	"	"	"	심리적타격		700	"	"
2121	장녀	0	8	"	미	"	무	"	"	3	농아	"	치료못함	"	"	"	별로없다	별로없다	45	"	하의하
2127	가구주남	0	45	"	기동	"	"	"	"	3	왼쪽다리 장애	전쟁	육군병원	"	"	"	경제적걱정	가족에대한 미안감	45	"	"

< 어 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가구주 와 관 계	동 거 여 부	연 령	종 교	결혼관계	장애자 직 업	가구주 직 업	가구주 교육정도	장애자 교육정도	장애자 시 체	종 류	원 인	치 료	전 문 교 육	취 업 시 애로사항	미 취 업 사 유	가정내문제 I	II	가 구 총수입	장애자 수 입	생 활정 도
4008	동생(남)	0	35	무	미	무	판매직업	문맹	문맹	4	꿈 추	우발사고	가내보호	무	무	N . R	N . R	N . R	100	무	중 의 하
4013	장 남	0	25	"	"	"	어 부	초 등	초 등	3	"	"	치 료불 능	"	"	"	"	"	160	"	중 의 상
4035	"	0	8	"	"	"	어 부	국 해	문맹	1	귀머거리 병 어 리	선 천 적	무	"	"	나이가어림	치 료 적 정		100	"	하 의 상
4039	가구주(남)	0	52	"	기 동	"	무	초 등	초 등	6	다 리, 눈	전 쟁	일본보장구	"	"	불 구	무직자로 가족부양 적		50	"	하 의 하
4042	장 남	0	7	"	미	"	"	"	문맹	5	목 못 씹	우발사고	안받았음	"	"	나이가어림	무	무	300	"	중 의 상
4053	"	0	22	"	"	"	어 업	"	초 등	1	정 신 이상	병 후	병 원	"	"	정신이상	빛을지게됨	자식보기가 괴롭다	120	"	하 의 상
4077	가구주(남)	0	44	"	기 동	어 부	어 부	문맹	문맹	1	다 리불구	우발사건	"	"	자유로운 활동불가		경제적인걱정	자녀들이 경 시 하는것	30	30	"
4085	처 녀	0	7	"	미	무	어 업	초 등	초 등	1	소 아 마비	병 후	"	"	무	재 학 생	교 육 문 제	치 료 문 제	140	무	상 의 하
	여동생	0	25	"	"	"	"	"	"	1	꿈 추	"	"	"	"	일자리가 없 다	치 료 문 제		140	"	"

제 45 장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장애자 (문헌조사)

경제기획원에서는 1962년 8월부터 1년에 4회에 걸쳐 경제활동인구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14세 이상의 인구동태와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태가 분석되고 있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그 유형을 가사, 통학, 연노, 불구자,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조사의 비경제활동인구중 불구자의 동태에 착안하여 전국 불구자의 동태를 추정하려고 기도한 것이 이 문헌조사의 목적이다.

물론 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원래가 인구의 경제활동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웅진군등 전방지방과 소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제외하였으므로 불구자 동태 파악에 그다지 큰 정밀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것이나 정기적으로 조사되므로 시계열적관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변하더라도 조사면접자가 장애자 결정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으리라고 상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장애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설정된것 같지 않다는 약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장애율이 극단으로 높은 제주도나 원격도서가 소외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경제활동인구중의 노령과 불구자의 동태는 표 2-1과 같다.
1963년부터 1967년의 5개년간 14세인구는 1,570만에서 1,717만으로 147만이 착실한 템포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703만에서 767만으로 약 64만이 점증되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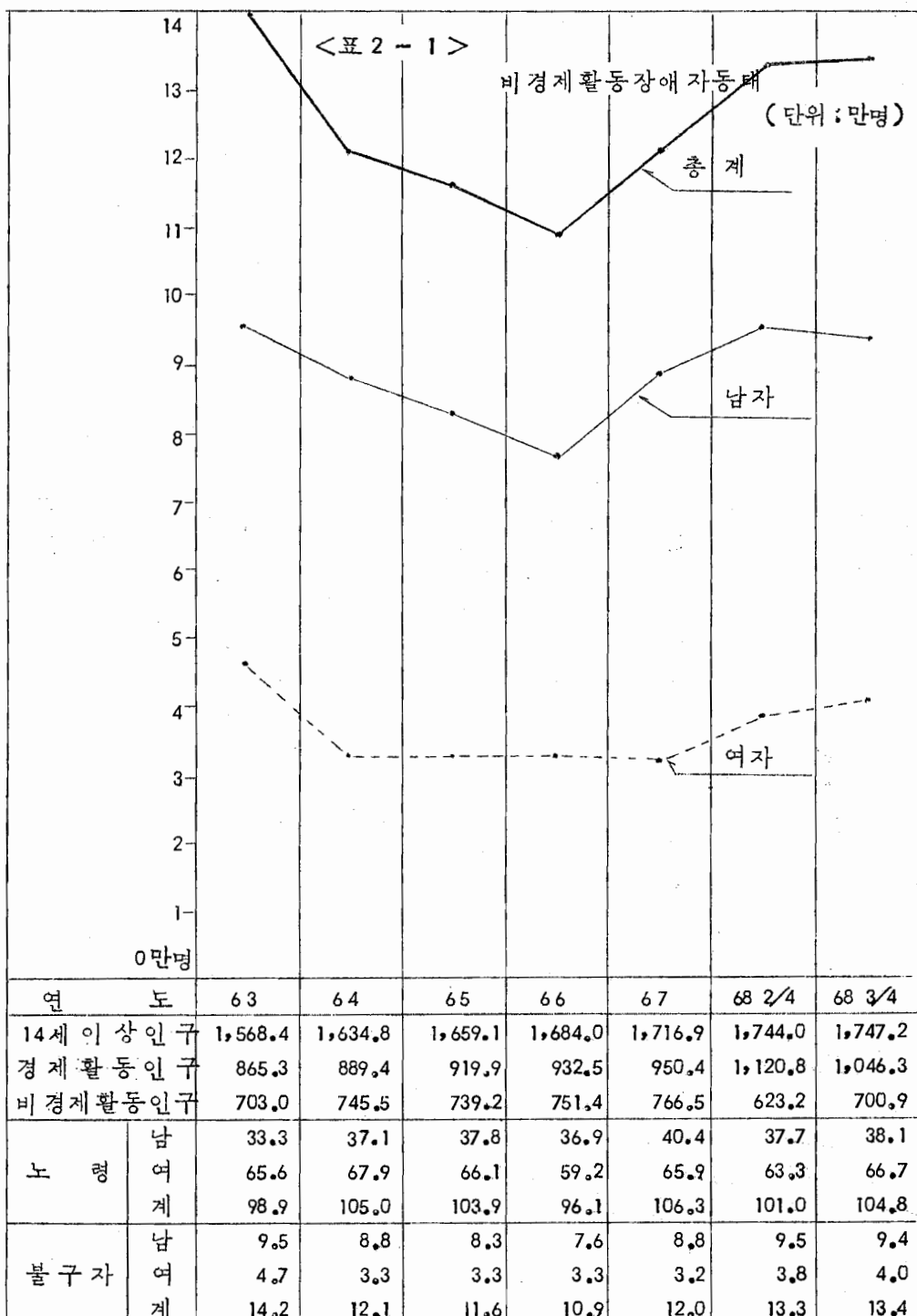
고 있다.

그런데 불구자수는 1963년의 14만에서 1966년의 11만으로
점감하다가 1967년의 12만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구자의 판정에 노쇠자가 혼입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쇠자의 추이를 조사하였더니 불구자의 증감과 꼭 같은
증감을 보여주어서 불구자와 노쇠자의 판정혼동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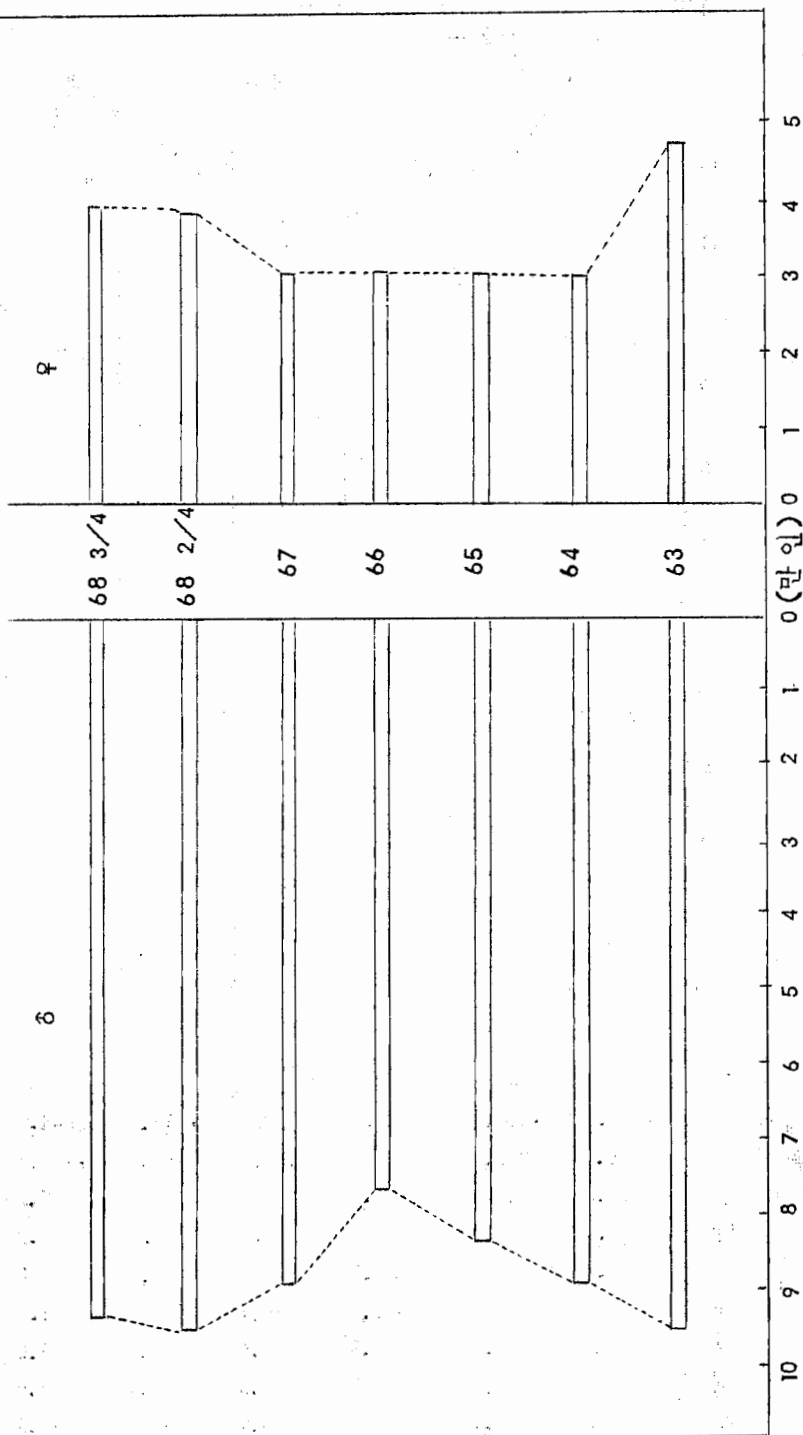
이 분석이 승인된다면 14세인구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점증일로에
있는데 불구자는 그와 상반되는 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
는데 그 원유를 참작하는데 난색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구자의 성별분포는 설명이 어려운것 같다. 성별분포는
도 2-1과 같다. 남자의 경우 66-67년간에 13,000명정도의
증가가 있었고 60-63년간은 거의 $\frac{5}{3}$ 의 상수를 가진 1차직선
을 나타내어 매년 5,000명의 감소가 있었다.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불구자성별동태



여자의 경우 63 - 64 년간에 14,000 명의 감소가 있는 후 67 년까지 3 만 3 천명의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남자불구자의 경우 취업능력과 상태에 있어서 가동능력이 있는 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의 경우는 가동능력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되어 남녀간에 불구자의 평가기준에 차가 있었음을 시사하는것 같다.

불구자의 변동진폭을 보면 표 2 - 2 와 같다.

63 - 67 년간의 최대진폭은 33,000 이고 최저진폭은 7,000 이고 최대치는 142,000, 최저치는 109,000 이다.

최대진폭을 생각할 때 63 년과 66 년간의 변화치이므로 3 년간의 변화로 인정하고 최대진폭 33,000 을 3 년으로 안배하면 약 11,000 의 연간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최저진폭을 생각할 때 65 년과 66 년의 1 년간의 변화이므로 최저 연간변동을 7,000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 2>

비경제활동인구불구자변동상황

(63 - 68)

(단위 : 1,000 인)

		최대진폭	최저진폭	최저치	최대치	대전년 최대진폭	대전년 최저진폭
남	자	19	7	76	95	12	5
여	자	15	1	32	47	14	0
총	수	33	7	109	142	21	5

최대년간변동수와 최저년간변동수에는 약 4,000 의 차가 있으므로 불구자의 연간변동가능성을 9,000 정도로 볼 수 없는지 모르겠다.

건강부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68년 6월의 조사에서는 67년의 년
평균 12만에서 13만3천으로 되어 약 1만3천의 변동을 보여주
고 있어 연간변동수를 9,00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추정에 의하면 69년현재 약 140,000명의 14세이상의 불
구자가 있을 것 같고 그 장애율은 10만대비로서 800정도가 될
것이다.

남자의 변동진폭은 최대가 19,000이고, 최저가 1,000이며, 최대
치 95,000, 최저치 76,000이다. 최대진폭은 63 - 66년의 3년
간이므로 연간 평균추정최대진폭은 6,300이고, 최저진폭은 65 - 66
년의 1년간으로서 7,000이다. 따라서 연간변동추정은 7,000정
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최대진폭이 15,000, 최저진폭이 1,000이고 최대진폭은
63 - 67년의 4개년에 걸쳐있으므로 연간평균추정변동은 3,700이
고 최저진폭은 66 - 67년 1년간에 1,000이었다. 따라서 추정
변동을 2,000 정도로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지에 있어서 68년 6월조사는 남자 7,000, 여자 6,000의 변
동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진폭이 확장된 것은 아마 평가기준의 변동과 관련이 있
을런지 모른다. 이 추정에 의하면 69년현재 14세이상 불구자가
남자 100,000, 여자 40,000 정도 같이 보인다.

따라서 불구자의 성비는 71.4%가 남자이고, 여자는 28.6%란
공산이 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불구자의 도비간의 분포는 표2-3과 같다.
도시지구로 보이는 비농가는 전불구자의 56.0%를 점하고 있고,
농가나 비농가 모두 점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농가는 65년 이래 68년 6월까지 5,000명이 늘고 농가는 12,000명이 는 셈이 되는데 그 이유는 미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농가와 비농가의 비경제활동불구자의 연령별분포는 표 2-4, 도 2-2, 2-3, 2-4와 같다.

<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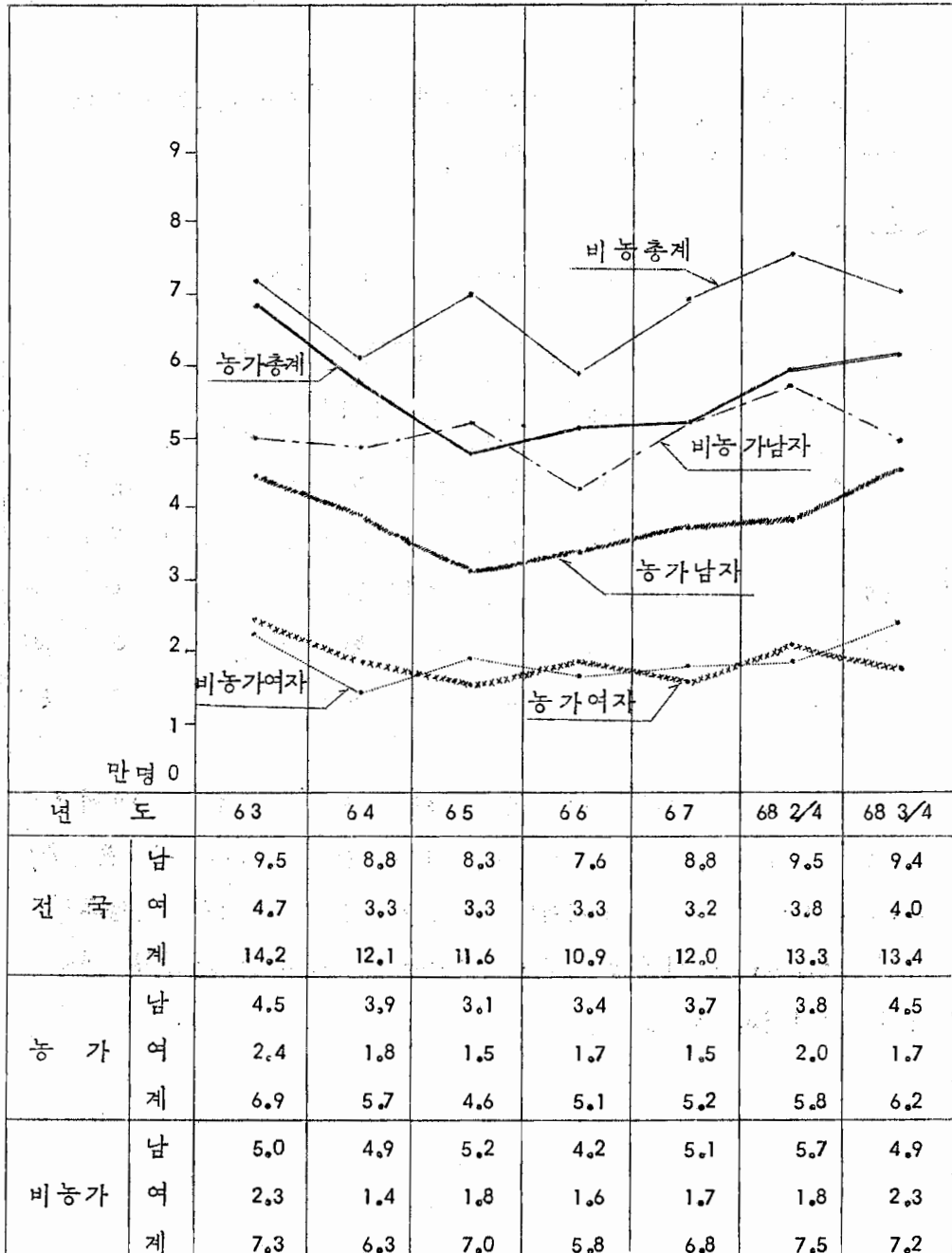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불구자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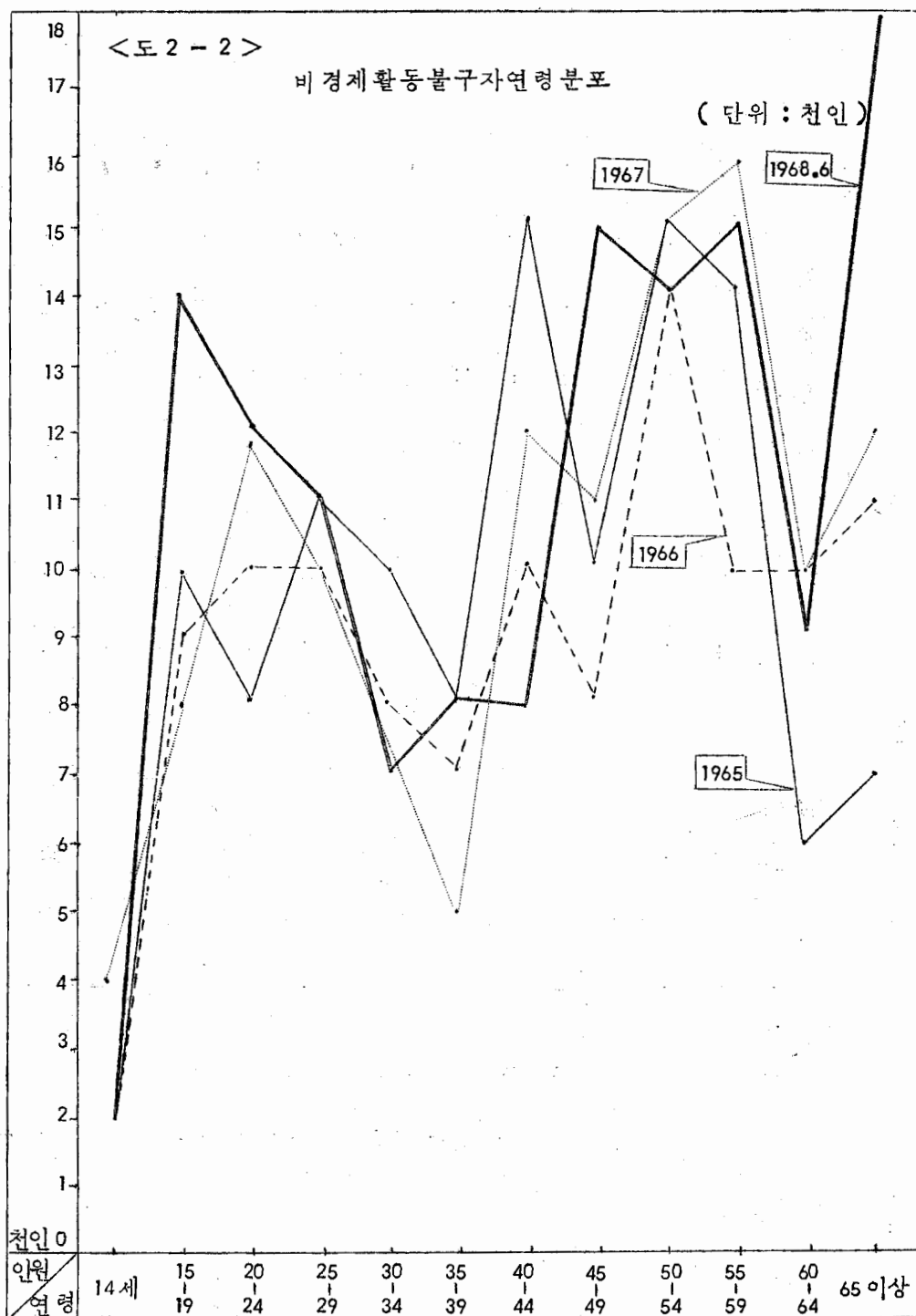
구 분 년 도	농 가			비 농 가			계		
	남자	여자	소 계	남자	여자	소 계	남자	여자	소 계
1965	31	15	46	52	18	70	83	33	116
1966	34	17	51	42	16	58	76	33	109
1967	37	15	52	51	17	68	88	32	120
1968. 6	38	20	58	57	18	75	95	38	133
1968. 9	45	17	62	49	23	72	94	40	134

연령별전체의 분포는 65년대는 40 - 44세와 50 - 59세대가 봉상대지모양을 나타내었는데 66년대는 50 - 54세대가 솟아올랐고, 67년대는 20 - 24세대의 진출과 50 - 59세가 대양고지를 차지하였으며, 68년대는 15 - 19세대와 40 - 59세간의 넓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장애자 농가, 비농가분포

(단위 : 만명)





<표 2-4>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불구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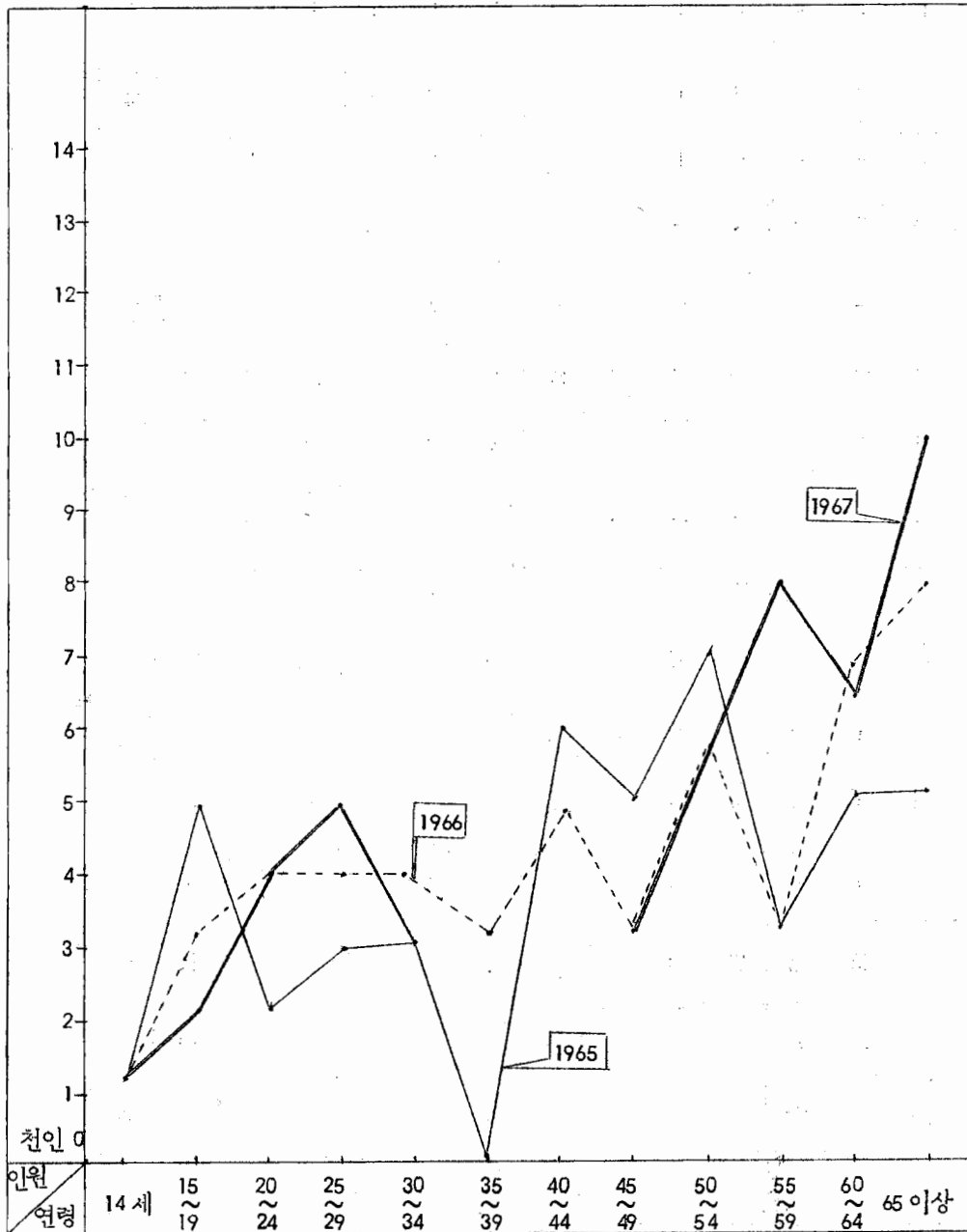
(단위:천인)

연도	연령 가성별		14세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세 이상	미상	비	고
	남	여	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1965	농	31	1	3	2	2	3	3	4	3	4	1	2	5	-		
	가	15	-	2	-	1	-	-	2	2	3	2	3	-	-		
	계	46	1	5	2	3	3	-	6	5	7	3	5	5	-		
	비	52	1	2	3	7	7	6	6	3	5	11	-	1	-		
	농	18	-	3	3	1	-	2	3	2	3	-	1	1	-		
1966	가	70	1	5	6	8	7	8	9	5	8	11	1	2	-		
	총	116	2	10	8	11	10	8	15	10	15	14	6	7	-		
	남	34	1	2	3	3	1	3	3	2	4	3	4	5	-		
	여	17	-	1	1	1	3	-	2	1	2	-	3	3	-		
	계	51	1	3	4	4	4	3	5	3	6	3	7	8	-		
1966	비	42	1	3	4	5	3	2	3	3	6	7	3	2	-		
	농	16	-	3	2	1	1	2	2	2	2	-	-	1	-		
	가	58	1	6	6	6	4	4	5	5	8	7	3	3	-		
	총	109	2	9	10	10	8	7	10	8	14	10	10	11	-		

1967	능가	37	1	2	4	4	1	2	2	2	5	5	5	—	
	남		—	—	—	1	2	1	1	1	1	3	1	4	
	여	15													
	제	52	1	2	4	5	3	3	3	3	6	8	6	10	
	비능가	51	1	3	5	3	4	1	7	6	8	7	4	2	
	남						—	1	2	2	1	1	—	—	
	여	17	2	3	3	2									
	제	68	3	6	8	5	4	2	9	8	9	8	4	2	
	총계	120	4	8	12	10	7	5	12	11	15	16	10	12	
	능가	38	2	2	3	4	1	3	—	4	4	4	5	6	
	남		—	1	2	1	—	2	1	2	—	2	—	9	
	여	20													
1968 6월	제	58	2	3	5	5	1	5	1	6	4	6	5	15	
	비능가	57	—	8	5	4	5	2	5	7	8	7	4	2	
	남		—	3	2	2	1	1	2	2	2	2	—	1	
	여	18													
	제	75	—	11	7	6	6	3	7	9	10	9	4	3	
	총계	133	2	14	12	11	7	8	8	15	14	15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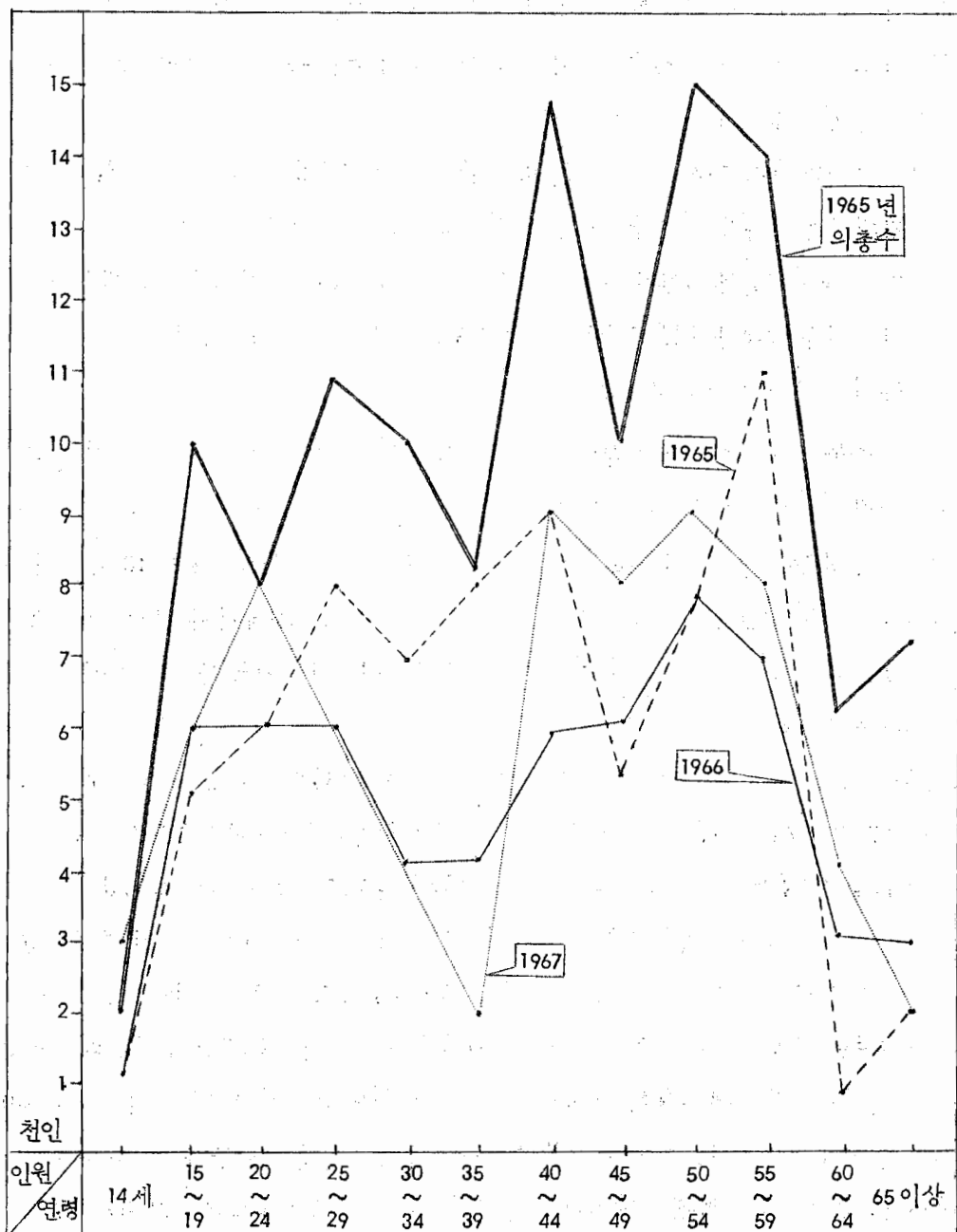
<도 2 - 3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불구자동태



<도 2 - 4>

비경제활동인구 비농가 불구자동태



개괄적으로 보아서 15 - 19세층과 40 - 60세간에 불구자가 집중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것은 연소하거나 중년이후의 취업불구자가 적고 역시 중년이전의 취업이 많다는 경제활동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구자수의 추정에는 부적당함을 보여주는 예증의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다.

비경제활동불구자를 농가와 비농가로 분리하여 검토하면, 우선 비경제활동농가불구자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구자가 많아진다는 일반적 경향은 추정될 수 있으나, 중년이하의 경우에 경향이 아주 상반되는 계층이 있어, 특히 20 - 40세간의 경우 그 해석에 곤란을 느낀다.

비농가의 경우는 작년도마다 현저한 단층을 보여 실수에 있어 증감의 방향계수에서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차이는 극심한 바가 있다. 비농가의 경우 불구자는 40세 이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성향은 전수에서나 농가에서나 흡사한 점이 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농가는 증가세 비농가는 감퇴세의 기미가 보인다.

65년의 비농가 60세이상 불구자는 3,000, 66년 6,000, 67년 6,000, 68년 7,000이고 농가는 65년 10,000, 66년 13,000, 67년 16,000, 68년 20,000으로 나타나 있다.

끝으로 여기서 재고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은 이미 추정한 바 있는 비경제활동불구자 연간증가력 9,000이란 수치이다.

1958년이래의 교통사고등에 의한 부상자수는 표 2 - 5와 같은데, 그 총수는 약 140,000명이나 되고 근간에는 매년 약 3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령 부상자의 1할이 불구가 된다고 해도 매년 3,000명의 불구자가 발생하는 셈이 되고 3할로 보면 9,000명

의 불구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표 2 - 5>

교통사고인명피해추이

단위 : 전명

구분 연도	발생건수	사망	부상	비고
1958	4,689	1,354	5,983	부상자계 136,600명
1959	6,319	2,215	7,066	
1960	3,371	2,090	9,348	
1961	6,954	1,856	7,700	
1962	6,065	1,572	6,864	
1963	7,027	1,951	7,884	
1964	8,091	2,224	9,655	
1965	7,282	2,246	10,014	
1966	15,804	2,566	19,204	
1967	20,679	2,834	25,666	
1968	22,654	2,163	27,216	

자료 : 내무부 (1968 년은 경향신문 1968.12.25 보도에서)

따라서 9,000 명이란 불구자증가치는 잠정추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요망사항은 장애자수 파악에도 도움이 되게끔 설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제 46 장 생활보호대상자조사에서 본 장애인

(문 헌 조 사)

1961. 12.30 공포한 법률 제 913 호 생활보호법은 제 3 조 보호대상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 17 조는 제 1 항에 <서울특별시,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 회 이상 관할구역 내의 요보호자를 조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한 장애자의 동태를 살펴본다.

물론 이 조사의 장애자는 가동능력장애와 생활자원의 결핍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의 전모추정은 아주 곤란한 사정에 있으나 대체적경향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요보호장애자의 추이는 표 3 - 1 과 같다.

<표 3 - 1>

요 보호 장애 자 추 이

(단위 : 인)

구분 연도	장애자실수	장애자지수	대전년증가율	대전년증가실수
1965	181,864	100.0 %	- %	-
1966	191,140	100.5	0.5	+ 9,276
1967	203,544	111.9	11.3	+ 12,404
1968	204,000	112.2	0.3	+ 466

자료 : 보건사회부조사

※ 요생활보호자수는 1965 402,946 인 1967 440,401 인
 1966 420,193 인 1968 463,339 인

앞의 표에 의하면 장애자수가 66년과 67년을 사이에 두고 비약하고 있는데 이 조사의 특성으로 보아 요보호자중에서 장애자수 자체가 증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애나하면 법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이나 군수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의 직원이며, 상식적으로 판정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므로 실제 장애자수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며, 또한 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자는 제외되고 있으며, 특히 요보호자수는 62년 이래 예산상 283,000명으로 고정하고, 실지보호는 420,000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노쇠자나 아동의 요보호자를 물리치고 장애자가 확대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만이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관심사는 매년증가실수에 있어 그 상호간 차이가 아주 심하기는 하나, 노쇠자가 인구노령화의 경향에 의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지고 있겠고, 아동은 실지에서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증가의 압력을 그대로 전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자가 증가의 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모두 생활소요의 가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런 지도 모르나 반드시 수급이 간다는 보장은 없다.

제 47 장 1961년의 장애아동조사(문헌조사)

1961년에 한국아동복지위원회와 보건사회부의 공동주최하에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한국아동의 장애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를 행하였다.

이 조사에는 한국의 아동복지전문가와 외국기관의 아동전문가도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초의 장애아동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라 할 수 있다.

1. 조사방법

한국장애아동계 대한 포괄적인 실정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심신장애아동과 사회적 장애아동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은 지체장애아동, 시청각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기타기형, 혼혈아동 이었다.

조사단위는 장애종별이었고, 조사기일은 1961. 4. 10. 오전 0시를 기준시간으로 하였다.

조사계통은 행정관별을 통하여 통반에 이르게 하고, 통, 리, 동장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고 16개 불구아동시설은 보건사회부장관, 기타시설은 소관 통, 리, 동장이 담당하게 하였다.

조사응답자는 장애아, 호주, 보호자, 수용기관장등으로 하였다. 조사요원의 훈련은 총 29,000명에 달하였으며, 중앙-도-군-면-조사요원의 전달훈련방식을 채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유의할 것은 사회적장애인데 (사회적장애는 8.15 해방후 외국인과의 관계(중국, 일본인은 제외)로 출생한 아로써 모가 한국인인 혼혈아를 말하되 혼혈아의 피부색에 의하여 ①백색 ②흑색 ③기타로 구분 조사하고 혼혈아의 부의 국적을 가능한한 조사 기입한다.

단 . 정식결혼으로 출생한 혼혈아는 제외한다)

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외 출생아동의 문제와 나병환친의 아동문제도 한국
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포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

본조사에서는 첫째로 현존하는 차대를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고 , 둘째로 이런 조사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협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를 안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조사결과개요

가. 장해아동실수는

남자 49,560 명 (63.6 %)

여자 28,343 명 (36.4 %)

계 77,903 명

으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21,217 명 (27.2 %) 이 더
많은 결과를 보이고 지역분포는 인구 3 만이상의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보면

시 부 13,859 명 (10 만대비 장해율 4.906)

군 부 64,044 명 (" 6.772)

으로서 군부가 시부보다 50,185 명이 더 많고 장해율로서는
1.866 이 더 높았다.

나. 장해아동의 중장애상항은 표 6 - 1 과 같다.

<표 6 - 1>

장해아 장애중수별표

	단			1			2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총 수	47,473	27,332	74,805	1,880	927	2,807	186	76	262
시 부	8,176	5,043	13,219	381	179	560	48	24	72
군 부	39,297	22,289	61,586	1,499	748	2,247	138	52	190

4			5			총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	8	29	1	-	1	49,560	28,343	77,903
6	1	7	1	-	1	8,612	5,247	13,859
14	7	21	-	-	-	40,948	23,096	64,044

장해아동 77,903 명중 2 중이상의 중장해아동 이 3,418 명이어서
 도합 장해수는 81,321 가 되고 . 2 중장해의 전체장애아에 대한
 비중은 3.6. %로 주목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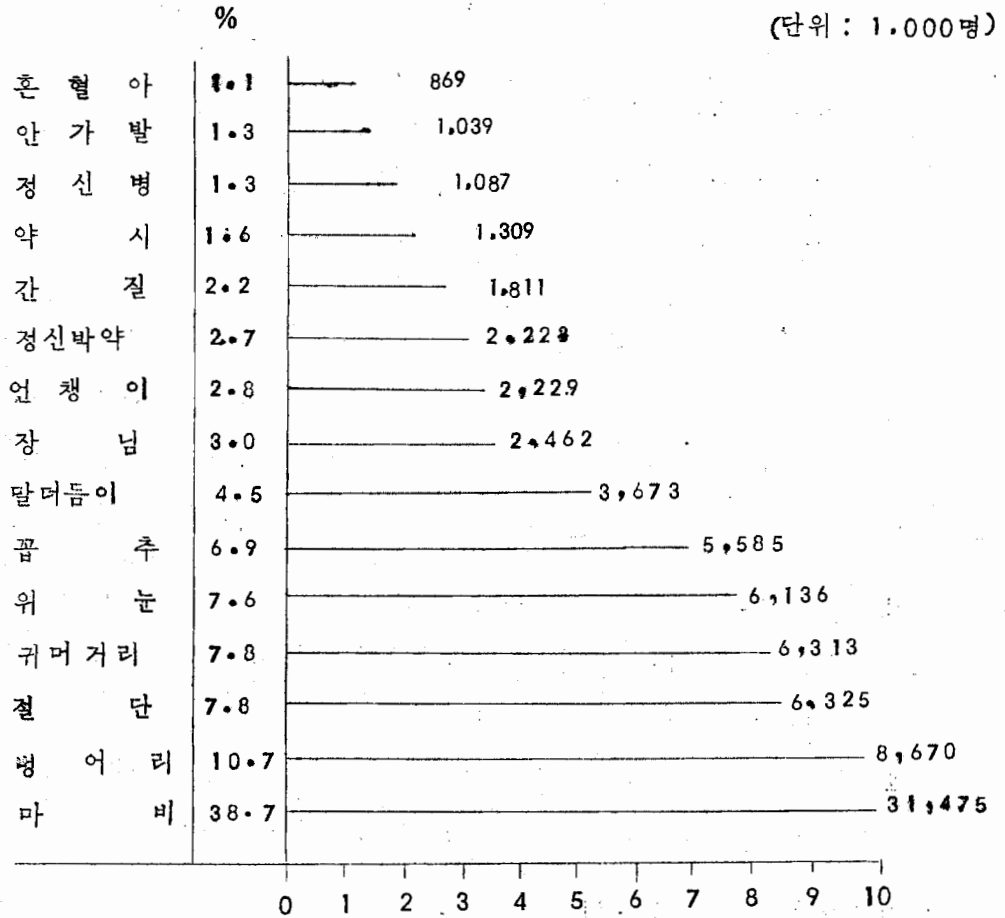
2 중장해에 있어서도 시부 560 명에 대하여 군부 2,247 명은
 장해아동이 군부에 집중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시도장해자수	13,219	20.6
군부장해자수	64,048	10.0
시중 2 중장해수	560	24.9
군부 2 중장해수	2,247	100

다. 아동의 장애종별은 표 6-2 와 6-3 과 같다. 아동장애
 종별에서는 지체마비가 31,475 명으로 38.7 %이고 팔추, 위눈,
 귀머거리, 절단, 병어리등이 각각 7~1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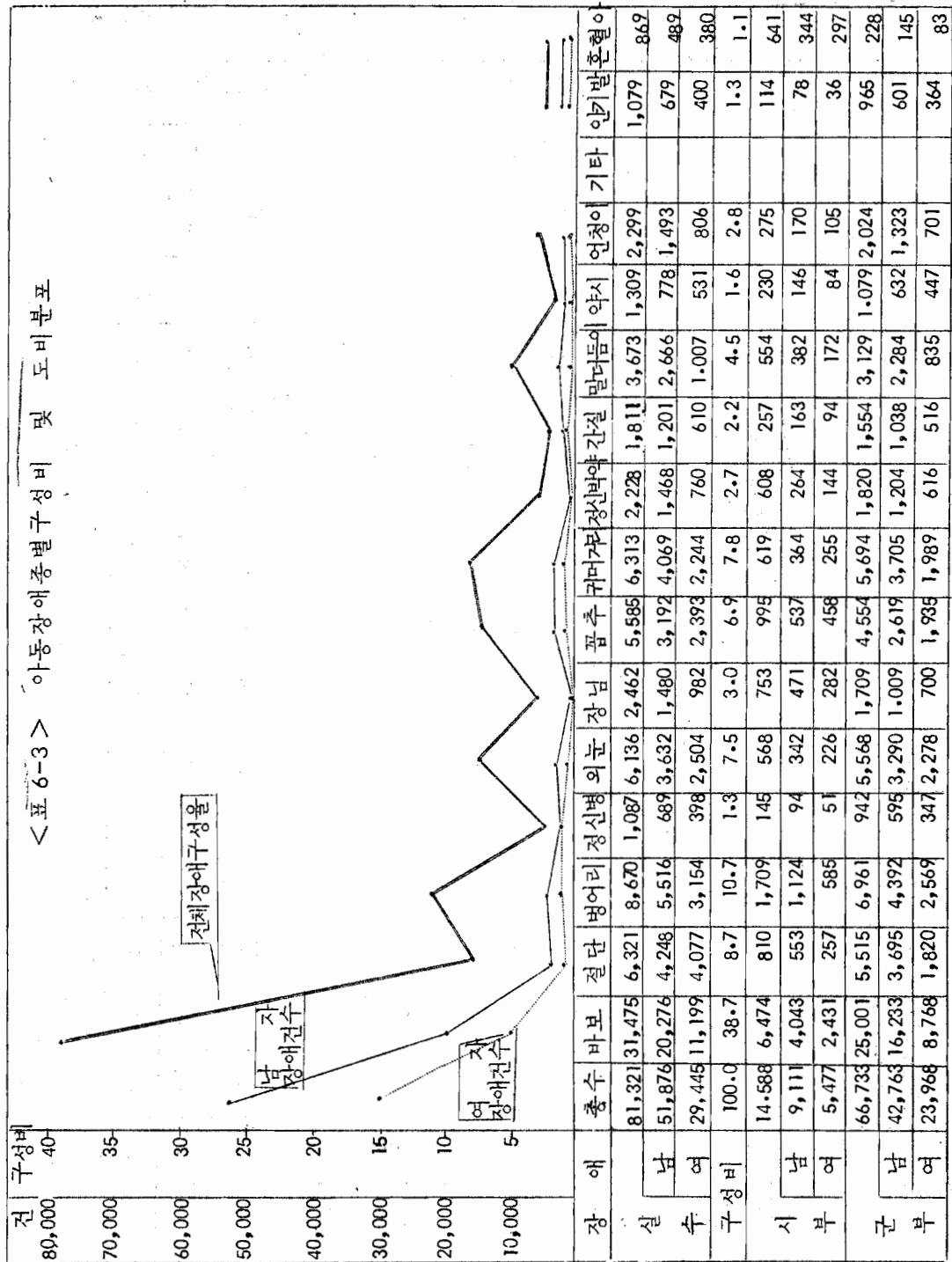
<표 6-2>

아동장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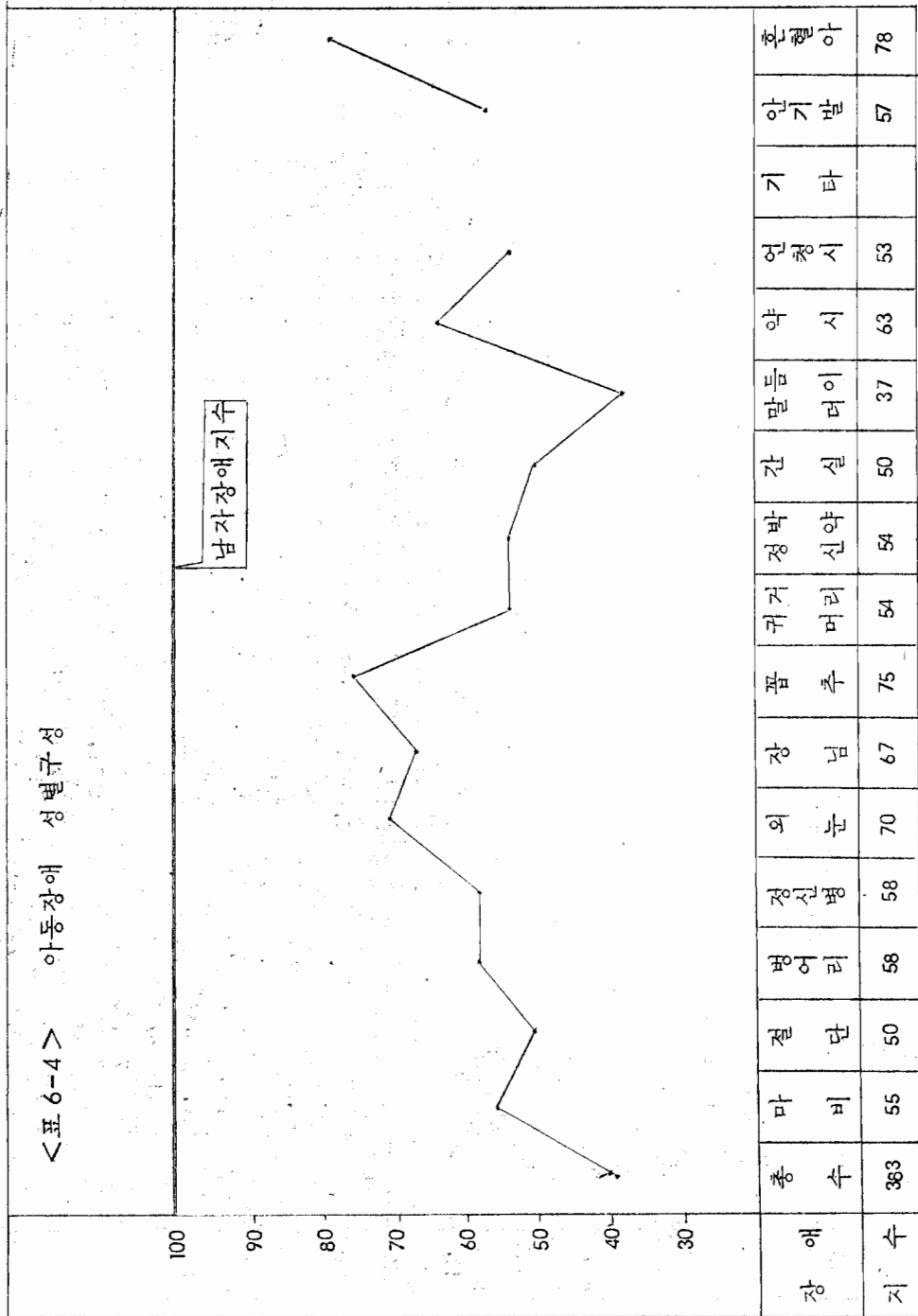


(단위 1000 명)

<표 6-3> 아동장애종별구성비 및 도시분포



<표 6-4> 아동장애 성별구성



라. 아동의 장애성별분포는 표 6-4와 같다. 남자의 각 장애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혼혈아 78을 피크로 하여 모두 70 이하이다. 총수로서는 38.3 정도이다.

다. 아동의 장애율의 지역별분포는 표 6-5와 같다. 아동의 장애율을 그 계층 10만대비로 볼 때 전국이 662.1이며 제주도가 1,026.8이고 전남이 857.0이며, 경남이 742.5, 서울이 가장 낮아 345.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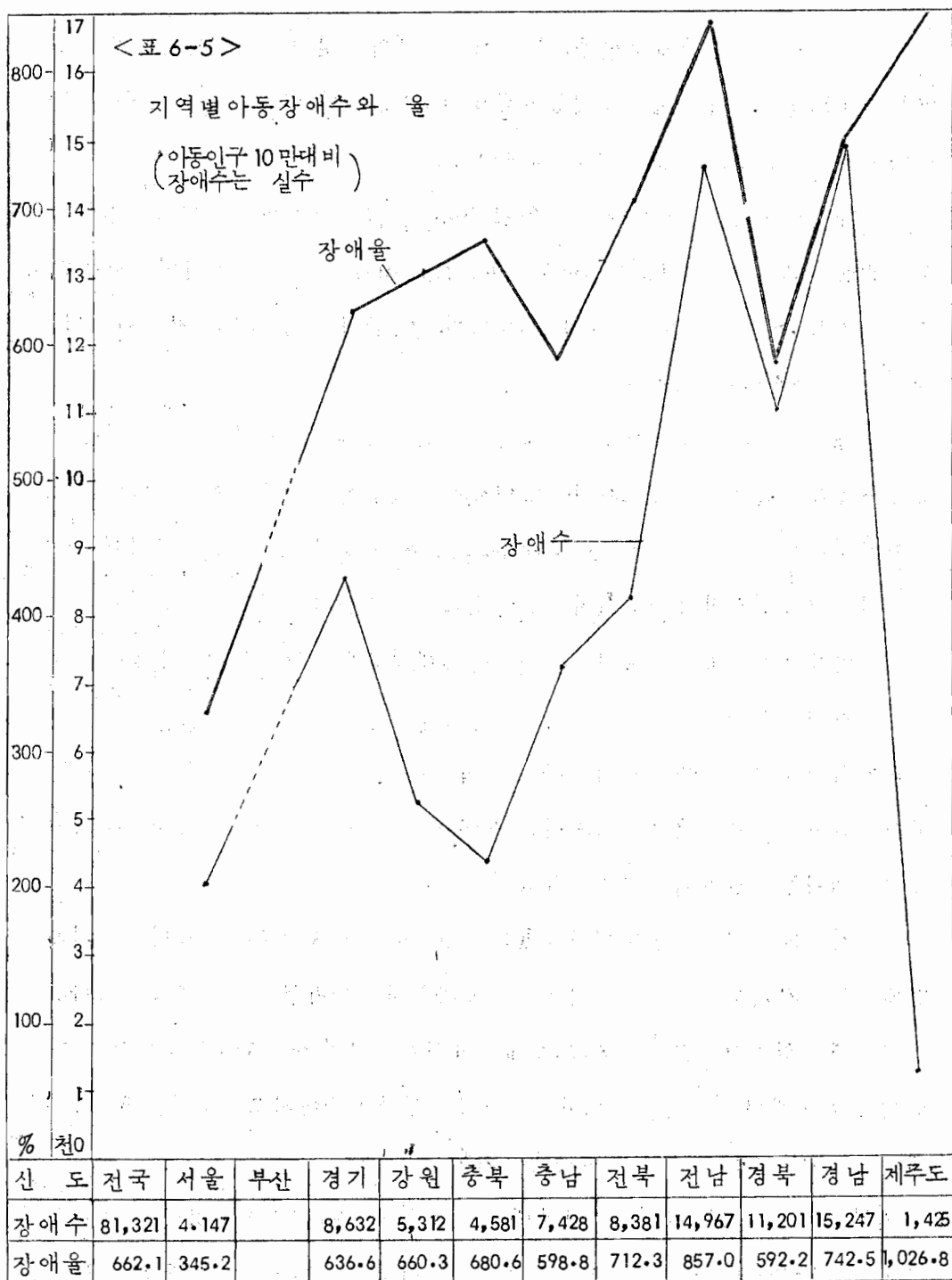
바. 아동의 각 장애별 지역별 장애율의 최고치와 최저치는 표 6-6과 같다. 최고치에 있어서는 전남이 절단, 외눈, 말더듬이, 병어리, 안기발이의 5개분야, 제주도는 마비, 장님, 청맹, 귀머거리, 정신병, 간질, 정신박약, 연청이, 꼽추의 9개분야, 서울이 혼혈아의 1개분야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도에 대부분의 장애아가 집중되어 있는 감이 있다.

최저치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정신박약, 전남이 혼혈아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외는 전부 서울이 차지하고 있어 서울이 가장 장애아동이 적다는 결론이 되고 있었다.

사. 지역별 아동지체장애율과 실수는 표 6-7과 같다. 지체장애에는 사지의 절단과 마비와 체간부의 마비를 포함하고 있다.

실수에 있어서 절단 6,325에 비하여 마비가 31,475로서 절단의 4.1배의 우세를 보이고 있고 전장애중에서도 전장애 81,321에 비하여 38.7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실수에서는 마비에서 전남이 5,226명, 경남이 6,550명이고 아동 10만대비 장애율로서는 전남 301.5%, 제주도 395.6% 전국 256.3%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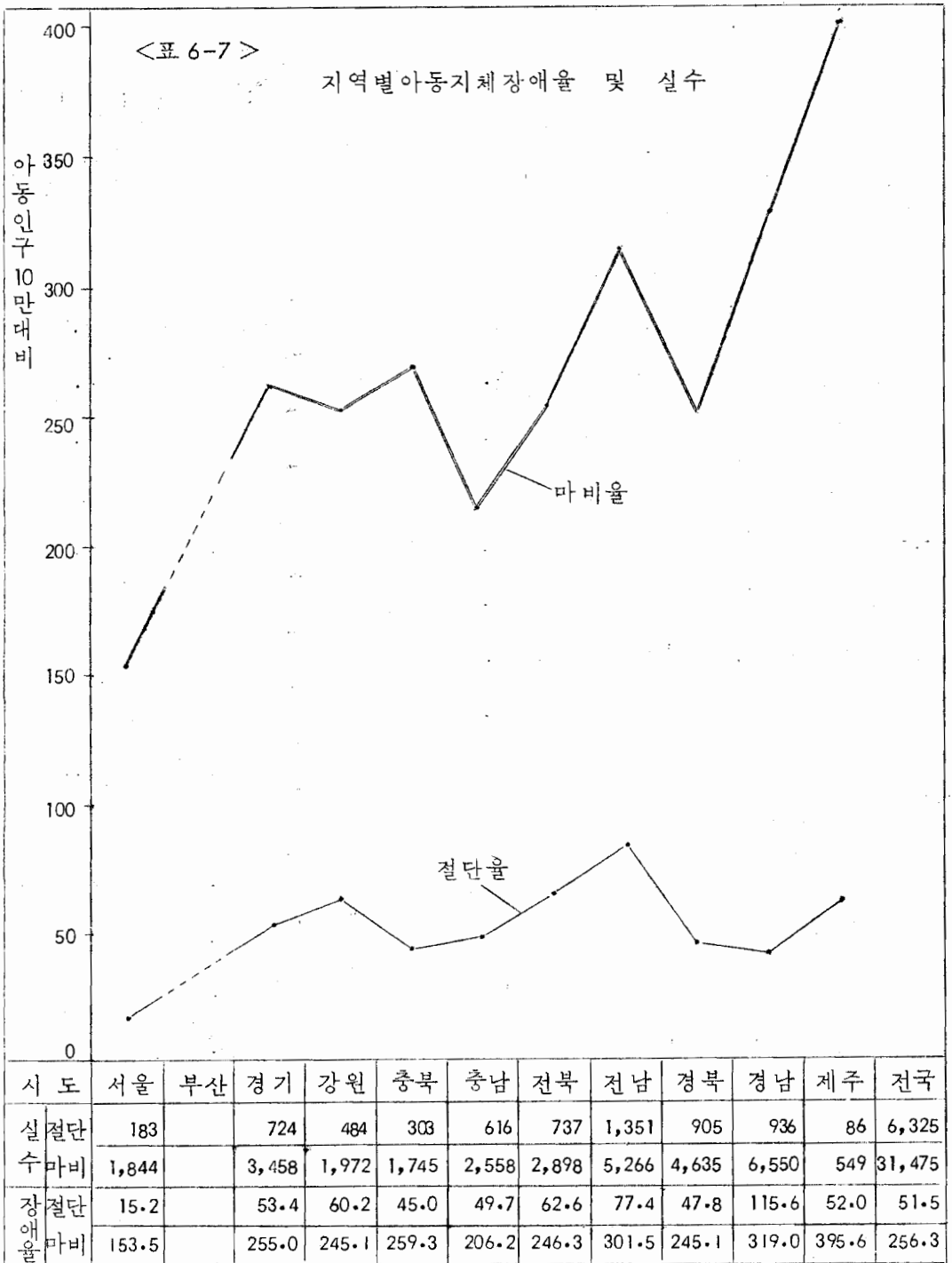


<표 6-6>

아동장애율 (지역별, 최고, 최저치)

(단위: 10만대비)

구 분	최 고 치		최 저 치		전 국 장 애 율
	시 도 명	장 애 율 %	시 도 명	장 애 율	
지체절단	전 남	77.4	서 울	15.2	51.5
지체마비	제 주	395.6	//	153.5	256.3
장 남	//	28.1	//	13.6	20.0
외 눈	전 남	74.4	//	9.2	50.0
약 시	제 주	13.7	//	3.6	10.7
병 어 리	전 남	94.6	//	44.7	70.6
귀머거리	제 주	123.2	//	13.0	51.4
정 신 병	//	23.1	//	1.8	8.9
간 질	//	42.5	//	7.7	14.7
정신박약	//	41.1	경 기도	11.4	18.1
말더듬이	전 남	48.2	서 울	11.7	29.9
언 청 이	제 주	26.7	//	4.8	18.7
꿈 추	//	73.5	//	20.4	45.5
안 기 발	전 남	13.8	//	1.7	8.8
혼 혈 아	서 울	28.6	전 남	0.5	7.1
전 국					662.1



마비의 장애원인은 표 6-8과 같다. 총 31,475 건 중 58%가 발병후이고 상해가 19.3%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중과 치료필이 53.1%, 불치료가 46.9%로서 치료와 미관계된 자의 비율이 아주 높다. 치료처는 병원등이 43.8%, 한의가 9.1%, 기타가 47.1%로서 과학적인 근대적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많다.

절단에서는 실수에 있어서 전남 1,351, 경남 936, 경북 905로 나타났고, 장애율로서는 전남 77.4, 전북 62.6, 제주 62.0이었다. 절단의 이유는 발병과 장애가 95.9%를 점하고 있다.

<표 6-8>

장애아동마비
발생원인

발 병 후 18,256 건 (58%)	선천적 3,575 건 (11.4%)	상 해 6,071 건 (19.3%)
	기 타 3,573 건 (11.3%)	

4. 지역별 아동시각장애의 실수와 율은 표 6-9와 같다. 시각장애에는 완전맹, 쌍맹, 청맹, 약시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맹과 약시는 약시로 통합하여 말한다.

시각장애에 있어서는 쌍안이 가장 많고, 완전맹, 약시의 순서가 되어 있다.

쌍안아동은 전국에 6,136 건이 있으며 전남에 1,300, 경남에 1,193 건이 있다.

쌍안의 발생원인은 발생후가 501, 선천적이 21.8%이다.

완전맹은 전국에 2,462, 경남 401, 전남 362이다.

약시는 전국에 1,309, 경남 279, 전남 205이다.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시각장애에서 경남, 전남이 집중되고 있는 감이 있는 것이다.

장애율로 볼 때 쌍안은 전남 74.4, 충북 57.9, 경남 58.1이며 완전맹은 제주도 28.1, 충북 27.6이고 약시는 제주도 13.7, 경남 13.6, 전남 11.7, 전북 12.0이다.

차 지역별 아동 청각·언어기능장애는 표 6-10과 같다.

청각·언어기능의 장애에서는 농아가 8,670 건, 농이 6,313 건, 말더듬이 3,673 건, 영청이 2,299 건으로 농아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정신박약장애율에서 지역별 진폭이 11.4에서 41.1까지 거의 360%의 나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정신병과 간질의 장애율은 거 그 경향을 같이 하는데 정신박약에서 강원도만이 이질적인 것과 그 발생원인에서 제주도만이 다른 지역과 경향을 달리하는 것은 그 이유가 구명되어야 할 것 같다.

차 지역별 아동 기형(뽕추)장애는 표 6-13과 같다.

뽕추라 함은 2분척추로서 척추가 곡류된 것을 말하는데 실수는 5,585 건, 장애율 45.5로서 아동 만명에 4.5 인이 있다는 공산이다.

지역별로서는 전남과 경남이 1,000 건 대이며 장애율로서는 제주

도 73.5, 강원도 64.1 이고 서울이 20.4로 가장 낮다.

품추의 실수로서 남아가 3,200, 여아가 2,400대이며 그 발생원인은 상해와 발병이 66.4%가 되며 치료에서는 <못하였다, 안하였다>가 약 반이 된다.

카, 지역별 아동 혼혈아 및 기형(번측)장애는 표 6-14와 같다.

혼혈아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는 869명이다.

번측은 전남에 241건 장애율 13.8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는 번측장애 1,079건 장애율 8.8이다.

타, 연령별 아동장애분석상황은 표 6-15와 같다. 실수로 볼 때 6세~18세간은 매년령구간마다 약 5,000전대를 기록하고 있고 5세이하에서 급감되고 있으며 19세에서 3,000전대를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 자체만을 볼때에는 5~6세경까지 장애발생의 대세가 결정되고 그후는 장애아사망율정도의 장애발생이 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19세의 경우는 특수사정이 있다고 추정하고 제외한다면 그 누적수는 1~6세간은 기하급수적곡선이 되고 6~18세까지는 1차 직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구성비와 구성비누적율에서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장애아동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그 누적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10세 전후가 그 중간연령이 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표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계총아동 10만대비로 계산할 때 전국총장애율 662.1에 대하여 실수에 있어서 비교적

평준화 되어 있는 6-18세간은 662.7~889.3의 진폭을 보이고 특히 15세층은 1,187.6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장애아의 사망율에 연령간 차이가 크고, 따라서 장애발생율도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4~15세간에 사망율과 장애발생율에 급중한 변동이 있는것 같다.

파. 연령별 아동지체장애율은 표 6-16과 같다. 절단은 전국적 장애율은 51.5이고 마비율은 256.3이다.

마비에서는 7~10세에 장애율이 높고 400대이며, 기타는 점차 내림세이다.

절단에서는 4~18세까지 3~100대의 장애율이며 15세가 100.3으로 피-크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비보다 200정도이상의 저수준이다.

하. 연령별 아동시각장애율은 표 6-17과 같다. 시각장애율은 15세가 가장 높아 쌍안 123.1, 완전맹 54.5, 약시 20.9로서 그 각각의 전국 장애율은 50.0, 20.0, 10.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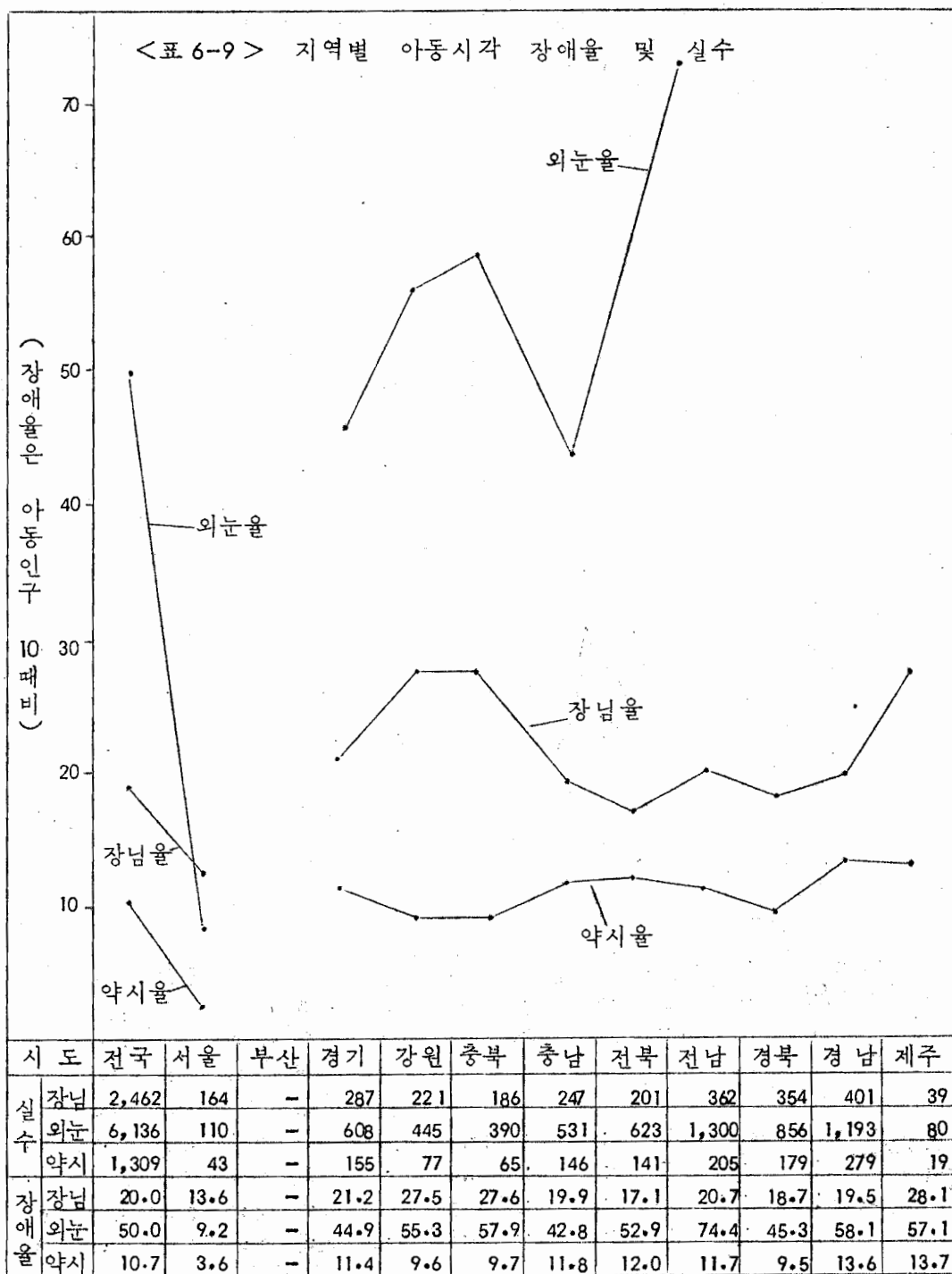
따라서 쌍안에서는 전국율의 2.46배가 되고, 완전맹에서는 2.78배, 약시는 1.89배가 되어 총체적으로 15세층이 전국율 2배이상이란 계산이 된다.

거. 연령별 아동청각, 언어기능장애율은 표 6-18과 같다.

병어리의 장애율은 7세의 100대에서 점차 높아져서 17세에서 155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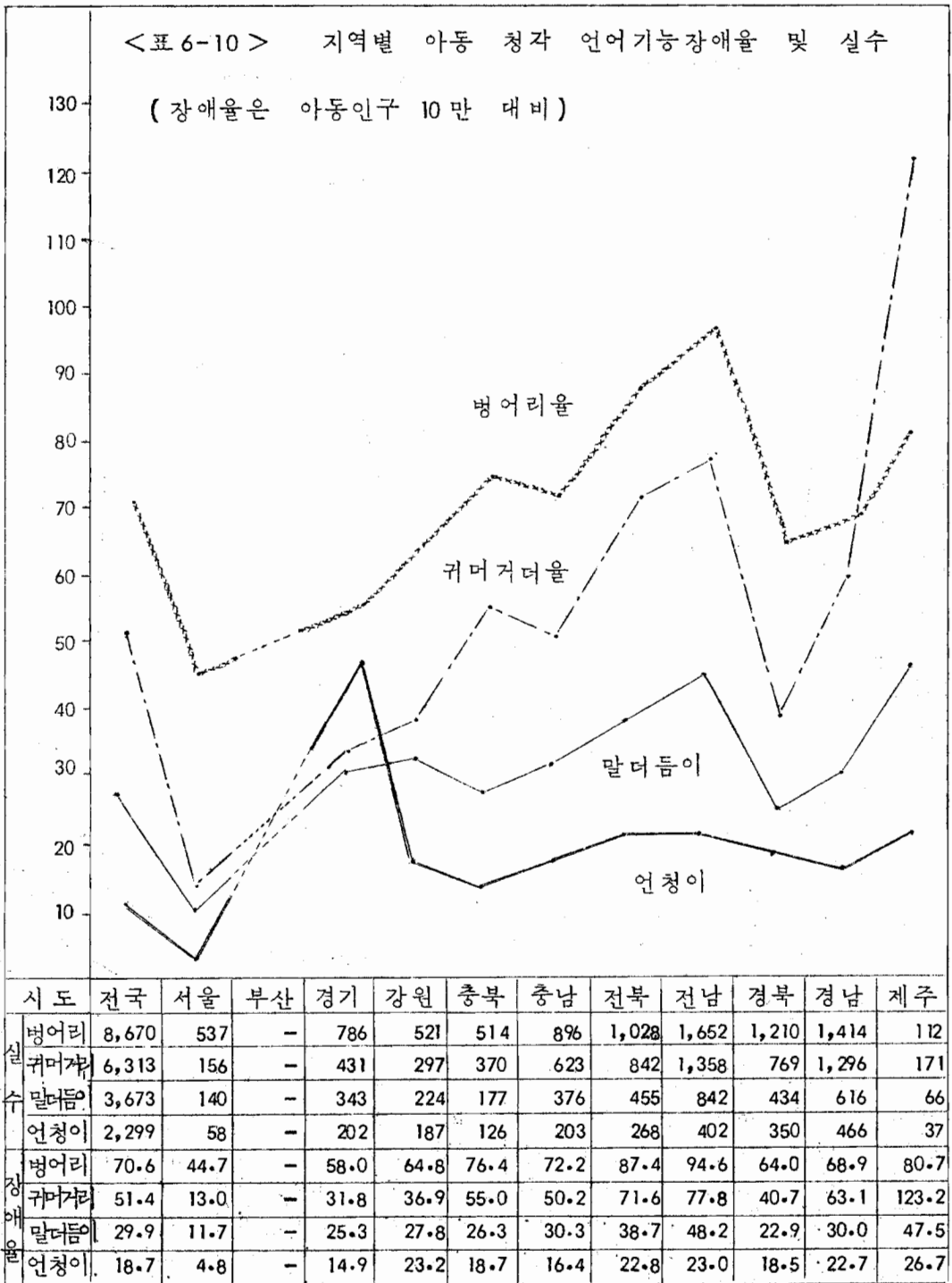
귀머거리는 10세의 70.1부터 기복을 거쳐 15세의 127.5에 이르고 기후 감소하여가고 언청이는 15세의 25.7을 피-크로 하고 대체로 평준화되어 각 연령층에 분포되고 있다.

너. 연령별 아동정신장애율은 표 6-19와 같다. 정신장애율은 모다 경향을 같이하는데 15세~18세간이 아주 높다. 전국



<표 6-10> 지역별 아동 청각 언어기능장애율 및 실수

(장애율은 아동인구 10만 대비)



聾啞의 全國的障礙率은 70.6이며 全南 94.6 全北 87.4 이고 聾의 全國的障礙率은 51.4이며 濟州道 123.2 全南 77.8이다.

말더듬이는 全國的障礙率이 29.9이며 全南 48.2 濟州道 47.5 이고 언청이는 全國的障礙率이 18.7 濟州道 26.7 江原道 23.2 이다.

⑨ 地域別 兒童 精神障礙는 表 6-11 와 같다.

精神障礙에는 精神薄弱, 精神病, 癇疾 등을 包含한다. 實數에서 精神薄弱이 2,228件으로 가장 많고 精神病과 癇疾이 各各 1,087, 1,811件이다.

精神薄弱은 慶南 448, 全南 431로서 이 2道가 全體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癇疾은 全南 302, 京畿 268件이고 精神病은 全南 256 慶南北이 各各 155件이다.

障礙率로서는 精神薄弱은 全國的으로 18.1 江原道와 濟州도가 41.1이다. 癇疾은 全國的으로는 14.7 濟州도가 42.5로 다른 地域에 比하여 뛰어나서 높다. 精神病은 全國的으로는 89 濟州도가 23.1로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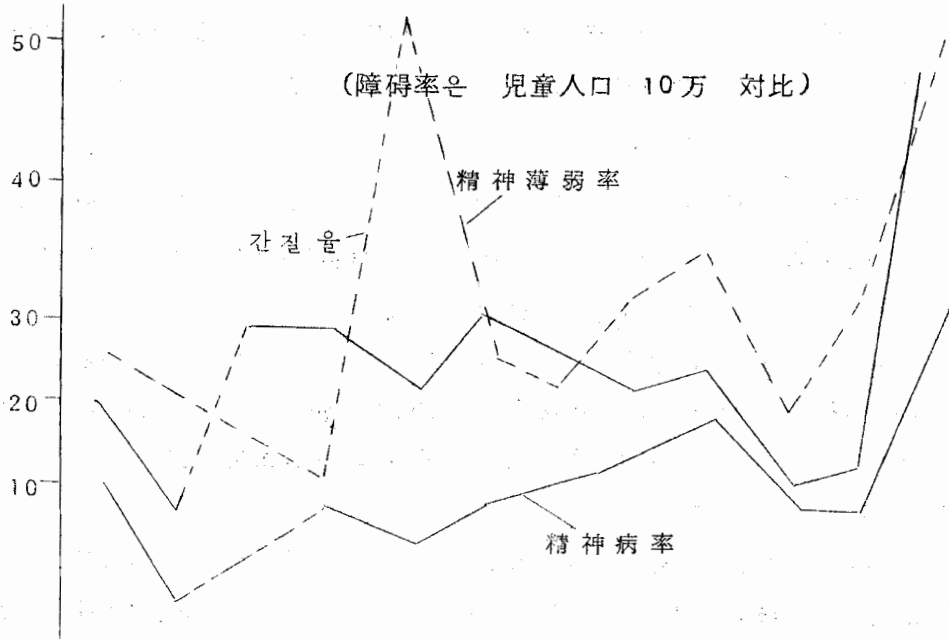
여기서 注目을 끄는 것은 精神障礙率이 全國的으로 41.7인데 濟州도가 106.7로서 2.6倍의 強勢인 事實이다. 精神薄弱의 경우 그 障害原因은 全國的으로 先天的 40%, 病後 42.8% 其他 17.2%이며 精神薄弱의 性別件數는 男子 1,468件, 女子 760件인데 그 障害原因은 男子의 경우 發病後가 41.0%이고 先天的이 40.6%이고 女子의 경우 病後가 45.5% 先天的이 38.8%가 되어 있다. 女子의 경우 病後發生이 4.5%나 많다는 結論이다.

江原道와 濟州道の 精神薄弱障礙率은 各各 41.1인데 江原道の 發生原因은 先天的 42.1%, 病後 37.7%이고 濟州도는 先天的 28.1% 病後 59.6%가 되어 있다.

같은 精神薄弱의 發生原因에서 濟州道와 江原道가 아주 相反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그 理由는 不分明하다. (表 6-12 参照)

그런데 精神障碍에 있어서 考慮할 것은 이 原則의 調査에서는 그 対象者를 음폐하려는 一般的 傾向이 있다는 事實이며 特히 都市나 知識層이나 保守的 傾向을 가진 사람에 많을 것이라는 推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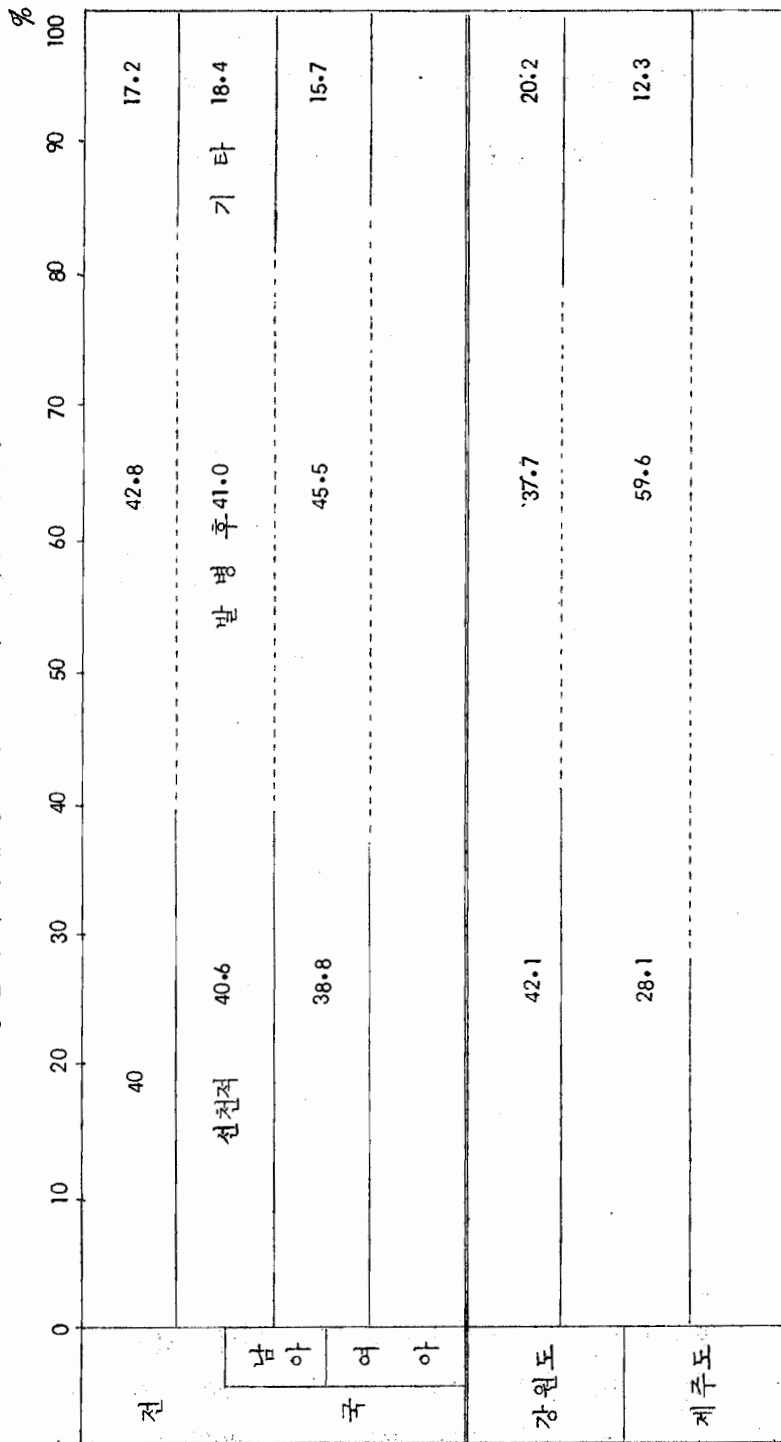
表 6-11 地域別兒童精神障碍率 및 実数



시	도	全国	서울	釜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实数	精神病	1,087	22	—	110	41	56	120	137	256	157	156	32
	癇疾	1,811	92	—	268	118	142	230	187	302	172	241	59
	精神薄弱	2,228	190	—	155	114	121	199	255	431	258	448	57
障碍率	精神病	8.9	1.8	—	8.1	5.1	8.3	9.7	11.6	14.7	8.3	7.6	23.1
	癇疾	14.7	7.7	—	19.8	14.7	21.1	18.5	15.9	17.3	9.1	11.7	42.5
	精神薄弱	18.1	15.8	—	11.4	41.1	18.0	16.0	21.7	24.7	13.6	21.8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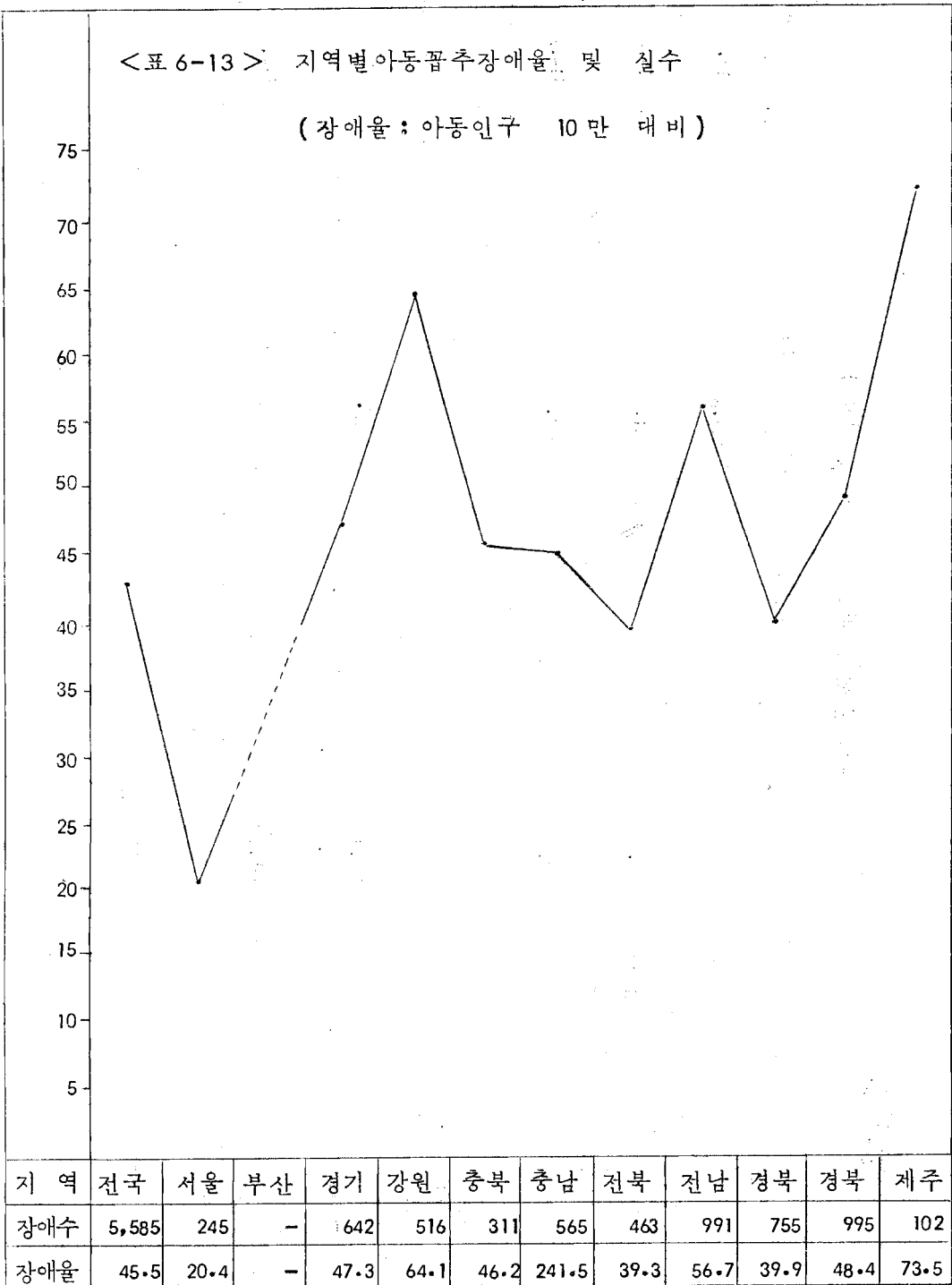
<표 6-12>

정신박약아발생원인비교 (지역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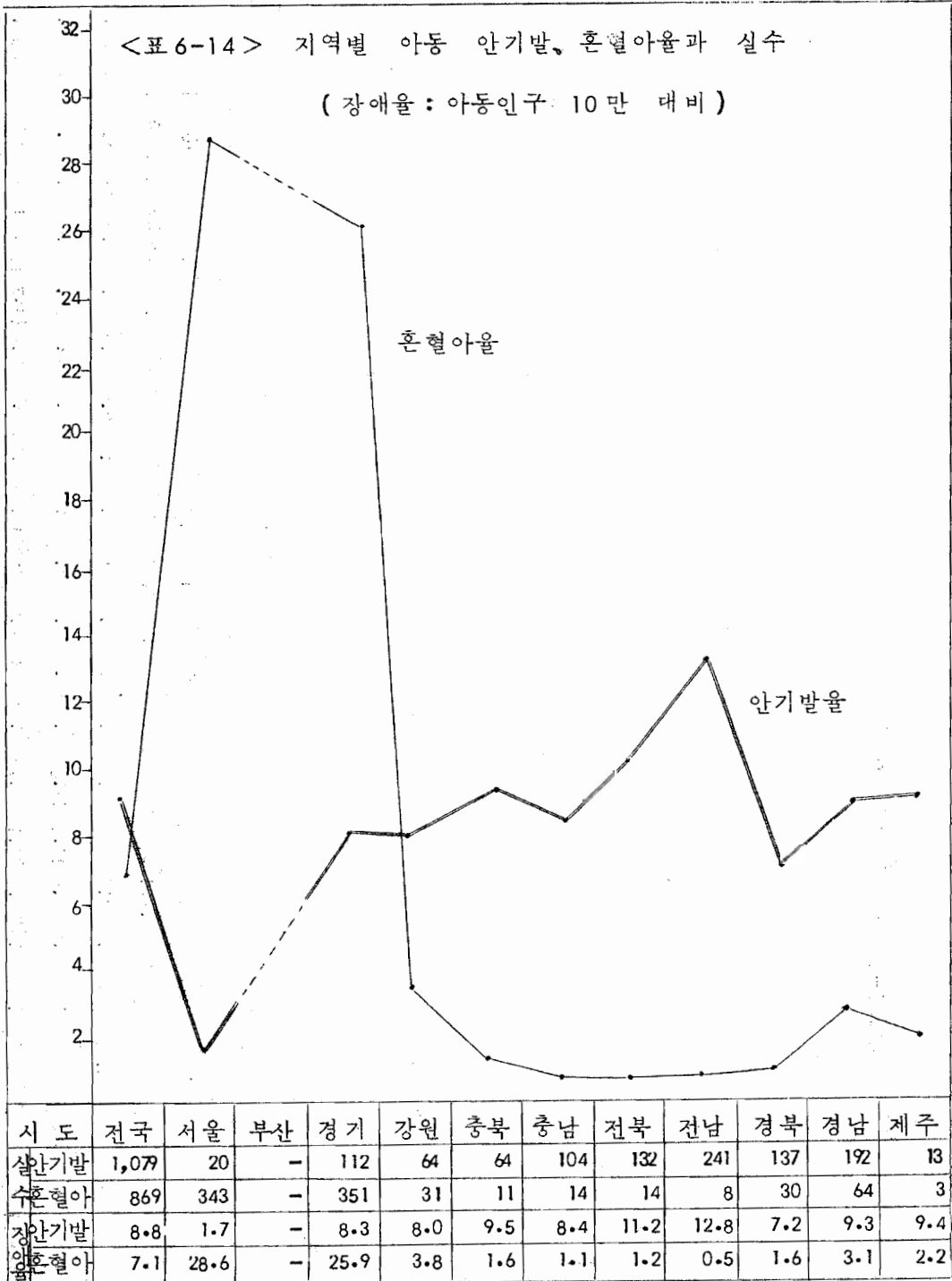
<표 6-13> 지역별 아동 꿈추 장애율 및 실수

(장애율 : 아동인구 10 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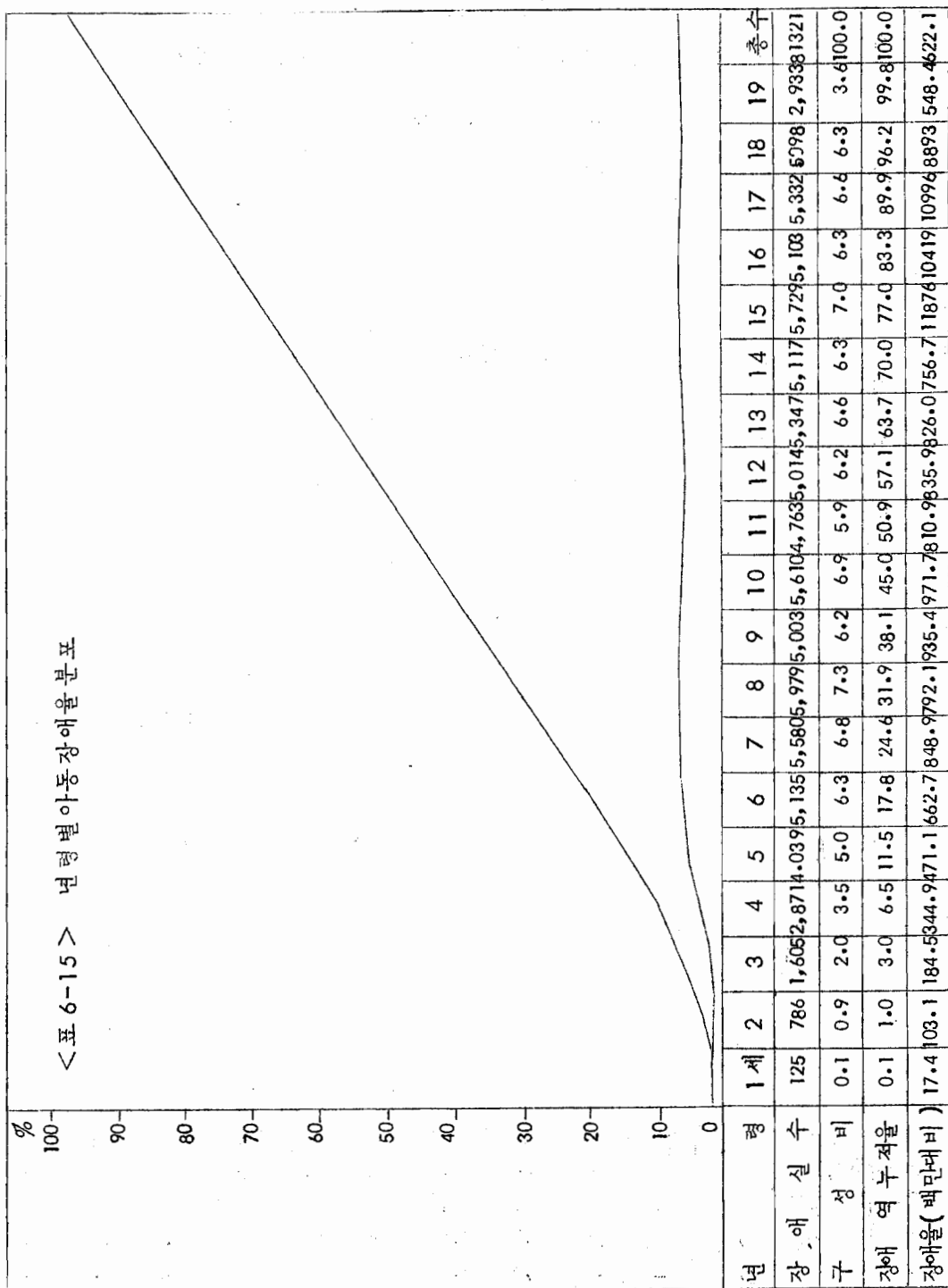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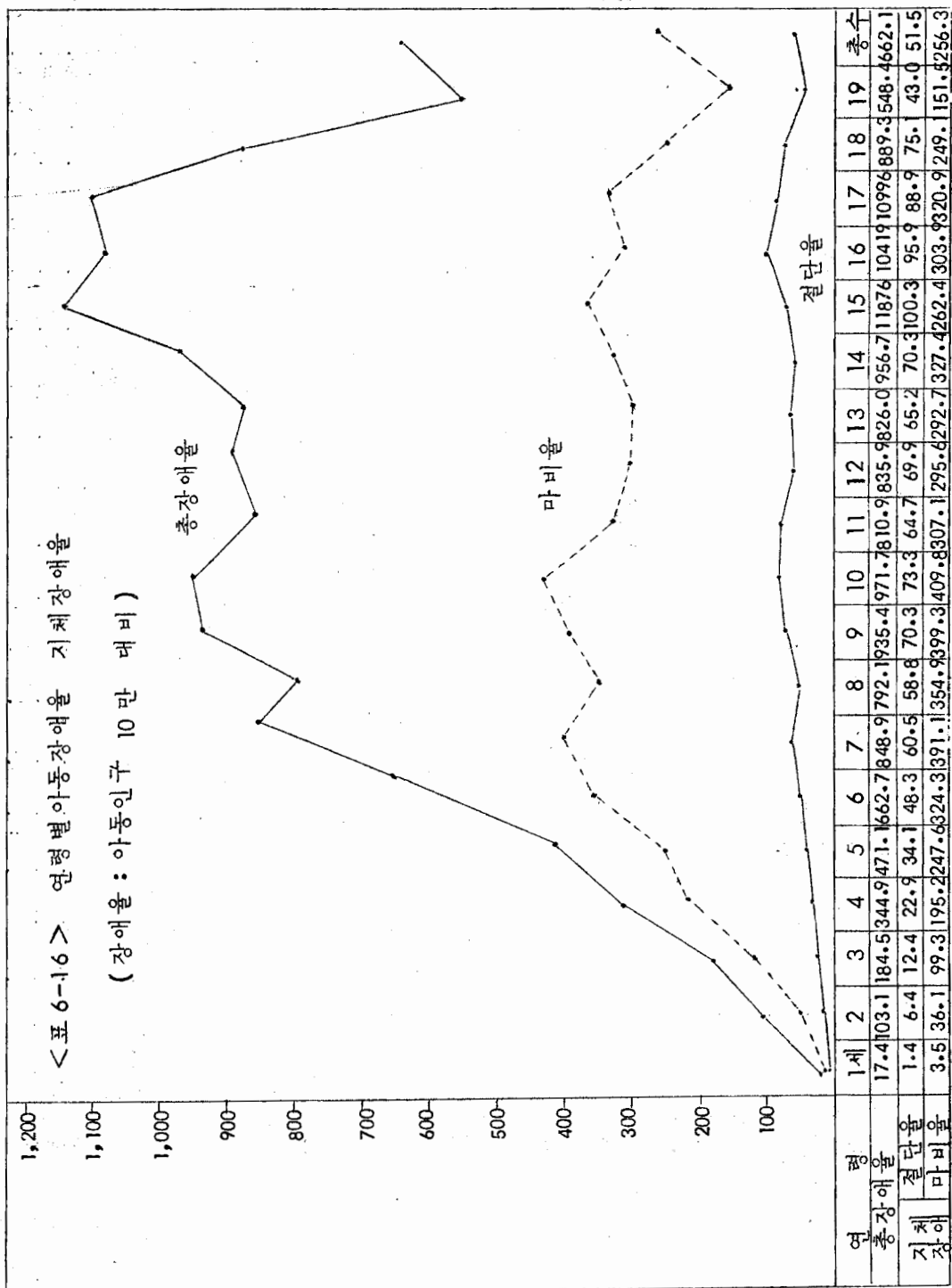
<표 6-14> 지역별 아동 안기발, 혼혈아율과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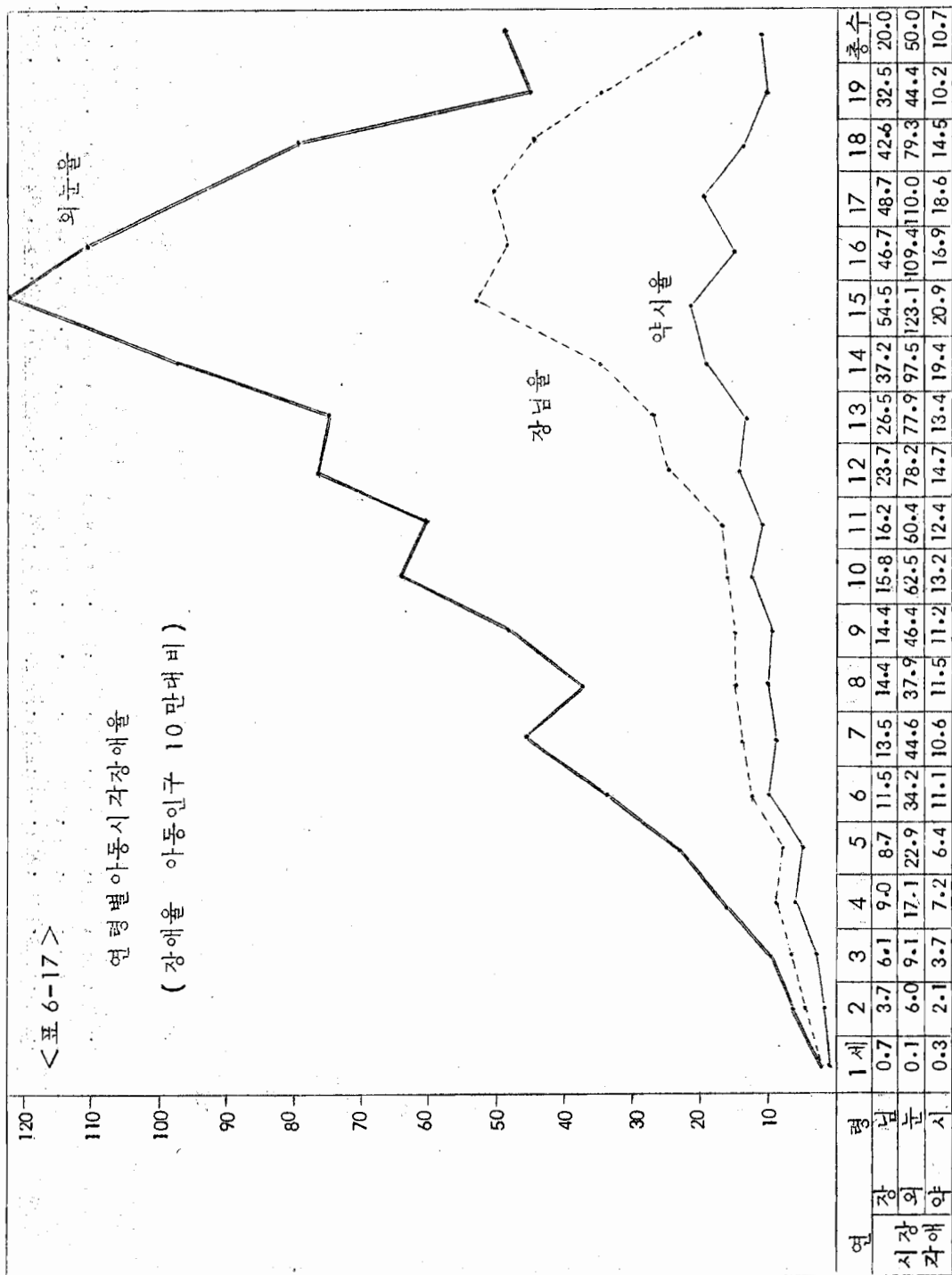
(장애율 : 아동인구 10 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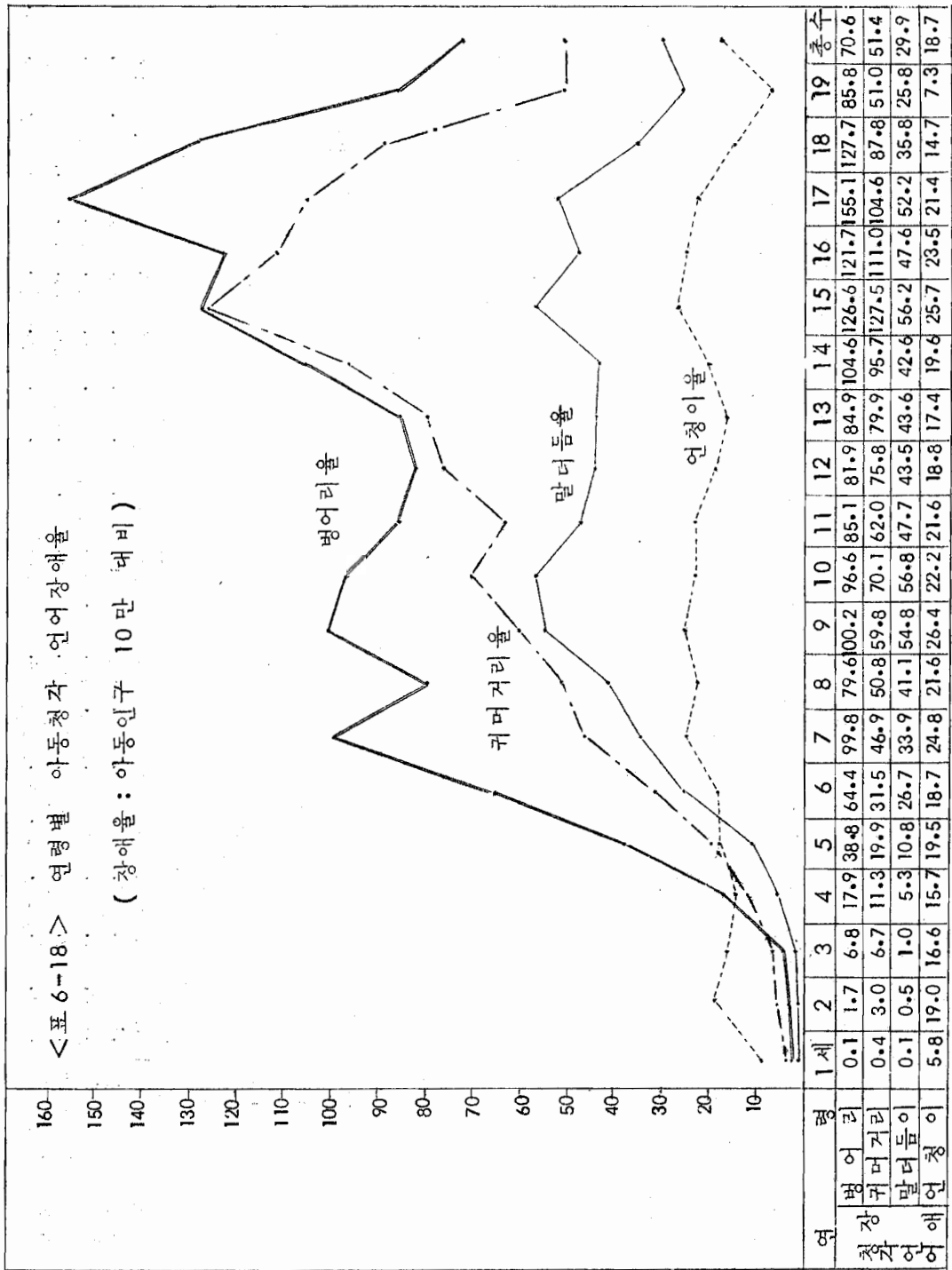


<표 6-15> 연령별 아동장애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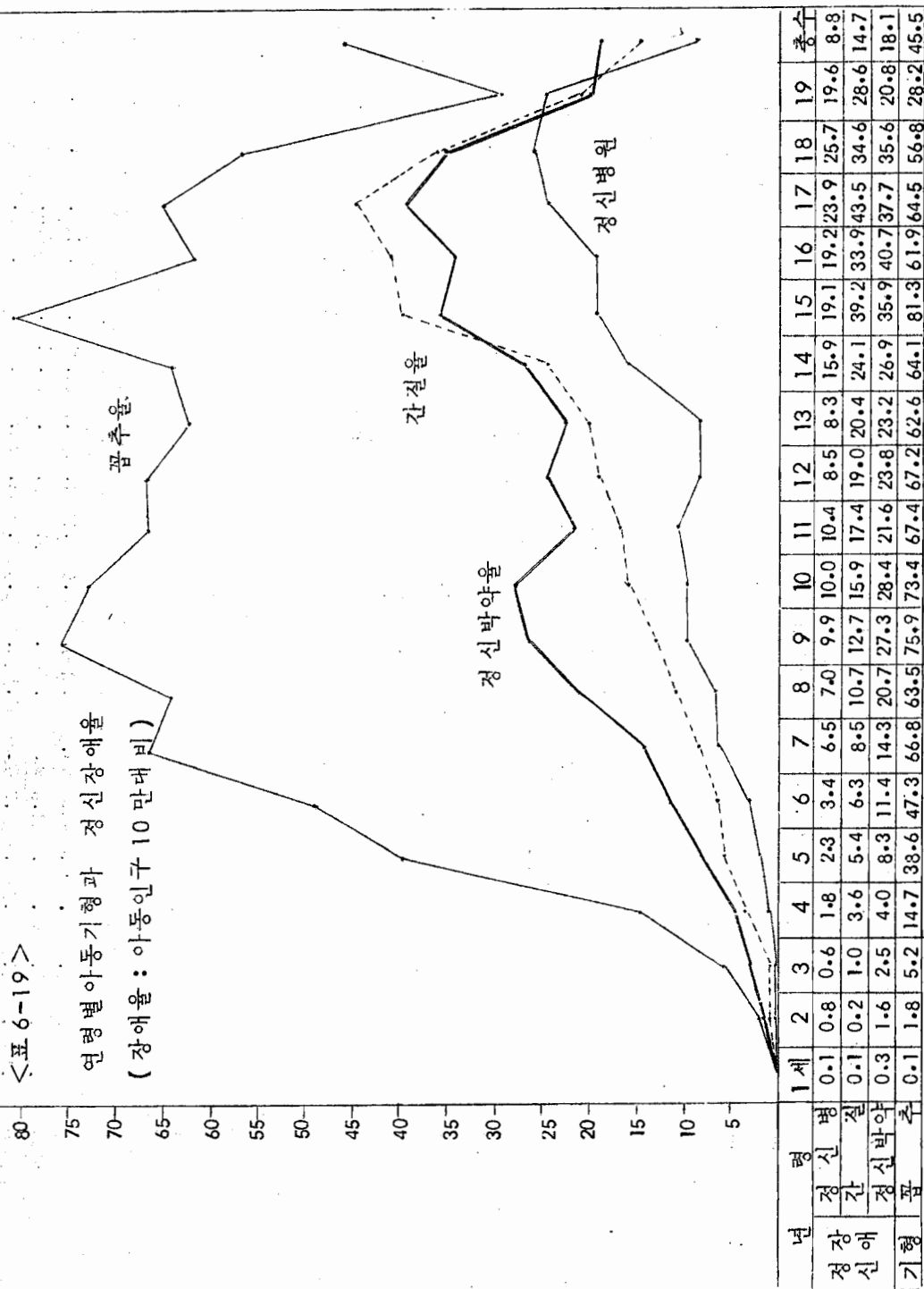






<표 6-19>

연령별 아동기형과 정신장애율
(장애율 : 아동인구 10 만대 비)



울로서 정신병 8.8, 간질 14.7, 정신박약 19.1 인데 비하여 17 세구
간은 정신병 23.9, 간질 43.5, 정신박약 37.7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장애율은 17~18 세를 피-크로 하고 17 세전은 1 세
부터 점증하고 18 세후는 급강하하고 있다.

며 연령별 아동기형과 혼혈아율은 표 6-19, 6-20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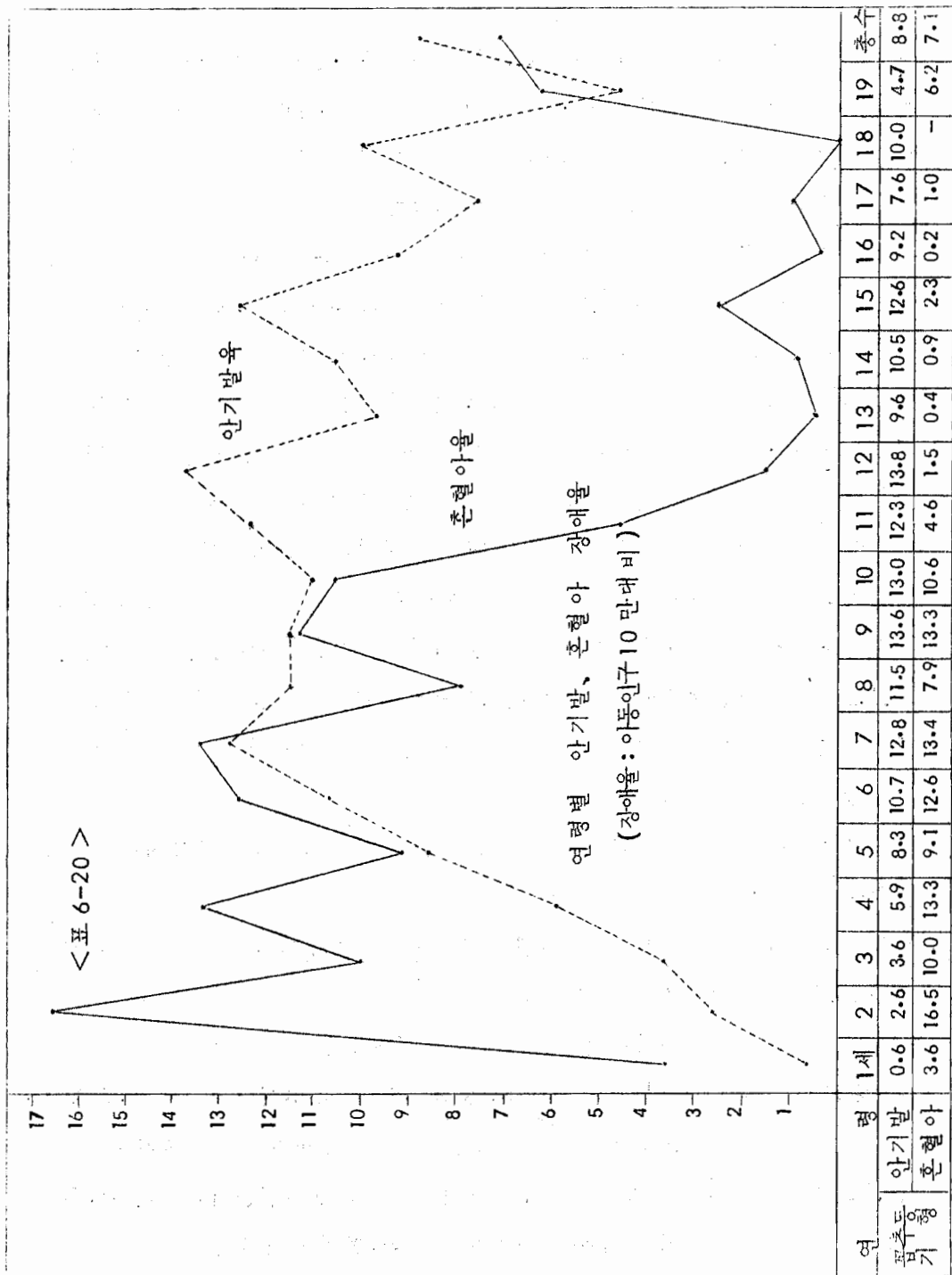
꿈추는 1~6 세간에 그 율이 급증하여 0.1~47.8 에 이르고
기후 약간의 기복을 가지고 15 세의 81.3 의 피-크에 이르며
점차 감소하여 18 세의 56.8 에 이르고 있다. 즉은
7 세의 12.8 에서 12 세의 13.8 에 이르고 기후 점감하고 혼혈
아는 2~9 세에 집중되어 있다. 최고율이 16.5 이다.

러 아동장애발생상황은 표 6-12 과 같다. 총아동장애로서는
선천적인 것이 31.1 % 발병후가 46.6 % 상해가 11.7 %, 기타
가 10.6 %이며, 장애별로는 마비, 완전맹, 쌍안, 농자, 정신병,
간질, 꿈추등은 발병원인이 주도적이고 전단은 상해, 농아, 언청이
즉 혼혈아는 선천적이 주원인이며 약시와 정신박약은 선천적 발
병이 경합원인이 되고 있다.

며 기타 장애아동의 생계정도 교육정도 및 그 보호자의 요
당사항은 표 6-22 와 같다.

생계정도에서는 하류가 82.5 %이고 중류가 13.1 %이며 하류는
1.8 %, 기관수용자가 2.6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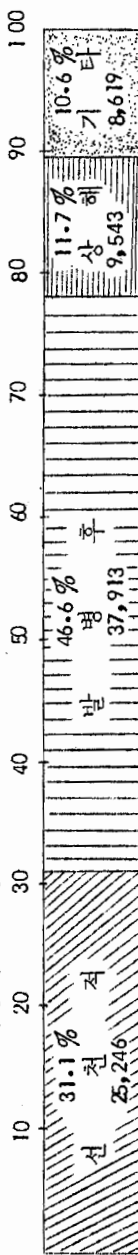
교육정도는 점자해득이상이 특수학교를 합하여 27,539 로서
33.8 %이고 한글 불해득이 47,533 전으로 58.4 %이며 7.7 %가
한글 해득자이다. 교육정도에서 관심사는 특수학교가 생계정도
상, 중, 하에 따라서 각각 2 단층장애자의 1.7 %, 1.4 %, 0.7 %
인데 반하여 한글 불해득은 중류가 50.9 %에 비하여 상류가
53.5 %라는 사실이다.



< 丑 6-21 >

아동장애발생원인

구생



(장애별주위인)

단	상해
만	만병
마	만병
장	만병
의	만병
악	신친적만병
시	신친적
리	만병
귀머거리	만병
정신	만병
간질	신친적만병
바	신친적
말더듬이	만병
언청이	만병
꿈	상해
안기판	만병
기타현악기	신친적

<표 6-22> 장애아동의 생계정도, 교육정도 및 보호자의 요망사항

생 활 정 도		총 수			
		계	하	중	상
수 육 정 도	계	81,321	17,156	10,625	1,465
	고 재 학	255	121	104	15
	중 졸	374	280	80	7
	중 재 학	2,078	1,275	603	78
	국 졸	6,267	5,263	833	99
	국 재 학	16,986	13,457	2,746	350
	점 자 해 득	422	196	27	8
	한 글 해 득	6,249	5,365	678	100
	한 글 불 해 득	47,533	40,746	5,406	783
	특 수 학 교	1,157	453	148	25
보 호 자 요 망 사 항	계	89,411	73,939	11,503	1,564
	치 료	58,947	49,865	7,587	1,002
	요 양	2,695	2,222	325	68
	수 용	1,522	1,258	113	22
	양 자	482	244	20	8
	취 학	8,514	6,797	1,139	129
	직 장	3,621	3,085	391	34
	취 업 보 도	4,743	3,785	522	53
	보 장 구	2,535	2,044	317	34
	요 망 무	6,352	4,639	1,089	214

백 분 율 (구성비)					
기 관	계	하	중	상	기 관
2,075	100.0	100.0	100.0	100.0	100.0
15	0.3	0.2	1.0	1.0	0.7
7	0.5	0.4	0.8	0.5	0.3
122	2.6	1.9	5.7	5.3	5.9
72	7.7	7.8	7.8	6.8	3.5
433	20.9	20.0	25.8	23.9	20.9
191	0.5	0.3	0.2	0.5	9.2
106	7.7	8.0	6.4	6.8	5.1
598	58.4	60.7	50.9	53.5	28.8
531	1.4	0.7	1.4	1.7	25.6
2,045	100.0	100.0	100.0	100.0	100.0
493	65.9	67.4	66.0	64.1	20.5
80	3.0	3.0	2.8	4.3	3.3
129	1.7	1.7	1.0	1.4	5.4
210	0.5	0.3	0.2	0.5	8.7
449	9.5	9.2	9.9	8.2	18.7
111	4.1	4.2	3.4	2.2	4.6
383	5.3	5.1	4.5	3.4	15.9
140	2.8	2.8	2.8	2.2	5.8
410	7.1	6.3	9.4	13.7	17.1

보호자 요망 사항은 치료가 65.9%이고 취학이 9.5% 직업관계가 9.4%이며 요망이 없는 것도 7.1%나 된다. 생계정도와 관련시켰을 경우도 하류나 중, 상류나 별로 상위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제 48장 1966년의 장애조사

보건사회부는 1966년 5월 1일 현재로 전국 장애자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그 조사요원과 방법은 '61년의 장애아동조사에 준하되 그 연령층을 전인구까지 확대하였다.

그 조사표는 표 7-1과 같다. 이 조사표의 내용은 1961년의 장애아동조사표와 대동소이하다. 서로 상이한 점은 1년조사에서는 생년월일을 조사하여 연령을 정한 점, 마비 및 불구의 능력정도를 조사한 점, 기형에서 꼽추와 족만 조사한 점, 혼혈아의 요망을 조사하지 않은 점, 장애시기를 조사일 현재로 장애경과기간으로하여 조사한 점, 장애아의 부모관계를 조사한 점, 보장구에 대하여 교부기관이나 장비년도를 조사하지 않은 점, 생활정도를 호별세 등급으로 한 점, 장애아에 대한 보호자의 요망을 조사한 점, 년금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다.

1. 장애자 실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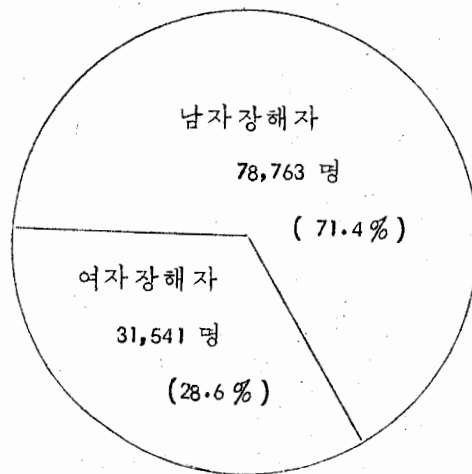
장애자의 실인원은 110,304 명이고 남자 장애자는 78,763명 여자 장애자는 31,541 명으로 그 구성비는 남자 71.4%, 여자 28.6%이다.

지역별로는 시부 29,224명, 군부 81,080 명으로서 구성비는 시부 26.0%이고 군부 74.0%이다. 장애

장애율은 인구 10 만대 비로 전국적으로는 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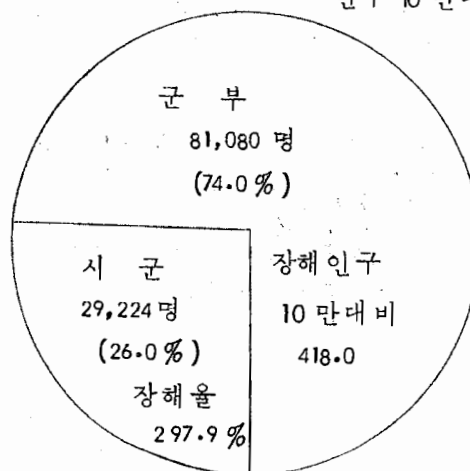
<표 7-2> 장애인 아동구성비
성 별

계 110,304 명



<표 7-3> 장애인 구성비
지역별

계 110,304 명 전국적 장애인 382.4
인구 10 만대 비



身體精神 및 社會的障害者調査票

表 7-1

統里調査票一連番號 第 號		二重以上障害者 (校 內 校 外)		1966 年 5 月 1 日 現在	
特別市 市 道		市 郡 街 里 洞		番 地	
性 別		年 齡		滿 歲	
1. ☐ 男		1. ☐ 男		1. ☐ 男	
2. ☐ 女		2. ☐ 女		2. ☐ 女	
障 害 者 姓 名		保 護 者 姓 名		印 度 印 度	
一. 障害種別		二. 障害原因		六. 障害者教育程度	
(1) 肢 體		1. ☐ 先天的 (出生時부터)		1. ☐ 大學專門卒業	
1) 切 斷		2. ☐ 發病後		2. ☐ 高等學校	
i. 上 肢		3. ☐ 戰 後		3. ☐ 中 學 校	
1. 肩甲部		4. ☐ 事 故 (傷害)		4. ☐ 國民學校	
2. 中腕部		5. ☐ 其 他 (不知中)		5. ☐ 國民學校在學	
3. 手根部		三. 障害時期		6. ☐ 한글을解得한다	
1. 大腿部		1. ☐ 8.15解放前		7. ☐ 한글을고른다	
2. 膝蓋部		2. ☐ 8.15解放後 - 6.25事變前		8. ☐ 點字을解得한다	
3. 足根部		3. ☐ 6.25事變中		9. ☐ 其他特殊學校	
2) 痲痺 및 不具		4. ☐ 6.25事變後			
1. 上肢部		四. 障害治療		七. 障害者 現職業	
2. 下肢部		(1) 現障害을 爲한 治療關係		어디서 무슨일을 하는지 具體的으로	
3. 體幹部		1. ☐ 治療中이다		(1) 場所 ()	
1. 兩眼盲		2. ☐ 治療를받았다		(2) 職種 ()	
2. 片眼盲		3. ☐ 貧困하여 못받았다			
3. 不完全盲 (兩眼)		4. ☐ 治療를하지않았다		八. 障害者 職業補導	
2. 聾啞		(2) 主로 障害을 治療한 機關 ((1)의 1.2)		(1) 障害再活을 위하여	
1. 聾		1. ☐ 病院		1. ☐ 職業補導中이다	
2. 啞		2. ☐ 漢醫院		2. ☐ 職業補導을받고就業中이다	
(3) 精 神		3. ☐ 病院院 및 漢醫院 (併用)		3. ☐ 無職中이다	
1. ☐ 精 神 病		4. ☐ 靜養院		4. ☐ 職業補導을받고싶다	
2. ☐ 癲 癇		5. ☐ 其 他		5. ☐ 職業補導의必要가없다	
3. ☐ 精 神 薄 弱		五. 障害補裝具關係		(2) 職業補導機關 ((1)의 1.2.3)	
(4) 言 語		(1) 裝 備		1. ☐ 保健社會部傘下	
1. ☐ 甚한 말더듬이		1. ☐ 義手足을하였다		2. ☐ 援護処傘下	
2. ☐ 언청이 (嚙裂)		2. ☐ 義眼을하였다		3. ☐ 文教部傘下	
(5) 其他畸形		3. ☐ 開眼手術을하였다		4. ☐ 私設機關	
1. ☐ 平手 (二分脊柱)		4. ☐ "클렌" 또는 "브레이스"를 하였다		(3) 職業補導科目 및 期限 ((1)의 1.2.3)	
2. ☐ 翻 足		5. ☐ 補聽器를하였다			
3. ☐ 其 他		6. ☐ 其 他 ()			
(6) 社 會 的		7. ☐ 못하였다			
1) 混 血 兒		8. ☐ 補裝具가必要없다			
8.15解放後 外軍이 駐屯하면서 外 國人과의 關係로 出生한 混血兒를 말한다.		(2) 交付機關		九. 障害者家口生計程度	
1. 皮膚色 ☐ 白 色		1. ☐ 保健社會部 關係		(1) 生計程度	
2. ☐ 黑 色		2. ☐ 援護処關係		1. ☐ 下 級	
3. ☐ 其 他		3. ☐ 其他政府關係		2. ☐ 中 級	
2. 混血兒父의 國籍 ()		4. ☐ 外國援助		3. ☐ 上 級	
3. 混血兒에 對한 要望		5. ☐ 私設援助		4. ☐ 機關에 收容中	
1. ☐ 外國入養		6. ☐ 赤十字社關係		(2) 年金受給關係	
2. ☐ 國內入養		7. ☐ 自費調達		1. ☐ 軍警年金	
3. ☐ 收容保護		(3) 裝備年度		2. ☐ 公務員年金	
4. ☐ 就 學		19 年		3. ☐ 一般社會年金	
5. ☐ 職				4. ☐ 不 給	

※ 二種以上の 障害者는 그 障害種類別數에 따라 調査票를 各 作成한다.

2. 장애인 중장해 상황

장애인의 중장해상황은 표 7-4 와 같다. 전국총괄로서
단순장애자 108,938 명, 남자 77,726 명, 여자 31,212 명이고
2 중장해자 1,331 명, 남자 1,016 명, 여자 315 명 이며 3 중장해
자 35 명, 남자 21 명, 여자 14 명이다.

양성비는 단순장애자 98.8%, 2 중장해자 1.2%, 3 중장해자
0.0%이다. 지역별로는 단순장애의 경우 28,693 명이 도시이고
군부는 80,245 명이며 2 중장해는 도시 421 명, 군부 810 명이다.

$$\frac{\text{시부 2 중장해자}}{\text{군부 2 중장해자}} = \frac{52}{100}$$

이다.

3. 장애인종별과 양성비 및 지역별분포 장애인종별 장애인수와
양성비 및 도비간의 분포는 표 7-5 와 같다.

<표 7-4>

중 장 해 상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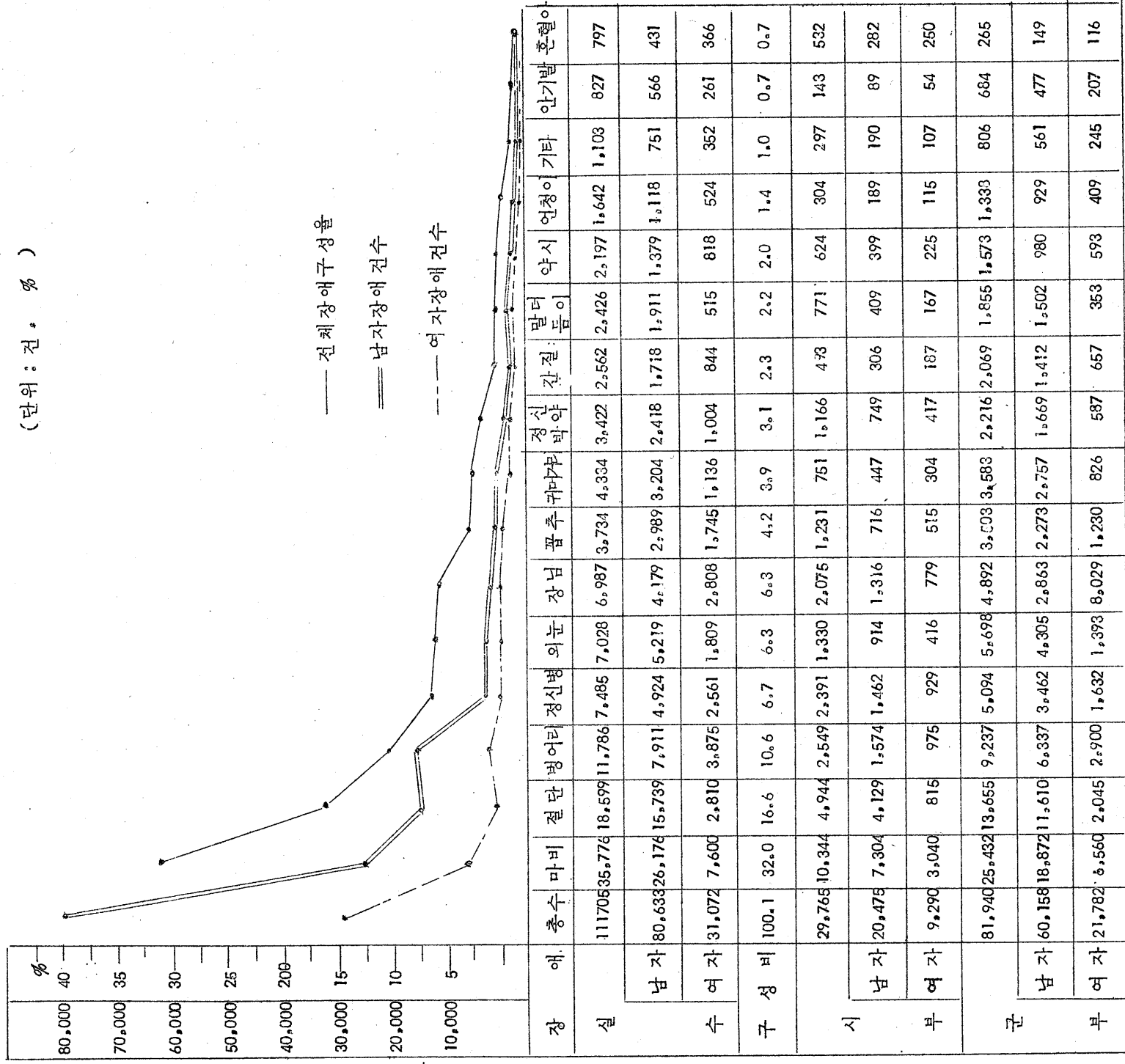
(단위: 인)

	총 수			단 순			2 중			3 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 수	110,304	78,763	31,541	108,938	77,726	31,212	1,331	1,016	315	35	21	14
총수양성	100.0			98.8			1.2			0.0		
시 부	29,224	20,082	9,142	28,693	19,706	8,988	421	371	150	10	6	4
군 부	81,080	58,681	22,399	80,245	58,021	22,224	810	645	165	25	15	10

표 7 - 5

장애종별과구성비및지역별분포

(단위: 전. %)



장해수는 장애인 110,304 명에 2 중장애 1,331 3 중장애 35 를 합친 111,705 전이다.

각단위별 장애인수는

1. 마비 35,777 건 32 %

2. 절단 18,599 " 16.6 %

3. 농아 11,786 " 10.6 % 이며 정신병쌍안, 안전맹이 6 %대 꿈추, 귀머거리가 4 %대, 정신박약이 3 %대, 감각, 말머듬이 약시가 2 %대, 기타장애가 각각 1 %대이다.

도비간의 장애인분포에서는 도시에서는 마비, 절단, 농아, 정신병까지는 전국적 순위와 같으나 완전맹이나 정신박약의 순위가 전국적인 경우보다 앞서고, 농촌지역은 쌍안이나 농자의 순위가 변동되어있다.

장애종별의 지역별 분포는 표 7-3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북 15,556 건, 경남 14,276 건, 전남 13,266 의 순위이고 장애인율은 제주도 656.1, 전북 490.7, 강원도 465.8의 순위이다.

장애별 성별 작성 지수는 남자의 장애인수를 100.0 으로 할 때 여자의 지수는 표 7-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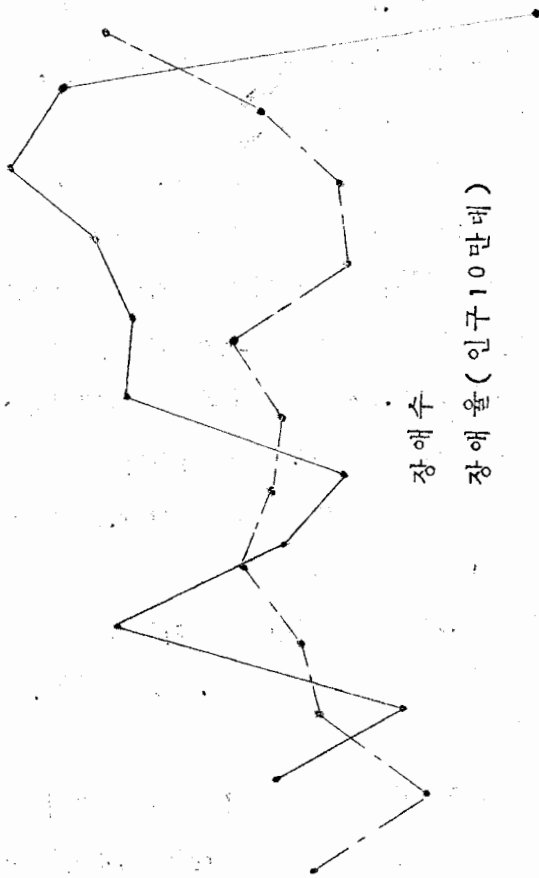
즉 총수로서는 여자지수 38.5 이고 가장 지수가 높은 것은 혼혈아로서 86.0 다음은 완전맹 67.2, 약시 59.4, 꿈추 58.5, 정신병 52.0 의 순위다.

장애별 장애율의 지역별 최고, 최저치는 표 7-8과 같다. 전장애율로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아서 전국장애율 382.4 에 비하여 651.1로서 +273.7 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 약 전국치보다 71.6 %의 고율을 보이고 있고 최저치로서는 서울특별시가 222.9로서 전국치에 비하여 -159.5 의 저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치의 58.3 %밖에 되지 않는다.

표 7-6 지역별 장애수와
(단위 ; 인구 10만대비) (장애수는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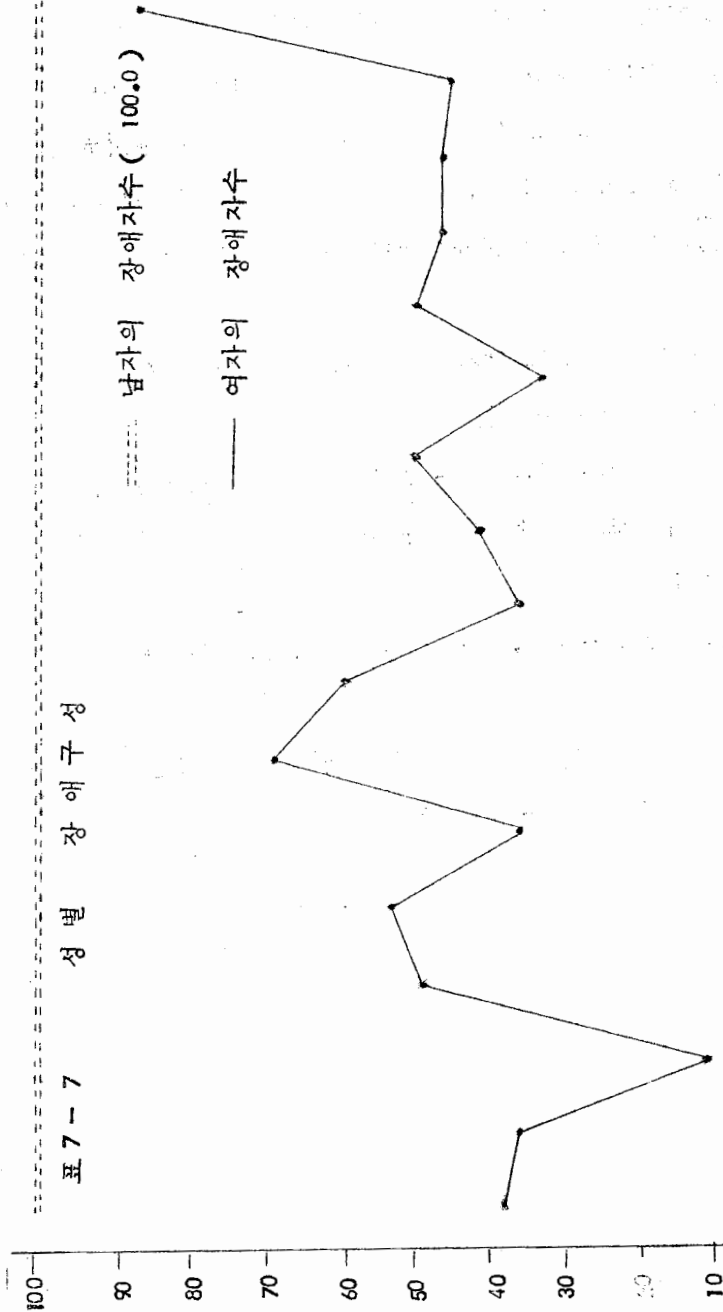
장애물 실 수

700	14,000
600	13,000
500	12,000
400	11,000
300	10,000
200	9,000
1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시	도	전	국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장	애	수	11705	8,432	5,294	12,557	8,535	6,690	12,455	12385	13266	15556	14276	2,209											
장	애	율	382.4	222.9	370.3	404.1	465.8	431.5	427.5	490.7	327.4	347.3	449.3	656.1											

표 7-7 성 별 장 애 구 성



총 수	38.5	36.6	11.1	49.1	52.0	34.7	67.2	58.5	35.8	41.3	48.8	31.9	59.4	46.5	46.4	45.6	86.0
정신병	52.0	49.1	58.5	35.8	41.3	48.8	31.9	59.4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원인	34.7	67.2	58.5	35.8	41.3	48.8	31.9	59.4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장	58.5	35.8	41.3	48.8	31.9	59.4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꿈	41.3	48.8	31.9	59.4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말머뭇	31.9	59.4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약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언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기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안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혼혈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46.5	46.5	46.4	45.6	86.0	45.6	46.4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는 433.2로서 최고치는 최저치보다 294.3 %의 교율을 보이고 있다.

설명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별로 장해복지시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각장해별로는 16개종목의 장해중 제주도가 지체절단, 마비, 완전맹, 약시, 농아, 농, 정신병, 정신박약, 말머듬이, 꼽추의 10종목에서 최고치를 차지하고 전북이 쌍안, 안기발, 기타의 3종목, 충남이 간질, 경기도가 혼혈아 경남 언청이의 각 1종목이다.

최저치로서는 정신병의 강원도, 간질의 부산, 충북의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이 차지하고 있다.

장해종별의 구성비는 표 7-5, 표 7-9와 같은데 마비, 절단, 농아등이 많어 이것들이 도합 약 60 %가 되며 시각장해까지 합하면 80.5 %가 되는 비중이다.

장해별, 지역별분포는 표 7-10, 7-11, 7-12, 7-13, 7-14 7-15 와 같다.

여러장해의 지역분포에서 제주도가 정신장해에 있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장애율이 높은 것은 주목된다.

표-7-8

장 해 율 비 교 (지역별)

단위 : 인구10만대비 인

	최 고 치			최 저 치			전 국	
	시 도 명	장해율	실 수	시도명	장해율	실 수	장해율	실 수
지체절단	제 주 도	102.5	345	서 울	39.8	1,513	63.7	18,559
지체마비	"	202.0	680	"	76.6	2,916	122.5	35,776
완 전 맹	"	50.5	170	"	15.3	581	23.9	6,987
쌍 안	전 북	39.2	989	"	7.5	287	24.1	7,028
약 시	제 주 도	17.8	60	"	3.5	132	7.5	2,179
농 아	"	62.1	209	"	15.2	578	40.4	11,786
농	"	27.9	94	"	4.8	183	14.8	4,334
정 신 병	"	56.7	191	강 원	20.3	372	25.6	7,485
간 질	충 남	13.1	383	부 산	4.2	60	8.8	2,562
정신박약	제 주 도	22.0	74	서 울	9.4	359	11.7	3,422
말더듬이	"	14.6	49	"	4.4	167	8.3	2,426
언 청 이	경 남	9.9	315	"	1.5	56	5.6	1,642
꿈 추	제 주 도	36.5	123	"	7.4	280	16.2	4,732
안 기 발	전 북	5.2	130	"	0.8	29	2.8	827
기 타	"	5.5	149	"	2.6	98	3.8	1,103
혼 혈 아	경 기	14.9	463	전남충북	0.1	3, 2	2.7	797
전 장 해	제 주 도	656.1	2,029	서 울	222.9	8,482	382.4	111,705

표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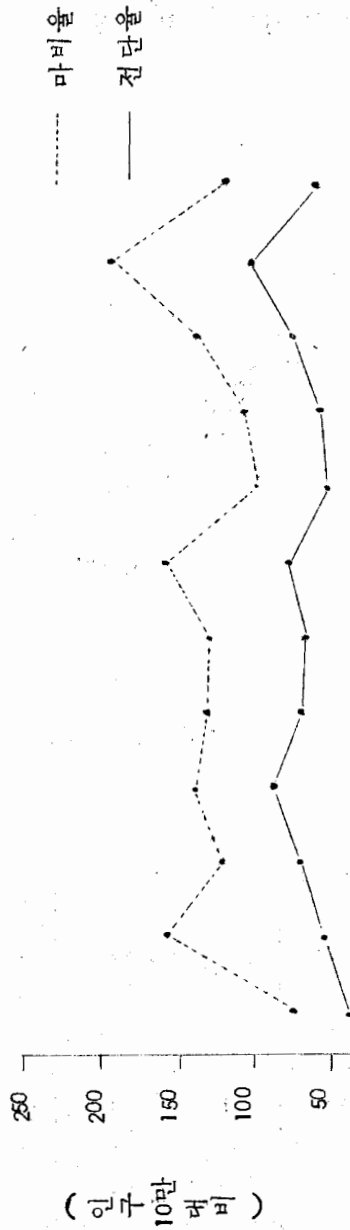
장 해 종 별 백 분 비

마 비 32.0 %			결 단 16.6 %	
			간 질	농 아 10.6 %
			2.3 %	
			말머듬이	
정신병			2.2 %	
쌍 안			4.2 %	혼혈아 (0.7 %)
완전맹			2.0 %	
약 시			3.9 %	
잔여	정 박	3.1 %	귀머거리	

표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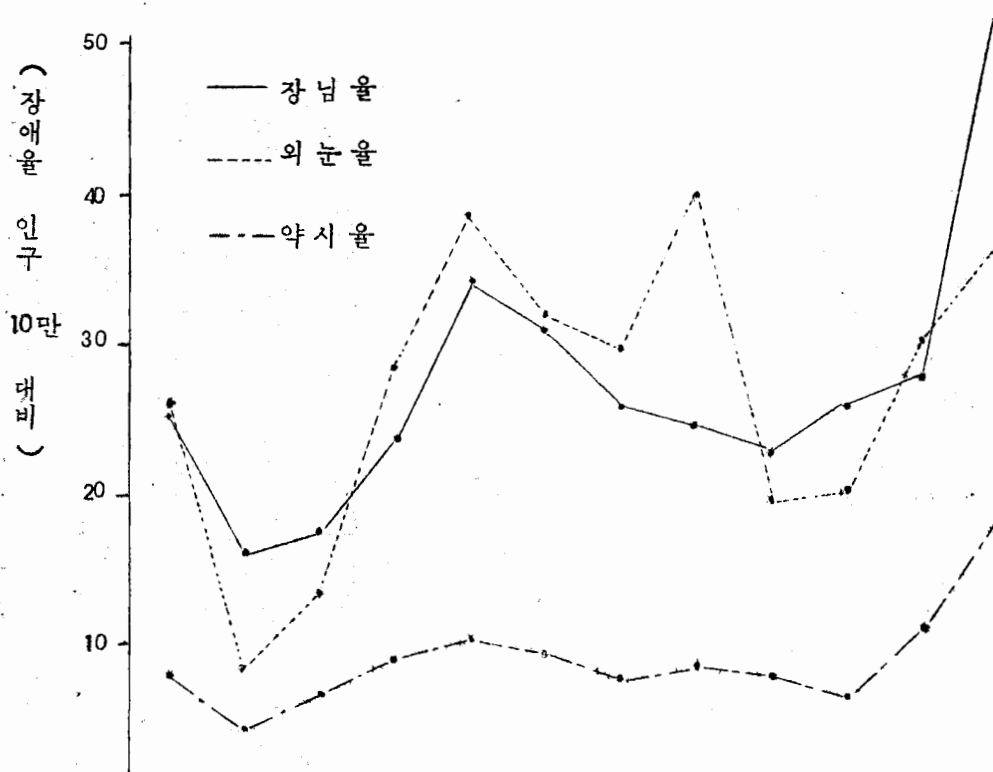
지역별 지체장애율 및 실수(절단, 마비)

단위 : {인구 10만대비
장애실수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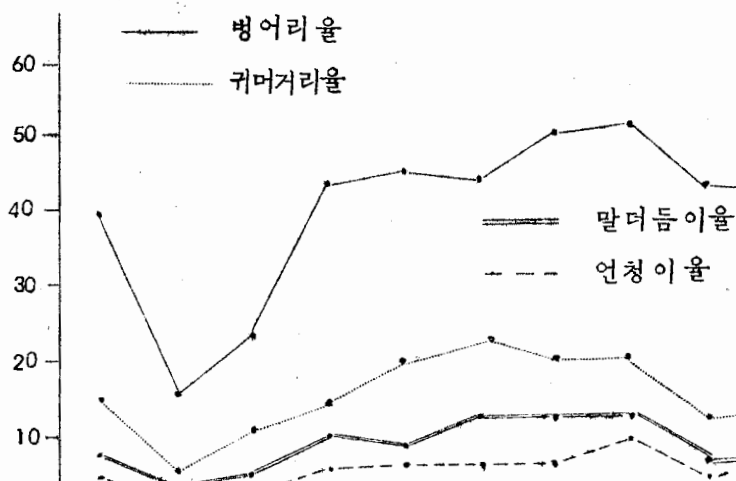
시	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
실 수	절 단	1,513	827	2,122	1,708	1,079	1,984	1,927	2,215	2,629	2,250	345	18,599
	마 비	2,916	2,263	3,773	2,543	1,975	3,864	4,121	4,086	4,994	4,561	680	35,776
장 애 울	절 단	39.8	57.8	68.3	93.2	69.6	68.1	76.4	54.7	58.7	70.8	102.5	63.7
	마 비	76.6	158.3	121.4	138.8	127.4	132.6	163.2	100.8	111.5	143.5	202.0	122.5

표 7-11 지역별 시각장애율및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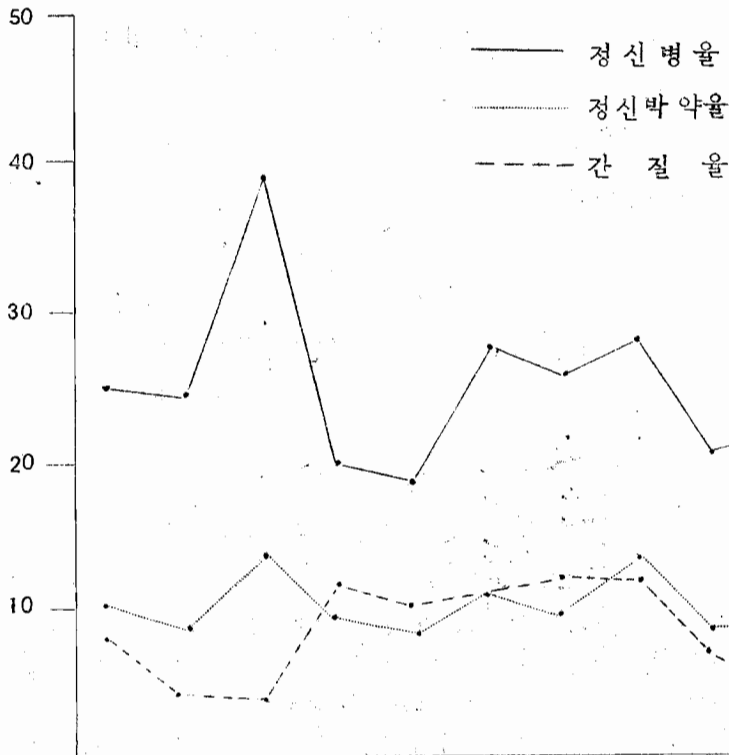
시	도	전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수 (개)	장님	6,987	581	237	716	616	461	713	608	896	1,128	861	170
	외눈	7,028	287	186	863	685	471	846	989	776	867	935	123
	약시	2,197	132	96	268	173	139	209	210	311	280	319	60
장애율 (%)	장님	23.9	15.3	16.6	23.0	33.6	29.7	24.5	24.1	22.1	25.2	27.1	50.5
	외눈	24.1	7.5	13.0	27.8	37.4	30.4	29.0	39.2	19.1	19.4	29.4	36.5
	약시	7.5	3.5	6.7	8.6	9.4	9.0	7.2	8.3	7.7	6.3	10.3	17.8

표 7-12 지역별 청각언어기능 장애율
(인구 10만 대비) 및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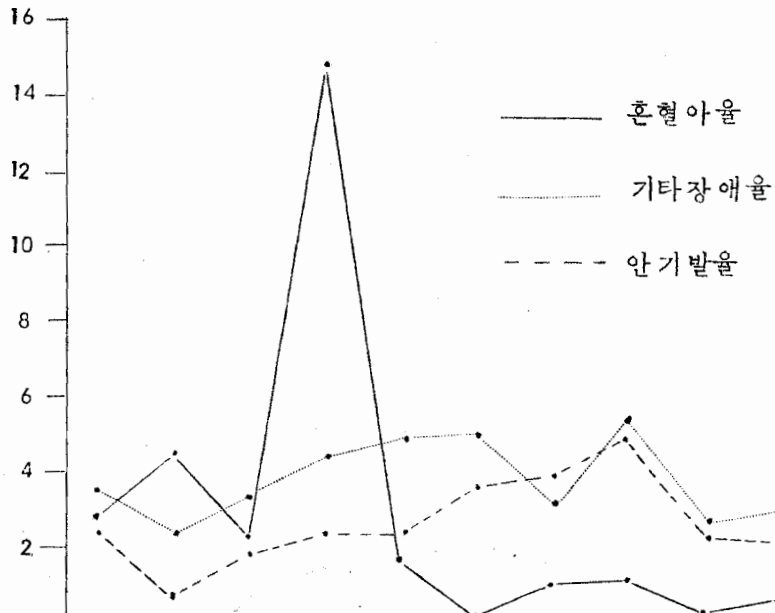
시	도	전	국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수 (개)	병어리	11,786	578	324	1,327	821	680	1,466	1,295	1,720	1,870	1,496	209											
	귀머거리	4,334	183	88	439	368	360	575	505	496	593	633	94											
	말더듬이	2,426	167	72	308	165	187	337	338	236	293	279	49											
	언청이	1,642	56	39	167	110	94	178	240	161	256	315	26											
장 애 율 (10만 대비)	병어리	40.4	15.2	22.7	42.7	44.8	43.9	50.3	51.3	42.4	41.8	47.1	62.1											
	귀머거리	14.8	4.8	6.2	14.1	20.1	23.2	19.7	20.0	12.2	13.2	19.9	27.9											
	말더듬이	8.3	4.4	5.0	9.9	9.0	12.1	11.6	13.4	5.7	6.5	8.8	14.6											
	언청이	5.6	1.5	2.7	5.4	6.0	6.1	6.1	9.5	4.0	5.7	9.9	7.7											

표 7-13 지역별 정신장애율 및 실수
(인구 10만 대비)



시		도	전	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수	정신병	7,485	962	565	661	372	442	772	720	380	1,009	911	191		
	간질	2,562	170	60	371	202	189	383	322	337	244	243	41		
	정신박약	3,422	359	209	329	177	185	325	364	403	464	533	74		
장애율 (10만 대비)	정신병	25.6	25.3	9.5	21.3	20.3	28.5	26.5	28.5	21.7	22.5	28.7	56.7		
	간질	8.8	4.5	4.2	11.9	11.0	12.2	13.1	12.8	8.3	5.4	7.6	12.2		
	정신박약	11.7	9.4	14.6	10.6	9.7	11.9	11.2	14.4	9.9	10.4	16.8	22.0		

표 7-14 지역별 안기발등 기형율 및 실수
(인구 10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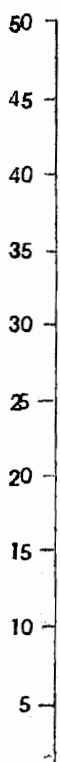


시	도	전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수 (개)	안기발	827	29	27	77	45	60	111	130	96	94	148	10
	기타	1,103	98	51	146	89	78	103	139	105	134	149	11
	혼혈아	797	171	31	463	33	2	32	32	3	17	10	3
장애율 (10만 대비)	안기발	2.8	0.8	1.9	2.5	2.5	3.9	3.8	5.2	2.4	2.1	4.7	3.0
	기타	3.8	2.6	3.6	4.7	4.9	5.0	3.5	5.5	2.6	3.0	4.7	3.3
	혼혈아	2.7	4.5	2.2	4.9	1.8	0.1	1.1	1.3	0.1	0.4	0.3	0.9

표 7-15

지역별 품주 장애율과 실수

(인구 10만 대비)



시	도	전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	애	자	4,734	280	219	527	428	288	557	445	550	684	633	123
장	애	율	16.2	7.4	15.3	17.0	23.4	18.6	19.1	17.6	13.6	15.3	19.9	36.5

4. 장애인 연령별 장애율

장애자의 연령별 장애율은 표 7-16, 7-17, 7-18과 같다. 전국 전장애의 장애율이 382.4임은 이미 말한 바 이거니와 1세~9세까지를 매년령구분하고 기후의 연령을 매 5년간격으로 연령구분하면 1~9세간에서는 연령이 높으면 장애율도 따라서 높은 경향이 있다. 1세의 장애율은 14.8, 5세는 76.2, 9세는 113.1이다. 1세의 장애율을 100.0으로하면 5세의 장애율지수는 514.8, 9세의 장애율지수는 763.5가 된다. 10~60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10~39세간은 연령이 높으면 장애율도 높아지고 40~60세간은 다소의 기대는 있으나 대체로 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는 대상평준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10~14세간의 장애율은 152.1, 25~29세간은 195.1, 35~39세간은 383.1, 40~44세간은 335.5, 55~59세간 337.5, 60세이상 288.8의 변화다. 따라서 대체로 30~60세이상간에 장애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35~39세간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생리기능별로 대별한 장애별의 장애율은 지체불구, 시각장애, 청각, 언어기능장애, 정신장애, 기형, 혼혈아로 나누어 볼 경우 다음과 같다.

지체불구의 경우는 전연령 장애율이 186.2이며 8세가 장애율 65.3, 10~14세가 81.4, 35~39세가 207.8, 45~49세가

182.7 , 60 세 131.6 으로 기록의 봉오리를 형성 하면서 기록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변화차로서는 25 ~ 39 세의 사이가 '험준
하다.

시각장애는 전년령장애율은 55.5 이며 8 세 , 9 세 10 ~ 14 세의
구간에서 각각 , 7.8 , 8.6.5 , 11.8 로 9 세구간이 6.5 의 한물부
를 이룬 외는 연령이 높으면 장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障 害 者 年 齡 別 障 害 率

表 7-16

(人口 10 万 対 比)

障 害 年 齡	總 数	1 歲	2	3	4	5	6	7	8	9	10 14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歲 以 上
總 数	382.4	14.8	17.3	35.8	51.6	76.2	98.0	106.3	117.6	113.1	152.1	172.3	191.8	195.1	266.3	383.1	335.5	347.3	309.1	336.5	288.8
肢 体 不 拘	186.2	2.1	6.8	20.5	32.0	48.2	60.1	60.8	65.3	61.3	81.4	72.8	66.7	76.6	116.2	207.8	181.9	182.7	163.0	183.6	131.6
視 覚 障 碍	55.5	0.7	1.7	2.6	3.3	5.1	6.2	7.8	7.8	6.5	11.8	25.1	28.5	25.0	34.3	47.6	46.2	49.0	53.9	63.0	91.5
聴 覚 , 言 語 障 碍	69.1	4.3	3.5	4.3	6.9	12.2	18.1	23.7	26.0	25.6	31.6	37.1	48.7	43.3	54.4	53.5	49.3	53.0	45.4	45.1	36.6
精 神 障 碍	46.1	0.3	0.2	0.5	1.4	1.7	3.7	3.5	5.4	7.2	9.7	20.7	33.7	37.1	47.7	53.3	44.4	47.9	35.0	32.4	19.5
昏 迷 等 , 其 他 기 형	22.8	0.3	1.1	2.1	3.0	5.4	7.0	8.3	10.5	11.1	15.3	16.3	14.1	13.1	13.8	15.5	13.6	14.7	11.8	12.4	9.6
混 血 児	2.7	7.1	3.9	5.8	5.1	3.3	2.9	2.2	2.5	1.3	2.4	0.4	-	-	-	-	-	-	-	-	-

연령별충장애울과 지체불구 및 시각장애울

(인구 10 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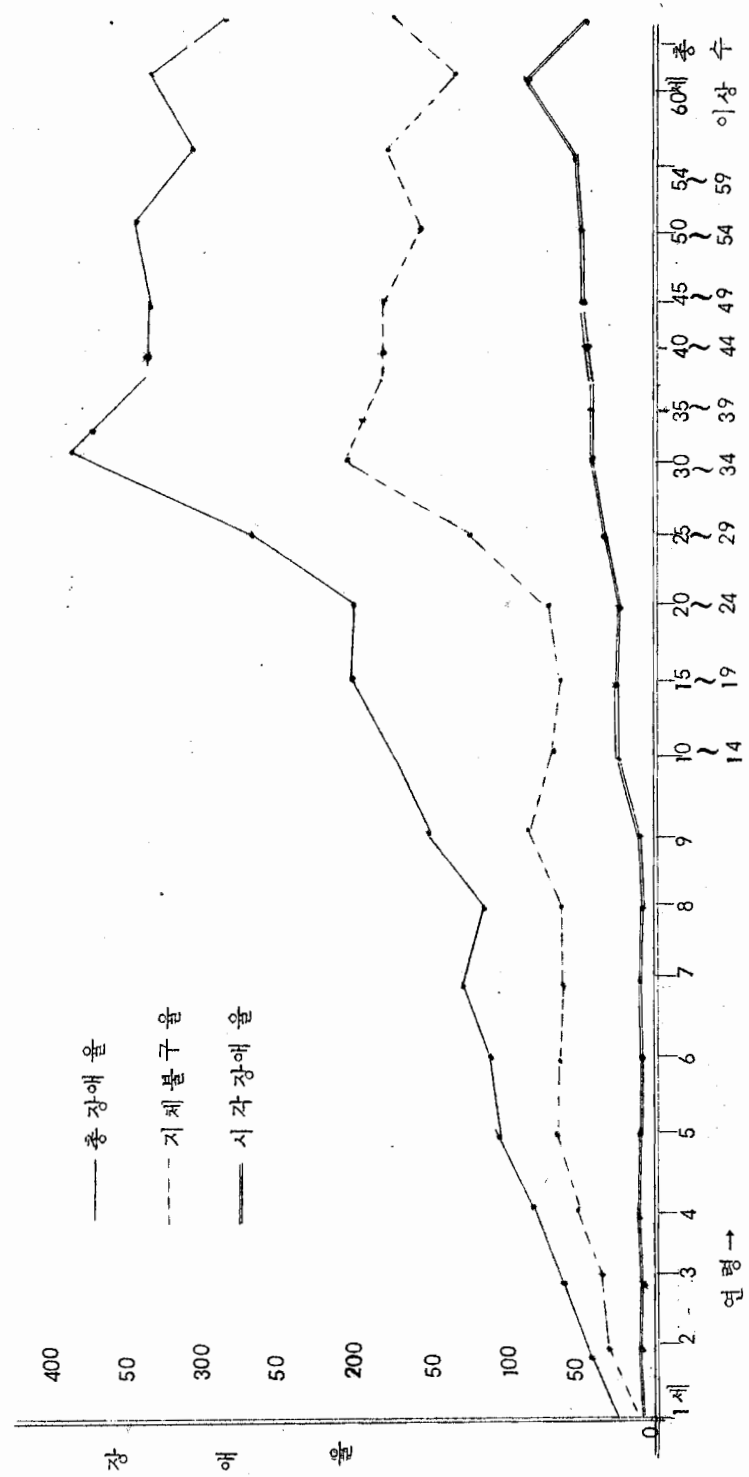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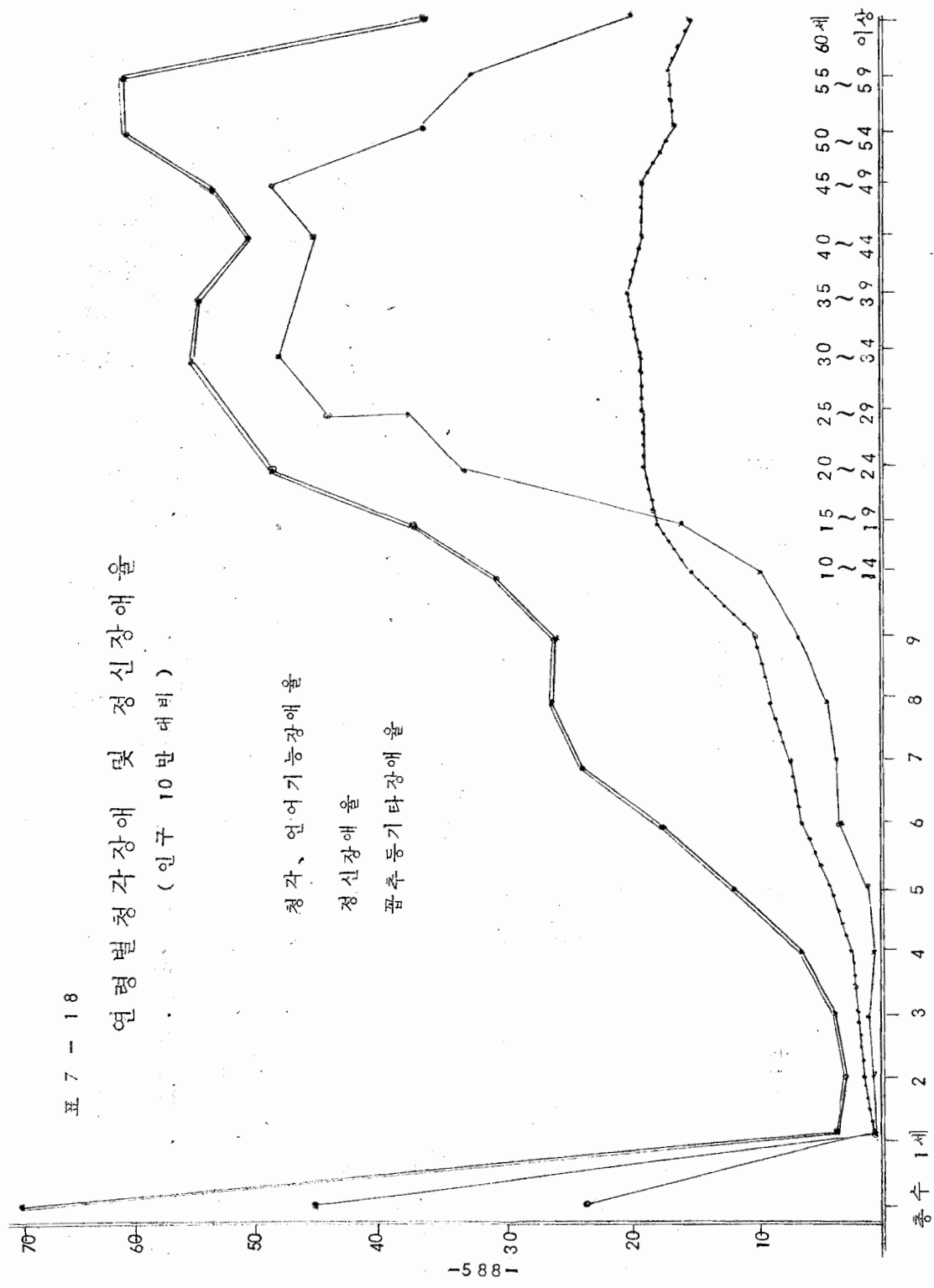


표 7 - 18

연령별 청각장애 및 정신장애율
(인구 10만 대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율
정신장애율
팔추 등기타 장애율



청각과 언어기능은 전연령장애율 69.1이고 20 ~ 24 세 구간까지는 1 세의 장애율 4.3 으로부터 48.7 까지 서서히 상승하고 그후는 55 ~ 59 의 45.1 로 45 ~ 49 세의 53.0 을 고봉으로 기록변동되고 있다.

정신장애는 전연령으로는 장애율이 46.1이며 10 ~ 14 세까지는 9.7로 점증되어 가고 있으나 15 세부터 39 세까지는 53.3 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이루고 기후 59 세의 32.4로 급증하고 있어 35 ~ 39 세간에 정신장애율이 높음을 말하고 있다.

기형에서는 전연령 장애율이 22.8이나 8 세까지 점증하여 10.5 가 되고 기후는 15 ~ 19 세의 16.3 을 정점으로 다른 장애에 비하여 각계층연령에 평준분비되고 있다.

혼혈아는 전연령 (1 ~ 19 세) 장애율이 2.7이며 3 세의 5.8 을 중심으로 평저한 하강적 륙을 형성하고 있다.

⑤ 장애발생원인과 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은 표 7 - 19 와 같다. 전장애로서는 선천적인 것이 26.4 %이고 발병후가 40.3 % 전쟁이 7.5 % 사고 12.7 % 기타원인이 13.0 %이다. 따라서 발병과 사고를 합치면 53.0 % 가 된다. 장애별로는 지체단절이 사고로서 발생한 것이 35.7 % 이고 병어리는 선천적 69.9 % 정신박약, 말더듬이, 연청이, 안기발 기타 기형 혼혈아등이 선천적이고 기타는 모두 발병에 인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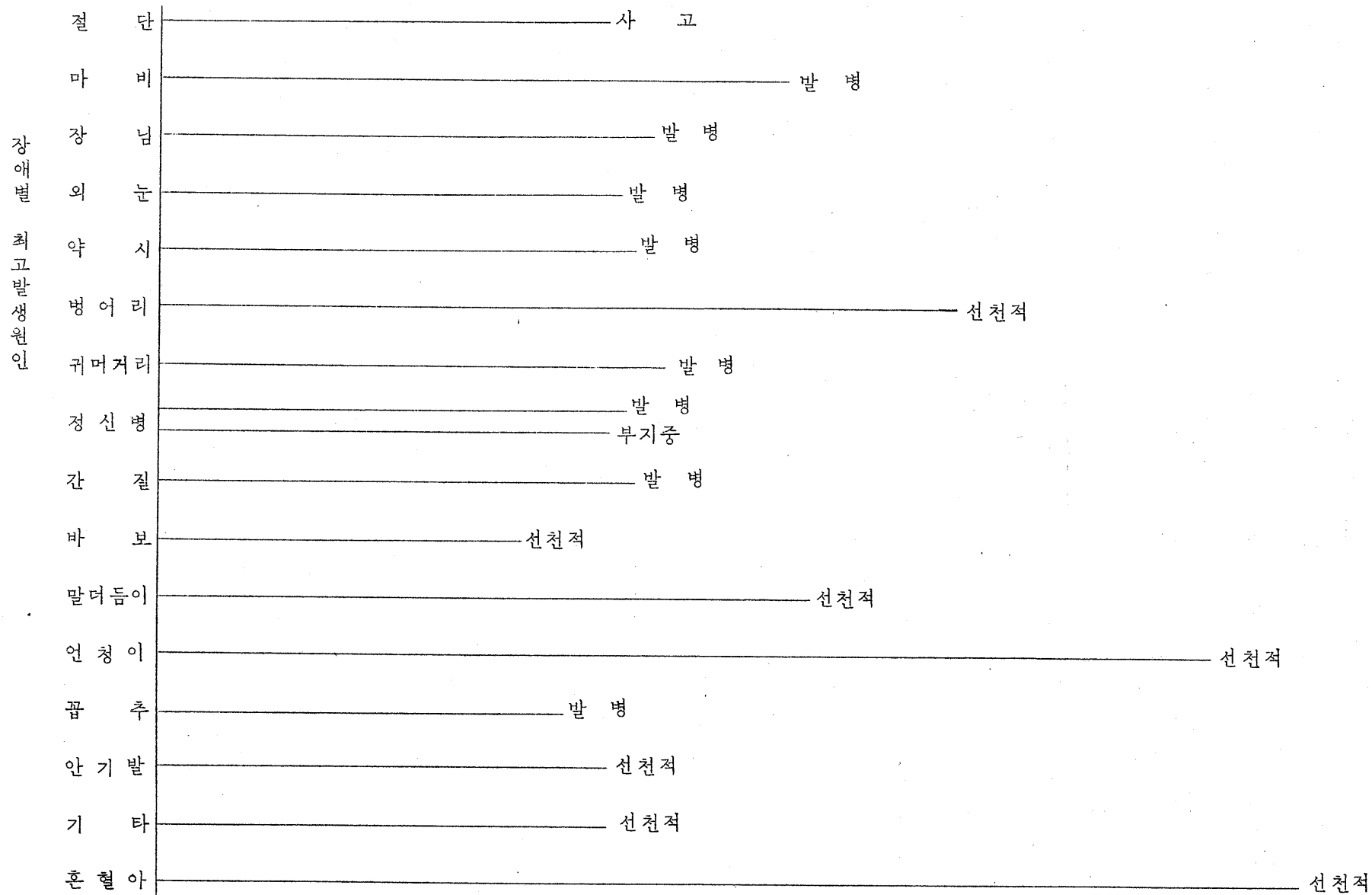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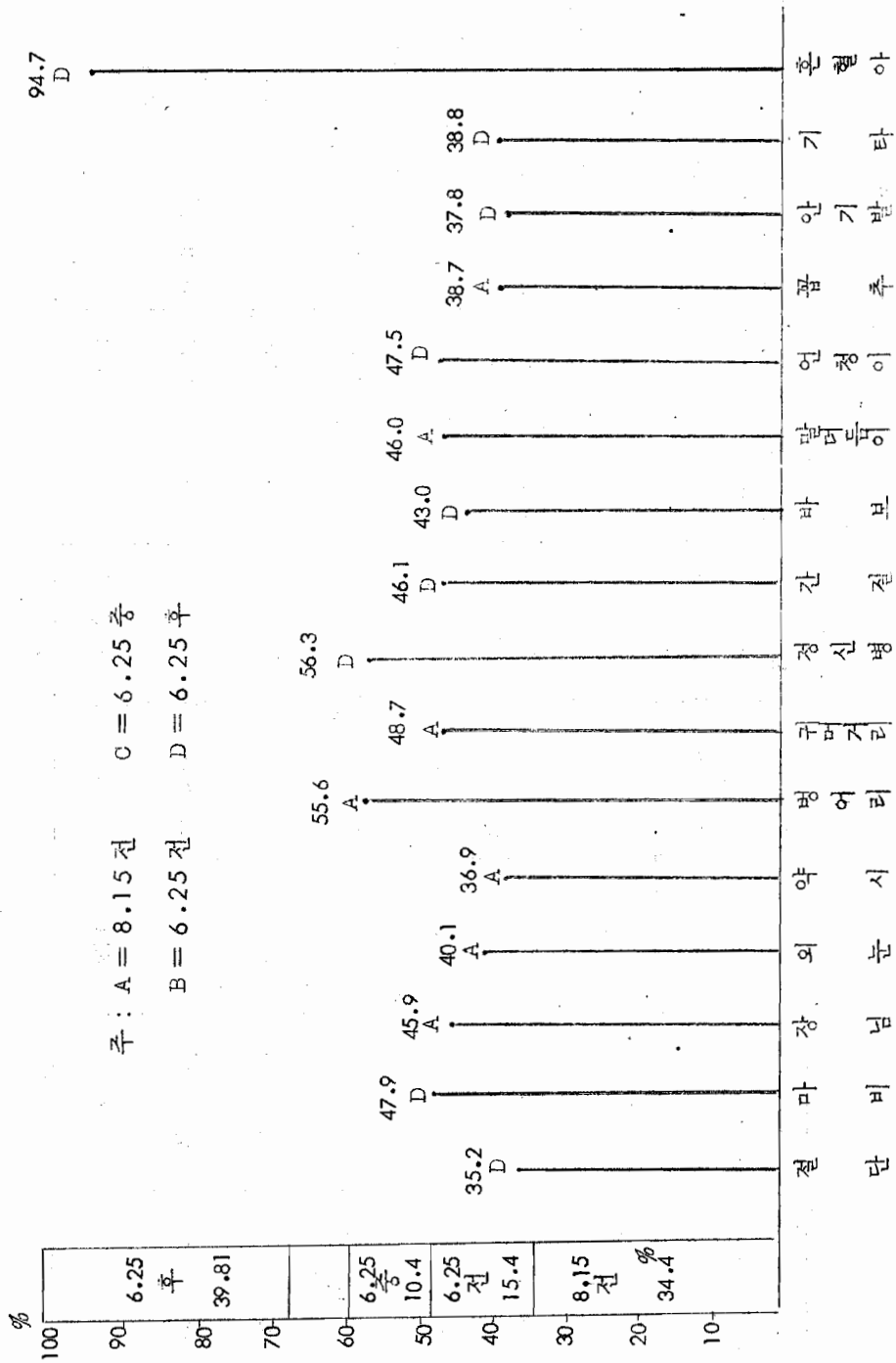
발병으로서는 마비의 52.2%가 최고이다。

장해시기는 전장해로서는 8.15 전이 34.4%, 6.25 전이 15.4%
6.25 동난중이 10.4%, 6.25 후가 39.8%이다。 보통생각
과는 달리 동난중의 장해발생이 적은것은 주목할만 하다。

표 7-19 장애발생원인구성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구 성 비		선천적 26.4			발병 40.3				전쟁 7.5	사고 12.7	기타 13.0	
장 애 수		29,474			45,052				8,415	14,230	14,534	





장 애 최 고 원 인 분 석 표

주: A: 8.15전 C: 6.25후
B: 6.25전 D: 6.25중

장	애	원	인	백분율%	발생시기	장	애	원	인	백분율%	발생시기	비	고
전	단	사	고	35.7	D 35.2	정	신 병	발	병	41.3	D 56.3	전 장 애 는	
마	비	발	병	55.2	D 47.9	간	질	"	"	42.3	D 46.1	선 천 적	26.4%
장	님	"	"	47.9	A 45.9	정	신 빈 약	선	천 적	35.0	D 43.0	발 병	40.3%
외	눈	"	"	39.6	A 40.1	말	머 들 이	"	"	59.6	A 46.0	전 쟁	7.5%
청	맹	"	"	41.6	A 36.9	언	청 이	"	"	85.7	D 47.5	사 고	12.7
병	어 리	선	천 적	69.9	A 55.6	안	기 발	"	"	41.4	D 37.8	기 타	13.0
꿈	추	발	병	39.6	A 38.7	기	타	"	"	39.8	D 38.8	장 애 시 기 는	
귀	머 거 리	"	"	48.0	A 55.6	흔	혈 아	"	"	100.0	D 94.7	A	34.4
												B	15.4
												C	10.4
												D	39.8

장해별로 장해발생시기를 볼때 절단, 마비, 정신적, 간질, 정신박약, 언청이, 안기발, 기타 기형, 혼혈아등이 6.25동란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정신병계통이 모다 6.25동란후인 사실이다.

(표 7-20, 7-21 참조)

⑥ 장해치료와 치료기관

장해치료상황은 표 7-22 와 같다. 전장해로서는 치료필이 52.6% 못받았다 하지않었다가 42.6%나 된다. 장해별로는 병어리, 말더듬이, 언청이 등이 불치료나 치료못받음이 우세하고 기타 장해는 치료필이 우세하다.

장해치료기관은 병의원이 59.2%, 한의원 16.3%, 한양의원 15.8%, 정양원 3.4%, 기타 15.2%로 단연 병의원이 우세하다. 장해별로 볼때 전장해종목에서 병의원이 우세하나 특히 절단, 척안, 언청이 등이 각각 73.8%, 69.1%, 70.6%를 차지하고 비교적 저수준은 간질, 정신박약등이 각각 36.6%, 45.3%이다. 한의원의 이용도는 맹아, 간질, 족등이 각각 21.7%, 32.0%, 26.2%이며 저수준은 절단, 척안, 언청이등이 각각 7.0%, 10.2%, 10.6%이다. 민간요법을 연상하게 하는 기타는 고수준이 정신박약 13.2%이고 저수준은 족의 3.3%이다.

⑦ 보 장 구

보장구는 전장해로서는 의수족이 4.4%, 의안이 0.9%, 기타 1.3%이고 미보장이 47.7%나 된다. 장해별로는 절단 18,599건중 3,993명이 의수족을 하고 12,413명이 못하고 있다. 마비는 35,776건중 845명이 의수족을 하고 27,498명이 못하고 있다. 귀머거리 4,334건중 82명만이 보청기를 가지고 있고 1,138명이 못하고 있다.

표 7 - 22

장 애 치 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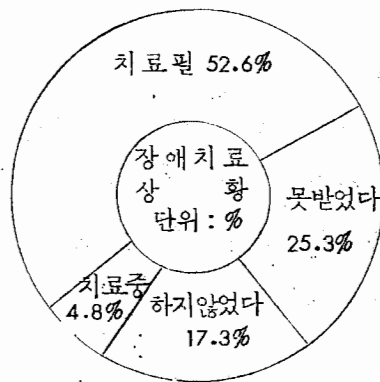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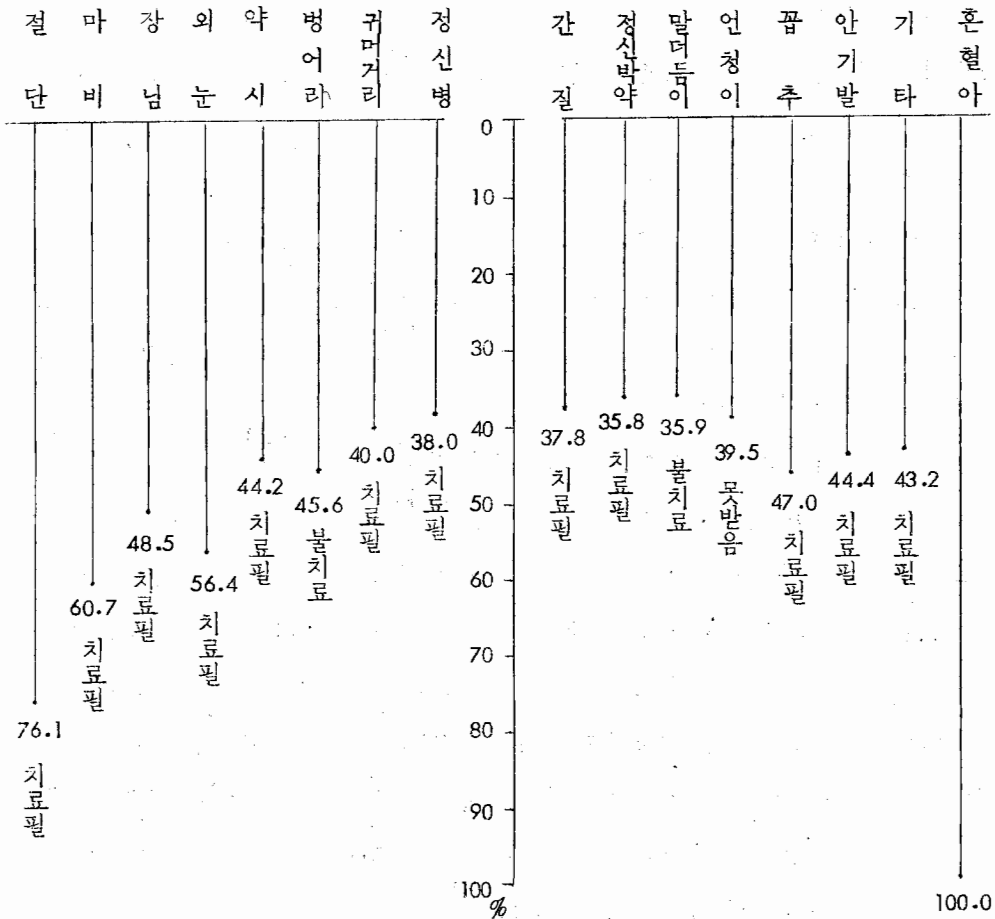


표 7-24

장애 치료 기관

(치료를 받은 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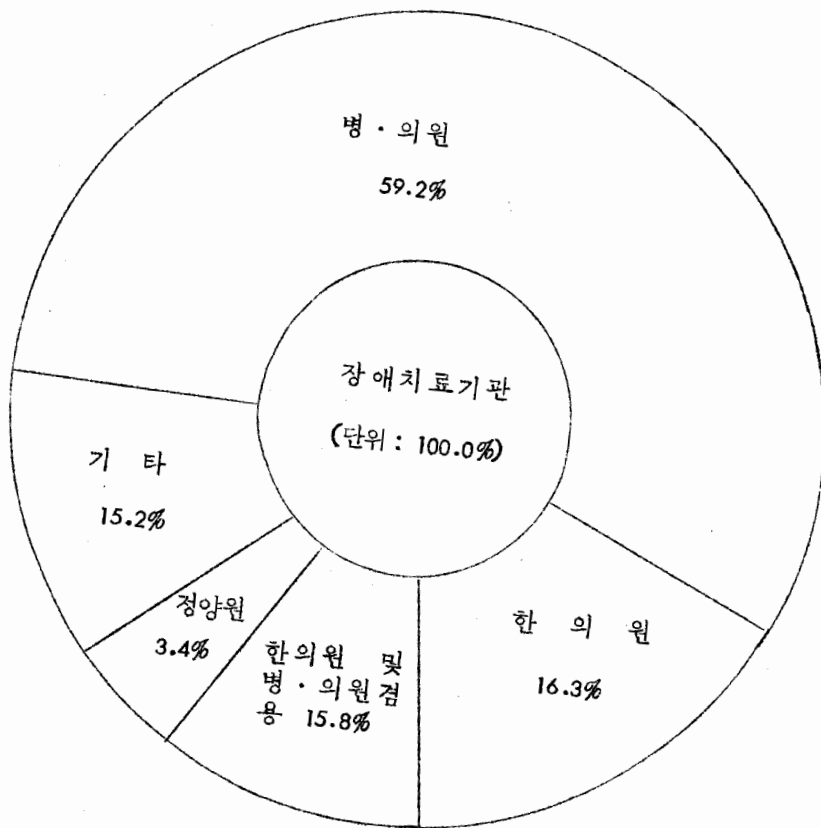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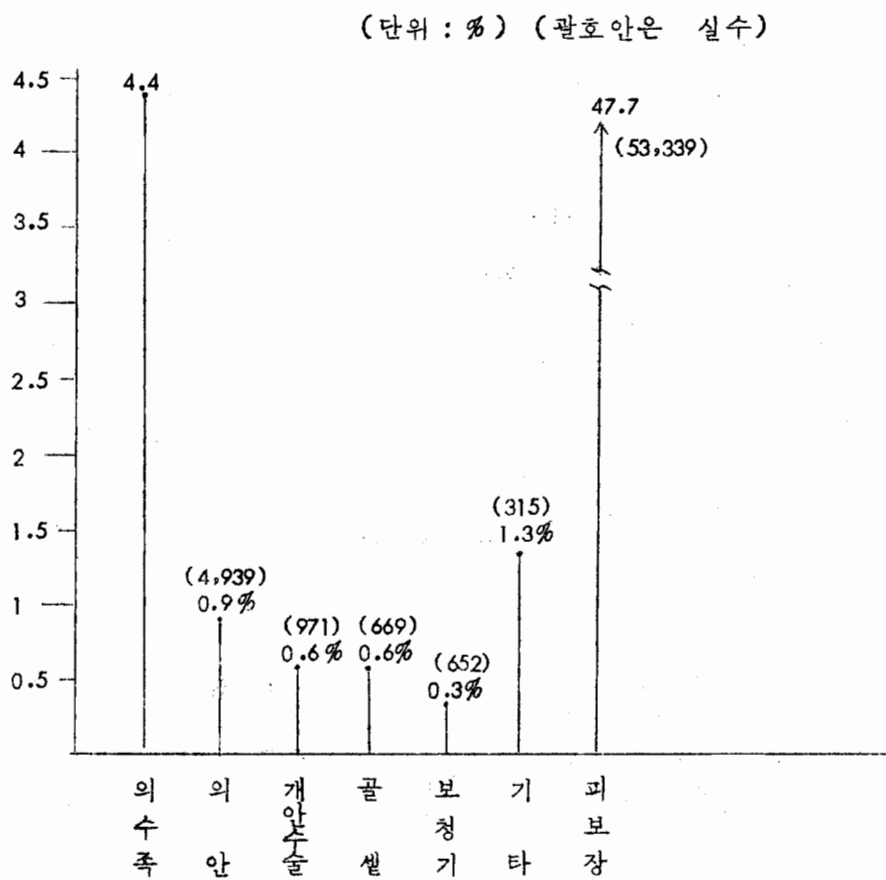


표 7 - 25

장애용 보장구장비상황



⑧ 장애인교육정도, 가동상황, 생계정도, 장애인 교육정도는 한글해득이 23.0% 국민학교재학이상이 38.1%이다. 문맹은 36.6%, 점자해득이 1.0%이다. 대학졸업도 0.6%정도 있다.

장애인 가동상황은 1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 88,986명에 대하여 직업보도중 769명, 직업보도후 취업중 1,460명, 직업보도후 무적이 653명 직업보도희망자 20,081명 직업보도불원자가 74.2%인 66,023명이다.

	대 줄	고 줄	중 줄	국 줄	국 재	글 해	문 맹	자 해	기 타
실 수	632	2,394	6,648	24,295	8,583	25,724	39,825	1,107	2,497
구성비	0.6	2.1	6.0	21.7	7.1	23.0	36.6	1.0	2.2

(15 세 이상 장애인 88,986 명에 대하여)

	직업보도중	직업보도후 취업중	직업보도후 무직	직업보도 원한다	직업보도 불필요	비고
실수	765	1,460	653	20,081	66,023	
구성비	0.9	1.6	0.7	22.6	74.2	

주 : 직업보도자 2,882 명중

취업기관 : 보사부산하 35.3% (실수 1,017)

문교부산하 4.2% (" 122)

사설기관 42.0% (" 1,211)

불명 7.1% (" 205)

표 7 - 28

장 애 자 취 업 상 황 (15 세 이상)

		총 수	전문직 관리직	사무 종사	판매 종사	농업 임업	채광 종사	운수 종사		서비스 종사	불 능
총 수		88,986	202	385	1,902	19,823	94	118	2,818	1,426	62,218
100 분 비		600.0	6.2	0.4	2.1	22.3	0.1	0.1	3.2	1.6	69.9
남		65,697	190	384	1,697	17,393	84	116	2,641	1,305	41,887
여		23,289	12	1	205	2,430	10	2	177	121	20,331
연령	15-19	9,529	9	7	40	1,184	4	1	130	61	8,093
	20-24	9,459	6	7	92	2,198	6	12	283	127	6,728
	25-29	9,010	12	17	176	2,331	12	12	339	140	5,971
	30-34	10,066	25	88	264	2,646	16	20	356	192	4,459
계 총 별	35-39	11,828	63	164	391	3,013	19	35	507	497	7,149
	40-44	9,545	34	67	364	2,442	14	18	420	208	5,978
	45-49	7,973	20	20	230	1,938	5	13	326	99	5,322
	50-54	6,310	13	9	148	1,530	7	3	221	55	4,324
	55-59	5,573	10	3	101	1,226	5	3	128	33	4,063
	60-65	9,693	10	3	96	1,315	1	1	108	24	8,131

15 세이상에서 농어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19,823 명이며 연령계층
 으로서는 농어림의 경우 35-39 세간의 3,013 명이 가장 많고
 15-19 세간의 1,184 명이 가장 적다. 단순노동, 판매종사 서비스
 종사도 각각 2,818, 1,902, 1,426 명이나 된다.

장애자생 계정도는 하급이 79.1 %, 중급 17.0 %, 상급 1.5 %
 기관수용이 2.4 %로서 장애자는 빈한한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7 - 29 장 애 자 생 계 정 도

	하 급	중 급	상 급	기 관 수 용
실 수	70,345	15,101	1,471	2,123
구 성 비	79.1	17.0	1.5	2.4

주 : 직업 (취업자는 장애자의 30.1%)

농어림업 22.3%

취업자 기능공등 3.2%

판 매 등 2.1%

제 49 장 외국의 장애인 실태

① 1960년에 일본의 후생성이 100 분지 1로 추출조사는 전국의 신체장애자가 총인구 9,285,000명에 비하여 95만명으로 인구+만대 신체장애율은 1,020 즉 1.02%로 나타났다.

장애별로 본 신체장애자수는 표 8-1과 같다.

신체장애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61.0%
 여자 39.0%

지체부자유에서는 남자 66.4%
 여자 33.6%

이며 구군인 군속 공무재해 업무재해등이 남자에게 집중하는데서
오는데 기인하는것 같다.

표 8-1 일본장애별신체장애자수

	전국추계수	인구대백분율	장애구성비	장애율 인구10만대비
총 수	950 ^{천인}	1.02	100.0	1,020
시각장애	220	0.24	23.2	240
청각장애 (언어, 평형 기능자)	163	0.17	17.2	170
지체부자유	566	0.61	59.6	610

자료: 정부의 창 65.3.15호 P.5

장애정도별 및 장애별상황은 표 8-2와 같다. 1, 2급장애에서
총수는 25.5% 시각은 64.5%, 청각은 41.9% 지체부자유는
22.4%로서 일반적으로 중증이 많은것 같다.

<표 8-2>

장해 정도별 장해율

등 급	총 수	시 각 장 해	청 각 장 해	지 체 부 자 유
총 수	인 % 95,000(100.0)	일 % 220,000(100.0)	인 % 163,000(100.0)	인 % 566,000(100.0)
1 급	145,000 (16.2)	104,000 (47.4)	- (-)	50,000 (8.8)
2 급	183,000 (19.3)	38,000 (17.1)	68,000 (41.9)	77,000 (13.6)
3 급	140,000 (14.7)	15,000 (6.9)	34,000 (21.1)	90,000 (16.0)
4 급	177,000 (18.6)	14,000 (6.2)	27,000 (16.3)	137,000 (24.1)
5 급	151,000 (15.9)	15,000 (7.0)	1,000 (0.4)	135,000 (23.8)
6 급	113,000 (11.9)	25,000 (11.6)	28,000 (16.9)	60,000 (10.6)
불 명	31,000 (3.4)	8,000 (3.9)	5,000 (3.4)	17,000 (3.1)

자료 8-1 과 같음

주 : 청각에 1 급이 없음은 법령에 해당규정이 없음에
인함

<표 8-3>

신 체 장 해 자 구 성 비
(연령별, 장애별)

	총 수	신체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총 수	100.0 %	100.0 %	100.0 %	100.0 %
15 세 미 만	9.9	6.1	10.4	11.2
15 ~ 17	2.8	2.2	2.9	3.0
18 ~ 19	2.2	1.7	2.6	2.2
20 ~ 29	9.6	5.2	11.4	10.9
30 ~ 39	14.2	10.4	12.9	16.1
40 ~ 49	16.6	14.5	14.7	18.0
50 ~ 59	16.4	17.3	14.4	16.7
60 ~ 69	15.1	20.1	13.8	13.6
70 세 이 상	13.2		17.0	8.4

자료 표 8-1 과 같음

장애자 연령별 구성에서는 90 ~ 70 세 이상에 많고 40 ~ 49 세가 16.6 %로 정점을 이루고 있고 시각에서는 연령이 높을 수록 높고 70 세 이상에 22.5 %이다.

청각에서는 20 ~ 70 이상에 많고 70 세 이상에 17.0 % 지체부자유에서는 20 ~ 69 세에 많고 40 ~ 49 세가 18.0 %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신체장애수첩은 약 40 %가 가지고 있지 않다.

<표 8-4>

신체장애자수첩 소지상황 백분비
(장애 별)

장 해 별	소 지	미 소 지
총 수	60.0 %	40.0 %
시 각 장 해	62.4	37.6
청 각 장 해	59.1	40.9
언 어 기 능 장 해	36.2	63.8
평 형 기 능 장 해	33.3	66.7
지 체 부 자 유	60.0	40.0
상 체 절 단	83.0	17.0
상 지 기 능 장 해	59.1	40.9
하 지 절 단	58.9	41.1
하 지 기 능 장 해	58.5	41.5
체 간 장 해	45.4	54.6

자료 표 8-1 과 같음

신체장애원인은 총수로서는

결핵 이외의 질병 43.2 %

선천적장애 16.8 %

업무상장애 8.1 %

구군인 군속공무상장애 6.4 %

시각장애에서는

결핵 이외의 질병 52.8 %

청각장애에서는

선천적 장애 36.1 %

지체부자유에서는

구군 인군속공무상장애 9.0 %

업무상장애 11.8 %

결핵 6.3 %이다.

갱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상황은 18 세이하로서 약 44,900 인 (전체의 5.4 %)로서 지체부자유자 18,400 인 (41.0 %) 시각장애자 11,200 인 (24.9 %) 청각장애자 2,200 인 (5.0 %) 기타 13,100 인 (29.1 %) 이다.

가정에서의 지위는 가계중심자가 58.0 % 가계보조자가 37.0 % 피부양자가 5.0 % 이다.

보장구소지 상황은

시각장애자의 경우

필요한 자 (맹인안전권) 56 %

현재소지자 56 % × 43 %

청각장애자의 경우

필요한 자 (보청기) 37 %

현재소지자 37 % × 45 %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의수의족 필요한자 12 %

현재소지자 12 % × 79 %

장 구 필요한 자 10 %

현재소지자 10 % × 49 %

차의자 필요한 자 3 %

현재소지자 3 % × 27 %

교환대체가 필요한 자

맹인안전 3 %

보청기 32 %

의수, 의족 46 %

장 구 50 %

차의자 28 %의 실정이다.

취업상황은 표 8-5 와 같다. 15 세 이상의 신체장애자로서 취업자는 45.8 %이다. 1960 년 일본노동성의 조사보고서는 전인구의 경제생활전체 취업율은 70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취업율에 비하면 24.2 %나 낮은 결과가 된다. 장애자의 취업자의 성별은

남 자 (15 세 이상) 60.2 %

여 자 (") 20.0 %이다.

취업자의 종업상의 지위는

업 주 48.3 %

상 고 22.9 %

가족종업 19.0 %

일 고 5.8 %이며

시각장애자는 특히 고용이 곤란하게 되어있다.

시각장애의 경우는 대부분이 서비스업 종업자 (다대수가 안마사) 이다.

<표 8-5>

장 해 자 취 업 상 황
(직업별, 장애별)

	총 수	시 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
총 수	100.0 %	100.0 %	100.0 %	100.0 %
전문적, 기술적	3.1	2.5	1.5	3.7
관 리 적	1.2	0.5	0.5	1.6
사 무	5.5	0.9	1.4	8.1
판 매	13.4	8.0	6.1	17.0
농 립, 어 업	36.1	33.1	56.6	30.8
채 탄	0.8	0.8	0.9	0.8
운 수, 통 신	1.1	0.5	0.5	1.5
기능공생산공정	72.1	12.5	27.1	31.4
단 순 노 동	11.2	41.0	4.6	4.5
써 - 비 스				
분 류 불 능	0.6	0.3	0.4	7.7
안마사(再場)	(7.4)	(38.3)	(0.5)	(0.5)

자료 표 8-1 과 같음

취업기술습득은

신체장애자후생원호시설*

공공직업훈련소 7.4 %

특수학교

로서 저율이나 시각장애의 경우는 그 원호의 역사가 오래므로
약 15 %나 된다。

15 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이유는

신체상의 이유 69.0 %

취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18.7 %

실업중 1.1 %

휴업중 6.5 %

신체상의 이유로 불취업하고 있는 장애자는 지체부자유가 가장
고율이고 다음이 시각, 청각의 순서다。

신체장애자의 고용은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법) 과 (직업안정법)
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는데 1964 년 11 월 현재 전국 447 개소
공공직업안정소가 일선기관으로서 일하고 있다。 구직등록은 자유
등록제도이며 영구보존되는데 아직도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많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신체장애자의 직업소개 상황은 표 8-7 과 같다。 1961 ~ 1963 년의
3 년간의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 취업한 장애자는 장애별로는

하지기능장애자 7,594 명 (40.0 %)

상지기능장애자 (24.4 %)

신체장애자 구직등록상향

단위 : 인

	합계	제 1 구직등록자				제 2 종구직등록자			
		소계	시 각 청 장 해 장 해	정 안 장 해 장 해	지 체 부 자유	소계	결 핵	정 박	기 타
전 수	45,308	38,789	3,264	6,161	29,364	6519	1,124	1,749	3,646
유 효 구 직	9,792	8,579	819	1,125	6,635	1,213	213	197	803
취 업 중	81,914	27,052	2,134	4,577	20,341	4,862	815	1,480	2,567
보 류 중	3,604	3,158	311	459	2,388	444	96	72	276

자료 표 8-1 과 같음.

자료출처 [직업안정행정 업무통계 240 호]

(주) 1) [제 1 종등록자]는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별표해당의 신체장애가 있는 구직등록자임, (2. 장애복지의 범위와 대상자 및 장애평가 요참조) [제 2 종등록자]는 상기이외의 구직등록자로서 신체장애로 취직상 불리하게 된 자로 규정된 구직자임

2) 1964 년 3 월 31 일 현재 수치임

3) 유효구직은 현재유효구직으로서 소개알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로서 전직희망자를 포함함

4) [취직중]은 현재 현재고용활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자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5) [보류중]은 현재 질환등으로 소개알선이 보류되고 있는 자임.

표 8-7

신체장애자의 직업소개상황

	신규구직전수	취직전수	신규구직전수에 대한 취직율
1961	14,576 인	7,463 인	51.2 %
1962	13,897	7,504	54.3
1963	14,762	9,211	62.4
계	43,235	24,214	56.0

자료출처 ①표 8 1과 같음

②원표는 직업안정행정업무 통계 240호

청각, 평형기능, 언어, 저작기능장애자 (18.6%)의 순위이며
각각 년평균 1,000을 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66.0 %
 도산매업 14.5 %
 서비스업 10.8 %의 순위이고 직업별로는
 제조기능, 반기능직업 51.0 %
 단순기능직업 11.9 %
 사무관계 9.6 %

표 8-8

일본신체장애자고용율

구분	업태	고용율
국가등기관	업무적부문	1.5 %
	현업적부문	1.4 %

구 분	업 태	고 용 율
순민간사업소	사무적 부문	1.3 %
	현업적 부문	1.1 %
특수법인	사무적 부문	1.5 %
	현업적 부문	1.3 %

자료 표 8-1 과 같음

표 8-1

국가등기관장애자고용율달성상향

		제외직원을 공제한직원수	신체장애자수	고 용 율
계		2,397,040 인	23,590 인	1.40 %
고 용 율	1.5 % 의기관	1,609,664	23,350	1.45
적 용 별	1.4 % 의기관	787,376	10,240	1.30
기 관 별	국 가	1,121,544	14,889	1.33
	도 도 부 현	706,222	7,951	1.13
	시 정 촌	569,274	10,750	1.89

자료 표 8-1 과 같음

씨 비스관계

신체장애자용촉진법에 의한 비호취업상향은 표 8-8, 8-9와 같다. 국가등의 경우는 다소 성과가 있으나 민간등 기관의 경우는 1963년 10월 1일 현재 고용율이 0.99%이며 1964년 10월 1일 현재로는 1.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중도장애자의 고용은 법령에 의하여 양안의 시력의 화가 0.06 이하의 자를 말하며 안마사를 특정직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70 %의 중도장애자고용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지에서 1964년 10월 1일 현재 국가등 기관의 경우 80.6 %로 법정고용율을 초과하고 있다.

직장적응훈련상황은 표 8-11 와 같은데 아직 시발점에 있는 듯 하나 훈련사업소에서 훈련생을 90 %정도 고용하고 있다. 신체장애자의 취직촉진에 대한 제 원조는 표 8-12의 도시와 같다

표 8 10

국 가 등 기 관 에 서 의 중 도 장 해 자 고 용 상 황

	기 관 수	재 직 상 황				고 용 율
		안 마 사 직 원 수	제 외 안 마 수	특정직종의 직원수	중·도 장애 자 수	
국가기관	3	295	146	149	121	81.2
심 공 사	3	52	28	24	19	79.2
도도부현	10	56	17	39	33	84.6
시 정 촌	1	25	0	25	18	72.0
계	17	428	191	237	191	80.6

자료 표 8-1 과 같음

자료 a 표 8-1 과 같음

② 1제외 안마사 7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의사 지시하에 국부 또는 전신의 상태를 식별하고 또한 시술의 반응을 관찰판단하면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안마사로서 고용율에 산정하는 안마사수에서 제외된다.

<표 8-11>

장해자직장적응훈련상황

년 도	실시수	훈 련 수료자수	취직자수	비 고
1960	225	—	—	
1961	598	498	424	
1962	560	505	460	
1963	560	539	491	
계	1,978 (1,682)	1,542	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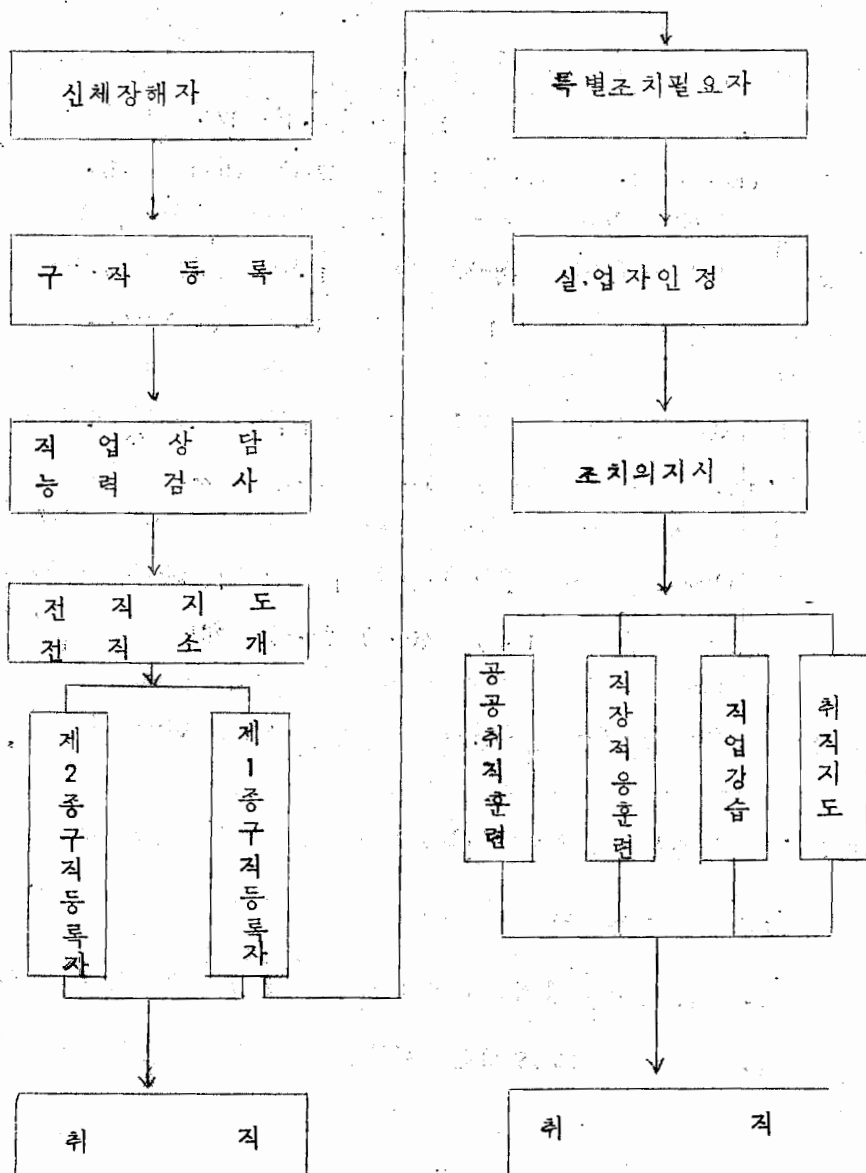
※자료: 표 8-1 과 같음 P. 20

② 1965년 8월의 신체장해자조사에 의하면 표 8-13과 같다.
전국에 18세이상 104.8만인, 18세미만 9.8만인, 계 114.6
만인으로 인구 10만대 장해율은 1.190으로 추정되고 신체장해
와 정신박약의 중증자가 18세이상 2,000인 18세미만 17,300
인, 계 19,300인 가량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1966년 8월의 정박자(아)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박약자는
표 8-14와 같다
재택정박자는 48.5만인으로 추정하고 조사일현재의 수용보호자
20,400인을 합하면 전국 정박자는 505,100인으로 추정되었다.
인구 10만대 장해율은 511이다

표 8-12

신체장애자의 취직촉진원조계통도



장애 종류 정도 별 전 국민 신체장애자

(단위: 천인 %)

구 분	총 수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불 명
총 수	1,146.4 (100.0)	151.2 (13.2)	206.7 (18.2)	174.0 (15.2)	198.1 (17.3)	172.9 (15.1)	158.7 (13.8)	82.6 (7.2)
시 각 장 해	243.9 (100.0)	87.8 (36.0)	41.7 (17.1)	20.9 (8.6)	18.5 (7.6)	20.0 (8.2)	37.3 (15.3)	17.7 (7.2)
청 각 장 해	238.2 (100.0)	1.6 (0.7)	67.6 (29.6)	45.1 (19.8)	41.1 (18.0)	6.7 (2.9)	51.7 (22.7)	14.4 (6.3)
지 체 부 자 유	647.2 (100.0)	61.8 (9.2)	99.5 (14.8)	108.0 (16.0)	138.6 (20.5)	146.2 (24.7)	69.7 (10.3)	50.5 (7.5)

주: 1. 급수는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함

2. ()는 구성 백분비

3. 자료: <후생성> (신체장애자(아)실태조사) (65.8)

4. 출처: 1969년판 <일본> 사회보장연감 P. 125

<표 8-14>

일본정신박약자수 (정도별)

(단위 : 천인 %)

경도	중도 90.9 (18.8%)	
	최중도 28.7 (5.9%)	불명 8.4 (1.7%)
	중도 132.3 (27.3%)	

계 484.7 천인

자료: 일본후생성 <정박자(아)실태조사> 1966.8

제 50장 장애인 제 조사의 비교

위에서 다른 제 조사를 즉

- 1) 68년의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이하 WDS라 약칭함)
- 2)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EAPS라 약칭함)
- 3) 요생활보호자조사(이하 NPS라 약칭함)
- 4) 61년의 한국장애아동조사(이하 HCS라 약칭함)
- 5) 66년의 장애인조사(이하 HS라 약칭함)
- 6) 60년의 일본신체장애자조사(이하 JHS라 약칭함)
- 7) 65년의 일본신체장애자조사(이하 JHS-65라 약칭함)
- 8) 66년의 일본정신박약자조사(이하 JMHS라 약칭함)

등과

이에 관련된 관계조사를 서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조사에는 고유의 동기와 목적이 있고 방법도 서로 상치되는게 많을것이므로 그 비교는 어느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인지 각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기도는 최소한도의 경향을 추정하는데 그 희망이 있다.

1. 장애율 및 도비간분포와 장애자의 수

- 1) WDS는 전 조사가구원수 10,809인에 장애자가 74인으로 전국장애율은 675이며, 시부는 전 조사가구원수 6,298인에 장애자 45인으로 장애율은 700, 군부는 전 조사가구원수 4,511인에 장애자 29인으로 643이다. < 단 어촌에 중복장애자 1인이 있으므로 장애율은 666이다.
- 2) EAPS는 68년 9월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7,009,000인에 장애자 134,000인으로 인구 10만대 장애율은

1.900 이고, 농가는 2.852.000 인의 비경제활동인구에 장해자 62.000 이므로 장해율 2.174 이다.

비농가는 비경제활동인구 4.157.000 인에 장해자 72.000 인으로 장해율은 1730 인이다. 가병 14 세이상 인구로 환산하면 전국의 장해율은 767 이고, 농가는 698 명이며, 비농가는 838 이 된다.

3) N P S 는 69 년의 경우 조정된 요생활보호자수는 463,339 명 이고, 그중 장해자는 225.319 인이므로 장해율은 전인구로 대비 한다면 750 이 된다.

4) H S 의 경우는 전국이 382.4 이고, 시부 297.9 군부 418.0 이다.

5) J A S 와 J H S - 65 의 장해율은 10.201.190 이다. 이 장해율비교에 의하면 전국장해율로 보아 H S 의 382.4 는 너무 과소하고, E A P S 나 N P S 의 조사특성을 감안하면 대체로 W D S 의 675 가 타당한 것으로 믿어진다.

<표 9-1>

제장해자조사 장해율대비

구 분	장 해 율								비 고
	WDS	EAPS	NPS	HCS	HS	JHS	JHS-65	JMHS	
전 국	675	(1900) 767	750	662.1	382.4	1.020	1.190	511	1. ()안은 비경제활동 인구대비 2. E A P S 의 시부는 비농가 군부는 농가구분
시 부	700	(1730) 838		490.6	297.9				
군 부	666	(2174) 698		677.2	418.0				

따라서 전국장해율은 700으로 잠정 추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JHS-65와 JMHS를 합하면 1.701이 되는데 일본의 장해율과 우리나라의 장해율은 너무도 큰 차가 있다

따라서 장차 생활수준과 장해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면 우리나라도 장해율이 확대될 것이다. 전국장해율은 700으로 가정하면 약 21만명의 장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와 군부의 비교에서는 WDS는 시군과 군부보다 장해율이 높고, EAPS는 비농가가 농가보다 많다.

그러나 HCS와 HS는 시부가 군부보다 적다.

그러나 WDS는 그 표본규모가 장해자수의 추정을 위하여서는 너무 적다는 사실과 EAPS는 농가, 비농가의 구분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HCS와 HS의 경향을 신빙하여 군부가 시부보다 장해율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② 연령별장해자수와 성별분포

WDS는 그 표본의 규모로 보아서 연령별분포는 그 의의가 적다고 생각된다.

EAPS와 HS, HCS의 연령계층과 성별의 분포는 표 9-2와 같다. 그러나 이 표는 기술한 제조사의 수치와는 직결될 수 없는 수치이다.

그 이유는 각조사중의 제연령계층의 최대치를 임의선정하고 장해율에서도 1965년의 총인구조사의 결과를 자의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각조사간의 연령계층간의 최대치를 보면 1~15세간은 HCS의 62.703명이 가장 많고 15~18세간 또한 HCS가 18.618로 가장 많다. 18세이상인 EAPS의 117.000명이 가장 많다. 이 제연령계층의 최대치의 합은 199.315

명이다. 이 수치는 NPS의 204,000명에 가까운 근사치이고, 앞에서 추정한 210,000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장해자수의 분포는 연령계층으로 15세미만에 60,000명, 15 ~ 18세간에 20,000명,

<표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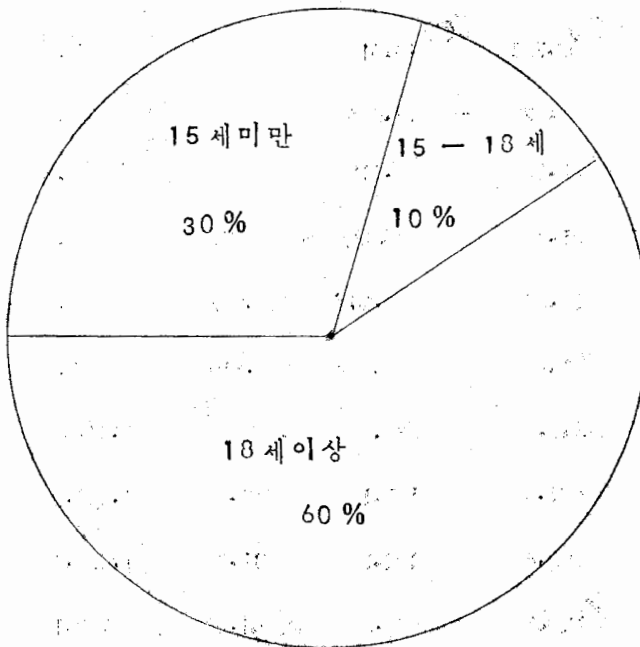
구 분		1 ~ 15 세	15 ~ 18 세	18 세 이상	계	비 교
E A P S (6824)	계		16,000	(D) 117,000	133,000	
	남		12,000	83,000	(F) 95,000	
	여		4,000	34,000	38,000	
N P S (68)					(E) 204,000	
H C S	계	(A) 62,703	(G) 18,618		(H) 81,321	
	남	39,370	12,506		(I) 51,876	
	여	33,333	6,112		(J) 39,445	
H S	계	21,809	9,529	80,367	111,705	
	남	14,229	6,347	60,057	80,633	
	여	7,580	3,182	20,310	31,072	
총 인구 (B) (65)	계	1,210.2 만	279.8 만	1,374.8 만	2,864.8 만	18세미만 만
	남	626.8	145.1	663.3	1,435.2	771.9
	여	583.4	134.7	711.5	1,429.6	718.1
장 해 율 %	계	$\frac{A}{B} 520.6$	$\frac{C}{B} 679.0$	$\frac{D}{B} 851.0$	$\frac{E}{B} 712.1$	$\frac{H}{B} 662.1$
	남	622.2	896.6	1,251.3	$\frac{F}{B} 606.2$	$\frac{I}{B} 673.7$
	여	565.5	445.3	477.9	$\frac{G}{B} 35.8$	$\frac{J}{B} 540.3$

18세이상에 120,000명정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해자성별분포에서는 어느 조사이든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남자가 언제나 많은 결과를 내고 있다. 여자가 어느정도 많을 것이냐하는 문제는 EAPS나 HCS의 조달의 성격상 취함수 없고, HS의 경우를 취하여 남자3, 여자3, 즉 3:3정도가 아닐가 추측한다.

<표 9-3>

연령계층별장해자분포구성추측도



③ 장해자의 지역별분포

장해자의 지역별분포는 HCS와 HS에서 알수 있다.

장해율로서는 제주도, 전남북, 강원도가 높고 <표 7-4 참조>

장해자수로서는 표 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북, 전남, 경기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9-4>

지역별 최고장해율 비교

<인구 10 만대비>

구 분	H C S		H S	
	시 도 명	장 해 율	시 도 명	장 해 율
제 1 위	제 주	1,026.8	제 주	656.1
" 2 "	전 남	857.0	전 북	490.7
" 3 "	경 남	742.5	강 원	465.8
" 4 "	전 북	712.3	경 남	449.3
" 5 "	충 북	680.6	충 북	431.5
" 6 "	강 원	660.3	충 남	427.5

④ 장해동향

장해는 HS에서는 마비 (32.0%), 절단 (16.6%)

농아 (10.6%), 로 계 59.2%를 점하고 HCS에서는 마비 (38.7%), 농아 (10.7%), 절단 (7.8%)로 계 57.2%를

점하여 지체불구와 청각장해가 주장해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장해의 발생시기에서는 HCS와 HS가 동일된 경향을

보이는데 HCS는 장해의 70%대가 6.25후이고, HS는 약

40%가 6.25후이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신장애로서 정신박약이 6.25후 발생, 43.0%, 정신병 56.3%, 간질 46.1%가 되어 있다.

다음에 마비와 절단이 6.25후 발생이 각각 47.9%, 35.2%인 것도 유의할 일이다.

<표 9-5>

지-역별 최고장애자수 비교

(단위 : 인)

구 분	H O S		H S	
	시 도 -명	장 해 율	시 도 명	장 해 율
제 1 위	경 남	15.247	경 북	15.556
제 2 위	전 남	14.967	경 남	14.276
제 3 위	경 북	11.201	전 남	13.266
제 4 위	경 기	8.632	경 기	12.557
제 5 위	전 북	8.331	충 남	12.455
제 6 위	충 남	7.428	전 북	12.385

제 51 장 총괄과 건의

1. 장해는 남자가 여자보다 배이상 많다
2. 장해자는 군부가 시부보다 많다
3. 장해자수는 전국에 210,000 명 이상 있고 장해율은 인구 10 만명 대 비로 700 을 넘는다.
4. 장해는 지체불구와 농아가 주이다
5. 장해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고 전남북 경남, 강원도에도 많으며 서울특별시 가장 낮다. 장해자수는 전남북 전남 경기도에 많다
6. 장해율과 수는 연령이 높으면 높았다.
7. 정신장해는 6.25에 많이 발생했었다. 마비 또한 같다 따라서 정신장해는 아동은 15 세 일반은 30 세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8. 발생원인은 발병 사고가 주도적이다.
9. 장해자의 교육정도는 문맹이 거의반이 된다.
10. 장해치료는 받은 사람이 반정도 되나 못받은 사람도 높~낮은 된다.
11. 장해치료기관은 성인은 병원 아동은 기타가 많다.
12. 장해아동은 부모와 대체로 같이 있다
13. 장해보장구 근반수가 못하고 있다
14. 장해자생제는 대체로 하류이다. 성인장해자의 수용율은 2.4% 이다
15. 장애자의 취업은 증가량하고 있다

16. 아동장애자에 대하여서는 $\frac{2}{3}$ 가량이 치료를 원하고 있고 장애인 아동은 $\frac{1}{5}$ 가량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17. 직업보도를 원하고 있는 성인장애자는 $\frac{1}{5}$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frac{3}{5}$ 이상이다

18. 직업보도와 관계가 있는 장애자는 2.5%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총괄된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안에 가능할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법제면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정신위생법, 정신장애자복지법, 우생법, 장애인생업자금 대여법 등이 필요할것 같다. 지금 사정으로 당장 장애인 복지만을 확대할 수도 없는 사정이기는 하나 우선 법제자는 갖춰놓고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가면 좋겠다.

2. 시설은 국립으로는 정신병원이 하나 있고 병상은 360개인데 연중 만원상태인것 같다. 가능하면 부산등지에 정신병원을 1개소쯤 70년대 전반에 더 설치했으면 하며 정신박약 시설로는 국립자심학원이 하나 있는데 270명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도 보다 충실하고 실제 소요를 봐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한다

신체 장애인 (성인) 을 위한 시설로서는 국립으로 재활원이 부산에 하나 있고 기타 민간시설로 정신장애자 시설까지 합하여 18개소 있으나 수용정원은 5,583명 수용실 587개 수용실 면적 8.523 m^2 이다. 따라서 1인당 면적은 약 반평 즉 왜뚫자리 한장 넓이가 된다.

정신장애자시설을 포함한 신체장애자 시설의 연말 재소자 수는 4,000명 내외이고 남자 2,500명 여자 1,500명의 비율이다.

국립 재활원은 장애자치료가 1967년 말로 입원치료 유료 26명 통원치료 유료 35명이고 직업보도원생은 1967년 말로 208명 남자 159명, 여자 49명이 있으며 보장구 생산은 1967년 51개 교부 63개 수리 21개 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제주도에 종합장애자 복지센터 1개소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 각 1개소씩 마비 및 절단장애자 재활원을 더 증설하고 경남에 맹아학교 1개소와 중고등부를 부산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에 각 1개소씩 확충하면 하는 의견이다.

현재 맹아 농아학교는 초등부 162학급, 중등부 41학급, 고등부 16학급 초등부학생 2,493명 중등부 447명 고등부 181명, 교원 280명이다. 이 시설은 4~5만의 맹아 농아자에 대하여 너무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에 대하여서는 이외에 국립병원에 장애자 갱생 재활시설을 병설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책으로서는 생업자금 융자, 보호직업제도, 재활 상담소설치 재활치료 장애자 수첩교부로서 국공영교통기관 무임승차 보장구교부 수리, 맹인도서관등 기타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능한것 부터 요원의 확보를 얻어 할수 있는데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요원확보를 위하여서는 장애자복지요원 양성기구를 특별히 신설하면 좋겠다.

4. 재정은 국고와 지방금고가, 분담하되 장애자 복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중앙센터조직을 하되 지방은 독자성을 가진 지역센터로 활동하고 독자적인 분야만큼 지방에 분담시키면 좋겠다

5. 끝으로 특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장해발생추세에 있어서 6.25 후에 마비나 정신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사실인데 장해발생율이 특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위생 공중보건 위생관념의 강화에 대한 계몽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사고방지교육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부록< 1 >

사 회 복 지 기 초 자 료 조 사
(통 계 표)

통 계 표 목 차

I. 기본표	가구상황	645
1. 별표해 당		647
2.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648
3. 가구주의	연령	649
4. 응답자의	연령	650
5. 응답자의	종교	651
6. 가구주의	결혼관계	651
7. 가구주의	직업	652
8. 응답자의	직업	653
9. 가구주의	취업상황	654
10. 가구주의	교육정도	654
11. 응답자의	교육정도	655
12. 가구원	주	656
13. 가구	형태	656
14. 가족	형태	656
15. 별거자	수	657
16. 별거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658
17. 별거자의	연령	659
18. 별거자의	결혼관계	660
19. 별거자의	직업	661
20. 별거자의	취업상황	662
21. 별거자의	교육정도	663
22. 동거	노인 수	663
23. 동거	노인의 가구주와의 관계	664

24. 비정상자 수	664
25. 취업자 수	665
26. 취업자 중 직업여성 수	665
27. 가구주의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666
28. 가구주와 취업자의 연령	667
29. 가구주의 취업자의 결혼관계	668
30. 가구주의 취업자의 직업	669
31. 가구주의 취업자의 취업상황	670
32. 가구주의 취업자의 교육정도	670
33. 미취업자중 남자실업자 수	671
34. 미취업자중 여자실업자 수	671
35. 미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농가 제외)	672
36. 미취업자의 결혼관계	673
37. 미취업자의 연령	673
38. 미취업자의 교육정도	674
39. 미취업자의 미취업사유	674
40. 학령미달 아동 수	675
41. 취학 자녀 수	675
42. 피고용인 수	676
43. 피고용인의 종류	677
Ⅱ. 거주 생활	679
44. 주택 소유 여부	681
45. 사용 가능 방수	681
46. 거주 생활 만족도	682
47.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683

48. 하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683
49. 전기 시설에 대한 만족도	684
50. 변소 시설에 대한 만족도	684
51. 오물 처리에 대한 만족도	685
52. 목욕탕에 대한 만족도	685
53. 우물(펌프 포함)에 대한 만족도	686
54.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만족도	686
55. 축대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687
56. 화재 예방에 대한 만족도	687
57. 수해 예방에 대한 만족도	688
58. 주위환경중 가장 불만족한 것	689
59. 주위환경중 둘째로 불만족한 것	690

Ⅲ. 사회 복지 전 반 및 아동, 청소년 소녀 복지 문제	691
60. 사회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691
61. 사회복지 시책중 둘째로 시급한 것	692
62.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693
63.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책중 둘째로 시급한 것	694
64.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중 가장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695
65.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중 둘째로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696
66.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중 첫째에 대한 시설설립 주관자	697
67. 아동 및 청소년 소녀 복지시설중 둘째에 대한 시설설립 주관자	698
68.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698

69.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둘째로 어려운 문제	
70. 결식아 유무 및 결식정도	700
71. 학교 급식 혜택 정도	701
72. 학교 급식제도에 대한 평가	701
73. 학교 급식제도 잘못 평가시 그 이유	702
74. 교아 양연에 대한 태도	702
75. 교아 거택 보호에 대한 태도	703
76. 요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	703

IV. 부녀 복지문제 705

77. 부녀 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것	707
78. 미혼 직업여성에 대한 평가태도	708
79.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평가태도	709
80. 윤락여성에 대한 시책	709
81. 부부중 생활비 사용 결정자	708
82. 부부중 자녀교육문제 결정자	708
83. 부부중 재산관리문제 결정자	711
84. 부부의 생활비 사용시 의논정도	712
85. 부부의 자녀교육문제 의논정도	713
86. 부부의 재산관리문제 의논정도	714

V. 노인 복지문제 715

87. 노인 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717
88. 퇴직 희망 연령	717
89. 노후 여가이용의 희망하는 일과 직업	718
90. 노후 생활비 해결책	719

91. 노후 동거희망	720
92. 노후 여가이용의 오락	721
93. 양노원 입원에 대한 태도	722
94. 양노원입원 불찬성시 시설좋은 유료양노원 입원에 대한 태도	722
95. 노령부모 생존여부	723
96. 조부와 조모와의 동거자	724
97. 부와의 동거자	725
98. 모와의 동거자	726
99. 부의 건강상태	727
100. 모의 건강상태	728
101. 조부와 조모의 건강상태	729
102. 조부 또는 부의 취업여부	730
103. 조부 또는 모의 취업시 직업	731
104. 조모 또는 모의 취업여부	732
105. 노령자 취업시 취업사유	733
106. 노인 미취업자의 퇴직시 연령	734
107. 노인 미취업자의 퇴직시 직업	735
108. 노인 미취업자의 퇴직사유	736
109. 조부 또는 부의 오락	737
110. 조모 또는 모의 오락	738
111. 노인 동거시 가정내 문제 첫째	739
112. 노인 동거시 가정내 문제 둘째	740
113. 노인의 불만족 첫째	741
114. 노인의 불만족 둘째	742

Ⅵ. 심신장애자 복지문제	743
115. 심신장애자 복지시책중 가장 시급한것	745
116. 심신장애자 수	746
Ⅶ. 경제생활 및 기타문제	747
117. 가구주의 수입액	749
118. 가구주 부인의 수입액	750
119. 가구주 자녀의 수입액	751
120. 그외 가구원 수입액	752
121. 가구 총 조수입액	753
122. 가구주의 생활비 부담액	754
123. 가구주 부인의 생활비 부담액	755
124. 가구주 자녀의 생활비 부담액	756
125. 그외 가구원 총 생활비 부담액	757
126. 가구원 총 생활비 부담액	758
127. 생활비 지출총액	759
128. 수입 종류별 평균수입액	760
129. 생활비 지출 세목	760
130.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법 첫째	761
131.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법 둘째	761
132. 저축 또는 부족액	762
133. 작년과 생활형편 비교	763
134. 수해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그 해결방법	764
135. 한해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그 해결방법	765
136. 화재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그 해결방법	766
137. 상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그 해결방법	767

138. 결혼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해결방법	760
139. 실직시의 경제적곤경 여부 및 해결방법	769
140. 재해, 대사 준비로 저축여부	770
141. 재해, 대사 준비로 보험가입 여부	770
142. 재해, 대사 준비로 계가입 여부	771
143. 재해, 대사 준비로 조합가입 여부	772
144.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첫째	773
145.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둘째	774
146. 경제 생활 곤란점 첫째	775
147. 경제 생활 곤란점 둘째	776
148. 생활 수준	777
149. 문화적 활동 점수	777
150. 응답자의 오락, 첫째 좋아하는것	778
151. 응답자의 오락, 둘째 좋아하는것	779
VIII. 기혼 직업여성 복지문제	781
152. 취업동기 (I)	783
153. 취업동기 (II)	783
154. 경제적 곤경 해결 시 퇴직 희망여부	784
155. 응답자의 직업	785
156. 취업에 대한 남편의 처음태도	786
157. 취업에 대한 남편의 현재태도	786
158. 남편의 부인 취업반대 이유	787
159. 출근시간	787
160. 퇴근시간	788
161. 월 수입	789

162. 수입의 가계 도움 정도	790
163. 취업에 대한 만족도	790
164. 취업 만족시 그 사유(Ⅰ)	791
165. 취업 만족시 그 사유(Ⅱ)	791
166. 취업 불만족시 그 사유(Ⅰ)	792
167. 취업 불만족시 그 사유(Ⅱ)	793
168. 희망 직업	793
169. 출근후 가사 책임자	794
170. 출근후 보육 책임자	794
171. 가사, 보육책임자의 월평균 보수	795
172. 가사, 보육책임자에 대한 만족도	795
173. 가사 보육책임자에 대한 불만족 사유	796
174. 가사, 보육책임자에 대한 불만족 해결책	796
175. 퇴근후 가사 돌보는 시간	797
176.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인간관계	797
177.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Ⅰ)	798
178.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Ⅱ)	799
179. 상해 발생시 직장협조 정도	800
180. 출산 전, 후 휴가 및 편리제공	800
181. 가내 흥사, 대사시 보조	801
182. 육아 보호(젖먹이는 시간) 편리제공	801
183. 직장내 위생시설	802
184. 직장내 오락시설	802
185. 남자와 동등한 보수	803
186. 유급 휴가 유무	803
187. 유급 결근 유무	804

188. 취업의 유리점 대 불리점	824
189. 취업의 이점 (I)	805
190. 취업의 이점 (II)	805
191. 취업의 불리점 (I)	806
192. 취업의 불리점 (II)	806
193. 취미 생활	807
194. 주말, 공휴일 소일처 (I)	807
195. 주말, 공휴일 소일처 (II)	808
196. 기혼 취업여성에 대한 태도	808
197. 미혼 취업여성에 대한 태도	809
198. 희망 취업연수	809
199.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요국가 시책 (I)	810
200. 기혼 직업여성에 대한 요국가 시책 (II)	811
201. 응답자의 연령	812
202. 응답자의 교육정도	812
203. 응답자의 종교	813
204. 응답자의 결혼관계	813
205. 3세미만 자녀수	814
206. 4~8세 자녀수	814
207. 9~13세 자녀수	815
208. 14~20세 자녀수	815
209. 20세 이상 자녀수	816
210. 가구주의 직업	816
211. 취업연수	817
212. 노조 가입 여부	817

213. 직장 공제회 가입 여부	818
214. 직업단체 가입 여부	818
215. 생활수준	819

I . 기 본 표 가 구 상 황

1. 별표해 당

지역별 별표해당	서 울 (%)	중소도시 (%)	음 (%)	농 촌 (%)	어 촌 (%)
없 음	287 (49.0)	220 (48.9)	172 (57.9)	155 (51.6)	66 (66.0)
직 업 여 성	27 (4.6)	37 (8.2)	14 (4.7)	18 (6.0)	6 (6.0)
노 령 자	224 (38.2)	152 (33.8)	90 (30.3)	103 (34.3)	14 (14.0)
심신장애자	14 (2.4)	11 (2.4)	4 (1.3)	5 (1.7)	6 (6.0)
직 업 여 성 노 령 자	26 (4.4)	18 (4.0)	13 (4.4)	11 (3.7)	2 (2.0)
직 업 여 성 심신장애자	1 (0.2)	1 (0.2)	2 (0.7)	3 (1.0)	2 (2.0)
직 업 여 성 노 령 자 심신 장 해 자	3 (0.5)	1 (0.2)			1 (1.0)
노 령 자 심신장애자	4 (0.7)	10 (2.2)	2 (0.7)	5 (1.7)	3 (3.0)
계	586 (100.0)	450 (99.9)	279 (100.0)	300 (100.0)	100 (100.0)

2.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와의관계	지역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	%	%	%	%
가 구 주 — 남 자		268 (45.7)	327 (72.7)	248 (83.8)	265 (88.3)	89 (89.0)
# — 여 자		20 (3.4)	19 (4.2)	2 (0.7)	14 (4.7)	6 (6.0)
가 구 주 의 부 인		222 (37.9)	78 (17.3)	35 (11.8)	13 (4.3)	5 (5.0)
# 부		3 (0.5)	4 (0.9)			
# 모		7 (1.2)	3 (0.7)			
# 아들		28 (4.8)	11 (2.4)	10 (3.4)	4 (1.3)	
# 딸		23 (3.9)	3 (0.7)	2 (0.7)	1 (0.3)	
그 외 기 타 관 계		15 (2.6)	5 (1.1)		3 (10.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3. 가구주의 연령

연령 \ 지역 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9세 또는 그미만		3 (0.6)		1 (0.3)	
20 ~ 24 세	4 (0.7)	3 (0.6)		3 (1.0)	1 (1.0)
25 ~ 29 세	26 (4.4)	24 (5.3)	8 (2.7)	10 (3.3)	4 (4.0)
30 ~ 34 세	86 (14.7)	49 (10.9)	37 (12.5)	30 (10.0)	9 (9.0)
35 ~ 39 세	909 (18.6)	76 (16.9)	51 (17.2)	40 (13.3)	7 (7.0)
40 ~ 44 세	107 (18.3)	74 (16.4)	44 (14.8)	33 (11.0)	12 (12.0)
45 ~ 49 세	94 (16.0)	83 (18.4)	48 (16.2)	41 (13.7)	23 (23.0)
50 ~ 54 세	72 (12.3)	51 (11.3)	44 (14.8)	39 (13.0)	21 (21.0)
55 ~ 59 세	46 (7.9)	40 (8.9)	33 (11.1)	46 (15.3)	14 (14.0)
60 ~ 64 세	28 (4.8)	25 (5.5)	21 (7.1)	23 (7.7)	6 (6.0)
65 세 또는 그이상	14 (2.4)	22 (4.8)	11 (3.7)	34 (11.3)	3 (3.0)
계	586 (100.1)	450 (100.1)	297 (100.1)	300 (99.9)	100 (100.0)

4 응답자의 연령

연령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9 세 또는 그 미만	10 (1.7)	2 (0.4)		3 (1.0)	
20 ~ 24 세	40 (6.8)	10 (2.2)	3 (0.1)	4 (1.3)	1 (1.0)
25 ~ 29 세	67 (11.4)	38 (8.4)	21 (7.1)	13 (4.3)	4 (4.0)
30 ~ 34 세	99 (16.9)	58 (12.9)	41 (13.8)	34 (11.3)	9 (9.9)
35 ~ 39 세	99 (16.9)	79 (17.5)	50 (16.8)	38 (12.7)	9 (9.0)
40 ~ 44 세	93 (15.9)	68 (15.1)	39 (13.1)	36 (12.0)	12 (12.0)
45 ~ 49 세	75 (12.8)	73 (16.2)	48 (15.5)	42 (14.0)	22 (22.0)
50 ~ 54 세	48 (8.2)	47 (10.4)	40 (13.5)	33 (11.0)	22 (22.0)
55 ~ 59 세	25 (4.3)	43 (9.6)	28 (9.4)	44 (14.7)	13 (13.0)
60 ~ 64 세	17 (2.9)	16 (3.6)	18 (6.1)	23 (7.7)	5 (5.0)
65 세 또는 그 이상	13 (2.2)	16 (3.6)	11 (3.7)	30 (10.0)	3 (3.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5. 응답자의 종교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무종교	393 (67.1)	321 (71.2)	214 (71.1)	255 (85.0)	82 (82.0)
기독교	69 (11.8)	44 (9.8)	17 (5.7)	12 (4.0)	1 (1.0)
불교	83 (14.2)	60 (13.3)	51 (17.2)	21 (7.0)	12 (12.0)
천주교	29 (4.9)	19 (4.2)	8 (2.7)		4 (4.0)
천도교	1 (0.2)	1 (0.2)			
기타종교	8 (1.4)	5 (1.1)	7 (2.4)	8 (2.7)	
무응답	3 (0.5)			4 (1.3)	1 (1.0)
계	586 (100.1)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6. 가구주의 결혼관계

지역별 결혼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대혼	14 (2.4)	9 (2.0)		6 (2.1)	2 (2.0)
사별	33 (5.6)	29 (6.4)	6 (2.0)	21 (7.0)	8 (8.0)
이혼	2 (0.3)	3 (0.7)			1 (1.0)
기혼동거	522 (89.1)	403 (89.5)	289 (97.3)	268 (89.3)	88 (88.0)
불화별거	2 (0.3)			1 (0.3)	
취업별거	9 (1.5)	5 (1.1)	2 (0.7)	4 (1.3)	1 (1.0)
기타관계	3 (0.5)	1 (0.2)			
무응답	1 (0.2)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7 가구주의 직업

지 역 별 직 업	사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실업또는무직	89 (15.2)	69 (15.3)	27 (9.1)	33 (11.0)	16 (16.0)
전문적기술직업	56 (9.6)	55 (12.2)	11 (3.7)	6 (2.0)	
관 리 적 직 업	47 (8.0)	11 (2.4)	5 (1.7)	2 (0.7)	
사 무 종 사 자	87 (14.8)	47 (10.4)	18 (6.1)	3 (1.0)	6 (6.0)
판 매 종 사 자	133 (22.7)	115 (25.5)	73 (24.6)	6 (2.0)	8 (8.0)
농부등유사직업	14 (2.4)	50 (11.1)	98 (33.0)	215 (71.7)	4 (4.0)
어부 "		1 (0.2)	1 (0.3)	26 (8.7)	54 (54.0)
광부 "	7 (1.2)	2 (0.4)		1 (0.3)	
교통체신종사자	20 (3.4)	8 (1.8)	8 (2.7)	1 (0.3)	1 (1.0)
기능공단순노동자	99 (16.9)	58 (12.9)	30 (10.1)	6 (2.0)	8 (8.0)
서비스직업종사자	26 (4.4)	34 (8.7)	26 (8.8)	1 (0.3)	1 (1.0)
기타또는분류분능	8 (1.4)				2 (2.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100.0)	100 (100.0)

8 : 응답자의 직업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실업또는무직	306 (52.2)	123 (27.3)	58 (19.5)	41 (16.7)	19 (19.0)
전문기술직업	40 (6.8)	42 (9.3)	9 (3.0)	5 (1.7)	
관리직업	21 (3.6)	9 (2.0)	5 (1.7)	2 (0.7)	1 (1.0)
사무종사자	39 (6.7)	33 (7.3)	14 (4.7)	2 (0.7)	5 (5.0)
판매 "	80 (13.7)	112 (24.9)	69 (23.2)	6 (2.0)	9 (9.0)
농부 등유사직업	13 (2.2)	47 (10.4)	92 (31.0)	212 (70.7)	4 (4.0)
어부 "			1 (0.3)	23 (7.7)	51 (51.0)
광부 "	4 (0.7)			1 (0.3)	
교통채신종사자	5 (1.0)	6 (1.3)	5 (1.7)	1 (0.3)	1 (1.0)
기능공단순노동자	52 (8.9)	50 (11.1)	27 (9.1)	6 (2.0)	8 (8.0)
서비스직업종사자	17 (2.9)	28 (6.2)	17 (5.7)	1 (0.3)	1 (1.0)
기타또는분류불능	9 (1.4)				1 (1.0)
계	586 (100.1)	450 (99.8)	297 (99.9)	300 (100.1)	100 (100.0)

9 가 구 주 의 취 업 상 황

지 역 별 취업상황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실업 또는 무직	89 (15.2)	69 (14.3)	27 (9.1)	33 (11.0)	16 (16.0)
자 영 업 주	171 (29.2)	206 (54.8)	190 (64.0)	243 (81.0)	26 (26.0)
상 용	267 (45.6)	143 (31.8)	62 (20.9)	15 (5.0)	29 (29.0)
가 내 중 사	42 (7.2)	27 (6.0)	18 (6.1)	9 (3.0)	25 (25.0)
기 타	3 (0.5)	2 (0.4)			
무 응 답	14 (2.4)	3 (0.7)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100.0)	100 (100.0)

10 . 가 구 주 의 교 육 정 도 (※ 각 각 중 퇴 포 함)

지 역 별 교육정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문 맹	11 (1.9)	27 (6.0)	24 (8.1)	59 (19.7)	14 (14.0)
한 수	14 (2.4)	24 (5.3)	9 (3.3)	30 (10.0)	6 (6.0)
국 해	14 (2.4)	49 (10.9)	23 (7.7)	61 (20.3)	22 (22.0)
초 등	106 (18.1)	111 (24.7)	106 (35.7)	100 (33.3)	38 (38.0)
중 학	117 (20.0)	66 (14.7)	60 (20.2)	21 (7.0)	11 (11.0)
고 등	140 (23.0)	83 (18.4)	43 (14.5)	17 (5.7)	7 (7.0)
대 학 또는 그 이상	183 (31.2)	87 (19.3)	29 (9.8)	9 (3.0)	1 (1.0)
무 응 답	1 (0.2)	3 (0.7)	3 (0.6)	3 (1.0)	1 (1.0)
계	586 (100.1)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1 응답자의 교육정도 (각각 중퇴포함)

지역별 교육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문맹	22 (3.6)	32 (7.1)	26 (8.8)	61 (20.3)	15 (15.0)
한수	8 (1.4)	24 (5.3)	8 (2.7)	26 (8.7)	6 (6.0)
국해	20 (3.4)	46 (10.2)	23 (7.7)	60 (20.0)	23 (23.0)
초등	133 (22.7)	130 (28.9)	107 (36.0)	102 (34.0)	36 (36.0)
중학	113 (19.3)	69 (15.3)	64 (21.5)	19 (6.3)	11 (11.0)
고등	147 (25.1)	85 (18.9)	45 (15.2)	22 (7.3)	7 (7.0)
대학또는그이상	142 (24.2)	62 (13.8)	21 (7.1)	7 (2.3)	1 (1.0)
무응답	1 (0.2)	2 (0.4)	3 (1.0)	3 (1.0)	1 (1.0)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12 가구원수

지역별 가구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인	3 (0.5)	5 (1.1)		2 (0.7)	
2인	16 (2.7)	18 (4.0)	4 (1.3)	9 (5.0)	3 (3.0)
3인	46 (7.9)	33 (7.3)	10 (3.4)	21 (7.0)	11 (11.0)
4인	85 (14.5)	47 (10.4)	28 (9.4)	33 (11.0)	15 (15.0)
5인	109 (18.6)	67 (14.9)	29 (9.8)	33 (11.0)	18 (18.0)
6인	107 (18.3)	85 (18.9)	66 (22.2)	58 (19.4)	11 (11.0)
7인	87 (14.8)	64 (14.2)	71 (23.9)	49 (16.3)	23 (23.0)
8인	57 (9.7)	53 (11.8)	41 (13.8)	34 (11.3)	9 (9.0)
9인	36 (6.1)	42 (9.3)	20 (6.7)	25 (8.3)	8 (8.0)
10인	26 (4.4)	19 (4.2)	15 (5.1)	21 (7.0)	3 (3.0)
11인또는그이상	14 (2.4)	17 (3.8)	13 (4.4)	15 (5.0)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13 가구형태

지역별 가구형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일반가구	568 (96.9)	438 (97.2)	296 (99.7)	295 (98.3)	100 (100.0)
모자 "	13 (2.2)	3 (0.7)			
노인 "	1 (0.2)	1 (0.2)	1 (0.3)	2 (0.7)	
기타 "	4 (0.7)	8 (1.8)		3 (1.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14 가족형태

지역별 가족형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핵가족	387 (66.0)	299 (66.4)	193 (65.0)	186 (62.0)	78 (78.0)
계통가족 (직계단일)	107 (18.3)	98 (11.8)	52 (27.6)	103 (34.3)	13 (13.0)
결합가족 I (부모기혼형제 나친척)	23 (3.9)	19 (4.2)	11 (3.7)	10 (3.3)	3 (3.0)
결합가족 II (기혼형제동거)	3 (0.5)	2 (0.4)			1 (1.0)
결합가족 III (친척또는형제)	61 (10.4)	27 (6.0)	11 (3.7)	1 (0.3)	5 (5.0)
기타가족	5 (0.9)	5 (1.1)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15 . 별 거자수

지 역 별 별 거자 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읍	511 (87.2)	342 (76.0)	218 (73.4)	205 (68.3)	76 (76.0)
1	인	53 (9.0)	60 (13.3)	50 (16.8)	61 (20.3)	16 (16.6)
2	인	15 (2.6)	31 (6.9)	20 (6.7)	27 (9.0)	8 (8.0)
3	인	4 (0.7)	7 (1.6)	3 (1.0)	5 (1.7)	
4	인	1 (0.2)	6 (1.3)	5 (1.7)	2 (0.7)	
5	인		2 (0.4)			
6	#	2 (0.3)	2 (4.0)	1 (0.3)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 별 거자실수		111	189	125	138	32

16 별거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지역별 가구주와의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가구주-남자	13 (11.7)	24 (12.7)	1 (0.8)	4 (2.9)	1 (3.1)
아들	60 (54.1)	115 (60.8)	82 (65.6)	80 (58.0)	25 (78.1)
부	2 (1.8)	4 (2.1)			
형 또는 제	15 (13.5)	7 (3.7)	12 (9.6)	8 (5.8)	1 (3.1)
손자	1 (0.9)	3 (1.6)		5 (3.6)	
기타-남자	1 (0.9)		1 (0.8)	2 (1.4)	
가구주-여자	5 (4.5)				
부인	6 (5.4)	1 (0.5)		4 (2.9)	
딸	6 (5.4)	29 (15.3)	26 (20.8)	28 (20.3)	5 (15.6)
모	1 (0.9)	4 (2.1)	2 (1.6)	1 (0.7)	
작부	1 (0.9)	1 (0.5)	1 (0.8)	2 (1.4)	
자 또는 매				2 (1.4)	
손녀		1 (0.5)		2 (1.4)	
기타관계-여자					
계	111 (100.0)	189 (99.8)	125 (100.0)	138 (99.9)	32 (99.9)

17. 별거자의 연령

연령 \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4세 또는 그 미만	6 (5.4)	4 (2.1)	8 (6.4)	37 (26.8)	5 (15.6)
15 ~ 19 세	5 (4.5)	34 (18.0)	22 (17.6)	55 (39.9)	17 (53.1)
20 ~ 24 "	48 (43.2)	79 (41.8)	48 (38.4)	27 (19.6)	6 (18.6)
25 ~ 29 "	22 (19.8)	38 (20.1)	41 (23.8)	7 (5.1)	3 (9.4)
30 ~ 34 "	7 (6.3)	15 (7.9)	2 (1.6)	5 (3.6)	
35 ~ 39 "	3 (2.7)	3 (1.6)	1 (0.8)	3 (2.2)	
40 ~ 44 "	3 (2.7)	2 (1.1)	1 (0.8)	1 (0.7)	1 (3.1)
45 ~ 49 "	4 (3.6)	4 (2.1)		3 (2.2)	
50 ~ 54 "	4 (3.6)		1 (0.8)		
55 ~ 59 "	1 (0.9)	4 (2.1)			
60 ~ 64 "	6 (5.4)	4 (2.1)			
65 세 또는 그 이상	2 (1.8)	2 (1.1)	1 (0.8)		
계	111 (99.9)	189 (100.1)	125 (100.0)	138 (99.9)	32 (99.8)

18 별거자의 결혼관계

지역별 결혼관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마 혼	84 (75.7)	158 (83.6)	113 (90.4)	120 (87.7)	26 (81.3)
사 별	5 (4.5)	3 (1.6)	3 (2.4)	2 (1.4)	
이 혼		1 (0.5)			
기 혼 동 거	10 (9.0)	6 (3.2)	3 (2.4)	1 (0.7)	
불 화 별 거		3 (1.6)			
취 업 별 거	7 (6.3)	17 (9.0)	5 (4.0)	12 (8.7)	1 (3.1)
기 타 관 계	5 (4.5)	1 (0.5)	1 (0.8)	3 (2.2)	5 (15.6)
계	111 (100.0)	189 (100.0)	125 (100.0)	138 (100.0)	32 (100.0)

19 별거자의 직업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실업 또는 무직	25 (22.5)	64 (33.9)	38 (30.0)	18 (13.0)	7 (21.9)
전문적·기술적 직업	2 (1.8)	17 (9.0)	5 (4.0)	4 (0.7)	2 (6.3)
관리적 직업	2 (1.8)			1 (2.9)	
사무 종사자	1 (0.9)	21 (11.1)	13 (10.4)	10 (7.2)	
판매 "	2 (1.8)	3 (1.6)	9 (7.2)	12 (8.7)	
농부 등	3 (2.7)	3 (1.6)		1 (0.7)	
어부 "					4 (12.5)
광부 "		1 (0.5)			
교통·통신 종사자		3 (1.6)	5 (4.0)		
기능공·단순 노동자 등	8 (7.2)	13 (6.9)	13 (10.4)	36 (26.1)	
서비스 직업	57 (51.4)	61 (32.3)	40 (32.0)	36 (26.1)	14 (43.8)
기타 또는 분류불능	11 (9.9)	3 (1.6)	2 (1.6)	20 (14.5)	5 (15.6)
계	111 (100.0)	189 (100.1)	125 (100.0)	138 (99.9)	32 (100.1)

20 별거자취업시 취업상황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무직또는실업	25 (22.5)	64 (33.9)	38 (30.4)	18 (13.0)	7 (21.9)
자영업주	7 (6.3)	3 (1.6)	7 (5.6)	3 (2.2)	2 (6.3)
상용	57 (51.4)	115 (60.8)	79 (63.2)	92 (66.7)	18 (56.3)
일용	11 (9.9)	4 (2.1)	1 (0.8)	10 (7.2)	
가내종사	1 (0.9)				
기타	10 (9.0)	3 (1.6)		15 (10.7)	5 (15.6)
계	111 (100.0)	189 (100.0)	125 (100.0)	138 (99.8)	32 (100.1)

21. 별거자의 교육정도 (각각 중퇴포함)

지역별 교육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문	맹	5 (4.5)	2 (1.1)	4 (3.2)	1 (0.7)	
한	수		1 (0.5)			
국	해	1 (0.9)	5 (2.6)		5 (3.6)	
초	등	18 (16.2)	22 (11.6)	22 (17.6)	65 (47.1)	6 (18.8)
중	학	14 (12.6)	30 (15.9)	24 (19.2)	21 (15.2)	10 (31.3)
고	등	24 (21.6)	52 (27.5)	46 (36.8)	28 (20.3)	9 (23.1)
대학또는그이상		41 (36.9)	77 (40.7)	29 (23.2)	10 (7.2)	7 (21.9)
기	타	8 (7.2)			8 (5.8)	
계		111 (99.9)	189 (99.9)	125 (100.0)	138 (99.9)	32 (100.1)

22. 노령자 수

지역별 노령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	음	484 (82.6)	356 (79.1)	231 (77.8)	221 (73.7)	91 (91.0)
1	인	78 (13.3)	77 (17.1)	59 (19.9)	64 (21.3)	7 (7.0)
2	인	24 (4.1)	17 (3.8)	6 (2.0)	15 (5.0)	1 (1.0)
3	인			1 (0.3)		
4	인					1 (1.0)
계		586 (100.0)	46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23. 노령자 동거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지역별 노령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484 (82.6)	356 (79.1)	231 (77.8)	221 (73.7)	91 (91.0)
가구주	4 (0.7)	13 (2.9)	8 (2.7)	14 (4.7)	2 (2.0)
가구주 부인	7 (1.2)	4 (0.9)	4 (1.3)	9 (3.0)	
가구주와부인	6 (1.0)	8 (1.8)	3 (1.0)	15 (5.0)	
조부또는 부	9 (1.5)	5 (1.1)	8 (2.7)	3 (1.0)	1 (1.0)
조모 # 모	55 (9.4)	54 (12.0)	39 (13.1)	33 (11.0)	5 (5.0)
조부모 # 부모	15 (2.6)	7 (1.6)	3 (1.0)	4 (1.3)	
조부모와부모	1 (0.2)	2 (0.4)			
직계 외 노인	3 (0.5)	1 (0.2)	1 (0.3)	1 (0.3)	
기타	2 (0.3)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24. 비정상자 수

지역별 비정상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527 (89.9)	408 (90.7)	269 (90.6)	275 (91.7)	85 (85.0)
1인	54 (9.2)	34 (7.5)	25 (8.4)	21 (7.0)	13 (13.0)
2인	4 (0.7)	8 (1.8)	3 (1.0)	3 (1.0)	1 (1.0)
3인	1 (0.2)			1 (0.3)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25. 취업자 수

지역별 취업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읍	32 (5.5)	16 (3.6)	8 (2.7)	5 (1.7)	4 (4.0)
1	인	415 (70.8)	283 (62.9)	176 (59.3)	170 (56.7)	64 (64.0)
2	인	101 (17.2)	106 (23.5)	77 (25.9)	84 (28.0)	25 (25.0)
3	인	27 (4.6)	36 (8.0)	27 (9.1)	27 (9.0)	6 (6.0)
4	인	9 (1.5)	6 (1.3)	8 (2.7)	12 (4.0)	1 (1.0)
5	인	2 (0.3)	2 (0.4)	1 (0.3)	2 (0.7)	
6	인	1 (0.2)	1 (0.2)			
계		586 (100.1)	450 (99.9)	297 (100.0)	300 (100.1)	100 (100.0)

26. 취업자중 직업여성 수

지역별 직업여성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읍	494 (84.3)	353 (78.4)	251 (84.5)	243 (81.0)	84 (84.0)
기혼여성 1인		53 (9.0)	50 (11.1)	28 (9.4)	32 (10.7)	11 (11.0)
" 2인		1 (0.2)				1 (1.0)
미혼여성 1인		29 (4.9)	31 (6.9)	16 (5.4)	17 (5.7)	4 (4.0)
" 2인		5 (0.8)	8 (1.8)	1 (0.3)	5 (1.7)	
기혼1인미혼1인		4 (0.7)	7 (1.6)	1 (0.3)	3 (1.0)	
" 1 " 2 "			1 (0.2)			
계		586 (99.9)	450 (100.0)	297 (99.9)	300 (100.1)	100 (100.0)

27. 가구주의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지역 별 가구주와의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아들	112 (45.0)	137 (51.5)	105 (61.4)	135 (65.5)	30 (60.0)
부	2 (0.8)	3 (1.1)	1 (0.6)		
형 또는 제	23 (9.2)	14 (5.3)	11 (6.4)	3 (1.5)	3 (6.0)
손자				12 (5.8)	
기타관계남자	7 (2.6)	6 (2.3)	30 (17.5)	1 (0.5)	2 (4.0)
부인	49 (19.7)	37 (13.9)	22 (12.9)	15 (7.3)	9 (18.0)
딸	45 (18.1)	54 (20.3)	1 (0.6)	29 (14.1)	6 (12.0)
모	3 (1.2)	2 (0.8)		3 (1.5)	
자부	1 (0.4)	3 (1.1)	1 (0.6)	2 (1.0)	
자 또는 매	5 (2.0)	5 (1.9)		3 (1.5)	
손녀		1 (0.4)		3 (1.5)	
기타관계여자	2 (0.8)	4 (1.5)			
계	249 (100.0)	266 (100.1)	171 (100.0)	206 (100.2)	50 (100.0)

28. 가구주 외 취업자의 연령

지역별 연령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4세또는그미만	1 (0.4)	2 (0.8)	5 (2.9)	2 (1.0)	
15 ~ 19 세	19 (7.6)	35 (13.2)	22 (12.9)	43 (20.9)	
20 ~ 24 "	64 (25.7)	66 (24.8)	45 (26.3)	59 (28.6)	17 (34.0)
25 ~ 29 "	75 (30.1)	79 (29.7)	47 (27.5)	38 (18.4)	18 (36.0)
30 ~ 34 "	42 (16.9)	37 (13.9)	21 (12.3)	23 (11.2)	8 (16.0)
35 ~ 39 "	21 (8.4)	13 (4.9)	17 (9.9)	12 (5.8)	2 (4.0)
40 ~ 44 "	6 (2.4)	11 (4.1)	7 (4.1)	16 (7.8)	2 (4.0)
45 ~ 49 "	9 (3.6)	14 (5.3)	2 (1.2)	5 (2.4)	2 (4.0)
50 ~ 54 "	6 (2.4)	3 (1.1)	4 (2.3)	6 (2.9)	
55 ~ 59 "	1 (0.4)	3 (1.1)			1 (2.0)
60 ~ 64 "	3 (1.2)	2 (0.8)	1 (0.6)	2 (1.0)	
65세또는그이상	2 (0.8)	1 (0.4)			
계	249 (99.9)	266 (100.1)	171 (100.0)	206 (100.0)	50 (100.0)

29. 가구주와 취업자의 결혼관계

지역별 결혼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미혼	사별이혼	156 (62.7)	171 (64.3)	113 (66.1)	138 (67.0)	29 (58.0)
기혼	동거	83 (33.3)	77 (28.9)	54 (31.6)	55 (26.7)	16 (32.0)
	불화	1 (0.4)	2 (0.8)	1 (0.6)		
	취업	1 (0.4)	9 (3.4)	1 (0.6)	8 (3.9)	
	기타	4 (1.6)				5 (10.0)
계		249 (100.0)	266 (100.0)	171 (100.1)	206 (100.0)	50 (100.0)

30. 가구주의 취업자의 직업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전문적 기술직	23 (9.2)	35 (13.2)	10 (5.8)	7 (3.4)	
관리적 직업	3 (1.2)				
사무종사자	66 (26.5)	58 (21.8)	15 (8.8)	18 (8.7)	4 (8.0)
판매 "	45 (18.1)	59 (22.2)	38 (22.2)	20 (9.7)	9 (18.0)
농부 등	12 (4.8)	16 (6.0)	32 (18.7)	98 (47.6)	3 (6.0)
어부 등	1 (0.4)				25 (50.0)
광부 등					
교통채신종사자	2 (0.8)	7 (2.6)	14 (8.2)	1 (0.5)	
기능공단순노동 자등	65 (26.1)	53 (19.9)	33 (19.3)	32 (15.5)	1 (2.0)
서비스 직업	13 (5.2)	33 (12.4)	26 (15.2)	14 (6.8)	1 (2.0)
기타또는분류 불능	19 (7.6)	5 (1.9)	3 (1.8)	16 (7.8)	5 (10.0)
계	249 (99.9)	266 (100.0)	171 (100.0)	206 (100.0)	50 (100.0)

31. 가구주의 취업자의 취업상황

지역별 취업상황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자영업주	48 (19.3)	53 (19.9)	46 (26.9)	35 (17.0)	9 (18.0)
상용	160 (64.3)	164 (61.7)	98 (51.5)	78 (37.9)	13 (26.0)
임용	10 (4.0)	23 (8.6)	11 (6.4)	12 (5.8)	5 (10.0)
가배종사	10 (4.0)	22 (8.3)	24 (14.0)	65 (31.6)	2 (4.0)
기타	21 (8.4)	4 (1.5)	2 (1.2)	16 (7.8)	11 (22.0)
계	249 (100.0)	266 (100.0)	171 (100.0)	206 (100.1)	40 (100.0)

32. 가구주의 취업자의 교육정도 (※각각 중퇴포함)

지역별 교육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문맹	6 (2.4)	11 (4.1)	2 (1.2)	2 (1.0)	2 (4.0)
한수	1 (0.4)	2 (0.8)		1 (0.5)	
국해	5 (2.0)	8 (3.0)	1 (0.6)	9 (4.4)	
초등	36 (14.5)	58 (21.8)	53 (31.0)	106 (51.5)	25 (50.0)
중학	38 (15.3)	41 (15.4)	45 (26.3)	42 (20.4)	12 (24.0)
고등	78 (31.3)	83 (31.2)	44 (25.7)	33 (16.0)	9 (18.0)
대학또는그이상	85 (34.1)	62 (23.3)	26 (15.2)	7 (3.4)	1 (2.0)
기타		1 (0.4)		6 (2.9)	
계	249 (100.0)	266 (100.0)	171 (100.0)	206 (100.1)	50 (100.0)

33. 미취업자중 남자실업자수

지역별 실업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	읍	512 (87.4)	404 (89.7)	251 (84.5)	278 (92.7)	76 (76.0)
1	인	63 (10.8)	36 (8.0)	42 (14.1)	18 (6.0)	18 (18.0)
2	인	9 (1.5)	9 (2.0)	3 (1.0)	4 (1.3)	6 (6.0)
3	인	2 (0.3)	1 (0.2)			
4	인					
5	인			1 (0.3)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34. 미취업자중 여자 실업자수

지역별 실업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	읍	556 (94.9)	420 (93.3)	291 (98.0)	286 (95.3)	97 (97.0)
1	인	23 (3.9)	18 (4.0)	6 (2.0)	9 (3.0)	3 (3.0)
2	인	5 (0.9)	9 (2.0)		5 (1.7)	
3	인	1 (0.2)	2 (0.4)			
4	인		1 (0.2)			
5	인	1 (0.2)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35. 미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농가제 외)

지역별 가구주와의관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가구주—남자	59 (25.1)	36 (19.5)	20 (19.8)	7 (36.8)	8 (10.0)
아들	48 (20.4)	33 (17.8)	32 (31.7)	3 (15.8)	27 (33.8)
부	2 (0.9)	6 (3.2)	1 (1.0)		
형 또는 제	13 (5.5)	6 (3.2)	5 (5.0)		1 (1.3)
손자	3 (1.3)	3 (1.6)	1 (1.0)		1 (1.3)
기타관계남자	3 (1.3)	1 (0.5)			
가구주—여자	0	1 (0.6)			
부인	0	1 (0.6)			
딸	74 (31.5)	79 (42.7)	40 (39.6)	9 (47.4)	39 (48.8)
모					
자부					
자 또는 매	19 (8.1)	5 (2.7)	2 (2.0)		4 (5.0)
손녀	1 (0.4)	5 (2.7)			
기타관계여자	13 (5.5)	9 (4.9)			
계	235 (100.0)	185 (99.8)	101 (100.1)	19 (100.0)	80 (100.2)

36. 미취업자의 결혼관계 (※ 농가제외)

지역별 결혼관계	서	불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머 .. 혼	170	(72.3)	133 (71.9)	77 (76.2)	11 (57.9)	72 (90.0)		
사 .. 별	3	(1.3)	3 (1.6)			1 (1.3)		
이 .. 혼	1	(0.4)						
기 혼 동 거	58	(24.7)	47 (25.4)	24 (23.8)	7 (36.8)	7 (8.8)		
불 화 동 거			2 (1.1)		1 (5.3)			
취 업 별 거	1	(0.4)						
기 타 관 계	2	(0.9)						
계	235	(100.0)	185 (100.0)	101 (100.0)	19 (100.0)	80 (100.1)		

37. 미취업자의 연령 (※ 농가제외)

지역별 연령	서	불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15세 미만			2 (1.1)	1 (1.0)				
16 ~ 19 세	46	(19.6)	47 (25.4)	32 (31.7)	6 (31.6)	42 (52.5)		
20 ~ 24 세	82	(34.9)	68 (26.8)	33 (32.7)	4 (21.1)	27 (33.8)		
25 ~ 29 세	45	(19.1)	20 (10.8)	12 (11.9)	1 (5.3)	3 (3.8)		
30 ~ 34 "	10	(4.3)	8 (4.3)	3 (3.0)	1 (5.3)	1 (1.3)		
35 ~ 39 "	11	(4.7)	2 (1.1)	2 (2.0)	2 (10.5)	1 (1.3)		
40 ~ 44 "			2 (1.1)	3 (3.0)		2 (2.5)		
45 ~ 49 "	8	(3.4)	7 (3.8)	3 (3.0)	1 (5.3)	1 (1.3)		
50 ~ 54 "	6	(2.6)	4 (2.2)	5 (5.0)		1 (1.3)		
55 ~ 59 "	14	(6.0)	13 (7.0)	2 (2.0)	3 (15.8)	2 (2.5)		
60 ~ 64 "	13	(5.5)	11 (5.9)	4 (4.0)	1 (5.3)			
65 세 이상			1 (0.5)	1 (1.0)				
계	235	(100.1)	185 (100.0)	101 (100.2)	19 (100.2)	80 (100.3)		

38. 미취업자의 교육정도 (※ 농가제의 각각 중퇴포함)

지역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문맹	4 (1.7)	10 (5.4)	5 (5.0)	2 (10.5)	1 (1.3)
한수	3 (1.3)	1 (0.5)	1 (1.0)		1 (1.3)
국해	1 (0.4)	7 (3.8)	2 (2.0)	1 (5.3)	1 (1.3)
초등	43 (18.3)	56 (30.3)	35 (34.7)	10 (52.6)	6 (82.5)
중학	60 (25.5)	53 (28.6)	31 (30.7)	1 (5.3)	7 (8.8)
고등	74 (31.5)	47 (25.4)	22 (21.8)	5 (26.3)	2 (2.5)
대학또는그이상	43 (18.3)	11 (5.9)	5 (5.0)		1 (1.3)
기타	7 (3.0)				1 (1.3)
계	235 (100.0)	185 (99.9)	101 (100.2)	19 (100.0)	80 (100.3)

39. 미취업자의 미취업사유 (※ 농가제의)

지역별 미취업사유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미혼여자가사	77 (32.8)	62 (33.5)	46 (39.6)	9 (47.4)	42 (52.5)
" 질환심신장애	2 (0.9)				
남자불구	4 (1.7)	8 (4.3)	4 (4.0)		2 (2.5)
" 정신 질환					1 (1.3)
" 질환	9 (3.8)	7 (3.8)	8 (7.9)	2 (10.5)	4 (5.0)
" 정년퇴직노령	10 (4.3)	8 (4.3)	1 (1.0)		
" 실업	124 (52.8)	98 (53.0)	41 (40.6)	7 (36.8)	29 (36.3)
기타	9 (3.8)	2 (1.1)	6 (5.9)	1 (5.3)	2 (2.5)
계	235 (100.1)	185 (100.0)	101 (100.0)	19 (100.0)	80 (100.2)

40. 학 력 미 달 아 동 수

지역 별 아동수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310 (52.9)	202 (44.9)	118 (39.7)	115 (38.3)	43 (43.0)
1	인	154 (26.3)	122 (27.1)	93 (31.3)	81 (27.0)	23 (23.0)
2	인	96 (16.4)	92 (20.4)	68 (22.9)	69 (23.0)	27 (27.0)
3	인	26 (4.4)	31 (6.9)	16 (5.4)	33 (11.0)	4 (4.0)
4	인		3 (0.7)	2 (0.7)	2 (0.7)	3 (3.0)
계		586 (100.7)	450 (100.1)	297 (100.1)	300 (100.0)	100 (100.0)

41. 취 학 자 녀 수

지역 별 자녀수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126 (21.5)	114 (25.3)	55 (18.5)	81 (27.0)	32 (32.0)
1	인	124 (21.2)	94 (20.9)	55 (18.5)	60 (20.0)	21 (21.0)
2	인	120 (20.5)	86 (19.1)	78 (26.3)	76 (25.3)	32 (32.0)
3	인	109 (18.6)	78 (17.3)	62 (20.9)	58 (19.3)	13 (13.0)
4	〃	63 (10.8)	48 (10.7)	30 (10.1)	22 (7.3)	1 (1.0)
5	〃	32 (5.5)	26 (5.8)	9 (3.0)	3 (1.0)	1 (1.0)
6	〃	10 (1.7)	3 (0.7)	7 (2.4)		
7	〃	1 (0.2)	1 (0.2)	1 (0.3)		
8	〃	1 (0.2)				
계		586 (100.2)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42. 피고용인수

지역별 피고용인수	서 울	중 조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460 (78.5)	392 (87.1)	257 (86.5)	287 (95.7)	98 (98.0)
1 인	105 (17.9)	35 (7.8)	28 (9.4)	12 (4.0)	
2 "	12 (2.0)	12 (2.7)	1 (0.3)		1 (1.0)
3 "	4 (0.7)	3 (0.7)	5 (0.7)		
4 "	2 (0.3)	1 (0.2)	2 (0.7)	1 (0.3)	1 (1.0)
5 "		1 (0.2)	2 (0.3)		
6 "	2 (0.3)	2 (0.4)	1 (0.3)		
7 "		1 (0.2)			
8 "					
9 "					
10인 또는 그 이상	1 (0.2)	1 (0.2)	1 (0.3)		
계	586 (99.9)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43 피고용인의 종류

지 역 별 종 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460 (78.5)	392 (87.0)	257 (86.5)	287 (95.7)	98 (98.0)
식 모	107 (18.3)	25 (5.6)	9 (3.0)		1 (1.0)
머 슴	2 (0.3)	4 (0.9)	11 (3.7)	12 (4.0)	
취 업 고 용 인	14 (2.4)	20 (4.4)	14 (4.7)		1 (1.0)
식 모 , 머 슴		2 (0.4)	1 (0.3)		
식모,취업고용인	3 (0.5)	7 (1.6)	5 (1.7)	1 (0.3)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Ⅱ . 거 주 생 활

44. 주택소유 여부

지역별 소유형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차기집	432 (73.7)	320 (71.1)	246 (82.8)	293 (97.7)	88 (83.0)
전세집	68 (11.6)	52 (11.6)	27 (9.1)	4 (1.3)	1 (1.0)
"방	42 (7.2)	42 (9.3)	3 (2.7)		
월세집	17 (2.9)	9 (2.0)	11 (3.7)		2 (2.0)
"방	19 (3.2)	18 (4.0)	3 (1.0)	2 (0.7)	8 (8.0)
사택등	1 (0.2)	5 (1.1)	1 (0.3)		
기타	7 (1.2)	4 (0.9)	1 (0.3)	1 (0.3)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45. 사용 가능 방수

지역별 방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1 개	110 (18.8)	64 (14.2)	27 (9.1)	13 (4.3)	10 (10.0)
2 "	136 (23.2)	119 (26.4)	102 (34.3)	136 (45.3)	23 (23.0)
3 "	174 (29.7)	129 (28.7)	98 (33.0)	94 (31.3)	27 (27.0)
4 "	103 (17.6)	74 (16.4)	35 (11.4)	38 (12.7)	43 (34.0)
5 "	43 (7.3)	44 (9.8)	25 (8.4)	12 (4.0)	3 (3.0)
6 "	14 (2.4)	11 (2.4)	3 (1.0)	5 (1.7)	3 (3.0)
7 "	6 (1.0)	9 (2.0)	7 (2.4)	2 (0.7)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46 거주생활

지 역 별 불만족점수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0 점	228 (38.9)	221 (49.1)	131 (44.1)	202 (67.3)	22 (22.0)
1 "	115 (19.6)	92 (20.4)	69 (23.2)	65 (21.7)	34 (34.0)
2 "	97 (16.6)	61 (13.6)	42 (14.1)	25 (8.3)	12 (12.0)
3 "	56 (9.6)	40 (8.9)	29 (9.8)	5 (1.7)	19 (19.0)
4 "	31 (5.3)	21 (4.7)	15 (5.1)	1 (0.3)	5 (5.0)
5 "	23 (3.9)	9 (2.0)	7 (2.4)	2 (0.7)	3 (3.0)
6 "	26 (4.4)	2 (0.4)	3 (1.0)		2 (2.0)
7 "	5 (0.9)	2 (0.4)	1 (0.3)		2 (2.0)
8 "	4 (0.7)	2 (0.4)			1 (1.0)
무 응 답	1 (0.2)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 아래표 57까지 참조)

47.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113 (19.3)	166 (36.9)	213 (71.7)	300	100
매우만족	112 (20.8)	54 (12.0)	7 (2.4)		
만족한편	202 (34.5)	156 (34.7)	50 (16.8)		
그저그렇다	59 (10.1)	33 (7.3)	8 (2.7)		
불만족한편	49 (8.4)	37 (8.2)	16 (5.4)		
매우불만족	37 (6.3)	4 (0.9)	2 (0.7)		
모르겠다	1 (0.2)		1 (0.3)		
무응답	3 (0.5)				
계	586 (100.1)	450 (100.0)	297 (100.0)	300	100

48. 하수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65 (11.1)	71 (15.8)	86 (29.0)	253 (84.3)	97 (97.0)
매우만족	109 (18.6)	37 (8.2)	19 (6.4)		
만족한편	234 (39.9)	180 (40.0)	62 (20.9)	16 (5.3)	1 (1.0)
그저그렇다	78 (13.3)	64 (14.2)	63 (21.2)	29 (9.7)	1 (1.0)
불만족한편	64 (10.9)	66 (14.7)	49 (16.5)	1 (0.3)	
매우불만족	34 (5.8)	29 (6.4)	18 (6.1)		
모르겠다	1 (0.2)	1 (0.2)		1 (0.3)	
무응답	1 (0.2)	2 (0.4)			1 (1.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100.1)	100 (100.0)

49. 전기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22 (3.8)	32 (7.1)	40 (13.5)	271 (90.3)	83 (83.0)
매우만족	182 (31.1)	110 (24.4)	64 (21.5)	1 (0.3)	
만족한편	280 (47.8)	245 (54.4)	162 (54.5)	23 (7.7)	12 (12.0)
그저그렇다	70 (11.9)	42 (9.3)	22 (7.4)	1 (0.3)	4 (4.0)
불만족한편	27 (4.6)	14 (3.1)	5 (1.7)	1 (0.3)	
매우불만족	4 (0.7)	6 (1.3)	4 (1.3)	1 (0.3)	
무응답	1 (0.2)	1 (0.2)		1 (0.3)	1 (1.0)
계	586 (100.1)	450 (99.8)	297 (99.9)	300 (99.5)	100 (100.0)

50. 변소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13 (2.2)	6 (1.3)	3 (1.0)	3 (1.0)	
매우만족	72 (12.3)	49 (10.9)	12 (4.0)	20 (6.7)	
만족한편	209 (35.7)	205 (45.6)	125 (42.1)	132 (44.0)	14 (14.0)
그저그렇다	139 (23.7)	128 (28.4)	113 (38.0)	122 (40.7)	46 (46.0)
불만족한편	99 (16.9)	47 (10.4)	36 (12.1)	16 (5.3)	34 (34.0)
매우불만족	51 (8.7)	15 (3.3)	8 (2.7)	3 (1.0)	5 (5.0)
무응답	3 (0.5)			4 (1.3)	1 (1.0)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51. 오물 처리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19 (3.2)	17 (3.8)	14 (4.7)	14 (4.7)	
매 우 만 족	55 (9.4)	54 (12.0)	12 (4.0)	25 (8.3)	1 (1.0)
만 족 한 편	213 (36.3)	227 (50.4)	130 (43.8)	125 (41.7)	9 (9.0)
그저그렇다	113 (19.3)	94 (20.9)	100 (33.7)	120 (40.0)	64 (64.0)
불만족한편	116 (19.8)	48 (10.7)	35 (11.8)	12 (4.0)	23 (23.0)
매우불만족	66 (11.3)	9 (2.0)	6 (2.0)		2 (2.0)
모 르 겠 다				2 (0.7)	
무 응 답	4 (0.7)	1 (0.2)		2 (0.7)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1)	100 (100.0)

52. 목욕탕에 대한 만족

지역별 만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261 (61.6)	399 (88.7)	287 (96.6)	300	100
매 우 만 족	25 (4.2)	7 (1.6)	1 (0.3)		
만 족 한 편	70 (11.9)	27 (6.0)	5 (1.7)		
그저그렇다	28 (4.8)	9 (2.0)	1 (0.3)		
불만족한편	47 (8.0)	7 (1.6)	3 (1.0)		
매우불만족	35 (6.0)	1 (0.2)			
모 르 겠 다	2 (0.3)				
무 응 답	18 (3.1)				
계	586 (99.9)	450 (100.1)	297 (99.9)	300	100

53. 우물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394 (67.2)	159 (34.3)	74 (24.9)	31 (10.1)	2 (2.0)
매우만족	16 (2.7)	63 (14.0)	39 (13.1)	61 (20.3)	1 (1.0)
만족한편	70 (11.9)	142 (31.6)	124 (41.8)	119 (39.7)	9 (9.0)
그저그렇다	42 (7.2)	42 (9.3)	29 (9.8)	32 (10.7)	30 (30.0)
불만족한편	30 (5.1)	33 (7.3)	24 (8.1)	33 (11.0)	53 (53.0)
매우불만족	15 (2.6)	9 (2.0)	7 (2.4)	21 (7.0)	4 (4.0)
모르겠다	2 (0.3)				
무응답	17 (2.9)	2 (0.4)		3 (1.0)	1 (1.0)
계	586 (99.9)	450 (99.9)	297 (100.1)	300 (100.1)	100 (100.0)

54. 건물의 견고성에 대한 안전도

지역별 안전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48 (8.2)	7 (1.6)	1 (0.3)	27 (9.0)	
매우만족	73 (12.5)	58 (12.9)	11 (3.7)	36 (12.0)	1 (1.0)
만족한편	187 (31.9)	166 (36.7)	149 (50.2)	127 (42.3)	7 (7.0)
그저그렇다	179 (30.5)	145 (32.2)	85 (28.6)	78 (26.0)	73 (73.0)
불만족한편	61 (10.4)	60 (13.3)	46 (15.5)	26 (8.7)	17 (17.0)
매우불만족	26 (4.4)	12 (2.7)	5 (1.7)	5 (1.7)	
모르겠다	5 (0.9)	3 (0.7)			
무응답	7 (1.2)			1 (0.3)	2 (2.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55. 축매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367 (62.6)	271 (60.2)	174 (58.6)	220 (73.3)	83 (83.0)
매우만족	53 (9.0)	24 (5.3)	11 (3.7)	11 (3.7)	1 (1.0)
만족한편	85 (14.5)	87 (19.3)	66 (22.2)	39 (13.0)	3 (3.0)
그저그렇다	50 (8.5)	34 (7.6)	27 (9.1)	24 (8.0)	10 (10.0)
불만족한편	12 (2.0)	25 (5.6)	17 (5.7)	4 (1.3)	2 (2.0)
매우불만족	8 (1.4)	6 (1.3)	2 (0.7)		
모르겠다	1 (0.2)	2 (0.4)			
무응답	10 (1.7)	1 (0.2)		2 (0.7)	1 (1.0)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100.0)	100 (100.0)

56. 화재예방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만족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138 (23.5)	45 (10.0)		109 (36.3)	4 (4.0)
매우만족	41 (7.0)	46 (10.2)	19 (6.4)	20 (6.7)	1 (1.0)
만족한편	148 (25.3)	131 (29.1)	126 (42.4)	47 (15.7)	6 (6.0)
그저그렇다	149 (25.4)	157 (34.9)	97 (32.7)	113 (37.7)	66 (66.0)
불만족한편	67 (11.4)	53 (11.8)	47 (15.8)	10 (3.3)	22 (22.0)
매우불만족	28 (4.8)	11 (2.4)	8 (2.7)		
모르겠다	6 (1.0)	4 (0.9)			
무응답	9 (1.5)	3 (0.7)		1 (0.3)	1 (1.0)
계	586 (99.9)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57. 수해 예방에 대한 만족도

지역 별 만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219 (37.4)	98 (21.8)	13 (4.4)	127 (42.3)	2 (2.0)
매 우 만 족	57 (9.7)	55 (12.2)	48 (16.2)	23 (7.7)	
만 족 한 편	147 (25.1)	144 (32.0)	154 (51.9)	50 (16.7)	7 (7.0)
그 저 그 령 다	86 (14.7)	117 (26.0)	59 (19.9)	89 (29.6)	77 (77.0)
불 만 족 한 편	33 (5.6)	23 (5.1)	15 (5.1)	9 (3.0)	13 (13.0)
매 우 불 만 족	31 (5.3)	5 (1.1)	8 (2.7)		
모 르 겠 다	4 (0.7)	4 (0.9)			
무 응 답	9 (1.5)	4 (0.9)		2 (0.7)	1 (1.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2)	300 (100.0)	100 (100.0)

58. 주위 환경중에서 가장 불만족한것

지역별 불만족한것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113 (19.3)	100 (22.2)	62 (20.9)	47 (15.7)	11 (11.0)
교 통 불 편	130 (22.2)	70 (15.5)	45 (15.2)	86 (28.7)	19 (19.0)
시장원거리불결	79 (13.5)	49 (10.9)	24 (8.1)	39 (13.0)	8 (8.0)
차도의먼지소음	87 (14.8)	72 (16.0)	46 (15.5)	13 (4.3)	1 (1.0)
차 도 위 험	17 (2.9)	18 (4.0)	11 (3.7)	28 (9.3)	12 (12.0)
동 리 불 결	70 (11.9)	50 (11.1)	39 (13.1)	7 (2.3)	1 (1.0)
동리에빈민가많은	10 (1.7)	17 (3.8)	29 (9.8)	27 (9.0)	5 (5.0)
동리내공장피해	17 (2.9)	16 (3.6)	10 (3.4)		1 (1.0)
동리내유형업소	16 (2.7)	15 (3.3)	8 (2.7)	10 (3.3)	
기 타	28 (4.8)	30 (6.7)	4 (4.7)	31 (10.3)	41 (41.0)
모 르 겠 다	11 (1.9)	10 (2.2)	6 (2.0)	10 (3.3)	1 (1.0)
무 응 답	8 (1.4)	3 (0.7)	3 (1.0)	2 (0.7)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59. 주위 환경중에서 둘째 불만족한것。

지역별 불만족한것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186 (31.7)	139 (30.0)	88 (29.6)	88 (29.3)	11 (11.0)
교 통 불 편	34 (5.8)	29 (6.4)	17 (5.7)	32 (10.7)	10 (10.0)
시장원거리불편	65 (11.1)	40 (8.9)	29 (9.8)	36 (12.0)	15 (15.0)
차도소음먼지	41 (7.0)	24 (5.3)	12 (4.0)	24 (8.0)	12 (12.0)
차 도 위 험	62 (10.6)	25 (5.6)	35 (11.8)	18 (6.0)	9 (9.0)
동 리 불 결	82 (14.0)	53 (11.8)	32 (10.8)	13 (4.3)	11 (11.0)
동리에빈민가많음	19 (3.2)	34 (7.5)	28 (9.4)	30 (10.0)	8 (8.0)
동리내공장피해	12 (2.0)	17 (3.8)	8 (2.7)	1 (0.3)	
동리내유해업소	15 (2.6)	14 (3.1)	9 (3.0)	7 (2.3)	
기 타	24 (4.1)	33 (7.3)	6 (2.0)	16 (5.3)	18 (18.0)
모 르 겠 다	22 (3.8)	33 (7.3)	20 (6.7)	26 (8.7)	2 (2.0)
무 응 답	24 (4.1)	13 (2.9)	13 (4.4)	9 (3.0)	4 (4.0)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99.9)	100 (100.0)

Ⅲ . 사회복지전 반및 아동 . 청소년 소녀 복지문제

1. 1950年10月，中共中央发出《关于镇压反革命活动的指示》，要求各地政府迅速行动起来，镇压反革命活动。

60. 사회 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 것

지역별 사회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국민가정보호	182 (31.1)	150 (33.3)	119 (40.4)	91 (30.3)	53 (53.0)
아동 "	102 (17.4)	73 (16.2)	54 (15.2)	44 (14.7)	4 (4.0)
부녀자 "	40 (6.8)	30 (6.7)	7 (2.4)	19 (6.3)	4 (4.0)
노령자 "	45 (7.7)	50 (11.1)	21 (7.1)	41 (13.7)	11 (11.0)
심신장애자 "	105 (17.9)	62 (13.8)	58 (19.5)	40 (13.3)	11 (11.0)
모자가구	39 (6.7)	32 (7.1)	13 (4.4)	62 (8.7)	2 (2.0)
노인가구 "	25 (4.3)	21 (4.7)	14 (4.7)	17 (5.7)	6 (6.0)
기타	8 (1.4)	5 (1.1)	8 (2.7)	3 (1.0)	7 (7.0)
모르겠다	34 (5.8)	24 (5.3)	10 (3.4)	13 (4.3)	1 (1.0)
무응답	6 (1.0)	3 (0.7)	2 (0.7)	6 (2.0)	1 (1.0)
계	586 (100.1)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61. 사회복지시책중 둘째 시급한 것

지역별 사회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국민가정보호	58 (9.9)	53 (11.8)	38 (12.8)	42 (14.0)	12 (12.0)
아동 "	78 (13.3)	62 (13.8)	39 (13.1)	32 (10.7)	7 (7.0)
부녀자 "	49 (8.4)	38 (8.4)	14 (4.7)	19 (6.3)	3 (3.0)
노령자 "	70 (11.9)	57 (12.7)	53 (17.8)	49 (16.3)	12 (12.0)
심신장애자 "	107 (18.3)	99 (22.0)	45 (15.2)	48 (16.0)	24 (24.0)
모자가구 "	78 (13.3)	36 (8.0)	37 (12.5)	32 (10.7)	13 (13.0)
노인가구 "	52 (8.9)	38 (8.4)	32 (10.8)	40 (13.3)	9 (9.0)
기타	16 (2.7)	10 (2.2)	4 (1.3)	5 (1.7)	6 (6.0)
모르겠다	50 (8.5)	48 (10.7)	30 (10.1)	24 (8.0)	4 (4.0)
무응답	28 (4.8)	9 (2.0)	5 (1.7)	9 (3.0)	10 (10.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62 . 아동및 청소년 소녀 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것

지역별 복지시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기 아 보 호	32 (5.5)	33 (7.3)	32 (10.8)	27 (9.0)	4 (4.0)
심 신장해 아 #	103 (17.6)	60 (13.3)	36 (12.1)	71 (23.7)	28 (28.0)
불량청소년소녀 #	211 (36.0)	159 (35.3)	94 (31.6)	71 (23.7)	19 (19.0)
무단가출아불량아	33 (5.6)	23 (5.1)	20 (6.7)	22 (7.3)	1 (1.0)
윤 락 여 성 #	44 (7.5)	37 (8.2)	23 (7.7)	8 (2.7)	
보호자무능력아 #	27 (4.6)	26 (5.8)	19 (6.4)	8 (2.7)	7 (7.0)
무단결석아 #	42 (7.2)	32 (7.1)	24 (8.1)	29 (9.7)	13 (13.0)
결 식 아 #	20 (3.4)	26 (5.8)	26 (8.8)	35(11.7)	20 (20.0)
교 아 #	31 (5.3)	31 (6.9)	19 (6.4)	20 (6.7)	2 (2.0)
기 타 #	3 (0.5)	4 (0.9)	2 (0.7)	1 (0.3)	4 (4.0)
모르겠다 #	32 (5.5)	17 (3.8)	2 (0.7)	7 (2.3)	1 (1.0)
무 응 답 #	8 (1.4)	2 (0.4)		1 (0.3)	1 (1.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0)	300 (100.1)	100 (100.0)

63 . 아동 및 청소년 , 소녀 복지 시책 중 둘째시급한 것

지 역 별 복지시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기 아 보 호	29 (4.9)	26 (5.8)	17 (5.7)	16 (5.3)	
심신장애아 "	48 (8.2)	49 (10.9)	28 (9.4)	28 (9.3)	14 (14.0)
불량청소년소녀 "	92 (15.7)	74 (16.4)	41 (13.8)	49 (16.3)	19 (19.0)
무단가출아랑아 "	38 (6.5)	13 (6.9)	25 (8.4)	30 (10.0)	12 (2.0)
윤락여성 "	122 (20.8)	79 (17.5)	42 (14.1)	23 (7.7)	6 (6.0)
보호무능력동 "	32 (5.5)	28 (5.2)	30 (10.1)	30 (10.0)	10 (10.0)
무단결석아 "	89 (15.2)	48 (10.7)	38 (12.8)	33 (11.0)	15 (15.0)
결 식 아 "	41 (7.0)	38 (8.4)	26 (8.8)	39 (13.0)	9 (9.0)
교 아 "	40 (6.8)	40 (8.9)	34 (11.4)	25 (8.3)	2 (2.0)
기 타	4 (0.7)	6 (1.3)	3 (1.0)	2 (0.7)	1 (1.0)
모 르 겠 다	38 (6.5)	25 (5.6)	10 (3.4)	18 (6.7)	4 (4.0)
무 응 답	13 (2.2)	6 (1.3)	3 (1.0)	7 (2.3)	8 (8.0)
계	586 (100.0)	450 (99.9)	297 (100.1)	300 (99.9)	100 (100.0)

64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중 가장 잘 되어있어야 할 것

지역별 복지시설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아동 상담소	41 (7.0)	30 (6.7)	20 (6.7)	15 (5.0)	1 (1.0)
보건시설	114 (19.5)	92 (20.4)	60 (20.2)	112 (37.3)	40 (40.0)
직업훈련상담소	70 (11.9)	66 (14.7)	46 (15.5)	41 (13.7)	21 (21.0)
탁아소	22 (3.8)	8 (1.7)	14 (4.7)	27 (9.0)	2 (2.0)
공원어린이놀이터	214 (36.5)	158 (35.1)	73 (24.6)	32 (10.7)	10 (10.0)
체육관	15 (2.6)	5 (1.1)	8 (2.7)	4 (1.3)	3 (3.0)
도서관	52 (8.9)	53 (11.8)	44 (14.8)	39 (13.0)	7 (7.0)
문화원	9 (1.4)	8 (1.8)	10 (3.4)	9 (3.0)	
기타	4 (0.7)	5 (1.1)	6 (2.0)	7 (2.3)	16 (16.0)
모르겠다	33 (5.6)	16 (3.6)	15 (5.1)	13 (4.3)	
무응답	12 (2.0)	9 (2.0)	1 (0.3)	1 (0.3)	
계	586 (99.9)	450 (100.0)	297 (100.0)	300 (99.9)	100 (100.0)

65. 아동및 청소년 소년 복지 시설중 둘째로 잘되어있어야 할것

지역별 복지시설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아동상담소	32. (5.5)	15 (13.3)	16 (5.4)	19 (6.3)	
보건시설	126 (12.5)	87 (19.3)	59 (19.9)	48 (16.0)	22 (22.0)
직업훈련상담소	54 (9.2)	47 (10.4)	40 (13.5)	34 (11.3)	16 (16.0)
탁아소	22 (3.8)	81 (4.0)	11 (3.7)	52 (8.3)	2 (2.0)
공원어린이놀이터	104 (17.7)	103 (22.9)	52 (17.5)	35 (11.7)	14 (14.0)
체육관	32 (5.5)	21 (4.7)	18 (6.1)	14 (4.7)	7 (7.0)
도서관	105 (17.9)	81 (18.0)	49 (16.5)	57 (19.0)	10 (10.0)
문화원	31 (5.3)	25 (5.6)	17 (5.7)	22 (7.3)	10 (10.0)
기타	6 (1.0)	8 (1.8)	5 (1.7)	9 (3.0)	5 (5.0)
모르겠다	43 (7.3)	36 (8.0)	27 (9.1)	39 (13.0)	2 (2.0)
무응답	21 (3.6)	9 (2.0)	3 (1.0)	8 (2.7)	12 (12.0)
계	586 (100.3)	450 (100.0)	297 (100.1)	300 (100.3)	100 (100.0)

66. 아동 및 청소년 소년 복지시설 첫째에 대한 설립주관자

지역별 설립주관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정부	408 (69.6)	372 (82.6)	235 (79.1)	237 (79.0)	83 (83.0)
민간단체	42 (7.2)	20 (4.4)	31 (4.4)	31 (4.3)	4 (4.0)
동리자체	44 (7.5)	16 (3.6)	26 (8.8)	7 (2.3)	4 (4.0)
모르겠다	36 (6.1)	21 (4.7)	14 (4.7)	18 (6.0)	
무응답	56 (9.6)	21 (4.7)	9 (3.0)	25 (8.3)	9 (9.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99.9)	100 (100.0)

67. 아동 및 청소년 소년 복지시설 둘째에 대한 설립주관자

지역별 설립주관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정부	355 (62.3)	310 (68.9)	211 (71.0)	193 (64.3)	70 (70.0)
민간단체	44 (7.5)	47 (10.4)	19 (6.4)	22 (7.3)	2 (2.0)
동리자체	46 (7.9)	34 (7.6)	34 (11.4)	16 (3.6)	6 (6.0)
모르겠다	55 (9.4)	29 (6.4)	22 (7.4)	31 (10.1)	1 (1.0)
무응답	76 (13.0)	30 (6.6)	11 (3.7)	38 (12.7)	21 (21.0)
계	586 (99.9)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68. 자녀교육에 가장 어려운것

지역별 대로사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133(22.7)	104(23.1)	54(18.2)	78(26.0)	32(32.0)
별로없음	130(22.2)	86(19.1)	49(16.5)	24(8.0)	8(8.0)
교육비부족	162(27.6)	145(32.2)	113(38.0)	145(48.3)	37(37.0)
학교가 좋지않음	18(3.1)	15(3.3)	7(2.4)	6(2.0)	
통학거리가 멀음	44(7.5)	17(3.8)	22(7.4)	23(7.7)	19(19.0)
공부를잘못함	21(3.6)	26(5.8)	21(7.1)	11(3.7)	1(1.0)
매스컴의 악영향	31(5.3)	13(2.9)	7(2.4)	1(0.3)	
불량친구와 사교	20(3.4)	25(5.6)	8(2.7)	3(1.0)	1(1.0)
동리가 좋지않음	9(1.5)	8(1.8)	6(2.0)	2(0.7)	1(1.0)
기타	6(1.0)	6(1.3)	8(2.7)	3(1.0)	1(1.0)
모르겠다	4(0.7)	4(0.9)	1(0.3)	2(0.7)	
무응답	8(1.4)	1(0.2)	1(0.3)	2(0.7)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1)	100(100.0)

69. 자녀교육에 둘째로 어려운것

지역별 애로사항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133(22.7)	104(23.1)	54(18.2)	78(26.0)	32(32.0)
별 로 없 음	168(28.7)	124(27.6)	91(30.6)	60(20.0)	2(2.0)
교 육 비 부 족	35(6.0)	29(6.4)	18(6.1)	18(6.0)	18(18.0)
학 교 가 좋 지 않 음	25(4.3)	9(2.0)	8(2.7)	11(3.7)	1(1.0)
통 화 거 리 가 멀 음	46(7.9)	22(4.9)	16(5.4)	44(14.7)	31(31.0)
공 부 를 잘 못 함	35(6.0)	42(9.3)	15(5.1)	38(12.7)	2(2.0)
매 스 콕 의 악영향	27(4.6)	19(4.2)	15(5.1)	2(0.7)	1(1.0)
불 량 친 구 와 사 교	42(7.2)	28(6.2)	28(9.4)	11(3.6)	2(2.0)
동 리 가 좋 지 않 음	21(3.6)	19(4.2)	14(4.7)	1(0.3)	2(2.0)
기 타	6(1.0)	15(3.3)	7(2.4)	12(4.0)	
모 르 겠 다	11(1.9)	23(5.1)	16(5.4)	17(5.7)	2(2.0)
무 응 답	37(6.3)	16(3.6)	15(5.1)	8(2.7)	7(7.0)
계	586(100.2)	450(99.9)	297(100.2)	300(100.1)	100(100.0)

70. 결식아 유무 및 결식정도

지역별 결식정도	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가 구	235(40.1)	163(36.2)	76(25.6)	99(33.0)	43(43.0)	
결 식 아 없 음	308(52.6)	236(52.4)	197(66.3)	141(47.0)	23(23.0)	
일 1 회 정 도	8(1.4)	4(0.9)	3(1.0)	12(4.0)	9(9.0)	
" 2 ~ 3 "	9(1.5)	10(2.2)	5(1.7)	12(4.0)	9(9.0)	
수 1 회 "	8(1.4)	6(1.3)	4(1.3)	13(4.3)	5(5.0)	
" 2 ~ 3 "	5(0.9)	15(3.3)	3(1.0)	15(5.0)	5(5.0)	
거 의 매 일	5(0.9)	12(2.7)	8(2.7)	6(2.0)	6(6.0)	
전 혀 못 해 줌	6(1.0)	3(0.7)	1(0.3)	1(0.3)		
모 르 겠 다	1(0.2)	1(0.2)				
무 응 답	1(0.2)			1(0.3)		
계	586(100.2)	450(99.9)	297(99.9)	300(99.9)	100(100.0)	

71. 학교급식혜택정도

지역별 혜택정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304(51.8)	179(39.8)	90(30.3)	102(34.0)	55(55.0)
받은 적 없음	161(27.5)	92(20.4)	72(24.2)	25(8.3)	6(6.0)
매 번 받 음	11(1.9)	28(6.2)	3(1.0)	37(12.3)	2(2.0)
간혹 못 받 음	37(6.3)	102(22.7)	85(28.6)	106(35.3)	26(26.0)
거 의 "	47(8.0)	42(9.3)	46(15.5)	27(9.0)	14(14.0)
모 르 겠 다	17(2.9)	7(1.6)	1(0.3)	1(0.3)	
무 응 답	9(1.5)			2(0.7)	
계	586(99.9)	450(100.0)	297(99.9)	300(99.9)	100(100.0)

72. 학교급식제도평가

지역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214(36.5)	67(14.9)	39(13.1)	57(19.0)	36(36.0)
매 우 잘 함	61(10.4)	66(14.7)	34(11.4)	61(20.3)	8(8.0)
잘 하 는 편	147(25.1)	168(37.3)	133(44.8)	79(26.3)	30(30.0)
그 저 그 령 다	54(9.2)	54(12.0)	34(11.4)	38(12.7)	17(17.0)
잘 못 하 는 편	41(7.0)	54(12.0)	46(15.5)	32(10.7)	6(6.0)
매 우 잘못 함	3(0.5)	6(1.3)	4(1.3)	8(2.7)	
모 르 겠 다	43(7.3)	31(6.9)	6(2.0)	17(5.7)	2(2.0)
무 응 답	23(4.0)	4(0.9)	1(0.3)	8(2.7)	1(1.0)
계	586(100.0)	450(100.0)	297(99.8)	300(100.1)	100(100.0)

73. 잘못한다고 평가시 그 이유

지역별 이유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질 불 량	20(45.5)	11(13.3)	15(30.0)	3(7.5)	
양 부 족	1(0.3)	7(11.7)	8(16.0)	3(7.5)	1
팽죽으로느끼니가 안됨	4(9.1)	9(15.0)	5(10.0)	6(15.0)	1
필요아동에게적절 한 급식못함	17(38.6)	25(41.7)	14(28.0)	26(65.0)	4
부정있는것 같음	2(4.5)	8(13.3)	7(14.0)	2(5.0)	
모 르 겠 다			1(2.0)		
계	44(100.0)	60(100.0)	50(100.0)	40(100.0)	6
비 해 당	(542)	(390)	(247)	(260)	(94)

74. 교아양연에 대한 태도

지역별 양연태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당장원함	9(1.5)	10(2.2)	6(2.0)	8(2.7)	1(1.0)
앞으로하겠음	20(3.4)	21(4.7)	10(3.4)	5(1.7)	2(2.0)
더생각해보겠음	39(6.7)	38(8.4)	20(6.7)	26(8.7)	7(7.0)
전혀생각없음	501(85.5)	361(80.2)	257(86.5)	251(83.7)	87(87.0)
모르겠다	11(1.9)	18(4.0)	4(1.3)	10(3.3)	3(3.0)
무응답	6(1.0)	2(0.4)			
계	586(100.0)	450(99.9)	297(99.9)	300(100.1)	100(100.0)

75. 교아주택보호에 대한 태도

지역별 주택보호태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당장원함	13(2.2)	27(6.0)	18(6.1)	13(4.3)	3(3.0)
앞으로하겠음	34(5.8)	30(6.7)	18(6.1)	15(5.0)	8(8.0)
더 생각해보겠음	45(7.7)	63(14.0)	33(11.1)	34(11.3)	8(8.0)
전혀생각없음	458(78.2)	306(68.0)	223(75.1)	223(74.3)	78(78.0)
모르겠다	23(3.9)	18(4.0)	5(1.7)	12(4.0)	3(3.0)
무응답	13(2.2)	6(1.3)		3(1.0)	
계	586(100.0)	450(100.0)	297(100.1)	300(99.9)	100(100.0)

76. 요보호아동의 보호방법

지역별 요보호아 동종류 요보호아 동보호방법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신 체 허 약 아	불 구 아	정 신 장 해 아
요보호아동없음	580	568	583	448	435	448	296	294	297	293	290	296		94	97
보호시설에보냄		1			1						1	1			
전문시설에다님		1			2										
가내보호자돌봄	4	5	1	1	6	1		2		1	5			4	3
친척에게 위탁															
친지에게 위탁															
혼자내버려둔상태		4			4		1							2	
정규학교에다님		5	1		1			1		3	1				
기 타	1	1		1											
모르겠다															
무응답	1	1	1	1	1	1	1			3	3				
계	586														

Ⅳ . 부 녀 복 지 문 제

第 二 十 二 章

77. 부녀복지 시책증가장 시급한것

지 역 별 복지시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직업교육직업소개	105 (17.9)	98 (21.7)	75 (25.3)	60 (20.0)	27 (27.0)
직업여성대우개선	68 (11.6)	93 (8.7)	22 (7.4)	28 (9.3)	5 (5.0)
윤락여성보호	146 (24.9)	125 (22.8)	74 (24.9)	34 (11.3)	2 (2.0)
모자가구 "	45 (7.7)	23 (5.1)	10 (3.4)	34 (11.3)	15 (15.0)
임 산 부 "	23 (3.9)	10 (2.2)	24 (8.1)	21 (7.0)	15 (15.0)
여성단체활동촉진	31 (5.3)	21 (4.7)	10 (3.4)	18 (6.0)	2 (2.0)
의식주에대한교육	91 (15.5)	74 (16.4)	52 (17.5)	49 (16.3)	9 (9.0)
탁아소설치	9 (1.5)	9 (2.0)	11 (3.7)	11 (3.7)	4 (4.0)
기 타	4 (0.7)	4 (0.9)	1 (0.3)	1 (0.3)	1 (1.0)
모 르 겠 다	53 (9.0)	43 (9.6)	18 (6.1)	42 (14.0)	20 (20.0)
무 응 답	11 (1.9)	4 (0.9)		2 (0.7)	
계	586 (99.9)	450 (100.0)	297 (100.1)	300 (99.9)	100 (100.0)

78 미혼 직업여성 에 대한 태도

지역 별 태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극 히 찬 성	234 (39.9)	199 (44.2)	142 (47.8)	106 (35.3)	17 (11.0)
어 느 정도 찬 성	233 (39.8)	174 (38.7)	118 (39.7)	117 (39.0)	61 (61.0)
찬 성 반 대 않 음	53 (9.0)	29 (6.4)	14 (4.7)	29 (9.7)	13 (13.0)
어 느 정도 반 대	28 (4.8)	13 (2.9)	9 (3.0)	11 (3.7)	6 (6.0)
절 대 #	28 (4.8)	30 (6.7)	10 (3.4)	28 (9.3)	2 (2.0)
모 르 겠 다	9 (1.5)	5 (1.1)	4 (1.3)	7 (2.3)	1 (1.0)
무 응 답	1 (0.2)			2 (0.7)	
계	586 (100.1)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79 기존 직업여성에 대한태도

지역별 태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매우 찬성	70 (11.9)	78 (17.3)	65 (21.9)	47 (15.7)	7 (7.0)
어느정도	116 (28.3)	143 (31.8)	93 (31.3)	92 (30.7)	47 (47.0)
찬성도반대도않음	84 (14.3)	38 (8.4)	31 (10.4)	46 (15.3)	23 (23.0)
어느정도반대	125 (21.3)	86 (19.1)	49 (16.5)	46 (15.3)	17 (17.0)
절대	135 (23.0)	99 (22.0)	56 (18.9)	61 (20.3)	5 (5.0)
모르겠다	5 (0.9)	5 (1.1)	3 (1.0)	7 (2.3)	1 (1.0)
무응답	1 (0.2)	1 (0.2)		1 (0.3)	
계	586 (99.9)	450 (99.9)	297 (100.0)	300 (99.9)	100 (100.0)

80 윤락 여성에 대한 시책

지역별 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법적인강력한단속	131 (22.4)	105 (23.3)	74 (24.9)	59 (19.7)	22 (22.0)
직업선도	365 (62.3)	270 (60.0)	196 (66.0)	171 (57.0)	60 (60.0)
적선지대철거	51 (8.7)	40 (8.9)	19 (6.4)	51 (17.0)	3 (3.0)
기타	5 (0.9)	9 (2.0)	1 (0.3)	2 (0.7)	3 (3.0)
모르겠다	28 (4.8)	24 (5.3)	7 (2.4)	15 (5.0)	9 (9.0)
무응답	6 (1.0)	2 (0.4)		2 (0.7)	3 (3.0)
계	586 (100.1)	450	297 (100.0)	300 (100.1)	100 (100.0)

8.1 부부중 생활비사용 결정자

지역별 결정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34 (5.8)	27 (6.0)	2 (0.7)	19 (6.3)	
남편	91 (15.5)	137 (30.4)	147 (49.5)	205 (68.3)	41 (41.0)
부인	282 (48.1)	139 (30.9)	50 (16.8)	40 (13.3)	23 (23.0)
같이	166 (28.3)	140 (31.1)	94 (31.6)	30 (10.0)	32 (32.0)
기타	1 (0.2)	2 (0.4)	4 (1.3)	1 (0.3)	
모르겠다	4 (0.7)	4 (0.9)		1 (0.3)	1 (1.0)
무응답	6 (1.4)	1 (0.2)		4 (1.3)	3 (3.0)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99.8)	100 (100.0)

8.2 부부중 자녀교육 문제 결정자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75 (12.8)	61 (13.6)	34 (11.4)	34 (11.3)	15 (15.0)
남편	80 (13.7)	136 (30.2)	129 (43.4)	166 (55.3)	44 (44.0)
부인	179 (30.5)	93 (20.7)	46 (15.5)	50 (16.7)	14 (14.0)
같이	233 (39.8)	145 (32.2)	85 (28.6)	42 (14.0)	23 (23.0)
기타	1 (0.2)	2 (0.4)	3 (1.0)		
모르겠다	7 (1.2)	8 (1.8)		4 (1.3)	1 (1.0)
무응답	11 (1.9)	5 (1.1)		4 (1.3)	3 (3.0)
계	586 (100.1)	450 (100.0)	297 (99.9)	300 (99.9)	100 (100.0)

83. 부부중 재산관리 문제 결정자

지역별 결정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36 (5.1)	29 (6.4)	2 (0.7)	18 (6.0)	
남편	266 (45.4)	258 (57.3)	214 (72.1)	226 (57.3)	67 (67.0)
부인	80 (13.7)	38 (8.4)	10 (3.4)	15 (5.0)	3 (3.0)
같이	189 (32.3)	116 (25.8)	66 (22.2)	36 (12.0)	26 (26.0)
기타	1 (0.2)	1 (0.2)	5 (1.7)		
모르겠다	6 (1.0)	6 (1.3)		1 (0.3)	4 (1.0)
무응답	8 (1.4)	2 (0.4)		4 (1.3)	3 (3.0)
계	586 (100.1)	450 (99.8)	297 (100.1)	300 (99.9)	100 (100.0)

34. 부부의 생활비 사용 의논정도

지역별 의논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34 (5.8)	27 (6.0)	2 (0.7)	19 (6.3)	
항상의논	186 (31.7)	119 (26.4)	84 (28.3)	71 (23.7)	31 (31.0)
자주 "	165 (28.2)	135 (30.0)	101 (34.0)	90 (30.0)	36 (36.0)
다소 "	140 (23.9)	115 (25.6)	80 (25.9)	84 (28.0)	26 (26.0)
거의의논않음	30 (5.1)	29 (6.4)	26 (8.8)	26 (8.7)	3 (3.0)
전혀 "	6 (1.0)	15 (3.3)	2 (0.7)	5 (1.7)	
모르겠다	5 (0.9)	3 (0.7)	1 (0.3)	1 (1.3)	1 (1.0)
무응답	20 (3.4)	7 (1.6)	1 (0.3)	4 (1.3)	3 (3.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85 부부의 자녀교육 문제 의논정도

지역별 의논정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비해당	76 (12.8)	61 (13.6)	34 (11.4)	34 (11.3)	15 (15.0)
항상의논	190 (32.4)	105 (23.3)	81 (20.3)	69 (23.0)	26 (26.0)
자주 "	143 (24.4)	123 (27.3)	107 (36.0)	83 (27.7)	27 (27.0)
다소 "	124 (21.2)	102 (22.7)	54 (18.2)	73 (24.3)	23 (23.0)
거의의논치않음	23 (3.9)	28 (6.2)	17 (5.7)	27 (9.0)	5 (5.0)
전혀 "	4 (0.7)	14 (3.1)	3 (1.0)	5 (1.7)	
모르겠다	6 (1.0)	4 (0.9)	1 (0.3)	4 (1.3)	1 (1.0)
무응답	21 (3.6)	13 (2.9)		5 (1.7)	3 (3.0)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86. 부부의 재산관리 문제의의논정도

지역별 의논정도	서 -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비 해 당	36 (6.1)	29 (6.4)	2 (0.7)	18 (6.0)	
항 상 의 논	169 (28.3)	116 (25.8)	82 (27.6)	69 (23.0)	32 (32.0)
자 주 "	140 (23.9)	107 (23.8)	79 (26.6)	85 (28.3)	26 (26.0)
다 소 "	139 (23.7)	123 (27.3)	87 (29.3)	81 (27.0)	30 (30.0)
거의의논않음	63 (10.8)	43 (9.6)	37 (12.5)	37 (12.3)	7 (7.0)
전혀 "	10 (1.7)	16 (3.6)	3 (2.7)	5 (1.7)	1 (1.0)
모 르 겠 다	6 (1.0)	6 (1.3)	1 (0.3)	1 (0.3)	1 (1.0)
무 응 답	23 (3.9)	10 (2.2)	1 (0.3)	4 (1.3)	3 (3.0)
계	506 (99.9)	450	297 (100.0)	300 (99.9)	100 (100.0)

V . 노 인 복 지 문 제

87. 노인복지 시책중 가장 시급한것

지역별 복지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연금제도	123 (21.0)	74 (16.4)	56 (18.9)	42 (14.0)	24 (24.0)
양노원	127 (21.7)	113 (25.1)	77 (25.9)	40 (13.3)	9 (9.0)
휴양시설	181 (30.9)	121 (26.9)	70 (23.6)	83 (27.7)	17 (17.0)
의료시설	77 (13.1)	87 (19.3)	55 (18.5)	89 (29.7)	35 (35.0)
노인가구보호	18 (3.1)	34 (7.6)	12 (4.0)	32 (10.7)	8 (8.0)
노인직업소개	14 (2.4)	12 (2.7)	9 (3.0)	5 (1.7)	5 (5.0)
기타	3 (0.5)	1 (0.2)	3 (1.0)	1 (0.3)	1 (1.0)
모르겠다	31 (5.3)	8 (1.8)	13 (4.4)	7 (2.3)	1 (1.0)
무응답	12 (2.0)		2 (0.7)	1 (0.3)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88. 퇴직 희망 연령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50세미만	45 (7.7)	64 (14.2)	27 (9.1)	36 (12.0)	4 (4.0)
50 ~ 54세	63 (10.8)	58 (12.9)	56 (18.9)	61 (20.3)	6 (6.0)
55 ~ 59세	122 (20.6)	85 (18.9)	51 (17.2)	53 (17.7)	8 (8.0)
60 ~ 64세	170 (29.0)	96 (21.3)	86 (29.0)	75 (25.0)	54 (54.0)
65 ~ 69세	61 (10.4)	55 (12.2)	27 (9.1)	37 (12.3)	12 (12.0)
70 ~ 74세	19 (3.2)	15 (3.3)	15 (5.1)	5 (1.7)	3 (3.0)
75 ~ 79세	4 (0.7)	6 (1.3)	5 (1.7)	3 (1.0)	1 (1.0)
80세이상	22 (3.8)	20 (4.4)	11 (3.7)	16 (5.3)	7 (7.0)
모르겠다	59 (10.1)	39 (8.7)	17 (5.7)	12 (4.0)	4 (4.0)
무응답	21 (3.6)	12 (2.7)	2 (0.7)	2 (0.7)	1 (1.0)
계	586(100.1)	450 (99.9)	297(100.2)	300(100.0)	100(100.0)

89. 노후여가이용의 희망하는 일 또는 직업

직업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휴식또는원치않음		74 (12.6)	62 (13.8)	33 (11.1)	47 (15.7)	8 (8.0)
가사또는 자녀돌보기		79 (13.5)	56 (12.4)	39 (30.0)	48 (16.0)	46 (46.0)
사업(상업포함)		22 (3.8)	48 (10.7)	24 (8.1)	15 (5.0)	3 (3.0)
자선사업		29 (4.9)	25 (5.6)	5 (1.7)	1 (0.3)	2 (2.0)
양계등축산		25 (4.3)	36 (8.0)	36 (12.1)	52 (17.3)	1 (1.0)
원예등전원직업		22 (3.8)	17 (3.8)	5 (1.7)	6 (2.0)	1 (1.0)
농사		20 (3.4)	12 (2.7)	29 (9.8)	40 (13.3)	10 (10.0)
여행		14 (2.4)	7 (1.6)	6 (2.0)	7 (2.3)	
오락		6 (1.0)	4 (0.9)	3 (1.0)	5 (1.7)	
기타		90 (15.4)	46 (10.2)	22 (7.4)	18 (6.0)	8 (8.0)
모르겠다		96 (16.4)	88 (19.6)	24 (8.1)	31 (10.3)	1 (1.0)
무응답		109 (18.6)	49 (10.9)	21 (7.1)	30 (10.0)	20 (20.0)
계		586(100.1)	450(100.2)	297(100.1)	300(99.9)	100(100.0)

90. 노후 생활비 해결 방법

해결방법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미정		34 (5.8)	11 (2.4)	3 (1.0)	6 (2.0)	
자기저축된것		186 (31.7)	185 (41.1)	71 (23.9)	41 (13.7)	12 (12.0)
자력으로		79 (13.5)	73 (16.2)	85 (28.6)	40 (13.3)	8 (8.0)
아들		96 (16.4)	69 (15.3)	59 (19.9)	62 (20.7)	38 (38.0)
장남		7 (1.2)	7 (1.6)	6 (2.0)	35 (11.7)	1 (1.0)
딸		1 (0.2)	1 (0.2)	1 (0.3)	1 (0.3)	
자녀		53 (9.0)	47 (10.4)	49 (16.5)	70 (23.3)	7 (7.0)
부부		4 (0.7)	2 (0.4)	2 (0.7)	1 (0.3)	
양노원			1 (0.2)	4 (1.3)	1 (0.3)	
기타		9 (1.5)	7 (1.6)	3 (1.0)	8 (2.7)	2 (2.0)
모르겠다		28 (4.8)	25 (5.6)	9 (3.0)	14 (4.7)	2 (2.0)
무응답		89 (15.2)	22 (4.9)	5 (1.7)	21 (7.0)	30 (30.0)
계		584 (100.0)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노무 동거 희망

지역 별 동거 희망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미 정	18 (3.1)	5 (1.1)	12 (4.0)	3 (1.0)	
자 기 혼 자	14 (2.4)	10 (2.2)	2 (0.7)	3 (1.0)	1 (1.0)
의탁할곳없음	1 (0.2)	1 (0.2)			
아 들	114 (19.5)	76 (16.9)	62 (20.9)	65 (21.7)	44 (44.0)
장 남	78 (13.3)	71 (15.8)	79 (26.6)	93 (31.0)	13 (13.0)
딸		1 (0.2)	1 (0.3)	2 (0.7)	
자 녀	55 (9.4)	61 (13.6)	31 (10.4)	59 (19.7)	11 (11.0)
부 부	195 (33.3)	177 (39.3)	96 (32.3)	42 (14.0)	12 (12.0)
양 노 원	1 (0.2)		1 (0.3)		
기 타	1 (0.2)	2 (0.4)	2 (0.7)	4 (1.3)	
모 르 겠 다	13 (2.2)	22 (4.8)	6 (2.0)	9 (3.0)	2 (2.0)
무 응 답	96 (16.4)	24 (5.3)	5 (1.7)	20 (6.7)	17 (17.0)
계	586 (100.2)	460 (99.8)	297 (99.9)	300 (100.1)	100 (100.0)

92. 노후 여가이용의 오락

오락 \ 지역 별	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휴식	35 (6.0)	41 (9.1)	46 (15.5)	29 (9.7)	4 (4.0)	
가사, 자녀돌보기	66 (11.3)	40 (8.9)	37 (12.5)	36 (12.0)	18 (18.0)	
독서	75 (12.8)	53 (11.8)	53 (17.8)	33 (11.0)	4 (4.0)	
장기, 바둑 등	32 (5.5)	35 (7.8)	36 (12.1)	27 (9.0)	16 (16.0)	
마실, 경노당가기	17 (2.9)	20 (4.4)	24 (8.1)	17 (5.7)	2 (2.0)	
자녀집동여행	48 (8.2)	52 (11.6)	13 (4.4)	20 (6.7)	1 (1.0)	
라디오, T·V 영화, 연극	24 (4.1)	22 (4.9)	14 (4.7)	10 (3.3)	2 (2.0)	
원예또는 축산	34 (5.8)	22 (4.9)	14 (4.7)	11 (3.7)	1 (1.0)	
자선사업	7 (1.2)	6 (1.3)	1 (0.3)	1 (0.3)		
기타	81 (13.8)	60 (13.3)	21 (7.1)	35 (11.7)	4 (4.0)	
모르겠 다	60 (10.2)	49 (10.9)	19 (6.4)	32 (10.7)	4 (4.0)	
무응답	107 (18.3)	50 (11.1)	19 (6.4)	49 (16.3)	44 (44.0)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1)	100(100.0)	

93. 양로원 입원에 대한 태도

태도 \ 지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찬 성	28 (4.8)	40 (8.9)	18 (6.1)	30 (10.0)	5 (5.0)
찬성도반대도않음	37 (6.3)	39 (8.7)	16 (5.4)	33 (11.0)	4 (4.0)
찬성할만하지못함	168 (28.7)	127 (28.2)	47 (15.8)	53 (17.7)	26 (26.0)
절 대 불 찬 성	338 (57.7)	232 (51.6)	216 (72.7)	176 (58.7)	65 (65.0)
모 르 겠 다	10 (1.7)	11 (2.4)		5 (1.7)	
무 응 답	5 (0.9)	1 (0.2)		3 (1.0)	
계	586(100.1)	450(100.0)	297(100.0)	300(100.1)	100(100.0)

94. 양로원 입원 불찬성시 시설좋은 유료양로원 입원에 대한 태도

태 도 \ 지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찬 성	26 (5.1)	44 (12.3)	10 (3.8)	4 (1.7)	8 (8.8)
찬성도반대도않음	51 (10.1)	32 (8.9)	12 (4.6)	5 (2.2)	8 (8.8)
찬성할만하지못함	143 (28.3)	106 (29.5)	58 (22.1)	41 (17.9)	21 (23.1)
절 대 불 찬 성	276 (54.5)	168 (46.8)	183 (69.6)	154 (67.2)	54 (59.3)
모 르 겠 다	8 (1.6)	5 (1.4)		7 (3.1)	
무 응 답	2 (0.4)	4 (1.1)		18 (7.9)	
계	506(100.0)	359(100.0)	263(100.1)	229(100.0)	91 (100.0)
(비 해 당)	(80)	(91)	(34)	(71)	(9)

95. 노령부모 생존 여부

노령자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326 (55.6)	268 (59.6)	190 (64.0)	176 (58.7)	81 (81.0)
조부또는부		21 (3.6)	18 (4.0)	12 (4.0)	26 (8.7)	3 (3.0)
조모또는모		132 (22.5)	107 (23.8)	63 (21.2)	74 (24.7)	13 (13.0)
조부모또는부모		94 (16.0)	50 (11.1)	28 (9.4)	20 (6.7)	1 (1.0)
조부모와부모		11 (1.9)	6 (1.3)		3 (1.0)	
기타		2 (0.4)		3 (1.0)	1 (0.3)	2 (2.0)
모르겠다			1 (0.2)	1 (0.3)		
무응답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100.1)	100 (100.0)

96. 조부모와 조모의 동거자(실수)

지역별 동거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조모
바해당	578	572	441	441	293	290	291	282	100	98
만아들	4	8	6	7	4	5	6	11		1
만아들의아들	2	3	2	1		1	1	1		
딸								1		
친척		1								
만손자							1			
만손자의손자		1		1		1		4		1
일정치않음										
기타	2		1							
모르겠다										
무응답		1					1	1		
계	586	586	450	450	297	297	300	300	100	100

97. 부와 동거자

동거자 \ 지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장 남	62 (50.8)	34 (51.5)	21 (58.3)	29 (74.4)	2
장 남 외 아 들	36 (29.5)	15 (22.7)	12 (33.3)	6 (15.3)	1
딸		1 (1.5)		1 (2.6)	1
친 척	1 (0.8)				
만 손 자					
만손자외손자					
일정 하지 않음	4 (3.3)	2 (3.0)	1 (2.8)		
기 타	19 (15.6)	14 (21.2)	2 (5.6)	2 (5.1)	
모 르 겠 다					
무 응 답				1 (2.6)	
계	122 (100.0)	66 (99.9)	36 (100.0)	39 (100.0)	4
(비 해 당)	464 (79.2)	384 (85.3)	261 (87.9)	261 (87.0)	96 (96.0)

98. 모와 동거자

지역 별 동거자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장 남	142 (61.7)	98 (62.4)	63 (73.3)	58 (72.5)	10 (66.7)
장 남 외 아 들	58 (25.2)	34 (21.7)	17 (19.8)	11 (13.8)	4 (26.7)
딸	3 (1.3)	4 (2.5)	1 (1.2)	2 (2.5)	
친 척	3 (1.3)		1 (1.2)		
말 손 자	1 (0.4)			1 (1.3)	
말손자의손자					1 (6.7)
일정 하지 않음	4 (1.7)	3 (1.9)	1 (1.2)		
기 타	18 (7.8)	18 (11.5)	3 (3.5)	6 (7.5)	
모 르 겠 다					
무 응 답	1 (0.4)			2 (2.5)	
계	230 (99.8)	157 (100.0)	86 (100.2)	80 (100.1)	15 (100.1)
(비 해 당)	356 (60.8)	293 (65.1)	211 (71.0)	220 (73.3)	85 (85.0)

99. 부의 건강상태

지역별 건강상태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매우건강일할수있음	33 (27.0)	13 (19.7)	10 (27.8)	9 (23.1)	
힘들지않는일은 할수있음	54 (44.3)	24 (36.4)	11 (30.6)	10 (25.6)	1
건강하나일할수없음	23 (18.9)	19 (28.8)	10 (27.8)	10 (25.6)	2
겨우걸을정도	9 (7.4)	2 (3.0)	5 (13.9)	9 (23.1)	1
걸지도못함	3 (2.5)	5 (7.6)			
기 타					
모 르 겠 다		1 (1.5)			
무 응 답		2 (3.0)		1 (2.7)	
계	122 (100.1)	66 (100.0)	36 (100.1)	39 (100.1)	4
(비 해 당)	464 (79.2)	384 (85.3)	261 (87.9)	261 (87.0)	96 (96.0)

100. 모의 건강상태

지역별 건강상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업	어촌
매우건강일할수있음	63 (27.4)	31 (19.7)	28 (32.6)	8 (10.0)	1 (6.7)
힘들지않은	108 (47.0)	65 (41.4)	19 (22.1)	27 (33.8)	5 (33.3)
건강하나일할수없음	46 (20.0)	40 (25.5)	24 (27.9)	26 (32.5)	3 (20.0)
겨우걸을정도	11 (4.8)	14 (8.9)	11 (12.8)	15 (18.8)	4 (26.7)
걸지도못함	2 (0.9)	4 (2.5)	4 (4.7)		2 (13.3)
기타		1 (0.6)		1 (1.3)	
모르겠다				1 (1.3)	
무응답		2 (1.3)		2 (2.5)	
계	230 (100.1)	157 (99.9)	86 (100.1)	80 (100.2)	15 (100.0)
(비해당)	356 (60.8)	293 (65.1)	211 (71.0)	220 (73.3)	85 (85.0)

101. 조부와 조모의 건강 상태

지역 별 건강 상태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조 부	조 모	조 부	조 모	조 부	조 모	조 부	조 모	조 부	조 모
매우건강일할수있음	2	4	4	4	2	2	2	1		1
힘들지않은일	3	3	2	4	2	2	5	7		1
건강하나일할수없음	1	3	2	3		2	1	6		
겨우걸을정도	1	2		2		3		3		
견지도못함	1	2	1	1			1			
기 타										
모 르 겠 다										
무 응 답						1		1		
계	8	14	9	14	4	10	9	18		2
(비 해 당)	(578)	(572)	(441)	(441)	(293)	(290)	(291)	(282)	(100)	(98)

102. 조부 또는 부의 취업여부

지역 별 취업 여부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하루 6시간이상	16 (16.3)	13 (25.0)	6 (22.2)	12 (22.2)	
일 있을 때 만	10 (10.2)	9 (17.3)	3 (11.1)	7 (13.0)	1
집 안 일 만	20 (20.4)	5 (9.6)	8 (29.6)	8 (14.8)	1
별로하는일없음	12 (12.2)	5 (9.6)		4 (7.4)	
전혀하는일없음	34 (34.7)	14 (26.9)	9 (33.3)	18 (33.3)	1
모 르 겠 다	2 (2.0)	1 (1.9)		1 (1.9)	
부 응 답	4 (4.1)	5 (5.6)	1 (3.7)	4 (7.4)	
계	98 (99.9)	52 (100.1)	27 (99.9)	54 (100.0)	3
(비해당)	488 (83.3)	398	270	246	97

103. 조부 또는 부의 취업시 직업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농부	16 (36.4)	12 (37.5)	8 (57.1)	25 (65.8)	1
자영판매업	9 (20.5)	5 (15.6)	3 (21.4)	1 (2.6)	1
원예종사자	1 (2.3)	2 (6.3)			
축산	3 (6.8)		1 (7.1)	1 (2.6)	
사무	1 (2.3)	5 (15.6)		1 (2.6)	
관리직, 전문직	5 (11.4)				
기능공단순노동		2 (6.3)			
기타	5 (11.4)	1 (3.1)	1 (7.1)	1 (2.6)	
모르겠다		1 (3.1)	1 (7.1)		
무응답	4 (9.1)	4 (12.5)		9 (23.7)	1
계	44 (100.2)	32 (100.0)	14 (99.9)	38	3
(비해당)	542	418	283	262	97

104. 조모 또는 모의 취업여부

지역별 취업여부	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하루 6 시간이상	18	(9.5)	8	(6.9)	6	(11.1)	7	(8.9)
일 있을 때 만	12	(6.3)	5	(4.3)	5	(9.3)	9	(11.4)
집 안 일 만	56	(29.5)	31	(26.7)	13	(24.1)	22	(27.8)
별르하는일없음	21	(11.1)	7	(6.0)	1	(1.9)	10	(12.7)
전혀	80	(42.1)	58	(50.0)	27	(50.0)	18	(22.8)
모 르 겠 다	1	(0.5)					1	(1.3)
무	응	답	2	(1.1)	7	(6.0)	2	(3.7)
							12	(15.2)
계	190	(100.1)	116	(99.9)	54	(100.1)	79	(100.0)
							14	(100.1)
(비 해 당)	396		334		243		221	
							86	

105. 취업시 취업사유

지역 별 취업사유	서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살림형편때문	7 (14.3)	10 (30.3)	4 (26.7)	13 (31.7)	1
살림에보탬하려고	7 (14.3)	8 (24.2)	4 (26.7)	8 (19.5)	
여가이용으로	6 (12.2)	4 (12.1)		5 (12.2)	
살림에보탬과 여가이용	20 (40.8)	5 (15.2)	6 (40.0)	4 (9.8)	1
기 타	4 (8.2)	1 (3.0)		1 (2.4)	
모 르 겠 다		1 (3.0)	1 (6.7)		
무 응 답	5 (10.2)	4 (12.1)		10 (24.4)	1
계	49 (100.0)	33 (99.9)	15 (100.1)	41 (100.0)	3
(비해당)	537	417	282	259	97

106. 미취업자 퇴직사의 연령

지역 별 퇴직년령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40 세 미 만	3 (2.9)			1 (1.9)	
40 ~ 44 세		1 (1.8)	1 (3.3)		
45 ~ 49 "	4 (3.8)	4 (7.0)		2 (3.8)	
50 ~ 54 "	15 (14.3)	15 (26.3)	7 (23.3)	4 (7.5)	2
55 ~ 59 "	27 (25.7)	11 (19.3)	4 (13.3)	5 (9.4)	
60 ~ 64 "	25 (23.8)	14 (24.6)	8 (26.7)	11 (20.8)	1
65세또는그이상	11 (10.5)	5 (8.8)	9 (20.0)	10 (18.9)	
모 르 겠 다	11 (15.5)	4 (7.0)	1 (3.3)	4 (7.5)	1
무 응 답	9 (8.6)	3 (5.3)		16 (30.2)	1
계	105 (100.1)	57 (100.1)	30 (99.9)	53 (100.0)	5
(비 해 당)	481	393	267	247	95

107. 미취업시 퇴직 전 직업

지역별 직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농부	44 (41.9)	28 (49.1)	21 (70.0)	21 (58.5)	1
판매종사	23 (21.9)	4 (7.0)	3 (10.0)	2 (3.8)	1
원예		2 (3.5)			
사무종사	5 (4.8)	6 (10.5)	1 (3.3)	2 (3.8)	
전문직, 관리직	12 (11.4)	4 (7.0)	1 (3.3)		1
기능공 단순노동	4 (3.8)	5 (8.8)	1 (3.3)		2
기타	2 (1.9)	4 (7.0)	3 (10.0)		
모르겠다	3 (2.9)	1 (1.8)		1 (1.9)	
무응답	13 (12.4)	3 (5.3)		17 (32.1)	
계	105 (100.0)	57 (100.0)	30 (99.9)	53 (100.1)	5
(비해당)	481	393	267	247	95

108. 미취업시 퇴직 사유

지역 별 퇴직 사유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건강하지못해서	26 (24.8)	21 (36.8)	12 (40.0)	15 (28.3)	3
휴식하려고	16 (15.2)	9 (15.8)	5 (16.7)	6 (11.3)	
가족의 만류로	28 (26.7)	10 (17.5)	4 (13.3)	14 (26.4)	2
실직사업실패	4 (3.8)	2 (3.5)	1 (3.3)		
정년퇴직으로	7 (6.7)	1 (1.8)	4 (13.3)	1 (1.9)	
기타	9 (8.6)	11 (19.3)	4 (13.3)	2 (3.8)	
모르겠다	3 (2.9)	1 (1.8)		15 (28.3)	
무응답	12 (11.4)	2 (7.0)			
계	105	57 (99.9)	30 (99.9)	53 (100.0)	5
(비해당)	481	393	267	247	95

109. 조부 또는 부의 오락

지역별 오락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낚시, 사냥, 등산 등	7 (5.6)	6 (7.8)		2 (4.0)	
동 물 기 르 기	7 (5.6)	3 (3.9)	2 (5.3)	4 (8.0)	
정 월 가 꾸 기	7 (5.6)	4 (5.2)			
바둑장기화투	22 (17.7)	15 (19.5)	6 (15.8)	5 (10.0)	
라디오 T.V	11 (8.9)	1 (1.3)	9 (23.7)	3 (6.0)	
경 노 당	4 (3.2)	8 (10.4)	4 (10.5)	2 (4.0)	1
마 설 가 기	16 (12.9)	9 (11.7)	7 (18.4)	5 (10.0)	1
자손집다니기	11 (8.9)	7 (9.1)	7 (18.4)	6 (12.0)	1
기 타	22 (17.7)	18 (23.4)	1 (2.6)	14 (24.0)	
모 르 겠 다	7 (5.6)	3 (3.9)		2 (4.0)	1
무 응 답	10 (8.1)	3 (3.9)	2 (5.3)	7 (14.0)	1
계	124 (99.8)	77 (100.1)	38 (100.0)	50 (100.0)	5
(없음또는비해당)	462	373	259	250	95

110. 조모 또는 모의 오락

지역별 오락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낚시·사냥·등산		1 (0.6)			
동물기르기	9 (3.9)	4 (2.4)	3 (3.2)	2 (2.0)	
정원가꾸기	14 (6.0)	8 (4.8)	2 (2.2)	1 (1.0)	
바둑·장기·화투	7 (3.0)	4 (2.4)	1 (1.1)	1 (1.0)	
라디오 TV	37 (15.9)	8 (4.8)	12 (12.9)	3 (3.0)	
경노당	3 (1.3)	7 (4.2)	3 (3.2)		
마실가기	16 (15.5)	35 (21.1)	21 (22.6)	24 (24.2)	4
자손집다니기	59 (25.4)	43 (25.9)	32 (34.4)	22 (22.2)	3
기타	39 (16.8)	37 (22.3)	17 (18.3)	27 (27.3)	2
모르겠다	17 (7.3)	13 (7.8)	1 (1.1)	11 (11.1)	4
무응답	11 (4.7)	6 (3.6)	1 (1.1)	8 (8.1)	1
계	232 (99.8)	166 (99.9)	93 (100.1)	99 (99.9)	14
(없음또는비해당)	354	284	204	201	86

111. 노령자 동거시 가정내문제 첫째

지역별 가정문제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108 (41.5)	130 (71.4)	74 (69.2)	55 (44.4)	7
더 화목함	7 (2.7)	5 (2.7)	1 (0.9)	4 (3.2)	
가구원과의불화	17 (6.5)	5 (2.7)	2 (1.9)	1 (0.8)	
세대의생활차이	16 (6.2)	7 (3.8)	5 (4.7)	1 (0.8)	
경제적곤경	8 (3.1)	7 (3.8)	4 (3.7)	4 (3.2)	1
노령자시중	10 (3.8)	7 (3.8)	4 (3.7)	3 (2.4)	
노령자건강	3 (1.2)	8 (4.4)	3 (2.8)	2 (1.6)	1
기타	8 (3.1)	2 (1.1)	5 (4.7)	1	1
모르겠다	14 (5.4)	3 (1.6)	4 (3.7)	2 (1.6)	
무응답	69 (26.5)	8 (4.4)	5 (4.7)	52 (41.9)	9
계	260 (100.0)	182 (99.7)	107 (100.0)	124 (99.9)	19
비해당	326	268	190	176	81

112. 노령자 동거시 가정내문제 둘째

지역별 가정문제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144 (55.4)	154 (84.7)	96 (89.7)	56 (45.2)	8
더 화 목 함	1 (0.4)	2 (1.1)	1 (0.9)	1 (0.8)	
가구원가의불화	4 (1.5)	1 (0.5)		3 (2.4)	
세대의생활차이	5 (1.9)	1 (0.5)		1 (0.8)	
경 제 적 곤 경	3 (1.2)	3 (1.6)			
노 령 자 시 중	5 (1.9)	5 (2.7)	1 (0.9)	1 (0.8)	
노 령 자 건 강	3 (1.2)	2 (1.1)		1 (0.8)	1
기 타	7 (2.7)	1 (0.5)			
모 르 겠 다	13 (5.0)	3 (1.6)	4 (3.7)	4 (3.2)	
무 응 답	75 (28.8)	10 (5.5)	5 (4.7)	57 (46.0)	10
계	260 (100.0)	182 (99.8)	107 (99.9)	124 (100.0)	19
비 해 당	326	268	190	176	81

113. 노령자의 불만족 첫째

지역별 불만족내용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88(33.8)	77(42.3)	57(53.3)	40(32.3)	4
의복에 대한 불만	1 (0.4)			2((1.6)	
식사 "	7 (2.7)	4((2.2)	4 (3.7)	5 (4.0)	2
주거 "	4 (1.5)	4 (2.2)			
용돈 "	18 (6.9)	14 (7.7)	3 (2.8)	4 (3.2)	1
시중 "	5 (1.9)	8 (4.4)	6 (5.6)	3 (2.4)	1
과중한일 "	1 (0.4)	4 (2.2)		1 (0.8)	1
자녀 "	9 (3.5)	11 (6.0)	7 (6.5)	4 (3.2)	1
빈곤 "	14 (5.4)	13 (7.1)	13(12.1)	6 (4.8)	1
기타	33(12.7)	24(13.2)	7 (6.5)	12 (9.7)	3
모르겠 다	16 (6.2)	15((8.2)	4 (3.7)	4 (3.2)	1
무응답	64(24.6)	8 (4.4)	6 (5.6)	43(34.7)	6
계	260(100.0)	182(99.9)	107(99.9)	124(99.9)	19
(비해당)	326	268	190	176	81

114. 노령자의 불만족 둘째

지역별 불만족내용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143(55.0)	139(76.4)	9(85.4)	54(43.5)	10
의복에 대한 불만	2 (0.8)	1 (0.5)		2 (1.6)	
식사 "	3 (1.2)	2 (1.1)			
주거 "	4 (1.5)				
용돈 "	4 (1.5)	1 (0.5)		1 (0.8)	
시중 "	2 (0.8)	2 (1.1)	1 (0.9)		
과중한 일 "		2 (1.1)	1 (0.9)	1 (0.8)	
자녀 "	3 (1.2)	1 (0.5)	1 (0.9)		
빈곤 "	4 (1.5)	3 (1.6)			
기타 "	9 (3.5)	6 (3.3)	1 (0.9)	7 (5.6)	
모르겠다	16 (6.2)	14 (7.7)	3 (2.8)	4 (3.2)	
무응답	70(26.9)	11 (6.0)	9 (8.4)	55(44.4)	8
계	260(100.1)	182(99.8)	107(100.2)	124(99.9)	19
(비해당)	326	268	190	176	81

Ⅵ . 심 신 장 헨 자 복 지 문 제

115 심신장애자 복지시책

지역별 시책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수용시설	85 (14.5)	61 (13.6)	50 (16.8)	69 (23.0)	6 (6.0)
치료 "	253 (43.2)	176 (39.1)	117 (39.4)	126 (42.0)	57 (57.0)
전문교육 "	105 (17.9)	80 (18.2)	40 (13.5)	29 (9.7)	5 (5.0)
직업상담소	20 (3.4)	32 (7.1)	22 (7.4)	18 (6.0)	9 (9.0)
공동작업장	15 (2.6)	20 (4.4)	18 (6.1)	2 (0.7)	6 (6.0)
직접생활보장	69 (11.8)	55 (12.2)	45 (25.2)	44 (14.7)	11 (11.0)
보장구급여	7 (1.2)	9 (2.0)	3 (1.0)	1 (0.3)	4 (4.0)
기 타	4 (0.7)	1 (0.2)		1 (0.3)	
모 르 겠 다	13 (2.2)	15 (3.3)	2 (0.7)	7 (2.3)	1 (1.0)
무 응 답	15 (2.6)	1 (0.2)		3 (1.0)	1 (1.0)
계	586 (100.1)	450 (100.3)	297 (100.0)	300 (100.0)	100 (100.0)

116 심신장애자 수

지 역 별 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566 (96.6)	426 (94.7)	291 (98.0)	286 (93.1)	89 (89.0)
1	인	20 (3.4)	22 (4.9)	6 (2.0)	14 (6.9)	10 (10.0)
2	인		2 (0.4)			1 (1.0)
3	인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0)	300 (100.0)	100 (100.0)

Ⅶ . 경 제 생 활 및 기 타 문 제

117. 가구주의 수입

지역별 수입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66 (11.3)	56 (12.4)	21 (7.4)	23 (7.7)	12 (12.0)
3000원 미만	2 (0.3)	8 (1.8)	4 (1.3)	19 (6.3)	3 (3.0)
3000~5000 #	7 (1.2)	16 (3.6)	13 (4.4)	38 (12.7)	10 (10.0)
5000~10000 #	37 (6.3)	62 (13.8)	58 (19.5)	89 (29.7)	31 (31.0)
10000~15000 #	56 (9.6)	89 (19.8)	72 (24.2)	61 (20.3)	29 (29.0)
15000~20000 #	70 (11.9)	45 (10.0)	48 (16.2)	27 (9.0)	8 (8.0)
20000~25000 #	96 (16.4)	56 (14.4)	35 (11.8)	20 (6.7)	6 (6.0)
25000~30000 #	33 (5.6)	22 (4.9)	11 (3.7)	2 (0.7)	
30000~50000 #	119 (20.3)	53 (11.8)	13 (4.4)	8 (2.7)	
50000~70000 #	46 (7.9)	22 (4.9)	12 (4.0)	1 (0.3)	
70000원 이상	34 (5.8)	17 (3.8)	10 (3.4)	4 (1.3)	1 (1.0)
모르겠다·무응답	20 (3.4)	4 (0.9)		8 (2.7)	
계	586 (99.9)	450 (100.1)	297 (100.0)	300 (100.1)	100 (100.0)

188 가구주 부인의 수입

지역별 수입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521 (88.9)	421 (91.6)	267 (89.9)	288 (96.0)	92 (92.0)
3000 원 미만	4 (0.7)	8 (1.8)	4 (1.3)	3 (1.0)	4 (4.0)
3000 ~ 5000 "	3 (0.5)	2 (0.4)	5 (1.7)	3 (1.0)	1 (1.0)
5000 ~ 10000 "	9 (1.5)	9 (2.0)	9 (3.0)	5 (1.7)	1 (1.0)
10000 ~ 15000 "	8 (1.4)	6 (1.3)	8 (2.7)		1 (1.0)
15000 ~ 20000 "	6 (1.0)	2 (0.4)	3 (1.0)	1 (0.3)	
20000 ~ 25000 "	7 (1.2)	7 (1.6)			
25000 ~ 30000 "					
30000 ~ 50000 "	6 (1.0)	1 (0.2)			1 (1.0)
50000 ~ 70000 "	2 (0.3)				
70000 원 이상					
모르겠거나무응답	20 3.4	3 (0.7)	1 (0.3)		
계	586 (99.9)	450 (100.0)	297 (99.9)	300 (100.0)	100 (100.0)

119 가구주 자녀의 수입

지역별 수입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478 (81.6)	339 (75.3)	244 (82.2)	243 (81.0)	83 (83.0)
3000 원 미만	2 (0.3)	6 (1.3)	3 (1.0)	7 (2.3)	
3000 ~ 5000 "	2 (0.3)	12 (2.7)	7 (2.4)	8 (2.7)	6 (6.0)
5000 ~ 10000 "	20 (3.4)	19 (4.2)	14 (4.7)	13 (4.3)	6 (6.0)
10000 ~ 15000	15 (2.6)	27 (6.0)	10 (3.4)	7 (2.3)	4 (4.0)
15000 ~ 20000	12 (2.0)	11 (2.4)	7 (2.4)	3 (1.0)	
20000 ~ 25000	11 (1.9)	14 (3.1)	6 (2.0)	4 (1.3)	1 (1.0)
25000 ~ 30000	6 (1.0)	5 (1.1)	3 (1.0)	1 (0.3)	
30000 ~ 50000	10 (1.7)	8 (1.8)	2 (0.7)	2 (0.7)	
50000 ~ 70000	5 (0.9)	4 (0.9)			
70000 이 상	4 (0.7)	1 (0.2)		3 (1.0)	
모르겠다무응답	21 (3.6)	4 (0.9)	1 (0.3)	9 (3.0)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100.0)	100 (100.0)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530 (90.4)	415 (92.2)	275 (92.6)	284 (94.7)	97 (97.0)
3000 원 미만	2 (0.3)	4 (0.9)	4 (1.3)	5 (1.7)	1 (1.0)
3000 ~ 5000 "	4 (0.7)	3 (0.7)	4 (1.3)	2 (0.7)	1 (1.0)
5000 ~ 10000 "	2 (0.3)	8 (1.8)	4 (1.3)	6 (2.0)	1 (1.0)
10000 ~ 15000 "	5 (0.9)	10 (2.2)	5 (1.7)	3 (1.0)	
15000 ~ 20000 "	6 (1.0)	4 (0.9)	2 (0.7)		
20000 ~ 25000 "	10 (1.7)		1 (0.3)		
25000 ~ 30000 "	1 (0.3)				
30000 ~ 50000 "	5 (0.9)	1 (0.2)	1 (0.3)		
50000 ~ 70000 "					
70000 원 이상	2 (0.3)	1 (0.2)			
모르겠다무응답	19 (3.2)	4 (0.9)	1 (0.3)		
계	586 (100.0)	450 (100.0)	297 (99.8)	300 (100.1)	100 (100.0)

지 역 별 수 입 액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9 (1.5)	7 (1.6)	3 (1.0)	3 (1.0)	2 (2.0)
3000 원 미만	2 (0.3)	3 (0.7)	1 (0.3)	17 (5.7)	3 (3.0)
3000 ~ 5000 #	9 (1.5)	12 (2.7)	13 (4.4)	36 (12.0)	9 (9.0)
5000 ~ 10000 #	43 (7.3)	68 (15.1)	53 (17.8)	98 (32.7)	31 (31.0)
10000 ~ 15000 #	56 (9.6)	85 (18.9)	65 (21.9)	64 (21.3)	34 (34.0)
15000 ~ 20000 #	75 (12.8)	44 (9.8)	55 (18.5)	30 (10.0)	10 (10.0)
20000 ~ 25000 #	89 (15.2)	71 (15.8)	33 (11.1)	21 (7.0)	8 (8.0)
25000 ~ 30000 #	41 (7.0)	28 (6.2)	21 (7.1)	4 (1.3)	
30000 ~ 50000 #	133 (22.7)	80 (17.8)	32 (10.8)	19 (6.3)	2 (2.0)
50000 ~ 70000 #	57 (9.7)	29 (6.4)	13 (4.4)	1 (0.3)	
70000 원 이상	54 (9.2)	19 (4.2)	7 (2.4)	4 (1.3)	1 (1.0)
모르겠나무응답	18 (3.1)	4 (0.9)	1 (0.3)	3 (1.0)	
계	586 (99.9)	450 (100.1)	297 (100.0)	300 (99.9)	100 (100.0)

122 가구주의 생활비 부담액

지 역 별 부 담 액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전 음	55 (9.4)	53 (11.8)	17 (5.7)	32 (10.7)	4 (4.0)
3000 원 미 만	2 (0.3)	7 (1.6)	5 (1.7)	17 (5.7)	1 (1.0)
3000 ~ 5000 "	6 (1.0)	16 (3.6)	19 (6.4)	36 (12.0)	5 (5.0)
5000 ~ 10000 "	44 (7.5)	72 (16.0)	72 (24.2)	98 (32.7)	41 (41.0)
10000 ~ 15000 "	64 (10.9)	103 (22.9)	87 (29.3)	61 (20.3)	32 (32.0)
15000 ~ 20000 "	72 (12.3)	52 (11.6)	40 (13.5)	25 (8.3)	11 (11.0)
20000 ~ 25000 "	97 (16.6)	47 (10.4)	21 (7.1)	17 (5.7)	4 (4.0)
25000 ~ 30000 "	26 (4.4)	19 (4.2)	10 (3.4)	3 (1.0)	1 (1.0)
30000 ~ 50000 "	137 (23.4)	51 (11.3)	13 (4.4)	9 (3.0)	1 (1.0)
50000 ~ 70000 "	32 (5.5)	11 (2.4)	7 (2.4)		
70000 원 이 상	31 (5.3)	15 (3.3)	5 (1.7)	1 (0.3)	
모 르 겠 다 무 응 답	20 (3.4)	4 (0.9)	1 (0.3)	1 (0.3)	
계	586 (100.0)	450 (100.0)	297 (100.1)	300 (100.0)	100 (100.0)

123 가구주 본인의 생활비 부담액

지역별 부담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529 (90.3)	411 (91.3)	280 (94.3)	286 (95.3)	99 (99.0)
3000 원 미만	1 (0.2)	7 (1.6)	1 (0.3)	3 (1.0)	
3000 ~ 5000 "	2 (0.3)	2 (0.4)	5 (1.7)	4 (1.3)	1 (1.0)
5000 ~ 10000 "	7 (1.2)	12 (2.7)	7 (2.4)	5 (1.7)	
10000 ~ 15000 "	9 (1.5)	6 (1.3)	2 (0.7)	1 (0.3)	
15000 ~ 20000 "	4 (0.7)	3 (0.7)	1 (0.3)	1 (0.3)	
20000 ~ 25000 "	5 (0.9)	5 (1.1)			
25000 ~ 30000 "					
30000 ~ 50000 "	5 (0.9)	1 (0.2)			
50000 ~ 70000 "	1 (0.2)				
70000 원 이상					
모르겠거나무응답	23 (3.9)	3 (0.7)	1 (0.3)		
계	586 (100.2)	450 (100.0)	297 (100.0)	300 (99.4)	100 (100.0)

1 2 4 가 구 주 자 녀 의 생 활 비 부 담 액

부 담 액 / 지 역 별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494 (84.3)	346 (76.9)	258 (86.9)	249 (83.0)	94 (94.0)
3000 원 미만	1 (0.2)	10 (2.2)		7 (2.3)	
3000 ~ 5000 "	4 (0.7)	10 (2.2)	5 (1.7)	8 (2.7)	3 (3.0)
5000 ~ 10000 "	15 (2.6)	23 (5.1)	12 (4.0)	14 (4.7)	3 (3.0)
10000 ~ 15000 "	13 (2.2)	27 (6.0)	9 (3.0)	8 (2.7)	
15000 ~ 20000 "	9 (1.5)	9 (2.0)	8 (2.7)	5 (1.7)	
20000 ~ 25000 "	11 (1.9)	9 (2.0)	3 (1.0)	4 (1.3)	
25000 ~ 30000 "	4 (0.7)	2 (0.4)		1 (0.3)	
30000 ~ 50000 "	7 (1.2)	7 (1.6)	1 (0.3)	2 (0.7)	
50000 ~ 70000 "	5 (0.9)				
70000 원 이상	2 (0.3)	2 (0.4)		1 (0.3)	
모르겠 다 무응답	21 (3.6)	5 (1.1)	1 (0.3)	1 (0.3)	
계	586 (100.1)	450 (99.9)	297 (99.9)	300 (100.0)	100 (100.0)

125 그외 가구원 생활비 부담액

지역별 부담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542 (92.5)	431 (95.8)	294 (99.0)	289 (96.3)	98 (98.0)
3000 원 미만	1 (0.2)	2 (0.4)		2 (0.7)	
3000 ~ 5000 "	3 (0.5)	1 (0.2)	1 (0.3)	2 (0.7)	1 (1.0)
5000 ~ 10000 "	2 (0.3)	6 (1.3)	1 (0.3)	5 (1.7)	1 (1.0)
10000 ~ 15000 "	2 (0.3)	4 (0.9)		2 (0.7)	
15000 ~ 20000 "	2 (0.3)	1 (0.2)			
20000 ~ 25000 "	7 (1.2)				
25000 ~ 30000 "	1 (0.2)				
30000 ~ 50000 "	3 (0.5)	1 (2.0)			
50000 ~ 70000 "					
70000 원 이상	1 (0.2)				
모르겠다무응답	22 (3.8)	4 (0.9)	1 (0.3)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1)	100 (100.0)

126 가구원 생활비 부담액 총계

지 역 별 부 담 액	서 울	중 소 도 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1 (0.2)			2 (0.7)	1 (1.0)
3000원 미 만	7 (1.2)	4 (0.9)	4 (1.3)	18 (6.0)	
3000 ~ 5000 "	8 (1.4)	14 (3.1)	19 (6.4)	35 (11.7)	9 (9.0)
5000 ~ 10000 "	46 (7.9)	81 (18.0)	70 (23.6)	105 (35.0)	35 (35.0)
10000 ~ 15000 "	70 (11.9)	102 (22.7)	89 (30.0)	68 (22.7)	42 (42.0)
15000 ~ 20000 "	81 (13.8)	64 (14.2)	45 (15.2)	29 (9.7)	8 (8.0)
20000 ~ 25000 "	90 (15.4)	56 (12.4)	25 (8.4)	19 (6.3)	3 (3.0)
25000 ~ 30000 "	42 (7.2)	32 (7.1)	14 (4.7)	5 (1.7)	2 (2.0)
30000 ~ 50000 "	144 (24.6)	64 (14.2)	18 (6.1)	18 (6.0)	
50000 ~ 70000 "	40 (6.8)	11 (2.4)	7 (2.4)		
70000 원 이 상	41 (7.0)	18 (4.0)	5 (1.7)		
모르겠다무응답	21 (3.6)	4 (0.9)	1 (0.3)	1 (0.3)	
계	586 (100.0)	450 (99.9)	297 (99.9)	300 (100.1)	100 (100.0)

지역별 지출액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3000 원 미만	3 (0.5)	5 (1.1)		6 (2.0)	1 (1.0)
3000 ~ 5000 "	7 (1.2)	7 (1.6)	9 (3.0)	25 (8.3)	4 (4.0)
5000 ~ 10000 "	52 (8.9)	78 (17.3)	61 (20.5)	118 (39.3)	33 (33.0)
10000 ~ 15000 "	71 (12.1)	107 (23.8)	75 (25.3)	78 (26.0)	41 (41.0)
15000 ~ 20000 "	89 (15.2)	81 (18.0)	59 (19.9)	32 (10.7)	13 (13.0)
20000 ~ 25000 "	84 (14.3)	62 (13.8)	23 (7.7)	14 (4.7)	7 (7.0)
25000 ~ 30000 "	54 (9.2)	20 (4.4)	29 (9.8)	7 (2.3)	
30000 ~ 50000 "	125 (21.3)	62 (13.8)	23 (7.7)	14 (4.7)	1 (1.0)
50000 ~ 70000 "	39 (6.7)	11 (2.4)	11 (3.7)	1 (0.3)	
70000 원 이상	32 (5.5)	8 (2.9)	6 (2.0)	4 (1.3)	
모르겠거나무응답	30 (5.1)	4 (0.9)	1 (0.3)	1 (0.3)	
계	586 (100.0)	450 (100.0)	297 (99.9)	300 (99.9)	100 (100.0)

128 수입종류별 평균수입액

지역별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취업수입	31,963 (518)	22,981 (432)	19,441 (285)	10,598 (292)	9,389 (95)
부업 "	12,966 (29)	5,377 (39)	4,930 (47)	3,814 (65)	8,625 (4)
부동산 "	12,111 (62)	11,400 (55)	4,947 (30)	5,550 (4)	4,547 (19)
동산 "	22,720 (15)	31,350 (20)	7,500 (4)	20,000 (1)	7,455 (11)
그 외 "	19,027 (37)	12,700 (40)	3,975 (32)	6,303 (39)	1,812 (8)
계	34,027 (540)	24,157 (442)	20,815 (292)	12,205 (296)	11,320 (98)

※ () 내는 표본수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가구수임

129 생활비 지출 세목

지역별 세목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세금	23,119 (458)	22,977 (411)	20,866 (236)	452 (208)	327 (63)
주식비	10,575 (501)	8,224 (437)	7,133 (273)	4,218 (282)	7,035 (100)
주거비	23,329 (234)	19,577 (188)	24,226 (95)	1,528 ((81)	830 (43)
연료비	17,233 (487)	16,700 (427)	14,744 (241)	10,300 (142)	851 (62)
의복비	34,444 (412)	28,955 (397)	16,255 (248)	13,588 (262)	852 (63)
교육비	59,600 (425)	36,988 (328)	28,311 (235)	15,522 (211)	15,422 (65)
기타	61,124 (402)	46,655 (301)	41,811 (256)	31,128 (288)	24,483 (83)
계	324,774	254,066	217,566	132,666	139,920

※ () 내는 표본수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가구수임 ,

130.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법 첫째

지역별 해결방법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과부족없음	311(53.1)	149(33.1)	159(53.5)	140(46.7)	20(20.0)
정부또는공공조	2(0.3)	1(0.2)		2(0.7)	
기관보조	2(0.3)	2(0.4)	2(0.7)		
부모도움	10(1.7)	1(0.2)	1(0.3)	1(0.3)	3(3.0)
가족원외움	5(0.9)	7(1.6)			4(4.0)
친척의친족도움	6(1.0)	4(0.9)	6(2.0)	4(1.3)	4(4.0)
재산매각	48(8.2)	74(16.4)	53(17.8)	92(30.7)	46(46.0)
빛	1(0.2)	12(4.7)	3(1.0)	10(3.3)	1(1.0)
기타방법	106(28.3)	191(42.4)	72(24.2)	47(15.7)	18(18.0)
저축	35(6.0)	9(2.0)	1(0.3)	4(1.3)	4(4.0)
무응답					
계	586(100.0)	450(99.9)	297(99.8)	300(100.0)	100(100.0)

131. 생활비 부족시 해결방법 둘째

지역별 해결방법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과부족없음	274(63.8)	221(49.1)	219(73.7)	222(73.9)	76(76.0)
정부또는공공조		1(0.2)			
기관보조	1(0.2)			1(0.3)	
부모도움					
가족원외움			1(0.3)		
친척의친족도움		1(0.2)		1(0.3)	
재산매각	4(0.7)	25(5.5)	4(1.3)	25(8.3)	3(3.0)
빛		3(0.7)		1(0.3)	
기타방법	166(28.3)	191(42.4)	72(24.2)	47(15.7)	18(18.0)
저축	41(7.0)	8(1.8)	1(0.3)	3(0.3)	3(3.0)
무응답					
계	586(100.0)	450(99.9)	297(99.8)	300(100.1)	100(100.0)

132. 저축 또는 부족액

지역별 금 액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과 부족 없음	311(53.1)	149(33.1)	159(53.5)	140(46.7)	20(20.0)
저축 1,000원 미만		19 (4.2)	5 (1.7)	10 (3.3)	4 (4.0)
" 1,000 - 2,000 "	11 (1.9)	19 (4.2)	17 (5.7)	20 (6.7)	4 (4.0)
" 2,000 - 5,000 "	38 (6.5)	66(14.7)	23 (7.7)	16 (5.3)	8 (8.0)
" 5,000 - 10,000 "	50 (8.5)	59(13.1)	17 (5.7)	5 (1.7)	2 (2.0)
" 10,000원미만	55 (9.4)	41((9.1)	12 (4.0)	2 (0.7)	1 (1.0)
부족 10,000원 미만	6 (1.0)	5 (1.1)	3 (1.0)	12 (4.0)	6 (6.0)
" 1,000 - 2,000 "	14 (2.4)	21 (4.7)	13 (4.4)	18 (6.0)	16(16.0)
" 2,000 - 5,000 "	15 (2.6)	39 (8.7)	29 (9.8)	43(14.3)	25(25.0)
" 5,000 - 10,000 "	15 (2.6)	15 (3.3)	14 (4.2)	19 (6.3)	9 (9.0)
" 10,000 원 이상	29 (4.9)	11 (2.4)	4 (1.3)	11 (3.7)	4 (4.0)
모르겠다무응답	42 (7.2)	6 (1.3)	1 (0.3)	4 (1.3)	1 (1.0)
계	586(100.1)	450(99.9)	297(99.8)	300(100.0)	100(100.0)

133. 작년과 생활형편 비교

지역별 비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많이 좋아짐	20 (3.4)	15 (3.3)	6 (2.0)	3 (1.0)	
다소 좋아짐	127(21.7)	111(24.7)	76(25.6)	42(14.0)	21(21.0)
마찬가지임	287(40.9)	193(42.9)	118(39.7)	112(37.3)	44(44.0)
다소 나빠짐	105(17.9)	91(20.2)	77(25.9)	87(29.0)	30(30.0)
많이 나빠짐	40 (6.8)	38 (8.4)	20 (6.7)	56(18.7)	5(5.0)
모르겠다	4 (0.7)	2 (0.4)			
무응답	3 (0.5)				
계	586(100.0)	450(99.9)	297(99.9)	300(100.0)	100(100.0)

134. 수해의 경제적곤경여부 및 곤경시 해결방법

지역별 수해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곤 경 여 부	없 음	546(93.2)	442(98.2)	254(85.5)	281(93.7)	98(98.0)
	심 했 음	15 (2.6)	2 (0.4)	16 (5.4)	12 (4.0)	
	다소심했음	14 (2.4)	4 (0.9)	24 (8.1)	7 (2.3)	1 (1.0)
	모 르 겠 다	5 (0.9)	1 (0.2)	3 (1.0)		1 (1.0)
	무 응 답	6 (1.0)	1 (0.2)			
	계	586(100.1)	450(99.9)	297(100.0)	300(100.0)	100(100.0)
해 결 못 함		7(17.5)	1	9(20.9)	6(31.6)	1
과 거 저 축		5(12.5)	4	13(30.2)	1 (5.3)	
보 험						
조 합						
친 척 도 움		4(10.0)		6(14.0)	3(15.8)	
친지, 직 장		3 (7.5)		1 (2.3)	1	
도						
정부공공기관		7(17.5)	2	4 (9.3)	1	
도						
기 타		4(10.0)		7(16.3)	6(31.6)	
모 르 겠 다		3 (7.5)		1 (2.3)		1
무 응 답		7(17.5)	1	2 (4.7)	1	
)						
계		40(100.0)	8	43(100.0)	19	2
(비해당)		(546)	(442)	(254)	(281)	98

135. 한해의 경제적곤경여부 및 곤경시 해결방법

지역별 수해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564(96.2)	432(96.0)	252(84.8)	144(48.0)	99(99.0)
심 했 음	4 (0.7)	7 (1.6)	24 (8.1)	110(36.7)	1 (1.0)
다소심했음	9 (1.5)	10 (2.2)	20 (6.7)	46(15.3)	
모 르 겠 다	2 (0.3)		1 (0.3)		
무 응 답	7 (1.2)	1 (0.2)			
계	586(99.9)	450(100.0)	297(99.9)	300(100.0)	100(100.0)
해 결 못 함	3(13.6)	3(16.7)	18(40.0)	85(54.5)	1
과 거 저 축	2 (9.1)	7(38.9)	12(26.7)	20(12.8)	
보 험					
조 합		1 (5.6)	1 (2.2)	6 (3.8)	
친 척 도 움	1 (4.5)	1 (5.6)	3 (6.7)	8 (5.1)	
친지, 직장 도 움	2 (9.1)			7 (4.5)	
정부공공기관 도 움		1 (5.6)	3 (6.7)	4 (2.6)	
기 타	4(18.2)	3(16.7)	7(15.6)	23(14.7)	
모 르 겠 다	1 (4.5)			2 (1.3)	
무 응 답	9(40.9)	2(11.1)	1 (2.2)	1 (0.6)	
계	22(99.9)	18(100.2)	45(100.0)	156(99.9)	1
(비해당)	(564)	(432)	(252)	(144)	(99)

136. 화재의 경제적 곤경여부 및 곤경시행 및 방법

지역별 화재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곤경여부	없음	567(96.8)	442(98.2)	290(97.6)	294(98.0)	99(99.0)
	심했음	5	4	3	1	1
	다소심했음	6	2	3	4	
	모르겠다	1	1	1	1	
	무응답	7	1			
	계	586	450	297	300	100
곤경시행방법	해결못함	1	2	1	1	
	과거저축	6	1	2	1	
	보험					
	조함					
	친척도움	1	1			
	친지, 직장도움	1	2		1	1
	정부공공기관도움			1		
	기타	3		2		
	모르겠다			1	1	
	무응답	6	2			
	계	19	8	7	6	1
(비해당)		(567)	(442)	(290)	(294)	(99)

137. 상의 경제적 곤경여부 및 곤경시 해결방법

지역별 상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곤경여부	없음	473(80.7)	350(77.8)	213(71.7)	237(79.0)	78(78.0)
	심했음	40 (6.8)	43 (9.6)	34(11.4)	32(10.7)	7 (7.0)
	다소심했음	52 (8.9)	43 (9.6)	43(14.5)	26 (8.7)	13(13.0)
	모르겠다	13 (2.2)	13 (2.9)	7 (2.4)	5 (1.7)	2 (2.0)
	무응답	8 (1.4)	1 (0.2)			
	계	586(100.0)	450(100.1)	297(100.0)	300(100.1)	100(100.0)
곤경시 해결방법	해결못함	6 (5.3)	7 (7.0)	1 (1.2)	9(14.3)	3
	과거저축	22(19.5)	44(44.0)	26(40.0)	24(38.1)	5
	곤보	1 (0.9)	1 (1.0)	1 (1.2)		
	경조			1 (1.2)	1 (1.6)	
	시친척도움	39(34.5)	20(20.0)	28(33.3)	12(19.0)	5
	해친지, 직장 도움	8 (7.1)	8 (8.0)	12(14.3)	6 (9.5)	3
	결정부공공기관 도움			1 (1.2)		
	방기타	20(17.7)	12(12.0)	9(10.7)	8(12.7)	5
	법모르겠다	4 (3.5)	5 (5.0)	3 (3.6)	2 (3.2)	1
	무응답	13(11.5)	3 (3.0)	2 (2.4)	1 (1.6)	
	계	113(100.0)	100(100.0)	84(100.1)	63(100.0)	22
(비해당)		(473)	(450)	(213)	(300)	(78)

138. 결혼의 경제적 곤경여부 및 곤경시 해결방법

결혼의 지역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곤 경 여 부	없 음	454(77.5)	334(74.2)	197(66.3)	233(77.6)	68(68.0)
	심 했 다	14 (2.4)	22 (4.9)	13 (4.4)	25 (8.3)	6 (6.0)
	다소있었다	87(14.8)	78(17.3)	77(25.9)	34(11.3)	20(20.0)
	모 르 겠 다	23 (3.9)	16 (3.6)	10 (3.4)	8 (2.7)	6 (6.0)
	무 응 답	8 (1.4)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99.9)	100(100.0)
곤 경 시 해 결 방 법	해 결 못 함	6 (4.5)	5 (4.3)	3 (3.0)	13(19.4)	3 (9.4)
	과 거 저 축	49(36.8)	56(48.3)	29(29.0)	18(26.9)	7(21.9)
	보 험	1 (1.8)			1 (1.5)	
	조 합					
	친 척 도 움	30(22.6)	24(20.7)	28(28.0)	11(16.4)	9(28.1)
	친지, 직장 도 움	12 (9.0)	7 (6.0)	13(13.0)	2 (3.0)	4(12.5)
	정부공공기관 도 움		2 (1.7)	3 (3.0)		
	기 타	13 (9.8)	13(11.2)	15(15.0)	17(25.4)	7(21.9)
	모 르 겠 다	6 (4.5)	7 (6.0)	5 (5.0)	2 (3.0)	1 (3.1)
	무 응 답	16(12.0)	2 (1.7)	4 (4.0)	3 (4.5)	1 (3.1)
	계	133(100.0)	116(99.9)	100(100.0)	67(100.1)	32(100.0)
(비해당)		454	334	197	233	68

139. 실직시의 경제적 곤경여부 및 곤경해결방법

지역별 실직시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곤경여부	없음	503(85.8)	412(91.6)	258(86.9)	293(96.7)	94(94.0)
	심했음	38(6.5)	31(6.9)	15(5.1)	6(2.0)	5(5.0)
	다소심했음	27(4.6)	6(1.3)	2(0.7)	1(0.3)	1(1.0)
	모르겠다	7(1.2)		4(1.3)		
	무응답	11(1.9)	1(0.2)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곤경해결방법	해결못함	26(31.3)	16(42.1)	18(46.2)	3	3
	과거처축	5(6.0)	8(21.1)	2(5.1)	1	
	보협					
	조합					
	친척도움	8(9.6)	8(21.1)	5(12.8)		
	친지, 직장도움	7(8.4)		2(5.1)	2	
	정부공공기관도움	1(1.2)	2(5.3)	1(2.6)		
	기타	16(19.3)	4(10.5)	8(20.5)	1	1
	모르겠다	2(2.4)		2(5.1)		1
	무응답	18(21.7)		1(2.6)		1
	계	83(99.9)	38(100.1)	39(100.0)	7	6
(비해당)		503	412	258	293	94

140. 재해 또는 대사 준비로 저축여부

지역별 저축여부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371(63.3)	266(59.1)	196(66.0)	250(83.3)	97(97.0)
있 음	210(35.8)	184(40.9)	101(34.0)	50(16.7)	3 (3.0)
모 르 겠 다	5 (0.9)				
계	586(100.0)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141. 재해 또는 대사준비로 보험가입 여부

지역별 보험 가입종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514(87.7)	355(78.9)	261(87.9)	283(94.3)	91(91.0)
생 명 보 험	13 (2.2)	25 (5.6)	11 (3.7)	5 (1.7)	2 (2.0)
화 재 보 험	9 (1.5)	4 (0.9)			
기 타 보 험	30 (5.1)	48(10.7)	20 (6.7)	12 (4.0)	7 (7.0)
생명, 화재 보 험	2 (0.3)	2 (0.2)	4 (1.3)		
생명, 기타 보 험	11 (1.9)	11 (2.4)			
생명, 화재 기타 보 험	3 (0.5)	3 (0.7)	1 (0.3)		
모 르 겠 다	4 (0.7)				
무 응 답		2 (0.2)			
계	586(99.9)	450(99.6)	297(99.3)	300(100.0)	100(100.0)

142. 재해대사준비로 계 가입 여부

지역별 가입종류	서 .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465(79.4)	322(71.6)	207(69.7)	257(85.7)	63(63.0)
상 계	11 (1.9)	17 (3.8)	34(11.4)	11 (3.7)	8 (8.0)
촌 계	11 (2.4)	8 (1.8)	9 (3.0)	3 (1.0)	4 (4.0)
기 타 계	79(13.5)	73(16.2)	15 (5.1)	14 (4.7)	21(21.0)
상, 촌 계	10 (1.7)	11 (2.4)	22 (7.4)	9 (3.0)	2 (2.0)
상, 기 타 계	1 (0.2)	8 (1.8)	5 (1.7)	4 (1.3)	1 (1.0)
촌, 기 타 계	1 (0.2)	1 (0.2)		1 (0.3)	1 (1.0)
상, 촌, 기 타 계	1 (0.2)	7 (1.6)	5 (1.7)	1 (0.3)	
모 르 겠 다	4 (0.7)				
무 응 답		3 (0.7)			
계	586(100.2)	450(100.1)	297(100.0)	300(100.0)	100(100.0)

143. 재해대사준비로 조합가입 여부

조합 가입종류	지역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없 음		565(96.4)	410(91.1)	255(85.9)	290(96.7)	96(96.0)
공 제 조 합		2 (0.3)	17 (3.8)	25 (8.4)		
신 용 조 합		4 (0.7)	6 (1.3)	5 (1.7)	2 (0.7)	1 (1.0)
기 타 조 합		6 (1.0)	11 (2.4)	7 (2.4)	7 (2.3)	3 (3.0)
공제, 신용 조 합		4 (0.7)	1 (1.2)	5 (1.7)	1 (0.3)	
공제, 기타 조 합						
신용, 기타 조 합			1 (0.2)			
모 르 겠 다		5 (0.9)				
무 응 답			4 (0.9)			
계		586(100.0)	450(99.9)	297(100.1)	300(100.0)	100(100.0)

114.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첫째

지역별 개선될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품질불량	96(16.4)	83(18.4)	56(18.9)	49(16.3)	13(13.0)
품질사기	152(25.9)	87(19.3)	65(21.9)	101(33.7)	30(30.0)
질에비해고가	87(14.8)	56(12.4)	49(16.5)	38(12.7)	15(15.0)
에너지효율	123(21.0)	117(26.0)	62(20.9)	51(17.0)	13(13.0)
광고과대선전	37(6.3)	30(6.7)	24(8.1)	9(3.0)	4(4.0)
저울사기	27(4.6)	25(5.6)	13(4.4)	20(6.7)	6(6.0)
시장불결	8(1.4)	9(2.0)	5(1.7)	1(0.3)	
상인태도불량	26(4.4)	18(4.0)	7(2.4)	14(4.7)	4(4.0)
기타	5(0.9)	6(1.3)	4(1.3)	3(1.0)	1(7.0)
모르겠다	20(3.4)	18(4.0)	11(3.7)	11(3.7)	13(13.0)
무응답	5(0.9)	1(0.2)	1(0.3)	3(1.0)	1(1.0)
계	586(100.0)	450(99.9)	297(100.1)	300(100.1)	100(100.0)

14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

지역별 개선될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품질 불량	40 (6.8)	31 (6.9)	30(10.1)	19 (6.3)	11(11.0)
품질 사기	110(18.8)	81(18.0)	57(19.2)	52(17.3)	10(10.0)
절에 비해 고가	58 (9.9)	63(14.0)	42(14.1)	57(19.0)	18(18.0)
에누리 흥정	99(16.9)	82(18.2)	50(16.8)	70(23.3)	13(13.0)
광고 과대 선결	79(13.5)	68(15.1)	45(15.2)	15 (5.0)	6 (6.0)
도량형 사기	88(15.0)	2 (6.2)	23 (7.7)	33(11.0)	6 (6.0)
시장 불결	9 (1.5)	10 (2.2)	20 (6.7)	2 (0.7)	3 (3.0)
상인 태도 불량	52 (8.9)	43 (9.6)	7 (2.4)	11 (3.7)	12(12.0)
기 타	7 (1.2)	6 (1.3)	2 (0.7)	4 (1.3)	1 (1.0)
모 르 겠 다	30 (5.1)	31 (6.9)	17 (5.7)	12 (4.0)	14(14.0)
무 응 답	14 (2.4)	7 (1.6)	4 (1.3)	25 (8.3)	6 (6.0)
계	536(100.0)	450(100.0)	297(99.9)	300(99.9)	100(100.0)

146. 경제생활 곤란점 컷째

지역별 곤란점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126(12.5)	129(28.7)	84(28.3)	28(9.3)	5(5.0)
의복	4(0.7)	4(0.9)	3(1.0)	5(1.7)	2(2.0)
식생활	25(4.3)	30(6.7)	14(4.7)	34(11.3)	20(2.0)
주거	37(6.3)	21(4.7)	13(4.4)	3(1.0)	9(9.0)
의식주중 두가치이상	81(13.8)	94(20.9)	57(19.2)	57(19.0)	27(27.0)
교육비	78(13.3)	57(12.7)	54(18.2)	39(13.0)	13(13.0)
영농비	1(0.2)	6(1.3)	13(4.4)	44(14.7)	2(2.0)
사업비	6(1.0)	25(5.6)	18(6.1)	2(0.7)	
의료비	4(0.7)	7(1.6)	8(2.7)	5(1.7)	1(1.0)
기타	104(17.7)	43(9.6)	188(6.1)	21(7.0)	
모르겠다	8(1.4)	9(2.0)	1(0.3)	10(3.3)	
무응답	112(19.1)	25(5.6)	14(4.7)	52(17.3)	21(21.0)
계	586(100.0)	450(100.3)	297(100.1)	300(100.0)	100(100.0)

147. 경제생활 곤란점 둘째

지역별 곤란점	서울	소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301(51.4)	250(55.6)	194(65.3)	90(30.0)	27(27.0)
의복	5 (0.9)	5 (1.1)	2 (0.7)	10 (3.3)	10(10.0)
식생활	8 (1.4)	13(2.9)	1 (0.3)	12 (4.0)	6 (6.0)
주거	14 (2.4)	12 (2.7)	3 (1.0)	2 (0.7)	1 (1.0)
임대차료	16 (2.7)	30 (6.7)	12 (4.0)	17 (5.7)	7 (7.0)
교육비	42 (7.2)	26 (5.8)	28 (9.4)	32(10.7)	13(13.0)
영농비		2 (0.2)	8 (2.7)	20 (6.7)	
사업비		9 (2.0)	11 (3.7)	1 (0.3)	
의료비	6 (7.0)	8 (1.8)	4 (1.3)	7 (2.3)	5 (5.0)
기타	42 (7.2)	31 (6.9)	9 (3.0)	15 (5.0)	2 (2.0)
모르겠다	8 (1.4)	8 (1.8)	1 (0.3)	11 (3.7)	
무응답	143(24.4)	29 (6.4)	24 (8.1)	83 (3.7)	29(29.0)
계	586(100.0)	450(99.9)	297(99.8)	300(100.1)	100(100.0)

148. 생활수준

지역별 생활수준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상 의 상	13 (2.2)	17 (3.8)	6 (2.0)	12 (4.0)	3 (3.0)
상 의 하	23 (3.9)	31 (6.9)	9 (3.0)	24 (7.9)	3 (3.0)
중 의 상	178(30.4)	112(24.9)	92(31.0)	74(24.4)	22(22.0)
중 의 하	190(32.4)	142(13.1)	84(28.3)	79(25.7)	32(32.0)
하 의 상	96(16.4)	87(19.3)	60(20.2)	65(21.8)	19(19.0)
하 의 하	77(13.1)	59(13.1)	46(15.5)	45(14.9)	21(21.0)
모르겠 다	9 (1.5)	2 (0.4)			
무응답				1 (0.3)	
계	586(99.9)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149. 문화적활동점수

지역별 점수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0 점	30 (5.1)	51(11.3)	38(12.8)	101(33.7)	41(41.0)
1 "	81(13.8)	61(13.6)	66(22.2)	98(32.7)	37(37.0)
2 "	136(23.2)	87(19.3)	64(21.5)	57(19.0)	14(14.0)
3 "	138(23.5)	103(22.9)	59(19.9)	28 (9.3)	6 (6.0)
4 "	112(19.1)	79(17.6)	58(19.5)	13 (4.3)	1 (1.0)
5 "	60(10.2)	48(10.7)	10 (3.4)	2 (0.7)	
6 "	21 (3.6)	18 (4.0)	2 (0.7)	1 (0.3)	
7 "	6 (1.0)	3 (0.7)			1 (1.0)
무응답	2 (0.3)				
계	586(99.8)	450(100.1)	297(100.0)	300(100.0)	100(100.0)

150. 오락, 첫째로 좋아하는 것

지역별 오락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50 (8.5)	62(13.8)	34(11.4)	35(11.7)	36(36.0)
낚시, 사냥등	48 (8.2)	42 (9.3)	38(12.8)	15 (5.0)	3 (3.0)
운동, 책 등 산책	95(16.2)	50(11.1)	26 (8.8)	16 (5.3)	2 (2.0)
바둑, 장기 등	70(11.9)	62(13.8)	41(13.8)	38(12.7)	13(13.0)
독서	77(13.1)	66(14.7)	25 (8.4)	33(11.0)	4 (4.0)
라디오, T.V	115(19.6)	52(11.6)	60(20.2)	41(13.7)	14(14.0)
영화, 연극 등	52 (8.9)	48(10.7)	24 (8.1)	15 (5.0)	1 (1.0)
마실 가기 담소 등	34 (5.8)	18 (4.0)	33(11.1)	46(15.3)	18(18.0)
화투, 마작 등	3 (0.5)	11 (2.4)	4 (1.3)	11 (3.7)	5 (5.0)
기타	24 (4.1)	32 (7.1)	12 (4.0)	22 (7.3)	3 (3.0)
모르겠다	5 (0.9)	7 (1.6)		16 (5.3)	1 (1.0)
무응답	13 (2.2)			12 (4.0)	
계	586(99.9)	450(100.1)	297(99.9)	300(100.0)	100(100.0)

151. 오락, 둘째로 좋아하는 것

지역별 오락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없음	118(20.1)	109(24.2)	69(23.2)	91(30.3)	51(51.0)
낚시, 사냥등	18 (3.1)	15 (3.3)	13 (4.4)	7 (2.3)	2 (2.0)
운동, 등산, 책 읽기	55 (9.4)	33 (7.3)	22 (7.4)	9 (3.0)	3 (3.0)
바둑, 장기등	45 (7.7)	24 (5.3)	16 (5.4)	21 (7.0)	4 (4.0)
독서	70(11.9)	34 (7.6)	45(15.2)	11 (3.7)	1 (1.0)
라디오, T.V	80(13.7)	65(14.4)	43(14.5)	34(11.3)	6 (6.0)
영화, 연극등	80(13.7)	80(17.8)	30(10.1)	17 (5.7)	3 (3.0)
마실, 담소등	37 (6.3)	19 (4.2)	24 (8.1)	40(13.3)	10(10.0)
화투, 마작등	16 (2.7)	21 (4.7)	9 (3.0)	20 (6.7)	6 (6.0)
기타	17 (2.9)	25 (5.6)	9 (3.0)	11 (3.7)	2 (2.0)
모르겠다	15 (2.6)	17 (3.8)	13 (4.4)	24 (8.0)	11(11.0)
무응답	35 (6.0)	8 (1.8)	4 (1.3)	15 (5.0)	1 (1.0)
계	586(100.1)	450(100.0)	297(100.0)	300(100.0)	100(100.0)

Table 1. Summary of the data for the 1000 Genomes Project				
Sample ID	Population	Sex	Age	Genotype
G100001	CEU	M	30	0.000000
G100002	CEU	F	25	0.000000
G100003	CEU	M	35	0.000000
G100004	CEU	F	28	0.000000
G100005	CEU	M	32	0.000000
G100006	CEU	F	27	0.000000
G100007	CEU	M	31	0.000000
G100008	CEU	F	26	0.000000
G100009	CEU	M	33	0.000000
G100010	CEU	F	29	0.000000
G100011	CEU	M	34	0.000000
G100012	CEU	F	28	0.000000
G100013	CEU	M	36	0.000000
G100014	CEU	F	30	0.000000
G100015	CEU	M	37	0.000000
G100016	CEU	F	31	0.000000
G100017	CEU	M	38	0.000000
G100018	CEU	F	32	0.000000
G100019	CEU	M	39	0.000000
G100020	CEU	F	33	0.000000
G100021	CEU	M	40	0.000000
G100022	CEU	F	34	0.000000
G100023	CEU	M	41	0.000000
G100024	CEU	F	35	0.000000
G100025	CEU	M	42	0.000000
G100026	CEU	F	36	0.000000
G100027	CEU	M	43	0.000000
G100028	CEU	F	37	0.000000
G100029	CEU	M	44	0.000000
G100030	CEU	F	38	0.000000
G100031	CEU	M	45	0.000000
G100032	CEU	F	39	0.000000
G100033	CEU	M	46	0.000000
G100034	CEU	F	40	0.000000
G100035	CEU	M	47	0.000000
G100036	CEU	F	41	0.000000
G100037	CEU	M	48	0.000000
G100038	CEU	F	42	0.000000
G100039	CEU	M	49	0.000000
G100040	CEU	F	43	0.000000
G100041	CEU	M	50	0.000000
G100042	CEU	F	44	0.000000
G100043	CEU	M	51	0.000000
G100044	CEU	F	45	0.000000
G100045	CEU	M	52	0.000000
G100046	CEU	F	46	0.000000
G100047	CEU	M	53	0.000000
G100048	CEU	F	47	0.000000
G100049	CEU	M	54	0.000000
G100050	CEU	F	48	0.000000
G100051	CEU	M	55	0.000000
G100052	CEU	F	49	0.000000
G100053	CEU	M	56	0.000000
G100054	CEU	F	50	0.000000
G100055	CEU	M	57	0.000000
G100056	CEU	F	51	0.000000
G100057	CEU	M	58	0.000000
G100058	CEU	F	52	0.000000
G100059	CEU	M	59	0.000000
G100060	CEU	F	53	0.000000
G100061	CEU	M	60	0.000000
G100062	CEU	F	54	0.000000
G100063	CEU	M	61	0.000000
G100064	CEU	F	55	0.000000
G100065	CEU	M	62	0.000000
G100066	CEU	F	56	0.000000
G100067	CEU	M	63	0.000000
G100068	CEU	F	57	0.000000
G100069	CEU	M	64	0.000000
G100070	CEU	F	58	0.000000
G100071	CEU	M	65	0.000000
G100072	CEU	F	59	0.000000
G100073	CEU	M	66	0.000000
G100074	CEU	F	60	0.000000
G100075	CEU	M	67	0.000000
G100076	CEU	F	61	0.000000
G100077	CEU	M	68	0.000000
G100078	CEU	F	62	0.000000
G100079	CEU	M	69	0.000000
G100080	CEU	F	63	0.000000
G100081	CEU	M	70	0.000000
G100082	CEU	F	64	0.000000
G100083	CEU	M	71	0.000000
G100084	CEU	F	65	0.000000
G100085	CEU	M	72	0.000000
G100086	CEU	F	66	0.000000
G100087	CEU	M	73	0.000000
G100088	CEU	F	67	0.000000
G100089	CEU	M	74	0.000000
G100090	CEU	F	68	0.000000
G100091	CEU	M	75	0.000000
G100092	CEU	F	69	0.000000
G100093	CEU	M	76	0.000000
G100094	CEU	F	70	0.000000
G100095	CEU	M	77	0.000000
G100096	CEU	F	71	0.000000
G100097	CEU	M	78	0.000000
G100098	CEU	F	72	0.000000
G100099	CEU	M	79	0.000000
G100100	CEU	F	73	0.000000

Ⅷ . 기 혼 직 업 여 성 복 지 문 제

152. 취업동기 (I)

지 역 취업동기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소 질 발 전	3	4				7
여 가 이 용	3	1	1		1	6
사 회 참 여	2		1			3
전공분야살림	8		2			10
경 제 적 곤 란	20	32	8	13	7	80
경제적여유원함	7	10	7	2	1	27
기 타	4	3		1		8
무 응 답	3			1		4
계	50	50	19	17	9	145

153. 취업동기 (II)

지 역 취업동기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소 질 발 전	2	2				4
여 가 이 용	2	4			2	8
사 회 참 여	4	4	2			10
전공분야살림	5	1	3			9
경 제 적 곤 란	5	5	2	2		14
경제적여유원함	14	4	3		2	23
기 타	7	11	1	2	3	24
무 응 답	11	19	8	13	2	53
계	50	50	19	17	9	145

154. 경제적 곤경해결시 퇴직희망여부

지 역 취업동기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당장그만둔다	14	28	9	7	7	65
2 ~ 3년 더	7	6	4	1	2	20
쭉 계 속	18	9	3	9		29
모 르 겠 다	5	5	1			11
무 응 답		1	1			2
비 해 답	6	1	1			8
계	50	50	19	17	9	145

155. 용남자의 직업

지 역 직 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기타또는분류불능	9	6				15
농 부	1	6		9		16
단 순 노 동	4	5	2	2		13
숙 련 노 동	1	2	1			4
판매종사(백상제외)	13	8	6	3	3	33
행 상	4	5	1	1	6	17
음식점또는유호업	2	9	3	2		16
교 사	7	2	3			12
사 무	5	2	2			9
미 용	1	4				5
전문직기술직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156. 취업에 대한 남편의 처음태도

태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7	14		7	1	29
대단히 찬성	6	4	1	3	4	18
어느정도 찬성	16	5	10	3	3	37
중립	4	13	4	2	1	24
어느정도 반대	13	10	2	2		27
대단히 반대	4	2	2			8
모르겠다		2				2
계	50	50	19	17	9	145

157. 취업에 대한 남편의 현재태도

태도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6	15		7	1	29
대단히 찬성	10	4	2	3	4	23
어느정도 찬성	8	15	7	4	4	38
중립	17	12	8	2		39
어느정도 반대	4	3	2	1		10
대단히 반대	4					4
모르겠다	1	1				2
계	50	50	19	17	9	145

158. 남편의 부인취업반대 이유

지 역 이 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수입중요나일이힘듦	2	1	1			5
수입적고일도힘듦	4		1	1		5
가 사 에 불 충 실	5	9	2	1		17
타 인 이 나쁘게생각하는직업	2	2	1	1		6
남자와접촉많음				1		1
여자취업원래 반대	2	2				4
기 타		3	1			4
비 해 당	35	33	13	13	9	103
계	50	50	19	17	9	145

159. 출근시간

지 역 시 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새 벽	2	3	2		1	8
오 전	21	16	14			51
오 후	1					1
불 일 정	7	8		5	5	25
가 내	19	23	3	12	3	60
계	50	50	19	17	9	145

160. 퇴근시간

시 간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오 전			1			1
오 후	16	13	8		1	38
밤	5	4	5			14
불 일 정	10	10	2	5	5	32
가 내	19	22	3	12	3	59
무 응 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161. 월 수입

수입액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000 원 미 만	1	5		1	2	9
1,000 ~ 2,000	2	4	2	1	4	13
2,000 ~ 4,000	4	10	4	5	2	25
4,000 ~ 6,000	7	8	3	6	1	25
6,000 ~ 10,000	5	12	1	4		22
10,000 ~ 15,000	9	5	8			22
15,000 ~ 20,000	12	2	1			15
20,000 ~ 30,000	5	2				7
30,000 ~ 40,000	1	2				3
40,000 원 이 상	4					4
계	50	50	19	17	9	145

162. 수입의 가계 도움비

지 역 도움정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전 가구의 생활비	12	21	7	9	2	51
어 느 정 도 도 움	32	27	12	7	5	73
별 로 도 움 되 지 않 음	3	1			1	5
전 혀 도 움 되 지 않 음	2			1	1	4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163. 취업만족도

지 역 만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대 단 히 만 족	6	1	1			8
어 느 정 도 만 족	11	9	6	3		29
보 통	15	11	6	7	1	40
어 느 정 도 불만족	8	12	5	3	3	31
대 단 히 불만족	9	17	1	2	5	34
모 르 겠 다	1			2		3
계	50	50	19	17	9	145

164. 취업만족시 만족사유 (I)

만족사유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1	37	11	12	9	100
취 미 에 맞 음	2	3	2	1		8
남을도울수있는직업	2	2				4
전공분야를살림	8	1	4			13
가 내 취 업 가 능	3	5		3		11
보 수 가 좋 음	1		1			2
기 타	1	2	1	1		5
무 응 답	2					2
계	50	50	19	17	9	145

165. 취업만족시 만족사유 (II)

만족사유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0	37	11	12	9	99
취 미 에 맞 음	4	3	1			8
남을도울수있는직업	1		1			2
전공분야살림	4	2				6
가 내 취 업 가 능	3	2	2	1		8
보수가좋으므로	2		1	1		4
직장분위기가 좋음	1	3	1	1		6
기 타		2		1		3
무 응 답	5	1	2	1		9
계	50	50	19	17	9	145

166. 취업불만족사유(I)

지 역 불만족사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3	21	13	11	1	79
과 중 한 일	5	4	1	4	1	15
보수, 좋은 나직장 분위기가 나쁨		1	1	1	1	4
보수, 분위기 나쁨	3	8	2			13
타인이 좋지 않게 평가	3	4	2			9
소질, 성격에 안맞음	1	2				3
인격적대우를 안해 줌		2				2
불안정적 직업	3			1	1	5
기 타	1	6			5	12
무 응 답	1	2				3
계	50	50	19	17	9	145

167. 취업불만족사유 (II)

지 역 불만족사유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2	21	13	12	1	79
과 중 한 일	4	5	2			11
보수, 직장분위기나쁨	3	5				8
타인이 좋지않게평가		4	1	2		7
소질, 성격에안맞음	3	4	1			8
인격적대우안해 줌	1					1
불 안 정 적 직 업	2	4			2	8
기 타	3	4		1	3	11
무 응 답	2	3	2	2	3	12
계	50	50	19	17	9	145

168. 전 직 희망직업

지 역 희망직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일 정 출 퇴근직업	3	1				4
보수적어도시간 적여유있는직업	6	2	1			9
집에서할수있는직업	8	11	8	3	1	31
자 영 업	6	6	4	5	1	22
보 수 많 은 직 업	6	11	5	4	3	29
기 타	4	5			1	10
취업의사전 혀없음	15	14	1	3	3	36
모 르 겠 다	2			2		4
계	50	50	19	17	9	145

169. 출근후 가사책임자

지 역 가사책임자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0	6	4	10	1	31
시 어 머 니	6	4	2	2		14
친정어머니	4	5				9
친 척		2				2
식 모	11	1	3			15
이웃위탁	1					1
기 타	7	11	2	1	2	23
본 인 이	8	20	7	4	6	45
아무도없다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170. 출근후 보육책임자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6	23	6	13	2	70
시 어 머 니	3	2	1	1		7
친정어머니	2	1				3
식 모	11	5	3			19
탁 아 소	1					1
기 타	2	5	3			10
본 인 이	3	12	5	3	2	25
아무도없음	2	2	1		5	10
계	50	50	19	17	9	145

171. 가사 보육책임자 월평균 지급보수

지 역 금 액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3	28	10	14	7	82
1,000 원 미만	1					1
1,000 ~ 2,000	8	5	3			16
2,000 ~ 3,000	6	2	1			8
3,000 원 이상	4					4
무 보 수	8	15	5	3	2	33
계	50	50	19	17	9	145

172. 가사, 보육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지 역 만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2	28	10	14	7	81
매 우 만 족	3	6				9
어느정도만족	12	6	6	3	1	28
보 통	11	8	3			22
어느정도불만족	2	1			1	4
매 우 불 만 족		1				1
무 응 답						
계	50	50	19	17	9	145

173. 가사, 보육담당자에 대한 불만족점

지 역 불만족점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성의있으나 일을 마음에들게하지못함		1			1	2
애기에게성의없음	1					1
경 제 적 낭 비	1					1
담 당자 에 게 필 요 이 상 의 신 경 쑼	1					1
기 타		2		1		3
비 해 당	46	47	19	16	8	136
무 응 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174. 가사, 보육담당자들에 대한 불만족 해결책

지 역 해결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사람을 바꾸겠다	1					1
본인이직접하겠다	1					1
불만족하나참는다	2	2			1	5
해 결 책 없 음	1					1
기 타	2	1				3
비 해 당	43	44	19	17	8	131
무 응 답		3				3
계	50	50	19	17	9	145

175. 퇴근후 가사돌보는 시간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살림전부전적으로	17	27	13	11	9	77
틈 나 는 대 로	26	19	4	4		53
전 혀 돌 보 지 못 함	4	2	2	2		10
무 응 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176. 직장에서의 동료인간관계

관 계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9	25	8	14	6	72
여 자 동 료 와 좋 다		13	11	4			28
남 자 동 료 와 좋 다		1					1
남 자 동 료 와 나쁘 다						1	1
여 자 와 좋 으 나 남 자 와 나쁘 다		1	1				2
남, 여 동 료 와 다 좋 다		10	9	7	1	2	29
모 르 겠 다		5	4		2		11
무 응 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177.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 (I)

문 제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시 어 머 니 불 만	3	1				4
남편, 자녀와의거리감	9	3	1			13
남 편 불 만	11	4	3	3	3	24
남편의외부생활오해		2		1		3
자녀성격난폭해 집	4	6	1		1	12
자녀학업돌보지못함	4	3	3	2		12
살 림 낭 비	1	1	1			3
기 타	3	9		2	2	16
없 다	11	18	7	9	2	47
모 르 겠 다	1	2	3			6
무 응 답	3	1			1	5
계	50	50	19	17	9	145

178. 취업으로 인한 가정내 문제 (Ⅱ)

문제점 /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시어머니불만	1	1	2			4
남편, 자녀와의거리감	4	2		1		7
남편 불만	6	3	2		1	12
남편의외부생활오해	1					1
자녀성격난폭해짐	2	2	2	1	1	8
자녀학업돌보지못함	8	5	1		1	15
살림낭비	2					2
기타	4	5			1	10
없다	8	17	9	7		41
모르겠다	2	4	2	3		11
무응답	12	11	1	5	5	34
계	50	50	19	17	9	145

179. 상해 발생시 직장협조정도

지 역 협조정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3	42	15	15	7	112
전 혀 없 다	5	3			2	10
어 느 정 도	11	5	3	1		20
만 족 스 럽 게	1		1	1		3
무 응 답						
계	50	50	19	17	9	145

180. 출산전후 휴가 및 편리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8	44	15	16	7	110
전 혀 없 다	2	1			2	5
어 느 정 도	15	3	3	1		22
만 족 스 럽 게	2	2	1			5
무 응 답	3					3
계	50	50	19	17	9	145

181. 가내용사·대사시 보조

지 역 보 조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9	40	14	16	7	106
전 혀 없 다	6	3			2	11
어 느 정 도	9	6	5	1		21
만 족 스 럽 게	1	1				2
무 응 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182. 육아보호 (젓먹이는 시간) 편리제공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3	44	15	16	7	115
전 혀 없 다	9	3	2	1	2	17
어 느 정 도	3	2	2			7
무 응 답	5	1				6
계	50	50	19	17	9	145

183. 직장내 위생시설

위생시설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9	36	13	16	7	101
전 혀 없 다	3	4		1	2	10
어 느 정 도	6	7	4			17
만 족스 럽 게	7	3	2			12
무 응 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184. 직장내 오락시설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9	38	15	16	7	105
전 혀 없 다	8	9	1		2	20
어 느 정 도	8	2	3	1		14
만 족스 럽 게		1				1
무 응 답	5					5
계	50	50	19	17	9	145

185. 남자와 동등한 보수

동등한보수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29	42	14	16	7	108
전혀없다	6	3		1	2	12
어느정도	9	4	1			14
만족스럽게	3	1	4			8
무응답	3					3
계	50	50	19	17	9	145

186. 유급휴가유무

유급휴가 지역	서울	중소도시	읍	농촌	어촌	계
비해당	31	39	14	16	7	107
일주일미만	4	2		1		7
10 ~ 15 일	1	2				3
15 ~ 30 일	1					1
30 일 이상		1	2			3
기타	1	1				2
없다	8	4	3		2	17
모르겠다	2					2
무응답	2	1				3
계	50	50	19	17	9	145

187. 유급결근

지 역 유급결근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2	40	13	16	7	108
1 주 미 만	4	1	3	1		9
1 주 ~ 10 일			1			1
15 ~ 30 일	1	1	1			3
30 일 이 상		1				1
기 타	2					2
없 다	8	3	1		2	14
모 르 겠 다	2	3				5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188. 취업의 유리점 대 불리점

지 역 유리점대불리점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이 점 이 많 다	25	29	10	9	4	87
이 점, 불리점 모루없다	10	5	5	4	1	25
불리점이 많다	13	11	2	4	3	33
모 르 겠 다	1	1	2		1	5
무 응 답	1	4				5
계	50	50	19	17	9	145

189. 취업의 이점 (I)

이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5	21	9	7	5	67
소 질 발 전	5	3	1			9
사 교 생 활	1					1
사회생활상식, 지식넓힘	1		1			2
부부이해도움	1	1				2
경 제 적 도 움	16	24	8	9	4	61
무 응 답	1	1		1		3
계	50	50	19	17	9	145

190. 취업의 이점 (II)

이 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5	22	9	7	5	68
소 질 발 전	3	2	3			8
사 교 생 활		2				2
사회생활상식, 지식넓힘	4	3		1		8
부부이해도움	2	1	1			4
경 제 적 도 움	8	5	1	1		15
기 타		2	1			3
무 응 답	8	13	4	8	4	37
계	50	50	19	17	9	145

191. 취업의 불리점 (I)

지 역 불리점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7	37	17	14	6	111
가정생활소홀	10	5	1	2	2	20
취미생활불가능		2				2
자녀교육불충실		2	1			3
가정불화의견충돌	1	2				3
기 타	1	1		1	1	4
무 응 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192. 취업의 불리점 (II)

지 역 불리점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36	27	17	13	6	99
가정생활소홀		4	2			6
취미생활불가능	2			1		3
자녀교육불충실	7	2		1	1	11
남편의경제관심감소		3				3
가정 불 화 의 견충돌	1	1				2
기 타	1	1				2
무 응 답	3	2		2	2	9
계	50	50	19	17	9	145

193. 취미생활

지 역 취 미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독 서	9	7	5	3	1	25
등 산	2					2
꽃 꽃 이	3	1				4
영 화, 음악	10	10	3	1		24
운 동	1					1
그 림	1					1
환 담	6	8		7	1	22
수 예, 편물	11	4	3			18
기 타	1	6	1	1		9
없 다	6	14	7	5	7	39
계	50	50	19	17	9	145

194. 주말, 공휴일의 소일(I)

지 역 소일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친구, 친지방문	2	1	3			6
가 족 과	24	12	5	1		42
혼자취미생활		1	1		1	3
맡 린 일 처 리	13	14	3	7	7	44
휴 식	3	5				8
기 타	5	14	6	5	1	31
모 르 겠 다		1		4		5
무 응 답	3	2	1			6
계	50	50	19	17	9	145

195. 주말·공휴일의 소일(Ⅲ)

소일처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친구, 친지방문	3	2		1		6
가 족 과	5	5	3	2		15
혼자 취미 생활	2		1			3
밀 린 일 처 리	14	10	6		1	31
휴 식	13	10	1	4	4	32
기 타	6	8	3	3	1	21
모 르 겠 다		5	2	4	1	12
무 응 답	7	10	3	3	2	25
계	50	50	19	17	9	145

196. 기혼여성은 될수 있는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찬성도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대단히 찬성	8	7		5	1	21
어느정도찬성	14	13	8	2	2	39
중 립	6	9	6	4	2	27
어느정도반대	12	12	5	3	2	34
절 대 반 대	8	8		2	2	20
모 르 겠 다	1	1		1		3
무 응 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197. "미혼여성은 될수 있는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지 역 찬성도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대단히 찬성	11	9	6	3		29
어느정도찬성	15	15	10	4	3	47
중립	3	7	1	2	2	15
어느정도반대	10	6	2	6		24
절대반대	9	12		1	3	25
모르겠다	1	1	1			3
무응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198. 희망 취업년수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년 미만	2	1	2			5
2, 3년	6	8	5	1	1	21
4, 5년	7	4	2	1	1	15
5~10년	1	3	2	1		7
10년 이상	6	2	1	2		11
정년퇴직까지	3					3
경제문제해결까지	13	29	5	12	7	66
모르겠다	10	3	2			15
무응답	2					2
계	50	50	19	17	9	145

199.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요국가시책(I)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휴 게 설 설 비	3	2	2	2		9
특 별 휴 가 제 도	11	5	5	1		22
직 업 보 도 기 술 습 득	11	14	2		1	28
생 리 휴 가, 출 산 전 후 휴 가	7	1				8
출 산 특 별 수 당 제	4	2	2			8
무 료 탁 아 소	3	6	4	1	3	17
서 설 중 은 유 료 탁 아 소	2	3		1		6
남 자 와 동 등 한 보 수 제 도	3	6	1	3	1	14
은 퇴 년 급 제 도	1		1			2
기 타	1	2		3	2	8
모 르 겠 다	2	6	2	6	2	18
후 응 답	2	3				5
계	50	50	19	17	9	145

200. 기혼직업여성에 대한 요구가시책(Ⅱ)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휴 계 실 설 비	3	3				6
특 별 휴 가 제 도	2	2	2	1		7
직업보도기술습득	4	7	2	3	1	17
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5	2	1			8
출산특별수당제	6	1	2	1	1	11
무 료 탁 아 소	6	4	1			11
시설좋은유료탁아소	1		2			3
남자와동등한보 수제도	6	5	4			15
은 퇴년 금 제 도	4	4				8
기 타	1	1		2	1	5
모 르 겠 다	5	16	4	6	2	33
무 응 답	7	5	1	4	4	21
계	50	50	19	17	9	145

201. 연 령

연 령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20 ~ 25	2	5	1		1	9
26 ~ 30	10	8	4	3	1	26
31 ~ 35	17	8	3	2	1	31
36 ~ 40	5	3	6	2	1	17
41 ~ 45	7	9	3	3	2	24
46 ~ 50	6	6	2	2	2	18
51 ~ 55	2	4		3		9
56 ~ 60		6		2	1	9
무응답	1	1				2
계	50	50	19	17	9	145

202. 교육정도

교육정도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무 학	3	20	2	8	6	39
초 등	10	14	8	8	2	42
중 학	8	3	2	1	1	15
고 등	11	11	4			26
대 학 이 상	18	1	3			22
모 르 겠 다		1				1
계	50	50	19	17	9	145

203. 종 교

종 교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유 교	1					1
불 교	7	9	2	2	1	21
기 독 교	12	6	3			21
천 주 교	4	1				5
무 교	26	32	14	15	8	95
기 타		2				2
계	50	50	19	17	9	145

204. 결혼관계

결혼관계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기 혼 동 거	41	28	17	9	8	103
별 거	2	2	2	1	1	8
이 혼	1	3				4
사 별	5	14		7		26
기 타	1	3				4
계	50	50	19	17	9	145

205. 3 세미만 자녀수

자녀수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13	11	4	3	4	35
2 명	1	2	2			5
없 음	36	37	13	14	5	105
계	50	50	19	17	9	145

206. 4 ~ 8 세 자녀수

자녀수 \ 지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15	15	9	4	3	46
2 명	6	2	3	3	4	18
3 명		1				1
없 음	29	32	7	10	2	80
계	50	50	19	17	9	145

207. 9 ~ 13 세 자녀수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8	14	2	3	1	28
2	명	8	10	6	5	2	31
3	명	2	3	1	1		7
없	음	32	23	10	8	6	79
계		50	50	19	17	9	145

208. 14 ~ 20 세 자녀수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자녀수							
1	명	8	12	2	3	1	26
2	명	8	11	6	5	2	32
3	명	2	5	1	1		9
없	음	32	22	10	8	6	78
계		50	50	19	17	9	145

209. 20 세이상 자녀수

지 역 자녀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명	4	7	2	2	2	17
2	명	8	5	1	1	1	16
3	명	1	1		1		3
4	명	1	2		2		5
없	음	36	35	16	11	6	104
계		50	50	19	17	9	145

210. 가구주의 직업

지 역 가구주직업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농 · 어	업		6	1	7	3	17
상	업	13	8	4			25
교사, 공무원, 사무원		16	7	6		1	30
공	업	2					2
자	유	4		2			6
노	동	4	9	1	1	2	17
기	타	4	8	3	4		19
무	직	6	10	1	5	3	25
무	응	1	2	1			4
계		50	50	19	17	9	145

211. 취업년수

지 역 취업년수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1 년 미 만	7	6	4	1	3	21
1 ~ 2 년	8	3		1		12
2 ~ 4 년	10	10	3	6	1	30
4 ~ 6 년	8	6	4	3	1	22
6 ~ 10 년	9	8	4	2	2	25
10년 이 상	6	13	4	4	2	29
무 응 답	2	4				6
계	50	50	19	17	9	145

212. 노조가입 여부

지 역 가입여부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7	26	13	14	4	74
했 음	1	4		1		6
안 했 음	29	18	6	2	5	60
무 응 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213. 직장공제회 가입여부

가입여부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21	26	14	15	5	81
했 음	5	5	1	1	1	13
안 했 음	21	18	4	1	3	47
무 응 답	3	1				4
계	50	50	19	17	9	145

214. 직업단체 가입여부

가입여부 \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비 해 당	17	24	13	14	4	72
했 음	7	6	2	1		16
안 했 음	23	18	4	2	5	52
무 응 답	3	2				5
계	50	50	19	17	9	145

215. 생활정도

지 역		서 울	중소도시	읍	농 촌	어 촌	계
상	상						
상	하	9	3	1	1	1	15
중	상	18	12	8	3	2	43
중	하	7	12	4	6	3	32
하	상	10	13	2	4		29
하	하	5	10	4	3	3	25
무	응 답	1					1
계		50	50	19	17	9	145

부록< 2 >

사 회 복 지 기 초 조 사 표

인 사 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라는 연구기구에서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겪고있는 어려운 사정을 자세히 알아내고 그것을 옮겨 해결할수 있는 의견을 들어 보다 잘 살수 있는 시책의 기초자료를 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3. 백이 조사대상으로 뽑히게된 것은 제비뽑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백과 비슷한 사정에 있는 다른 가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숫자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백의 사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수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4. 본 조사목적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있는 그대로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1. 기본표 기재지침 (※기타의 경우는 「기타」로 기입하지 말고 내용을 기입할것)

가구의 정의 ; (1)현재 동거중인 가족 (2) 본래 같이 살게되어 있는 별거중인 가족 (3)장기동거 친척 또는 친지 (4)장기동거 생계를 같이 하는 식모, 머슴 그외 피고용인 포함

※ a. 실질적인 분가자 제외 b. 분별이 곤란할시는 당사자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가로 확인

1) 가구원 번호 ;

2) 가구주와의 관계 ;

(1) 1 ~ 15 번까지 -가구주, 가구주 부인, 가구주의 직제가족, 부모, 형제, 자매에 따른 핵 가족 단위 친척, 친지 순서로 기입

(2) 16 번 - 가구원 수 15 명 이상일 경우 기입

(3) 17 번 - 식모, 머슴, 가정부 등의 가정고용인

(4) 18 번 - 가정 고용인의 피고용인 (예 ;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간호원)

3) 동거여부 ; 3 개월이상 별거할 경우 별거란에 체크, 별거사유 기입

별거사유 ; (1)국내취학 (2)국외취학 (3)국내취업 (4)국외취업

(5)행방불명 (6)군복무 (직업군인은 (3)) (7)기타

4) 성 별 ; 남자 - m 여자 - f 로 표시

5) 년 령 ; 만으로 기입, 출생년도 또는 며를 확인할것

6) 교육정도 ; (0)문맹 (1)한수 (漢修) (2)국해 (國文解得) (3)초등

(4)중등 (5)고등 (6)대학 또는 그 이상 (각각중퇴포함)

7) 종 교 ; (0)무종교 (1)기독교 (2)불교 (3)천주교 (4)천도교

(5) 기타종교

8) 결혼관계 ; (0)미혼 (1)사별 (2)이혼 (3)기혼동거 (4)불화별거

(5)취업별거 (6)기타 관계

9) 건강상태 ; 비정상 사유 (1)불구 (2)정신질환 (3)장기질환 (3 년이상
질환자로 정규취업이 곤란한자 (4)단기질환 (1 개월 ~ 3 년미
만 취업불가) (5)기타

10) 전월중 취업 ; " 9 월에 수입있는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 "

11) 미취업 사유 ; (1)가사 (주로 주부) (2)건강상 이유 (3)재학
(4)학령미달 (5)노령 (* 남자 65 m 이상 여자 60 m
이상) (6)실업 (7)기타

12) 산업 및 직업 ; " 어디에서 어떤일 (산업 직업이 명시되도록) 을
하고 있습니까 ? "

*산업별 대분류 ; (1)농림업 별목업 (2)수렵업 어업 (3)광업
(4)제조업 (5)건설업 (6)전기·가스업 (7)상업
(8)운수·보관·통신업 (9)정부기관서비스업
(10)기타 서비스업

*직업별 대분류 ; (1)전문적 기술적 직업 (2)관리적 직업
(3)사무 종사자 (4)판매종사자 (5)농부·별목부
(6)수렵·어부 (7)광부 채석부 (8)교통 체신업
(9)기능공·생산공정조사자·단순노동자
(10)서비스 직업 종사자

13) 취업상황 ; (1)자영업주 ; a. 1 인 b. 2 ~ 3 인 c. 5 인 이상
(2)상 용 ; 1 개월이상 장기 고용계약 (3)일용 ; 1 개
월 이하 계약 (4)가내종사 ; 자영업주 가족으로 급료임금을
받지 않은자 (5)기타 ;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자

예시

1. 먼저 대의 가구원(家口員)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분가(分家)한 가족을 제외한 별거중인 가족을 포함해서 동거중인 가족 친척 또는 친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장기 숙식을 같이하는 식모 머슴 그외 피고용인까지를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1. 가구원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3. 동거여부			4. 성별 (남·여)	5. 연령 (만)	6. 종교	7. 결혼관계	8. 건강상태			취업		상 황		13. 비고
		① 동거	② 별거	③ 별거사유					④ 건강	⑤ 비정상	⑥ 비정상유	⑦ 전월종업유무	⑧ 월미사월종업유무	⑨ 취업시	⑩ 취업시 (산업직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기 가구원중 15명 이상 ; 가구주와의 관계 () 남()명 여()명 계()명															
17	가정고용인	종류 ;	외명	보수 ;	월평균	원	비고 ;									
	그외고용인	종류 ;	외명	보수 ;	월평균	원										
	그외고용인	종류 ;	외명	보수 ;	월평균	원										

- * 기입요령 ; 1) 실제 응답자를 가구원번호에 ○표 모르겠다 × 무응답 Y
 2) 3항 ①, ⑧항 ①, ⑨항은 ○표로 그 외는 기입
 3) 비교란 : 취학아동, 노령자, 직업여성 및 심신장애자 유무 체크

다음에는 택의 거주 생활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2. 지금 살고 계시는 이집은 귀하의 집입니까? 아니면 세든집입니까?

- _____ (0) 자가 (自家)
- _____ (1) 전 세 집
- _____ (2) 전 세 방
- _____ (3) 월 세 집
- _____ (4) 월 세 방
- _____ (5) 사 택
- _____ (6) 기 타 ()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3. 그러면 택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모두 몇입니까?

- _____ (0) 없 다
- _____ (1) 1 방
- _____ (2) 2 방
- _____ (3) 3 방
- _____ (4) 4 방
- _____ (5) 5 방
- _____ (6) 6 방
- _____ (7) 7 방 또는 그 이상 (방)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4. 백의 거주생활에 관하여 다음에 말씀드리는 하나 하나의 안전도와 편리도를 생각하시어 어느 정도로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시는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0)비해당(1)매우만족(2)만족한편(3)그저그렇다(4)불만족한편(5)매우불만족(x)y

(1) 상수도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하수도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전기 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변소 상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오물 처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목욕탕 (공동탕 제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우물 (펌프 공동우물포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건물의 견고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축대의 안전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화재 예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수해 예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귀하는 덕의 주위환경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중에 무엇을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째 둘 째

_____	_____	(0) 불만족한 것이 없다
_____	_____	(1) 교통이 불편하다
_____	_____	(2) 시장이 멀거나 좋지 않다
_____	_____	(3) 차도(車道)가 있어 먼지가 많고 시끄럽다
_____	_____	(4) 차도가 있어 위험하다
_____	_____	(5) 동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_____	_____	(6) 동리에 가난한 집이 많아 좋지 않다
_____	_____	(7) 동리에 공장이 있어 피해를 준다
_____	_____	(8) 동리에 유흥영업소가 있어 좋지 않다
_____	_____	(9) 기 타 (이유 : _____)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다음에는 사회복지문제(필요시 풀이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6. 귀하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둘만 택하여 주십시오.

- _____ (4) 유락여성 보호
- _____ (5) 학생이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놀러다니는 아동보호
- _____ (6) 보호자가 무능력하여 돌보지 못하는 아동보호
- _____ (7) 학교에 점심도시락을 못가지고 가는 아동보호
- _____ (8) 고아(孤兒) 보호
- _____ (9) 기타(문제: _____)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8. 이 동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소녀를 위해서 어느 시설부터 가장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② 차례로 둘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째 둘 째

- _____ (0) 아동상담소
- _____ (1) 보건시설
- _____ (2) 직업훈련소 또는 상담소
- _____ (3) 탁아소
- _____ (4) 공원 또는 어린이 놀이터
- _____ (5) 체육관
- _____ (6) 도서관
- _____ (7) 문화원
- _____ (8) 기 타 (_____)

(x) 모르겠다

(y) 무응답

- ⑥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주로 어디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정 부 (1) 민간단체 (2) 동리단체 (x) (y)

(0) 아동상담소

(1) 보건 시설

(2) 직업훈련소

또는상담소

(3) 탁 아 소

(4) 공유포는어

린이놀이터

(5) 체 육 관

(6) 도 서 관

(7) 문 화 원

(8) 기 타

9. 백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순서대로 두가지만 택하여 주십시오.

(※ 2명이상도 둘만)

첫 째 둘 째

(0) 비해당 (학생인 자녀가 없는 가정)

(1)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다

(2) 교육비가 모자라서

(3) 학교가 좋지 않아서

- _____ (4) 학교가 멀어서
- _____ (5) 공부를 잘 못해서
- _____ (6) 라디오, 텔레비, 만화 또는 불량서적의 나
 _____ 뿐 영향으로
- _____ (7) 좋지 못한 친구와 어울려서
- _____ (8) 동리가 좋지 못해서
- _____ (9) 기 타 (이유 : _____)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10. 댁에서는 지난 학기에 살림이 어려워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점심도시락을 준비해 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_____ (0) 비해당 (※국민학교 학생이 없는 가구)
- _____ (1) 없 다
- _____ (2) 한달에 한번 정도
- _____ (3) " 두세번정도
- _____ (4) 일주일에 한번 정도
- _____ (5) " 두세번정도
- _____ (6) 거의 매일
- _____ (7) 한번도 못해 주었다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11. 귀하는 정부시책으로 점심준비를 못해 가는 아동을 위하여 학교에서 준비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_____ (0) 알고 있다

_____ (1)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면 문 "16"으로)

_____ (y) 무응답

12. (알고 있다면) 댁에는 자녀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까?

_____ (0) 비해당 (※학교 급식제도를 모르는 사람)

_____ (1) 받은적 없다

_____ (2) 매일 받고 있다

_____ (3) 받고 있지 못할때가 간혹 있다

_____ (4) 거의 받고 있지 못한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13. (알고 있다면) 귀하는 지금하고 있는 학교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는 방법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0) 비해당 (모르고 있는 사람)

_____ (1) 매우 잘하고 있다

_____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_____ (3) 그저 그렇다

_____ (4)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_____ (5)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의 경우 문 "16"으로)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14.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0) 비해당 (잘한다고 하는 사람)

_____ (1) 질이 나쁘다

_____ (2) 양이 적다

_____ (3) 빵이나 죽으로는 끼니가 안된다

_____ (4) 필요한 아동에게만 제대로 주지 않는다

_____ (5) 부정이 있는것 같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15. (잘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16. 맥에는 신체가 매우 약하거나 불구 또는 정신병 등의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하거나 큰 걱정을 끼쳐주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 1명이상인 경우 그 수만큼 해당란에 체크)

①신체허약아 ②불구아 ③정신장애아 ④기 타
(학교에 다닐 또는저능아
수없을정도)

(0) 없 다

(1) 보호시설에	_____	_____	_____	_____
보냈다				
(2) 전문시설에	_____	_____	_____	_____
다닌다				
(3) 가내보호자	_____	_____	_____	_____
가 돌본다				
(4) 친척에게	_____	_____	_____	_____
의탁했다				
(5) 친지에게	_____	_____	_____	_____
의탁했다				
(6) 혼자내버려	_____	_____	_____	_____
둔 상태				
(7) 정규학교에	_____	_____	_____	_____
다닌다				
(8) 기타 ()	_____	_____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_____	_____

17. 다음에는 고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귀하는 지금 현재사정으로
보아 ㉠고아를 양자나 양녀로 삼을 생각이 있습니까?

㉠ 양자 또는 양녀로

(0) 지금 당장 원한다	_____
(1) 지금은 곤란하나 앞으로 하겠다	_____
(2) 더 생각해 봐야겠다	_____
(3) 전혀 생각없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_____

⑥ 그러면 국가에서 양육에 필요한 실비를 드린다면 기르시겠습니까?

(0) 지금 당장 원한다 _____

(1) 지금은 곤란하나 앞으로 하겠다 _____

(2) 더 생각해 봐야겠다 _____

(3) 전혀 생각없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_____

이번에는 부녀자(婦女子)에 관한 문제입니다.

18. 귀하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녀자 문제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어느 문제부터 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0) 여성의 직업교육 또는 직업소개

_____ (1) 직업여성 대우개선책

_____ (2) 유타여성 보호시책

_____ (3) 모자가정 보호대책

_____ (4) 임신부 보호시책

_____ (5) 여성단체 활동촉진시책

_____ (6) 의식주에 대한 여성교육

_____ (7) 탁아소설치

_____ (8) 기타 (문제: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19. 귀하는 직업을 갖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기혼여성 ㉡ 그러면 미혼여성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극히 찬성한다	_____	_____
(1) 어느정도찬성한다	_____	_____
(2) 찬성도반대도않는다	_____	_____
(3) 어느정도반대한다	_____	_____
(4) 절대 반대한다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먼저 ㉠의 태도를 체크하고 ㉡를 질문할 것)

20. 귀하는 윤락여성에 대한 시책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0) 법적으로 강력히 단속
- _____ (1) 직업선도 시책
- _____ (2) 적선지대 철거
- _____ (3) 기 타 (시책 : _____)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21. 귀하의 가정에서는 다음 문제에 대하여 ㉠부부중에서 주로
누가 결정하며 ㉡어느 정도로 의논하십니까?

①생활비 사용

②자녀교육

③재산관리

㉔ 주로 누가

(0) 비해당 (독신자)

(1) 남편

(2) 부인

(3) 같이 결정한다

(x) 모르겠다

(y) 무응답

㉕ 어느정도 의논

(0) 비해당

(1) 항상의논

(2) 자주의논

(3) 다소의논

(4) 거의 의논않는다

(5) 전혀 "

(x) 모르겠다

(y) 무응답

다음 문제는 남자 65 세 여자 60 세 이상의 노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22. 귀하는 이러한 연세에 든 노인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0) 노인 연금제도

_____ (1) 시설 좋은 양노원

_____ (2) 노인 휴양시설

하시면 좋겠습니까?

_____비해당 ()

(2) 생활비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_____비해당 ()

(3) 주거생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누구와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_____비해당 ()

(4) 여가(한가한 시간)의 이용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_____비해당 ()

25. 귀하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부양자손이 있는 노인을
양노원에서 사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
까?

㉠양노원입양 ㉡(반대할경우) 만약시설이 좋은
양노원이라면

(0) 찬성한다	_____	_____
(1) 찬성도반대도않는다	_____	_____
(2) 찬성할만한일이못된다	_____	_____
(3) 절대로반대한다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을 먼저 체크하고 반대한다면 ㉡를 질문할 것)

26. 귀하에게는 노령에 달한 부모나 조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십니
까?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포함)

조 부, 조 모, 부, 모

- _____ (0) 안 계시다 (※문 “38” 로)
 _____ (1) 생존에 계시거나 응답자가
 노인인 경우,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생존하여 계시다면 문 “27” - 문 “37” 까지)

27. 주로 누가 모시고 있습니까?

조 부, 조 모, 부, 모

- _____ (0) 비 해당
 _____ (1) 맏아들
 _____ (2) 맏아들 이외 아들
 _____ (3) 딸
 _____ (4) 친 척
 _____ (5) 맏손자
 _____ (6) 맏손자 이외 손자
 _____ (7) 일정 하지 않다
 _____ (8) 기타 (누가 :)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28. 그 분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조 부, 조 모, 부, 모

_____	_____	_____	_____	(0) 비 해당
_____	_____	_____	_____	(1) 매우 건강하여 다소 힘든 일을 할 수 있음
_____	_____	_____	_____	(2) 힘들지 않은 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_____	_____	_____	_____	(3) 건강하나 일은 할 수 없는 정도
_____	_____	_____	_____	(4) 겨우 걸어 다닐 정도
_____	_____	_____	_____	(5) 전지도 못하실 정도
_____	_____	_____	_____	(6) 기 타
_____	_____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_____	_____	(y) 무응답

(※의 경우
문 "32"로)

29.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다면)

지금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조부 또는 부친, 조모 또는 모친

_____	_____	(0) 비 해당 (건강하지 못한분)	
_____	_____	(1) 없 다	
_____	_____	(2) 하루 6시간이상 거의 매일 일하신다 (full time)	
_____	_____	(3) 일이 있을때만 하신다 (Part time)	
_____	_____	(4) 집안일만 돌보신다	
_____	_____	(5) 별로 하시는 일이 없다	} ※의 경우 문 "32" 로)
_____	_____	(6) 전혀 " " "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30.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신다면)

어디에서 무슨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산업, 직업, 직위를 명시)

_____ 비 해당

31.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신다면)

노령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0) 비 해당
- _____ (1) 살림형편상 일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 _____ (2) 살림에 보탬을 할려고
- _____ (3)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으나 여가를 보낼려고
- _____ (4) 살림에 보탬도 되고 여가를 이용하려고
- _____ (5) 기 타 (이유: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2. (조부 또는 부친의 경우만, 수입 있는 일을 그만 두었다면)

그분이 수입 있는 일을 그만 두셨을 때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_____ (0) 비해당

_____ (1) 40 세 이전

_____ (2) 40 세 ~ 44 세

_____ (3) 45 세 ~ 49 세

_____ (4) 50 세 ~ 54 세

_____ (5) 55 세 ~ 59 세

_____ (6) 60 세 ~ 64 세

_____ (7) 65 세 이상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3.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만 두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_____ 비해당

(_____)

34.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만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0) 비해당

_____ (1) 건강하지 못해서

- _____ (2) 건강하였으나 그분이 쉬기를 원해서
 _____ (3) 가족의 만류로
 _____ (4) 실직 또는 사업의 실패로
 _____ (5) 정년퇴직으로
 _____ (6) 기 타 (사유 :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5. (생존하여 계시다면)

그분이 한가한 시간에 가장 즐기시는 오락은 무엇입니까?
 조부 또는 부친, 조모 또는 모친

- _____ (0) 비해당
 _____ (1) 낚시, 사냥 또는 등산
 _____ (2) 동물 기르기
 _____ (3) 정원 가다듬기
 _____ (4) 장기, 바둑 또는 화투
 _____ (5)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시청
 _____ (6) 경노당에 나가시는 것
 _____ (7) 마실 가기
 _____ (8) 자손 집이나 친척 또는 친지
 _____ (9) 기 타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6. (생존하여 계시다면)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이 제심으로 해서 가정 내 어떤 문제

가 일어 납니까?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3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비 해 당

(1)

(2)

(3)

37. (생존하여 계시다면)

또한 그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불만족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비 해 당

(1)

(2)

다음에는 불구자, 정신병자, 저능아 등의 심신장애자와 혼혈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38.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시책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_____ (0) 수용시설

_____ (1) 치료시설

_____ (2) 전문교육 시설

_____ (3) 직업상담 시설

_____ (4) 공동 작업장

_____ (5) 최저 생활보장 또는 생업자금 융자

_____ (6) 보장구 급여 대책

_____ (7) 기 타 ()

_____ (X) 모르겠다

_____ (X) 무응답

39. 맥의 가구원 중에는 혹시 이러한 심신 장애를 받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_____ (O) 없 다 (없다면 문 " 43 "으로)

_____ (I) 있 다 (있다면 기본표와 대조)

_____ (X) 무응답

(기본표 참조)

40. (있다면) 어떠한 장애이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명 이상일 경우 외 ()명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 관계	① 장애종류	② 장애원인	③ 장애치료	④ 교육상태	수입취업	
						유	무
1							
2							
3							

2) 장애원인 : ① 선천적 ② 병후 ③ 전쟁 ④ 교통사고 ⑤ 우발 사고

⑥기 타

3) 장애치료 : 어디서 치료 받았으며 치료한 상태기입

5) 수입취업 :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체크할것

41.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 기본표와 대조)

가구원 번 호	가구주와 의 관 계	㉠어디서 어떤일 (구체적으로기입)	㉡취업시 애로사항 (")	㉢미 취업 사유 (")

42. 다소 말씀해 주시기 난처한 문제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러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닥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것부터 순서대로 3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

(2)

(3)

마지막 으로 택의 살림 형편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본조사 연구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 서슴치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
여 주십시오.

43. 택의 가구원 중 수입이 있는 분을 전부 말씀해 주시고 각각
의 수입 총액과 그 외 가구 수입도 말씀해 주십시오 ※ 세금
이나 그와 비슷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구원비 수입출 및	1. 가구원 번호	2. 가구주와 관계	3. 수 입 원						4. 생 활 비		
	계		① 취업 취업	② 부업 부업	③ 동산 부동산	④ 동산 동산	⑤ 그외 수입	⑥ 총계	부담액	그 외 사용처	금 액
5. 생활비 지출 세목	① 종 세	② 식료 품	③ 주거 비	④ 연료 비	⑤ 의복 비	⑥ 교육 비	⑦ 그외 잡비	⑧ 영 농 비	⑨	총계	
6. 과부족및 부 족시보충방법	저 또 제(契)	축 는 부 족	① 정부또 는 공공 기관보 조	② 부모	③ 가구원 외친족	④ 친척	⑤ 재 산 매 각	⑥ 빚	⑦	총계	

※ 기입요령 : 확대 단위 원으로 계산 기입, 기본표 가구전체 단위로 계산 할것.

1). 2) 기본표와 동일

3) 수입원 : ①취업수입 : 각 가구원의 주업에 의한 수입

농가의 경우 : 농산물 수입, 어부의 경우 : 어획물 수입을 가구
주수입으로 원칙을 세우나 실제 가구주가 일하지 않는 경
우는 실제 당사자 수입으로 할것.

환산법: 1년 수입을 12등분 할것.

① 주 식 비	② 잡 곡	③기타농산물	④ 기 타	12 등 분 액

② 부업수입: 주업 이외 수입, 축산, 행상, 노동, 별채 등

② 부동산: 가옥대여, 임야대여, 시설대여 등의 부동산 수입

④ 동 산: 주식(株式) 수입, 이식(利殖)수입 등 동산수입

⑤ 그외수입: 상기 ①②③ 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4) 생활비: 수입의 사용처를 생활비와 그외 사용처로 분리기입

5) 생활비 지출세목 6) 과부족 란 기입, 부족시 보충 방법은 수입 총계와 지출 총계의 제산으로 저축 부족란을 기입하고 질문할것.

44.택의 살림형편은 작년 이맘 때에 비하여 더 좋아 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_____ (0) 많이 좋아졌다

_____ (1) 다소 좋아졌다

_____ (2) 마찬가지다

_____ (3) 다소나빠졌다

_____ (4) 많이 나빠졌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45.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어떤 재해(災害)나 대사(大事)를

겪게 되는데 택에서는 지난 10년이후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곤경을 받았으며,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㉔

경제적	수해	한해	화재	상 (喪)	결혼	실적	기타 ()
(0) 재해, 대사가							
곤경							
(1) 심했다							
(2) 다소 있었다							
(X) 있었으나							
모르겠다							
(Y) 무응자							

㉕ 해결하신 방법을 순서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 순서 1.2.3.4 로기입)

해결방법	(0) 피해 당 (없었다)						
	(1) 해결 못지었다						
	(2) 과거 저축						
	또는 계로						
	(3) 보험으로						
	(4) 조합에서						
	(5) 친척의 도움						
	(6) 직장, 친지의 도움						
	(7) 정부 또는						
	공공기관보조						

수해 한해 화재 상(喪) 결혼 실적 기타()

(8) 기타 ()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_____

46. 그러면 지금 역에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재해나 대
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_____ (0) 준비가 전혀 (1) 있다 (2) 없다 (X) 모르겠다 (Y) 무응답
없다 _____

(1) 저축 또는
부동산 확보 _____

(2) 생명보험 _____

(3) 화재보험 _____

(4) 손해보험 _____

(5) ()보험 _____

(6) 상(喪) 계 _____

(7) 혼(婚) 계 _____

(8) () 계 _____

(9) 공제 조합가입 _____

(10) 신용조합가입 _____

(11) () 가입 _____

(12) 기타 ()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47. 귀하는 물건을 사실때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중에서 어떤 문

제가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둘째

- _____ (0) 품질 자체가 나쁜것
- _____ (1) 품질을 속이는 것
- _____ (2) 물건이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것.
- _____ (3) 에누리로 흥정을 해야 하는것
- _____ (4) 광고에 지나치게 좋게만 선전하는것.
- _____ (5) 저울을 속이는 것.
- _____ (6) 시장이 더럽다는 것.
- _____ (7) 손님대하는 상인의 태도가 나쁘다는 것.
- _____ (8) 기타 (어떤문제 :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48. 댁에서는 지금 경제생활면에서 가장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2)

(3)

4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는 이동리에서 택의 생활형편은 다음 중

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_____ (0) 상 의 상

_____ (1) 상 의 하

_____ (2) 중 의 상

_____ (3) 중 의 하

_____ (4) 하 의 상

_____ (5) 하 의 하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 응 답

50. 귀하는 9월에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용하신적이

있는 것을 모두 지적 해주십시오.

_____ (0) 하나도 없다

_____ (1) 신문은 거의 매일 본다

_____ (2) 라디오 거의 매일 청취

_____ (3) 텔레비 " "

_____ (4) 정기 간행 잡지 (주간 포함 월간잡지 이내)

_____ (5) 도서관 또는 마을문고

_____ (6) 영화, 연극 또는 음악회

_____ (7) 강연회 또는 강습회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 응 자

51. 귀하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오락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좋아 하십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둘째

_____ (0) 없다

_____ (1) 낚시, 또는 사냥

_____ (2) 운동, 등산, 또는 산책

_____ (3) 바둑 또는 장기

_____ (4) 독 서

_____ (5) 라디오 또는 텔레비 시청

_____ (6) 영화 또는 연극

_____ (7) 마실 가든가 담소하기

_____ (8) 화루, 마작등의 노름

_____ (9) 기타 ()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 응 답

감사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정과 의견은 보다 더 잘살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면접후기 :

일련번호 본표 _____

가구원번호 : _____

별표 _____

사회복지 기초조사

별표 직업여성조사표

1. 이 조사의 응답자는 해당가구의 기혼(현재 독신이라도) 직업여성에게 한함.
2. 해당가구에 기혼 직업여성이 2인이상 있을 경우는 한사람만 할것 (단, 이 가구와 처음 면접 했을때 그날이 奇數면 연장자, 偶數면 년소자로 할것)
3. 본 조사에서 직업여성 이라고 함은 그 가구의 다른 성원들과는 관계없이 그의 책임으로 수입이 있는 어떤 직업 (혹은 부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함.
(농사를 돕고 있는 가정부는 비행당)

인 사 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보장심 의위원회라는 연구기구에서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2. 이번 조사는 결혼을 하고서도 직업(혹은 부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의 여러가지 사정과 의견을 들어 앞으로도 계속 직장을 가져야 하는 여성들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3. 부인이 조사대상으로 뽑히게 된 것은 예비 뽑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부인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 숫자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 목적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사 원 : _____

조사일시 : 19 . . .

주 소 : 시 구 가 동 번 호
 도 군 면 리 지 호

1. 결혼을 하고도 직업 (혹은 부업) 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 _____ (0) 자신의 소질을 직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_____ (1) 살림살이만 하기에는 너무 한가로워서
_____ (2)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서
_____ (3) 전공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_____ (4) 직장 (혹은 부업) 생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돕지 않을 수 없어서
_____ (5) 경제적으로 당장 어렵지는 않지만 좀 더 여유를 갖기 위해서
_____ (6) 기타 왜 :
_____ (Y) 무응답

2. (위의 1 에서 (4)와 (5)의 경제적인 이유때문이라고 체크한 사람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직장 (혹은 부업) 을 그만 두시겠습니까?

- _____ (0) 당장 그만둔다
_____ (1) 그래도 2 - 3 년 더 하겠다
_____ (2) 꼭 계속 하겠다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 (1) 부인께서는 현재 어떤 직업 (혹은 부업) 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표를 참조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 부인의 결혼 전후 직업 (혹은 부업) 경력

1. 무슨직업 : 얼마동안 개월

2. 무슨직업 : 얼마동안 _____ 개월

3. 무슨직업 : 얼마동안 _____ 개월

4. 무슨직업 : 얼마동안 _____ 개월

4. 부인이 직업 (혹은 부업) 을 갖는 것을 바깥 어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처음엔	5 지금은
(0) 비 해당	_____	_____
(1) 대단히 찬성	_____	_____
(2) 어느정도 찬성	_____	_____
(3) 찬성도 반대도 안함	_____	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	_____
(5) 대단히 반대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6. (위의 5 에서 (4)와 (5)의 반대한다에 체크한 사람만)

바깥어른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반대하는 이유
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_____ (0) 수입은 좋지만 일이 너무 힘든 직업이므로

_____ (1) 수입도 적고 일도 힘이드는 직업이므로

_____ (2) 가족이나 가정생활에 자연 충실할 수 없으므로

_____ (3) 남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직업이므로

_____ (4) 남자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므로

_____ (5) 여자의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지 않으므로

_____ (6) 원래 여자가 직업을 갖는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므로

_____ (7) 기타 (왜 _____)

(X) 모르겠다

(Y) 무응답

7. 현재 출퇴근 시간은 대개 어느때입니까?

7 출근

8 퇴근

(0) 새벽에

(1) 오전

(2) 오후

(3) 밤

(4) 일정치 않다

(5) 집에서 한다

(Y) 무응답

9. 부인의 한달 수입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____ (0) 1,000 원 미만

____ (1) 1,000 ~ 2,000 원미만

____ (2) 2,000 ~ 4,000 원미만

____ (3) 4,000 ~ 6,000 원미만

____ (4) 6,000 ~ 10,000 원미만

____ (5) 10,000 ~ 15,000 원미만

____ (6) 15,000 ~ 20,000 원미만

____ (7) 20,000 ~ 30,000 원미만

____ (8) 30,000 ~ 40,000 원미만

____ (9) 40,000 원 이상

____ (10) 무응답

10. 부인의 수입은 경제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까?

____ (0) 수입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산다

____ (1) 경제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____ (2) 별로 도움이 안된다

____ (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 (X) 모르겠다

____ (Y) 무응답

11. 현재 직장 (혹은 부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____ (0) 대단히 만족하다

____ (1) 어느정도 만족하다

____ (2) 보통이다

____ (3) 어느 정도 불만족하다

____ (4) 대단히 불만족하다

____ (X) 모르겠다

____ (Y) 무응답

12. (위의 11에서 (○)과 (1)의 만족하더에 체크한 사람만) 지금
의 직장 (혹은 부업)은 어떤 점에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순서대로 두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첫째 둘째

- (0) 비해당
- (1) 취미에 맞기 때문에
- (2) 남을 도울수 있는 직업이므로
- (3) 전공을 살릴 수 있으므로
- (4)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 (5) 보수 (수입) 가 좋으므로
- (6) 보수 (수입) 는 좋지 않아도 직장분위기가
좋으므로
- (7) 기타 (무엇 :
- (Y) 무응답

13. (위의 11에서 (3)과 (4)의 불만족한다에 체크한 사람만)
 지금의 직장 (혹은 부업)은 어떤 점에 불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는 순서대로 두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첫째 둘째

- _____ (0) 비 해당
- _____ (1) 일이 힘들어서
- _____ (2) 보수 (수입) 는 좋으나 직장 (혹은 부업)
분위기가 나빠서
- _____ (3) 보수 (수입) 도 좋지 않고 직장 (혹은
부업) 분위기도 나빠서

- _____ (4) 남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이므로
- _____ (5) 직업 (혹은 부업) 이 성격이나 소질에 맞
지 않아서
- _____ (6) 동료나 상사 (혹은 고용주) 가 인격적인
대우를 얹해 주므로
- _____ (7) 안정성이 없는 직업이므로
- _____ (8) 기타 (무엇 :
- _____ (Y) 무응답

14. 만일 직업 (혹은 부업) 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직업이 부인에게 좋겠습니까? 다음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
시오.

- _____ (0)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업 (상용)
- _____ (1) 보수 (수입) 는 적어도 시간에 융통성이 있는 직업
- _____ (2) 집에서 틈틈히 할 수 있는 직업
- _____ (3) 혼자 독단으로 경영하는 자영업
- _____ (4) 여러가지 조건은 좀 좋지 않아도 우선 보수 (수
입) 가 좋은 직업
- _____ (5) 기타 (무엇 :
- _____ (6) 직업 (혹은 부업) 을 다시 가질 생각 없다.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15. 부인께서 직장에 나가면 애기를 (6살미만 없는 경우는
비해당)은 누가 봐주며 또 가사를 보살피 주는 분은 누구
입니까?

	15 가 사	16 애 기
(0) 비 해당	_____	_____
(1) 시 어머니	_____	_____
(2) 친정 어머니	_____	_____
(3) 친 척	_____	_____
(4) 식 모	_____	_____
(5) 이웃위탁	_____	_____
(6) 탁아소	_____	_____
(7) 기타 (누구 :	_____	_____
(8) 본인이 전부한다	_____	_____
(9) 아무도 없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17. 가사와 애기를 보살피 주는 분들에게는 한달 평균 얼마를
지불합니까? (가사와 애기를 봐주는 사람이 다를 경우 모두
합해서)

- _____ (0) 비 해당
- _____ (1) 1,000 원미만
- _____ (2) 1,000 원 ~ 2,000 원미만
- _____ (3) 2,000 원 ~ 3,000 원미만
- _____ (4) 3,000 원이 상
- _____ (5) 무보수
- _____ (Y) 무응답

18. 현재 이분들이 가사나 애기를 맡아서 돌봐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 (1) (2)에 체크한 사람은 문 21로 넘어갈것)

- _____ (0) 비해당
- _____ (1) 아주 만족하다
- _____ (2) 어느정도 만족하다
- _____ (3) 보통이다
- _____ (4) 어느정도 불만족하다
- _____ (5) 아주 불만족하다
- _____ (Y) 무응답

19. (위의 18에서 (4)와 (5)의 불만족하다에 체크한 사람만) 만족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불만족한 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 _____ (0) 성의있게 해주나 일을 마음에 들게 못한다.
- _____ (1) 아이들에게 성의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
- _____ (2) 본인이 하는것 보다 경제적으로 낭비가 많다.
- _____ (3) 돌보아주는 만큼의 대우 (물질적) 나 그 이상의것을 원한다.
- _____ (4) 봐주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경을 많이 쓰게되고 때로는 눈치도 봐야 한다.
- _____ (5) 기타 (무엇 :
- _____ (Y) 무응답

20. (위의 19에 체크한 사람만 만족하지 않은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_____ (0)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바꾸겠다.
- _____ (1) 직장 (혹은 부업) 일도 해가면서 하기는 힘들어도 본인이 해야겠다.
- _____ (2) 탁아소나 유치원 (농촌인 경우) 을 이용하겠다.
- _____ (3) 집을 직장부근으로 옮겨 틈틈이 보살핀다.
- _____ (4) 살림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겠다.
- _____ (5)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는다.
- _____ (6) 불만족스러운데로 전디어 나갈수 밖에 없다.
- _____ (7) 아무 해결책 없다.
- _____ (8) 기타 (무엇 :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21. 직장 (혹은 부업) 에서 돌아온후 부인께서는 가사를 어느정도 돌보십니까?

- _____ (0) 살림 전부를 전적으로 돌봐준다.
- _____ (1) 틈이 나는데로 돌봐준다.
- _____ (2) 돌보아 주고 싶으나 전혀 봐주지 못한다.
- _____ (Y) 무응답

22. 직장에서의 동료들과는 비교적 사이가 어떻습니까?

- _____ (0) 비해당
- _____ (1) 여자동료들과 좋다 (여자동료만 있을 경우)
- _____ (2) 여자동료와 나쁘다
- _____ (3) 남자동료와 좋다 (남자동료만 있을 경우)
- _____ (4) 남자동료와 나쁘다 (")
- _____ (5) 여자동료와는 좋은데 남자동료와 나쁘다 (여, 남, 다 있을 경우)
- _____ (6) 남자동료와는 좋은데 여자동료와 나쁘다 (")
- _____ (7) 여자동료나 남자동료와 사이가 다 좋다 (")
- _____ (8) 여자동료나 남자동료와 사이가 다 나쁘다 (")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23. 부인께서 직업 (혹은 부업) 을 갖기 때문에택의 가정에서 부득이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부터 순서대로 두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첫 째 둘 째

- _____ (0) 시어머니 (기타 다른사람) 가 살림이나 아이를 보살피 주면서 불만을 자주한다
- _____ (1)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서로 거리감이 많다
- _____ (2) 남편에게 시중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불만이 많다
- _____ (3) 남편이 부인의 바깥생활에 오해를 해서

- _____ 불화가 있다
- _____ (4) 자녀들의 성격이 난폭 (혹은 꼴이 없다)
해 진다
- _____ (5) 자녀들의 학업을 돌봐 줄 수 없어서 학
업성적에 지장이 있다
- _____ (6) 생활을 타인이 돌봐주므로 가계비의 낭비
가 있다
- _____ (7) 기 타 (무엇 ;
- _____ (8) 아무 문제없다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24. 부인의 직장에서는 다음의 일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까?

	비해당	전혀없다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0) 상해 발생시	_____	_____	_____	_____
(1) 출산전, 후 휴가및 편리	_____	_____	_____	_____
(2) 가내에 대 사, 휴상시	_____	_____	_____	_____
(3) 육아보호 (젖먹이는 시간)	_____	_____	_____	_____
(4) 위생시설 (화장실등)	_____	_____	_____	_____
(5) 오락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6) 남자와 동등한 보수	_____	_____	_____	_____

31. 부인의 직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까? 또 병고로 유급결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일입니까? (년)

31. 유급휴가

32. 유급결근

(0) 비해당	_____	_____
(1) 1 주미만	_____	_____
(2) 1 주 - 10 일미만	_____	_____
(3) 10 일 - 15 일미만	_____	_____
(4) 15 일 - 30 일미만	_____	_____
(5) 30 일미상	_____	_____
(6) 기타 (얼마 ;	_____	_____
(7) 없다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33. 부인께서는 직업 (혹은 부업) 을 가지고 계셔서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까?

- ____ (0) 불리한 점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
- ____ (1) 불리한 점도 이로운 점도 없다
- ____ (2) 이로운 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다
- ____ (X) 모르겠다
- ____ (Y) 무응답

34. (위의 33 에서의(0)의 이로운 점이 더 많다면 체크한 사람만)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첫 째 둘 째 (0) 비해당

_____ (1) 자신의 소질을 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_____ (2) 사교생활을 넓힐 수 있다

_____ (3)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넓힐
수 있다

_____ (4) 직장 (혹은 부업) 을 가지므로서 부부상
호간에 오히려 이해가 더 많이 된다

_____ (5) 경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된다

_____ (6) 기 타 (무엇 ;

_____ (Y) 무응답

35. (위의 33 에서 (2)의 불리한 점이 더 많다면 체크한 사람만) 어떤 점이 불리합니까?

첫 째 둘 째 (0) 비해당

_____ (1)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해 진다

_____ (2) 여가가 없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없다

_____ (3) 자녀들의 교육에 충실할 수 없다

_____ (4) 부인이 수입이 있는고로 남편이 경제생
활에 자연 관심이 적어진다

_____ (5) 직장 (혹은 부업) 을 가지므로서 가정불
화와 의견충돌이 더 일어 난다

_____ (6) 기타 (무엇 ;

_____ (Y) 무응답

36. 부인의 취미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것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_____(0) 독 서

_____(1) 등 산

_____(2) 꽃꽂이

_____(3) 영화, 음악

_____(4) 운 동

_____(5) 그림그리기

_____(6) 친구와의 환담

_____(7) 수예, 편물

_____(8) 기타 (무엇 ;

_____(9) 없 다

_____(Y) 무응답

37. 부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가장
많이 보내시는 순서대로 두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첫 째 둘 째

_____(0) 친구, 친지를 방문한다

_____(1) 가족들과 같이 즐긴다

_____(2) 혼자서 취미생활을 살린다

_____(3) 그동안 밀린일들을 (빨래, 청소등) 한다

- _____ (4) 잠이나 휴식으로 피로를 푼다
 _____ (5) 기타 (무엇 :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38. 흔히 「여성 은 될수 있는 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부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 기혼여성

39 미혼여성

(0) 대단히 찬성한다	_____	_____
(1) 어느정도 찬성한다	_____	_____
(2)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	_____	_____
(3) 어느정도 반대한다	_____	_____
(4) 절대 반대한다	_____	_____
(X) 모르겠다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40. 부인께서는 앞으로 몇년동안 더 직업 (혹은 부업) 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_____ (0) 0 ~ 1년
 _____ (1) 2, 3년
 _____ (2) 4, 5년
 _____ (3) 5 ~ 10년
 _____ (4) 10년이상
 _____ (5) 정년퇴직까지
 _____ (6) 경제문제가 해결될때 까지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41. 결혼한 직업여성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시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시책을 차례대로 두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첫 째 둘 째

_____ (0) 여성을 위한 휴게실 설비

_____ (1) 가사에 필요한 특별휴가 제도

_____ (2) 직업보도 및 기술습득 훈련

_____ (3) 생리휴가 및 산후·전의 휴가제 실시

_____ (4) 출산부인의 특별수당 제도

_____ (5) 무료탁아소 시설

_____ (6) 시설좋은 유료탁아소 시설

_____ (7) 남자와 동등한 대우(보수)

_____ (8) 은퇴연금제도

_____ (9) 기타(무엇 :

_____ (X) 모르겠다

_____ (Y) 무응답

42. 년 령

_____ (0) 20세 미만

_____ (1) 20 ~ 25 세

_____ (2) 26 ~ 30 세

_____ (3) 31 ~ 35 세

- _____ (4) 36 ~ 40 세
- _____ (5) 41 ~ 45 세
- _____ (6) 46 ~ 50 세
- _____ (7) 51 ~ 55 세
- _____ (8) 56 ~ 60 세
- _____ (9) 60 세 이 상
- _____ (Y) 무응답

43. 교육 정도

- _____ (0) 무 학
- _____ (1) 초 등 (중 퇴 포함)
- _____ (2) 중 등 (중 퇴 포함)
- _____ (3) 고 등 (중 퇴 포함)
- _____ (4) 대 학, 이 상
- _____ (Y) 무응답

44. 종 교

- _____ (0) 유 교
- _____ (1) 불 교
- _____ (2) 천도교
- _____ (3) 기독교
- _____ (4) 천주교
- _____ (5) 무 교
- _____ (6) 기 타 (무엇 : _____)
- _____ (Y) 무응답

45. 결혼관계

- _____ (0) 기혼・동거
 _____ (1) 별거 (이유 :
 _____ (2) 이혼
 _____ (3) 사별
 _____ (Y) 무응답

46. 자녀수

	46 3세미만	47 8세미만	48 13세미만	49 20세미만	50 20세 이상
(0) 1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2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3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4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5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5명이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없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Y) 무응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1. 가구주직업

- _____ (0) 농・어업
 _____ (1) 상 업
 _____ (2) 교육 및 공무원・회사원
 _____ (3) 공 업
 _____ (4) 자유업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_____ (5) 금융업

- _____ (6) 노 동
- _____ (7) 기 타 (무엇 :
- _____ (8) 무 직
- _____ (X) 모르겠다
- _____ (Y) 무응답

52. 취업년수(결혼후)

- _____ (0) 1 년미 만
- _____ (1) 1 년 ~ 2 년미 만
- _____ (2) 2 년 ~ 4 년미 만
- _____ (3) 4 년 ~ 6 년미 만
- _____ (4) 6 년 ~ 10 년미 만
- _____ (5) 10 년 이상
- _____ (Y) 무응답

53. 노동조합 가입 여부

- _____ (0) 비 해당
- _____ (1) 했 다
- _____ (2) 안했다
- _____ (Y) 무응답

54. 직장공제회 가입 여부

- _____ (0) 비 해당
- _____ (1) 했 다
- _____ (2) 안했다

_____ (Y) 무응답

55. 직업단체 가입 여부

_____ (0) 비 해당

_____ (1) 했 다

_____ (2) 안했다

_____ (Y) 무응답

감사합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정과 의견은 가정생활을 해 나가
면서도 직업(혹은 부업)을 갖고 있는 직업여성에 관한 연구
에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안녕히 제십시오.

면접후기